



# 2021

2021 Sport White Paper

# 체육백서



1. 본 간행물은 『2002 체육백서』를 시작으로 해마다 발행되고 있습니다.
2. 『2021 체육백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 의해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되었습니다.
3. 스포츠산업 관련 자료는 2014년부터 『스포츠산업백서』가 발간됨에 따라 체육백서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4. 본 백서는 10개 이상의 체육단체와 지자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는 총 10장으로 1장 체육정책 거버넌스, 2장 생활체육, 3장 전문체육, 4장 학교체육, 5장 장애인체육, 6장 국제체육, 7장 체육전문인력, 8장 체육시설, 9장 남북 체육교류, 10장 스포츠윤리로 구성하였습니다.
5. 『2021 체육백서』부터 영문 인포그래픽을 포함하였습니다.
6. 본 백서의 기초자료는 202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몇몇 자료들은 각 기관이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7. 본 백서의 통계자료에 기입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자료마다 출처 및 주를 삽입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8. 『2021 체육백서』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http://www.mcst.go.kr))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www.sports.re.kr](http://www.sports.re.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의 체육 관련 정책과 활동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2021 체육백서'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백서 발간을 위해 힘쓰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포츠가 개인과 우리 사회에 주는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참여와 도전, 성취의 즐거움을 통해 행복감을 증진하고, 신체 발달과 질병 예방 등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구성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관련 산업 발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의료비 절감과 같은 경제적 효과까지 스포츠는 우리 삶의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이 평생에 걸쳐 스포츠를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체육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스무 번째를 맞는 '2021 체육백서'에서는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 장애인 체육, 국제체육 등 분야별 정책 내용을 포괄하고, 체육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자원, 법제, 체육시설 및 인력, 스포츠윤리 등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1년은 ‘스포츠 3법’이라 일컫는 「스포츠기본법」, 「체육인복지법」,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어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해입니다. 무엇보다 「스포츠기본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권리인 ‘스포츠권’ 보장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스포츠권 실현을 위해 스포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 간 스포츠 격차 해소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체육인의 안정적 활동 환경 조성과 스포츠클럽 활성화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스포츠 생태계의 선순환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백서가 체육단체와 지자체 등 체육 관련 종사자분들의 체육문화 진흥을 위한 길잡이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체육백서’가 정부의 체육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향후 체육활동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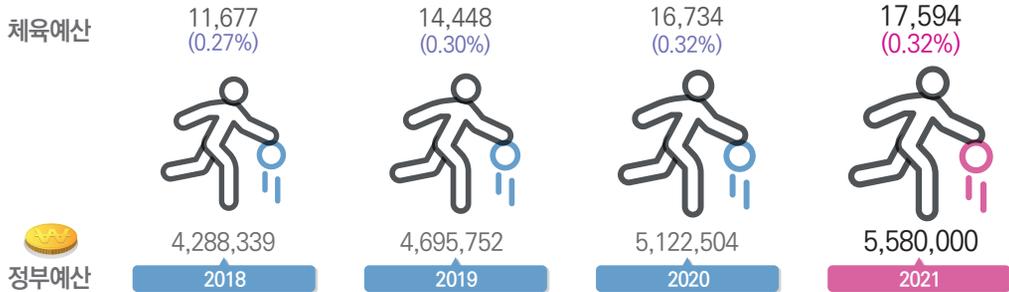
# 1

## 체육정책 거버넌스

» 2021 Sport White Paper Infograph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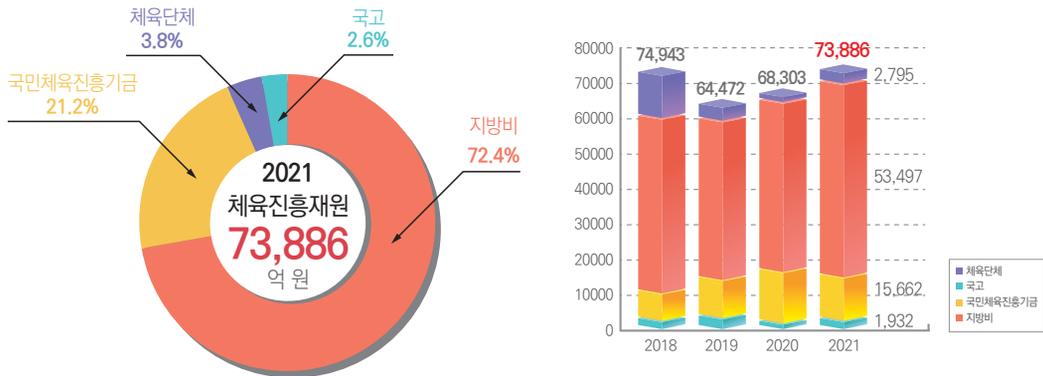
### 01. 정부예산 대비 체육예산 (2018-2021년)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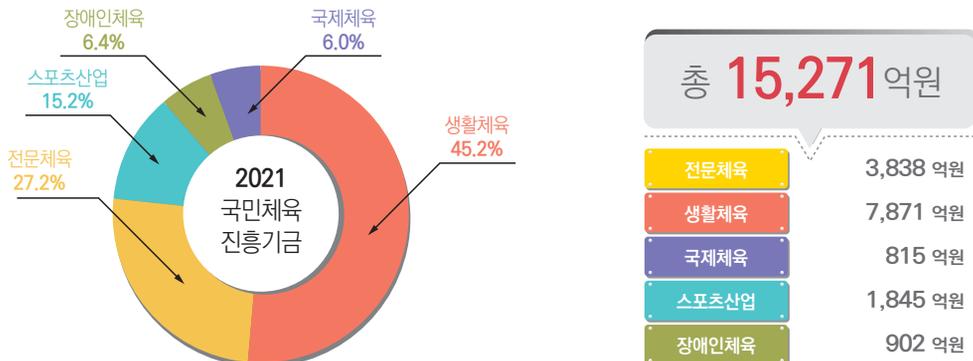


### 02. 체육진흥재원 (2018-2021년)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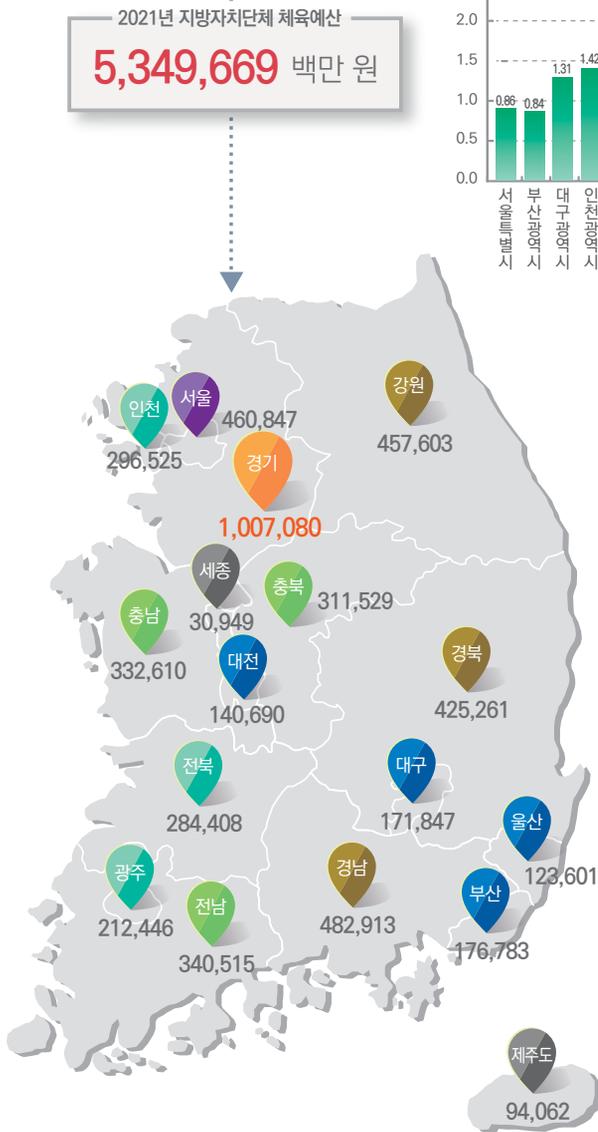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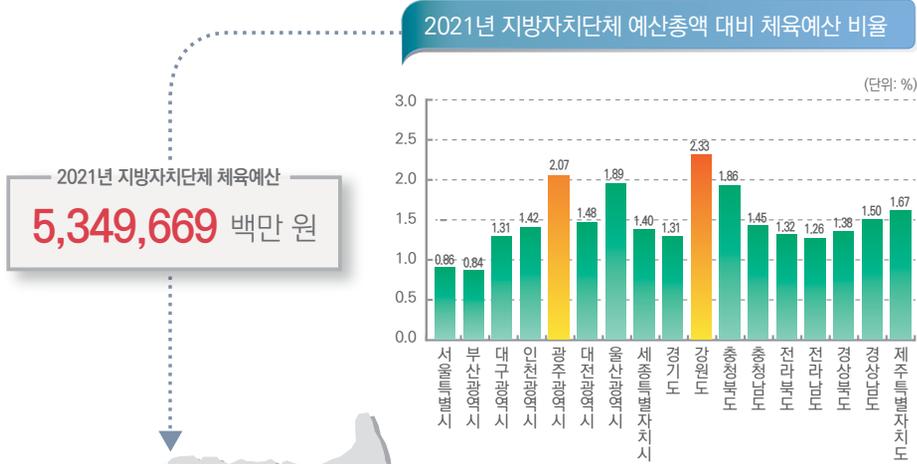


### 03.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 (2021년)



## 04. 지방자치단체 체육예산 (2021년)

(단위: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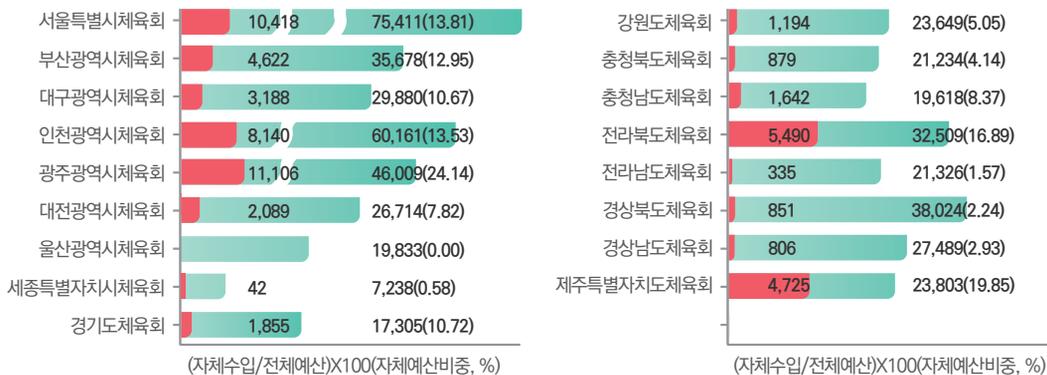
05. 체육단체별 예산 현황 (2021년)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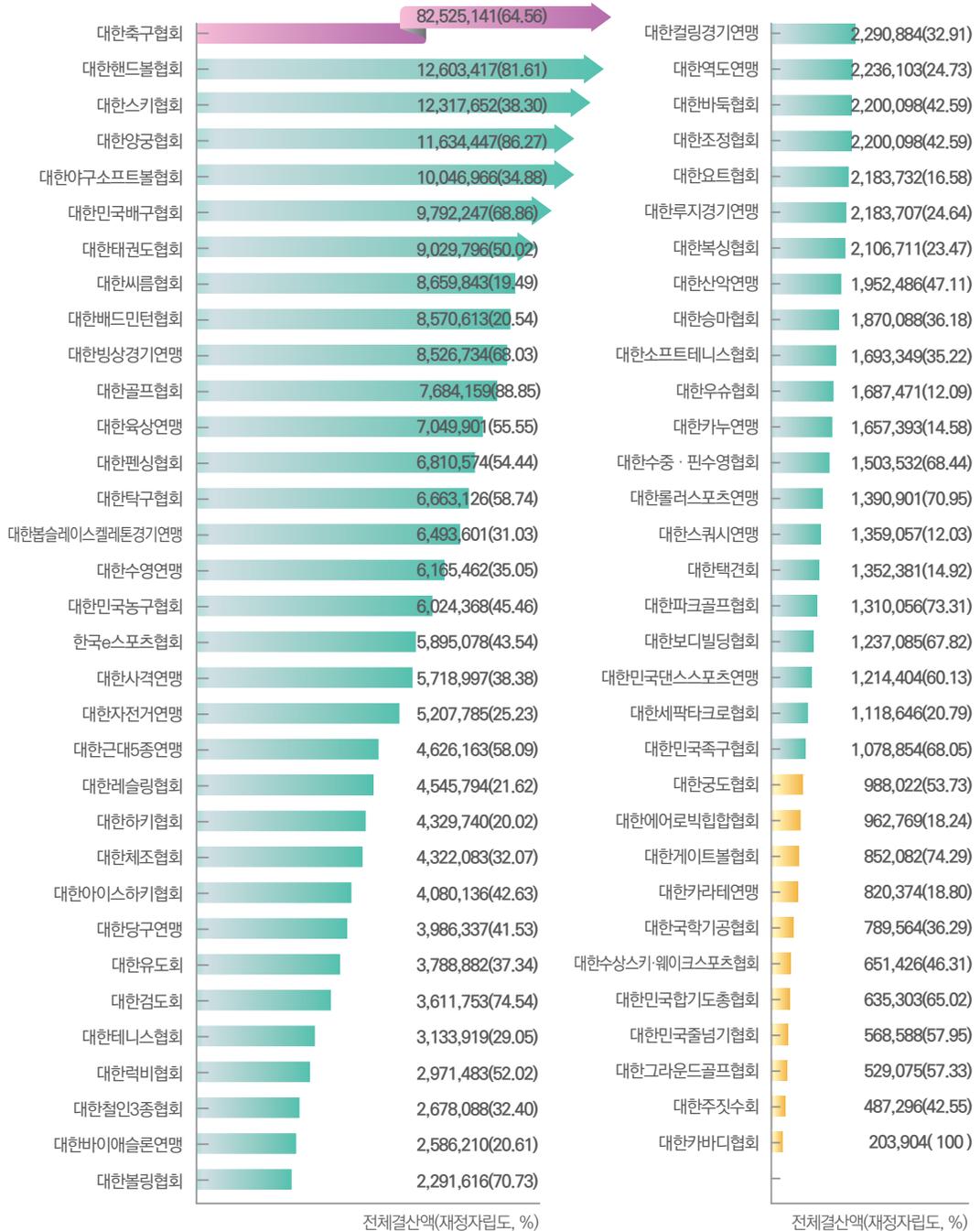


06. 시도 체육회 및 종목단체 재정자립도 (2021년)

1. 시도 체육회 예산 및 재정자립도 (2021년) ..... (단위: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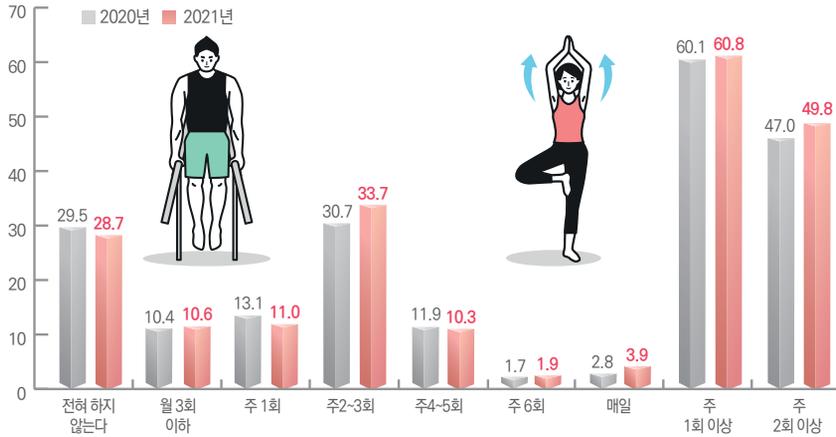


## 2. 회원종목단체 예산 및 재정자립도(2021년) .....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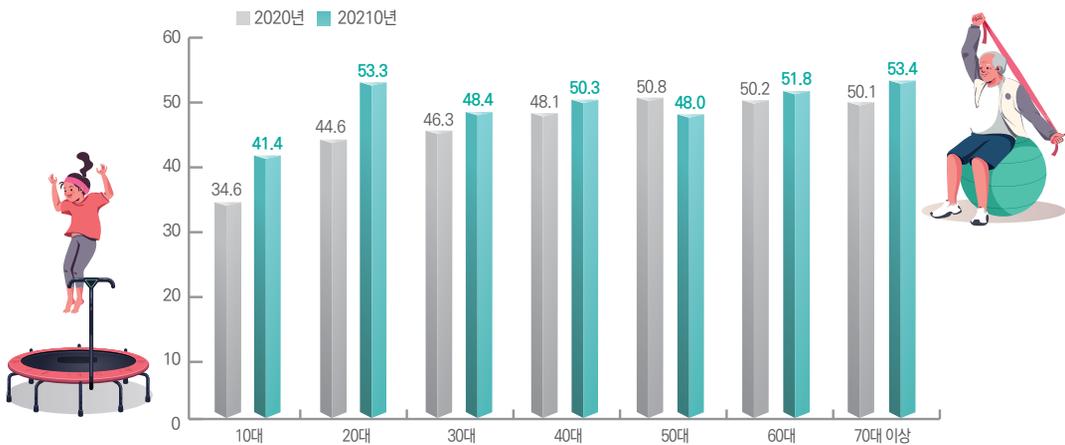


## 01. 생활체육 참여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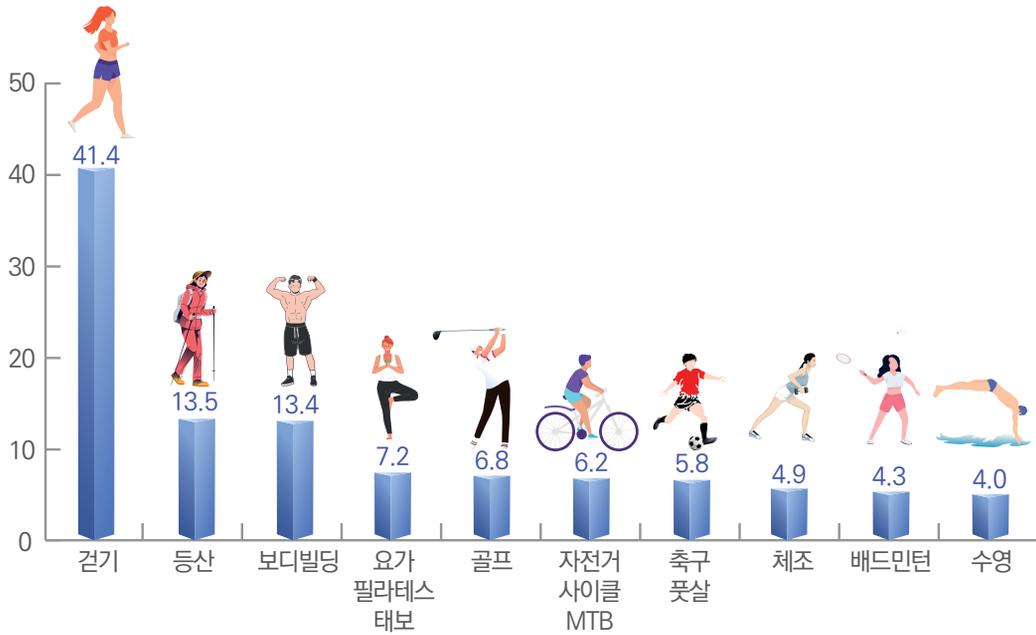
1.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2020~2021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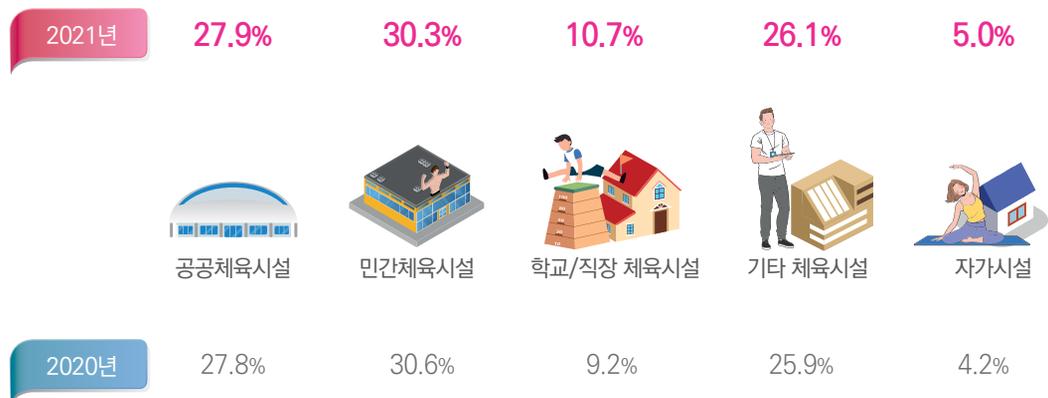
2. 연령대별 생활체육(주 2회 이상) 참여율(2020~2021년) ..... (단위: %)



3. 생활체육 참여 종목(2021년) ..... (단위: %)



4.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시설(2020~2021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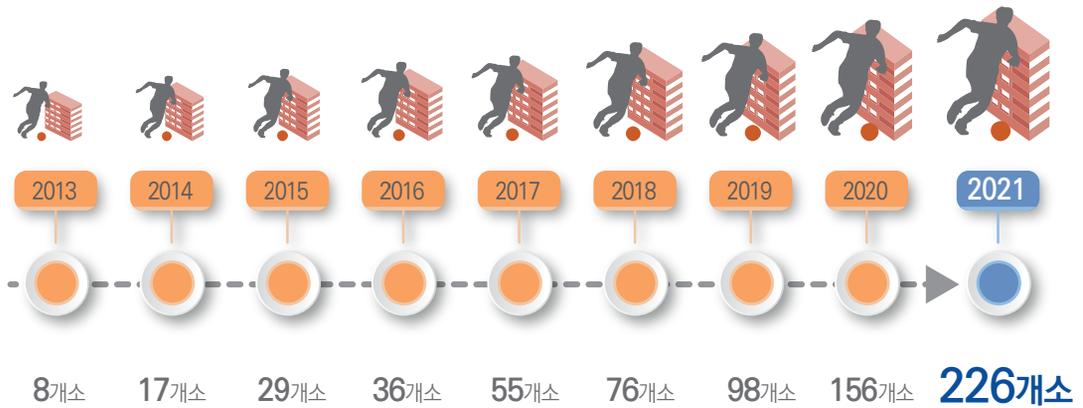


5.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2019~2021년) ..... (단위: 원)



## 02. 스포츠클럽

1.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현황(2013~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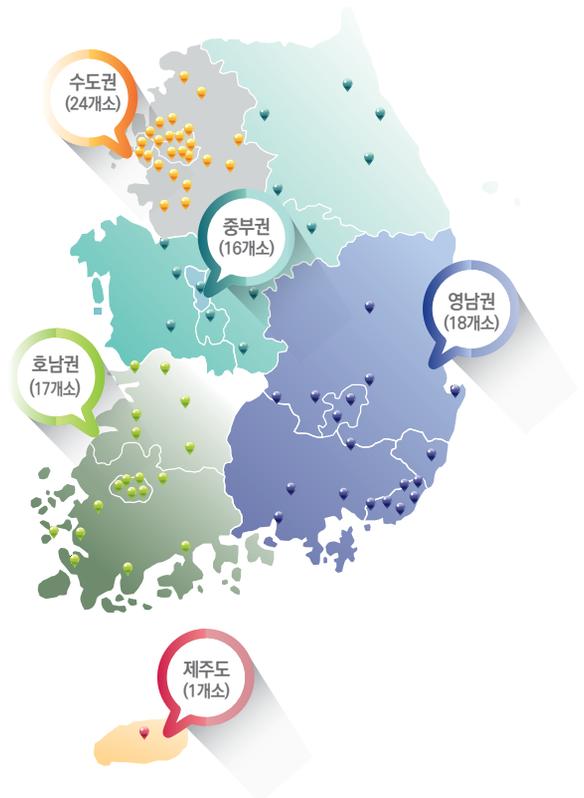
### 03. 국민체력 100

1. 국민체력100 연간 참여인원(2015~2021년)



2.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현황(2021년)

2021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현황  
총 7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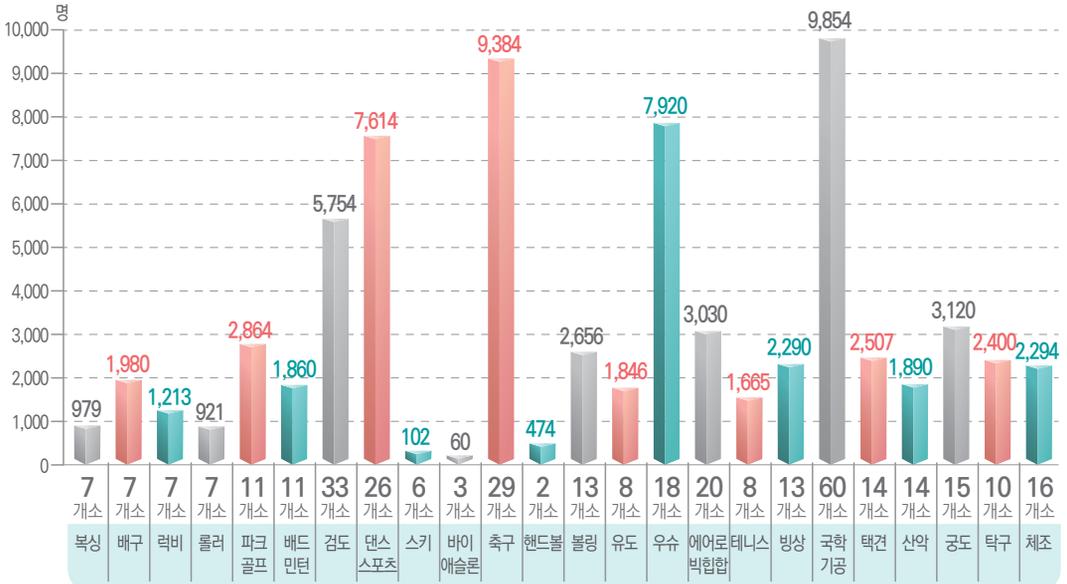


### 04.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1.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2015~2021년) ..... (단위: 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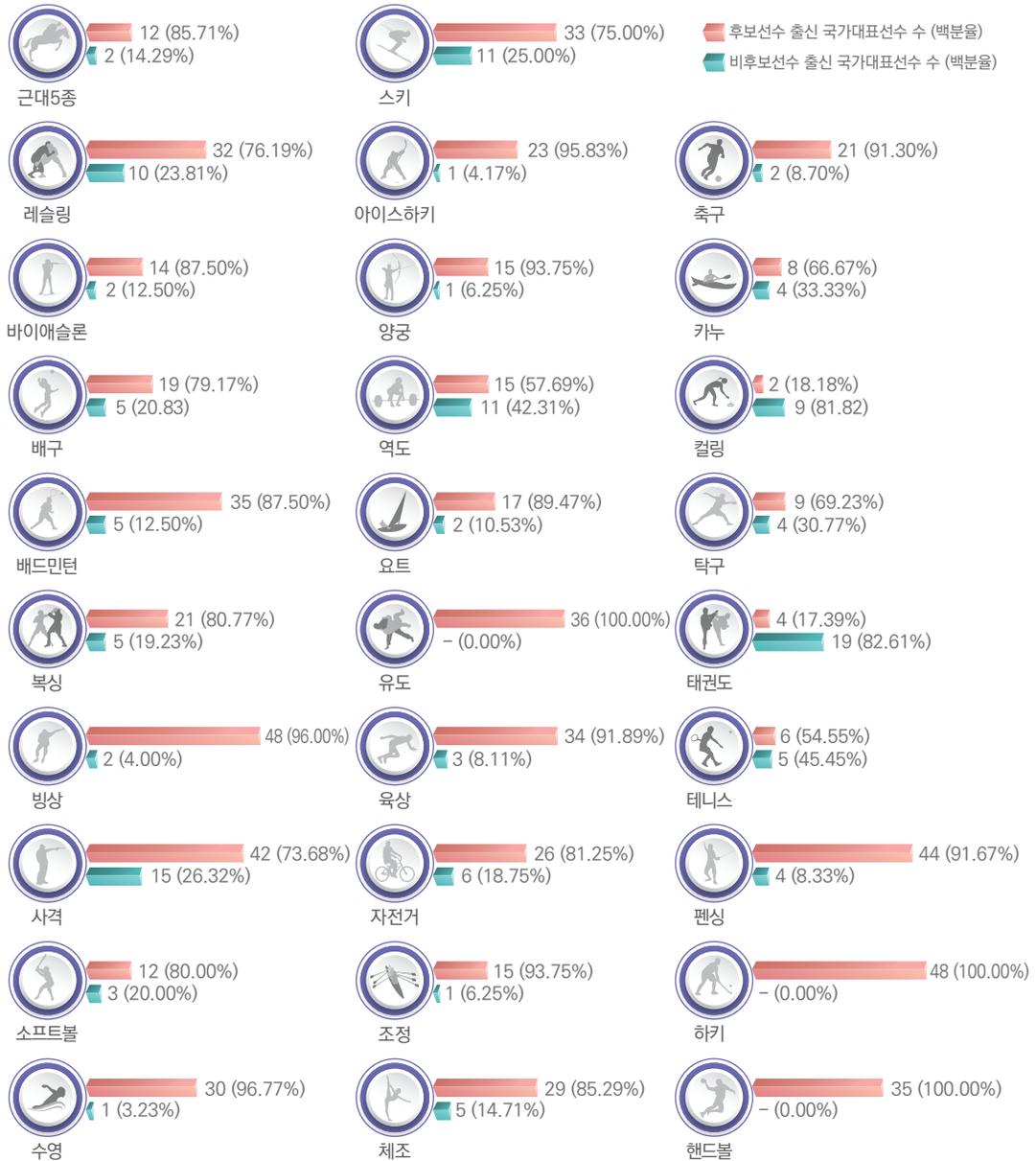


2.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운영(2021년) ..... (단위: 개소, 명)



# 01. 종목별 선수육성 현황

1. 종목별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비율(2021년)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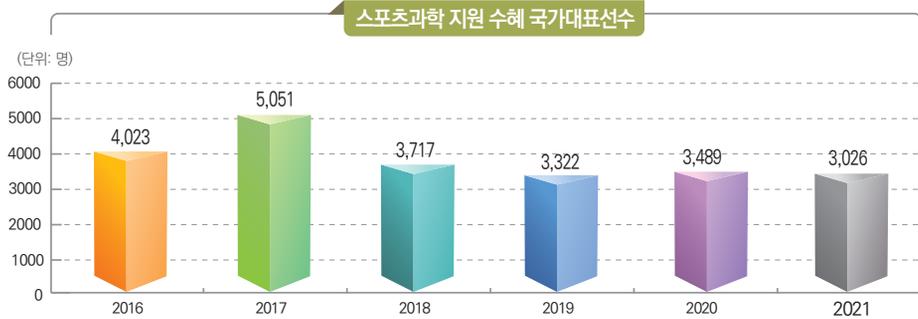
※ 주: 국가대표 후보선수 육성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농구, 승마, 골프, 카라테, 럭비, 스케이트보드, 산악, 철인3종,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볼링, 카바디, 패러글라이딩, 세팍타크로, 정구, 스쿼시, 우슈)은 반영되지 않았음

## 02. 전문체력 경기력 향상 지원

1.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 실적(2019~2021년) ..... (단위: 명, 종목,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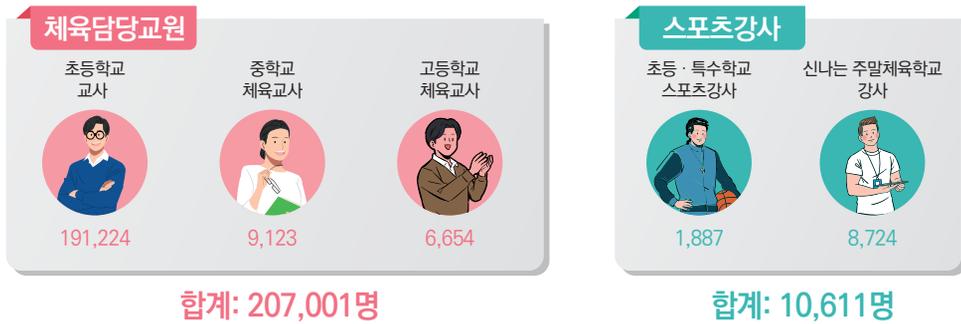


2. 국가대표 현장밀착형 스포츠과학 지원(2016-2021년) ..... (단위: 명,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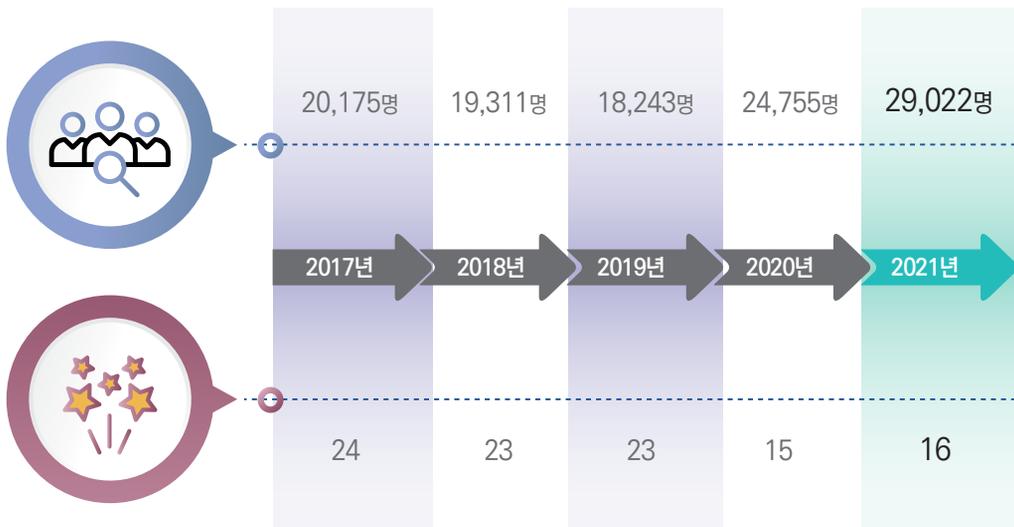
## 01. 학교체육지도자 현황

1. 학교체육지도자 현황(2021년) ..... (단위: 명)



## 02. 전국 학교스포츠클럽축전 현황

1. 전국 학교스포츠클럽축전 현황(2017~2021년) ..... (단위: 종목 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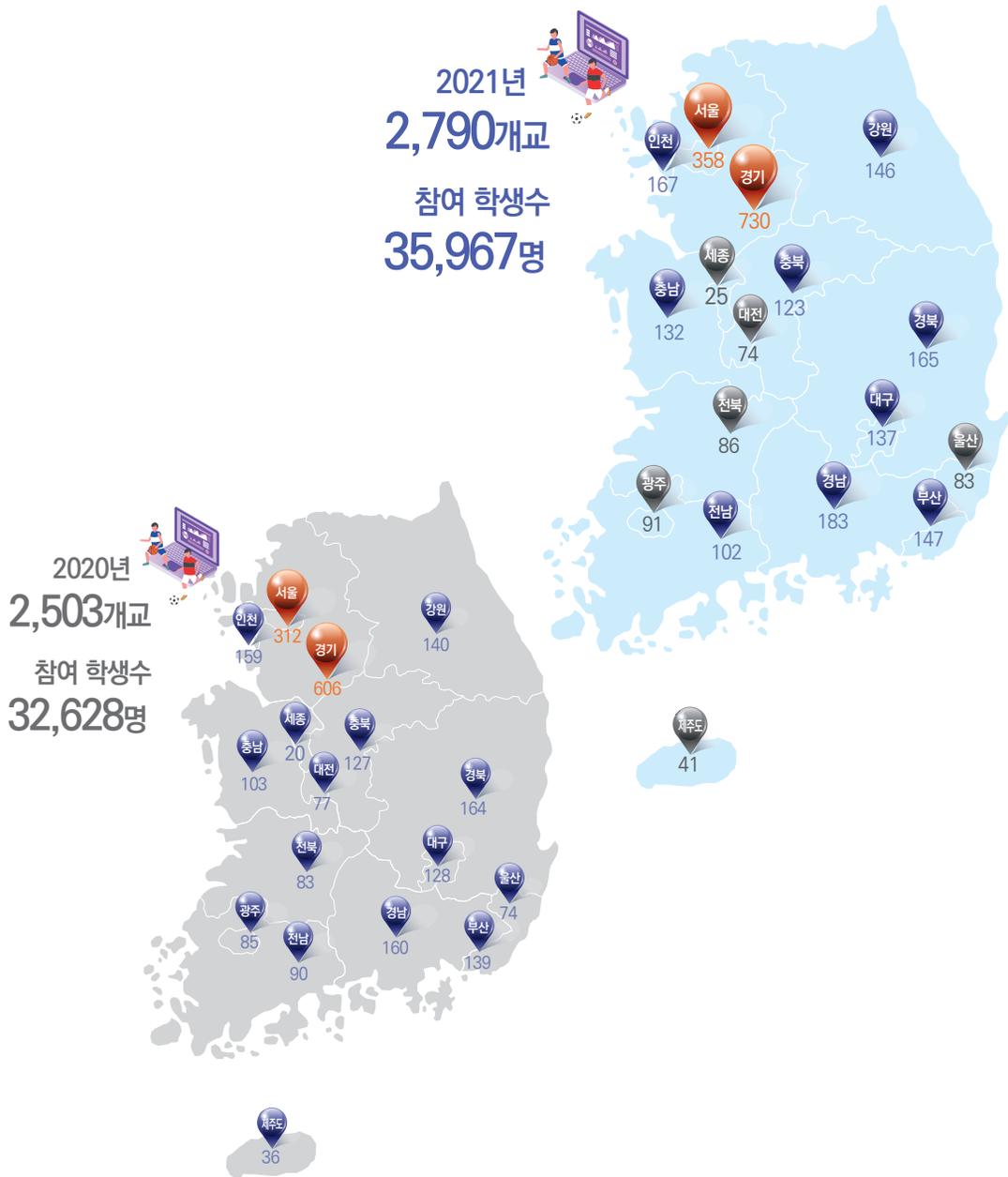
### 03. 학교운동부 현황

1. 학교운동부 현황(2017~2021년) ..... (단위: 명, 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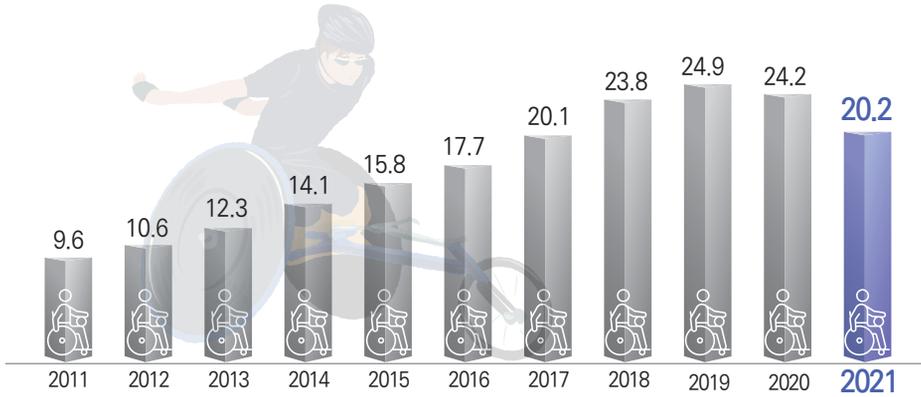
## 04. 이-스쿨(e-school)

1. 이-스쿨(e-school) 시·도별 운영 현황(2020-2021년) ..... (단위: 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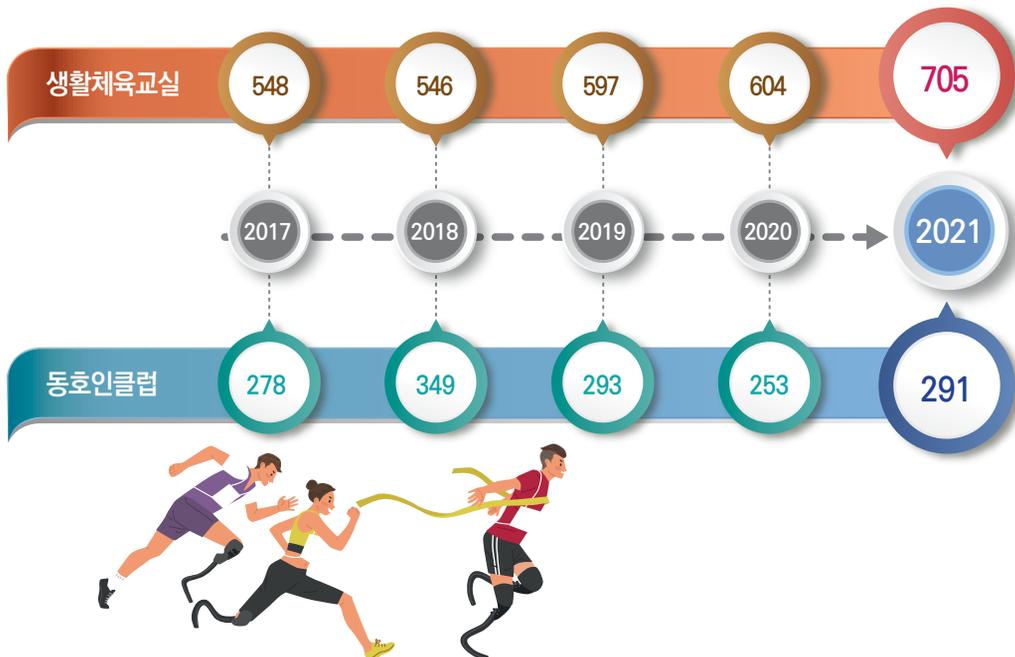


## 01. 장애인 생활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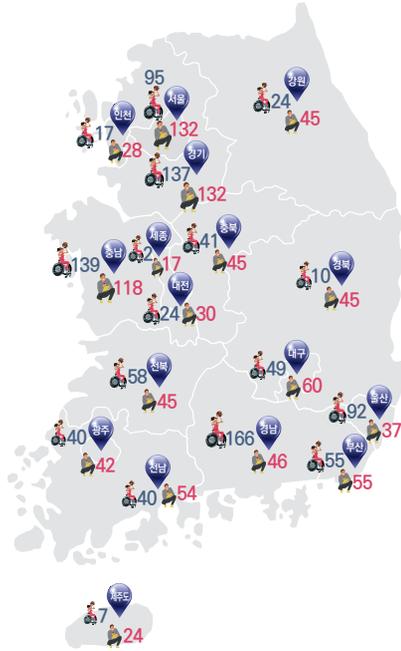
1.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2011~2021년) ..... (단위: %)



2.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실적(2017~2021년) .....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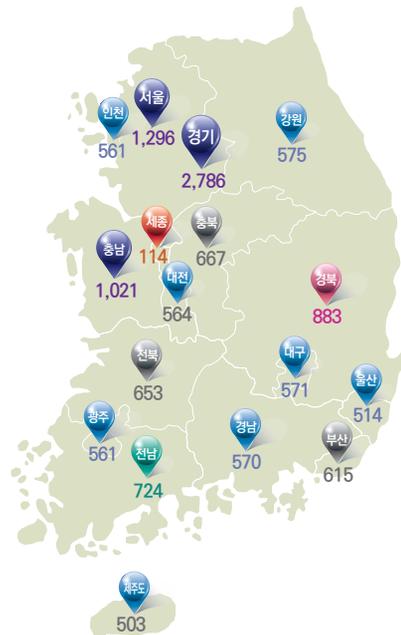


3. 시도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2021년) ..... (단위: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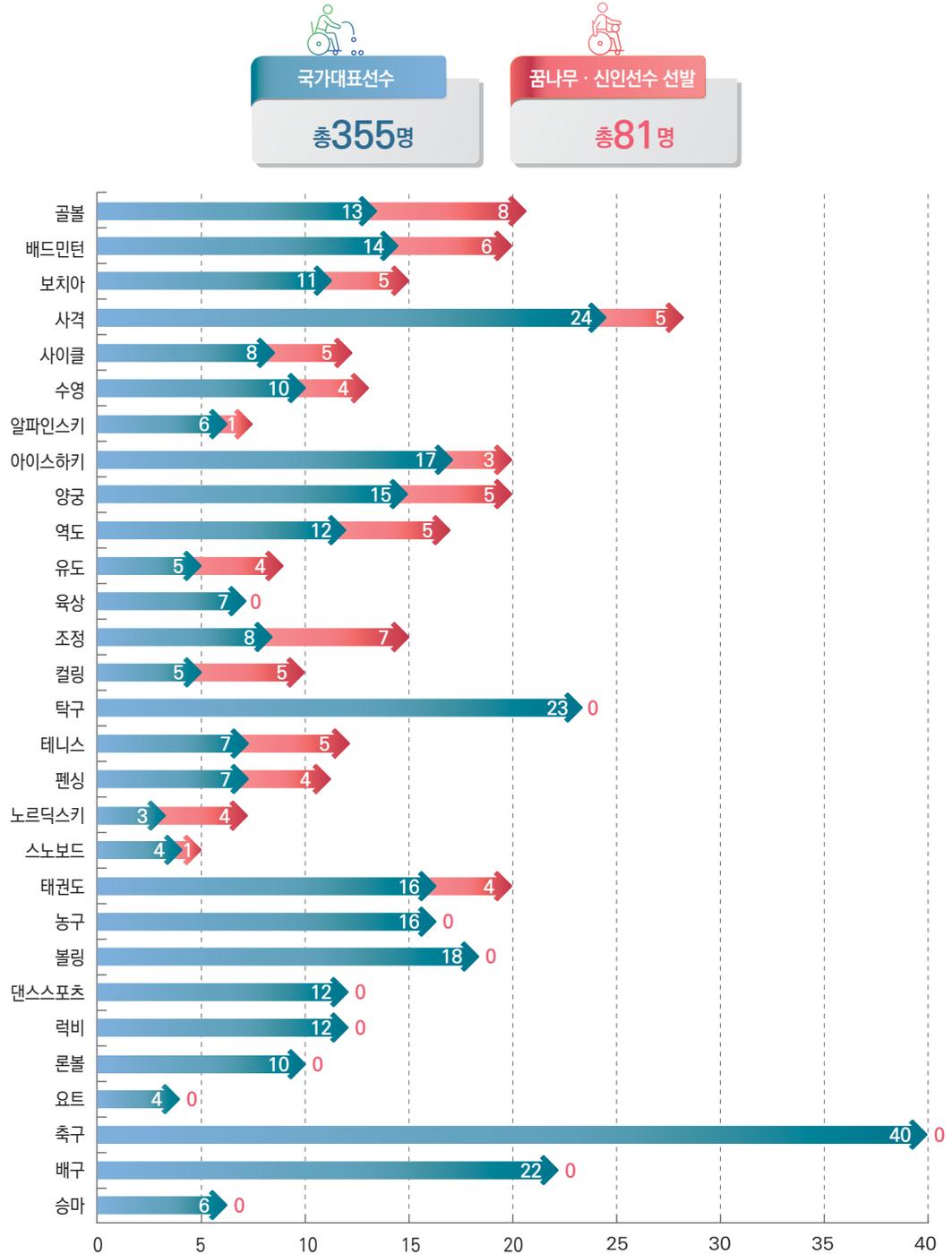


02. 장애인 전문체육

1. 시·도 등록선수 현황(2021년) ..... (단위: 명)



2. 장애인 꿈나무선수·신인선수 및 국가대표 선발 현황(2021년)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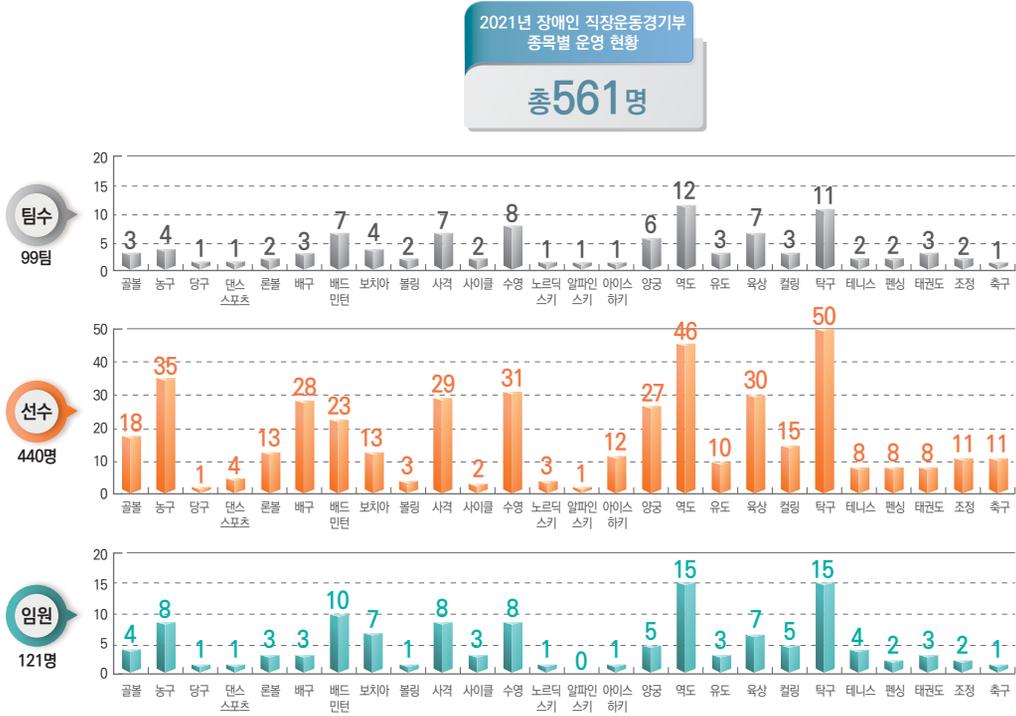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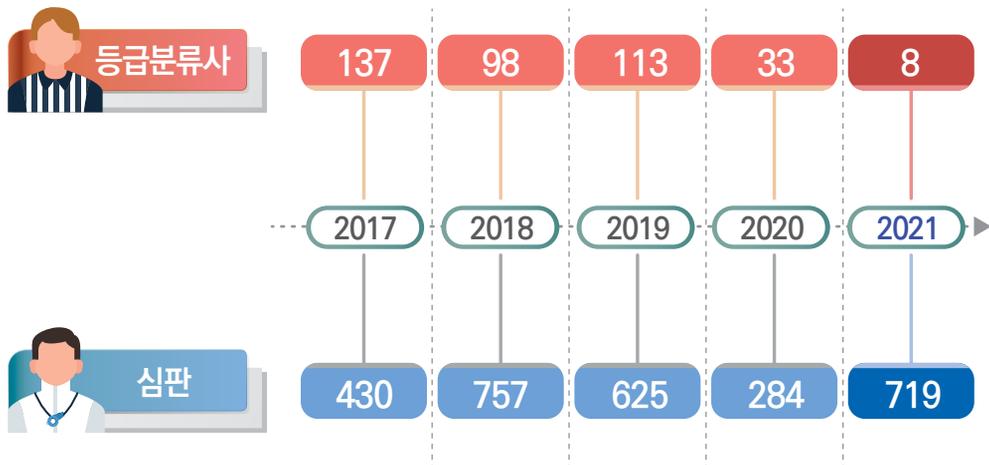
## 장애인체육

» 2021 Sport White Paper Infographics

### 3.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운영 현황(2021년) (단위: 개, 명)



### 4. 전문인력(등급분류사, 심판)양성 현황(2017~2021년) (단위: 명)



# 01. 국제체육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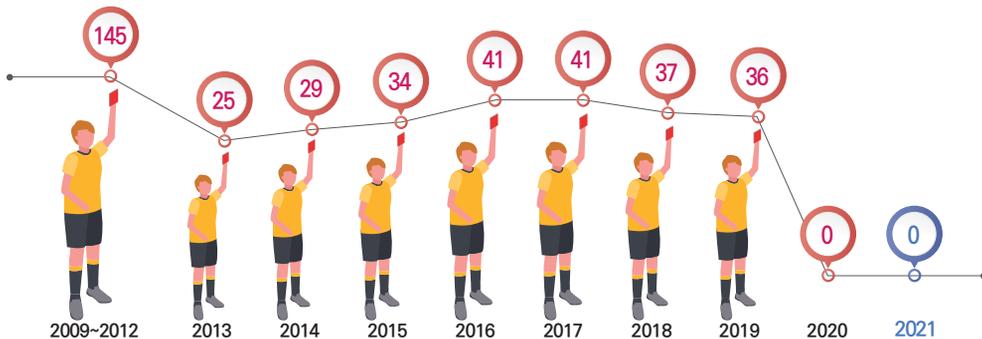
1. 체육교류현황 체결 현황(2021년) ..... (단위: 개)



2.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임원 현황(2011~2021년) ..... (단위: 명)



3. 국제심판 자격취득 연도별 현황(38개 종목) ..... (단위: 명)



## 02. 국제대회 성과

1. 하계 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순위(2004~2020년) ..... (단위: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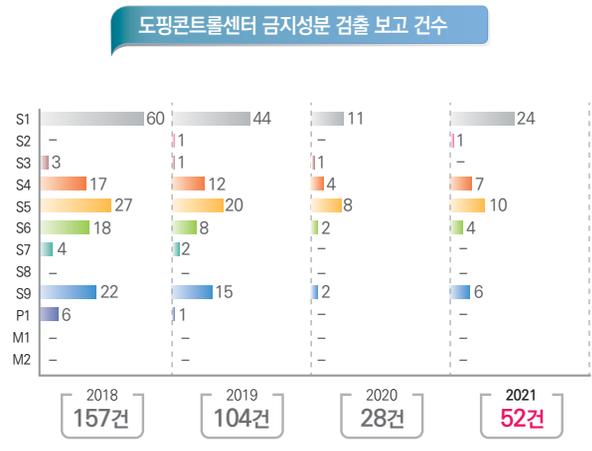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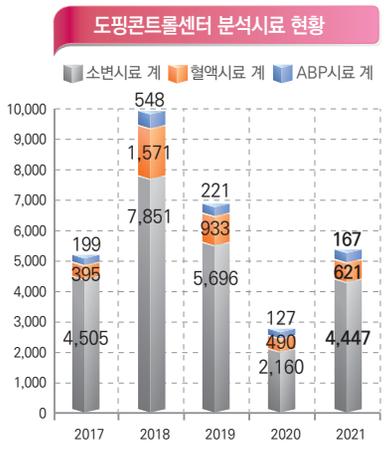


2. 동계 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순위(2006~2018년) ..... (단위: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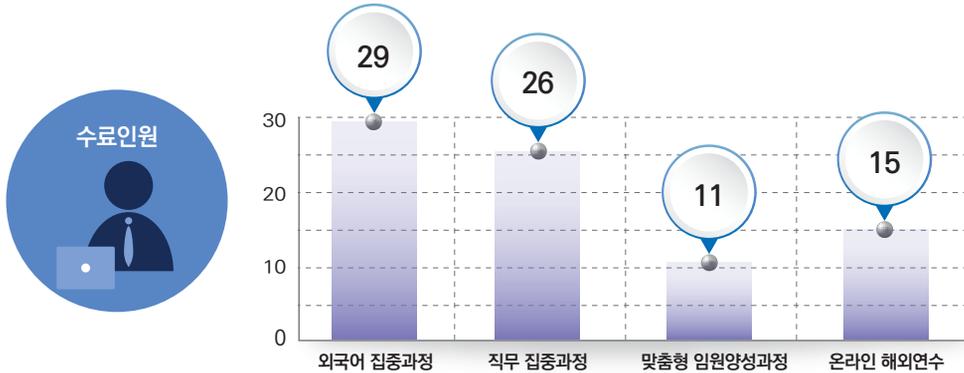
## 03. 도핑방지 활동

1. 도핑컨트롤센터 분석시료 현황(2017~2021년) .....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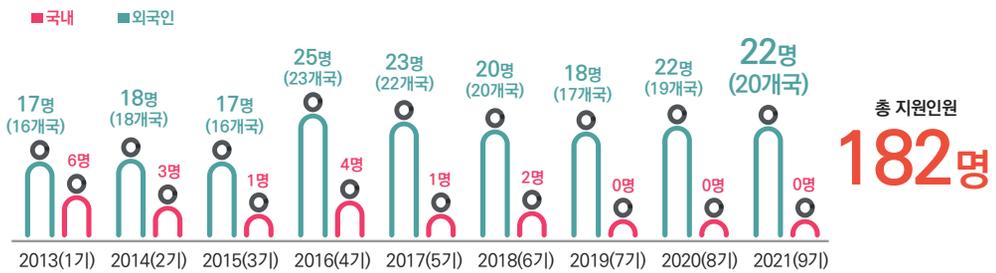


## 04. 국제체육 전문인력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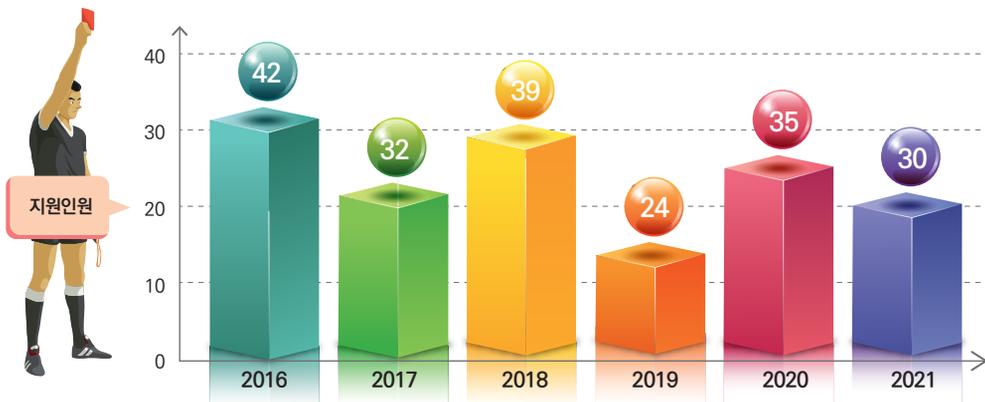
1.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지원(2021년) ..... (단위: 명)



2.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 교육사업 실적(2013~2021년) ..... (단위: 개국,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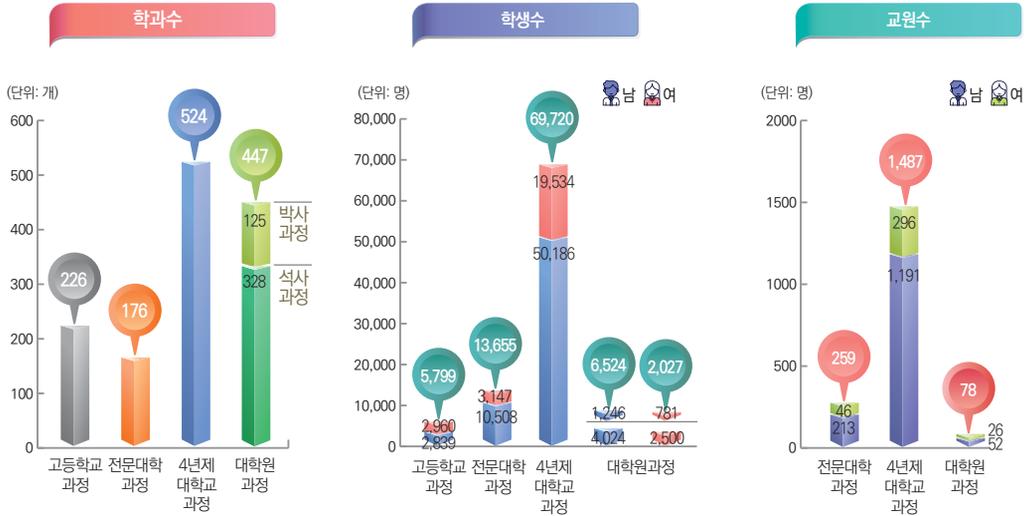


3. 국제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 지원(2016~2021년)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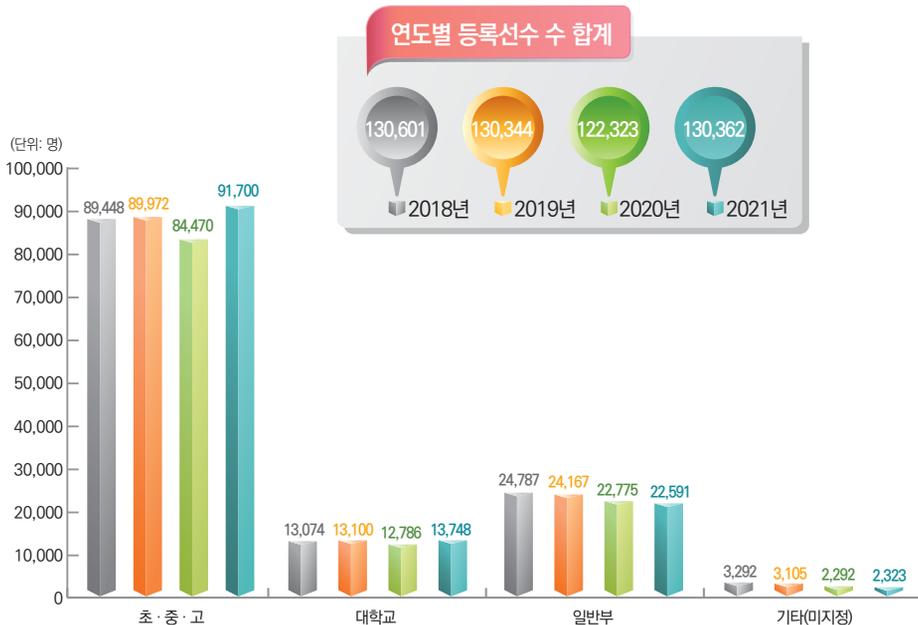
### 01. 체육계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학과, 학생, 교원수 (2021년)

(단위: 개, 명)



### 02. 등록선수

1. 소속별 등록선수 수(2018~2021년) (단위: 명)



### 03.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수

1. 국가대표선수 및 코치 현황 (2021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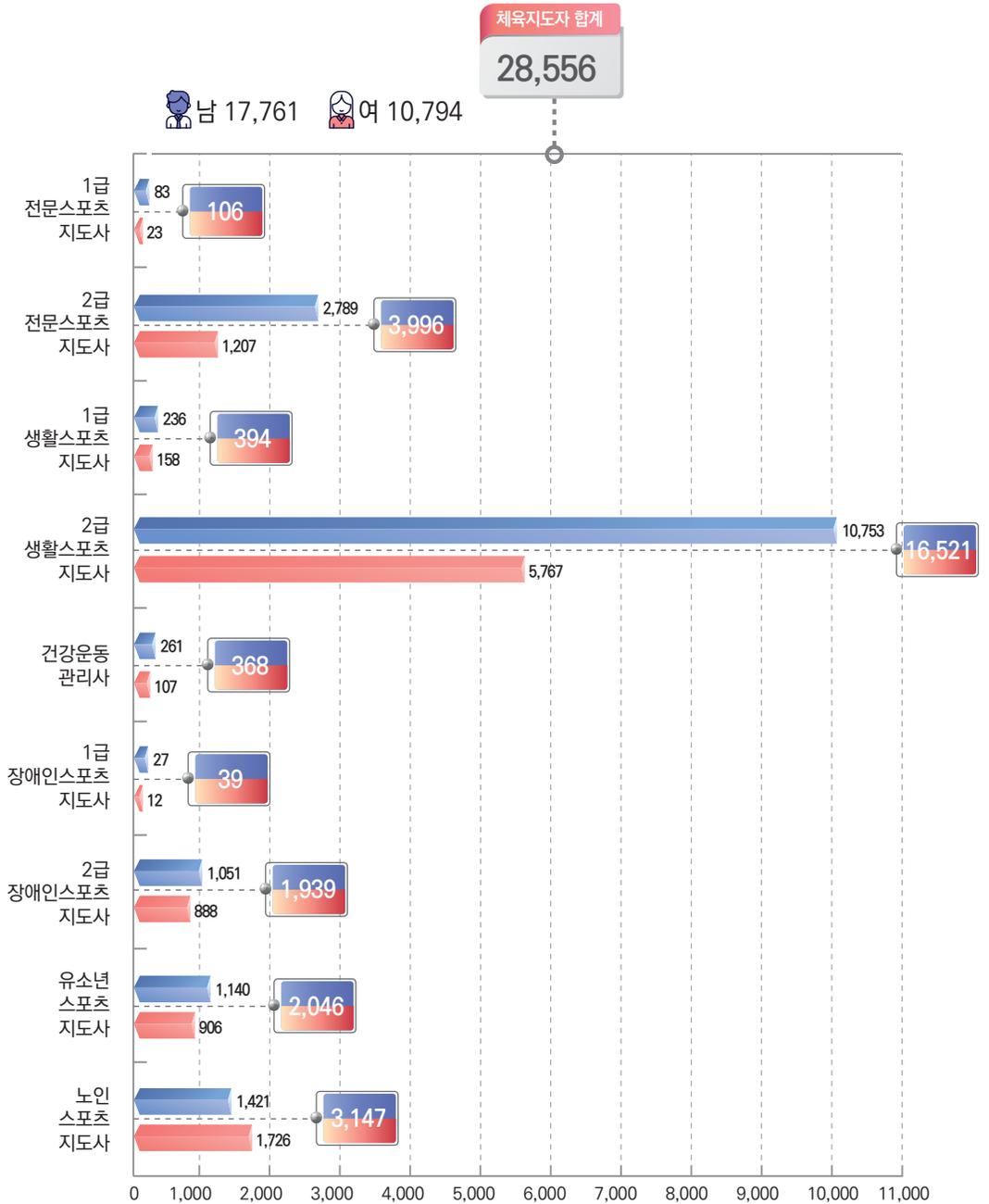
### 04. 심판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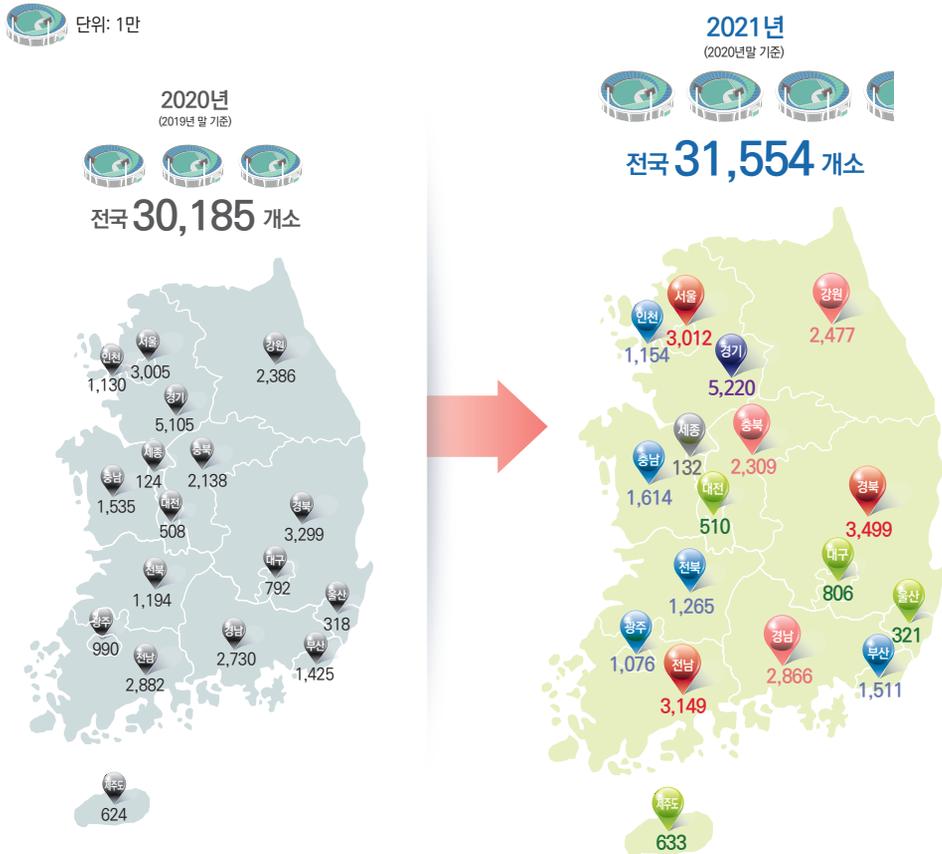
## 05. 체육지도자 양성

1.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2021년) (단위: 명)



# 01. 공공체육시설 현황

## 1.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2020~2021년)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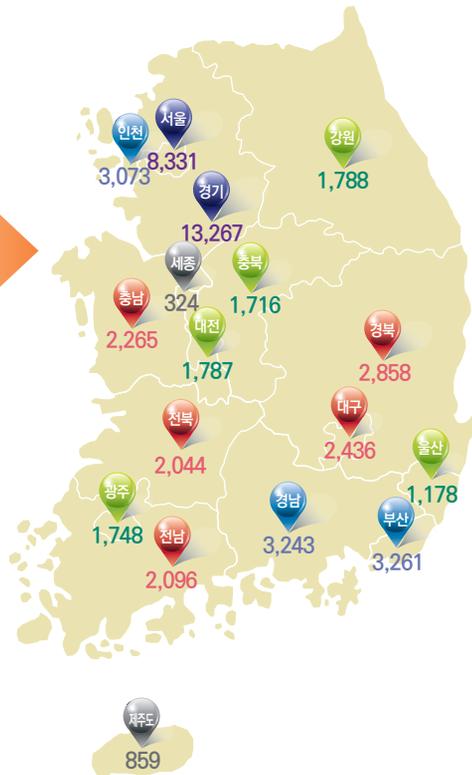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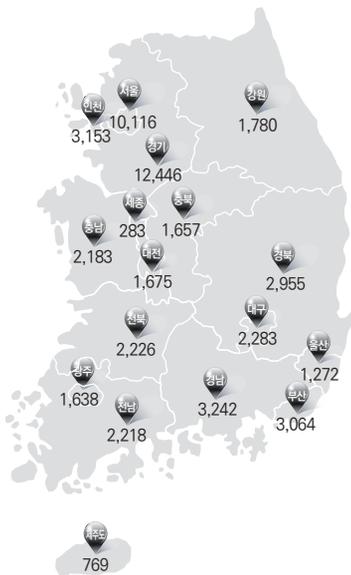


## 2. 공공체육시설 지원(2021년)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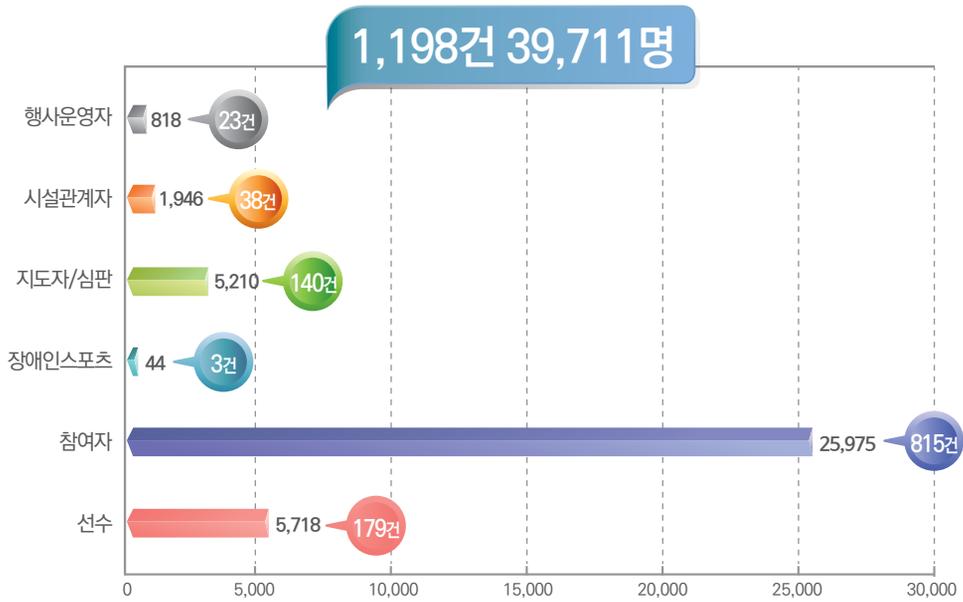
## 02.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1. 시도별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2020-2021년) .....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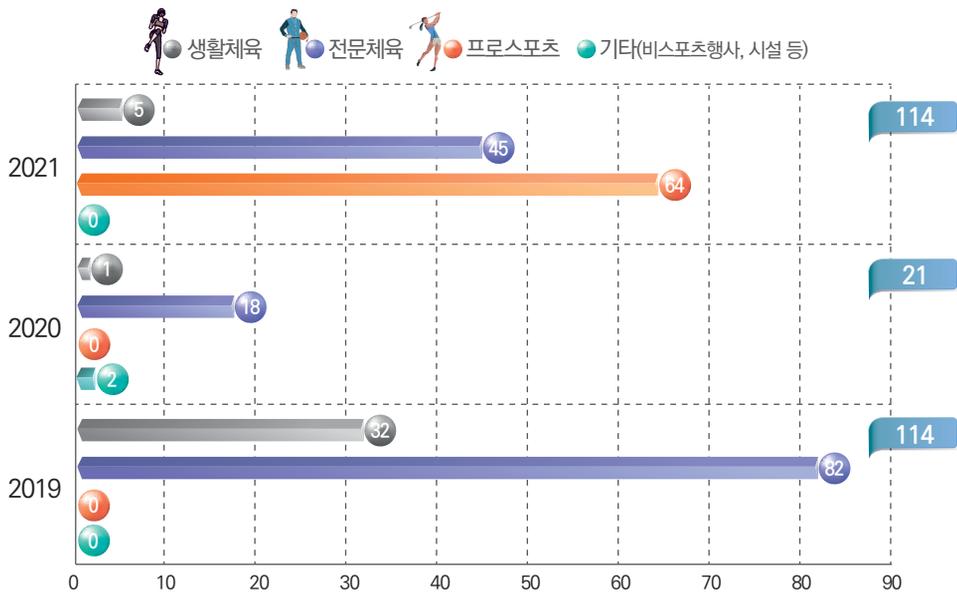


### 03. 스포츠안전교육

1. 스포츠안전교육 현황(2021년) ..... (단위: 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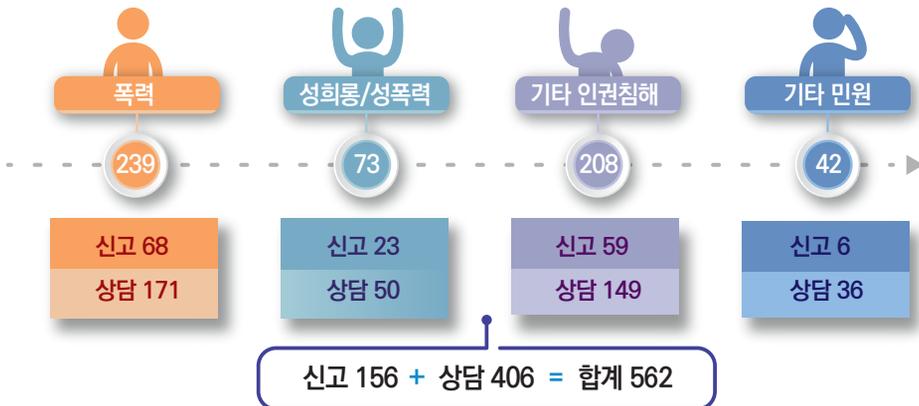


2.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점검 서비스 현황(2019~2021년) ..... (단위: 건)



## 01. 2021년 스포츠계 윤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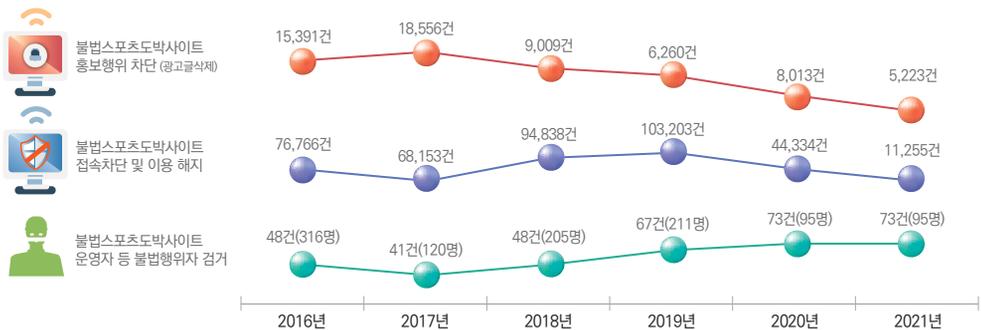
1.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 및 비리 관련 신고·접수 현황(2021년) ..... (단위: 건)



2. 스포츠윤리센터 비리 관련 신고 현황(2021년) ..... (단위: 건)



3. 불법스포츠도박신고센터 운영성과(2016~2021년) ..... (단위: 건, 명)





# 2021

## Sport White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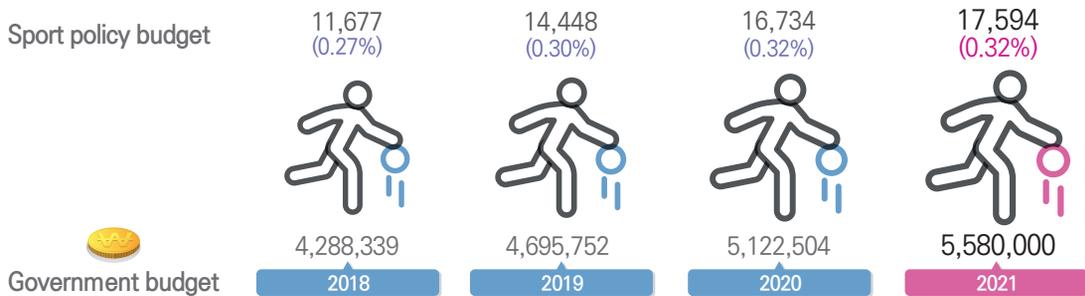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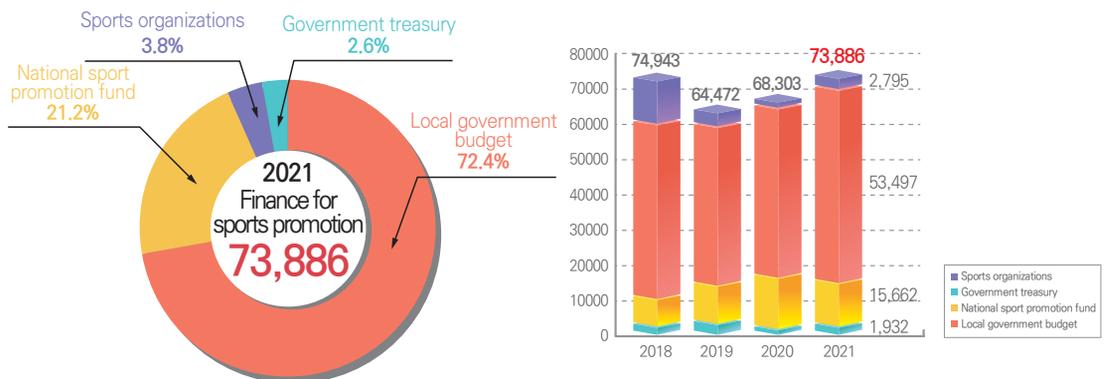
## Sport policy budget against government budget

» 2021 Sport White Paper Infograph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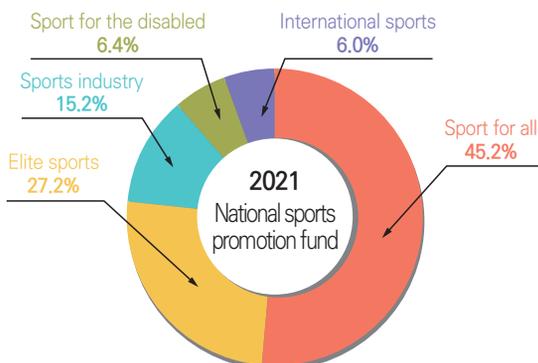
### 01. Sport policy budget against government budget(2018-2021) (Unit: KRW 100 million)



### 02. Finance for sports promotion(2018-2021) (Unit: KRW 100 million)



### 03.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support(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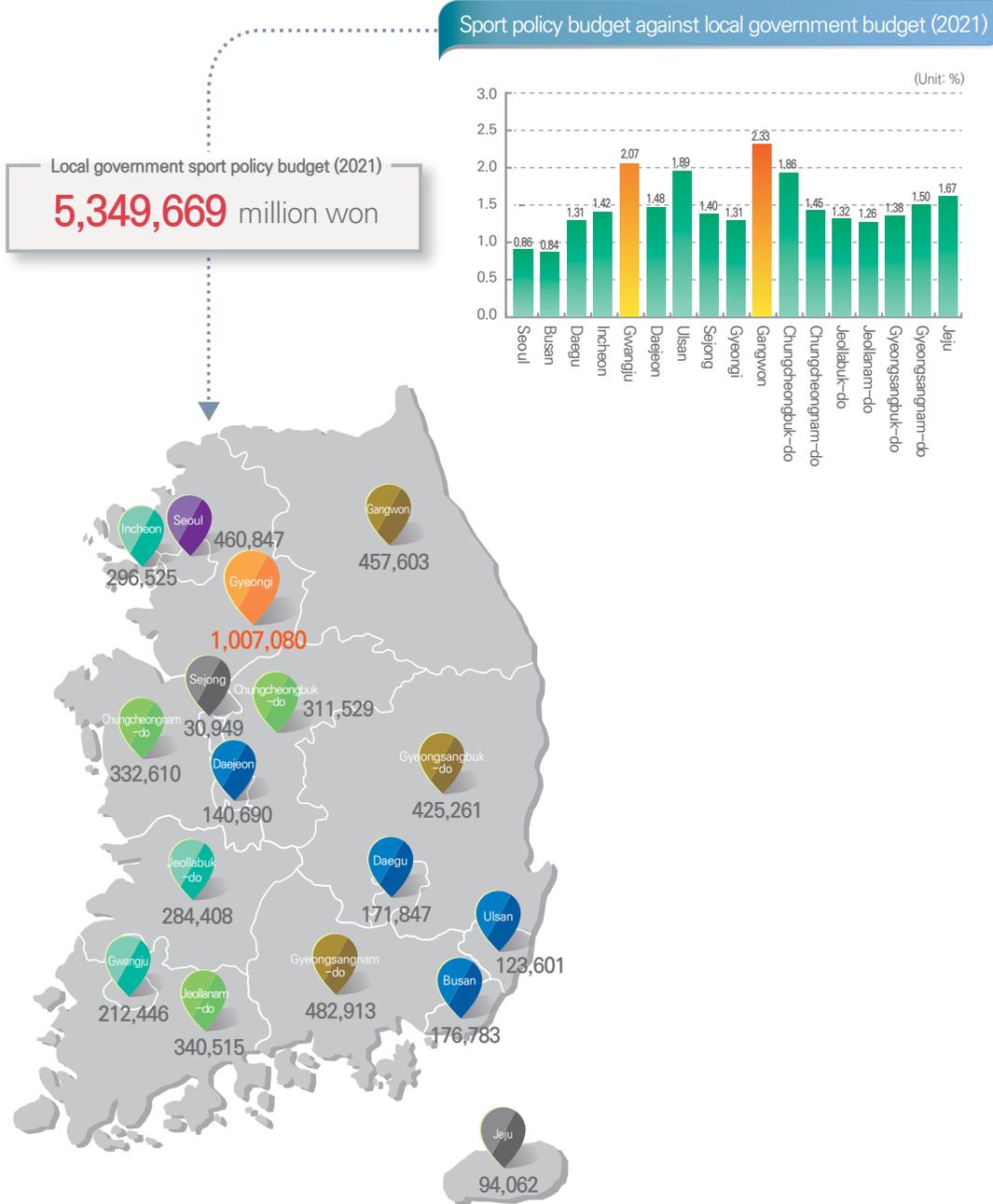


Total **1,527,100** million won

Elite sports	383,800 million won
Sport for all	787,100 million won
International sports	81,500 million won
Sports industry	184,500 million won
Sport for the disabled	90,200 million 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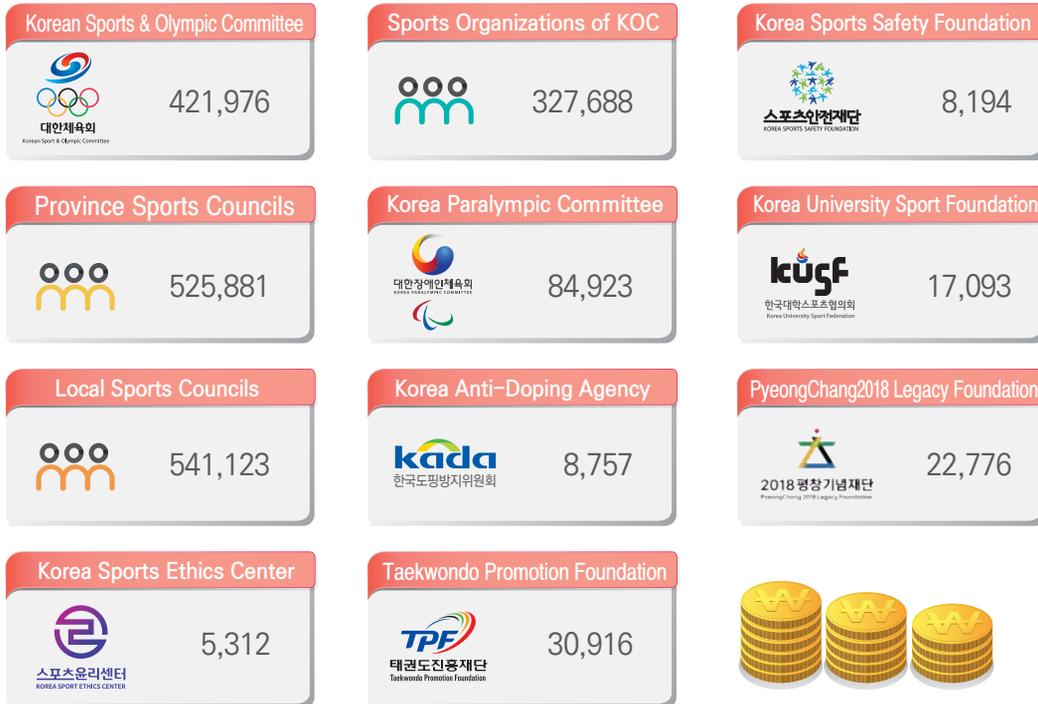
## 04. Local government sport policy budget(2021)

(Un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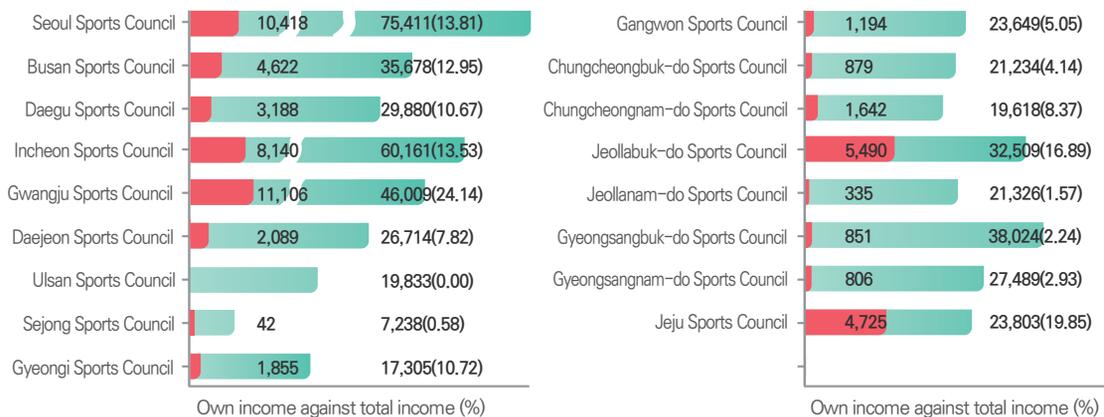
## 05. Budget of sports organizations(2021)

(Unit: KRW 1 m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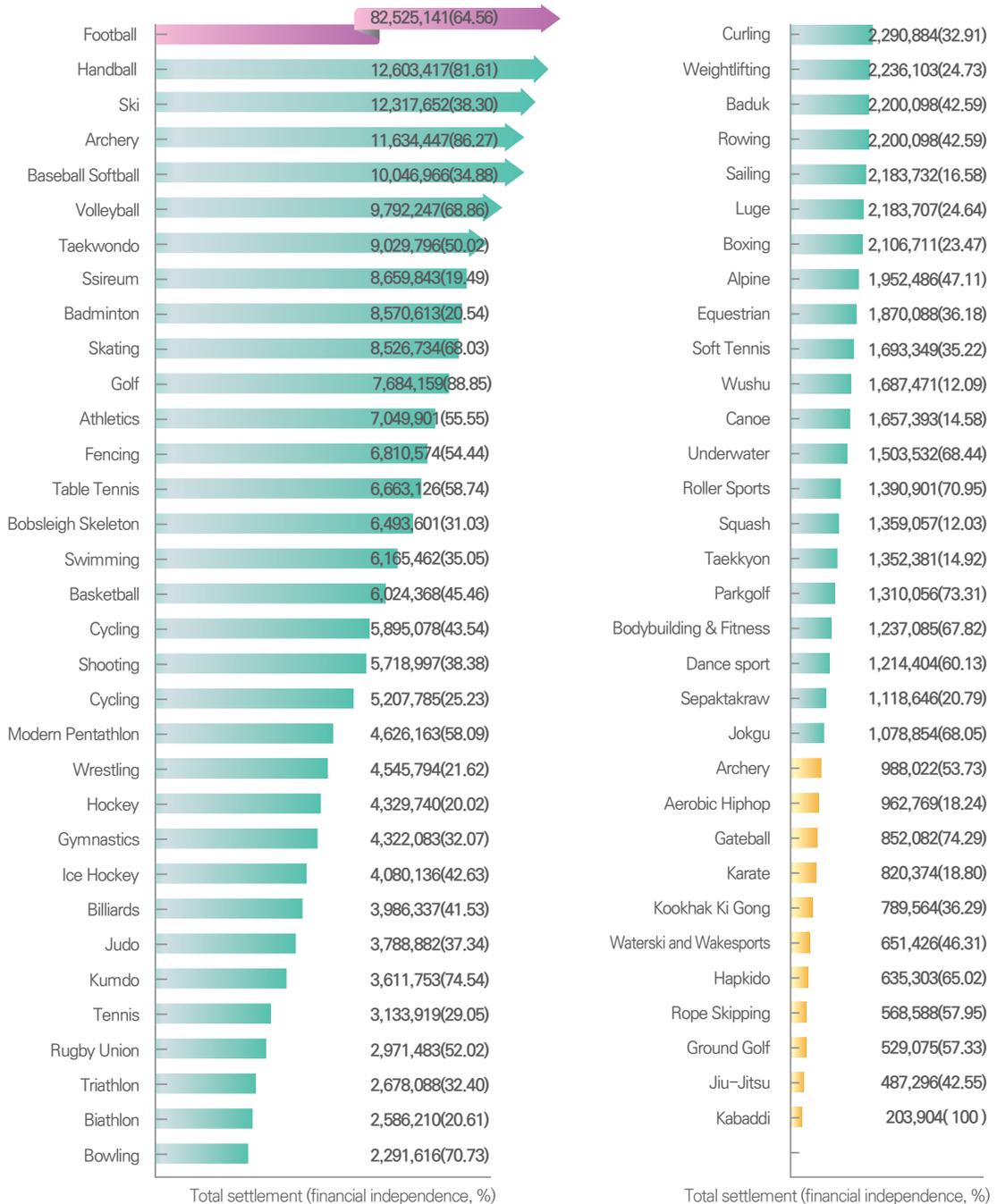


## 06. Financial independence of province sport council & sports organizations(2021)

1. Financial independence of province sport council(2021) (Unit: KRW 1 milli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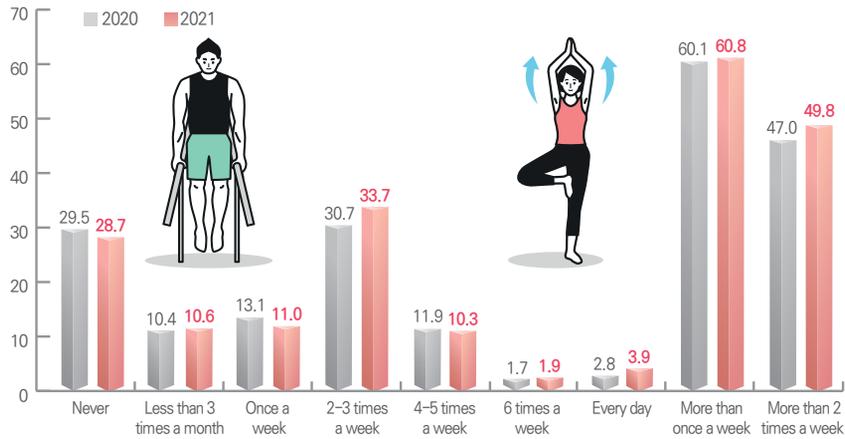


## 2. Financial independence of sports organizations(2021) ..... (Unit: KRW 1 thousan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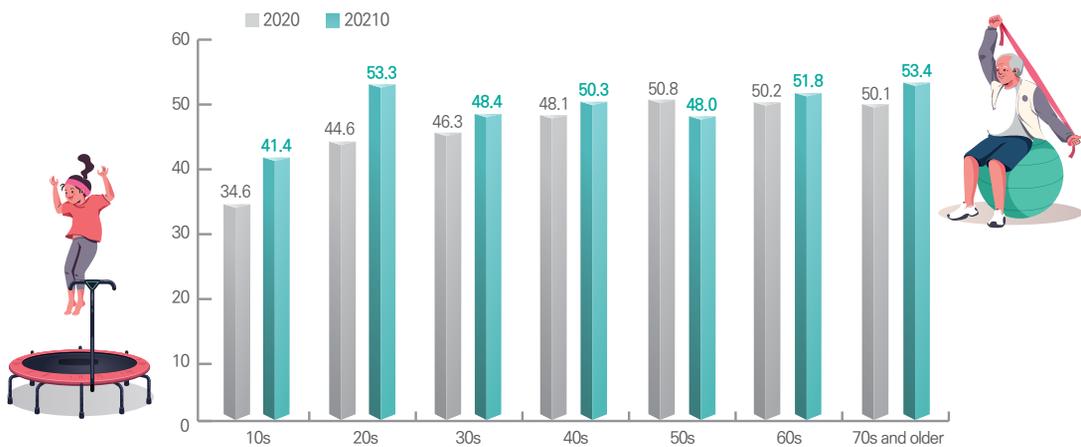


## 01. Participation in sport for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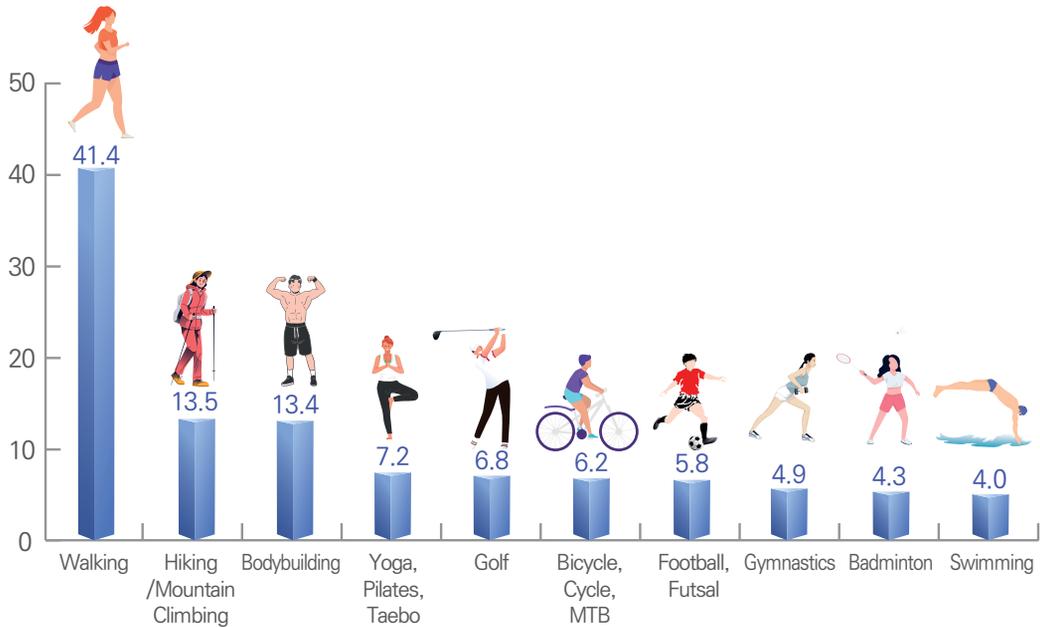
1. Participation rate of regular sport activity(2020~2021) ..... (Un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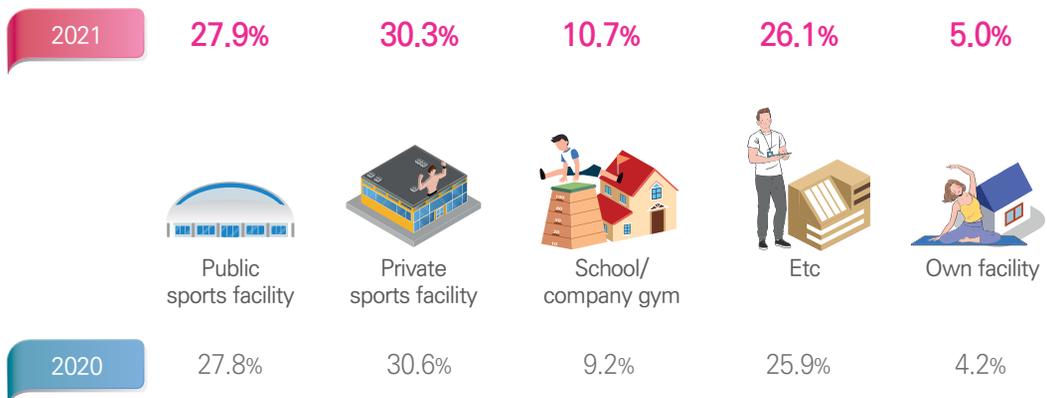
2. Sports participation by age(more than 2 times a week)(2020~2021) ..... (Unit: %)



### 3. Types of sports participated(2021) ..... (Unit: %)



### 4. Sports facilities mainly participated(2020-2021) ..... (Unit: %)



# 2

## Sport for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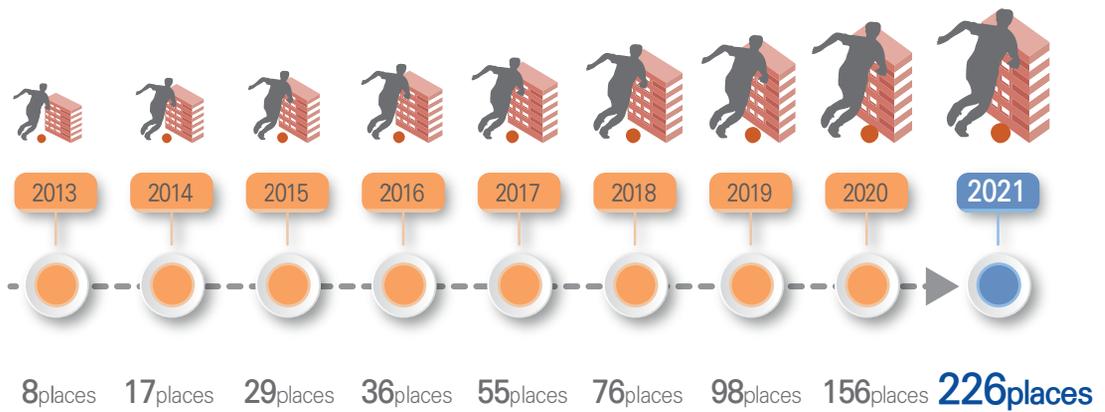
» 2021 Sport White Paper Infographics

5. Average monthly Sport Activity expenses(2019~2021) ..... (Unit: KRW)



## 02. Sports club

1. The status of support for sports clubs(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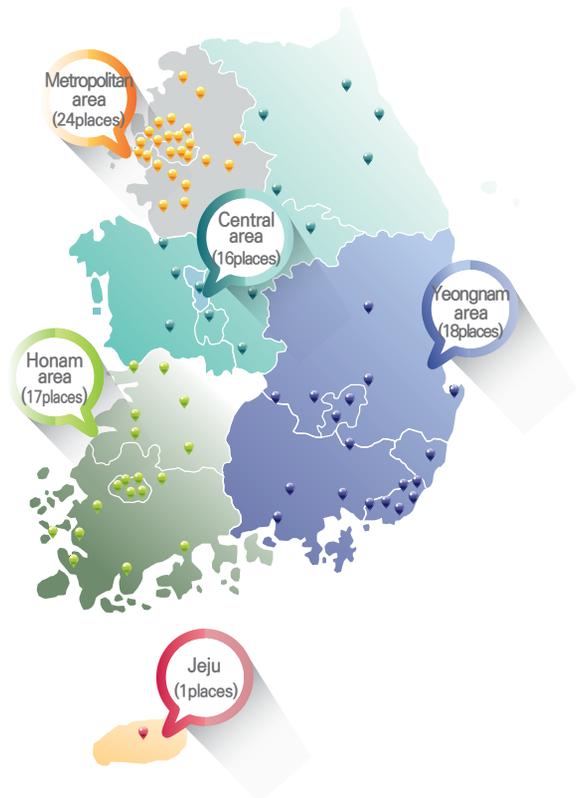


### 03. National Fitness Award 100

1. Annual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National Fitness Award 100(201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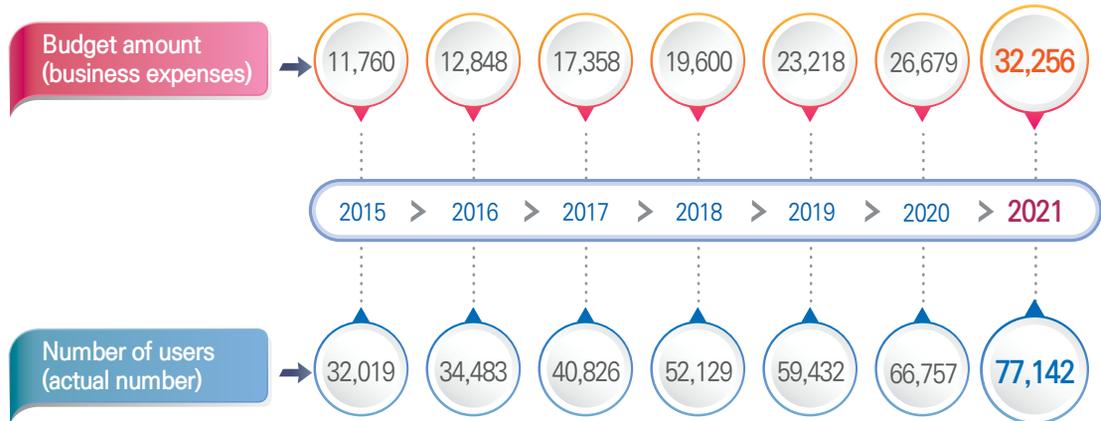


2. Number of the National Fitness Award 100 center(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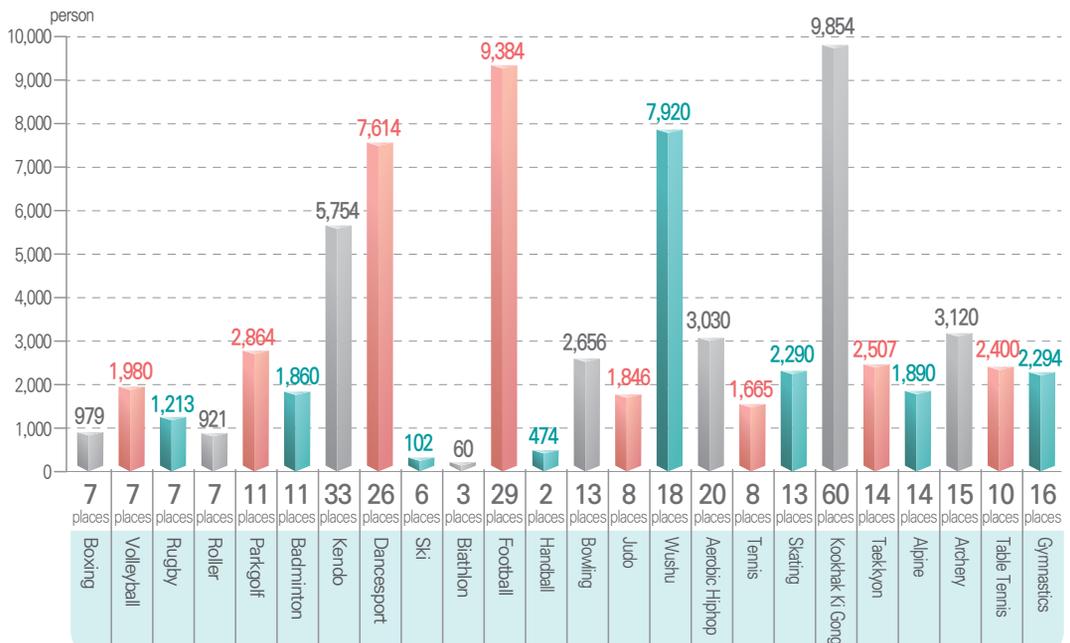


### 04. Support for sports-disadvantaged group

1. The status of 'Sports Voucher' support(2015~2021) ..... (Unit: KRW,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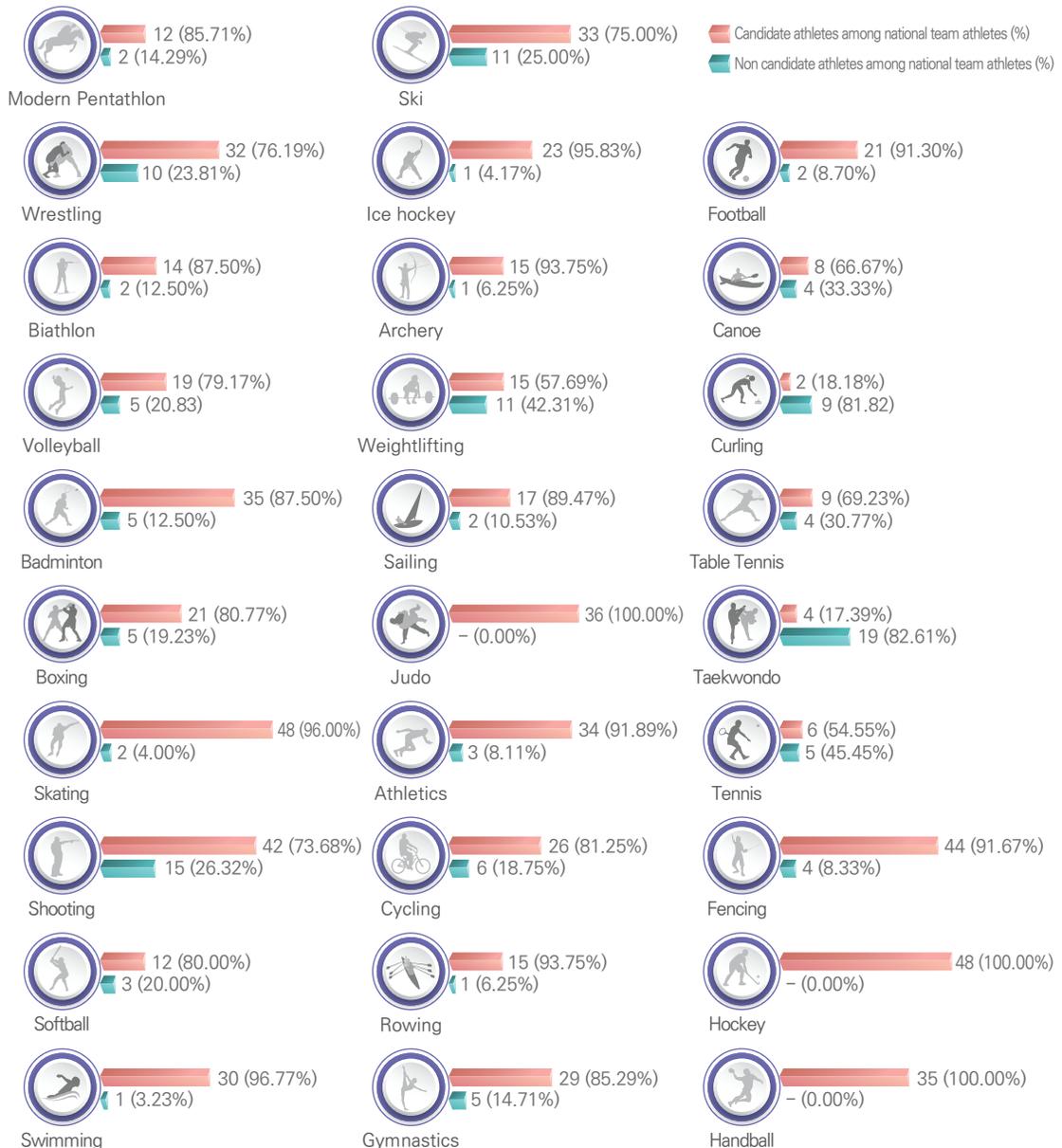


2. The status of 'Happiness Sharing Sports Class'(2021) ..... (Unit: places, person)



# 01. The current status of athletes by sports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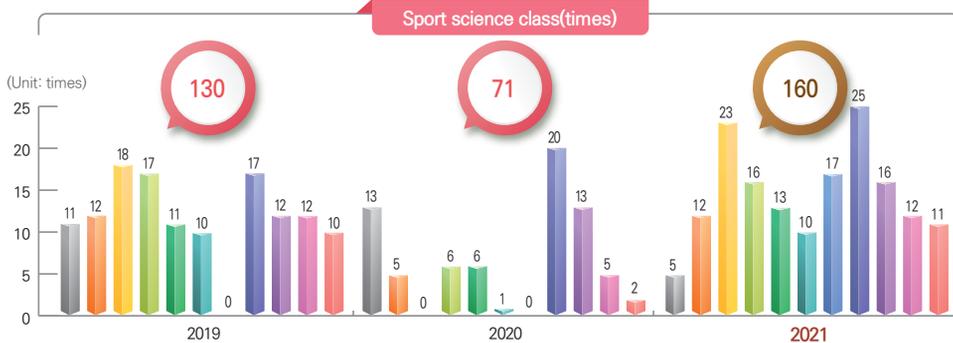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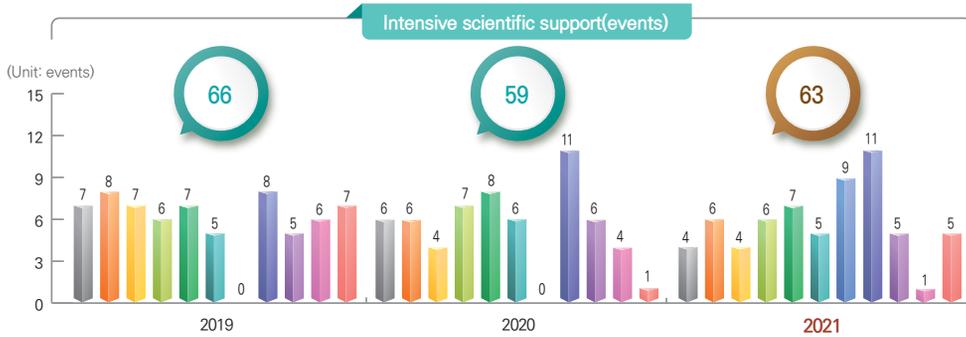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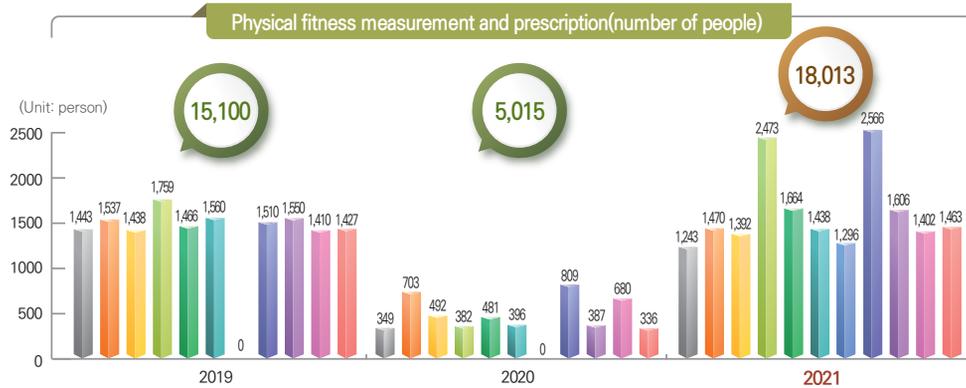
1. Proportion of candidate athletes among national team athletes(2021) ..... (Unit: pers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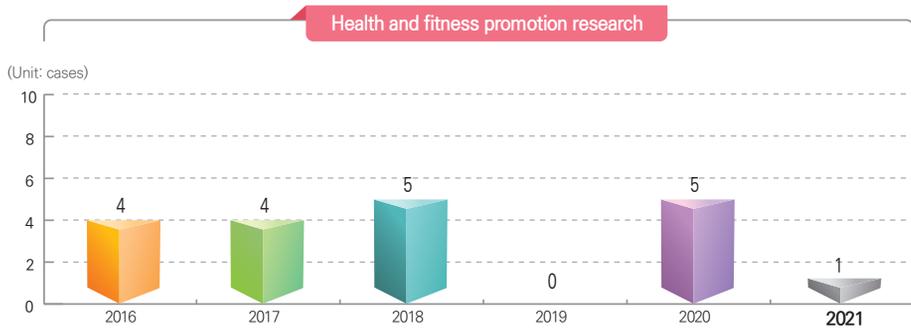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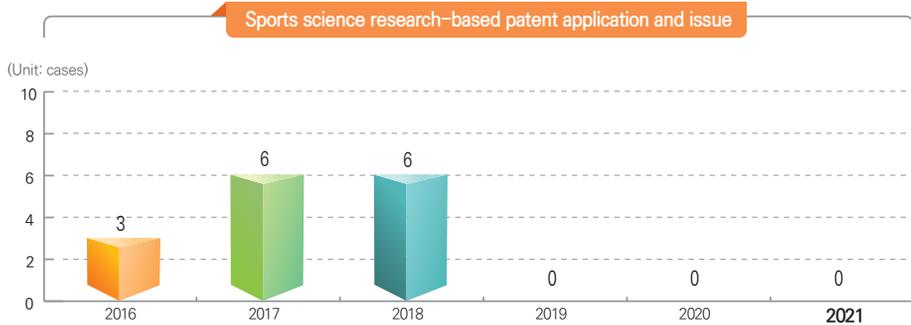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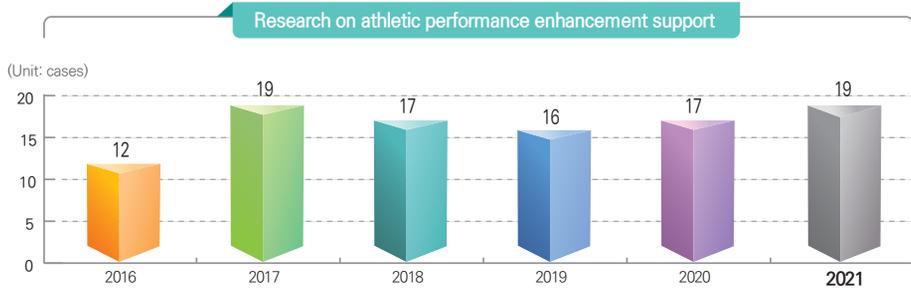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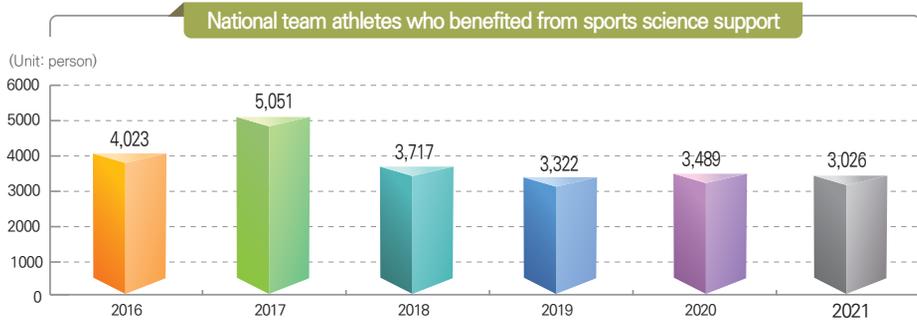
※ Remark: The following sports do not have a substitute training system: Basketball, Equestrian, Golf, Karate, Rugby, Skateboarding, Alpine, Triathlon, Bobsleigh/Skeleton, Luge, Bowling, Kabaddi, Paragliding, Sepaktakraw, Tennis, Squash, Wushu

## 02. Support for elite sport athletes' performance

1. The status of regional Sports Science Center(2019~2021) ..... (Unit: person, events,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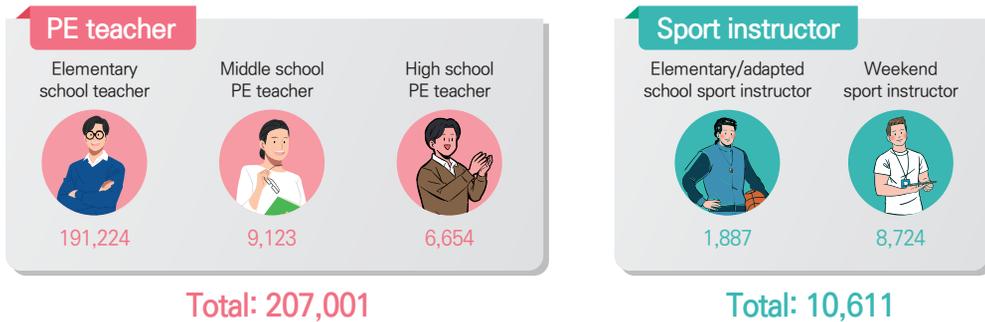


## 2. National team athletes field-oriented sports science support(2016-2021) (Unit: person, c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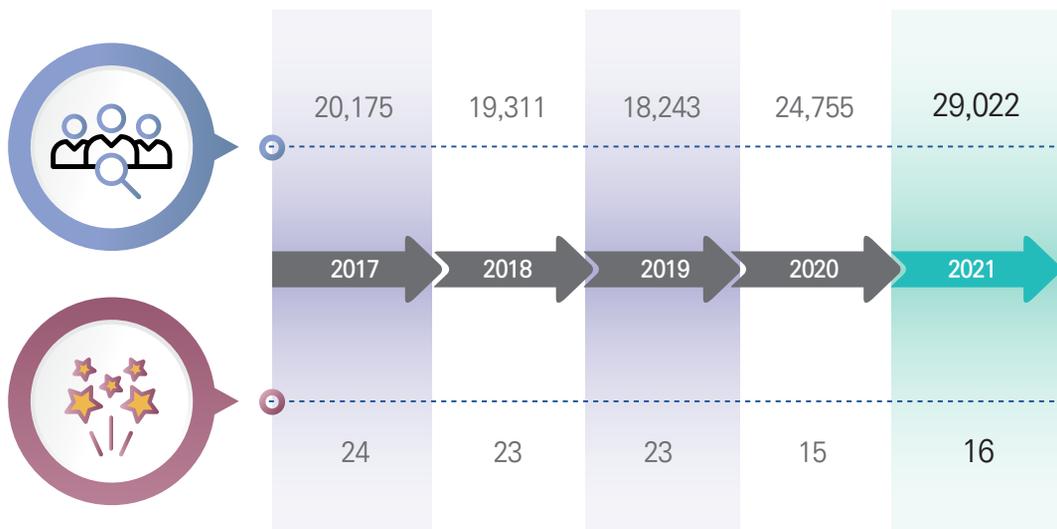
## 01. The number of PE and school sport educator

1. The number of PE and school sport educator(2021) ..... (Unit: person)



## 02. National school sports club festival

1. National school sports club festival(2017~2021) ..... (Unit: events,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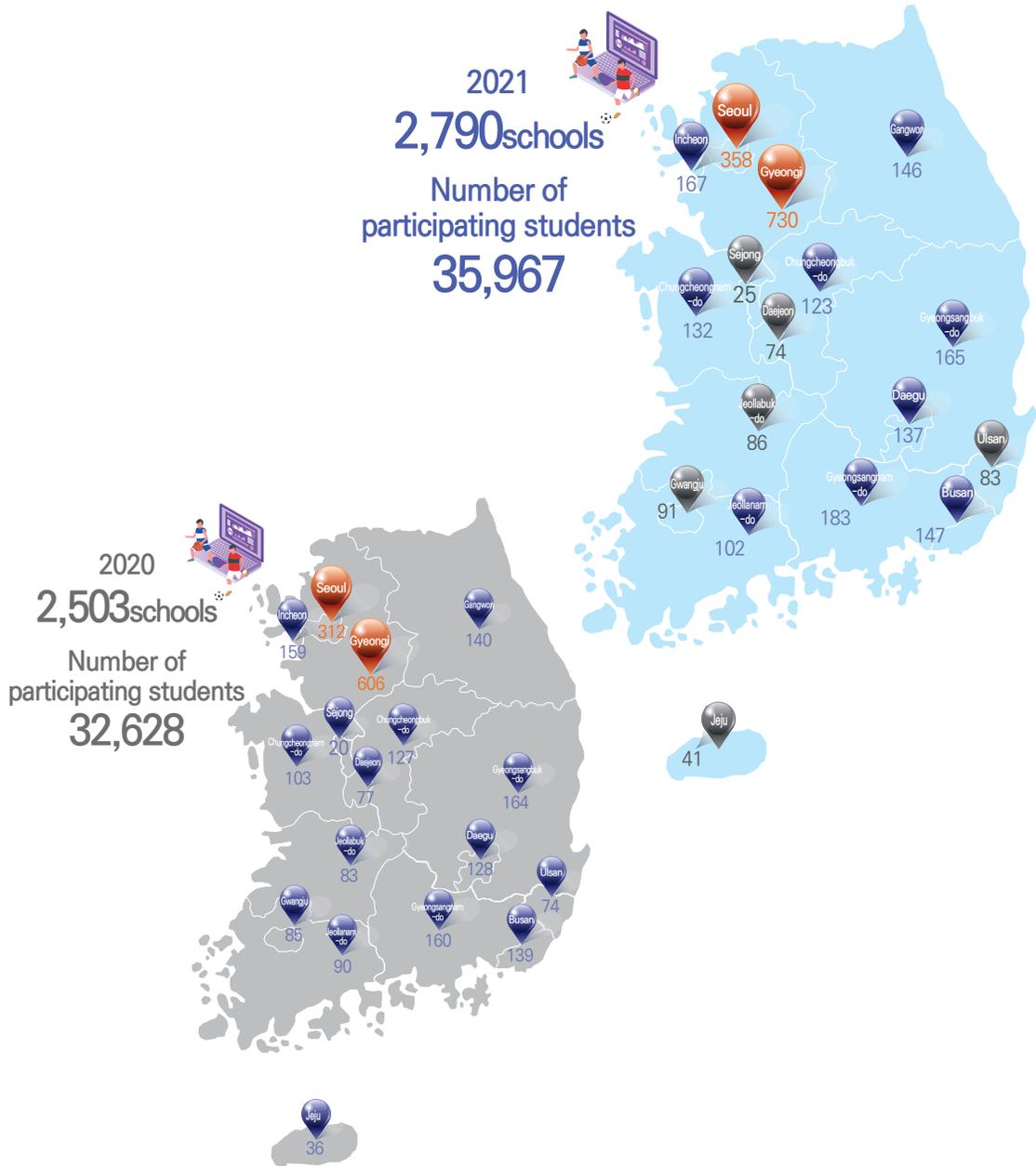
## 03. The status of school sports team

1. School sports team(2017-2021) ..... (Unit: person, team,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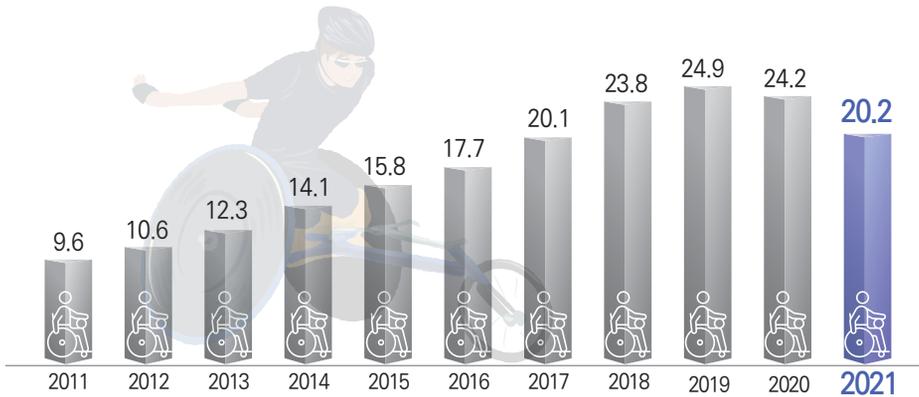
## 04. e-School

1. The number of school operating e-School by province(2020~2021) ..... (Unit: number of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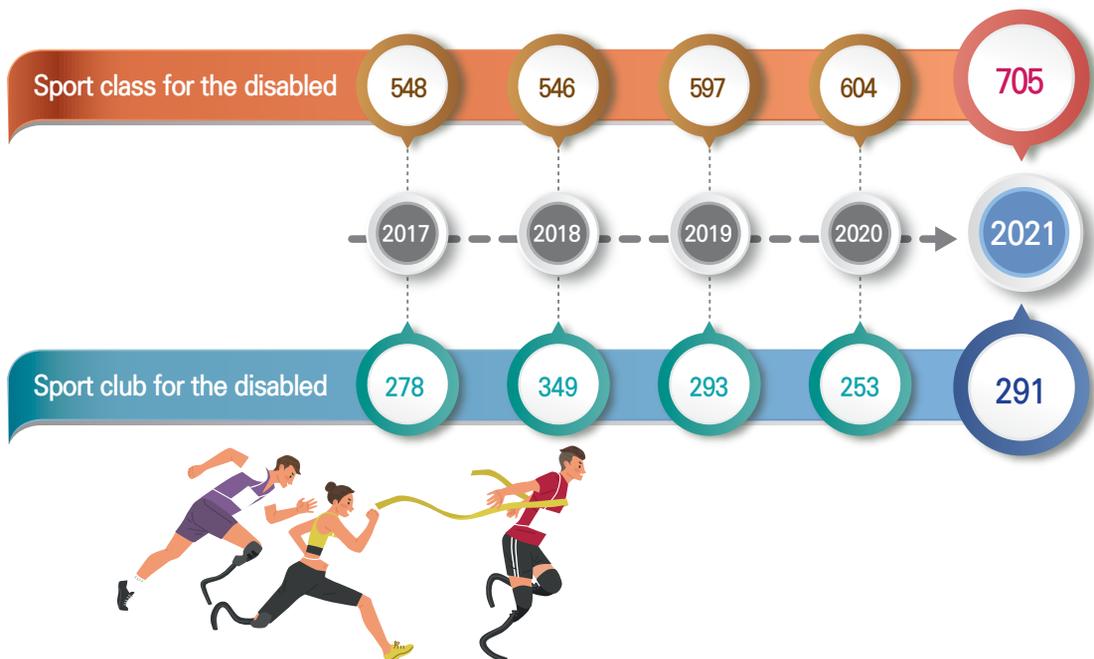


## 01. Sports for all for the disabled

1. Participation rate in sports for the disabled(2011-2021) ..... (Unit: %)



2. Sport classes and clubs for the disabled(2017-2021) ..... (Unit: number)



# 5

## Sport for the Disabled

» 2021 Sport White Paper Infograph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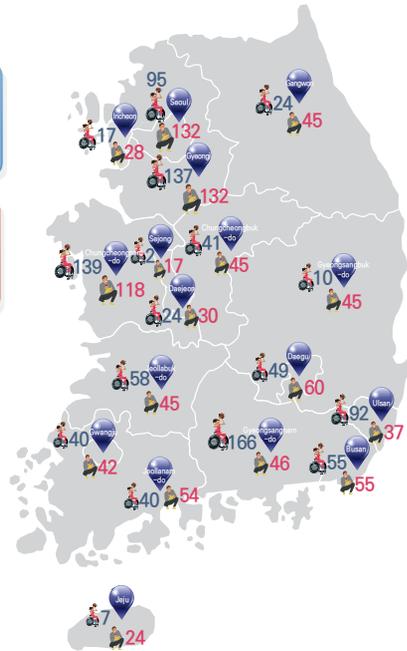
3. The number of sport club and lifelong sports coach for the disabled(2021) ..... (Unit: place, person)



The number of sport club for the disabled **996**



The number of lifelong sport coach for the disabled **955**



## 02. Elite sport for the disabled

1. Registered disabled athletes in Province(2021) ..... (Unit: person)

Registered Athletes in Province(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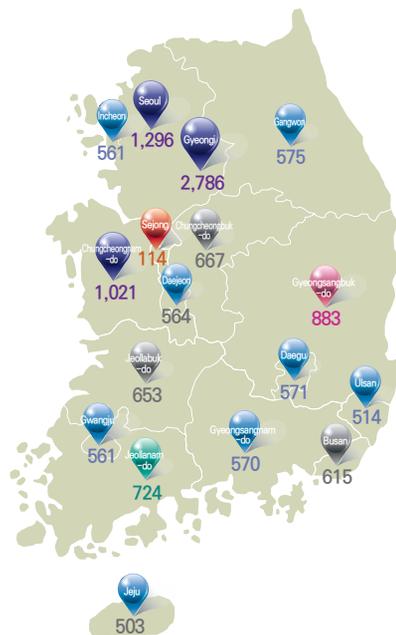
Total **13,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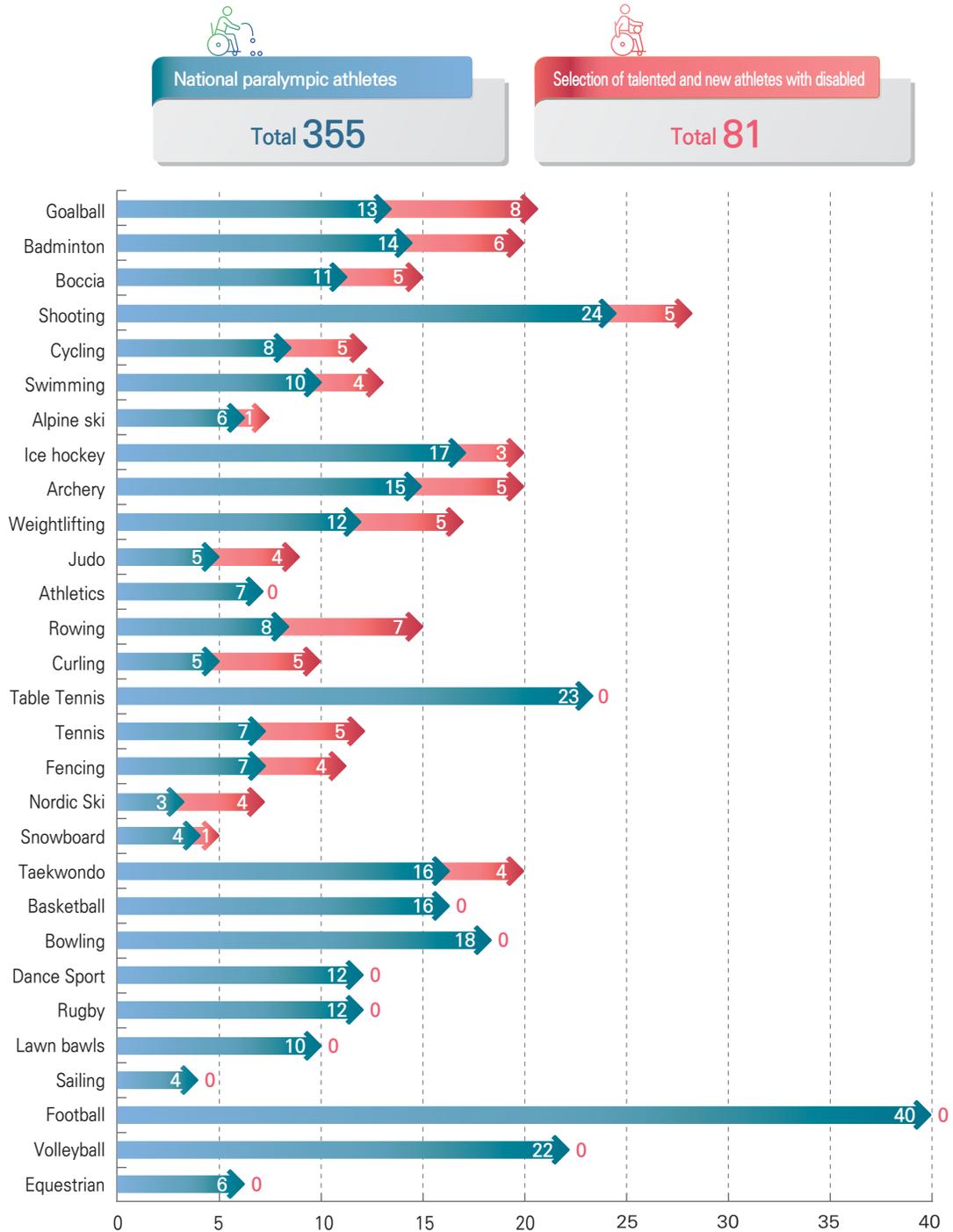
Female **3,347**



Male **9,831**



2. Talented student athletes with disabled, New athletes and national paralympic athletes(2021) ..... (Unit: person)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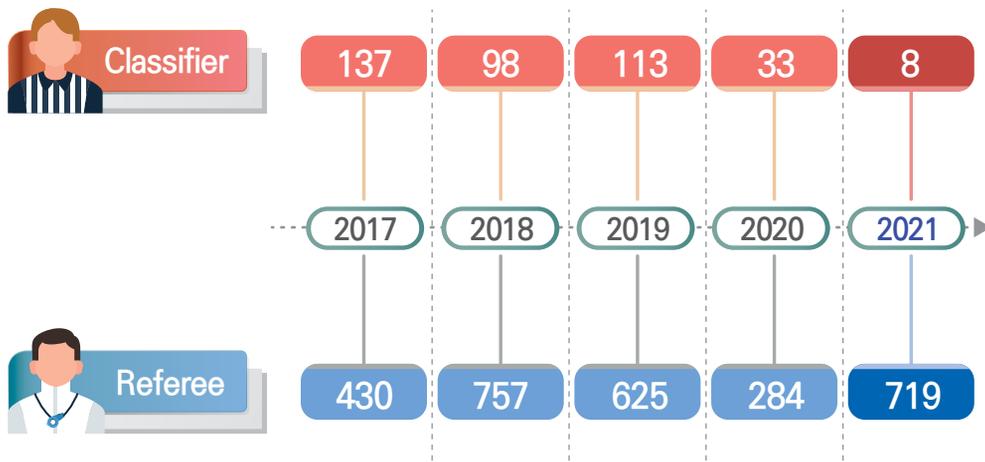
## Sport for the Disabled

» 2021 Sport White Paper Infographics

3. Sports clubs for the disabled in workplace(2021) ..... (Unit: number, person)



4. The number of experts of sports for disabled(Classifier, Referee)(2017~2021) ..... (Unit: person)



## 01. International sport compe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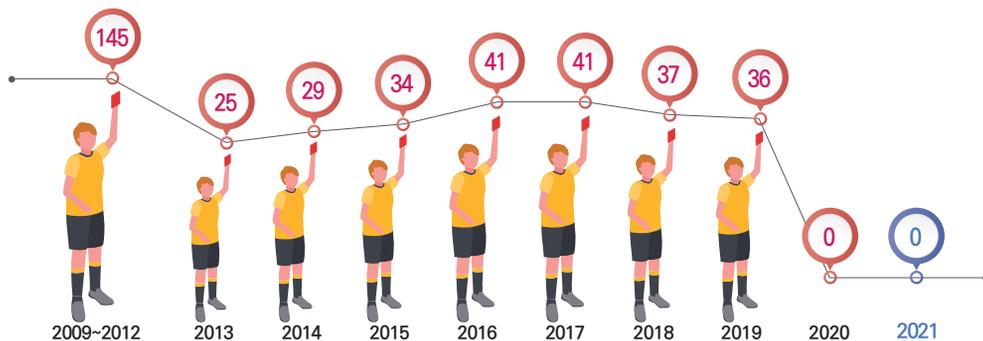
1. International agreement on sports exchange(2021) ..... (Unit: the number of agreement)



2. Status of Korean executives at international sports organizations(2011~2021) ..... (Unit: person)



3. International referee acquisition status by year(38 events) ..... (Unit: person)



## 02. International competition performance

1. Ranking of South Korea at the Olympics Summer Games(2004~2020) ..... (Unit: ra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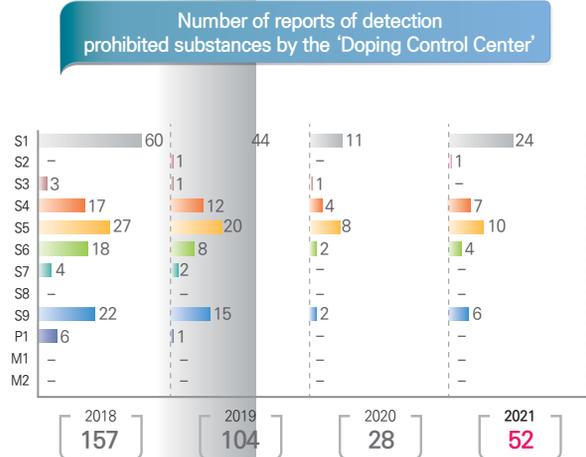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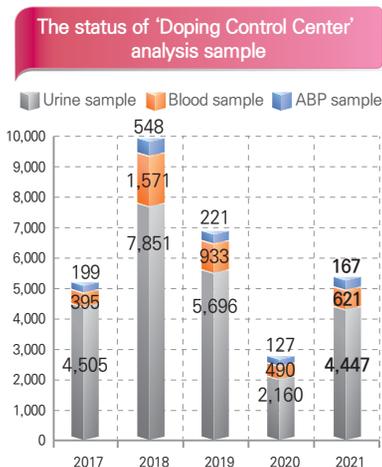


2. Ranking of South Korea at the Olympic Winter Games(2006~2018) ..... (Unit: ra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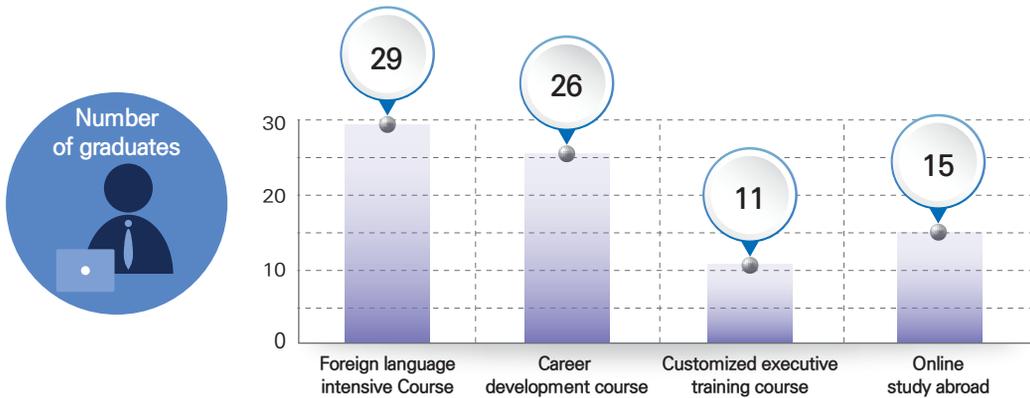
## 03. Anti-Doping activities

1. The status of 'Doping Control Center' analysis sample(2017~2021) ..... (unit: c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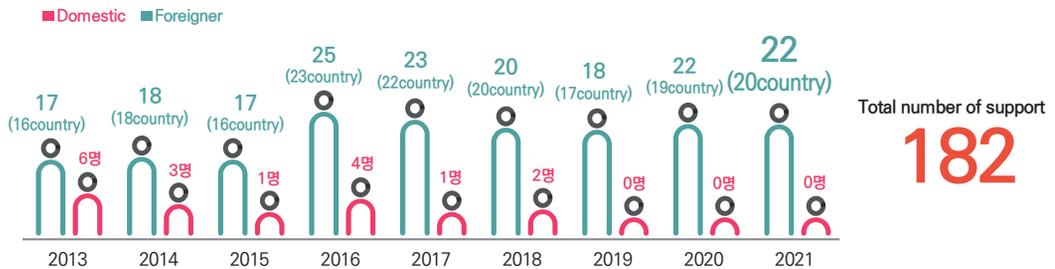


## 04. Education for international sports profession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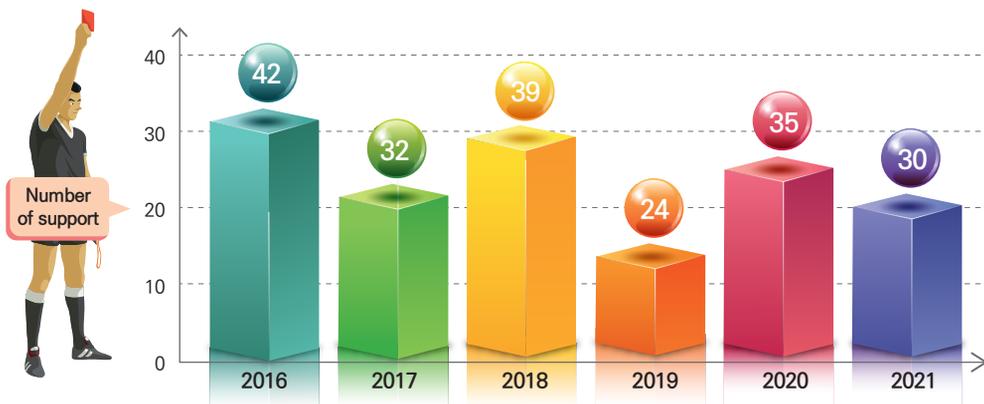
1. Support for developing international sports talent(2021) ..... (Unit: person)



2. Performance of sports administrator education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2013~2021) ..... (Unit: country,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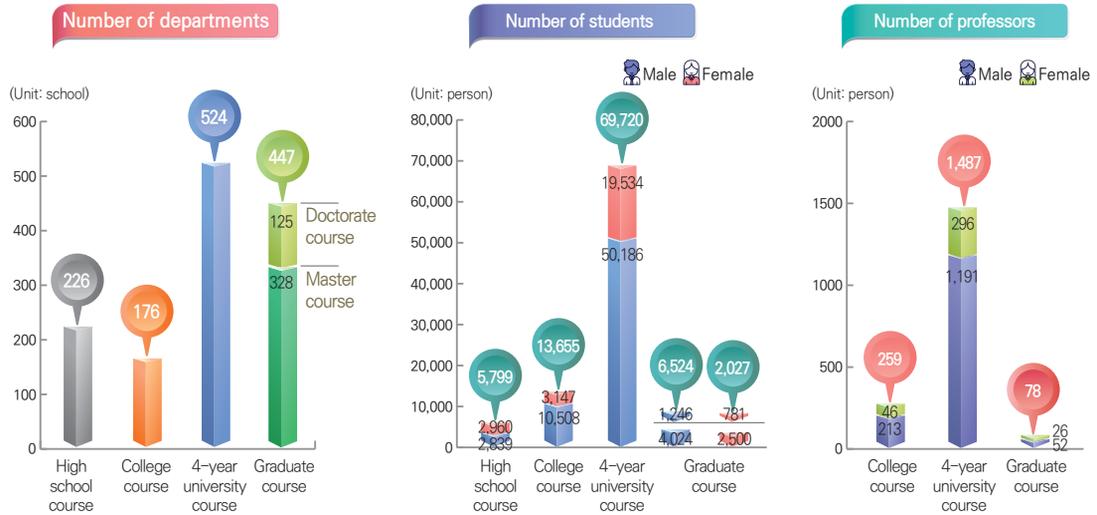


3. Support for education program of developing referee competency(2016~2021) ..... (Unit: person)



## 01. Number of departments, students, and professors at sports related high schools,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2021)

(Unit: school,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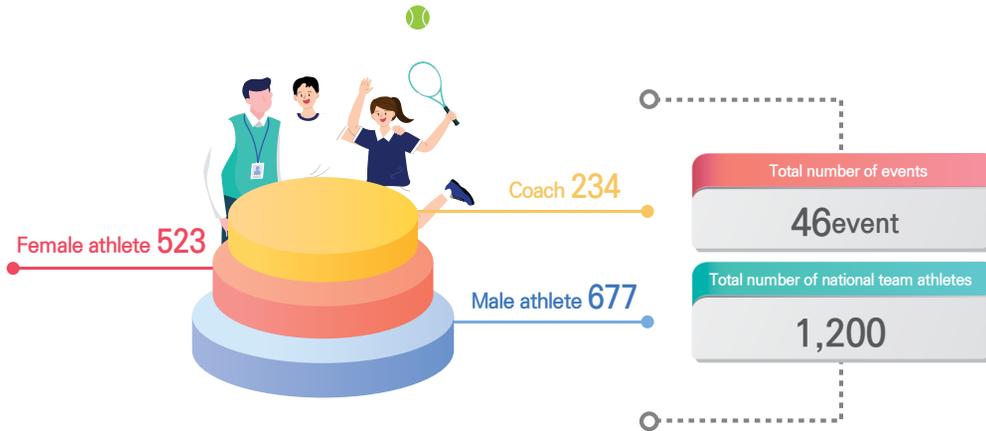
## 02. Registered athletes

### 1. Number of registered players by team(2018-2021) (unit: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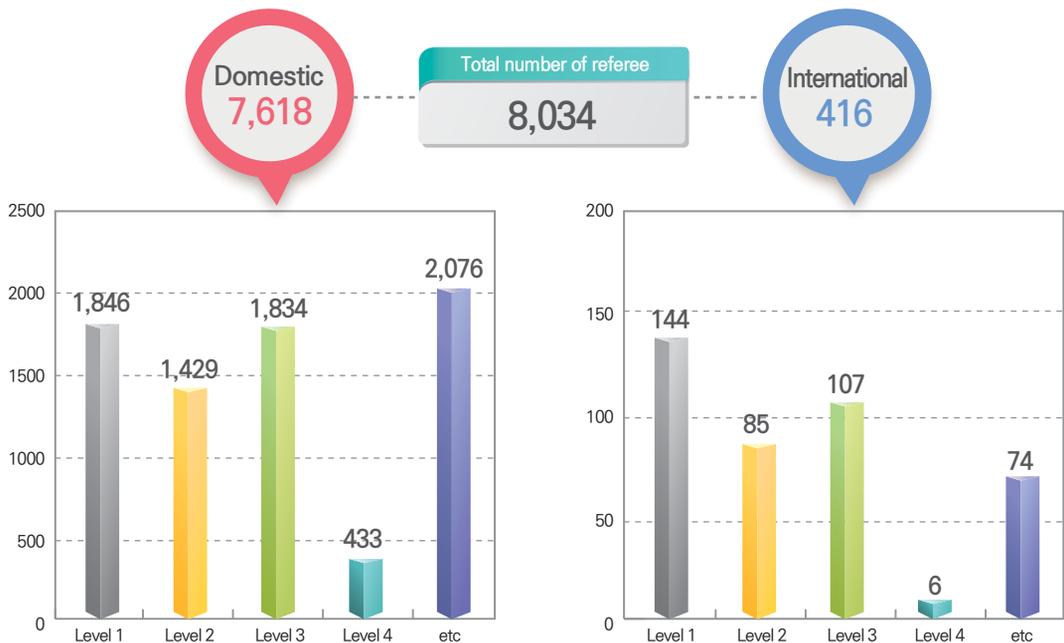
## 03. The number of national team athlete and coach

1. Status of national team athletes and coaches(2021) ..... (unit: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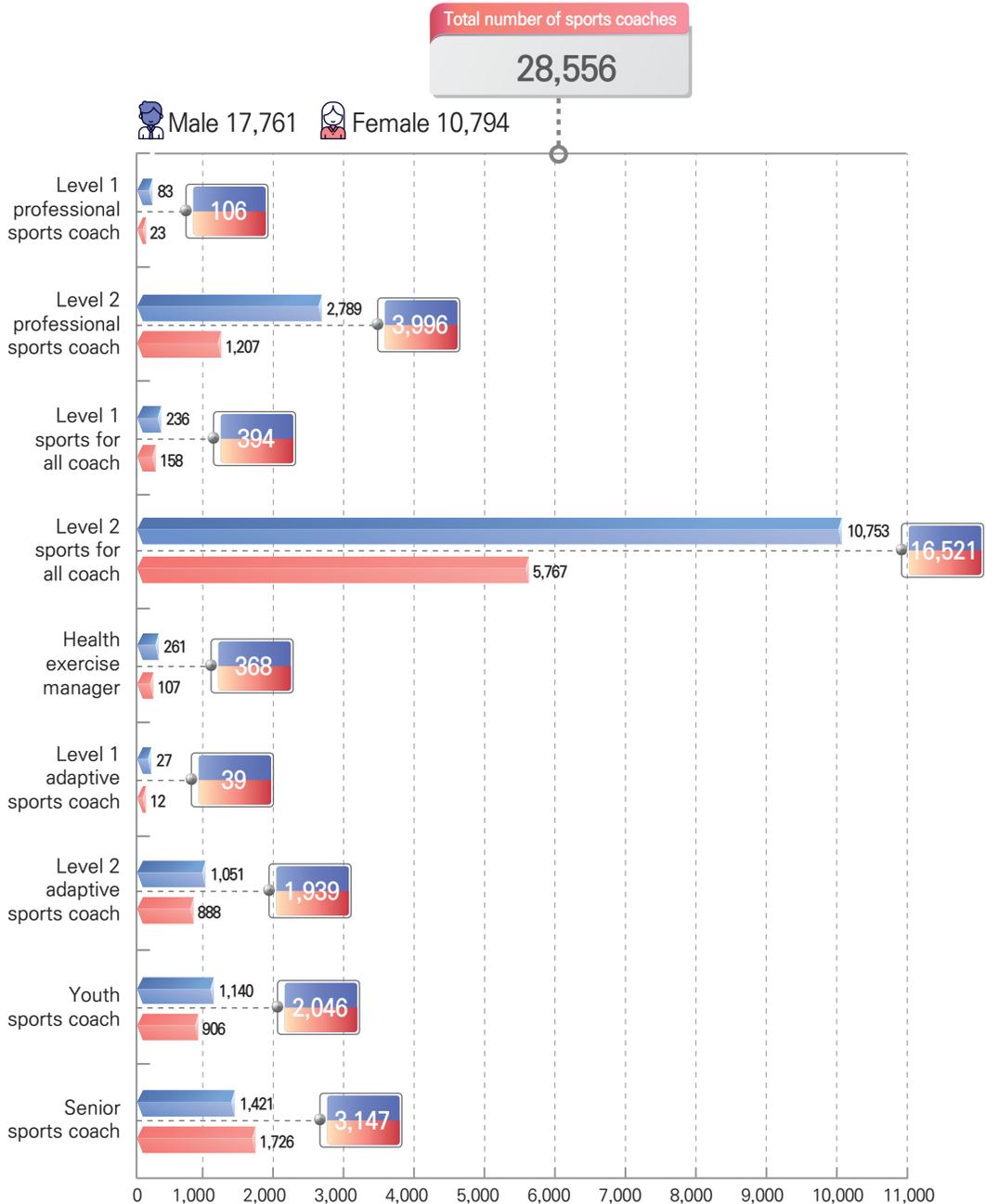
## 04. The number of referee

(unit: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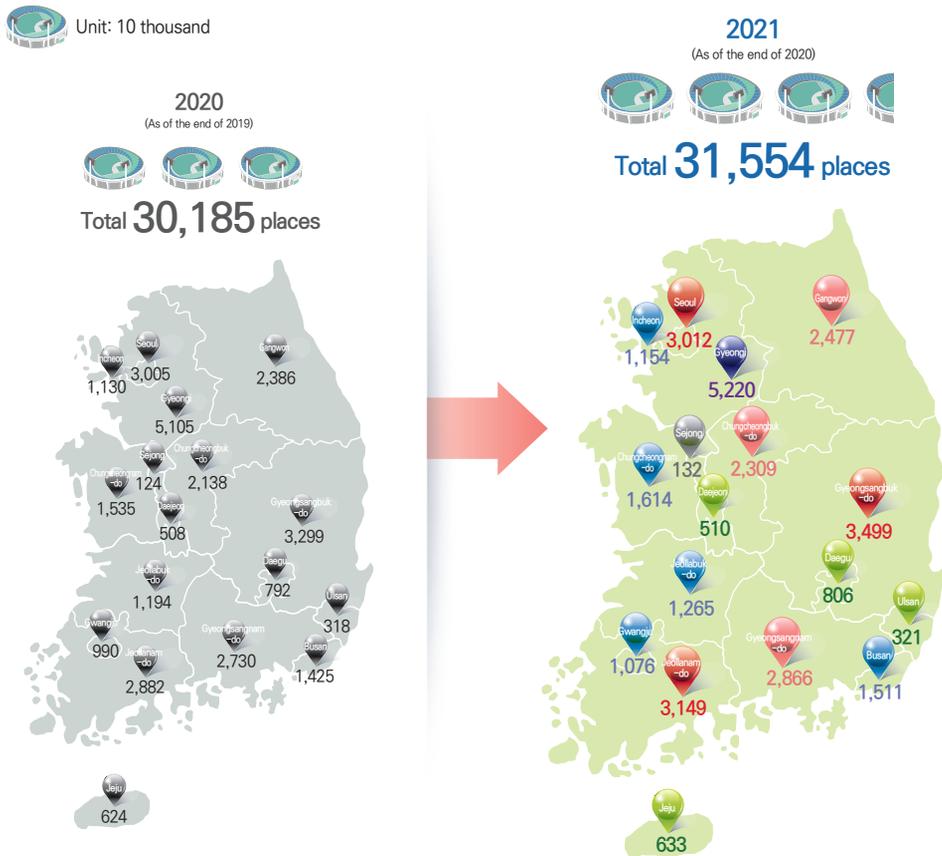
## 05. Sports coaches

1. Sports coaches(2021) ..... (unit: person)



## 01. Public sports facilities

1. The number of public sports facility by province(2020~2021) ..... (Unit: number of pl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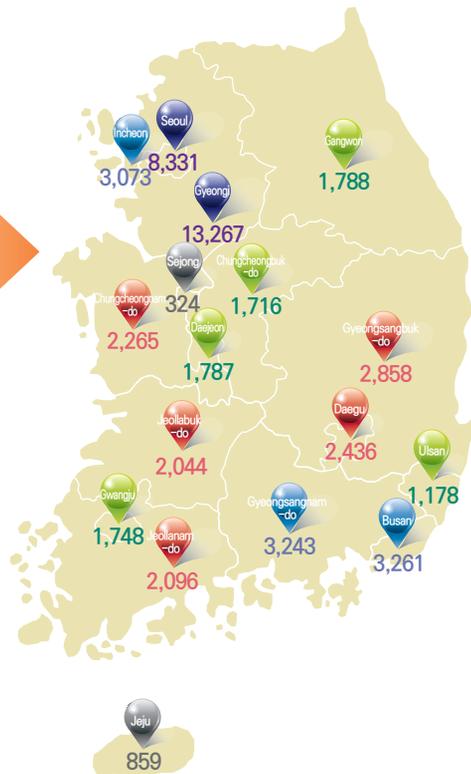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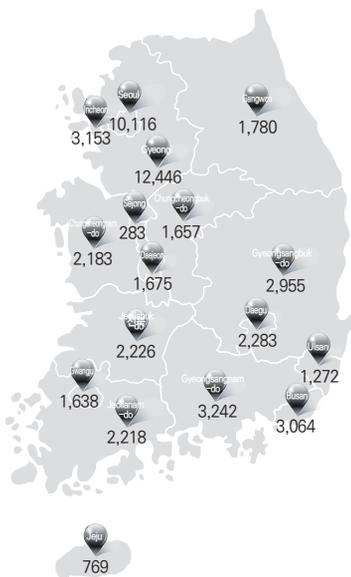
2. Support for public sports facilities(2021) ..... (unit: number of places)



## 02. Status of registered and reported sports facility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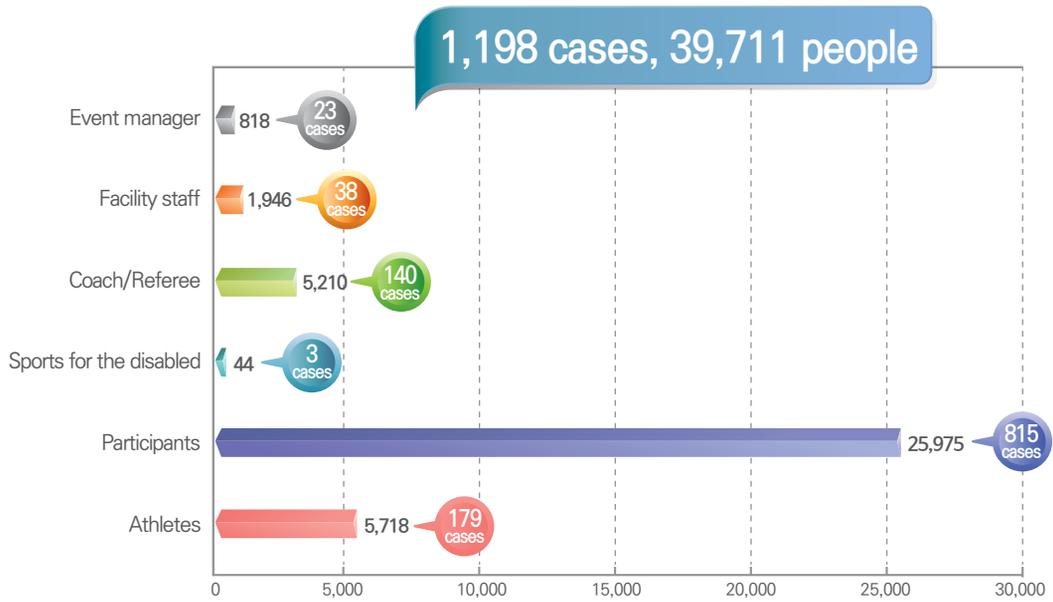
1. Status of registered and reported sports facility business(2020-2021) ..... (Unit: number of places)

 Unit: 10 thous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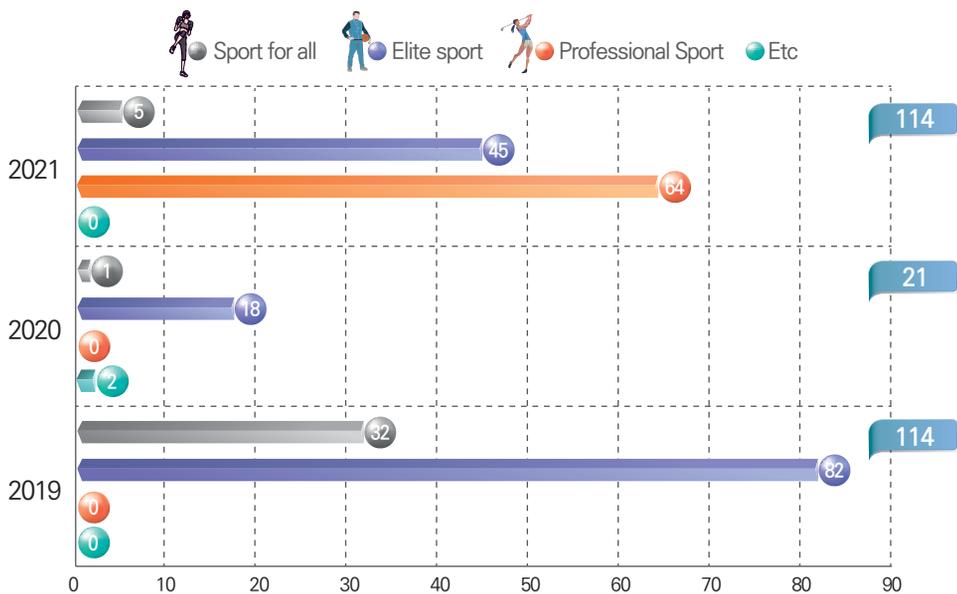


## 03. Sports safety education

1. Status of sports safety education(2021) ..... (unit: cases,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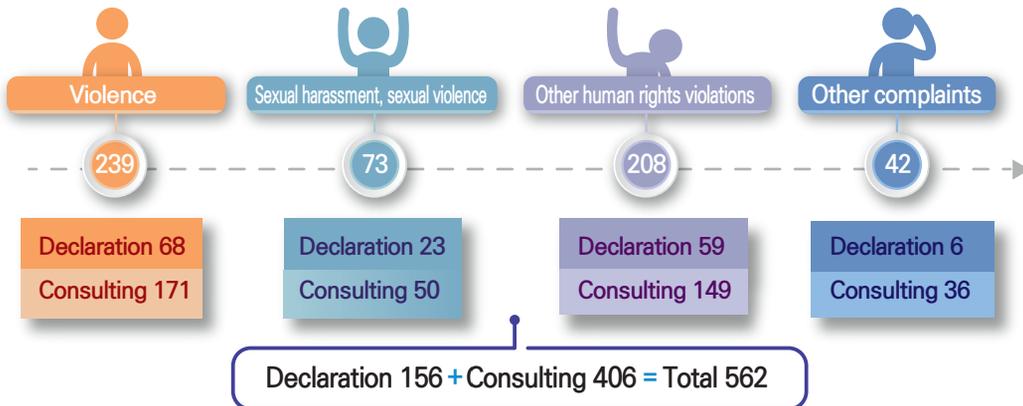


2. Status of sports event safety management inspection service(2019~2021) ..... (unit: c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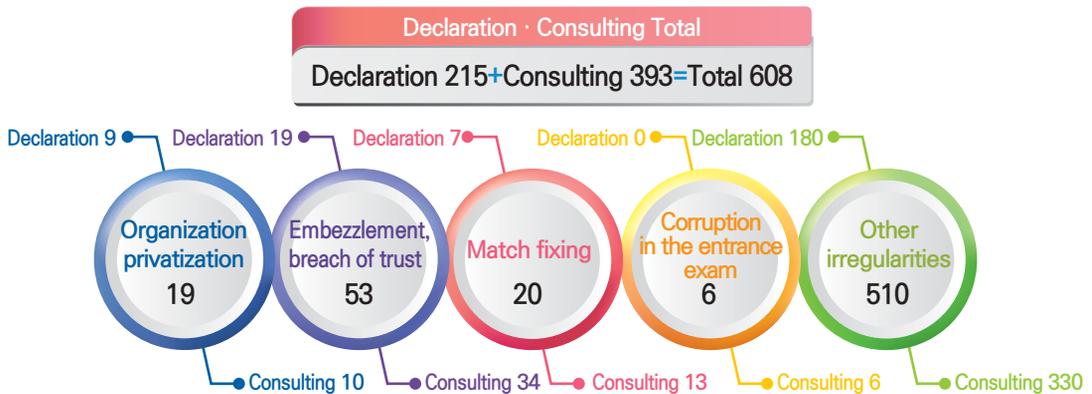


## 01. Status of ethics issue in s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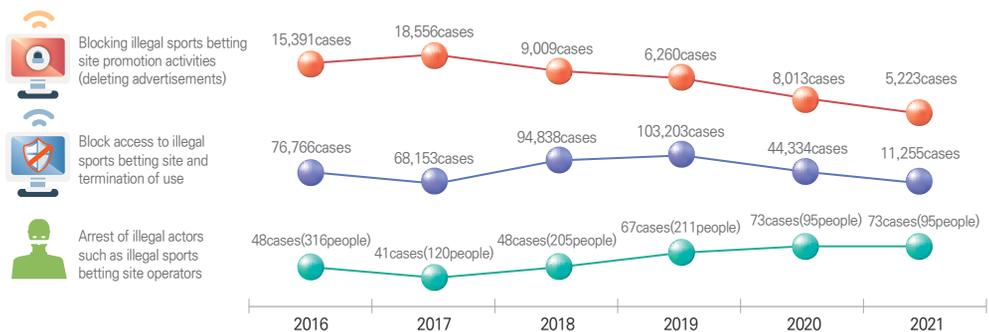
1. Status of human rights violation and corruption related reports and receipts at Sports Ethics Center(2021) ..... (Unit: cases)



2. Status of corruption reports at Sports Ethics Center(2021) ..... (Unit: cases)



3.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Illegal Sports Toto Reporting Center' (2016~2021) ..... (Unit: cases, person)





## 목 차

### 제1장

#### 체육정책 거버넌스

제1절 체육정책 거버넌스 개관 .....	2
1. 개관 .....	2
2. 중앙정부 체육정책 .....	3
3. 중앙정부 체육조직 변천 .....	16
제2절 체육행정조직 및 단체 .....	22
1. 중앙정부 체육행정조직 .....	22
2. 지방자치단체 체육조직 .....	25
3. 체육단체 .....	56
제3절 체육진흥자원 .....	115
1. 체육진흥재원의 구성 .....	115
2. 중앙정부의 체육재정 .....	116
3. 지방자치단체 체육재정 .....	119
4. 국민체육진흥기금 .....	139
제4절 체육관련 법제 .....	144
1. 체육관계법의 구분 .....	144
2. 체육관계법 현황 .....	145

### 제2장

#### 생활체육

제1절 생활체육 개관 .....	172
제2절 생활체육 현황 .....	174
1. 생활체육 참여 현황 .....	174
2. 생활체육 정책의 변화 및 현황 .....	186
3. 생활체육 기반 현황 .....	190

**제3절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정책** ..... 195

- 1.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 195
- 2.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204

**제3장**  
**전문체육**

**제1절 전문체육 개관** ..... 222

**제2절 전문체육 현황** ..... 224

- 1. 전문체육 인력 및 팀 등록 현황 ..... 224
- 2. 전문체육 정책 변천 및 현황 ..... 226
- 3. 전문체육 기반 현황 ..... 228

**제3절 전문체육 활성화 정책** ..... 232

- 1. 우수선수 육성 체계 지원 ..... 232
- 2.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 253
- 3. 전문체육대회 개최 지원 ..... 260
- 4.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선수촌 운영 ..... 264
- 5. 체육계 학교 및 지도자 역량강화 지원 ..... 274
- 6. 체육인 복지 지원 ..... 276

**제4장**  
**학교체육**

**제1절 학교체육 개관** ..... 284

**제2절 학교체육 현황** ..... 287

- 1. 학교체육 운영체계 현황 ..... 287
- 2. 체육과 교육과정 변천 및 현황 ..... 296
- 3. 학생 및 체육교사 현황 ..... 302
- 4. 학교체육시설 관련 현황 ..... 305
- 5. 학교운동부 및 체육계열 학교 ..... 310

**제3절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 315**

1.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 315
2. 학생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 327
3.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331
4. 학교운동부 운영 선진화 ..... 336
5. 대학스포츠 활성화 ..... 346

**제5장****장애인체육****제1절 장애인체육 개관 ..... 352****제2절 장애인 생활체육 ..... 354**

1. 장애인 생활체육 현황 ..... 354
2.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여건 조성 ..... 357
3.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 361

**제3절 장애인 전문체육 ..... 370**

1. 장애인 전문체육 현황 ..... 370
2. 장애인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경기력 향상 지원 ..... 375
3. 장애인체육 선수복지 ..... 383
4. 장애인체육 국내대회 지원 ..... 385

**제4절 장애인 국제체육 ..... 391**

1. 국제체육기구 및 진출인사 ..... 391
2. 국제대회 ..... 398
3. 교류의향서 및 양해각서 체결 현황 ..... 409

## 제6장

### 국제체육

제1절 국제체육 개관 .....	412
제2절 국제체육 정책거버넌스 .....	413
1. 국제체육 현황 .....	413
2. 국제체육 인재 현황 .....	424
3. 국제체육 교류 현황 .....	430
4. 국내의 국제체육 관련기관 .....	435
제3절 국제체육계 동향 및 아젠다 .....	445
1. 세계 주요국 체육정책 동향 .....	445
2. 국제체육기구 .....	450
3. 국제체육 아젠다(1): 스포츠계 도핑방지 .....	458
4. 국제체육 아젠다(2):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개발 .....	463
제4절 국제스포츠대회 참가 및 유치 .....	467
1. 올림픽대회 참가 현황 .....	467
2. 국제경기대회 참가 현황 .....	473
3. 지자체의 국제경기대회 지원 .....	474

## 제7장

### 체육전문인력

제1절 체육전문인력 개관 .....	478
제2절 체육전문인력 현황 .....	479
1. 전문체육 분야 인력 현황 .....	479
2. 체육계 고등학교 및 대학(원) .....	487
제3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	504
1.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	504
2.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 현황 .....	511
3. 체육지도자 양성 .....	513
4. 체육지도자 배치 활용 .....	526

**제8장****체육시설**

<b>제1절 체육시설 개관</b> .....	<b>532</b>
1. 개관 .....	532
2. 체육시설 정의 .....	533
3. 체육시설 현황 .....	536
<b>제2절 체육시설 조성정책</b> .....	<b>541</b>
1. 체육시설 조성정책 개관 .....	541
2. 체육시설 조성정책의 전개 .....	542
<b>제3절 공공체육시설 지원</b> .....	<b>546</b>
1.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	546
<b>제4절 공공체육시설 활용</b> .....	<b>564</b>
1. 공공체육시설 공간 활용도 제고 .....	564
2.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효율화 .....	568
<b>제5절 체육시설의 안전관리</b> .....	<b>570</b>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배경 및 목표 .....	570
2. 체육시설 안전관리 계획 추진 성과 .....	571

**제9장****남북체육교류**

<b>제1절 남북체육교류 개관</b> .....	<b>578</b>
<b>제2절 남북체육교류 정책거버넌스</b> .....	<b>580</b>
1. 남북교류의 법적 기반 .....	580
2. 남북체육교류 관련 조직 및 유관기관 .....	582
<b>제3절 남북체육교류 현황</b> .....	<b>586</b>
1. 남북체육회담 중심의 교류 .....	586
2. 대회 중심의 남북체육교류(1990~2000) .....	588
3. 남북단일팀 중심의 체육교류(2001~2010) .....	591
4. 최근 남북체육교류 현황(2011~ ) .....	594
5. 태권도를 통한 남북체육교류 .....	598

**제10장**  
**스포츠윤리**

제1절 스포츠윤리 개관 .....	602
제2절 스포츠윤리 현황 .....	604
1. 스포츠계 비윤리적 문제 신고 현황 .....	604
2. 스포츠계 비윤리적 문제 처리 현황 .....	605
3. 스포츠계 인권 실태 .....	607
제3절 스포츠윤리 강화 .....	612
1. 체육단체 감사 및 청렴 강화 .....	612
2. 클린스포츠 환경 구축 및 인권교육 .....	616
3. 체육특기자 선발 정상화 및 입시 비리 근절 .....	620



## 표 차례

### 제장 체육정책 거버넌스

표 1-1.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주요사업 요약	5
표 1-2.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주요 정책과제	6
표 1-3.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주요 정책과제	7
표 1-4. 참여정부(2003~2008)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주요 정책과제	8
표 1-5. 이명박 정부 문화비전 2008~2012 체육부문 주요 정책과제	10
표 1-6. 박근혜 정부 체육 관련 주요 국정목표	11
표 1-7. 스포츠비전 2018 세부 추진과제	12
표 1-8. 문재인 정부 체육정책	13
표 1-9. 2030스포츠비전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14
표 1-10. 정부 체육부처 연혁	20
표 1-11. 지방자치단체 체육발전 계획 수립 현황(2003~2021)	25
표 1-12. 광역자치단체 체육행정조직과 인력(2021)	27
표 1-13. 기초자치단체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29
표 1-14.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 현황(2021)	41
표 1-15. 광역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 실태(2021)	42
표 1-16. 기초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 실태	43
표 1-17. 대한체육회 연혁	57
표 1-18. 통합체육회 추진 과정	59
표 1-19. 대한체육회 인력구성	60
표 1-20. 회원종목단체 현황(2021)	62
표 1-21. 대한체육회 예산 현황(2021)	64
표 1-22. 시·도 체육회 예산 현황(2021)	65
표 1-23. 시·군·구 체육회 예산 현황(2021)	66
표 1-24. 대한장애인체육회 연혁	75
표 1-25. 대한장애인체육회 인력 현황(2021)	78

표 1-26. 시·도 장애인체육회 현황(2021) .....	78
표 1-27. 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가맹경기단체 현황(2021) .....	79
표 1-28. 대한장애인체육회 재정 현황(2012~2021) .....	80
표 1-29. 국민체육진흥공단 인력 현황(2021) .....	83
표 1-30.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형자산 .....	83
표 1-31.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인회계 예산 .....	84
표 1-32.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회계 예산 .....	86
표 1-33. 태권도진흥재단 연혁 .....	87
표 1-34. 태권도진흥재단 인력 현황(2021) .....	88
표 1-35. 태권도진흥재단 재정 현황(2012~2021) .....	89
표 1-36.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인력 현황 .....	91
표 1-37. 도핑검사 현황(2017~2021) .....	92
표 1-38. 도핑방지 교육인원 현황(2017~2021) .....	93
표 1-39. 도핑방지 현장홍보 현황(2017~2021) .....	94
표 1-40.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업 추진 3대 전략목표 및 10대 전략과제 .....	94
표 1-41. 한국도핑방지위원회 MOU 체결 현황 .....	95
표 1-42. 소재지정보 검사 현황(2017~2021) .....	96
표 1-43.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재정 현황(2013~2021) .....	96
표 1-44. 스포츠안전재단 인력 현황 .....	98
표 1-45. 스포츠안전 교육프로그램 체계도 .....	99
표 1-46. 스포츠 안전공제 가입 현황(2017~2021) .....	100
표 1-47. 스포츠공제 가입 및 보상현황(2017~2021) .....	100
표 1-48. 스포츠안전재단 재정 현황(2017~2021) .....	101
표 1-49.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연혁 .....	102
표 1-50.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인력 현황 .....	103
표 1-51.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 대학 연도별 현황(2012~2021) .....	104
표 1-52. 한국대학스포츠협회의의 주요 사업내용 .....	105
표 1-53.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재정 현황(2018~2021) .....	106
표 1-54. 2018 평창기념재단 인력 현황(2021) .....	107
표 1-55. 2018 평창기념재단 주요 사업내용 .....	109

표 1-56. 2018 평창기념재단 재정 현황(2021) .....	110
표 1-57. 스포츠윤리센터 인력 현황(2021) .....	111
표 1-58. 스포츠윤리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 .....	113
표 1-59. 스포츠윤리센터 예산 현황(2021) .....	114
표 1-60. 체육진흥재원의 구성(2012~2021) .....	115
표 1-61. 체육 분야별 국고예산 현황(2012~2021) .....	116
표 1-62. 체육 분야별 체육진흥기금 재정 현황(2012~2021) .....	117
표 1-63. 정부예산대비 체육예산 현황(2012~2021) .....	118
표 1-64. 지방자치단체 체육예산(광역+기초) .....	119
표 1-65. 광역자치단체 체육예산 .....	120
표 1-66.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 .....	121
표 1-67.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2021) .....	129
표 1-68. 광역자치단체 예산 중 체육 분야별 예산 현황(2021) .....	130
표 1-69. 기초자치단체 예산 중 체육 분야별 예산 현황(2021) .....	130
표 1-70.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1989~2021) .....	140
표 1-71.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1989~2021) .....	140
표 1-72.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실적(1991~2021) .....	142

## 제2장 생활체육

표 2-1.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2017~2021) .....	174
표 2-2. 연령대별 체육활동(주 2회 이상) 참여율(2017~2021) .....	175
표 2-3. 체육활동 참여 종목 순위(2017~2021) .....	176
표 2-4. 체육활동 참여 지속 시간(2017~2021) .....	176
표 2-5.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참여 기간(2017~2021) .....	177
표 2-6.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참여 강도(2017~2021) .....	178
표 2-7.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시설(2017~2021) .....	179
표 2-8.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2017~2021) .....	180
표 2-9. 체육활동 참여 영향 주체(2017~2021) .....	180

표 2-10. 체육활동 동반 참여자(2017~2021) .....	181
표 2-11. 체육활동 참여 및 비참여 이유(2017~2021) .....	182
표 2-12.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자 및 비참여자 참여희망 운동종목(2017~2021) .....	184
표 2-13. 프로스포츠 관람객 현황(2017~2021) .....	185
표 2-14. 정권 변화에 따른 생활체육 관련 정책 개요 .....	186
표 2-15. 정권별 생활체육시설 증가 추세(1983~2021) .....	191
표 2-16. 생활체육분야 지도자 양성 현황(1986~2021) .....	193
표 2-17. 체육시설 지원 실적 종합(1989~2021) .....	195
표 2-18. 국민체육센터 지원 실적(1997~2021) .....	196
표 2-19.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지원 실적(2011년 이전~2021) .....	196
표 2-20.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실적(2015~2021) .....	197
표 2-21.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 실적(2014~2021) .....	197
표 2-22. KSPO스포츠가치센터 총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2017 이전~2022) .....	198
표 2-23. KSPO스포츠가치센터 주요 시설 .....	198
표 2-24. 공공스포츠클럽 조직 및 육성 현황(2013~2021) .....	200
표 2-25. 국민체력100 연간지원액 현황(2010~2021) .....	201
표 2-26.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현황(2021) .....	202
표 2-27. 국민체력100 연간 참여인원(2011~2021) .....	202
표 2-28. 국민체력100 체력측정항목 .....	203
표 2-29.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실적(2016~2021) .....	204
표 2-30.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사업추진 실적(2021) .....	205
표 2-31.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실적(2009~2021) .....	205
표 2-32. 스포츠강좌 이용권 추진 방식(2009~2021) .....	206
표 2-33. 스포츠버스 지원사업 실적(2017~2021) .....	207
표 2-34. 행복나눔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실시 현황(2021) .....	208
표 2-35.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또바기 체육돌봄 운영 실적(2021) .....	209
표 2-36. 전통스포츠보급 사업 유형별 내용 및 참여 인원 현황(2021) .....	210
표 2-37. 레저스포츠 보급 지원 실적(2016~2021) .....	210
표 2-38. 여성체육활동 지원 실적(2021) .....	211
표 2-39. 지역별 체육동호인 등록 현황(2021) .....	212

표 2-40.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행사지원 현황(2012~2021)	213
표 2-41. 생활체육동호회리그 지원 사업 실적(2019~2021)	214
표 2-42. 종목별 승강제 리그 운영 결과(2021)	215
표 2-43. SPORTS1 발간 실적	216
표 2-44. 스포츠7330 캠페인 인식 조사 결과	216
표 2-45. 스포츠7330 대중언론매체 캠페인 실적	217
표 2-46. 범국민 생활체육 캠페인 추진 현황(2017~2021)	218
표 2-47. 온라인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실적(2021)	218
표 2-48. 대국민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2021)	219

### 제3장 전문체육

표 3-1. 전문체육 선수 및 지도자 등록 현황(2017~2021)	224
표 3-2. 심판 등록 현황(2017~2021)	225
표 3-3. 전문체육 팀 등록 현황(2017~2021)	225
표 3-4. 정부별 전문체육 정책 흐름 및 현황	226
표 3-5. 선수촌 현황	229
표 3-6. 전문스포츠지도사(구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1974~2021)	230
표 3-7. 종목별 꿈나무선수 현황(2021)	234
표 3-8. 종목별 꿈나무선수 하계합숙훈련 현황	235
표 3-9. 종목별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 현황	237
표 3-10. 종목별 청소년대표선수 사업 인력 현황(2021)	238
표 3-11. 종목별 청소년대표선수 합숙훈련 현황	240
표 3-12. 종목별 국가대표 후보선수 및 지도자 현황	242
표 3-13. 당해 국가대표 후보선수의 국가대표선수 총원 현황(2017~2021)	244
표 3-14. 종목별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 비율(2021)	244
표 3-15. 종목별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 합숙훈련 현황	246
표 3-16. 종목별 국가대표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 현황(2021)	247
표 3-17. 종목별 국가대표선수 및 훈련 인원 현황(2021)	248

표 3-18. 국가대표선수 하계종목 국외전지훈련 지원 현황(2021) .....	251
표 3-19. 국가대표선수 동계종목 국외전지훈련 지원 현황(2021) .....	252
표 3-20. 지역스포츠과학센터 현황 및 위치 .....	254
표 3-21.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지원내용 .....	255
표 3-22.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지원성과(2018~2021) .....	255
표 3-23. 국가대표 현장밀착형 스포츠과학 지원사업 실적(2016~2021) .....	257
표 3-24. 국가대표 현장밀착형 스포츠과학 종목별 지원 현황(2021) .....	257
표 3-25. 차세대스포츠과학지원팀 주요사업 .....	258
표 3-26. 차세대스포츠과학지원팀 운영 실적(2021) .....	259
표 3-27. 첨단기술기반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사업 지원 실적(2018~2021) .....	260
표 3-28. 전국(하계)체육대회 개최 현황(2012~2021) .....	261
표 3-29.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 현황(2011~2020) .....	262
표 3-30.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현황(2010~2019) .....	263
표 3-31. 대회 및 선수촌 구분에 따른 국가대표선수 훈련 현황(2021) .....	264
표 3-32. 태릉선수촌 시설 현황(2021) .....	265
표 3-33. 태릉선수촌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지원 현황(2021) .....	266
표 3-34. 태백국가대표선수촌 시설 현황 .....	267
표 3-35. 태백선수촌 국가대표선수 훈련 현황 .....	267
표 3-36.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조성 추진 현황 .....	268
표 3-37.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시설 현황 .....	269
표 3-38. 진천국가대표선수촌 국가대표선수 훈련지원 현황(2021) .....	271
표 3-39. 진천국가대표선수촌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 .....	271
표 3-40.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방문견학 세부 현황(2021) .....	272
표 3-41. 선수촌 시설확충 현황(2003~2021) .....	273
표 3-42. 체육계 학교 지원 현황(2016~2021) .....	274
표 3-43. 외국인코치 초청 현황(2017~2021) .....	275
표 3-44. 국외정보수집(지도자 해외연수) 사업 현황(2017~2021) .....	276
표 3-45. 국가대표 능력개발 교육 운영 현황(2020~2021) .....	277
표 3-46. 국가대표선수 능력개발 교육 현황(2021) .....	277
표 3-47. 은퇴선수 취업 지원 추진 성과(2017~2021) .....	278

표 3-48. 체육인 장학금 및 보조금 지원 현황(2021) .....	279
표 3-49. 체육인 복지지원금 지급 현황(2017~2021) .....	279
표 3-50.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성과(2019~2021) .....	280
표 3-51. 포상내역 현황(2021) .....	281
표 3-52. 체육발전유공자 및 대한민국체육상 포상내역 현황(2021) .....	282

## 제4장 학교체육

표 4-1. 전국 시도교육청별 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 현황 .....	290
표 4-2. 학교체육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92
표 4-3. 초·중·고등학교 체육교과 명칭 및 이수단위 변천 .....	296
표 4-4.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내용체계표 .....	300
표 4-5. 2015년 개정 고등학교 체육 보통교과 .....	301
표 4-6. 2015년 개정 고등학교 체육 전문교과(Ⅰ) .....	302
표 4-7. 학교급별 학생 현황(2021) .....	303
표 4-8.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원 배치현황 .....	303
표 4-9. 중·고등학교 성별 체육교사 현황 .....	304
표 4-10. 중·고등학교 설립별 체육교사 현황 .....	304
표 4-11. 초·중·고 학교체육시설 현황(2018~2021) .....	305
표 4-12.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 운영 현황(2021) .....	307
표 4-13.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실적(2021) .....	309
표 4-14. 학교운동부 현황 비교(2017~2021) .....	310
표 4-15. 전국 체육중·고등학교 학생 현황(2021) .....	311
표 4-16.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운영 현황(2021) .....	313
표 4-17. 학교운동부 지원 현황 .....	314
표 4-18. 체육계 학교 및 학교운동부 지원 실적 .....	314
표 4-19. 초등 및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현황(2021) .....	318
표 4-20.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현황(2021) .....	319
표 4-21. 대한체육회 여학생 스포츠 교실 운영 현황(2018~2021) .....	321

표 4-22. 학교 안·밖 프로그램 현황(2020~2021)	322
표 4-23. 학교 안 프로그램 종목별 현황(2021)	322
표 4-24. 학교 밖 프로그램 종목별 현황(2021)	324
표 4-25.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현황(2016~2021)	325
표 4-26. 유·청소년 축구클럽 리그(I-리그) 운영 현황(2019~2021)	326
표 4-27. 수영 실기교육 현황(2016~2021)	326
표 4-28. 학생건강체력검사 평가 항목 및 방법	327
표 4-29. 초등학교 학생건강체력검사 결과(2020~2021)	329
표 4-30. 중학교 학생건강체력검사 결과(2020~2021)	329
표 4-31. 고등학교 학생건강체력검사 결과(2020~2021)	330
표 4-32.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관련 「학교체육진흥법」 내용	332
표 4-33. 전국 학교스포츠클럽축전 개요	334
표 4-34.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예산(2021)	334
표 4-35. 학생심판연수 운영 현황(2021)	335
표 4-36. 청소년스포츠타마당 운영 현황(2021)	336
표 4-37. 학생선수 이스쿨(e-School) 학교급별 활용 현황(2021)	339
표 4-38. 학생선수 이스쿨(e-school) 시·도별 활용 현황(2021)	339
표 4-3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학교체육진흥법」 내용	340
표 4-40. 학교운동부 지도자 직무교육 현황(2017~2021)	342
표 4-41. 교육부 주관 도핑방지교육 실시 현황(2021)	343
표 4-42.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	345
표 4-43. 대학운동부 지원 현황(2021)	347
표 4-44. 학생선수 맞춤형 교육 현황(2021)	348
표 4-45. KUSF 클럽챔피언십 운영현황(2021)	348

## 제5장 장애인체육

표 5-1.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2017~2021)	354
표 5-2. 시·도별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2021)	355

표 5-3. 시·도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현황(2021) .....	355
표 5-4.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 현황(2008~2021) .....	357
표 5-5.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기타 프로그램 지원 실적(2017~2021) .....	362
표 5-6.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실적(2017~2021) .....	362
표 5-7. 장애유형별 통합대회 개최 현황(2021) .....	363
표 5-8. 장애유형별 종합대회 개최 현황(2021) .....	363
표 5-9. 장애유형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2021) .....	364
표 5-10. 지역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2021) .....	364
표 5-11.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2021) .....	365
표 5-12. 종목별 국내대회 개최 현황(2021) .....	365
표 5-13. 소외종목 육성대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대회 개최 현황(2021) .....	367
표 5-14.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2021) .....	368
표 5-15.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 현황(2021) .....	369
표 5-16. 시·도 등록선수 현황(2018~2021) .....	371
표 5-17. 연도별·종목별 등록선수 현황(2018~2021) .....	371
표 5-18. 이천선수촌 건립 단계별 시설 내역 .....	373
표 5-19. 이천선수촌 시설 이용 현황(2017~2021) .....	374
표 5-20. 장애인 꿈나무선수·신인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선발 현황(2021) .....	375
표 5-21.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훈련 현황(2021) .....	376
표 5-22.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운영 현황(2021) .....	378
표 5-23.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현황(2017~2021) .....	379
표 5-24. 장애인실업팀 지원 현황(2021) .....	379
표 5-25. 전임지도자 배치 현황(2021) .....	381
표 5-26. 국내대회 지원 현황(2017~2021) .....	382
표 5-27. 전문인력(등급분류사, 심판) 양성 현황(2017~2021) .....	382
표 5-28. 전문인력(등급분류사, 심판) 양성 사업 세부 현황(2021) .....	382
표 5-29. 장애인체육선수 복지지원금 지급 현황(2017~2021) .....	383
표 5-30. 장애인 은퇴선수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2021) .....	384
표 5-31.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2021) .....	385
표 5-32.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 .....	386

표 5-33.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	388
표 5-34.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현황	389
표 5-35. 국제회의 및 워크숍 참가 현황(2021)	391
표 5-36.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대한민국 위원 현황	393
표 5-37.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 대한민국 집행위원 및 상임위원 현황(2021)	394
표 5-38.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 현황	395
표 5-39.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대한민국 임원 현황(2021)	396
표 5-40. 장애유형별 국제스포츠기구 개요	396
표 5-41. 하계패럴림픽대회 개최 현황	400
표 5-42.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 현황	401
표 5-43.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참가 현황	403
표 5-44. 하계농아인올림픽대회 개최 현황	404
표 5-45. 동계농아인올림픽대회 개최 현황	405
표 5-46. 스페셜올림픽대회 동·하계 종목	407
표 5-47. 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개최 현황	407
표 5-48.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현황(2021)	408
표 5-49. 교류의향서 및 양해각서 체결 현황	410

## 제6장 국제체육

표 6-1.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주요 업무(2021)	413
표 6-2.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 업무계획(2021)	414
표 6-3. 대한체육회 부서별 국제스포츠 주요 업무(2021)	415
표 6-4. 대한체육회 국제체육 중점과제(2021)	416
표 6-5. 체육교류협정 체결 현황	419
표 6-6.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지원 실적(2021)	421
표 6-7. 국제스포츠인재 양성사업 수료생 성과 사례(2021)	421
표 6-8.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교육 및 국제스포츠행정가 양성 실적(2017~2021)	422
표 6-9. 종목별 국제심판 자격취득 지원사업 지원현황(2009~2021)	423

표 6-10. 연도별 국제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인원(2015~2021) .....	424
표 6-11.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위원 현황(2012~2021) .....	425
표 6-12.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분과위원 현황(2021) .....	426
표 6-13. 국제올림픽위원회 한국인 위원 현황(2021) .....	428
표 6-14. 국제올림픽위원회 역대 한국인 위원 .....	428
표 6-15. 국제경기연맹 한국인 임원 현황(2021) .....	429
표 6-16. 아시아경기연맹 한국인 임원 현황(2021) .....	430
표 6-17. 한·일/한·중 청소년 스포츠교류(2021) .....	431
표 6-18.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사업성과(2021) .....	432
표 6-19. 개발도상국 스포츠 발전지원 사업 현황(2017~2021) .....	433
표 6-20. 개발도상국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 사업 성과(2021) .....	433
표 6-21. 국제체육기구 파견사업 현황(2021) .....	434
표 6-22. 국제체육기구 정직원 전환 실적(2017~2021) .....	434
표 6-23. 국제스포츠정보센터 등록 현황(2017~2021) .....	435
표 6-24. 국제체육교류 지원 및 국제회의의 파견 사업 현황(2021) .....	435
표 6-25.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연혁 .....	436
표 6-26.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인력 현황(2021) .....	438
표 6-27.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예산 현황(2017~2021) .....	438
표 6-28.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연혁 .....	440
표 6-29.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인력 현황(2021) .....	441
표 6-30.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설립목적 및 사업기능(2021) .....	442
표 6-31.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예산 현황(2017~2021) .....	442
표 6-32. 세계 주요국 체육담당부처 및 역할 .....	445
표 6-33. 국제체육기구 및 단체 주요 역할 .....	450
표 6-34.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대륙별 현황 .....	452
표 6-35.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지역별 현황 .....	452
표 6-36.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2019~2023) .....	453
표 6-37.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회원 현황 .....	455
표 6-38. 하계·동계올림픽대회 정식종목별 국제경기연맹 회장 현황(2021) .....	456
표 6-39. 하계·동계올림픽대회 정식종목 국제경기연맹 부회장 및 사무총장 현황(2021) .....	457

표 6-40.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회 구성 .....	459
표 6-41. 유네스코 스포츠도핑방지금 목록(2020~2021) .....	461
표 6-4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 분석시료 현황(2017~2021) .....	462
표 6-4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 연도별 금지성분 검출 보고 건수(2017~2021) .....	463
표 6-44. 정부 간 체육위원회 영구자문위원회 회원 현황(2021) .....	465
표 6-45. 역대 올림픽대회 개최 현황 .....	467
표 6-46. 역대 하계올림픽대회 메달 획득 현황 .....	470
표 6-47. 역대 동계올림픽대회 메달 획득 현황 .....	472
표 6-48. 국제경기대회 대한민국 참가 현황(2021) .....	473
표 6-49. 제32회 도쿄하계올림픽대회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	473
표 6-50.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 선정 현황 .....	474
표 6-51. 지자체별 선정 종목 현황 .....	475

## 제7장 체육전문인력

표 7-1. 소속별 등록선수 수(2017~2021) .....	479
표 7-2. 종목별 등록선수 수(2021) .....	480
표 7-3.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현황(2021) .....	482
표 7-4. 종목별 심판 수(2021) .....	484
표 7-5. 국제심판 자격취득 및 역량강화교육 현황(2016~2021) .....	486
표 7-6. 고등학교 체육계열학과 및 학생 수 현황(2021) .....	487
표 7-7. 체육계열 전문대학과정 학과 및 학생, 교원 수 현황(2017~2021) .....	488
표 7-8. 체육계열 대학과정 학과 및 학생, 교원 수 현황(2017~2021) .....	492
표 7-9. 체육계열 대학원과정 학과 및 학생, 교원 수 현황(2017~2021) .....	499
표 7-10. 체육지도자 지도대상 및 분야 .....	505
표 7-11. 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정의 .....	505
표 7-12.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	506
표 7-13.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	507
표 7-14.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과목 .....	509

표 7-15.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	511
표 7-16.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	512
표 7-17.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	513
표 7-18. 종목별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	514
표 7-19. 종목별 전문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 .....	516
표 7-20. 종목별 생활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 .....	518
표 7-21. 종목별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 .....	521
표 7-22. 종목별 유소년스포츠지도사·노인스포츠지도사 현황 .....	524
표 7-23.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	526
표 7-24. 생활스포츠지도사 배치 실적(2021) .....	527
표 7-25. 생활체육지도자 중 일반지도자 배치 실적(2021) .....	528
표 7-26. 생활체육지도자 중 어르신지도자 배치 실적(2021) .....	529
표 7-27. 생활체육지도자 중 유소년지도자 배치 실적(2021) .....	529
표 7-28.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배치 실적(2021) .....	530

## 제8장 체육시설

표 8-1. 체육시설 종류 .....	533
표 8-2. 공공체육시설 분류기준 .....	535
표 8-3. 전국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2021) .....	537
표 8-4. 전국 시·도별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2021) .....	538
표 8-5.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	546
표 8-6. 체육시설 지원사업 .....	547
표 8-7. 체육시설 지원 실적(1989~2021) .....	547
표 8-8.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지원 시설(3개 유형) .....	548
표 8-9.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연도별·지역별 지원 실적 .....	549
표 8-10.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지원 시설 .....	553
표 8-11.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장애인형) 연도별·지역별 지원실적 .....	554
표 8-12.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연도별·지역별 지원 실적 .....	556

표 8-13. 지역별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 지원 실적(2011~2020)	558
표 8-14.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실적(2015~2021)	562
표 8-15.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내역(2015~2021)	563
표 8-16. 공공체육시설 공급 기본계획의 기본 원칙	565
표 8-17.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관련 사업 실적	571
표 8-18. 국민체육진흥공단 시설물 안전점검 주기와 대상	574
표 8-19. 스포츠 안전교육 현황(2017~2021)	574
표 8-20.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점검서비스 현황	575

## 제9장 남북체육교류

표 9-1. 남북교류 관련 법률현황	580
표 9-2. 남북협력기금 지원 사업	583
표 9-3. 남북체육회담 주요 일지	586
표 9-4.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 개요	588
표 9-5. 남북단일팀 국제경기대회 참가 현황	589
표 9-6. 남북체육교류 세부 실적(1990~2000)	590
표 9-7. 남북체육교류 세부 실적(2001~2010)	591
표 9-8. 남북체육교류 세부 실적(2011~2021)	594
표 9-9. 남북 태권도 교류 주요 연혁	599

## 제10장 스포츠윤리

표 10-1.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 접수 현황(2020~2021)	604
표 10-2. 스포츠윤리센터 비리 관련 신고현황(2020~2021)	605
표 10-3.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접수 처리 현황(2020~2021)	605
표 10-4. 학생선수 및 프로·실업팀 선수 인권침해 경험률 및 목격률	607
표 10-5. 학생선수 및 프로·실업팀 선수 인권침해 세부항목별 경험률 및 목격률	608

표 10-6. 국가인권위원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실태조사 .....	609
표 10-7.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충 .....	610
표 10-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	610
표 10-9. 체육단체 종합감사 실시 현황(2021) .....	613
표 10-10. 국민감사관 활동 실적(2021) .....	613
표 10-11. 대한체육회 청렴 생태계 조성 및 정착 사업 .....	615
표 10-12.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주요 업무(2021) .....	617
표 10-13.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주요 실적(2016~2021) .....	617
표 10-14. 대한체육회 체육인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 .....	618
표 10-15. 스포츠윤리센터 인권교육 현황(2021) .....	619
표 10-16.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 예방 및 홍보활동(2021) .....	619
표 10-17.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자료 제공 시스템 운영 주요 성과 .....	621
표 10-18.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 .....	621
표 10-19. 체육특기자 온라인 대입설명회 참여 현황 .....	622
표 10-20. 체육특기자 대입포털 특별전형 데이터 구축 현황 .....	623
표 10-21. 2021학년도 전국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배부 현황 .....	623



## 그림 차례

### 제1장 체육정책 거버넌스

그림 1-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조직도 .....	22
그림 1-2. 대한체육회 조직도 .....	60
그림 1-3. 국내·외 스포츠단체 조직도 .....	61
그림 1-4. 국내·외 장애인체육회 조직도 .....	76
그림 1-5.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직도 .....	77
그림 1-6.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직도 .....	82
그림 1-7. 태권도진흥재단 조직도 .....	88
그림 1-8.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직도 .....	92
그림 1-9. 스포츠안전재단 조직도 .....	98
그림 1-10.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조직도 .....	104
그림 1-11. 2018평창기념재단 조직도 .....	108
그림 1-12. 스포츠윤리센터 조직도 .....	112

### 제3장 전문체육

그림 3-1. 꿈나무선수 선발 과정 .....	233
---------------------------	-----

### 제4장 학교체육

그림 4-1. 학교체육 정책목표·추진과제 .....	288
------------------------------	-----

## 제5장 장애인체육

그림 5-1.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조직 구조 .....	392
------------------------------------	-----

## 제6장 국제체육

그림 6-1.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조직도 .....	438
그림 6-2.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조직도 .....	441

## 제7장 체육전문인력

그림 7-1.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변화 .....	504
-----------------------------	-----

## 제10장 스포츠윤리

그림 10-1. 스포츠윤리센터 상담·신고 처리절차 .....	606
-----------------------------------	-----



2021 체육백서

2021 Sport White Paper

1

# 체육정책 거버넌스

제1절 체육정책 거버넌스 개관

제2절 체육행정조직 및 단체

제3절 체육진흥재원

제4절 체육관련 법제

## 제1절 체육정책 거버넌스 개관

## 1. 개관

우리나라 체육정책은 주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전해 왔다. 정치, 경제, 문화, 기술 분야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한 것이다. 관련 정책 수립 시 이들과의 조화가 중요한 이유다. 최근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체육정책도 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과 실행 패러다임을 넘어, 시민사회와 민간과의 정책적 조율을 중시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지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이라는 대내적(對內的) 측면과 국제스포츠대회에서의 성적 및 국위선양이라는 대외적(對外的) 측면으로 나뉜다.

두 측면을 중심으로 체육정책의 시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이전의 체육정책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를 중심으로 체육 진흥을 국민 통합의 원동력이자 국가 발전의 기본으로 인식하며 전국체전을 위한 전문체육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던 시대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는 ‘생활체육’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81년 프로축구와 82년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86년 아시안게임 및 88년 하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생활체육의 장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 시기를 거치며 90년대에는 생활체육의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었으나, 98년에 맞은 IMF 경제위기로 체육 분야의 정부 지원은 축소되었다. ‘경제적 암흑기’였다. 이 시기를 지나 2000년부터는 대외적으로 활발히 국제스포츠 대회를 유치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복지’ 측면에서 모든 국민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체육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체육정책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은 어땠을까? 여기에서는 1980년대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체육정책이 어떤 양상을 보이며 발전해왔는가를 개괄하고자 한다. 개괄의 틀은 1) 2000년대 이전의 체육정책, 2) 2000년대 체육정책(1998~2017년), 3) 2021년까지의 문재인 정부 체육정책으로 구성된다.

## 2. 중앙정부 체육정책

### 1) 2000년대 이전의 체육정책

#### 가. 1980년대 이전의 체육정책

제3공화국 이전(1963년 이전)의 체육정책은 대한체육회라는 ‘민간’ 주도의 체육행정이 주를 이루었다. 한 마디로 엘리트 체육진흥을 위하여 경기기술 향상, 국제경기대회 참가를 통한 국위선양, 다른 국가와의 스포츠 교류가 주된 행정이었던 시기였다. 특이한 점은, 당시 체육정책이 ‘교육 담당’ 행정부처 소관으로 시작하여 주로 ‘문교부’에서 교육과 함께 ‘문화 정책’의 일부로 다루어졌기에, 문화국 체육과에서는 지금의 ‘학교체육’과 같은 교육적 관점의 체육 활용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대내적 측면의 체육정책이 주로 학교체육과 연계되어 이루어졌던 경향이 강했던 시기다.

이 시기의 체육정책은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주로 ‘국가 홍보’를 위해 올림픽 대회와 같은 국제대회 참가에도 집중했다. 이는 주로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경기력 향상과 국제 스포츠교류 지원 사업 차원에서 행해졌는데,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스포츠 과학 기반의 ‘체육지도자 육성’이나 ‘생활체육(당시에는 ‘사회체육’) 정책 및 연구’ 관련 지원에는 소홀했으며, 민간단체 중심의 체육 프로그램이 보급되었다. 1961년부터 민간단체인 한국레크리에이션협회가 문교부 인가를 받아 보건·체육·레크리에이션 등의 사회체육활동을 보급했지만, 당시 서울 주요 체육시설이 엘리트 체육을 위한 형태(서울운동장 야구장, 효창운동장, 장충체육관 등)로 이루어졌던 탓에 체육 프로그램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전달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민간 중심으로 진행되던 스포츠 행정은 제3공화국(1963~1972년)이 강력하게 내세운 경제개발정책과 함께 정부 지원 차원으로 본격 수렴되기 시작했다. ‘체력은 국력’이란 슬로건을 중심으로 여러 체육진흥 정책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의 체육정책은 국가 체육진흥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기본 틀이 구축되고 관련 정책과 기구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정부는 국민체력 향상과 진흥이 국민 통합의 원동력이자 국가발전의 기본임을 인지하면서 전문체육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고, 관련 정책도 적극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체육진흥법(1962년)’과 ‘국민체육진흥재단(1972년)’ 등 체육진흥을 위한 법·제도 장치 마련이었다. 이 당시 국민체육진흥법은 오늘날의 체육행정 및 정책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어(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 설정, 지방체육 진흥, 학교 및 직장체육 진흥,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국립종합경기장 설치, 선수 보호 및 육성,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조항 등) 한국체육의 기본 골격을 갖추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후 1970년 3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체육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국민체육·학교체육·체육시설·체육기금·운동용구 및 기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국가정책에 반영 되도록 제도가 재편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 이전의 체육정책은 정부행정 구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체육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정부의 행정적 편재 특성 상 정책이 학교체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국가 홍보 및 국력 과시를 위한 전문체육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체육진흥시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확립부터 이를 끌고 나갈 조직 수립에 이르기까지, 체육정책과 관련된 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행정적 한계 속 한국체육정책 기본 틀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나.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체육정책

‘제5공화국(1980~1988년)’은 대한민국 체육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기였다. ‘스포츠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체육정책이 양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양적 발전의 두 축은 기업 주도의 프로스포츠 출범과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를 위한 준비였다. 정부 주도로 1981년과 1982년에 각각 프로축구와 프로야구를 대기업 지원 하에 출범하였고, 동시에 1986년 서울 하계아시아경기대회 및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여러 정책도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내 ‘체육부’의 역할이 컸다(1982년 신설). 체육부는 국제대회의 성공적 추진뿐 아니라 그동안 문교 행정의 시각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오던 체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계획하려 한 조직이었다. 두 개의 국제스포츠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준비기간 동안 국민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정책수립도 체계적으로 세우고자 하였다. 하지만 두 개의 대회 준비에 행정력을 쏟으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까지 고민하고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그 이후,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민 의식은 크게 개선되었고, 동시에 소득수준도 향상되면서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지면서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진흥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표 1-1.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주요사업 요약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체육시설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올림픽기념 생활관 건립</li> <li>- 소규모 근린생활체육시설 건립</li> <li>- 국·공립초등학교 내 테니스장 설치</li> <li>- 광역권별 수영장 건립</li> <li>- 레포츠공원 조성</li> </ul> </li> <li>기존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li> <li>- 학교체육시설 개방·이용 확대</li> <li>- 올림픽시설 개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경기 종목의 개발·보급</li> <li>- 계층별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li> <li>- 건강생활체조 개발·보급</li> </ul> </li> <li>전국 스포츠교실 운영</li> <li>직장체육프로그램 개발</li> <li>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li> <li>국민체력평가대회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제도 개선</li> </ul>

※ 출처: 체육부(1990). 국민생활체육진흥 세부추진계획: 호돌이 계획. 서울: 체육부.

노태우 정부(제6공화국, 1988~1993)는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1990년에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일명 ‘호돌이 계획’)』을 수립하였다. 더불어 전문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 생활체육을 전담할 ‘국민생활체육협의회(1991년)’도 설립하면서 생활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첫 번째 종합계획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무엇보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국가차원의 체육정책 거버넌스 기본 틀이 마련되며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정책 기반이 구축되었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에 적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동시에 국민들 체력을 평가할 ‘국민체력 기준지표’도 고안되었다. 건강생활체조가 개발되어 전국에 보급된 때도 이 시기였다. 나아가 1988년 12월, 『국민여가활동참여실태조사』를 시작으로 1989년 이후부터 3년마다 『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2006년부터는 2년에 한 번, 그리고 2015년부터는 1년마다 참여실태가 조사되며 국민체육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출범과 함께 정부 행정조직을 개편했다.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1993년 3월)로 개편되었다. 특히 문민정부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적 성장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문체육 중심의 체육정책을 넘어 범국민적 체력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확산을 함께 추구하였다. 이러한 강조점의 변화는 당시 생활체육을 주로 다루던 민간영역의 위상 강화로 이어지면서 민간체육단체와 정부가 함께 체육정책의 질적 성장을 이끌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표 1-2.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주요 정책과제

정책과제	추진내용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의식 고취</li> <li>• 체육활동 공간 확충 및 생활체육지도자 양성</li> <li>• 국민체육활동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li> <li>• 국민의 건전한 여가 기회 확대</li> </ul>
엘리트체육의 지속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li> <li>• 국내경기대회 운영 개선</li> <li>• 우수한 경기지도 인력 양성</li> <li>• 체육인 복지향상 및 체육단체 자율성 제고</li> </ul>
국제체육협력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체육계에서 대한민국 입지 강화</li> <li>• 국제체육교류 사업의 효율적 추진</li> <li>• 체육을 통한 민족화합 도모</li> </ul>
체육과학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과학의 연구기반 강화</li> <li>• 체육과학 실용화</li> </ul>
체육행정체제의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행정체제의 정비·보강</li> <li>• 체육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li> </ul>

※ 출처: 문화체육부(1993).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서울: 문화체육부.

문민정부 시기의 체육정책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 수립으로 집약된다. 위의 <표 1-2>에서 볼 수 있듯, 이 계획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체력증진과 여가 선용 도모, 세계 10위권 내의 경기력 유지, 국제체육 협력 증진 및 민족화합 도모를 목표로 하였다. 특히 생활체육진흥 차원에서 국민체육활동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높이고, 수영과 육상, 체조 같은 기본종목과 하계종목에 비해 취약한 동계종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이 당초 155개의 사업으로 기획되었으나, 학교체육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138개로 축소되었고, 그렇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측면에서는 계획된 1조6,669억 원보다 더 많은 4조1,293억 원이 투입되며 체육재정규모 확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 2) 2000년대 체육정책

### 가. 국민의 정부 체육정책(1998~2003)

1998년에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관리를 받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정부는 ‘국민의 정부’ 였다. 이 시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정부는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작은 정부’를 표방하였고, 이에 체육조직도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체육정책 집행은 지방화, 민간화, 다원화 같이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체육정책 관련 업무 역시 상당 부분 분권화되거나 민간으로 이양되었다. 더군다나 국제스포츠대회(2002년 FIFA한일월드컵대회와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었음에도, 중앙정부 체육 담당조직은 ‘문화체육부’에서 ‘문화관광부’로 개편되었고, 체육 관련 업무도 문화관광부 내 1개국으로 축소되었다.

국민의 정부 체육정책 기조는 출범 초기에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에 잘 나타난다. ‘사회건강은 생활체육에서’라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여섯 가지 주요사업이 선정되었다. 첫째,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둘째, 체육지도자 양성, 셋째,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복합체육시설 확충, 넷째, 경기단체 재정자립 기금지원 및 법인화, 다섯째, 체육 용·기구 품질향상 지원, 여섯째, 2002년 FIFA한일월드컵대회 준비이다.

표 1-3.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주요 정책과제

부문별 목표	추진내용
생활체육 참여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중심의 체육활동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공동체 주민활동의 장인 체육시설 확충</li> <li>미참여 인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li> <li>생활체육지도인력의 육성 및 활용</li> <li>국민체력관리의 과학적 지원</li> <li>민간 주도적 생활체육 확산</li> </ul>
세계상위권 경기력 유지 및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수 발굴 및 육성체계 전문성 보강</li> <li>경기단체 자율성 제고</li> <li>경기운영체계의 합리화 및 전산화 강화</li> <li>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발전</li> </ul>
국제교류 역량강화 및 남북체육교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교류 대상국 확대 및 교류 내실화</li> <li>체육외교역량의 강화로 국제체육기구 내 역할 강화</li> <li>남북체육교류 추진으로 민족화합 분위기 조성</li> <li>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한 상징종목의 세계적 보급 확산</li> </ul>
2002 FIFA 한일월드컵축구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로 국가발전의 재도약 전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회준비 운영체제 구축, 경기장 등 대회시설 확보</li> <li>경기운영, 개최식 등 대회운영 단계적 준비</li> <li>범국민적 대회참여 분위기 조성 및 전 정부적 지원</li> </ul>
체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산업 연구 개발</li> <li>취약지구 민간체육시설 우선 용자 지원</li> <li>민간 체육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li> <li>체육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및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 강구</li> </ul>
경쟁력 있는 체육과학 발전추구 및 체육행정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체육과학연구원(現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기능 증대</li> <li>국민체력증진 연구 및 경기력향상 연구 역량강화</li> <li>체육부문 종합정보망 구축 및 다양한 체육정보 제공</li> <li>체육 인력 전문성 제고 및 지방체육조직에 전문 인력 배치</li> </ul>

※ 출처: 문화관광부(1998).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서울: 문화관광부.

이와 같은 100대 추진과제와 함께, 국민의 정부는 1차에 이어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 계획』을 통해 제반 정책을 수립하였다. 앞의 <표 1-3>에서 볼 수 있듯, 이 계획에는 여섯 개 부문(생활체육 참여 환경 구축, 세계 상위권 경기력 유지, 국제체육교류 강화, 2002월드컵 성공적 개최, 체육 산업 경쟁력 강화, 체육부분 선진화)을 중심으로 다양한 추진전략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생활체육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체력과 비만 관리 등을 포함한 국민 건강 증진,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기회부여, 여가활동 기회확대 등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가 제안되었다. 나아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두 축이 상호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계획에 담겼으며, 국제교류 역량강화와 남북체육교류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전략도 실행되었다. 또한 2002년 FIFA한일월드컵대회의 성공개최가 국가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경기시설확보, 숙박·방송·보도시설 확보, 다양한 문화행사 준비 및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등의 지원정책도 포함되었다.

#### 나. 참여정부(2003~2008)의 체육정책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1-4>에 정리되었듯,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총 여섯 개 부문(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국제체육교류, 체육과학 및 정보화, 체육 행정 및 재정)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면서 향후 5년 간 달성할 목표로서 다섯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첫째,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둘째, 세계 10위 이내의 경기력 유지를 통한 국위 선양, 셋째,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발전 및 지역균형 발전, 넷째, 국제체육교류의 실질화로 국가 이미지 제고, 다섯째,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로 남북 화해 분위기 구축 등이다. 특히 2005년부터 본격화한 ‘한국형 스포츠클럽 육성’과 관련한 정책 내용(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이 처음으로 이 계획에 반영되면서, 향후 스포츠클럽 중심의 한국 스포츠 생태계 조성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표 1-4. 참여정부(2003~2008)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주요 정책과제

부문별 목표	추진내용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 확충</li> <li>•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li> <li>•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li> <li>• 과학적 국민체력관리시스템 구축</li> <li>• 새로운 레저스포츠 발전방안 마련</li> <li>• 생활체육지도 인력의 양성 및 활용</li> <li>• 생활체육 인식 제고 및 추진체제 강화</li> </ul>

부문별 목표	추진내용
과학적 훈련지원을 통한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선수 발굴·육성 체계 확립</li> <li>• 전문체육시설 확충</li> <li>• 국내경기대회의 활성화</li> <li>• 전문체육단체 자율성 및 재정자립 기반 강화</li> </ul>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li> <li>•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li> <li>• 스포츠산업 진흥 관련 법적 기반 마련</li> </ul>
국제체육교류 협력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선수권대회 등 종목별 주요 국제대회의 유치</li> <li>• 국가 간 체육교류 협력 내실화</li> <li>• 체육을 통한 민족화합 기반 조성</li> <li>• 스포츠 반도핑 활동 활성화</li> </ul>
체육과학의 진흥 및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의 학문적 연구 활동 지원</li> <li>• 체육종합정보체계 구축</li> </ul>
체육행정시스템의 혁신과 체육진흥재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정책 추진체제의 체계화</li> <li>•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조성</li> </ul>

※ 출처: 문화관광부(2003).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서울: 문화관광부.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는 여섯 개 부문의 총 21개 과제, 146개 사업이 포함되었다. 이들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별·연령·계층·지역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 쉽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 학교·생활·전문체육 체계화·선진화, 체육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체제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체육의 과학화 및 정보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체육협력 강화,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 활성화 정책도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전략으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체육 정책 수립 및 집행, 체육단체 등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한 분권정책 방향이 설정되었다. 더불어 2005년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함께 문화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었으며, 장애인체육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 다. 이명박 정부(2008~2013)의 체육정책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와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 개막, 주5일 근무·수업제 시행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과 스포츠, 관광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시기에 탄생했다. 이에 따라 체육정책 목표 역시 <표 1-5>의 『문화비전 2008~2012』처럼 ‘문화국가의 위상확립을 통한 선진 국가로의 성장’으로 설정되었다.

표 1-5. 이명박 정부 문화비전 2008~2012 체육부문 주요 정책과제

부문별 목표	추진내용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li> <li>체육인력 활용 제고 및 국민체력 향상</li> <li>맞춤형 체육복지 구현</li> <li>전통무예 지정 및 육성 보급 강화</li> <li>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활용 제고</li> <li>레저스포츠 시설·공간 확충</li> </ul>
체육 친화적 교육환경 및 교육 친화적 체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기본체육활동 기반 조성</li> <li>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li> <li>선수 인권보호 체계 구축</li> <li>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 병행 환경조성</li> </ul>
함께 누리는 체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li> <li>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li> <li>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 관리</li> <li>소수자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 활동 전개</li> </ul>
세계 속의 스포츠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 강국 이미지 지속</li> <li>스포츠 외교인력 양성 및 국제 활동 강화</li> <li>태권도의 세계화</li> <li>선진 스포츠도핑 방지시스템 확립</li> </ul>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스포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 강화</li> <li>스포츠용품 고부가가치화 및 U-스포츠 사회 구축</li> <li>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li> <li>민간 체육시설의 이용환경 개선</li> </ul>
전문체육 및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2 런던하계올림픽대회 대비 국가대표선수 체계적 양성 및 훈련의 과학화</li> <li>우수선수 자원의 확대 및 육성시스템 강화</li> <li>비인기 종목 활성화</li> <li>스포츠 의과학 및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li> <li>육상진흥 토대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 이행</li> <li>전문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li> </ul>
체육행정 시스템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단체의 조직 및 기능 선진화</li> <li>선진형 체육 법·제도 정비</li> <li>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li> </ul>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08). 문화비전 2008~2012: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에서 주목할 정책은 ‘신나는 한국인, 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제시한 ‘15분 프로젝트’이다. ‘15분 프로젝트’는 집에서 문을 열면 15분 거리 안에 원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세부 실천과제도 제시되었는데, 여기에는 체육 친화적 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기본체육 활동 기반 조성 과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정책이 포함되었다. 더 나아가 전국대회

운영제도 개선과 선수인권 보호체계 구축 및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 병행 환경 구축 역시 주목할 만한 정책이었다.

#### 라. 박근혜 정부(2013~2017)의 체육정책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스포츠와 운동을 통한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지향하면서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설정하였다. 체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스포츠 참가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세우면서 다음의 <표 1-6>에서처럼 국정목표 내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1-6. 박근혜 정부 체육 관련 주요 국정목표

부문별 목표	추진내용
학교교육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및 중·고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및 우수 스포츠클럽 지원</li> <li>학교 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체육활동 여건 개선</li> </ul>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정 2% 달성</li> <li>예산과 기금재원을 균형 있게 확충</li> </ul>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li> <li>체육시설 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청소년 체육교실 등 확대</li> <li>공공문화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한 개보수 지원 및 어울림 스포츠센터 건립</li> </ul>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스포츠교류 정례화 추진</li> <li>개발도상국 스포츠지도자 및 선수 초청사업 등 문화 ODA 확대</li> </ul>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통합콜센터(#7330) 도입</li> <li>전 국민 스포츠·체력 인증제 도입</li> <li>종합형스포츠클럽 설립 추진</li> <li>국가대표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 및 학교스포츠강사 처우개선, 체육인 진로지원</li> <li>태릉, 태백, 진천국가대표선수훈련장 효율적 기능 분담</li> <li>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li> </ul>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부가 가치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 전통문화 체험, 레저·스포츠, 생태기반관광, IT 융·복합 관광)</li> </ul>

※ 출처: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자료집.

박근혜 정부 체육정책의 부문별 목표를 살펴보면 체육과 문화를 포괄한 정책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체육 활성화와 함께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을 기치로 내건 ‘문화다양성 증진’ 및 ‘문화교류와 협력 확대’를 목표로 세운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스포츠를 활성화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는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충하고 체육인 복지를 강화하며,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수립되었다. 이와 같은 스포츠 정책은 다음의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포츠

비전 2018』을 통해 정부 출범 이후 5년의 스포츠 정책 청사진으로 구체화되었다.

『스포츠비전 2018』은 기존의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과 같은 구분법을 지양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손에 닿는 스포츠(생활체육으로의 접근성 제고)’,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스포츠 저변 확대)’,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스포츠산업 활성화)’라는 형식을 취하며, 세 가지 주요 추진전략 및 18개의 구체적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했다. 이들 과제는 궁극적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을 2017년까지 60%로 늘리고, 엘리트스포츠의 세계 상위 경기력을 유지하며 국제 스포츠계 입지를 강화할 목표와 함께, 스포츠산업 규모(17년까지 53조 달성) 및 일자리(17년까지 27만 개)를 늘리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지향하였다.

표 1-7. 스포츠비전 2018 세부 추진과제

전략	세부추진과제
손에 닿는 스포츠 ↓ ‘스포츠로 사회를 바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형스포츠클럽 조성 및 다양한 종목의 지도자 및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li> <li>• 체육시설 배치계획 수립 의무화로 시설배치 효율성 제고</li> <li>• 생활체육 원스톱 정보 제공 및 체육시설 지도 구축: 민간에 정보개방 확대</li> <li>• 국민체력인증제 도입: 거점체력센터에서 의료·영양·건강·체력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li> <li>•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및 2015년 체육지도자 자격개편 대비 지도자 전문성 강화</li> <li>• 생애주기 대상별 맞춤형 참여 확대 유도 및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교실 지원 확대</li> </ul>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 ‘스포츠로 국격을 바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영재 육성·확대 및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선수 확대</li> <li>• 체육중점학교 운영 및 과학적 훈련지원, 운동부지도자 교육 강화, 진로교육 확대</li> <li>• 지역별 스포츠과학거점센터 중심의 과학화 지원대상 확대</li> <li>• 국제스포츠전문인재 양성 및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진출 확대</li> <li>• 국제경기대회 등을 계기로 남북교류 확대, 개발도상국 스포츠지원 확대 및 드림프로그램 지원 확대, 태권도 시범 파견확대</li> <li>• 국제대회 유치기준 및 국고지원기준 강화 및 국제대회 성공개최 준비</li> </ul>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 ↓ ‘스포츠로 미래를 바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 융·복합 시장 창출: 개인 스포츠활동정보 DB화 및 실감형 가상스포츠콘텐츠 개발 지원</li> <li>• ‘개방형 중계사이트’ 구축 및 컨슈머리포트 발간</li> <li>• ‘스포츠기업 확인제’ 도입, ‘창업지원센터’ 지원 및 ‘일자리지원센터’ 운영</li> <li>• 경기장 임대, 위탁운영 및 프로시민구단 지원 법적근거 마련, 스포츠대리인제도 도입</li> <li>• ‘명품스포츠이벤트’ 선정 지원, 레저스포츠 시설·운영기준 마련</li> <li>• 무형자산 가치평가체계 마련 및 금융기관 협약·대출 지원, 마케팅업 전문화 지원</li> </ul>
공정한 스포츠 ↓ ‘스포츠를 바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 경기단체 운영규정 전면개선 및 평가 환류 강화</li> <li>• ‘스포츠 공정위원회(가칭)’ 설치</li> </ul>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3). 스포츠비전 2018.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3) 문재인 정부(2017~2022)의 체육정책

2017년 5월 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이 이양되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체육특기자 입시전형 개선, 체육인 복지 증진과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스포츠 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지원, 남북체육교류 재개 등의 내용을 계획하였다.

표 1-8. 문재인 정부 체육정책

부문별 목표	추진내용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공공체육시설확충 및 스포츠클럽 지원</li> <li>•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li> <li>•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li> </ul>
체육인 복지 증진 및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인복지법 제정 및 전담기관지정</li> <li>•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li> <li>• 스포츠공정성 강화 및 체육단체 자율성 강화 지원</li> </ul>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19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 범정부 지원 대책 추진</li> <li>•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주요 계기 행사 지원을 통해 올림픽 붐 조성 및 국민 참여 제고</li> <li>•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의 차질없는 준비 및 운영</li> </ul>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및 창업기업 육성</li> <li>• 지역스포츠 산업 육성</li> <li>• 은퇴선수배치를 포함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li> <li>• 은퇴선수 취업지원 전문성 강화</li> </ul>
체육특기자 입시 전형의 획기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습권 보장</li> <li>• 체육중점학급 운영 추진 및 학교체육진흥회 설립('20.03. 완료)</li> <li>• 초·중·고 학생선수 참가 학생체육축제 개최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li> </ul>
체육 분야 남북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권도 경쟁력 제고 및 올림픽 종목유지 활동 지원</li> <li>• 태권도 문화콘텐츠 개발</li> <li>• 종목별 합동훈련 등 남북 체육교류활동 추진</li> </ul>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2021)

정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부문에서는 ‘국민 스포츠’의 확산을 위해 유아, 노인, 청소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스포츠 확대와 초등학교 생존 수영 의무화 추진, 지역 단위 공공스포츠클럽 도입과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및 공공기관 체육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확대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둘째,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부분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기능 강화에서부터 체육단체 자율성 보장 방안, 체육인복지법 제정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세부과제가 담겼다. 셋째,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관련하여, 12개 경기장대회시설과 개·폐회식장, 올림픽플라자, 선수촌, 미디어촌, 광역교통망 준공 등 시설 건립 완료를 꾀하였고,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하는

한편 대회운영, 홍보 및 입장권 마케팅, 개최도시 수송교통 및 도시환경 개선 등 범정부 지원 대책도 수립되었으며 2019년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넷째, 스포츠산업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부문에는 스포츠기업 확인제 도입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은퇴선수 취업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의무화 도모, 우수 스포츠 기업을 선별하는 지원을 하는 정책 등이 포함되었다. 다섯째, 체육특기자 입시전형의 획기적 개선 부문은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 양성을 목표로 체육특기자 수업참여 보장 및 학사관리 강화, 최저학력 이수, 선수 생애 관리제 도입, 학교체육진흥회 설치(2020년 3월 완료)와 학생 체육대회 분리개최 추진 등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의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여섯째, 체육 분야 남북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 부문에는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여를 유도하고, 태권도 경쟁력을 높이며, 종목별 및 분야별 남북 체육 교류 추진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담겼다.

이와 같은 초기 문재인 정부의 체육정책(공약)은 2018년에 『2030스포츠비전』이라는 종합 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체육정책은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기조로 삼았다. 다음의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스포츠비전』은 ‘신나는 스포츠’, ‘함께하는 스포츠’, ‘자랑스러운 스포츠’, ‘풀뿌리 스포츠’로 구성된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0가지 핵심과제와 25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지금까지 단절되어 운영되어 오던 한국 스포츠 시스템을 스포츠 클럽 중심의 선순환 체계로 변화시키려는 기본방향과 방안들이 포함되었다.

표 1-9. 2030스포츠비전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추진전략	10대 핵심과제	25개 세부과제
신나는 스포츠	I. 평생 동안 즐기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1) 3세부터 시작하는 스포츠 활동 습관화 (2) 청소년의 스포츠 경험 다양화 (3) 100세까지 이어지는 스포츠 활동 일상화
	II.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	(4)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스포츠시설 (5) 스포츠시설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III. 우수 체육지도자에게 배우는 스포츠 강습	(6) 선수·지도자가 인정받는 사회 여건 조성 (7) 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시스템 선진화
함께하는 스포츠	IV. 우리 동네 스포츠클럽	(8) 스포츠클럽 지원 체계 개선 (9) 스포츠클럽 생태계의 다양화 (10) 스포츠클럽 기반의 전문선수 육성체계 구축

추진전략	10대 핵심과제	25개 세부과제
자랑스러운 스포츠	V. 소외 없이 모두가 함께 하는 스포츠	(11) 소외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12) 장애인스포츠 서비스 편리성 강화
	VI.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평화 스포츠 시대	(13) 지속가능한 남북 스포츠 교류 기반 마련 (14) 남북 스포츠 교류 복원 및 확대
	VII. 공정하고 도전적인 스포츠 문화	(15) 스포츠 공정 문화 조성 (16) 선수 육성 체계 강화
자랑스러운 스포츠	VIII. 국격을 높이고 우호를 증진하는 국제 스포츠	(17) 국제스포츠교류 법·제도 기반 공고화 (18) 한국 특성화 국제교류 사업 개발 (19) 전략적 국제교류 확대
	IX. 경제성장을 이끄는 스포츠산업	(20) 스포츠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신시장 창출 (21) 국내 스포츠기업 성장 동력 강화 (22)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 조성
플뿌리 스포츠	X. 민주적 거버넌스	(23)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24) 체육단체 역량 및 책임성 강화 (25) 미래지향적 법령체계 개편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30스포츠비전.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첫 번째 추진전략인 ‘신나는 스포츠’에서는 프로그램과 시설, 지도자의 세 축을 바탕으로 유소년의 스포츠 습관화, 청소년들의 스포츠 경험 다양화, 100세까지 스포츠를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되었고, 스포츠시설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지도자의 효율적 배치와 효과적 양성을 도모할 선진화된 시스템 마련이라는 내용도 함께 다루어졌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들이 신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추진전략인 ‘함께하는 스포츠’는 동네 주민과 함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남과 북이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지향하고자 만들어져 관련 과제가 포함되었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스포츠클럽이 포함된 스포츠클럽 생태계 조성, 지금까지 스포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외계층들을 위한 편리한 체계 구축, 냉각기에 있던 남북체육 교류 활성화 등의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가 이 추진전략에 포함되었다.

세 번째 추진전략으로 설정된 ‘자랑스러운 스포츠’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향하고자 전문체육, 스포츠 외교, 스포츠산업 분야를 다루었다. 세부과제로는 스포츠 분야의 공정성 문제부터 국제스포츠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기반 공고화, 국내 스포츠기업 성장 동력 강화 및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하여 기존의 스포츠 시장을 확대할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정책까지, 총 여덟 개가 포함되었다.

마지막 추진체계로서의 ‘민주적 거버넌스’에는 향후 스포츠 복지 시대의 공고화를 위해

구축되어야 할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자생적 운영이 가능토록 체육단체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안이 포함되었다. 덧붙여, 다소 비체계적으로 발의되어 시행되고 있는 여러 체육 관련법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스포츠기본법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작업 역시 ‘풀뿌리 스포츠’로 명명된 추진전략의 세부과제로 선정되었다.

### 3. 중앙정부 체육조직 변천

#### 1) 체육조직 태동기

##### 가. 1980년 이전의 체육조직

우리나라 체육행정 조직은 1945년 8·15광복과 함께 시작된 미군정기에 태동하였다. 미군정 당국은 1946년 3월 29일부터 문교부 ‘교화국’ 내 체육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10일 교화국 명칭과 조직을 ‘문화국’으로 개편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체육 업무는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에서 담당했는데, 당시 배치인원은 단 4~5명이었다. 이러한 체육조직이 5·16 이후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1961년 10월 2일, 문화국에 있던 체육과가 ‘체육국’으로 승격되면서 인원 20명, 예산 1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1963년 12월 14일 제3공화국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문예체육국’ 내 체육과로 환원되었다가 다시 1968년 7월 24일 문교부 문화예술행정이 문화공보부로 이관되며 ‘사회교육국’으로 변경되었다.

1970년 8월 31일, 체육국 신설을 계기로 종전 체육과는 ‘국민체육과’와 ‘학교체육과’로 분리되었다. 1973년 3월 9일에는 여기에 ‘학교급식과’가 추가되어 총 3개 과로 체육국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후 1979년 3월 19일에는 문교부 직제 개정으로 체육국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3과가 체육과, 학교보건과, 체육교류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1981년 11월 2일에 체육국이 ‘사회체육국’을 통합하여 ‘체육국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학교체육과, 국민체육과, 국제경기과, 교육협력과, 재외국민교육과의 5과 체제로 정비된다.

##### 나. 1980년대 체육조직

1980년대는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체육조직이 본격적으로 현재의 틀을 갖춰가기 시작한 시기였다.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1988년 하계올림픽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최종 확정되었고, 그 해 11월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1986서울하계아시아경기대회유치까지 결정되었다. 정부는 두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하고자 1982년 3월 20일 ‘체육부’를 신설한다. 체육부는 발족 당시 기획관리실, 체육진흥국(체육정책과, 사회체육과, 학교체육과, 체육시설과), 체육과학국(기획과, 지도훈련과, 조사연구과), 국제체육국(지원총괄과, 국제경기와, 해외협력담당관)을 두면서 이전과는 규모가 다른 ‘1실 3국 10과 4담당관’의 체계를 갖추게 된다. 체육부 전체 정원은 총 187명이었다. 이후 1987년까지 다섯 차례의 직제 개편으로 소폭의 변동은 있었으나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이 체계를 유지해 갔다. 이후 1988년 6월 18일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도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심의관)이 신설되면서 체육행정은 청소년 행정과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었고, 청소년국 신설에 따라 체육부 정원은 225명으로 증가하였다.

## 2) 체육조직 형성기

### 가. 1990년대 체육조직

우리나라 체육조직의 형성기에는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을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들이 만들어졌다. 1990년 2월 12일 체육진흥국 내의 ‘사회체육과’가 ‘생활체육과’로 개칭되었고, 학교체육과가 폐지됨과 동시에 ‘사업관리과’가 신설되었으며, 체육과학국은 체육지도국으로 개칭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체육업무 중 급식관련 업무는 1989년 발표된 행정개혁위원회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에 따라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이런 변화에도 여전히 체육관련 조직은 체육진흥국(생활체육과, 사업관리과, 체육시설과), 체육지도국(조사기획과, 훈련과, 지도육성과), 국제체육국(지원총괄과, 국제경기와, 해외협력담당관) 체제로 유지되었다.

사회체육과에서 ‘생활체육과’로의 개칭은 사회 각 기관 중심의 체육 활성화 정책에서 개별 국민의 일상생활 속 체육 활성화 지원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1990년 7월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진흥 세부 추진계획인 ‘호돌이 계획’은 이 전환을 잘 보여준다. 이 계획에 따라 1990년 9월 10일, 청소년국이 1실 2관 6과의 청소년정책조정실(청소년기획관, 청소년협력관, 청소년기획과,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지도과, 청소년교류과, 시설기금과, 홍보협력과)로 확대 및 개편되었고, 같은 해 12월 27일에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개칭되었다.

김영삼 정부로 들어오면서 1993년 3월 6일,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는 문화체육부로 통합

되며 체육정책국(체육기획과, 생활체육과, 체육시설과), 체육지원국(체육과학과, 지도육성과, 훈련지원과), 국제체육국(협력총괄과, 국제경기와, 해외협력과)의 3국 9과 체제를 갖추기에 이른다. 이후 1994년 5월 4일, 해외협력과가 ‘체육교류과’로 개칭되고, 같은 해 5월 16일에 학교체육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전체 체육조직은 3국 9과 체제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1994년 12월 23일, 문화체육부내의 관광업무가 이관되고 체육지원국이 폐지되면서, 최종적으로 체육행정조직은 체육정책국(체육기획과, 생활체육과, 지원육성과, 체육시설과)과 국제체육국(협력총괄과, 국제경기와, 체육교류과)의 2국 7과 77명으로 축소되었다.

IMF경제위기로 특징되는 김대중 정부로 들어오면서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1998년 2월 28일, 문화체육부는 ‘체육’이 빠진 ‘문화관광부’로 개칭되면서 체육정책국과 국제체육국이 ‘체육국’으로 일원화되고, 기존 체육기획과와 협력총괄과는 ‘체육정책과’로 통합되었다. 또한 ‘생활체육과’는 기존 체계를 유지한 채 지원육성과와 체육시설과는 ‘체육지원과’로, 국제경기와와 체육교류과는 ‘체육교류과’로 통합되면서, 결국 체육담당부서는 기존 2국 7과 77명에서 1국 4과 56명으로 축소된다. 이후 1999년 5월 24일에는 체육정책과와 체육교류과는 그대로 둔 채, ‘체육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통합하여 1국 3과 40명으로 행정조직 및 정원이 더욱 감소하였다.

#### 나. 2000~2007년

2000년대 우리나라 체육활동 환경은 급속히 변했다. 주5일제가 도입되는 등 노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늘면서 생활체육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여가시간을 건전한 체육활동 활용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다양해지고 전문화된 생활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생활체육과(2002년 3월 9일)’을 재설치하였다. 또한 스포츠여가산업 확대에도 대응하고자 또 한 번의 직제개편을 실시, ‘스포츠여가산업과(2004년 11월 11일)’를 새롭게 설치했다. 이와 함께 기존 체육진흥과는 폐지되면서, 기존 업무 중 학교운동부와 전국체전 업무는 ‘생활체육과’로, 태권도공원 조성 및 프로단체 육성 업무는 ‘스포츠여가산업과’로, 국가대표선수 육성 및 대한체육회 지도 감독 업무는 ‘국제체육과’로 이관되었다. 2005년 12월 15일에는 장애인체육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되면서 ‘장애인체육과’가 신설, 장애인체육진흥 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2006년 7월 25일 기존의 ‘과’ 단위는 ‘팀’ 단위로 재편되었다.

### 3) 체육조직 발전기

#### 가. 2008년 이후의 체육조직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2008년 2월 29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내부의 ‘팀’ 단위는 다시 ‘과’ 단위로 개편된다. 2008년 12월 31일 생활체육과가 ‘체육진흥과’로, 장애인체육과가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편되었다.

체육진흥과의 개편으로 기존 생활체육업무 외에 국가대표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 생활체육과 함께 전문체육을 체육진흥과에서 맡게 되었다. 장애인문화체육과도 기존 장애인 체육 업무 외에 장애인 문화 업무를 새롭게 추가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였다. 이후 2009년 5월 4일 체육진흥과와 스포츠산업과를 체육진흥과로 통합하고, 장애인문화체육과는 장애인 문화체육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장애인문화체육과(2010년 7월 2일)로 복원되었다.

2013년부터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애인문화체육과가 ‘장애인체육과’(2013년 3월 23일)로 변경되고 그 이후에 ‘스포츠산업과’가 신설되었다. 그러면서 2014년, 체육국을 관광체육레저정책실 내 ‘체육정책관실’로 개칭하면서 ‘1정책관 5과 52명’의 운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15년에는 관광체육레저정책실이 ‘체육관광정책실’로 개칭되었고, 평창동계 올림픽대회 지원 및 준비를 위한 ‘체육협력관’ 및 ‘평창올림픽지원과’가 신설되었다. 체육협력관은 기존 체육정책관실 산하에 있던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 그리고 신설된 평창 올림픽지원과가 더해져 총 3개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체육정책관 산하는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로 개편되었다. 정부에 두 개 이상의 체육업무 담당국 조직이 운영된 것은 1998년 문화관광부 내 체육정책국과 국제체육국이 체육국으로 통합된 이후 17년 만이었다.

하지만 체육정책관실은 2017년에 들어와 다시 ‘체육국’으로 개편되면서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를 두기 시작했고, ‘체육협력관’은 국제체육과와 장애인체육과, 그리고 한시적인 조직인 ‘평창올림픽지원단’을 설치하여, 대한체육회로 통합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과 체육 분야 일자리 창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의 업무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표 1-10. 정부 체육부처 연혁

○ 1982. 03. 20.	체육부 신설(1실 3국 10과 3관 4담당관 187명) - 기획관리실, 체육진흥국, 체육과학국, 국제체육국
○ 1990. 12. 27.	체육부 ⇒ 체육청소년부로 개칭
○ 1992. 01. 01.	한국마사회 운영의 지도·감독업무 인수
○ 1993. 03. 06.	문화체육부 발족, 3국 9과 98명 - 체육정책국, 체육지원국, 국제체육국
○ 1994. 12. 23.	3국 9과 98명 ⇒ 2국 7과 77명, 체육지원국 폐지
○ 1998. 02. 28.	문화관광부 발족, 2국 7과 77명 ⇒ 1국 4과 56명, 국제체육국 폐지
○ 1999. 05. 24.	1국 4과 56명 ⇒ 1국 3과 40명
○ 2001. 01. 29.	한국마사회 업무 농림부 이관
○ 2002. 03. 09.	생활체육과 신설 1국 4과 45명
○ 2004. 11. 07.	스포츠여가산업과 신설, 체육진흥과 폐지
○ 2005. 12. 15.	장애인체육과 신설 1국 5과 52명
○ 2006. 07. 25.	'과' 명칭이 '팀'제로 변경 1국 5팀
○ 2008. 02. 29.	문화체육관광부 신설, '팀'제가 '과'제로 변경 1국 5과 50명
○ 2008. 12. 31.	생활체육과 ⇒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과 ⇒ 장애인문화체육과로 명칭 변경
○ 2009. 05. 01.	직제개편(1국 3과 1팀 50명), 체육진흥과와 스포츠산업과 ⇒ 체육진흥과로 통합, 장애인문화체육과 ⇒ 장애인문화체육팀으로 명칭 변경
○ 2010. 07. 01.	장애인문화체육팀 ⇒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편 1국 4과 52명
○ 2013. 03. 23.	장애인문화체육과 ⇒ 장애인체육과로 개편 1국 4과 51명
○ 2013. 12. 13.	스포츠산업과 신설 1국 5과 55명
○ 2014. 10. 23.	체육국 ⇒ 관광체육레저정책실 내 체육정책관으로 개칭 1정책관 5과 52명
○ 2015. 01. 06.	관광체육레저정책실 ⇒ 체육관광정책실로 개칭, 체육협력관 및 평창올림픽지원과 신설, 1실 4관 12과 126명
○ 2016. 03. 30.	체육관광정책실 ⇒ 체육정책실로 개편, 1실 2관 6과 59명
○ 2017. 09. 04.	체육정책실 ⇒ 체육국으로 개편, 체육국 내 체육협력관 신설. 평창올림픽 지원과를 한시조직인 평창 올림픽지원단으로 변경, 2과 15명(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 8명,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 7명)
○ 2018. 08. 21.	스포츠유산과 신설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2021)

#### 나. 2017년 이후의 체육조직

기존 조직구조를 유지하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조직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몇몇 과가 새롭게 설치되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평창올림픽 지원단은 해체되고, 그 자리에 새롭게 '스포츠유산과'가 설치되었다. 이런 변화로 인해 2019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내 체육협력관과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가, 체육협력관에는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 스포츠유산과가 속한 구조로 개편되었다.

체육국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등 체육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한다. 각종 스포츠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체육유공자 지원 및 국가대표선수 육성·지원,

체육인 복지 및 직장을 포함한 지역생활체육 진흥과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전국체육대회 및 프로운동경기 개최 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민간체육시설 활성화, 스포츠산업 진흥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 국제체육 교류 및 국제대회 개최지원, 장애인 체육환경 개선 업무를 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체육협력관’은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국제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 국가 간, 국제기구 간 체육교류, 장애인 체육 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태권도 진흥 및 세계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유산 계승 및 후속조치 등을 담당한다.

## 제2절 체육행정조직 및 단체

우리나라 체육행정조직은 중앙정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행정조직의 경우엔 17개 시·도의 체육국 및 체육담당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체육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9항의 ‘체육단체’ 정의에 따라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뜻한다. 여기에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지부 및 지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단체(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및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프로스포츠 단체), 관련법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태권도진흥재단, 전통무예단체, 사업자단체, 체육시설업협회, 각종 대회조직위원회 등)가 포함된다.

### 1. 중앙정부 체육행정조직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체육행정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조직은 ‘체육국’ 내 6과(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 스포츠유산과)로 구성된다. 이 조직에 있어 특이한 점은 6개 과 중, ‘체육협력관’ 하에 국제체육과와 장애인체육과, 스포츠유산과를 배치하여 운영한다는 점이다.



그림 1-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조직도  
(문화체육관광부, 2021)

체육국이 담당하는 업무는 체육진흥정책 종합계획 수립에서부터, 국가대표선수 육성, 체육인 복지, 생활체육 활성화,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 스포츠산업 활성화, 국제체육 교류,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등으로 각 과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 1) 체육정책과

체육정책과는 국내 체육 환경 선진화를 위한 업무에 집중한다. 대표적으로,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체육종합계획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체육관련 통계자료 수집·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체육정보화 제반 사항,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등의 업무다. 또한, '체육인 복지 지원'과 체육주간 운영, 체육유공자 지정 및 지원 사업도 담당한다. 덧붙여,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 업무를 중심으로 경륜·경정 시행 사업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도 관리 감독하고,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체육 관련 단체 설립 및 육성·지원 사항, 국가대표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일반적 관리에 관한 사항과 체육과학 연구기관 육성·지원, 스포츠 공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등도 체육정책과의 대표적 업무다.

### 2)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과 실행을 담당한다. 대표적으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 생활체육종목 육성,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과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업무에서부터,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 국민체력증진 관련 사항,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추진,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바우처 지원,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선수·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지원,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 개최 지원, 전국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 개최 지원, 국제교류, 레저스포츠 시설설치 이용 활성화 업무에 이르기까지가 체육진흥과의 주요 업무다.

### 3)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에서,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구 육성·

지원,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또한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체감형 가상스포츠, 융·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 용품·시설·서비스 품질 비교 정보도 제공해준다. 뿐만 아니라, 민간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 스포츠 관련 용품·용구·기자재 생산 지원 및 장려,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 프로운동경기 진흥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스포츠시설 안전 관련 업무도 스포츠산업과에서 맡는다.

#### 4) 국제체육과

국제체육과는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에서부터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 국가 간 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담당, 남북 체육교류 및 협력,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보급, 선수 금지약물 투여(도핑) 방지 등이 핵심 업무다.

#### 5) 장애인체육과

장애인체육과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에서부터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체육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생활지도사 배치 및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힘쓴다. 또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과 장애인체육지도사 등 전문 인력 양성·배치 및 국가대표 장애인선수 육성 등 장애인 전문체육 업무, 장애인 체육 국제교류의 활성화 및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국제체육 업무,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관련 업무 등을 장애인 체육과가 담당한다.

#### 6) 스포츠유산과

스포츠유산과는 스포츠유산 진흥 및 유산 창출과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대표적으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지원, 태권도 세계화 및 교육연구, 태권도 산업화 및 문화 콘텐츠 육성이 있으며,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 태권도 진흥재단과 국기원 관련 업무, 국제경기대회 시설 사후활용 등 스포츠유산 창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에

관한 사항, 씨름·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 시행 및 관련단체 육성 지원 등을 스포츠유산과가 담당한다.

## 2. 지방자치단체 체육조직

### 1) 지방자치단체 체육정책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총 17개로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들은 각각 총 228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아래의 <표 1-11>처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1-11. 지방자치단체 체육발전 계획 수립 현황(2003~2021)

지역명	연도	계획명
서울	2012	2020체육진흥 기본정책
	2018	서울체육 중기 발전계획
부산	2017	부산광역시 체육발전 종합계획
대구	2008	대구 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스포츠로 행복한 일류 대구 실현
인천	2010	인천광역시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광주	2007	광주 체육진흥 5개년 계획
	2019	광주 체육진흥 5개년 계획
대전	2016	대전 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울산	2018	울산 체육발전계획 수립(2018~2023)
세종	2016	세종시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경기	2004	경기도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2020	경기도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 2030 스포츠비전 경기도 중장기 체육진흥기본계획 (2019.07.~2020.01.)
강원	2015	강원 체육발전 5개년 계획
충북	2017	충북 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충남	2018	제2차 충청남도 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전북	2019	전라북도 체육진흥계획
전남	2015	전남 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수립된 계획 없음

※ 출처: 각 광역자치단체별 내부자료 (2021)

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 법 이후 1952년 4월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1961년 9월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지방자치법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으로 다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 그 후 1991년 지방선거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6월 27일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하는 4대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체육발전 계획은 경기도가 2004년 『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며 각 지자체별로 시작되었다. 그 뒤를 이어 광주광역시가 2007년 『체육진흥5개년계획』을 세웠고, 2008년에는 대구광역시가 『대구체육발전중장기계획』을, 2010년에는 인천광역시가 『체육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2012년에 서울특별시가 『2020 체육진흥 기본계획』을, 2015년에는 강원도에서 『체육발전 5개년 계획』과 전라남도에서 『체육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어서 2016년 대전광역시의 세종특별자치시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2017년 부산광역시 『체육발전 종합계획』과 충청북도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2018년 울산광역시 『체육발전 계획수립』과 충청남도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전라북도 『체육진흥계획』 그리고 2019년 광주광역시 『체육진흥5개년계획』순으로 관련 계획이 수립되었다. 2020년에는 경기도에서 『2030 스포츠비전 경기도 중장기 체육진흥 기본계획』이 발간되어, 중앙정부의 『2030 스포츠비전』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경기도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주요 사업계획이 마련되었다.

## 2) 지방자치단체 체육행정조직

광역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체육국 등의 국 단위 수준에서 체육진흥과, 체육정책과, 체육지원과, 체육과, 스포츠산업과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과’를 운영한다. 하부 단위로 체육정책,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산업 등을 전담하는 ‘팀’을 두는데, 이들 국의 평균 근무 인원은 약 10~30여 명 내외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역시 다양한 형태의 체육조직을 운영한다. 그 명칭은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생활체육과, 체육진흥과, 체육과, 평생교육과, 교육체육과, 체육청소년과, 건강체육과 등으로 이루어졌고, 평균 10명 내외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 체육시설관리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체육시설관리·운영을 하는 곳도 있다.

〈표 1-12〉와 〈표 1-13〉에 나타난 것처럼 2021년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전체 행정직 502명, 기술직 360명, 기능직 132명, 계약직 328명으로 총 1,322명이었다.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직 1,542명, 기술직 778명, 기능직 206명, 별정직 45명, 계약직 557명으로 총 3,128명이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총 4,450명으로 2020년 4,410명보다 40명 증가하였다. 2020년 대비 인력구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직은 2,116명에서 2,044명으로 72명 감소하였으나, 기술직은 1,133명에서 1,138명으로 5명 증가하였다. 기능직은 313명에서 338명으로 25명 증가하였고, 별정직은 39명에서 45명으로 6명 증가하였으며, 계약직은 809명에서 885명으로 76명이 증가하였다.

표 1-12. 광역자치단체 체육행정조직과 인력(2021)

(단위: 명)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sup>1</sup>	기능직 <sup>2</sup>	별정직 <sup>3</sup>	계약직 <sup>4</sup>	
서울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체육정책팀, 전문체육팀, 체육시설팀, 장애인체육팀)	16	3	-	-	1	2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생활체육진흥팀, 생활체육시설팀, 여가스포츠팀)	13	1	-	-	1	15
	관광체육국 올림픽추진과(올림픽총괄팀, 올림픽지원팀, 올림픽협력팀, 체전기획팀, 체전운영팀, 체전협력팀)	20	3	-	-	-	23
	체육시설관리사업소(4과 4팀)	35	59	27	-	5	126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 3개소)	30	72	65	-	30	197
	소계	114	138	92	0	37	381
부산	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체육정책팀, 국제스포츠산업팀, 체육시설팀, 장애인체육팀)	18	3	-	-	-	2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5	48	16	-	2	91
	소계	43	51	16	0	2	112
대구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체육정책,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	16	5	-	-	1	22
	체육시설관리사무소(대구스타디움, 시민운동장, 육상진흥센터)	22	51	-	-	-	73
	소계	38	56	0	0	1	95
인천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체육정책, 생활체육, 체육시설, 스포츠산업, 스포츠교류)	23	6	-	-	-	29
	소계	23	6	0	0	0	29
광주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4개팀)	14	7	-	-	-	21
	광주실내수영장 등 3개소(민간위탁-도시공사)	1	1	15	-	8	25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sup>1</sup>	기능직 <sup>2</sup>	별정직 <sup>3</sup>	계약직 <sup>4</sup>	
	월드컵경기장 등 20개소(민간위탁-시체육회)	76	-	-	-	61	137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 3개소(민간위탁-장애인체육회)	1	1	5	-	-	7
	소계	92	9	20	0	69	190
대전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 생활체육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12	8	1	-	-	21
	시설관리공단	21	37	-	-	130	188
	소계	33	45	1	0	130	209
울산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지원과(체육정책, 생활체육, 체육시설)	9	6	-	-	-	15
	시설공단	7	14	1	-	63	85
	소계	16	20	1	0	63	100
세종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4	-	-	-	-	4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1	2	-	-	-	3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1	3	-	-	-	4
	소계	6	5	0	0	0	11
경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체육행정팀, 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스포츠산업팀, 체육진흥팀, 체육대회 운영팀)	19	7	-	-	1	27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시사격테마파크, 유도회관, 검도회관, 체육회관/민간위탁)	26	-	-	-	20	46
	소계	45	7	0	0	21	73
강원	문화관광체육국 체육과(체육진흥팀)	6	-	-	-	-	6
	문화관광체육국 체육과(생활체육팀)	3	-	-	-	-	3
	문화관광체육국 체육과(체육시설팀)	-	4	-	-	-	4
	문화관광체육국 체육과(국제대회유치팀)	2	-	-	-	-	2
	소계	11	4	0	0	0	15
충북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 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국제체육무예팀)	14	3	-	-	-	17
	소계	14	3	0	0	0	17
충남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체육정책, 체육복지, 체육활동지원, 체육시설지원)	12	2	-	-	2	16
	소계	12	2	0	0	2	16
전북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정책과(체육진흥팀, 생활체육팀, 태권도스포츠산업팀, 체육시설관리팀)	11	4	1	-	1	17
	소계	11	4	1	0	1	17
전남	관광문화체육국 스포츠산업과(체육정책팀, 체육시설팀, 생활체육팀)	10	2	1	-	-	13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sup>1</sup>	기능직 <sup>2</sup>	별정직 <sup>3</sup>	계약직 <sup>4</sup>	
	소계	10	2	1	0	0	13
경북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 체육지원, 장애인체육)	12	1	-	-	-	13
	소계	12	1	-	-	-	13
경남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지원과(체육행정, 생활체육, 스포츠 마케팅, 체육시설관리)	12	4	-	-	1	17
	소계	12	4	0	0	1	17
제주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체육지원팀)	10	3	-	-	1	14
	소계	10	3	0	0	1	14
	총계	502	360	132	0	328	1,322

1. 기술직: 전기·토목·건축·기계
2. 기능직: 사무보조요원 등
3. 별정직: 공무원분류상 별정직으로 채용된 체육지도사
4. 계약직(전문직 포함): 일용계약 등에 따라 채용된 체육전문가  
※ 주: 전국체전준비기획단 등 한시조직은 제외함.  
※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21)

표 1-13. 기초자치단체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단위: 명)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sup>1</sup>	기능직 <sup>2</sup>	별정직 <sup>3</sup>	계약직 <sup>4</sup>	
서울 (25)	종로구 건강도시과(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8	-	-	-	-	8
	중구 동정부과(생활체육팀)	5	-	-	-	-	5
	용산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4	-	1	-	-	5
	성동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5	-	-	-	-	5
	광진구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6	-	-	-	-	6
	동대문구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12	-	-	-	-	12
	종량구 체육청소년과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청소년팀)	13	2	-	-	-	15
	성북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5	-	-	-	-	5
	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생활체육운영팀)	5	1	-	-	-	6
	도봉구 평생체육학습과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6	1	-	-	-	7
	노원구 문화체육과(체육정책팀, 체육시설팀)	9	-	-	-	-	9
	은평구 생활체육과 (체육복지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13	1	1	-	-	15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sup>1</sup>	기능직 <sup>2</sup>	별정직 <sup>3</sup>	계약직 <sup>4</sup>	
서울 (25)	서대문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5	-	-	-	-	5
	마포구	생활체육과 (체육진흥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14	1	-	-	-	15
	양천구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시설팀, 생활체육팀)	8	1	-	-	-	9
	강서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4	-	-	-	2	6
	구로구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11	1	1	-	-	13
	금천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5	-	-	-	-	5
	영등포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9	-	1	-	1	11
	동작구	체육문화과 (생활체육팀, 체육복지팀, 체육시설팀)	13	-	-	-	-	13
	관악구	문화관광체육과(생활체육팀)	5	-	-	-	-	5
	서초구	교육체육과(체육진흥팀, 생활체육팀)	8	3	-	-	1	12
	강남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9	-	-	-	-	9
	송파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5	-	-	-	-	5
	강동구	생활체육과 (체육진흥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11	2	-	-	-	13
	소계			198	13	4	0	4
부산 (16)	중구	행정지원과(구민소통계)	4	-	-	-	-	4
	서구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계)	3	-	-	-	-	3
	동구	문화체육관광과(체육계)	3	-	1	-	-	4
	영도구	행정지원과(체육팀)	4	-	-	-	-	4
	부산진구	문화체육과(체육계)	5	-	-	-	-	5
	동래구	총무국 총무과(체육계)	4	-	-	-	-	4
	남구	문화관광체육과(체육지원팀)	3	-	-	-	-	3
	북구	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	4	-	-	-	-	4
	해운대구	행정지원국 소통협력과	5	-	-	-	-	5
	사하구	문화관광과(체육지원계)	4	-	-	-	-	4
	금정구	행정지원국 총무과(구민지원팀)	5	-	-	-	-	5
	강서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체육진흥계)	4	-	-	-	-	4
	연제구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체육지원계)	5	-	-	-	1	6
	수영구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생활체육계)	4	-	-	-	-	4
	사상구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4	-	-	-	-	4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sup>1</sup>	기능직 <sup>2</sup>	별정직 <sup>3</sup>	계약직 <sup>4</sup>	
부산 (16)	기장군	문화관광과(생활체육팀)	4	-	-	-	-	4
	소계		65	0	1	0	1	67
대구 (8)	중구	관광경제국 문화교육과(여가체육팀)	4	-	-	-	-	4
	동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체육팀)	3	-	-	-	-	3
	서구	자치행정국 문화홍보과(체육지원팀)	3	-	-	-	-	6
		문화회관(국민체육센터팀)	3	-	-	-	-	
	남구	자치행정국 평생교육홍보과(여가체육팀)	4	-	-	-	-	7
		도시창조국 공원녹지과(체육시설팀)	-	3	-	-	-	
	북구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9	2	-	-	-	11
	수성구	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체육지원팀, 체육시설운영팀, 체육시설팀)	10	5	-	-	-	15
	달서구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관광과(체육진흥팀)	5	-	-	-	-	5
	달성군	정책관광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문화체육시설팀)	4	5	-	-	-	9
소계		45	15	0	0	0	60	
인천 (10)	중구	홍보체육실(체육팀)	4	-	-	-	-	4
	동구	문화홍보체육실(체육진흥팀)	4	-	-	-	-	4
	미추홀구	체육진흥과(체육행정팀, 생활체육팀)	7	1	1	-	-	9
	연수구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6	1	-	-	-	7
	남동구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8	4	-	-	-	12
	부평구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8	3	-	-	-	11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체육관광팀, 문화체육시설관리팀)	6	2	-	-	-	8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6	2	-	-	-	8
	강화군	행정과(체육팀)	3	1	-	-	-	4
	옹진군	관광문화진흥과(체육진흥팀)	3	-	-	-	-	3
소계		55	14	1	0	0	70	
광주 (5)	동구	청년체육과(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6	-	-	-	4	10
	서구	체육관광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5	3	1	-	2	11
	남구	자치행정과(체육지원팀)	2	2	-	-	1	5
	북구	체육관광과(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7	1	-	-	-	8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sup>1</sup>	기능직 <sup>2</sup>	별정직 <sup>3</sup>	계약직 <sup>4</sup>	
광주 (5)	광산구	경제문화국 생활체육과 (체육정책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9	4	-	-	-	13
	소계		29	10	1	0	7	47
대전 (5)	동구	관광문화경제국 관광문화체육과 (체육팀)	4	1	2	-	-	7
	중구	총무국 문화체육과(체육담당)	4	1	-	-	-	5
	서구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체육팀, 문화체육시설팀)	6	1	1	-	-	8
	유성구	자치혁신국 문화관광과(건강체육팀)	4	1	-	-	-	5
	대덕구	공동체복지국 문화관광체육과 (건강체육팀, 체육시설팀)	6	-	-	-	1	7
	소계		24	4	3	0	1	32
울산 (5)	중구	혁신교육과 체육지원팀	4	-	-	-	-	4
		중구도시관리공단	1	-	-	-	10	11
	남구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4	1	-	-	-	5
		남구도시관리공단	3	2	2	-	19	26
	동구	문화체육과(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6	1	-	-	-	7
	북구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3	2	-	-	1	6
		북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	5	4	-	-	14	23
	울주군	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4	4	-	-	-	8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6	14	17	35	-	72	
소계		36	28	19	35	44	162	
경기 (31)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 체육시설조성팀, 체육시설관리팀, 스포츠산업팀)	12	9	-	-	-	21
	고양시	교육문화국 체육정책과(체육정책팀, 체육지원팀, 스포츠산업팀, 체육시설팀)	10	6	-	-	-	16
		기획조정실 도시브랜드담당관 (스포츠마케팅팀)	4	-	-	-	-	4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체육정책팀, 생활체육팀, 시설조성팀, 시설운영팀)	9	7	1	-	1	18
	용인시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 체육시설팀, 체육시설운영팀, 스포츠마케팅팀)	14	5	-	-	-	19
	부천시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1팀, 체육시설2팀)	10	8	-	-	-	18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sup>1</sup>	기능직 <sup>2</sup>	별정직 <sup>3</sup>	계약직 <sup>4</sup>	
경기 (31)	안산시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 체육지원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9	6	-	-	-	15
	남양주시	문화교육국 체육과(체육정책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조성팀, 체육시설관리팀)	10	6	-	-	-	16
	안양시	안전행정국 체육과(체육지원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9	4	-	-	-	13
	화성시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건설팀, 체육시설운영팀, 체육시설관리팀)	12	5	-	-	-	17
	평택시	국제문화국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체육시설운영팀)	12	7	2	-	11	32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체육시설운영팀)	1	7	-	-	12	20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문화체육팀)	1	5	1	-	12	19
	의정부시	체육과(체육정책팀, 체육육성팀, 체육시설관리팀, 체육시설팀)	10	8	-	-	-	18
	시흥시	체육진흥과(체육행정팀, 체육시설팀, 체육시설운영팀)	7	7	-	-	1	15
	파주시	문화교육국 체육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시설운영팀, 경기도민체전TF팀)	8	8	-	-	26	42
	김포시	행정국 체육과(체육정책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10	4	-	-	-	14
	광명시	체육진흥과(체육팀, 체육시설팀, 시민체육관팀)	8	5	-	-	-	13
	광주시	경제문화국 체육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시설관리팀)	7	5	-	-	-	12
	군포시	안전행정국 교육체육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5	1	-	-	-	6
	오산시	체육관광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관광팀)	16	1	-	-	-	17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체육행정팀, 체육시설팀)	9	4	-	-	1	14
	양주시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체육시설관리팀)	9	2	-	-	-	11
	안성시	경제도시국 문화체육관광과(체육행정팀, 체육시설팀)	5	3	-	-	-	8
	구리시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 체육진흥팀	3	3	-	-	-	6
	포천시	문화경제국 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 체육행정팀)	3	3	-	-	-	6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sup>1</sup>	기능직 <sup>2</sup>	별정직 <sup>3</sup>	계약직 <sup>4</sup>	
경기 (31)	의왕시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문화체육시설팀)	3	4	-	-	-	7
	하남시	문화체육과(시민체육팀, 체육시설팀)	5	4	-	-	1	10
	여주시	문화교육국 관광체육과 (체육행정팀, 체육시설팀)	3	4	-	-	-	7
	동두천시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3	1	-	-	-	4
		시설사업소(운동장팀)	2	2	1	-	-	5
	과천시	문화체육과(체육팀)	3	1	-	-	-	4
	양평군	교육체육과(체육팀, 체육시설팀)	6	2	-	-	1	9
	가평군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과 (체육팀, 문화체육시설팀)	3	4	-	-	-	7
	연천군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문화체육시설팀)	5	1	3	-	-	9
소계		246	152	8	0	66	472	
강원 (18)	춘천시	기획행정국 체육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스포츠마케팅팀)	9	3	-	-	1	13
	원주시	행정국 건강체육과(건강도시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마을체육팀, 문마체육시설팀, 드림체육관팀)	13	12	-	-	1	26
	강릉시	문화관광국 체육과 (체육행정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올림픽총괄팀)	12	2	1	-	-	15
		체육시설사업소(관리팀, 시설팀)	1	9	1	-	-	11
	동해시	체육위생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4	2	-	-	-	6
	태백시	스포츠레저과(스포츠기획팀, 스포츠레저팀, 스포츠시설팀)	11	4	-	-	14	29
	속초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마케팅팀, 체육시설팀)	4	2	-	-	-	6
	삼척시	자치행정국 체육과(체육기획팀, 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10	1	1	-	-	12
	홍천군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1	5	-	-	-	6
	횡성군	문화체육과(체육육성팀)	2	-	-	-	-	2
		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	-	4	-	-	-	4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4	3	-	-	-	7
평창군	교육체육과(체육진흥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9	4	1	-	5	19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sup>1</sup>	기능직 <sup>2</sup>	별정직 <sup>3</sup>	계약직 <sup>4</sup>	
강원 (18)	정선군	문화관광과(스포츠지원팀)	4	-	-	-	-	4
	철원군	문화체육과(체육마케팅팀, 체육시설팀, 국민체육센터팀)	5	4	-	-	4	13
	화천군	문화체육과(체육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조성팀, 체육시설관리팀)	7	3	-	2	-	12
	양구군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 스포츠마케팅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14	3	-	-	-	17
		시설관리사업단	3	4	-	-	24	31
	인제군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 스포츠마케팅팀)	5	3	-	-	1	9
	고성군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도민체전TF팀)	5	4	-	-	-	9
	양양군	문화체육과(스포츠마케팅팀)	2	1	-	-	-	3
소계		125	73	4	2	50	254	
충북 (11)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교육과(체육진흥팀, 생활체육팀, 교육지원팀)	16	11	-	-	-	27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시설과(관리팀, 시설건설팀, 시설운영팀)						
	충주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 전통무예진흥팀, 체육시설개발팀, 시설관리팀, 조정경기장관리팀)	16	10	-	-	-	26
	제천시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체육지원팀, 시설조성팀, 스포츠마케팅팀)	8	4	-	-	-	12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1팀, 체육시설2팀)	5	8	-	-	11	24
	옥천군	체육시설사업소	7	6	-	-	-	13
	증평군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2	1	-	-	-	3
		시설관리사업소(시설운영팀)	2	3	-	-	-	5
	괴산군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관광과(체육진흥팀)	3	2	-	-	-	5
	음성군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3	-	-	-	-	3
		시설관리사업소(운영팀)	3	1	-	-	18	22
	단양군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4	-	1	-	-	5
	진천군	체육진흥지원단(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국민체육센터팀)	6	8	-	-	1	15
보은군	스포츠산업과(스포츠운영팀, 체육팀, 전지훈련팀, 시설관리팀)	9	6	-	1	-	16	
영동군	시설사업소(체육시설팀)	1	3	1	-	-	5	
	국악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3	-	-	-	-	3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sup>1</sup>	기능직 <sup>2</sup>	별정직 <sup>3</sup>	계약직 <sup>4</sup>	
	소계		88	63	2	1	30	184
충남 (15)	천안시	복지문화국 체육진흥과(체육행정,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체육시설)	10	3	1	-	-	14
	공주시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6	2	-	-	-	8
	보령시	안전행정국 교육체육과(체육지원팀)	3	3	-	-	-	6
		안전행정국 교육체육과(체육시설관리팀)	-	-	-	-	-	0
	아산시	복지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체육행정팀, 체육시설팀, 체육시설관리팀, 종합운동장팀)	13	5	4	-	-	22
	서산시	복지문화국 체육진흥과(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관리팀, 운영팀, 스포츠마케팅팀)	11	7	3	-	-	21
	논산시	동고동락국 문화체육과(체육팀)	2	2	-	-	-	4
	계룡시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체문화체육시설팀)	4	2	-	-	-	6
	당진시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체육정책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지원팀)	7	2	2	-	1	12
	금산군	관광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4	1	-	-	-	5
	부여군	문화체육관광과(체육진흥팀)	3	1	-	-	-	4
	서천군	체육사업소(체육정책팀, 공공체육시설팀, 스포츠마케팅팀)	6	5	-	-	3	14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체육팀)	2	2	-	-	-	4
		공공시설사업소(시설팀)	3	3	-	-	5	11
	홍성군	교육체육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3	3	-	-	6	12
예산군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체육지원, 체육시설)	4	8	3	-	-	15	
태안군	행정안전국 교육체육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4	4	-	-	-	8	
	소계		85	53	13	0	15	166
전북 (14)	전주시	체육산업과(스포츠산업, 체육진흥, 체육시설조성, 체육시설관리)	9	8	-	-	-	17
	군산시	체육진흥과(체육진흥, 운영, 수영장관리, 시설,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스포츠마케팅)	11	8	4	3	4	30
	익산시	경제관광국 체육진흥과(체육진흥계, 시설조성계, 종합운동장계, 체육공원계, 전국대회계)	12	10	3	-	-	25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sup>1</sup>	기능직 <sup>2</sup>	별정직 <sup>3</sup>	계약직 <sup>4</sup>	
전북 (14)	정읍시	복지교육국 교육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팀, 스포츠마케팅팀),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조성팀, 체육시설운영관리팀)	9	4	1	-	1	15
	남원시	자치행정국 교육체육과 (체육진흥계, 체육시설계)	4	6	-	-	1	11
	김제시	경제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체육팀, 시설관리팀)	5	8	-	-	1	14
	완주군	행정복지국 체육공원과 (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4	6	-	-	-	10
	진안군	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3	4	-	-	-	7
	무주군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2	1	-	-	1	4
	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체육팀)	2	2	1	-	-	5
	임실군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2	1	1	-	-	4
	순창군	체육진흥사업소(체육진흥계, 스포츠마케팅계, 체육시설계)	6	4	-	-	1	11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체육진흥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5	6	-	-	-	11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스포츠마케팅팀, 관리팀)	3	4	-	-	-	7
소계			77	72	10	3	9	171
전남 (22)	목포시	교육체육과 (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체전지원팀)	6	5	1	-	1	13
	여수시	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진남관리팀, 망마관리팀)	11	8	3	-	21	43
	순천시	체육진흥과(체육지원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전남체전 TF팀)	15	2	-	-	4	21
		체육시설관리소 (관리팀, 시설팀, 운영팀)	6	5	6	-	18	35
	나주시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관리팀)	8	4	-	-	8	20
	광양시	체육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체육시설 운영1팀, 체육시설 운영2팀)	7	9	3	-	13	32
	담양군	문화체육과(스포츠산업담당)	4	1	7	-	10	22
	곡성군	문화체육과(스포츠산업팀)	2	2	1	-	1	6
	구례군	스포츠산업과(체육진흥팀, 스포츠마케팅팀, 시설관리팀, 시설안전팀)	11	4	16	-	-	31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sup>1</sup>	기능직 <sup>2</sup>	별정직 <sup>3</sup>	계약직 <sup>4</sup>	
전남 (22)	고흥군	문화예술과(체육팀, 시설관리팀)	2	5	-	-	16	23
	보성군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2계, 체육정책계)	2	5	14	-	-	21
	화순군	스포츠산업과(체육행정팀, 스포츠지원팀, 체육시설팀, 스포츠문화팀)	-	-	-	-	-	0
	장흥군	스포츠산업과(스포츠경영팀, 스포츠시설팀, 스포츠마케팅팀, 스포츠시설운영팀)	9	4	14	-	4	31
	강진군	스포츠사업단 (체육경영팀, 시설관리팀)	5	6	2	-	7	20
	해남군	스포츠사업단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5	4	-	-	15	24
	영암군	홍보체육과(스포츠마케팅팀, 체육정책팀, 체육시설팀)	7	4	7	-	6	24
	무안군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5	3	1	-	21	30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2	4	-	-	1	7
	영광군	스포츠산업과(체육진흥팀, 스포츠마케팅팀, 전남체전T/F팀, 체육시설팀, 위생팀)	18	2	2	-	-	22
	장성군	문화관광과(체육정책팀), 문화시설사업소(생활체육팀)	6	-	-	4	9	19
	완도군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시설관리운영팀)	7	6	-	-	25	38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체육지원팀)	3	-	-	-	1	4
	신안군	행정지원과(체육진흥담당)	2	2	1	-	-	5
소계			143	85	78	4	181	491
경북 (23)	포항시	새마을체육과	11	7	-	-	-	18
	경주시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체육정책팀, 체육지원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14	4	-	-	-	18
	김천시	스포츠산업과(스포츠지원팀, 스포츠마케팅팀, 스포츠시설운영팀, 스포츠시설관리팀)	12	9	-	-	-	21
	안동시	문화관광국 체육새마을과(체육진흥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8	5	-	-	2	15
	구미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조성담당, 스포츠마케팅담당)	8	4	-	-	-	12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sup>1</sup>	기능직 <sup>2</sup>	별정직 <sup>3</sup>	계약직 <sup>4</sup>		
경북 (23)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담당, 체육시설운영담당, 수변체육시설담당)	4	10	-	-	-	14	
	영주시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바이크시설팀, 시민운동장팀, 실내수영장팀)	10	11	-	-	-	21	
	영천시 행정지원국 새마을체육과 (체육행정담당, 체육지원담당)	5	2	-	-	-	7	
	상주시 행정복지국 새마을체육과 (새마을, 체육마케팅, 체육시설, 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12	8	-	-	4	24	
	문경시 행정복지국 새마을체육과 (체육지원담당, 체육시설담당)	7	3	-	-	-	10	
	경산시 복지문화국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국민체육센터팀, 경산수영장팀, 도민체전TF)	12	9	-	-	80	101	
	군위군 문화관광과(체육진흥담당)	3	1	-	-	-	4	
	의성군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생활체육, 관광시설)	2	2	-	-	1	5	
	청송군 문화체육과(스포츠마케팅담당)	2	1	-	-	-	3	
	영양군 자치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3	1	-	-	-	4	
	영덕군 시설체육사업소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6	1	6	-	1	14	
	청도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체육지원담당)	3	-	-	-	-	3	
	고령군 관광경제국 여성청소년과(체육담당)	2	2	-	-	-	4	
	성주군 체육시설사업소(체육진흥담당, 시설조성담당, 운영관리담당)	7	7	-	-	24	38	
	칠곡군 새마을체육과(체육지원담당, 체육시설담당, 시설운영담당)	4	7	-	-	-	11	
	예천군 체육사업소(체육진흥팀, 스포츠마케팅팀, 시설관리팀, U20조직위)	12	7	-	-	-	19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체육진흥팀)		2	1	-	-	-	3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팀)	1	3	-	-	-	4
	울진군 체육진흥사업소(체육지원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12	3	-	-	-	15	
	울릉군 관광경제건설국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3	-	-	-	-	3	
	소계		165	108	6	0	112	391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sup>1</sup>	기능직 <sup>2</sup>	별정직 <sup>3</sup>	계약직 <sup>4</sup>		
경남 (18)	창원시	체육진흥과(체육지원,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생활체육, 도민체전TF)	17	6	1	-	1	25
	진주시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체육행정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운영팀, 체육시설관리팀)	10	8	-	-	-	18
	통영시	교육체육지원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스포츠마케팅팀, 교육지원팀, 평생학습팀)	15	1	2	-	-	18
	사천시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 문화재팀, 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8	2	12	-	1	23
	김해시	인재육성사업소 체육지원과(체육지원팀, 생활체육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14	6	-	-	2	22
	밀양시	행정국 체육진흥과(생활체육,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	7	3	-	-	1	11
	거제시	관광국 생활체육과(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스포츠마케팅팀)	6	4	-	-	-	10
	양산시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체육진흥팀, 체육시설관리팀)	6	3	-	-	-	9
	의령군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체육지원담당)	4	1	-	-	-	5
	함안군	문화공보체육과(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	3	2	-	-	-	5
	창녕군	관광환경국 문화체육과(체육팀, 문화시설팀)	3	2	-	-	2	7
	고성군	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체육행정,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 해양레포츠)	10	5	-	-	-	15
	남해군	주민생활관광국 체육진흥과(체육시설팀, 스포츠마케팅팀, 레포츠팀)	10	3	-	-	-	13
	하동군	문화체육과(체육진흥, 문화체육시설)	4	2	2	-	4	12
	산청군	문화체육과(체육행정담당, 체육시설담당)	4	2	-	-	-	6
	함양군	행정국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 스포츠마케팅담당)	6	4	-	-	-	10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 국민체육센터담당, 스포츠마케팅담당)	6	6	-	-	-	12
	합천군	기획예산실 체육시설과(시설운영, 시설관리,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11	4	-	-	-	15
소계		144	64	17	0	11	236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sup>1</sup>	기능직 <sup>2</sup>	별정직 <sup>3</sup>	계약직 <sup>4</sup>	
제주 (2)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체육관리팀, 제주국민체육센터, 애월국민체육센터)	8	12	10	-	26	56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체육지원담당, 스포츠마케팅담당, 경기장관리담당, 경기장시설담당)	9	12	29	-	-	50
	소계		17	24	39	0	26	106
총계			1,542	778	206	45	557	3,128

1. 기술직: 전기·토목·건축·기계
  2. 기능직: 사무보조요원 등
  3. 별정직: 공무원분류상 별정직으로 채용된 체육지도사
  4. 계약직(전문직 포함): 일용계약 등에 따라 채용된 체육전문가
- ※ 주: 전국체전준비기획단 등 한시조직은 제외함  
※ 출처: 각 기초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21)

### 3) 지방체육단체 운영현황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이후 우리나라 지방 체육단체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목적에 따라 각 단체들은 독립 운영 또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통합 운영된다. 광역자치단체 17개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 228개 시·군·구 중 체육회는 223개, 장애인체육회는 133개가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1-14>와 같다.

표 1-14.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 현황(2021)

(단위: 개)

구분	체육단체 설치	체육단체 미설치	체육단체 통합운영
광역	체육회	17	-
	장애인체육회	17	-
기초	체육회	223	5
	장애인체육회	133	

※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21)

위의 표처럼,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통합 운영되는 기초자치단체는 총 5개로서, 이는 2020년의 12개에서 7곳이 감소한 수치다.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운영 실태는 <표 1-15>와 같다.

표 1-15. 광역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 실태(2021)

(단위: 명)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 수		비고 (운영유형)
			직원 수	지도자 수	
서울특별시	체육회	1처 1관 1실 4부 13팀	58	-	
	장애인체육회	1처 5팀	23	109	
부산광역시	체육회	1처 3본부 6부	35	78	
	장애인체육회	1처 3부	11	49	
대구광역시	체육회	1처 2본부 1실	29	-	
	장애인체육회	1처 1부 4팀	15	33	
인천광역시	체육회	1처 1실 1단 4부 9팀 1센터	72	43	
	장애인체육회	1처 5팀	22	49	
광주광역시	체육회	1처 2본부 4부 11팀 1센터	76	31	
	장애인체육회	1처 4팀	15	37	
대전광역시	체육회	1처 3본부 6부 1단	30	51	장애인체육회 단체장겸직
	장애인체육회	1처 3팀	11	25	
울산광역시	체육회	1처 3부 6과 1단	23	7	
	장애인체육회	1처 1부 3과 1단	13	31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1처 3팀	18	17	
	장애인체육회	1처 2팀	8	15	
경기도	체육회	1처 1본부 3부 1단 1실	47	-	
	장애인체육회	1처 1본부 4팀 1실	26	18	
강원도	체육회	1실 2과 6팀	23	72	
	장애인체육회	1처 4부 1팀	16	13	
충청북도	체육회	1처 4부	24	36	
	장애인체육회	1처 2부	14	19	
충청남도	체육회	1처 2부 6팀	26	27	
	장애인체육회	1처 4팀	13	15	
전라북도	체육회	1처 2본부 7과	28	63	
	장애인체육회	1처 2부 3과	12	15	
전라남도	체육회	1처 2본부 5부	28	39	
	장애인체육회	1처 3팀	13	19	
경상북도	체육회	1처 3부 2T/F팀	26	-	
	장애인체육회	1처 3팀 1T/F팀	14	-	
경상남도	체육회	1처 3부	26	-	
	장애인체육회	1처 2부	14	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1처 4부 8과	27	7	
	장애인체육회	1처 4부	17	1	
총계			853	922	

※ 출처: 각 광역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21)

2021년을 기준으로 각 광역지자체의 체육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853명이었고, 지도자는 총 92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하여 직원의 경우 6명이, 지도자는 71명이 감소한 수치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운영 실태는 <표 1-16>과 같다.

표 1-16. 기초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 실태

(단위: 명)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 수		비고 (운영유형)	
			직원 수	지도자 수		
서울 (25)	종로구	체육회	1국	2	13	사무국장 1명, 행정직원 1명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1	2	
	중구	체육회	1국	1	10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용산구	체육회	1국	2	11	사무국장 1명, 행정직원 1명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성동구	체육회	1국	-	15	
		장애인체육회	1국	-	2	
	광진구	체육회	1국	1	15	사무국장 1명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동대문구	체육회	1국	1	12	
		장애인체육회	1국	2	3	
	종랑구	체육회	1국	1	13	
		장애인체육회	1국	-	-	
	성북구	체육회	1국	1	17	사무국장 직원에 미포함
		장애인체육회	1국	1	4	
	강북구	체육회	1국	2	12	
		장애인체육회	1국	3	-	
	도봉구	체육회	1국	1	13	사무국장 1명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노원구	체육회	1국	1	18	사무국장 1명	
	장애인체육회	1국	2	2		
은평구	체육회	1국	4	16		
	장애인체육회	1국	2	6		
서대문구	체육회	1국	1	15		
	장애인체육회	1국	1	-		
마포구	체육회	1국	2	16	사무국장 포함	
	장애인체육회	1국	1	2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 수		비고 (운영유형)	
			직원 수	지도자 수		
서울 (25)	양천구	체육회	1국	1	13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1	-	
	강서구	체육회	1국	1	16	
		장애인체육회	1국	1	4	
	구로구	체육회	1국	1	14	
		장애인체육회	1국	1	2	
	금천구	체육회	1국	1	9	
		장애인체육회	1국	2	4	
	영등포구	체육회	1국	1	13	
		장애인체육회	1국	1	5	사무국장 1명
	동작구	체육회	1국	1	13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관악구	체육회	1국	2	15	
		장애인체육회	1국	1	3	
	서초구	체육회	1국	3	13	사무국장 포함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강남구	체육회	1국	-	-	
		장애인체육회	1국	3	5	
	송파구	체육회	1국	1	15	
		장애인체육회	1국	1	9	
강동구	체육회	1국	2	12	사무국장 1명, 행정직원 1명	
	장애인체육회	1국	2	4		
부산 (16)	중구	체육회	1국	1	3	사무국장 1명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서구	체육회	1국	1	5	사무국장 1명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동구	체육회	1국	1	7	사무국장 1명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영도구	체육회	1국	1	6	사무국장 1명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부산진구	체육회	1국	1	8	사무국장 1명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동래구	체육회	1국	1	8	사무국장 1명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 수		비고 (운영유형)	
			직원 수	지도자 수		
부산 (16)	남구	체육회	1국	1	9	사무국장 1명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북구	체육회	1국	1	8	사무국장 1명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1국	2	-	
	해운대구	체육회	1	1	11	사무국장 1명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사하구	체육회	1국	1	5	사무국장 1명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금정구	체육회	1국	1	8	사무국장 1명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강서구	체육회	1국	1	8	사무국장 1명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연제구	체육회	1국	1	7	사무국장 1명
		장애인체육회	1국	1	-	
	수영구	체육회	이사회, 1국	1	7	사무국장 1명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사상구	체육회	1국	1	7	사무국장 1명	
	장애인체육회	1국	1	-		
기장군	체육회	1국	2	7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대구 (8)	중구	체육회	1국	1	11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동구	체육회	1국	1	12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서구	체육회	1국	-	12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남구	체육회	1국	1	11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북구	체육회	1국	1	14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수성구	체육회	1국	1	14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달서구	체육회	1국	1	15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달성군	체육회	1국	2	13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 수		비고 (운영유형)	
			직원 수	지도자 수		
인천 (10)	중구	체육회	이사회, 1국	-	11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동구	체육회	1국	1	7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미추홀구	체육회	1국	2	11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연수구	체육회	1국	4	12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남동구	체육회	1국	1	13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부평구	체육회	1국	1	16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계양구	체육회	1국	2	13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서구	체육회	1국	1	12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강화군	체육회	1국	3	9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옹진군	체육회	1국	1	2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광주 (5)	동구	체육회	1국	2	11	사무(사무국장, 사무보조) / 지도자(일반 9명, 어르신 2명)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서구	체육회	1국	1	16	
		장애인체육회	1국	1	4	
	남구	체육회	1국	1	16	
		장애인체육회	1국	1	5	
	북구	체육회	1국	1	17	
		장애인체육회	1국	1	4	
광산구	체육회	1국	2	16		
	장애인체육회	1국	1	5		
대전 (5)	동구	체육회	1국	2	18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중구	체육회	1국	2	19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서구	체육회	1국	2	24	사무국장 1명, 행정직원 1명
		장애인체육회	1국	1	4	사무국장 1명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 수		비고 (운영유형)	
			직원 수	지도자 수		
대전 (5)	유성구	체육회	1국	2	22	2022년 장애인생활체육회 설립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대덕구	체육회	1국	1	18	
		장애인체육회	1국	1	1	
울산 (5)	중구	체육회	1국	4	14	
		장애인체육회	1국	1	2	
	남구	체육회	1국	5	15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동구	체육회	1국	2	13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북구	체육회	1국	4	16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울주군	체육회	1국	4	16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경기 (31)	수원시	체육회	1국 4과 7팀 2센터	39	15	
		장애인체육회	1국 2팀	7	7	
	고양시	체육회	1국 1과 4팀	12	12	
		장애인체육회	1국 1팀	4	7	
	성남시	체육회	1국 3부 7팀	19	25	
		장애인체육회	1국 2팀	8	15	
	용인시	체육회	1국 3과	15	12	
		장애인체육회	1국	5	7	
	부천시	체육회	1국 2부	15	12	
		장애인체육회	1국 1팀	5	7	
	안산시	체육회	1국	15	14	
		장애인체육회	1국	7	6	
	남양주시	체육회	1국 4팀	13	11	
		장애인체육회	1국 1팀	3	4	
	안양시	체육회	1국	9	6	
		장애인체육회	1국	3	2	
	화성시	체육회	1국 3과	16	14	
		장애인체육회	1국 3팀	3	5	
	평택시	체육회	1국 3과	10	14	
		장애인체육회	1국 1팀	4	6	
의정부시	체육회	1국 3과	8	7		
	장애인체육회	1국	3	3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 수		비고 (운영유형)	
			직원 수	지도자 수		
경기 (31)	시흥시	체육회	1국 1팀	9	19	
		장애인체육회	1국	4	10	
	파주시	체육회	1국	7	12	
		장애인체육회	1국	4	4	
	김포시	체육회	1국	9	10	
		장애인체육회	1국	2	3	
	광명시	체육회	1국	7	15	
		장애인체육회	1국	2	4	
	광주시	체육회	1국	5	13	
		장애인체육회	1국	2	4	
	군포시	체육회	1국	6	10	
		장애인체육회	1국	3	4	
	오산시	체육회	1국 3팀	9	4	
		장애인체육회	1국 1과	4	3	
	이천시	체육회	1국 2과	5	12	
		장애인체육회	1국	2	2	
	양주시	체육회	1국	5	9	
		장애인체육회	1국	3	6	
	안성시	체육회	1국	5	8	
		장애인체육회	1국	2	4	
	구리시	체육회	1국	9	8	
		장애인체육회	1국	2	2	
	포천시	체육회	1국	7	11	
		장애인체육회	1국	4	3	
	의왕시	체육회	1국	4	14	
		장애인체육회	1국	2	3	
	하남시	체육회	1국	6	13	
		장애인체육회	1국	1	2	
	여주시	체육회	1국 2과	6	9	
		장애인체육회	1과	2	2	
	동두천시	체육회	1국	4	8	통합운영
장애인체육회						
과천시	체육회	1국	8	6	통합운영	
	장애인체육회		1	1		
양평군	체육회	2과	7	4		
	장애인체육회	1과	3	2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 수		비고 (운영유형)	
			직원 수	지도자 수		
경기 (31)	가평군	체육회	1국 2과	8	8	
		장애인체육회	1국	3	4	
	연천군	체육회	1국	5	9	
		장애인체육회	1국	3	1	
강원 (18)	춘천시	체육회	1국 3과	11	43	
		장애인체육회	1국 2과	5	6	
	원주시	체육회	1국 3팀	6	4	
		장애인체육회	1국 1팀	2	3	
	강릉시	체육회	1국 3과	6	24	
		장애인체육회	1국 1팀	2	6	
	동해시	체육회	1국 3팀	7	12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동해시체육회 위탁운영(2020~)
	태백시	체육회	1국	5	20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속초시	체육회	1국 2팀	5	12	
		장애인체육회	1국 1팀	3	5	
	삼척시	체육회	1국 3팀	8	8	
		장애인체육회	1국	2	3	
	홍천군	체육회	1국 4팀	9	19	
		장애인체육회	1국	3	6	
	횡성군	체육회	1국 2팀	7	7	
		장애인체육회	1국 1팀	3	2	
	영월군	체육회	1국 1부 2팀	8	13	사무국장 파견(5급 공무원)
		장애인체육회	1국	2	2	
평창군	체육회	1국 2팀	7	17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정선군	체육회	1국 3팀	6	12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철원군	체육회	1국 2팀	6	9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화천군	체육회	1국 2팀	5	14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사무국장 파견(7급 공무원)	
양구군	체육회	1국 3팀	5	9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인제군	체육회	1국 5팀	13	29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 수		비고 (운영유형)		
			직원 수	지도자 수			
강원 (18)	고성군	체육회	1국 4팀	7	14	사무국장 파견(7급 공무원)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양양군	체육회	1국 4팀	7	10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충북 (11)	청주시	체육회	1국	13	24	독립운영(2020.7. 분리)	
		장애인체육회	1국	7	7		
	충주시	체육회	1국	3	14		
		장애인체육회	1국	2	7		
	제천시	체육회	1국	8	13		
		장애인체육회	1국	3	3		
	옥천군	체육회	1국	2	13		
		장애인체육회	1국	2	2		
	증평군	체육회	1국	6	9		
		장애인체육회	1국	2	2		
	괴산군	체육회	1국	1	9		사무국장 1명
		장애인체육회	1국	1	1		사무국장 1명
	음성군	체육회	1국	4	13		사무국장 겸직
		장애인체육회	1국	1	4		
	단양군	체육회	1국	2	11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진천군	체육회	1국	3	13	사무국장 겸직		
	장애인체육회	1국	2	4			
보은군	체육회	1국	9	9			
	장애인체육회	1국	2	3			
영동군	체육회	1국	5	13	2022년 하반기 분리운영 예정		
	장애인체육회	1국					
충남 (15)	천안시	체육회	1국 4과	12	31		
		장애인체육회	1국 2과	6	18		
	공주시	체육회	1국 2팀	4	12		
		장애인체육회	1국 1팀	2	6		
	보령시	체육회	1국	4	11		
		장애인체육회	1국	2	6		
	아산시	체육회	1국	8	38		
		장애인체육회	1국	6	14		
	서산시	체육회	1국	5	31		
		장애인체육회	1국	3	8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 수		비고 (운영유형)	
			직원 수	지도자 수		
충남 (15)	논산시	체육회	1국	5	9	
		장애인체육회	1국	3	2	
	계룡시	체육회	1국 3과	6	12	
		장애인체육회	1국 2팀	2	3	
	당진시	체육회	1국	5	10	
		장애인체육회	1국	4	8	
	금산군	체육회	1국 2팀	4	9	
		장애인체육회	1국 2팀	2	4	
	부여군	체육회	1국	4	10	
		장애인체육회	1국	2	4	
	서천군	체육회	1국	4	14	
		장애인체육회	1국	3	5	
	청양군	체육회	1팀	7	10	
		장애인체육회	1팀	3	5	
	홍성군	체육회	1국 2과	5	10	
장애인체육회		1국 3팀	8	4		
예산군	체육회	1국 2팀	4	10		
	장애인체육회	1국	2	5		
태안군	체육회	1국 3팀	4	12		
	장애인체육회	1국 3팀	4	5		
전북 (14)	전주시	체육회	1국	9	23	
		장애인체육회	1국	4	8	
	군산시	체육회	1국	4	15	
		장애인체육회	1국	2	4	
	익산시	체육회	1국	4	15	
		장애인체육회	1국	3	4	
	정읍시	체육회	1국	3	15	
		장애인체육회	1국	2	2	
	남원시	체육회	1국	4	12	
		장애인체육회	1국	1	2	
	김제시	체육회	1국	3	12	
		장애인체육회	1국	5	2	
	완주군	체육회	1국	1	10	
		장애인체육회	1국	1	-	
진안군	체육회	1국	5	8		
	장애인체육회	1국	2	1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 수		비고 (운영유형)		
			직원 수	지도자 수			
전북 (14)	무주군	체육회	1국	2	7	통합운영	
		장애인체육회	1국	-	-		
	장수군	체육회	1국	2	9		
		장애인체육회	1국	1	1		
	임실군	체육회	1국	4	9		
		장애인체육회	1국	2	-		
	순창군	체육회	1국	2	8	사무국장 겸직	
		장애인체육회	1국	1	1		
	고창군	체육회	1국	2	13		
		장애인체육회	1국	2	2		
	부안군	체육회	1국	2	11	사무국장 겸직	
		장애인체육회	1국	2	2		
	전남 (22)	목포시	체육회	1국	4	17	
			장애인체육회	1국	2	4	
여수시		체육회	1국	5	14		
		장애인체육회	1국 1과	3	5		
순천시		체육회	2국	6	20		
		장애인체육회	1국	2	5		
나주시		체육회	1국	3	12		
		장애인체육회	1국	2	2		
광양시		체육회	2국	4	12		
		장애인체육회	1국	2	4		
담양군		체육회	1국	1	10		
		장애인체육회	1국	1	1		
곡성군		체육회	1국	8	12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구례군		체육회	1국	2	12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고흥군		체육회	1국	5	10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보성군		체육회	1국	1	10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화순군		체육회	1국	3	13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장흥군	체육회	1국	3	11			
	장애인체육회	1국	1	1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 수		비고 (운영유형)	
			직원 수	지도자 수		
전남 (22)	강진군	체육회	1국	4	6	
		장애인체육회	1국	3	1	
	해남군	체육회	1국	5	9	
		장애인체육회	1국	3	1	
	영암군	체육회	1국	4	11	
		장애인체육회	1국	2	-	
	무안군	체육회	1국	3	10	
		장애인체육회	1국	2	1	
	함평군	체육회	1국	2	12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영광군	체육회	1국	1	11	
		장애인체육회	1국	2	2	
	장성군	체육회	1국	2	8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완도군	체육회	1국	2	5	
		장애인체육회	1국	2	1	
진도군	체육회	1국	2	7		
	장애인체육회	1국	2	-		
신안군	체육회	1국	4	16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경북 (23)	포항시	체육회	1국 4팀	12	26	
		장애인체육회	1국	2	3	
	경주시	체육회	1국	6	12	
		장애인체육회	1국	2	5	
	김천시	체육회	1국	8	11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안동시	체육회	1국	6	11	
		장애인체육회	1국	1	5	
	구미시	체육회	1국 2팀	6	14	
		장애인체육회	1국	2	5	
	영주시	체육회	1국	3	13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영천시	체육회	1국	3	11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상주시	체육회	2부	6	14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 수		비고 (운영유형)	
			직원 수	지도자 수		
경북 (23)	문경시	체육회	2부	6	12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경산시	체육회	1국	6	15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군위군	체육회	1국	1	6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의성군	체육회	1국	2	10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청송군	체육회	이사회	4	7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영양군	체육회	1국	1	6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영덕군	체육회	이사회	2	9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청도군	체육회	이사회	1	7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고령군	체육회	1국	2	7	생활체육지도자 1명 결원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성주군	체육회	1국	1	11	장애인체육지도자 1명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칠곡군	체육회	1국, 이사회	3	9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예천군	체육회	1국	3	13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봉화군	체육회	1국	4	10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울진군	체육회	1국	2	8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울릉군	체육회	1국	1	6	지도자 정원 7명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경남 (18)	창원시	체육회	2국 4부	17	38	
		장애인체육회	1국 2팀	5	5	
	진주시	체육회	1국	9	14	
		장애인체육회	1국	3	4	
	통영시	체육회	1국	3	10	
		장애인체육회	1국	1	2	

지역	구분	조직구조	직원 수		비고 (운영유형)	
			직원 수	지도자 수		
경남 (18)	사천시	체육회	1국	5	12	
		장애인체육회	1국	2	3	
	김해시	체육회	1국 3팀	9	34	
		장애인체육회	1국	1	3	
	밀양시	체육회	1국	3	11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거제시	체육회	1국	4	10	
		장애인체육회	1국	1	2	
	양산시	체육회	1국	8	11	
		장애인체육회	1국	4	3	
	의령군	체육회	1국	2	10	
		장애인체육회	1국	2	1	
	함안군	체육회	1국	3	14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창녕군	체육회	1국	2	13	
		장애인체육회	1국	2	1	
	고성군	체육회	1국	3	6	통합운영
		장애인체육회	1국	-	-	
	남해군	체육회	1국	3	18	
		장애인체육회	1국	2	3	
하동군	체육회	1국 2부	4	14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산청군	체육회	1국	3	15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함양군	체육회	1국	3	14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거창군	체육회	1국	3	11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합천군	체육회	1국	3	12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		
제주 (2)	제주시	체육회	1국 4과	15	31	
		장애인체육회	1국 2과	4	16	
	서귀포시	체육회	1국	14	19	
		장애인체육회	1국	4	8	
총계			1,332	3,376		

※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21)

### 3. 체육단체

체육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체육단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체육단체에 대한 2021년 현황을 상세히 설명한다.

#### 1) 대한체육회 (www.sports.or.kr)

##### 가. 설립배경 및 목적

대한체육회는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7월 13일에 조선체육회라는 명칭으로 창립되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살리자’는 취지로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창설되었다. 1938년 7월 4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조선체육회’로 부활, 여러 과정을 거치다가 1982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 특수법인 형태의 ‘대한체육회’로 설립되었다. 대한체육회의 조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하고자 학교체육 지원,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동호인 조직 활성화, 지역체육 진흥과 관련한 지원을 실시한다. 둘째, 전 국민의 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해 생애주기 체육활동 지원부터 취약계층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스포츠 홍보 활성화 업무를 진행한다. 셋째, 국제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동·하계올림픽대회 개최 지원 및 국제경기력 강화기반 마련, 국제스포츠 교류 강화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계의 공정성 및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한국 스포츠계의 공정성 제고, 체육인 일자리 마련, 교육프로그램과 복지 체계 강화, 체육단체 조직운영 선진화 등의 목표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 나. 연혁

대한체육회 연혁은 다음의 <표 1-17>에 정리되었다. 1920년 7월 13일 창립된 조선체육회는 1938년 7월 4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고, 7년 후, 1945년 11월 26일에 광복과 함께 조선체육회로 부활하였다. 이후 1948년 런던하계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고자 1946년 7월 15일 조선체육회 내 올림픽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조선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 KOC) 출범 계기가 되었다.

표 1-17. 대한체육회 연혁

- 1920. 07. 13. 조선체육회 창립
- 1938. 07. 04.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
- 1945. 11. 26. 조선체육회 부활
- 1947. 06. 20. 조선올림픽위원회(KOC) 설립 및 IOC 가입
- 1948. 09. 03. 대한체육회 및 대한올림픽위원회로 개칭
- 1954. 03. 16.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인가
- 1964. 09. 08.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 1966. 06. 30. 태릉선수촌 건립
- 1968. 03. 01. 대한체육회에 대한올림픽위원회 및 대한학교체육회 통합
- 1982. 12. 31. 국민체육진흥법상 대한체육회를 특수법인으로 지정
- 1986. 09. 20. 제10회 서울하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
- 1988. 09. 17. 제24회 서울하계올림픽대회 개최(09.12. 제94차 IOC총회)
- 1991. 02. 06.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설립(2009. 6.17. 국민생활체육회로 개칭)
- 1994. 07. 31.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재단법인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 통합
- 1996. 04. 21. 제6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 개최
- 1997. 01. 24. 제18회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 1999. 01. 30.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
- 1999. 06. 17. 제109차 IOC총회 개최
- 2001. 07. 16. 국민생활체육안전공제회 설치 및 운영
- 2002. 09. 27. 제14회 부산하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
- 2003. 08. 21.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 2005. 09. 18. '스포츠 7330' 범국민 캠페인 선포식
- 2006. 03. 31. 2006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 개최
- 2009. 06. 29. 대한체육회·KOC 완전 통합
- 2011. 10. 27. 진천선수촌 건립(1단계)
- 2014. 09. 19. 제17회 인천하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
- 2015. 03. 27. 국민생활체육회, 생활체육진흥법상 특수법인으로 지정
- 2015. 07. 03. 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 2016. 03. 07. 대한체육회(KOC)·국민생활체육회 통합 → 대한체육회(KSOC)
- 2017. 09. 27. 진천국가대표선수촌(2단계) 개촌
- 2018. 02. 09.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 출처: 대한체육회 홈페이지(2021)

조선올림픽위원회는 지금의 우리나라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NOC)다. 위원회는 1947년 6월 20일 제41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그렇게 출발한 위원회는 정부수립 이후 조선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조선체육회 내부 조직이었던 조선올림픽위원회는 1948년 9월 3일 '대한올림픽위원회'로 개명되었다. 이후 대한체육회는 1954년 3월 16일 사단법인으로 인가 받고 1964년 9월 8일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며 대한올림픽위원회를 조직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인 사단

법인체로 출범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후 체육계 내부 갈등이 발발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1968년 3월 1일 대한체육회에 대한올림픽위원회와 학교체육회를 통합시켰다. 그러면서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 내 정관 상 특별위원회 지위를 가지고, 1982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대한체육회는 특수법인으로 지정된다.

대한체육회는 2009년 6월 29일에 정관을 개정하여 종전의 정관 상 특별위원회인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에 통합시켰다. 대한체육회가 IOC에 가입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사업과 관련하여 IOC와 대외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되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올림픽 정신의 함양 및 보급, 국제친선과 세계평화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다는 IOC의 활동 목적을 추가로 지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다. 통합체육회 출범

우리나라 스포츠 체계는 1920년부터 운영된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1991년에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로 이원화되었다. 이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단절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종목별 저변 확대 한계, 선수층 약화, 은퇴선수 일자리 제공 미비, 생활체육 서비스 질 저하, 정부 재정 중복지원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확대와 더불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지금껏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스포츠 체계를 일원화해야 했고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체육단체 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2013년 12월 대한체육회와 체육발전위원회가 함께 논의를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모두 ‘통합’이라는 원칙에는 찬성하였기에 우선적으로 통합 과정을 위한 법적 준비체계 마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2014년 2월에 「생활체육진흥법제정안」이 제출되어 국민생활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여 대한체육회와 동등한 지위에서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후 같은 해 10월 체육단체 통합을 명시화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2016년 3월까지 양 체육회의 통합 의무화를 비롯하여 그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 및 확정하도록 ‘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들 제정안과 개정안은 이후 2015년 2월 국회를 통과하고 3월 27일 개정법 공표로 이어졌다.

표 1-18. 통합체육회 추진 과정

○ 2014. 02.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 발의
○ 2014. 10.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 2015. 02.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5. 03. 27.	개정법 공포
○ 2015. 06. 20.	통합준비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시
○ 2015. 06. 23.	국민생활체육회 법정 법인화
○ 2015. 11. 16.	통합준비위원회 정상화
○ 2016. 03. 07.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
○ 2016. 10. 05.	통합체육회 회장 선거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통합준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규정」에 따라 통합준비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천 3명, 대한체육회장 추천 3명(사무총장 포함), 국민생활체육회장 추천 3명(사무총장 포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천 2명이었다. 통합준비위원 구성과정에서 몇몇 문제가 발생했다. 대한체육회가 통합준비위원 추천을 미루거나 추천된 위원을 국민생활체육회가 거부하며 갈등이 발생했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였다. 이에, 11명 총원 중 여덟 명만으로 초기 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5년 6월 20일에 통합준비위원회가 완전하게 구성되지 않은 채 1차 회의가 시작되었다. 같은 해 11월 10일이 되어서야 11명의 위원이 모두 채워지게 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한 인사를 위원장(안양옥)으로 하여 2015년 11월 16일에 열린 통합준비위원회 8차 회의부터는 11명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후부터 두 단체 간 통합 작업은 빠르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해를 넘겨 2016년 3월 7일에 가서야 두 단체를 통합한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가 열릴 수 있었다. 당시 공동회장으로는 당시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이 선임되었고, 이와 함께 이사 선임 및 통합체육회 정관 승인까지 이루어졌다. 그 후 2016년 10월 5일에 통합체육의 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10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공동회장 체제를 마무리하고, 선출된 이기흥 회장 체제로 통합체육회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통합체육회의 명칭은 제4차 회의에서 처음 발의된 영문 명칭 KSOC(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이 2016리우하계올림픽대회 이후 IOC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도 KSOC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 라. 조직 및 인력

대한체육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 각종 분과

위원회를 둔다. 다음의 <표 1-19>는 대한체육회 조직 구성원들의 구체적 현황이다.

표 1-19. 대한체육회 인력구성

(단위: 명)

구분	계	임원/ 관리직	별정직	일반직							전문· 기술직	실무직	운영직	무기 계약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263	2	8	158	2	7	17	27	33	29	43	39	5	3	48
현원	238	2	6	149	2	7	17	27	32	28	36	27	7	3	44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2021년 12월 31일 기준, <표 1-19>에 제시된 대한체육회 인력 현황에 따르면 현원은 총 238명으로서, 상임임원 및 관리직 2명, 별정직 6명, 일반직 149명, 전문·기술직 27명, 실무직 7명, 운영직 3명, 무기계약직 44명이다. 이는 2020년에 비해 21명이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인력체계는 다음의 <그림 1-2>과 같은 조직도에 맞추어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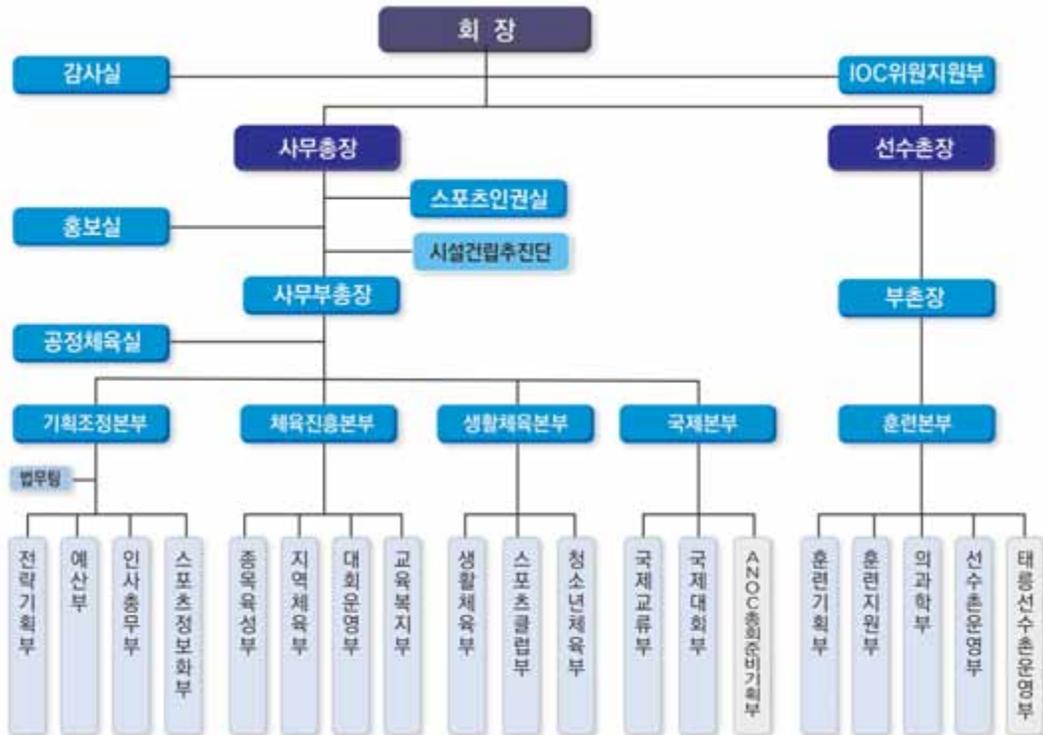


그림 1-2. 대한체육회 조직도

대한체육회(2021)

대한체육회 조직구조는 위의 그림과 같이 회장(1명), 사무총장(1명), 선수총장(1명), 5개

본부, 4실, 17부, 1팀으로 되어있으며 한시기구 3부 1단(IOC위원지원부, 시설건설추진단, ANOC총회 준비기획부, 태릉선수촌운영부)를 운영하였다.



그림 1-3. 국내·외 스포츠단체 조직도  
대한체육회(2021)

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는 <그림 1-3>에서처럼 국내외 체육단체들과 회원 관계를 맺으며 운영된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는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단체가 되며, 회원단체의 종류에는 회원종목단체와 회원시·도체육회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한다. 2021년 기준으로 대한체육회는 81개(정회원단체 62개, 준회원단체 7개, 인정단체 12개)의 회원종목단체와 시·도(회원)종목단체 1,163개를 두고 있다. 이 외에 17개의 시·도 체육회와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별로 조직된 228개 시·군·구 체육회도 포함되었다. 단체 통합 과정 당시, 통합체육회의 직제 설계는 조직의 조속한 안정과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안이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통합체육회 정관을 비롯한 기타 협의사항을 우선 도출한 뒤, 제18차 회의(16년 2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여 제20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 마. 회원종목단체 현황

통합체육회 구성 이후 각 단체 회원으로 있던 회원종목단체도 통합 과정을 거쳤고, 2021년 기준 대한체육회 정회원 종목단체는 62개, 준회원 종목단체는 7개, 인정단체는 12개로 구성되었다.

표 1-20. 회원종목단체 현황(2021)

(단위: 천 원, %)

구분	연번	단체 정보		2021년 결산 현황			'19년 재정자립도
		단체명	회장명	전체 결산액	자체 부담분	재정자립도	
정회원 (62)	1	대한검도회	김용경	3,611,753	2,333,066	74.54	85.15
	2	대한게이트볼협회	정해선	852,082	633,015	74.29	80.37
	3	대한골프협회	이중명	7,684,159	6,827,631	88.85	88.70
	4	대한국학기공협회	권기선	789,564	302,603	36.29	55.57
	5	대한궁도협회	김창순	988,022	530,858	53.73	54.95
	6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최일성	529,075	303,322	57.33	63.66
	7	대한근대5종연맹	김현준	4,626,163	2,687,136	58.09	64.71
	8	대한민국농구협회	권혁운	6,024,368	2,738,478	45.46	39.84
	9	대한당구연맹	박보환	3,986,337	1,655,515	41.53	39.88
	10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강일성	1,214,404	923,788	60.13	24.75
	11	대한력비협회	최윤	2,971,483	1,646,757	52.02	58.33
	12	대한레슬링협회	조해상	4,545,794	982,783	21.62	22.98
	13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최대식	1,390,901	986,907	70.95	64.85
	14	대한루지경기연맹	박지은	2,183,707	538,025	24.64	25.86
	15	대한바둑협회	이재윤	2,200,098	937,023	42.59	30.63
	16	대한바이애슬론연맹	이혁렬	2,586,210	533,040	20.61	18.61
	17	대한민국배구협회	오한남	9,792,247	6,743,100	68.86	75.56
	18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8,570,613	1,760,080	20.54	23.57
	19	대한보디빌딩협회	권지관	1,237,085	837,659	67.82	74.65
	20	대한복싱협회*	-	2,106,711	494,493	23.47	18.28
정회원 (62)	21	대한볼링협회	정석	2,291,616	1,624,414	70.73	63.06
	22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전찬민	6,493,601	2,014,796	31.03	43.14
	23	대한빙상경기연맹	윤홍근	8,526,734	5,800,978	68.03	80.51
	24	대한사격연맹	김은수	5,718,997	2,194,692	38.38	36.75
	25	대한산악연맹	손중호	1,952,486	803,566	47.11	20.87
	26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오주영	1,118,646	232,618	20.79	13.72

구분	연번	단체 정보		2021년 결산 현황			'19년 재정자립도
		단체명	회장명	전체 결산액	자체 부담분	재정자립도	
정회원 (62)	27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정인선	1,693,349	596,464	35.22	34.97
	28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클럽회	박동주	651,426	301,693	46.31	59.23
	29	대한수영연맹	정창훈	6,165,462	2,249,195	35.05	26.72
	30	대한수중. 핀수영협회	강철식	1,503,532	1,028,993	68.44	75.09
	31	대한스쿼시연맹	허태숙	1,359,057	156,636	12.03	16.01
	32	대한스키협회	박동기	12,317,652	4,718,196	38.30	47.53
	33	대한승마협회	박남신	1,870,088	676,561	36.18	55.38
	34	대한씨름협회	황경수	8,659,843	1,687,781	19.49	18.37
	35	대한아이스하키협회	-	4,080,136	1,743,944	42.63	5.74
	36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이종훈	10,046,966	3,504,424	34.88	30.47
	37	대한양궁협회	정의선	11,634,447	10,036,978	86.27	77.10
	38	대한에어로빅합합협회	정병권	962,769	184,805	18.24	67.34
	39	대한역도연맹	최성용	2,236,103	552,979	24.73	28.92
	40	대한요트협회	박기철	2,183,732	362,071	16.58	19.69
	41	대한우슈협회	조수길	1,687,471	393,878	12.09	10.22
	42	대한유도회	조용철	3,788,882	1,482,152	37.34	29.56
	43	대한육상연맹	임대기	7,049,901	3,916,026	55.55	50.91
	44	대한자전거연맹	구자열	5,207,785	1,313,709	25.23	30.33
	45	대한조정협회	진용남	2,200,098	937,023	42.59	48.70
	46	대한민국족구협회	홍기용	1,078,854	734,201	68.05	63.49
	47	대한민국줄넘기협회	이규철	568,588	329,470	57.95	54.34
	48	대한철인3종협회	이병기	2,678,088	867,627	32.40	61.04
	49	대한체조협회	한성희	4,322,083	1,598,559	32.07	31.81
	50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82,525,141	53,278,141	64.56	62.26
	51	대한카누연맹	정구천	1,657,393	241,639	14.58	27.88
	52	대한컬링경기연맹	김용빈	2,290,884	767,706	32.91	35.24
	53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6,663,126	3,914,130	58.74	57.91
	54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9,029,796	4,516,777	50.02	60.65
	55	대한택견회	이일재	1,352,381	201,728	14.92	24.64
	56	대한테니스협회	정희균	3,133,919	872,883	29.05	39.20
	57	대한파크골프협회	이금융	1,310,056	960,459	73.31	78.03
	58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송진석	487,296	207,331	42.55	39.69
	59	대한펜싱협회	최신원	6,810,574	3,708,000	54.44	65.10
	60	대한하키협회	이상현	4,329,740	866,745	20.02	23.57
61	대한민국의합기도총협회	정달순	635,303	413,050	65.02	39.90	
62	대한핸드볼협회	최태원	12,603,417	12,603,417	81.61	79.27	
준회원 (7)	1	한국브리지협회	홍진희	203,904	280,366	100.00	-
	2	대한주짓수회	오준혁	-	-	-	100.00
	3	대한카라테연맹	강민주	820,374	154,266	18.80	4.74
	4	대한카바디협회	-	-	-	-	65.79
	5	대한킥복싱협회	김종민	-	-	-	64.36

구분	연번	단체 정보		2021년 결산 현황			'19년 재정자립도
		단체명	회장명	전체 결산액	자체 부담분	재정자립도	
	6	대한크라쉬연맹	강성민	-	-	-	100.00
	7	한국e스포츠협회	김영만	5,895,078	2,130,259	43.54	100.00
인정 단체 (12)	1	대한무에타이협회	여규태	해당 사항 없음			
	2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김상수				
	3	대한요가회	김희선				
	4	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	-				
	5	대한치어리딩협회	이선화				
	6	대한테크볼협회	유송근				
	7	대한특공무술중앙회	정효진				
	8	대한파워보트연맹	임정환				
	9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김동진				
	10	대한플로어볼협회	최조연				
	11	대한피구연맹	김종태				
	12	대한한궁협회	허광				

※ \* 관리단체: \*\* 관리위원장: \*\*\* 직무대행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바. 재정현황

2021년도 대한체육회 총 예산 현황은 다음의 <표 1-21>과 같다. 총 예산 중 국민체육진흥 기금 4,119억9,700만 원(97.6%), 기타보조금 2억3,200만 원(0.1%), 자체수입 97억 4,700만 원(2.3%)으로서, 2020년에 비해 총 예산은 17.4% 증가했다.

표 1-21. 대한체육회 예산 현황(2021)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A)	자원별					자체 예산비중 (B/A)×100(%)
		국고	기금	공익사업 적립금	기타 보조금	자체수입 (B)	
2019	350,477	-	307,211	-	440	42,826	12.22
2020	348,560	-	331,273	-	188	17,099	4.91
2021	421,976	-	411,997	-	232	9,747	2.31

※ 주: 결산세입액 기준 작성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2017년에 통합이 완료된 17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역체육회 예산 현황은 다음의 <표 1-22>에 그리고 시·군·구 체육회 예산 현황은 <표 1-23>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에

따르면, 2021년 시·도 체육회의 총 예산은 5,258억 8,100만 원으로서, 2020년에 비해 2.5%(’20년 5,389억 3,700만 원) 감소했다. 그러나 이 중 자체수입의 경우 2021년에는 약 574억 원을 기록, 2020년의 281억 원에 비해 약 103.6%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 중 자체 수입 비율은 약 5.68%p(’20년 5.23% → ’21년 10.91%) 증가하였다.

표 1-22. 시·도 체육회 예산 현황(2021)

(단위: 백만 원, %)

자치단체명	설립연월	2021년 예산(결산세입액 기준)			'20년도 자체예산비중
		전체예산(A)	자체수입(B)	자체예산비중 (B/A)×100(%)	
서울특별시체육회	1953. 02.	75,411	10,418	13.81	9.19
부산광역시체육회	1963. 03.	35,678	4,622	12.95	5.56
대구광역시체육회	1981. 07.	29,880	3,188	10.67	2.41
인천광역시체육회	1981. 07.	60,161	8,140	13.53	0.09
광주광역시체육회	1986. 11.	46,009	11,106	24.14	23.92
대전광역시체육회	1989. 01.	26,714	2,089	7.82	0.00
울산광역시체육회	1997. 07.	19,833	0	0.00	0.00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2012. 07.	7,238	42	0.58	1.28
경기도체육회	1950. 06.	17,305	1,855	10.72	0.00
강원도체육회	1946. 05.	23,649	1,194	5.05	1.17
충청북도체육회	1946. 03.	21,234	879	4.14	1.86
충청남도체육회	1927. 03.	19,618	1,642	8.37	3.12
전라북도체육회	1947. 03.	32,509	5,490	16.89	5.27
전라남도체육회	1945. 09.	21,326	335	1.57	14.01
경상북도체육회	1922. 03.	38,024	851	2.24	1.44
경상남도체육회	1945. 12.	27,489	806	2.93	0.13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951. 06.	23,803	4,725	19.85	2.60
합계		525,881	57,382	10.91	5.23

※ 주: 결산세입액 기준 작성

※ 주: 전체예산 = 국고 + 기금 + 공익사업적립금 + 자체수입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다음의 <표 1-23>은 2021년 전국 228개의 시·군·구 체육회 예산 현황이다. 현황의 합계에서 볼 수 있듯, 체육회 전체 예산은 5,411억 2,3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표 1-23. 시·군·구 체육회 예산 현황(2021)

(단위: 백만 원, %)

자치단체명	2021년 예산(결산세입액 기준)			
	전체예산(A)	자체수입(B)	자체예산비중 (B/A)×100(%)	
서울 (25)	종로구	1,230	564	45.85
	중구	819	338	41.27
	용산구	958	452	47.18
	성동구	810	148	18.27
	광진구	1,505	859	57.08
	동대문구	541	81	14.97
	종량구	1,154	701	60.75
	성북구	758	103	13.59
	강북구	674	133	19.73
	도봉구	1,255	611	48.69
	노원구	1,758	872	49.60
	은평구	2,322	1,620	69.77
	서대문구	882	235	26.64
	마포구	1,651	646	39.13
	양천구	1,118	81	7.25
	강서구	1,327	558	42.05
	구로구	1,271	351	27.62
	금천구	994	425	42.76
	영등포구	1,237	569	46.00
	동작구	1,402	796	56.78
	관악구	682	16	2.35
	서초구	1,533	928	60.53
	강남구	616	177	28.73
	송파구	1,534	845	55.08
	강동구	1,089	172	15.79
소계	29,120	12,281	42.17	
부산 (16)	중구	440	39	8.86
	서구	420	26	6.19
	동구	639	64	10.02
	영도구	547	102	18.65
	부산진구	568	72	12.68
	동래구	573	90	15.71

자치단체명	2021년 예산(결산세입액 기준)			
	전체예산(A)	자체수입(B)	자체예산비중 (B/A)×100(%)	
부산 (16)	남구	646	59	9.13
	북구	598	54	9.03
	해운대구	856	99	11.57
	사하구	572	71	12.41
	금정구	669	123	18.39
	강서구	677	52	7.68
	연제구	497	91	18.31
	수영구	458	0	0.00
	사상구	644	60	9.32
	기장군	646	0	0.00
	소계	9,450	1,002	10.60
대구 (8)	중구	674	44	6.53
	동구	1,093	66	6.04
	서구	854	44	5.15
	남구	777	28	3.60
	북구	1,222	87	7.12
	수성구	1,379	152	11.02
	달서구	1,402	62	4.42
	달성군	1,631	135	8.28
소계	9,032	618	6.84	
인천 (10)	중구	520	32	6.15
	동구	341	17	4.99
	미추홀구	547	52	9.51
	연수구	599	46	7.68
	남동구	606	27	4.46
	부평구	741	73	9.85
	계양구	1,290	60	4.65
	서구	1,536	80	5.21
	강화군	1,040	21	2.02
	옹진군	181	0	0.00
	소계	7,401	408	5.51
광주 (5)	동구	771	40	5.19
	서구	1,035	23	2.22

자치단체명		2021년 예산(결산세입액 기준)		
		전체예산(A)	자체수입(B)	자체예산비중 (B/A)×100(%)
광주 (5)	남구	1,162	44	3.79
	북구	1,277	39	3.05
	광산구	1,452	26	1.79
	소계	5,697	172	3.02
대전 (5)	동구	1,204	0	0.00
	중구	1,804	155	8.59
	서구	1,165	90	7.73
	유성구	1,720	167	9.71
	대덕구	1,659	0	0.00
	소계	7,552	412	5.46
울산 (5)	중구	1,140	0	0.00
	남구	3,501	149	4.26
	동구	1,084	65	6.00
	북구	1,318	59	4.48
	울주군	2,392	37	1.55
	소계	9,435	310	3.29
경기 (31)	수원시	24,121	0	0.00
	고양시	5,342	0	0.00
	성남시	8,026	0	0.00
	용인시	6,075	0	0.00
	부천시	7,561	782	10.34
	안산시	4,604	0	0.00
	남양주시	3,862	580	15.02
	안양시	4,081	0	0.00
	화성시	7,613	0	0.00
	평택시	4,313	0	0.00
	의정부시	4,070	131	3.22
	시흥시	3,152	0	0.00
	파주시	2,362	0	0.00
	김포시	2,815	0	0.00
	광명시	3,618	140	3.87
	광주시	2,154	0	0.00
군포시	2,368	87	3.67	

자치단체명	2021년 예산(결산세입액 기준)			
	전체예산(A)	자체수입(B)	자체예산비중 (B/A)×100(%)	
경기 (31)	오산시	4,544	156	3.43
	이천시	3,855	452	11.73
	양주시	908	129	14.21
	안성시	3,032	0	0.00
	구리시	1,001	101	10.09
	포천시	3,105	0	0.00
	의왕시	1,617	59	3.65
	하남시	2,584	11	0.43
	여주시	2,437	0	0.00
	동두시	1,340	0	0.00
	과천시	2,058	79	3.84
	양평군	4,084	0	0.00
	가평군	3,133	353	11.27
	연천군	1,690	0	0.00
	소계	131,525	3,060	2.33
강원 (18)	춘천시	5,814	0	0.00
	원주시	2,616	79	3.02
	강릉시	3,105	0	0.00
	동해시	2,154	0	0.00
	태백시	708	0	0.00
	속초시	1,316	0	0.00
	삼척시	3,376	0	0.00
	홍천군	6,999	1,350	19.29
	횡성군	4,045	0	0.00
	영월군	2,286	0	0.00
	평창군	3,820	0	0.00
	정선군	2,629	0	0.00
	철원군	3,837	0	0.00
	화천군	2,598	40	1.54
	양구군	1,572	0	0.00
	인제군	4,184	0	0.00
	고성군	1,553	0	0.00
	양양군	1,491	0	0.00

자치단체명	2021년 예산(결산세입액 기준)			
	전체예산(A)	자체수입(B)	자체예산비중 (B/A)×100(%)	
소계	54,103	1,469	2.72	
충북 (11)	청주시	5,072	290	5.72
	충주시	4,092	1,960	47.90
	제천시	1,919	58	3.02
	보은군	1,545	0	0.00
	옥천군	1,227	0	0.00
	영동군	2,220	0	0.00
	증평군	1,667	40	2.40
	진천군	2,754	124	4.50
	괴산군	1,715	47	2.74
	음성군	2,492	35	1.40
	단양군	973	0	0.00
소계	25,676	2,554	9.95	
충남 (15)	천안시	6,537	317	4.85
	공주시	3,064	22	0.72
	보령시	3,308	143	4.32
	아산시	4,610	0	0.00
	서산시	3,532	0	0.00
	논산시	2,206	0	0.00
	계룡시	1,489	0	0.00
	당진시	2,992	0	0.00
	금산군	1,829	24	1.31
	부여군	2,786	62	2.23
	서천군	2,051	53	2.58
	청양군	3,882	20	0.52
	홍성군	2,192	213	9.72
	예산군	2,836	0	0.00
	태안군	2,891	85	2.94
소계	46,205	939	2.03	
전북 (14)	전주시	3,863	0	0.00
	군산시	3,046	128	4.20
	익산시	1,654	0	0.00
	정읍시	2,093	359	17.15

자치단체명	2021년 예산(결산세입액 기준)			
	전체예산(A)	자체수입(B)	자체예산비중 (B/A)×100(%)	
전북 (14)	남원시	3,125	134	4.29
	김제시	1,750	0	0.00
	완주군	1,929	15	0.78
	진안군	1,847	0	0.00
	무주군	1,167	0	0.00
	장수군	1,875	0	0.00
	임실군	1,363	0	0.00
	순창군	1,310	0	0.00
	고창군	1,748	0	0.00
	부안군	1,111	0	0.00
	소계	27,881	636	2.28
전남 (22)	목포시	2,163	117	5.41
	여수시	3,450	332	9.62
	순천시	3,178	228	7.17
	나주시	1,349	0	0.00
	광양시	2,335	0	0.00
	담양군	862	0	0.00
	곡성군	1,274	0	0.00
	구례군	2,303	3	0.13
	고흥군	2361	0	0.00
	보성군	790	0	0.00
	화순군	2,875	107	3.72
	장흥군	1,112	0	0.00
	강진군	1,709	0	0.00
	해남군	760	0	0.00
	영암군	1,292	0	0.00
	무안군	1163	0	0.00
	함평군	1,593	183	11.49
	영광군	1,069	0	0.00
	장성군	1,211	59	4.87
	완도군	747	54	7.23
	진도군	1,893	51	2.69
	신안군	2,398	0	0.00

자치단체명	2021년 예산(결산세입액 기준)			
	전체예산(A)	자체수입(B)	자체예산비중 (B/A)×100(%)	
소계	37,887	1,134	2.99	
경북 (23)	포항시	8,206	396	4.83
	경주시	4,933	0	0.00
	김천시	3,868	197	5.09
	안동시	6,923	18	0.26
	구미시	8,974	183	2.04
	영주시	4,381	91	2.08
	영천시	3,668	0	0.00
	상주시	3,957	93	2.35
	문경시	830	65	7.83
	경산시	4,339	175	4.03
	군위군	965	31	3.21
	의성군	958	3	0.31
	청송군	1,391	48	3.45
	영양군	1,232	0	0.00
	영덕군	859	0	0.00
	청도군	980	0	0.00
	고령군	1,005	0	0.00
	성주군	1,458	0	0.00
	칠곡군	1,281	26	2.03
	예천군	1,261	31	2.46
	봉화군	856	38	4.44
	울진군	4,195	0	0.00
	울릉군	637	0	0.00
소계	67,157	1,395	2.08	
경남 (18)	창원시	7,326	0	0.00
	진주시	1,635	1	0.06
	통영시	2,633	87	3.30
	사천시	2,065	123	5.96
	김해시	4,848	945	19.49
	밀양시	1,471	95	6.46
	거제시	1,869	123	6.58
	양산시	2,740	178	6.50

자치단체명	2021년 예산(결산세입액 기준)			
	전체예산(A)	자체수입(B)	자체예산비중 (B/A)×100(%)	
경남 (18)	의령군	1,247	103	8.26
	함안군	1,869	113	6.05
	창녕군	22,013	97	0.44
	고성군	2,924	77	2.63
	남해군	2,702	91	3.37
	하동군	1,354	0	0.00
	산청군	1,738	0	0.00
	함양군	654	0	0.00
	거창군	1,683	24	1.43
	합천군	1,359	37	2.72
	소계	62,130	2,094	3.37
제주 (2)	제주시	5,242	30	0.57
	서귀포시	5,630	5	0.09
	소계	10,872	35	0.32
합계	541,123	28,519	5.27	

※ 주: 결산세입액 기준 작성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2021년 시·군·구 체육회 예산 총액은 5,411억 2,300만 원이었고, 자체수입 총액은 285억 1,900만 원으로서, 자체예산비중은 5.27%를 보였다(20년 3.49%). 이 예산액은 2020년의 전체예산 4,923억 4,100만 원보다 487억 8,200만 원(9.0%)이, 자체수입 역시 2020년도 171억 9,000만 원보다 113억 2,900만 원(39.7%)이 증가한 수치이다.

## 2) 대한장애인체육회 (www.koreanpc.kr)

### 가. 설립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를 기점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의 잉여금으로 장애인체육 및 관련 복지를 담당할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1989년에 설립된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체육은 일반체육과 비교했을 때 '국민체육'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다. 전문적인 체육행정 체계가 아닌 '장애인복지차원의 행정 체계'에 의존한 제도적 한계 때문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체육은 2000년 이후 올림픽과 패럴림픽 공동개최를 명문화한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협약에 따라 전문화, 체계화, 엘리트화가 급속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체육이 기존의 ‘복지’가 아닌 ‘국민체육’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現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4년 12월 참여정부는 사회문화정책관계 장관회의에서 장애인체육 담당부처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그런 후, 2005년 1월 28일 문화관광부장관은 장애인체육계 인사를 초청, 관련 현안과 비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3월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업무이관을 위한 실무협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곧이어 4월에는 선수, 체육단체, 학계, 생활체육계, 일반체육계를 포함한 장애인체육회 설립 실무준비위원회가 구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정관 제정 등 단체 설립에 필요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근거를 위한 법 조항도 필요했다.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6월 29일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7월 29일에 공포되었고, 이어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도 10월 26일에 공포되었다. 그 후 발기인 66명과 함께 2005년 11월 8일 창립 발기인 총회를 거쳐 11월 25일 대한장애인체육회(비영리법인으로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포함하여 설립되었다.

-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및 보급
- 국내·외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와 국제스포츠 교류
- 장애인선수 양성,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진흥 사업
- 장애인경기단체 사업과 활동 지도 및 지원
- 장애인선수·체육지도자·유공자 복지 향상
- 장애인 체육시설과 경기시설 설치 및 관리
- 장애인체육 용·기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 장애인체육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내적으로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도모하고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와 시·도 지부의 지원, 육성, 우수 경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대한민국 대표의 유일한 단체로서 장애인올림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확산하는 단체의 존재 목적 및 성격을 지닌다.

#### 나. 연혁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온 주요 연혁은 다음의 <표 1-24>와 같다. 2005년 11월 25일 법인 설립허가 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선수 육성 및 각종 국제 대회파견을 통한 국위선양과 다양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였다. 그 결과 2012년 런던패럴림픽대회에서 164개국 중 12위를 거두었고, 2005년 당시 4.4%의 생활체육 참여율도 2016년 17.7%로 높아졌다. 49개국이 참가한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에서는 총 세 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전체 16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로, 그동안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온 것과는 달리 전년(20년 24.2%) 대비 4%p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장애인의 체육활동 제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1-24. 대한장애인체육회 연혁

- 2004. 12. 14.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장애인체육 문화관광부 이관 결정
- 2005. 06. 29.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의결
- 2005. 07. 29.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근거 마련)
- 2005. 11. 08. 대한장애인체육회 「발기인 총회」 개최
- 2005. 11. 25.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초대 장항숙 회장 취임
- 2006. 05. 12.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설립(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36조)
- 2006. 04. 27. 19개 경기단체(골볼, 농구, 댄스스포츠, 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스키, 아이스하키, 양궁, 역도, 육상, 테니스, 펜싱) 및 3개 유형별 단체(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 가맹
- 2006. 07. 31. 2개 경기단체(조정, 탁구) 및 1개 유형별 단체(대한농아인체육연맹) 가맹
- 2007. 01. 19. 사무소 이전(올림픽컨벤션센터 → 벨로드롬 1층)
- 2007. 06. 28. 이천장애인종합수련원(현 이천훈련원) 건립공사 착공
- 2007. 10. 16. 2개 경기단체(요트, 컬링) 가맹
- 2008. 03. 14. 대한장애인축구협회 가맹
- 2009. 09. 18. 2개 경기단체(유도, 태권도) 가맹
- 2009. 10. 15.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개원(현 이천훈련원)
- 2009. 11. 22. 장항숙 회장 IPC 집행위원 당선
- 2009. 11. 25. 제2대 윤석용 회장 취임
- 2011. 11. 15. 이천훈련원 2단계 생활관 증축 시설 준공
- 2012. 03. 15. 대한장애인승마협회 가맹
- 2013. 06. 28. 이천훈련원 2단계 교육 시설 착공
- 2013. 07. 19. 이천훈련원 2단계 훈련시설 증축 준공
- 2013. 11. 25. 제3대 김성일 회장 취임
- 2013. 11. 26. 나경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회장 IPC 집행위원 당선

- 2014. 02. 28.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통합
- 2014. 04. 16. 2개 경기단체(골프, 당구) 가맹
- 2015. 03. 31. 2개 유형별 단체(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 탈퇴
- 2016. 05. 26. 이천훈련원 사격장 준공
- 2016. 12. 15. 이천훈련원 컬링장 준공
- 2017. 02. 23.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가맹
- 2017. 02. 23. 제4대 이명호 회장 취임
- 2017. 09. 08. 김성일 전 회장 IPC 집행위원 당선
- 2021. 02. 25. 제5대 정진완 회장 취임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2021)

### 다. 조직 및 인력

다음의 <그림 1-4>에서 보듯,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17개 시·도 지부(시·도 장애인체육회)와 46개 중앙가맹경기단체(정가맹 32개, 준가맹 1개, 인정 13개)가 소속되어 있다. 시·도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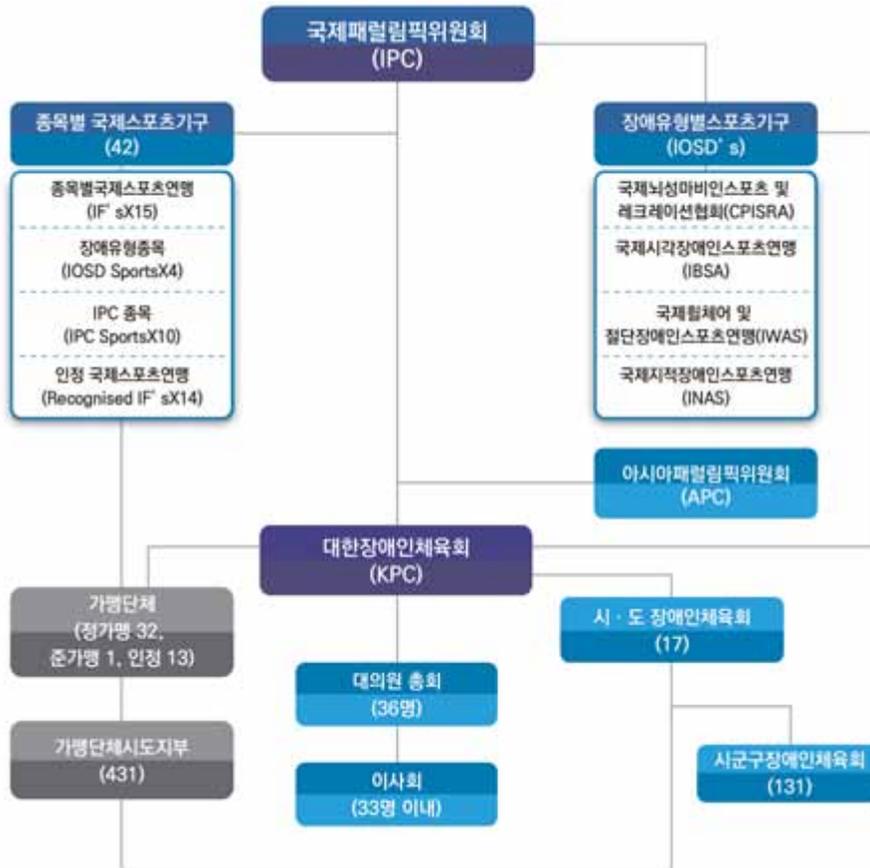


그림 1-4. 국내·외 장애인체육회 조직도

대한장애인체육회(2021)

체육회는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별 일부 시·군·구 지부(131개의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와 시·도별 가맹경기단체(43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신인선수, 꿈나무선수, 종목별 선수 육성과 함께 장애인의 생활체육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에 대한민국 대표로 가입되었고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 종목별 국제스포츠기구 및 장애유형별 국제스포츠연맹과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조직 간 관계를 맺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그림 1-5>와 같은 내부 조직구조를 지닌다.



그림 1-5.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직도

대한장애인체육회(2021)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정관 상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 사무 처리와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처를 둔다. 여기에는 회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총괄의 5개 부와 체육인지원센터, 선수총장 총괄의 2개 부와 훈련지원센터가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인 인력 현황은 다음의 <표 1-25>와 같다.

표 1-25. 대한장애인체육회 인력 현황(2021)

(단위: 명)

구분	계	상근임원	관리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운영직	무기계약직
정원	134	1	1	2	4	9	12	15	19	18	53
현원	124	1	1	2	3	9	10	15	15	17	51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21)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전신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이관된 15명과 회장, 사무총장이 포함된 정원 25명으로 출범하였다. 현재 인력 구성은 상근임원 1명, 관리직 1명, 1급 2명, 2급 3명, 3급 9명, 4급 10명, 5급 15명, 6급 15명, 운영직 17명, 무기계약직 51명 등으로, 정원 134명 중 현원이 총 124명으로 이루어졌다.

#### 라. 시·도 지부 및 중앙가맹경기단체 현황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정관 제6조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 또는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되는 17개 시·도 지부 및 131개소의 시·군·구 지부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이는 다음의 <표 1-2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26. 시·도 장애인체육회 현황(2021)

구분	소재지	설립연월일	시·군·구 지부(133개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송파구	07.03.30.	노원구, 은평구, 영등포구, 종로구, 성북구, 양천구, 강동구, 송파구, 강북구, 강서구, 성동구, 관악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남구, 구로구, 동대문구, 금천구, 중랑구(19개)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해운대구	06.12.07.	사상구, 북구, 연제구(3개)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수성구	06.07.27.	-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미추홀구	07.04.11.	-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서구	07.07.18.	북구, 남구, 서구, 광산구(4개)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유성구	07.05.04.	서구, 대덕구(2개)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중구	08.01.17.	중구(1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수원시	06.11.20.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의정부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이천시, 구리시, 양주시, 하남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파주시, 군포시, 광명시, 오산시, 안성시,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과천시, 연천군, 동두천시(31개)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춘천시	07.05.30.	속초시, 강릉시, 홍천군, 춘천시, 원주시, 삼척시, 횡성군(7개)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청주시	06.12.18.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영동군, 괴산군, 제천시(10개)

구분	소재지	설립연월일	시·군·구 지부(133개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예산군	07.01.17.	서산시, 공주시, 천안시, 보령시, 계룡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아산시, 당진시, 청양군, 서천군,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15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전주시	06.12.26.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군산시, 전주시, 부안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 임실군(13개)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무안군	07.11.02.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순천시, 해남군, 장흥군, 영광군, 나주시, 무안군, 강진군, 담양군, 완도군(12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산시	07.04.10.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안동시(4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창원시	06.07.18.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10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시	07.02.14.	제주시, 서귀포시(2개)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조치원읍	14.02.26.	-

※ 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의 제주시, 서귀포시지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적으로 집계하지 않음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21)

장애인체육회 시·군·구 지부는 2020년 129개소와 비교하여 4개가 늘었다. 광주(광산구), 전남(담양군, 완도군), 경남(남해군)에서 새롭게 지부가 세워졌다. 이들 지부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 방침을 심의 및 결정하고, 각 가맹단체와 각급 장애인체육회 육성 및 지도 감독,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장애인체육 생활화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더불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32개의 가맹경기단체(정가맹)와도 회원 관계를 맺는데, 각 단체의 현황은 다음의 <표 1-27>과 같다.

표 1-27. 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가맹경기단체 현황(2021)

연번	단체명	설립일	연번	단체명	설립일
1	대한장애인골볼협회	'04.09.09.	17	대한장애인당구협회	'09.01.31.
2	대한장애인골프협회	'06.06.23.	18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02.07.28.
3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12.12.09.	19	대한장애인력비협회	'04.12.19.
4	대한장애인농구협회	'97.04.25.	20	대한장애인론볼협회	'92.05.16.
5	대한장애인배구협회	'06.02.26.	21	대한장애인요트연맹	'06.12.15.
6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00.02.15.	22	대한장애인유도협회	'88.03.26.
7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06.03.18.	23	대한장애인육상연맹	'02.02.25.
8	대한장애인볼링협회	'02.12.12.	24	대한장애인조정연맹	'06.07.08.
9	대한장애인사격연맹	'97.04.15.	25	대한장애인축구협회	'04.09.09.
10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93.07.10.	26	대한장애인컬링협회	'07.05.28.

연번	단체명	설립일	연번	단체명	설립일
11	대한장애인수영연맹	'03.03.22.	27	대한장애인탁구협회	'93.08.20.
12	대한장애인스키협회	'01.10.20.	28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06.04.02.
13	대한장애인승마협회	'11.04.28.	29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93.09.20.
14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03.02.21.	30	대한장애인펜싱협회	'96.11.28.
15	대한장애인양궁협회	'04.04.04.	31	(사)한국농아인스포츠포럼	'82.04.30.
16	대한장애인역도연맹	'96.01.25.	32	(사)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포럼	'06.02.18.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21)

### 마. 재정현황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재정현황은 다음의 <표 1-28>과 같다. 2005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출범한 이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체육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이 시작되었다.

표 1-28. 대한장애인체육회 재정 현황(2012~2021)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A)	재원별					자체수입비중 (B/A)×100(%)
		일반회계	기금	공익사업 적립금	자체수입(B)	기타	
2012	44,551	6,568	30,814	2,640	4,529	-	10.17
2013	47,071	6,197	31,624	5,546	3,704	-	7.87
2014	47,444	-	39,147	4,652	3,645	-	7.68
2015	58,891	-	53,090	422	4,808	571	8.16
2016	65,998	-	58,774	-	5,307	1,917	8.04
2017	58,289	-	51,279	-	6,442	568	11.05
2018	65,272	-	53,033	-	10,673	1,566	16.35
2019	63,065	-	54,401	-	8,183	481	12.98
2020	83,846	-	77,624	-	5,494	728	6.55
2021	84,923	-	78,989	-	5,255	679	6.19

※ 주: 결산 기준

※ 주: 자체수입에서 자체예산수익은 제외

※ 주: 재원 중 기타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간접재보조 사업임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21)

장애인체육 경기력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요구와 정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의 재정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였다. 2021년 재정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약 789억 8,900만 원, 자체수입 약 52억 5,500만 원, 기타 사업비 약 6억 7,900천 만 원 등 총 849억 2,300만 원이었다.

### 3) 국민체육진흥공단 (www.kspo.or.kr)

#### 가. 설립배경 및 목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스포츠 경기수준 향상 및 청소년 육성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하며,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을 수행하고자 '기금'을 조성, 운영 및 관리하는 조직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된 이유는 바로 1988년에 열렸던 제24회 서울하계올림픽대회에 있다. 많은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여 주었고, 국가적으로도 스포츠를 비롯한 여러 영역이 한 단계 발전할 계기를 마련해 준 대회였다. 이를 기념하고 올림픽 정신과 성과를 보존 및 발전시켜 국민 모두가 혜택을 향유하도록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1989년 4월 20일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 나. 연혁

1989년 4월 20일에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 경기시설 및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1990년 7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을 설립하였다. 그 후 공단은 국제청소년 교류와 청소년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국제선수단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올림픽 유스호텔과 올림픽기념관도 개관, 1993년 12월에는 (주)한국스포츠TV를 설립했다. 이후, 1994년 10월엔 안정적인 체육진흥재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잠실경륜장'을 개장하였고, 1999년 1월에는 체육과학연구원(現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을 통합하여 부설기관으로 설치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 1월 경영 효율화를 위해 (주)한국스포츠TV를 매각하고 2001년 10월에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개시한다. 또한 2002년 6월에는 미사리에 경정장을 개장한 후, 2003년 9월에 올림픽홀과 2004년 9월 소마미술관도 개관하였다. 2006년 2월에는 경륜장을 광명돔경륜장으로 이전하였으며, 2008년 11월에는 조직효율화 차원에서 '경륜운영본부'와 '경정운영본부'를 '경륜·경정사업본부'로 통합하였다. 2009년 5월에는 뮤지컬 전용극장인 우리금융아트홀이 개관하였고, 2012년 7월 체육과학연구원(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유네스코 석좌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 9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이 세계복권협회 건전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2014년에는 올림픽 공원 국민체력100 대표센터를 개소하였고, 2016년에는 체육인재육성재단을 통합하였다. 2017년에는 체육인 진로지원 통합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2021년 2월에는 스포츠산업

인력 양성, 스포츠 기업 육성, 스포츠 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스포츠시장 발전 기반 마련,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등 스포츠산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포츠산업종합지원 센터’를 설립하였다.

다. 조직 및 인력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의 <그림 1-6>처럼 이사장 직속으로 안전경영단과 홍보실을 두고 있으며, 전무이사 산하의 4개 본부와 경주사업총괄본부 산하의 2개 본부, 연구 전문 기관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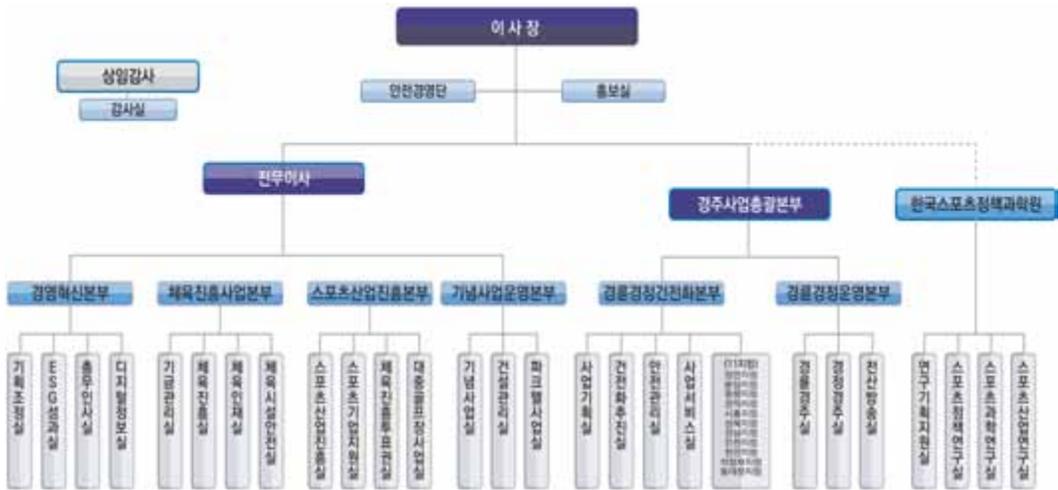


그림 1-6.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직도

국민체육진흥공단(2021)

전무이사가 총괄하는 4개의 본부는 경영혁신본부, 체육진흥사업본부, 스포츠산업진흥본부, 기념사업운영본부로 구성되며 총 15개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경주사업총괄 본부는 2021년 ‘기금조성총괄본부’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경륜·경정건전화본부와 경륜·경정운영본부 2개 본부 산하에 총 7개의 실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연구기획지원실, 스포츠정책연구실, 스포츠과학연구실, 스포츠산업연구실과 함께 총 4개의 실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인력 현황은 다음의 <표 1-29>와 같다.

표 1-29. 국민체육진흥공단 인력 현황(2021)

(단위: 명)

구분	정원(현원)					
	계	임원	본부장/원장	관리직	일반직	연구직
본부	456(461)	3(3)	0(0)	4(2)	449(456)	0(0)
경주사업총괄본부	306(307)	0(0)	1(1)	1(3)	304(303)	0(0)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71(84)	0(0)	1(1)	0(0)	26(40)	44(43)
계	833(852)	3(3)	2(2)	5(5)	779(799)	44(43)

※ 주: ( )는 현원이며, 휴직 등 부서 미배치자 포함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2021)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인력 현황에 따르면, 현원 기준으로 본부 466명, 경륜·경정총괄본부 304명, 그리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82명으로, 총 852명이 소속되었다.

#### 라. 자산현황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의 운영사업을 수행하는데, 주요 유형자산 현황은 <표 1-30>과 같다.

표 1-30.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형자산

구분	내역	면적(㎡)	비고	
토지	법인	올림픽공원	770,076	
	법인	스포츠센터(분당·일산)	8,252	분당 : 3,880㎡(공단 자산대장 기준), 4,535㎡(실제 토지대장 기준), 표의 수치는 자산대장 기준 - 사유(분양)
	기금	광명동경기장	144,050	
	기금	경륜훈련원	382,869	경륜훈련원 전체 토지면적 기준(383,534㎡)에서 영주시의 도로 확장에 따른 토지편입으로 공단토지 26-1에서 665㎡만큼 감소
	기금	KSPO스포츠가치센터	48,742	
		소계	1,353,989	
건물	법인	올림픽회관	24,303	기념관(6,998.07㎡) 포함
	법인	올림픽파크텔	25,140	
	법인	공원내 경기장	115,269	올림픽수영장(25,180㎡), 체조경기장(30,548㎡), 펜싱경기장(19,272㎡-핸드볼경기장 리모델링 반영), 역도경기장(12,710㎡), 테니스경기장(9,064㎡), 벨로드롬(10,672㎡-관중석 5,258㎡ 제외), 경륜고객홀(2,900㎡), 실내테니스장(4,923㎡) 합
	법인	올림픽문화센터	10,116	'12년 태권도상설공연장(2,647.57㎡) 리모델링 부분 포함
	법인	스포츠센터(분당·일산)	52,991	분당 스포츠센터의 분양면적(2,893.80㎡) 제외, 실제 토지대장 기준시 55,884.39㎡

구분	내역	면적(㎡)	비고
법인	기타 근린생활 시설 등	25,759	평화의 문(989㎡), 평화의광장 편익동(7,624㎡), 중앙공급실(3,158㎡), 온실(167㎡), 공중화장실(324㎡), 조경호(12,513㎡) 합산
법인	미술관(증설)	3,026	
기금	미술관	10,191	
기금	광명동경륜장	76,377	
기금	올림픽홀	16,884	지하주차장(5,055㎡) 및 뮤즈라이브 리모델링 부분 포함
기금	경륜훈련원	18,589	
기금	경정훈련원	13,775	
	소계	392,420	
	합계	1,746,409	

3※ 미사리조정경기장(국유지 1,134,792㎡): 문체부로부터 유상사용 전환('16. 7. 1~)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마. 예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예산은 기금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된다. 기금회계는 본부 기금관리 부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기금지원·투자·용자금, 기금여유자금 등이며, 법인회계는 본부, 유스호스텔, 경륜, 경정, 투표권,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고, 법인회계는 기금운용계획과 별도로 운영된다. 구체적인 예산 현황은 다음의 <표 1-31>과 같다.

표 1-31.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인회계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수입		지출	
	사업	금액	사업	금액
	합계	2,517,396	합계	2,517,396
본부	일반관리	4,193	일반관리	41,650
	올림픽공원	34,370	올림픽공원	56,563
	스포츠센터	14,499	스포츠센터	13,624
	스포츠산업	1,517	건설관리	3,629
	올림픽유스호스텔	-	스포츠산업	3,412
	전입금	71,116	투표권운영	988
			유스호스텔	4,760
			사내근로복지기금	9
			예비비	1,060
		소계	125,695	소계

구분	수입		지출	
	사업	금액	사업	금액
	합계	2,517,396	합계	2,517,396
경륜	경륜수득금	166,910	본장운영	113,421
	교차투표 수탁수수료	8,195	지점운영	52,334
	운영자금 이자수입	671	경륜훈련원	3,274
	입장료	4,307	스포츠단	3,903
	지점 직영매점 상품판매 수입	5,250	경륜예비비	2,017
	경정지점 공동활용	11,100	사업준비금	15,300
	기타수입	6,629	사감위분담금	230
			법정배분금	11,350
			공단전출금	1,233
		소계	203,062	소계
경정	경정수득금	68,604	본장운영	45,885
	운영자금 이자수입	232	지점운영	16,320
	입장료	2,280	경정훈련원	3,526
	본장 매점 및 지정좌석실 수입	20	스포츠단	-
	조정호 수입	1,682	경정예비비	793
	기타수입	706	사업준비금	6,289
			사감위분담금	61
			법정배분금	638
		공단전출금	12	
	소계	73,524	소계	73,524
투표권	투표권수입	2,013,528	투표권위탁비	345,297
	기타 사업 외 수입	9,500	법정배분금	1,677,731
	소계	2,023,028	소계	2,023,028
보조금	보조사업	92,087	보조사업	92,087
	소계	92,087	소계	92,087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2021년도 법인회계 규모는 총 2조 5,173억 9,600만 원으로서, 본부 1,256억 9,500만 원, 경륜 2,030억 6,200만 원, 경정 735억 2,400만 원, 투표권 2조 230억 2,800만 원, 보조금 920억 8,7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회계 예산 규모는 2조 6,212억 5,900만 원으로 2020년 2조 5,466억 8,900만 원에 비해 7억 4,57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1-32〉와 같다.

공단의 수입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법인회계전입금’으로서 경륜, 경정, 투표권 수입(1조 5,692억 4,100만 원)이 전체 수입의 59.9%를 차지하였다. 총 지출 역시 수입과 동일한데, 가장 많은 재정이 지출된 분야는 ‘생활체육 육성’으로서 6,576억 6,200만 원(25.1%)이 지출되었다.

표 1-32.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회계 예산

(단위: 백만 원)

수입	금액	지출	금액
○ 이자수입	13,368	○ 생활체육 육성	657,662
- 기금조성융자 이자	935	○ 전문체육 육성	393,889
- 스포츠산업융자 이자	1,719	○ 스포츠산업 육성	311,586
- 예탁금이자	10,714	○ 국제스포츠역량 강화	88,982
○ 부가금수입	1,920	○ 장애인체육 육성	90,911
○ 투자사업수입 등	79,653	○ 기금간거래	621,571
- 미술관운영	650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520,000
- 올림픽홀 및 태권도상설공연장	3,232	- 기금간전출(문화예술진흥기금)	97,000
- 경륜훈련원 및 경륜돔경기장	6,090	- 기금간전출(복권기금)	4,571
- 경정훈련원 사용료	1,049	- 기금간전출(관광진흥개발기금)	-
- 생활체육인프라(골프장)운영	11,661	○ 기금운영비	29,640
- 과학원 운영수입	1,248	- 인건비	13,392
- 기금 정산수입	55,723	- 기타경비	1,044
○ 법인회계전입금	1,569,241	- 투자사업 운영	3,998
- 경륜	895	- 한국스포츠과학원 운영	3,822
- 경정	359	- 생활체육인프라 운영	7,384
- 투표권	1,567,987	○ 여유자금 운영	427,018
○ 용자회수	10,343		
- 스포츠산업 융자	10,343		
○ 공자금회수	407,020		
○ 공자금이자	20,410		
○ 복권기금 전입금	88,565		
○ 여유자금회수	430,739		
합계	2,621,259	합계	2,621,259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 4) 태권도진흥재단 (www.tpf.or.kr)

##### 가. 설립배경 및 목적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진흥이 사회통합 및 민족 정체성 확립 등 국가 발전의 주요 동력임을 인식한 정부에 의해 2005년 7월 1일에 설립되었다. 태권도진흥재단의 주요 목적은 태권도원 조성 및 관리운영 및 태권도 진흥사업 추진, 태권도 주제의 스포츠산업 및 관광산업 진흥을 포함한 태권도를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태권도의 발전 및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다.

##### 나. 연혁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 조성·운영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2005년 7월 민법에 근거한 재단법인으로 설립 및 운영되어 왔다. 자세한 연혁은 다음의 <표 1-33>과 같다.

표 1-33. 태권도진흥재단 연혁

○ 2005. 07.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 설립 허가(문화관광부)
○ 2007. 12.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 제정
○ 2008. 06.	상기 태권도법에 의한 법정법인화
○ 2009. 08.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승인(문화체육관광부)
○ 2009. 09.	태권도공원 기공식
○ 2010. 01.	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3호)
○ 2012. 02.	명칭변경(태권도공원 ⇒ 태권도원)
○ 2013. 08.	태권도원 준공
○ 2014. 04.	태권도원 개원(2014.09. 개원식)
○ 2020. 12.	태권도원 상징지구 완공

※ 출처: 태권도진흥재단 내부자료(2021)

2007년 12월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2008년 6월에 동 법 제20조에 근거한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09년 9월에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태권도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태권도원 기공식을 하였으며, 2010년에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3호에 근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태권도원은 2014년 4월 개원하여 그해 9월 개원식을 거행하였다.

##### 다. 조직 및 인력

태권도진흥재단의 조직과 인력 현황은 다음의 <표 1-34>와 <그림 1-7>과 같다. 태권도

진흥재단은 총 87명 정원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표 1-34. 태권도진흥재단 인력 현황(2021)

(단위: 명)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7급	무기 계약직
정원	87	1	2	6	9	10	10	21	28
현원	87	1	2	6	9	10	10	21	28

※ 출처: 태권도진흥재단 내부자료(2021)

이와 같은 인력은 다음의 <그림 1-7>에 제시된 태권도진흥재단의 조직 구조에 맞춰 운영 중이다. 2본부 2실 6부 1관으로 이루어진 조직 구조다.



그림 1-7. 태권도진흥재단 조직도

태권도진흥재단(2021)

<그림 1-7>에서처럼, 태권도진흥재단은 정관상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와 행정업무를 위한 사무처로 구성된다. 이사장 직속으로는 감사실이, 사무총장 직속으로 기획조정실과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있으며, 영업본부에 3부, 진흥본부에 2부로 구성된다.

## 라. 주요사업

태권도진흥재단의 주요사업은 태권도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태권도 용품·콘텐츠 개발과 같은 관련 산업육성지원이다. 2021년도에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태권도원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이다. 태권도원 시설 및 장비를 관리하고 홍보를 위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태권도 진흥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둘째, 태권도 진흥이다. 이 사업에는 태권도 진흥을 위한 산업화 전략, 태권도 세계화 및 교육연구, 태권도 해외 활성화 지원,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등이 포함된다. 셋째, 태권도 지원을 통한 국제 공조 강화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초청 연수를 개최하고 용품을 지원하는 등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태권도 발전 지원(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마. 재정현황

창립초기 3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태권도진흥재단의 2012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별 재정 현황은 다음의 <표 1-35>와 같다.

표 1-35. 태권도진흥재단 재정 현황(2012~2021)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A)	자원별				자체수입비율 (B/A)×100(%)
		국고	기금	지방비	자체수입(B)	
2012	94,883	-	89,517	5,366	-	-
2013	66,212	-	62,873	3,294	45	0.07
2014	22,115	-	19,439	-	2,676	12.1
2015	23,899	-	19,200	-	4,699	19.7
2016	26,110	-	21,266	-	4,844	18.6
2017	33,378	-	25,239	3,150	4,989	14.9
2018	24,040	-	19,533	-	4,507	18.7
2019	30,752	-	25,204	590	4,958	16.1
2020	31,695	-	30,153	590	952	3.0
2021	30,916	-	28,739	740	1,437	4.6

※ 해당년도 최종 결산 기준

※ 출처: 태권도진흥재단 내부자료(2021)

〈1-35〉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권도진흥재단의 2021년 총 예산은 309억 1,600만 원으로서, 이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이 287억 3,900만원(93.0%)이고, 지방비가 7억 4천만 원(2.4%), 자체수입은 14억 3,700만 원으로서, 자체수입비율은 4.6%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방역수칙 및 집합금지 강화로 인해 각종 사업과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자체수입이 대폭 감소되었다.

## 5) 한국도핑방지위원회 (www.kada.or.kr)

### 가. 설립배경 및 목적

스포츠계 도핑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계적 움직임이 꾸준히 지속되었다. 1967년 IOC 의무분과위원회 발족과 함께 도핑의 정의 및 금지약물 목록 발표, 1999년 11월 10일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 Doping Agency: WADA) 설립, 2003년 3월 5일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 Doping Code: WADC) 선포, WADA의 결의문 발표 및 각국 정부와 올림픽대회 기구의 서명 날인이 이루어졌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스포츠 도핑 방지와 관련한 흐름 속에서 국내에도 전문도핑 방지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2006년 11월 13일에 설립되었다. 이 조직은 도핑방지 교육에서, 홍보, 정보수집 및 연구, 도핑검사 계획 수립 및 집행, 도핑검사 결과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도핑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를 주로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나 방법의 예외적 사용에 대한 허용기준 수립과 시행, 그밖에 도핑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며 2007년 2월 5일 UNESCO 반도핑국제협약을 비준·수용하였다.

### 나. 연혁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설립허가를 받아 2006년 11월 13일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다. 설립 후 2007년 3월 8일 국가도핑방지기구로 가입, 4월 27일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수용하였다. 같은 해 6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법정법인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등록하였으며 12월 19일에 한국도핑방지규정이 제정되었다. 이어 2009년 9월 28일에는 ISO 9001:2008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로부터 획득하였다. 또한 2013년 11월 5일, 세계도핑방지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 진출하였고(2014~2016년), 2014년 6월 2일 제11차 아시아 정부 간

회의도 개최하였다. 2016년 11월 2일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에 재선출되었다. 이사국 임기는 3년으로 2019년 진행된 선거에서 2022년까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3회 연속 선출됨으로써, 현재에도 한국은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아시아 이사국으로 세계 도핑방지업무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다. 조직 및 인력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직과 인력은 다음의 <표 1-36>과 같다. 현재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인력 정원은 45명이며 현원은 40명인데, 현원의 세부 구성으로는 임원 1명, 2급 1명, 3급 5명, 4급 5명, 5급 12명, 6급 16명이다.

표 1-36.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45	1	1	2	6	8	11	16
현원	40	1	0	1	5	5	12	16

※ 출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내부자료(2021)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두 개의 특별위원회와 세 개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사무국은 2본부 7부로 구성된다. 이 중 경영본부 안에는 기획조정부, 운영지원부, 국제협력부가 소속되어 있으며, 도핑방지활동 지원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고 법제 연구와 국제 협력을 위한 지원 업무를 관장한다. 사업본부 소속의 교육홍보부, 도핑검사부, 과학연구부, 법제조사부는 도핑방지 대면교육 및 온라인 교육 운영, 교육인력 역량 강화, 도핑검사 계획수립 및 집행, 도핑검사관 양성 및 관리, 도핑제보에 대한 조사·정보활동, 조사위원회 운영, APMU 업무, TUE 및 금지약물서비스 업무, 결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상세한 조직구성도는 다음 <그림 1-8>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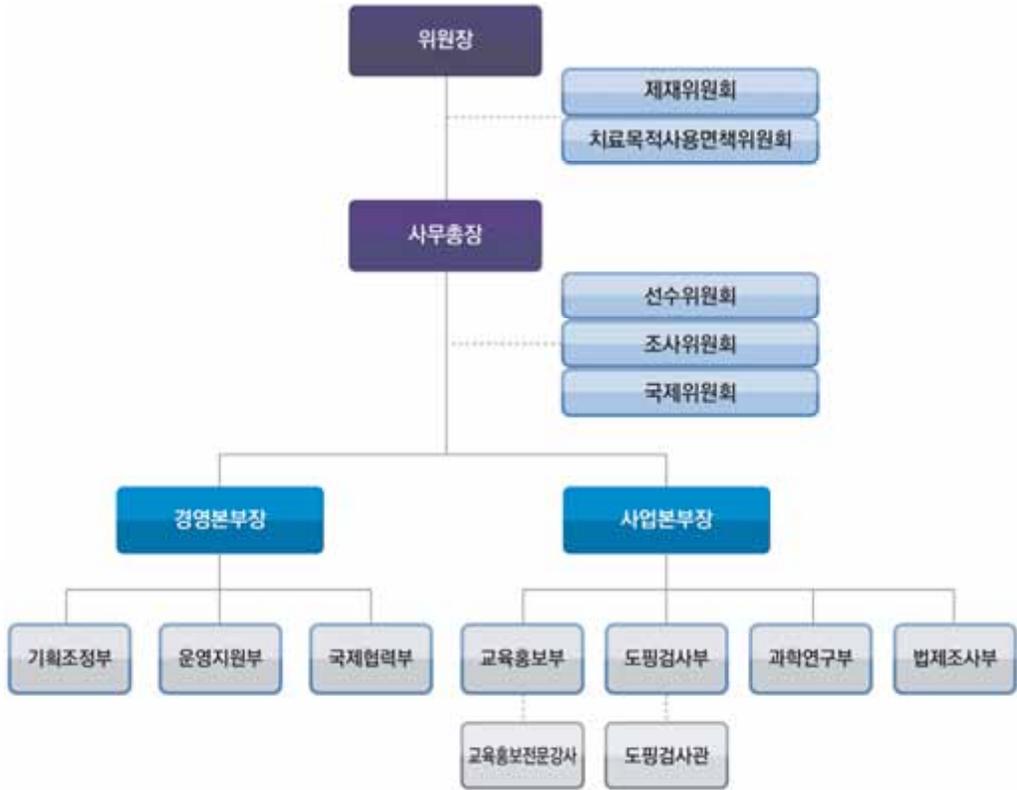


그림 1-8.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직도  
한국도핑방지위원회(2021)

라. 주요사업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주요하게 실행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도핑검사 및 결과관리를 위한 아마추어 및 프로스포츠 도핑검사 실시다. 이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도핑검사관(Doping Control Officer: DCO/Blood Collection Officer: BCO)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도핑위반 결과 관리 등을 수행한다. 2016년부터 프로스포츠대회 도핑검사를 자체 수행하면서 다양한 도핑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현황은 <표 1-37>과 같다.

표 1-37. 도핑검사 현황(2017~2021)

(단위: 명)

검사 구분		비용주체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체 검사	경기기간 중	한국도핑방지위원회	1,490	2,118	2,211	604	1,567
	경기기간 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995	1,534	1,999	967	2,467
	프로 경기기간 중	한국도핑방지위원회	850	908	981	575	827
	프로 경기기간 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267	310	303	131	182

검사 구분		비용주체	2017	2018	2019	2020	2021	
		소계	3,602	4,870	5,494	2,277	5,043	
외부 요청 검사	경기 기간 중	국제대회	국제연맹/조직위	389	440	367	10	-
		국내대회	국내연맹	375	106	69	53	105
		프로대회	프로단체	-	2	-	136	138
		경륜경정	경륜경정총괄본부	-	-	97	-	33
		계		764	548	533	199	276
	경기 기간 외	국제대회	국제연맹	351	306	463	305	370
		국내대회	국내연맹	22	12	18	3	11
		국내대회	프로단체	-	-	110	366	440
		경륜경정	경륜경정총괄본부	-	-	37	-	56
	계		373	318	628	674	877	
		소계	1,137	866	1,161	873	1,153	
		합계	4,739	5,736	6,655	3,150	6,196	

※ 「경륜경정법」 개정에 따른 도핑검사 시행  
 ※ 출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내부자료(2021)

둘째, 도핑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다. 효율적인 도핑방지를 위하여 대면교육을 추진하고, 온라인 도핑방지교육 콘텐츠 강화, 도핑방지 홍보 활동을 활성화한다. 도핑방지 교육의 구체적 현황은 <표 1-38>과 같다.

표 1-38. 도핑방지 교육인원 현황(2017~2021)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면 교육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1,859	2,810	2,167	582	524
	국가대표 후보 선수 등·하계훈련	1,108	1,206	1,040	21	52
	체육 중·고등학교	4,831	4,677	5,755	246	173
	프로스포츠	3,409	3,154	3,199	991	1,488
	요청교육(경기단체 연수회 및 강습회)	12,281	12,671	15,902	980	3,765
	일반 학생선수	-	-	14,298	559	1,439
	소계	23,488	24,518	42,361	3,379	7,441
온라인교육(소계)		187,602	178,209	183,465	269,151	269,140
합계		211,090	202,727	225,826	272,530	276,581

※ 대한체육회 인권교육과 연계한 학생선수 도핑방지교육 확대  
 ※ 대면교육 및 온라인 교육 포함  
 ※ 출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내부자료(2021)

도핑방지교육은 2014년 1만2,272명에 대한 대면교육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대면 교육인원은 2019년까지 매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대폭 축소되었고 교육인원도 크게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3,379명이, 2021년에는 7,441명이 대면 교육을 수료하였다. 한편, 2016년부터 실시된 온라인 교육은 전체 교육인원수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의 여건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비대면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2020년과 2021년에는 온라인교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총 269,140명이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였다. 이로써 2021년 총 교육인원은 2020년보다 4,051명(1.5%) 증가한 27만6,58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교육과 함께 도핑방지 현장 홍보도 이루어졌는데, 관련 내용은 <표 1-39>와 같다.

표 1-39. 도핑방지 현장홍보 현황(2017~2021)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도핑방지 현장홍보 실시	13	17	25	3	13

※ 출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내부자료(2021)

셋째, 국제역량강화 및 교류협력을 위한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이다. 대표적으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도핑방지 국제세미나 개최다. 더불어 국제기구와의 도핑방지활동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국제대회 및 국제기구에 인력 파견도 병행하는데, 이는 깨끗한 스포츠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공정성, 신뢰성, 전문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 목표와 전략과제는 <표 1-40>과 같다.

표 1-40.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업 추진 3대 전략목표 및 10대 전략과제

3대 전략목표	10대 전략과제	
도핑방지 인프라 확충	1. 도핑방지 교육활동 확대	6. 도핑검사인력 전문성 제고
맞춤형 도핑방지 강화	2. 도핑방지 홍보활동 강화	7. 정보기반 도핑방지 활동 강화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구축	3. 도핑방지 국제협력 활성화	8. 신뢰받는 투명 경영체계 구축
	4. 도핑방지 법, 제도의 체계화	9. 자율 운영체계 기반마련
	5. 공정한 도핑검사 확대	10. 직무, 성과중심 조직 역량 강화

※ 출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2021)

이와 함께,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 및 국제경기연맹(IFs) 등 관계 기관과 도핑검사 위탁대행 양해각서(MOU)를 다음의 <표 1-41>처럼 체결해왔다.

표 1-41. 한국도핑방지위원회 MOU 체결 현황

연번	체결일자	MOU 체결 연맹	연번	체결일자	MOU 체결 연맹
1	2011.02.22.	국제레슬링연맹(FILA)	28	2017.02.24.	미국도핑방지기구(USADA)
2	2011.04.05.	국제사격연맹(ISSF)	29	2017.05.18.	대한한의사협회
3	2011.05.16.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30	2017.06.22.	대한스포츠의학회
4	2011.06.20.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31	2017.12.15.	한국체육학회
5	2011.06.21.	국제연맹총연합회(Sport Accord)	32	2017.12.26.	서울YMCA
6	2011.06.27.	세계철인3종경기협회(WTC)	33	2018.02.06.	국제올림픽위원회(IOC)
7	2011.07.19.	국제인라인롤러연맹(FIRS)	34	2018.04.23.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8	2011.09.30.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ITU)	35	2018.09.03.	대한스포츠치의학회
9	2011.10.15.	국제휠체어농구연맹(IWBF)	36	2018.09.12.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10	2011.11.02.	국제테니스볼링연맹(WTBA)	37	2018.09.12.	광주세계수영선수권조직위
11	2012.01.31.	국제빙상연맹(CCES/ISU)	38	2019.02.11.	호주도핑방지기구(ASADA)
12	2012.04.20.	국제조정연맹(FISA)	39	2019.04.12.	국민체육진흥공단
13	2012.06.15.	국제핸드볼연맹(IHF)	40	2019.04.24.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
14	2012.08.09.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41	2019.11.01.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우즈베키스탄도핑방지기구(UzNADA)
15	2014.01.22.	국제연맹총연합회(Sport Accord)	42	2019.12.19.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16	2014.02.18.	광주유니버시아드조직위	43	2020.02.19.	한국체육대학교
17	2014.03.19.	인천아시아게임조직위	44	2020.02.2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8	2014.04.15.	인천장애인아시아게임조직위	45	2020.05.14.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19	2014.04.23.	국제력비연맹(IRB)	46	2020.06.05.	대한체육회
20	2014.06.10.	국제바둑연맹(IGF)	47	2020.06.10.	한국프로스포츠협회
21	2014.06.17.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	48	2020.06.23.	부탄도핑방지위원회(BADC)
22	2015.01.19.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49	2020.10.06.	국제이스포츠연맹(IESF)
23	2015.11.27.	세계배드민턴연맹(BWF)	50	2020.10.12.	대한장애인체육회
24	2016.06.24.	국제골프연맹(IGF)	51	2020.11.20.	약학정보원
25	2016.07.25.	대한체육회	52	2021.04.16.	국제검사기구(ITA)
26	2016.07.29.	중국도핑방지기구(CHINADA)	53	2021.09.16.	한·중·일 국가도핑방지기구
27	2016.12.12.	평창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	53개 기구와 MOU 체결		

※ 출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내부자료(2021)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2021년 12월까지 여러 스포츠 관련 기구와 총 53회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국제검사기구(ITA)와 한·중·일 국가도핑방지기구 등 2개 기관과 새롭게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국내에 있는 국제경기연맹 추적 관리검사 대상명부(Registered Testing Pool: RTP) 및 검사대상후보명부(TP: Testing Pool)에 등록된 선수의 소재지 정보 검사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1-42>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등록 선수의 소재지 정보 검사 현황이다.

표 1-42. 소재지정보 검사 현황(2017~2021)

(단위: 명,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검사건수								
국내RTP선수	79	156	72	314	120	742	135	728	140	1,191
국내TP선수	-	-	-	-	-	-	-	-	40	144
계	79	156	72	314	120	742	135	728	180	1,335

※ TP(검사대상후보명부: Testing Pool): '21년 한국도핑방지규정 전면 개정 시 RTP 보다 완화된 소재지정보 제출 의무를 갖는 검사대상후보명부(TP) 신설

※ 출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내부자료(2021)

<표 1-4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소재지정보 검사 횟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기존 RTP보다 완화된 소재지정보 제출 의무를 갖는 검사대상후보명부(TP)를 신설하여 RTP선수와 TP선수에 대한 소재지정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2021년에는 국내 RTP선수(140명)와 TP선수(40명) 총 180명을 대상으로 1,335건의 검사가 실시되었다.

#### 마. 재정현황

2006년 창립 초기 11억 원의 국고예산으로 시작했던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예산은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도별 현황은 다음의 <표 1-43>과 같다.

표 1-43.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재정 현황(2013~2021)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A)	재원별			자체수입비중 (B/A)×100(%)
		국고	기금	자체수입(B)	
2013	2,157	-	2,106	51	2.4
2014	2,274	-	2,199	75	3.3
2015	2,524	-	2,429	95	3.8
2016	3,227	-	3,127	100	3.1
2017	4,302	-	4,131	171	4.0

연도	계(A)	재원별			자체수입비중 (B/A)×100(%)
		국고	기금	자체수입(B)	
2018	5,144	-	4,761	383	7.4
2019	5,862	-	5,408	454	7.7
2020	7,361	-	6,676	685	9.3
2021	8,757	-	8,076	681	7.8

※ 출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내부자료(2021)

〈표 1-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도핑방지위원회의 2021년 총 예산은 87억 5,700만 원으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 80억 7,600만 원과 자체 수입 6억 8,100만 원이 포함된 규모다. 자체수입비중의 경우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5%p 감소한 7.8% 수준을 보였다.

## 6) 스포츠안전재단 (www.sportsafety.or.kr)

### 가. 설립배경 및 목적

스포츠안전재단은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여 ‘스포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설립된 조직이다. 스포츠 활동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스포츠 활동 중 사고율도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요구하는 국민적 인식과 기대 및 요구도 동시에 높아지면서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스포츠안전재단은 전문체육에서 생활체육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모든 스포츠 활동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이들 사고에 대한 공제사업 및 위로·구호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업무를 부여받으면서 2010년에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나. 연혁

스포츠안전재단은 2010년 7월 15일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대한체육회와 통합한 국민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12억 6천여만 원을 출연하며 설립되었다. 이렇게 출발하면서 생활체육인 대상 공제(보험)사업을 주로 하던 재단은, 201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은 정관 개정을 통해 사업대상을 기존 생활체육 외 전문체육으로까지 확대, 기존 공제(보험)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시설안전 예방사업으로 사업범위를 확장시켰다.

## 다. 조직 및 인력

스포츠안전재단의 인력은 다음의 <표 1-44>와 같다. 현재 스포츠안전재단 인력 정원은 25명이며 현원은 20명이다.

표 1-44. 스포츠안전재단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사무총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7급
정원	25	1	-	1	2	3	5	13
현원	20	1	-	-	2	2	4	11

※ 출처: 스포츠안전재단 내부자료(2021)

스포츠안전재단은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직책을 두고 총 3부 5팀의 사무국으로 구성되었다. 경영지원부(1팀)는 경영지원팀을 두고 있으며, 공제사업부(2팀)는 개발운영팀과 고객지원팀을 중심으로 전문·생활체육인을 위한 공제(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교육사업부(2팀)는 교육연구팀과 전략기획팀으로 구성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서부터 대상별, 연령별, 안전교육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1-9. 스포츠안전재단 조직도

스포츠안전재단(2021)

## 라. 주요사업

스포츠안전재단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체육인 및 체육 유관기관 대상의 공제(보험)사업, 스포츠안전에 관한 연구 사업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안전 관련 교육사업이다. 스포츠안전 교육 프로그램은 스포츠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상 및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스포츠 안전지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경기 안전운영, 운동상해 예방 및 재활 등 다섯 가지 부문에 대한 관련 지식과 행동지침으로 구성된다. 행사운영자, 지도자, 시설관계자, 일반 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행사운영자’에는 체육기관(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임직원, 지자체 체육담당 공무원, ‘지도자’에는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및 심판, ‘시설관계자’에는 시설관리공단, 민간스포츠시설 등에서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관계자, ‘참여자’에는 전문선수 및 생활체육인 등이 포함된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의 국내·외 자원봉사자 및 단기운영 인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표 1-45. 스포츠안전 교육프로그램 체계도

구분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스포츠 안전지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경기 안전운영	운동상해 예방 및 재활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및 관리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위험성 평가 및 관리	-	-
응급 처치	심정지발생시 응급처치	심정지발생시 응급처치 상처에 의한 손상 응급처치 근골격계 손상 응급처치 충격에 의한 손상 응급처치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 응급처치 질환별 응급처치 스포츠데이핑	심정지발생시 응급처치 상처에 의한 손상 응급처치 근골격계 손상 응급처치 충격에 의한 손상 응급처치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 응급처치 질환별 응급처치 스포츠데이핑	심정지발생시 응급처치 근골격계 손상 응급처치 충격에 의한 손상 응급처치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 응급처치 질환별 응급처치	심정지발생시 응급처치 스포츠데이핑
시설 관리	체육시설안전관리 실무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무 체육시설 안전관리 사례연구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	-	-
안전 관리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일반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계획 스포츠행사 안전인력 관리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운영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실무 스포츠행사 재난사고 대응관리 스포츠행사 군중 안전관리	스포츠지도 안전관리 계획 스포츠지도 안전관리 실무 스포츠지도 안전점검 실무 스포츠지도 재난사고 대처 지도자안전 사고 사후관리	체육시설 안전인력 운용 실무 체육시설 안전사고 대응	경기운영 안전관리 실무 경기운영 중 사고사례 워크숍	운동 손상 예방 및 관리 스포츠 안전 습관 형성

구분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스포츠 안전지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경기 안전운영	운동상해 예방 및 재활
안전 일반	스포츠안전의식 변화 스포츠안전과 법 스포츠안전사고 주요판례연구 스포츠안전공제 활용	스포츠안전의식 변화 스포츠안전과 법 스포츠안전사고 주요판례연구 스포츠안전공제 활용	스포츠안전의식 변화 스포츠안전과 법 스포츠안전사고 주요판례연구 스포츠안전공제 활용	스포츠안전의식 변화	스포츠안전의식 변화 스포츠안전공제 활용

※ 출처: 스포츠안전재단 내부자료(2021)

둘째, 공제(보험)사업이다. 스포츠안전재단은 체육활동 참여자(개인), 체육행사운영자, 체육지도자, 체육시설소유자를 대상으로 12종의 맞춤형 공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2021년 12월 기준). 2021년 공제상품 가입 및 보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46. 스포츠 안전공제 가입 현황(2017~2021)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가입자 수	8,144,397	9,197,412	11,537,621	6,940,532	7,274,812
전년대비 증감률	-2.9	12.9	25.4	-39.8	4.8

※ 출처: 스포츠안전재단 내부자료(2021)

표 1-47. 스포츠공제 가입 및 보상현황(2017~2021)

(단위: 건, 백만 원, 명)

구분	가입현황		보상현황	
	건수	금액	건수(인원)	금액
2017	24,802	6,519	2,484	1,909
2018	27,737	7,606	3,340	3,081
2019	28,707	9,347	3,661	2,669
2020	11,969	4,383	1,966	1,565
2021	18,054	6,126	4,131	1,867
합계	111,269	33,981	15,582	11,091

※ 출처: 스포츠안전재단 내부자료(2021)

재단 공제상품은 민간보험사와 달리 성별, 연령, 종목 위험도 및 장애 여부 등의 심사 없이 전문·생활체육 참여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행사 운영자와 지도자, 시설소유자 역시 각각의 가입 기준만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셋째, 스포츠안전 관련 연구 사업이다. 스포츠안전재단에서는 국내 스포츠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스포츠 부상 경험자의 세부특성 파악을 위한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관련 데이터를 집적시켰고,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스포츠안전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는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점검서비스 사업』을 운영, 스포츠행사(대회) 내 발생 가능한 사고유발 요인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2019년에도 역시 각 종목별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국내 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안전사고 주요판례 연구』도 실시한 바 있다. 더불어 안전한 스포츠 행사 및 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2019 스포츠행사 안전사고 통계연보』를 2020년에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 연보에 따르면, 2019년도 한 해 동안 주최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 7,467건의 스포츠 대회 및 행사 중 1,059건의 대회에서 총 3,064건(41.0%)의 사고 통지가 있었다.

#### 마. 재정현황

스포츠안전재단은 2010년 7월 12억 6천만 원의 출연자산으로 설립되었다. 공제(보험) 사업을 운영하여 얻은 자체수입은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스포츠안전 교육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기 시작했다. 2021년도 스포츠안전재단의 총 예산은 81억 9,400만 원으로서, 이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비용은 17억 6,400만 원 (21.5%)이고, 나머지 78.5%인 64억 3,000만 원은 자체수입을 통해 확보되었다.

표 1-48. 스포츠안전재단 재정 현황(2017~2021)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A)	재원별					자체수입 (B)	자체수입비중 (B/A)×100(%)
		국고	기금	적립금	지정 기부금	지정 후원금		
2017	8,319	-	1,800	-	-	-	6,519	78.4
2018	9,506	-	1,800	-	33	67	7,606	80.0
2019	11,547	-	2,200	-	-	-	9,347	80.9
2020	6,377	-	1,994	-	-	-	4,383	68.7
2021	8,194	-	1,764	-	-	-	6,430	78.5

※ 출처: 스포츠안전재단 내부자료(2021)

## 7)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kusf.or.kr)

### 가. 설립배경 및 목적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우리나라 대학운동부 운영 대학의 협의체로서 대학스포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및 전담하는 조직이다. 2000년대 후반, 교육부의 대학 평가 등 대학

구조 조정 여파로 각 대학에서 운동부 운영이 축소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대학운동부 관련 스카우트 비리가 발생하며 각 대학에서 운동부를 해체하는 분위기까지 만연되었다. 그러던 중 2009년, 대학스포츠 선진화를 위하여 대학 학생선수의 학사관리를 강화하고 대학스포츠를 브랜드화할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며 미국의 NCAA를 모델로 한 지금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당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의 주요 목적은 대학스포츠 방침을 심의·결정 및 규정 집행·감독하고 대학스포츠 제도를 연구 및 협의·조정하며 대학스포츠 권익 증진과 대학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 및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대학스포츠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 나. 연혁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2010년 6월 8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출발했다. 당시에는 운동부를 보유한 주요 대학 총장 간담회와 창립발기준비회의 등을 거쳐,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라는 대학 총장 중심의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대학의 경우, 운영의 자주성을 가지고 있어 대학운동부의 운영 방향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에 대학총장들의 협력이 있어야만 대학스포츠 정상화 및 선진화가 가능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연혁은 <표 1-49>와 같다.

표 1-49.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연혁

2010.06.08.	창립총회 개최, 제1대 김한중 회장(연세대 총장) 취임
2011.04.11.	KUSF 상표 등록 출원
2012.02.01.	제2대 장호성 회장(단국대 총장) 취임
2012.05.21.	KUSF 성명서 발표(대학스포츠 정상화 5대 핵심 과제) (체육특기자 금전 스카우트 근절, 지원서 폐지, 학생선수 학업 증진, 지도자 처우 개선,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결의)
2014.02.01.	제3대 장호성 회장(단국대 총장) 취임
2014.09.28.	제1회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개최
2015.01.28.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정·시행
2015.12.29.	아시아 대학스포츠 국제 교류 포럼 개최
2016.06.22.	대학스포츠 운영규정, 운영세칙 제정·시행
2016.09.30.	KUSF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016.11.06.	KUSF 클럽챔피언십 2016 개최(농구, 야구)
2017.01.29.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C <sup>0</sup> 규정) 시행
2017.02.01.	제4대 장호성 회장(단국대 총장) 취임

- 2017.04.27. KUSF-스포츠안전재단 업무협약 체결
- 2017.04.30. KUSF-네이버 업무협약 체결 \*「대학스포츠 콘텐츠 활성화 업무협약」
- 2017.08.25. 체육특기자대입포털 오픈
- 2017.09.01. 국가대표 대학 학생선수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개설
- 2017.09.28. KUSF-대한체육회-한국체육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점취득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18.02.06. 제5대 김창수 회장(중앙대 총장) 취임
- 2018.05.25. KUSF-네이버 업무협약 체결 \*「체육특기자 대입 접근성 강화 및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 2018.08.13.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로 기관명 변경
- 2018.09.12. KUSF-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2019.06.21. 대학스포츠 U-리그 통합관리시스템 오픈
- 2019.07.01. KUSF, 공직유관단체 지정
- 2019.10.28. 다음·카카오 스포츠 섹션 내 대학스포츠 이슈 페이지 오픈
- 2020.02.07. 제6대 정진택 회장(고려대 총장) 취임
- 2020.07.15. 체육특기자대입포털 2021학년도 DB구축
- 2020.12.10. KUSF 설립 10주년 기념 대학스포츠 심포지엄 개최
- 2021.02.22. 대학스포츠 종합정보시스템 오픈
- 2021.02.23. 대학스포츠 인권위원회 신설
- 2021.03.31. KUSF-TikTok 후원협약 체결

※ 출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2022).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2021연감.

#### 다. 조직 및 인력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2021년 기준, 회장을 중심으로 감사와 부회장, 이사회를 두고 있고, 사무처장 하에 3팀(운영지원팀, 기획총괄팀, 홍보마케팅팀)의 정원 20, 현원 17명으로 구성된 사무처를 운영한다. 다음의 <표 1-50>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of 구체적 인력 현황이며, <그림 1-10>은 조직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표 1-50.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사무처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비정규직
정원	20	1	2	2	3	3	4	5	-
현원	17	1	-	1	1	1	4	9	-

※ 출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내부자료(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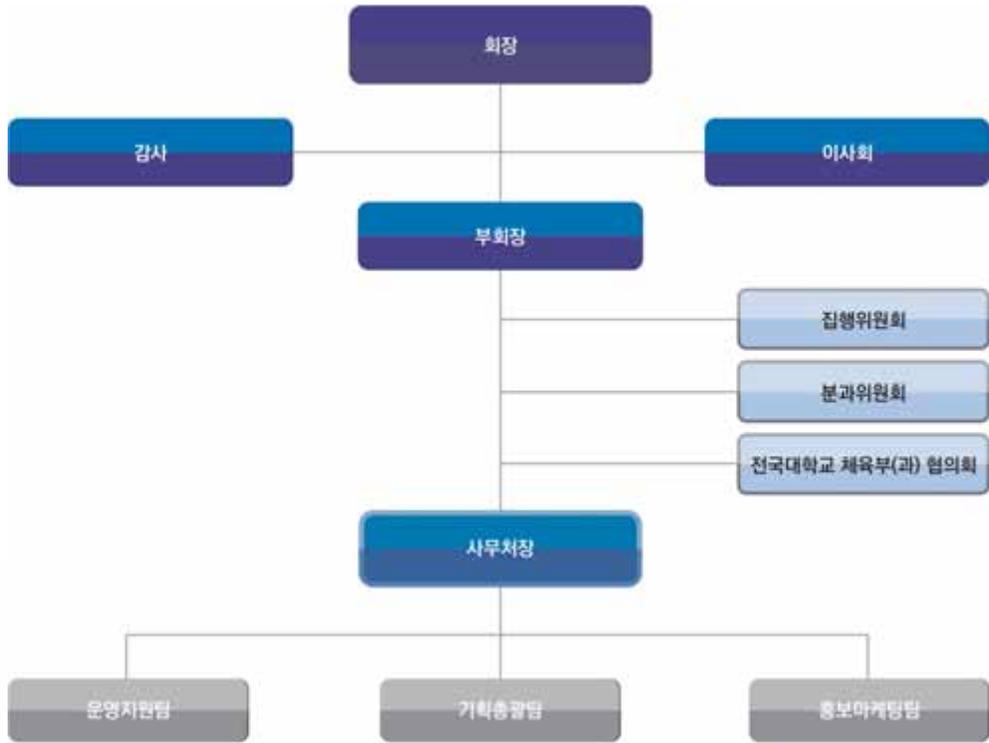


그림 1-10.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조직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2021)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조직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15명)와 분과위원회(28명)를 구성하고, 운동부를 운영하는 전국의 대학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2010년 초기엔 전국 48개 대학이 회원이었다가 점차 증가하면서 2021년 현재는 116개 대학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표 1-51.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 대학 연도별 현황(2012~2021)

(단위: 개)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회원대학(교)	51	52	84	95	92	94	98	105	110	116

※ 2020년 회원대학 지역별 분포(개): 서울(21), 부산(9), 대구(5), 인천(2), 광주(7), 대전(6), 울산(2), 세종(0), 경기(7), 강원(12), 충북(5), 충남(7), 전북(10), 전남(8), 경북(9), 경남(5), 제주(1)

※ 출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2022),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2021연감.

### 라. 주요사업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주요사업은 크게 일곱 가지다. 대학운동부 지원, 학생선수 선발

정상화, 학생선수 학사관리 정상화, 학생선수 미래가치 창출, 대학 엘리트스포츠 리그 운영, 대학 클럽스포츠 리그 운영, 대학스포츠 인권 증진 사업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52>와 같다.

표 1-52. 한국대학스포츠협회의 주요 사업 내용

순번	범주	사업목적	세부사업내용
1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운동부 육성 지원 및 대학스포츠 경쟁력 제고</li> <li>대학운동부 운영 방향성 제시</li> <li>대학스포츠 정상화</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운동부 평가(대학운동부 평가지표체계 활용 평가, 평가지표 개선 연구)</li> <li>2) 대학운동부 지원(2021년도 111개 대학 77억 원)</li> <li>3) 체육계대학 지원(한국체육대학교 10억 원)</li> <li>4) 대학운동부 교육(학생선수 소양교육, 리더십교육, 신입생교육)</li> <li>5) 대학운동부 시상(대학스포츠 우수 학생선수 및 지도자)</li> </ol>
2	학생선수 선발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특기자 대입정보 제공</li> <li>체육특기자 대입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육특기자 대입설명회 개최('21년 온라인 진행, 65개 대학 참가)</li> <li>2) 체육특기자대입포털 운영(info.kusf.or.kr)</li> <li>3)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발간(128개 대학별 세부 입시요강 수록)</li> <li>4)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개선 정책협의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가이드라인 도출 및 회원대학 대상 권고</li> <li>- 체육특기자 경기력 평가지표 타당성 및 실용성 검증 방안 연구</li> </ul> </li> </ol>
3	학생선수 학사관리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선수 수업참여도 및 학습권 보장</li> <li>대학스포츠 빅데이터 기반 구축을 통한 정보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li> <li>대학스포츠 현안 공유 및 의견 수렴을 통한 대학스포츠 발전방안 마련</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시행</li> <li>2) 대학스포츠 학사관리지원 프로그램(KUSF 학생선수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드림-이음(학생튜터링), 두드림-배움(팀튜터링), 두드림-함께(더블튜터링) 운영</li> <li>* 총 12개교 지원 / 두드림-이음(4개교), 두드림-배움(4개교), 두드림-함께(4개교)</li> </ul> </li> <li>3) 대학스포츠 종합정보시스템 운영(data.kusf.or.kr)</li> <li>4) 대학스포츠 심포지엄</li> <li>5) 진천선수촌 입촌 학생선수 학점인정 지원</li> </ol>
4	학생선수 미래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수출신 대학생의 진로 탐색 지원</li> <li>대학생 제작 콘텐츠를 통한 대학스포츠 홍보 강화</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KUSF U-스포츠마케팅 러너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선수/선수출신 대학생 실무능력 및 취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개별 운영</li> </ul> </li> <li>2) KUSF 대학생 기자단 운영('21년: U-리그 5개 팀 50명 활동, 4,409개 콘텐츠 생산)</li> <li>3) 대학스포츠 홍보콘텐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TV, 유튜브 등</li> </ul> </li> </ol>
5	대학 엘리트스포츠 리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선수 경기력 향상 및 학습권 보장</li> <li>학내 리그 개최를 통한 대학구성원 참여 문화 형성</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KUSF 대학스포츠 U-리그 총 6종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구(남, 여), 배구(남, 여), 소프트테니스, 아이스하키, 야구, 축구 지원</li> <li>* 농구(남: 12개교, 여: 6개교), 배구(남: 12개교, 여: 4개교), 소프트테니스(10개교), 아이스하키(4개교), 야구(43개교), 축구(85개교)</li> </ul> </li> <li>2) KUSF 대학스포츠 U-리그 중계 및 머천다이징 사업 운영</li> <li>3) KUSF 대학스포츠 U-리그 평가시스템 운영 및 공제서비스 제공</li> <li>4) KUSF 대학스포츠 U-리그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li> </ol>

순번	범주	사업목적	세부사업내용
6	대학 클럽 스포츠 리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1인 1스포츠 문화 확산</li> <li>• 대학스포츠 저변 확대</li> </ul>	1) KUSF 클럽챔피언십 운영(농구(남/여), 배구(남/여), 야구(남), 축구(남/여)) - KUSF 클럽챔피언십 2021 지역예선(종목/부문별 2개 권역) - KUSF 클럽챔피언십 2021 결선대회
7	대학 스포츠 인권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운동부 인권 인식 개선</li> <li>• 인권친화적인 대학스포츠 문화 조성</li> </ul>	1) 대학스포츠 인권위원회 신설(2021. 4. 출범) 2)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인권 교육 교안 개발 3)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인권 리플렛 제작 및 배포 4)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인권 슬로건 공모전 개최 * "배움으로 단단하게, 흘린 땀만큼 평등하게"

※ 출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2022),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2021연감.

### 마. 재정현황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2021년 총 예산은 <표 1-51>과 같이 170억 9,300만 원이었다. 이는 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에 따른 것으로(166억 500만 원), 기타 비용(2억 9,200만 원)과 자체수입예산(1억 7,200만 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이들 예산은 앞선 <표 1-53>의 대학운동부 지원부터 대학스포츠 리그지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관장하는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표 1-53.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재정 현황(2018~2021)

(단위: 백만 원)

연도	계(A)	재원별					자체수입비중 (B/A)×100(%)
		국고	기금	지방비	기타	자체수입(B)	
2018	15,538	-	14,712	30	246	550	3.54
2019	15,837	-	15,440	40	280	77	0.49
2020	16,412	-	16,103	0	270	39	0.24
2021	17,093	-	16,605	24	292	172	1.01

※ 주: 결산 기준으로 작성

※ 출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내부자료(2021)

## 8) 2018평창기념재단 (legacy2018.or.kr)

### 가. 설립배경 및 목적

2018평창기념재단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이후 올림픽 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올림픽 대회 이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총회에서 대회 성과 및 재정, 사후관리 관련 최종 보고 시, 올림픽

유산사업의 성과 계승, 동계스포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올림픽 잉여금을 활용한 재단 설립 계획 제시가 계기였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절차를 거쳐 재단설립 방침이 확정되었다. 방침에 따라, 문체부, 강원도, 조직위, KOC, KPC 등이 참여한 기념재단 설립TF를 구성, 정관 및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거쳐 조직위 해산총회(19년 3월 22일)에서 조직위와 대한체육회 간 기념재단 출연관련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 2019년 3월 25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 학술, 자선,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및 세 개 경기장 운영지원 사업을 포함한 업무를 시작하였다.

#### 나. 연혁

2018평창기념재단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설립절차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2019년 4월 1일 법인등기를 마침으로써 정식 법인으로 만들어졌다. 2019년 3월 25일 창립총회에서 당연직이사, 사무처장, 감사를 선임하였고, 같은 해 4월에 1단계 주무관청에게서 직제 및 정원, 기념재단 운영규정을 승인받았으며, 2019년 12월 본격적인 유산사업 추진을 위한 2단계 직제 및 정원 변경 승인을 받았다.

#### 다. 조직 및 인력

2021년 기준으로 2018평창기념재단의 조직구조 및 구체적 인력 현황은 다음의 <그림 1-11>의 형태에 따라 <표 1-54>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1-54. 2018 평창기념재단 인력 현황(2021)

(단위: 명)

구분	계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부장	팀장	팀원
정원	18	1	1	1	4	11
현원	17	1	1	1	4	10

※ 출처: 2018평창기념재단 내부자료(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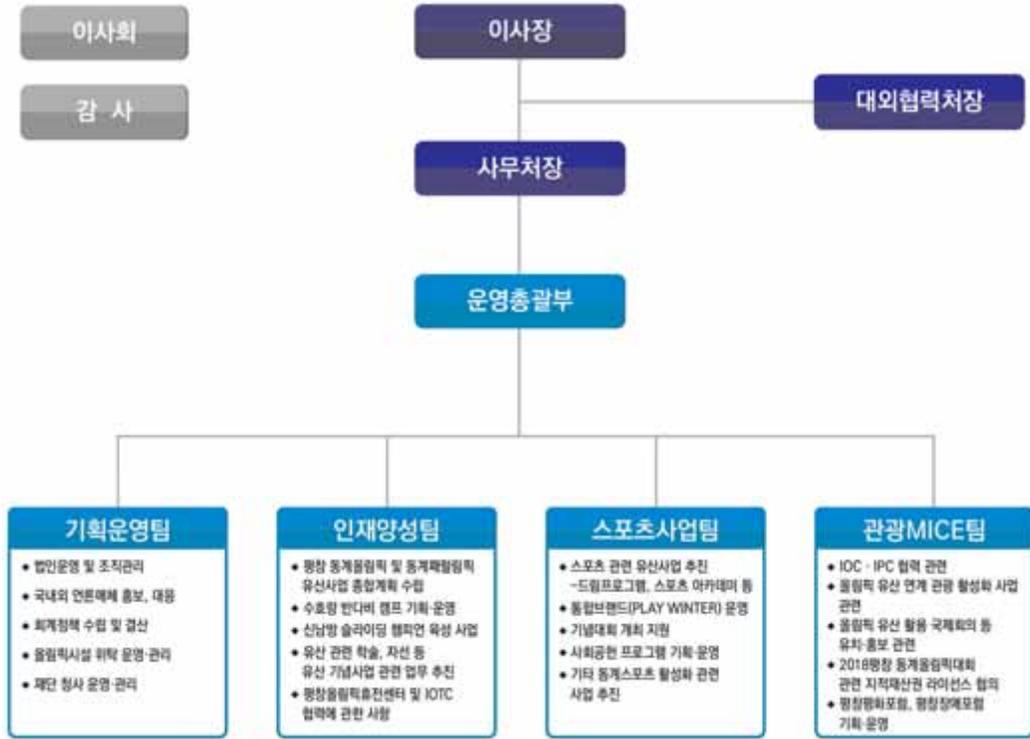


그림 1-11. 2018평창기념재단 조직도  
2018평창기념재단(2021)

그림에서 볼 수 있듯, 2018평창기념재단은 전체적으로 2처장 1부 4팀으로 구성되었고, 사무처장 1명, 대외협력처장 1명, 부장 1명, 팀장 4명, 팀원 10명 등 총 17명이 근무한다.

라. 주요사업

2018평창기념재단은 평창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유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의 국내외 스포츠 외교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한다. 2018평창기념재단의 주요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올림픽 기념관 운영’으로써 올림픽 소장유물을 전시하고 관리함과 동시에 시설장비 등을 관리 및 운영하고, 기념관을 홍보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둘째, ‘인재양성’으로써 이는 전국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가치교육 및 스포츠 체험, 지역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 신남방국가의 선수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전세계의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도모하는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 그리고 국제심판, 경기운영,

아이스메이커 등 동계스포츠 전문인력을 교육하는 ‘경기전문인력 활성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스포츠 사업’으로써 개발도상국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계스포츠 체험기회 및 한류 문화강습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프로그램’, 전국 유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파라하키 및 피겨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열린동계스포츠아카데미’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는 공식 대회 지원을 통한 통합브랜드(플레이윈터) 홍보 및 마케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넷째로는 ‘관광마이스’로, ‘평창평화포럼’, ‘평창장애포럼’ 등 다양한 포럼 및 ‘상상평화캠프’ 등의 캠프를 개최하여 올림픽의 평화와 화합, 인간 존엄 실현과 평등 등의 가치를 전파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2018평창기념재단의 2021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의 <표 1-55>에 정리되었다.

표 1-55. 2018평창기념재단 주요 사업 내용

범주	주요업무	내용
올림픽 기념관 운영	올림픽 기념관 수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간: 2021. 1월 ~ 12월</li> <li>주요내용: 소장유물 전시 및 관리, 시설장비 관리 운영, 기념관 홍보</li> </ul>
인재양성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간: 2021. 04. ~ 2022. 03.</li> <li>주요내용: 전국 유청소년 대상 올림픽, 패럴림픽 가치교육 및 스포츠 체험, 지역 문화체험</li> </ul>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간: 2020. 03. ~ 2022. 03.</li> <li>주요내용: 신남방국가 선수 육성을 통한 전세계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li> </ul>
	경기전문인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간: 2021. 06. ~ 2022. 04.</li> <li>주요내용: 동계스포츠 전문인력(국제심판, 경기운영, 아이스메이커 등) 교육</li> </ul>
스포츠사업	드림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간: 2021. 06. ~ 2022. 05.</li> <li>주요내용: 개발도상국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동계스포츠 체험 및 한류 문화강습</li> </ul>
	열린동계스포츠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간: 2021. 6월 ~ 12월</li> <li>주요내용: 전국 유청소년 및 성인 대상 파라하키 및 피겨 아카데미 운영</li> </ul>
	플레이윈터 기념대회 지원 및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간: 2021. 07. ~ 2022. 06.</li> <li>주요내용: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는 공식 대회 지원을 통한 통합브랜드(플레이 윈터) 홍보 및 마케팅</li> </ul>
관광마이스	평창평화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간: 2021. 10 ~ 2022. 03.</li> <li>주요내용: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저명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평화와 화합의 정신 전파</li> </ul>
	평창장애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간: 2021. 12 ~ 2022. 04.</li> <li>주요내용: 인간 존엄 실현과 차별 없는 장애인 생활개선을 논의함으로써 평창동계패럴림픽 대회 정신 계승 및 전파</li> </ul>
	상상평화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간: 2021. 05 ~ 2022. 04.</li> <li>주요내용: 전세계 청소년 대상 평화, 휴전교육을 통한 올림픽 평화유산사업 전파</li> </ul>

※ 출처: 2018평창기념재단 내부자료(2021)

## 마. 재정현황

2018평창기념재단의 2021년도 예산은 총 227억 7,600만 원으로서, 재원별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1-56>과 같다.

표 1-56. 2018평창기념재단 재정 현황(2021)

(단위: 백만 원)

연도	계(A)	재원별			자체수입비중 (B/A)×100(%)
		국비	지방비	자체수입(B)	
2019	4,562	700	2,096	1,766	38.7
2020	15,069	4,950	7,447	2,672	17.7
2021	22,776	4,815	7,836	10,125	44.5

※ 출처: 2018평창기념재단 내부자료(2021)

<표 1-56>에서처럼, 2018평창기념재단의 재정은 주로 강원도와 평창군에서 제공하는 지방비(78억 3,600만 원)로 구성되고, 국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48억 1,5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자체수입의 경우, 2019년 창립 시 출연금이 운영비로 편성되어 사업 기반이 되었으며, 2021년에는 전체 재정의 44.5%(101억 2,500만 원)를 차지하였다.

## 9) 스포츠윤리센터 (www.k-sec.or.kr)

### 가. 설립배경 및 목적

스포츠윤리센터는 2019년 1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 논의가 시작되어 스포츠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2020년 8월 5일에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다. 조사권한과 수사 기능을 강화한 상담·신고 센터로서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가해자 처벌을 현실화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정서·법률 등 종합적 지원을 한다. 또한 공정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비윤리적·비인격적 행위에 대한 예방교육과 국내외 정보 공유를 통해 체육계 악습의 고리를 끊고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클린스포츠센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하여,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주요 업무로 한다. 특히,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른 고발, 징계요구 및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의 요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나. 연혁

2019년 5월 7일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권고에서 체육계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전문성·신뢰성을 갖춘 스포츠인권 전담기구 설립이 제안되었고, 근거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0.02.04.공포) 이후 설립추진단을 통해 6개월간 설립을 준비하였다. 특이한 점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인 2020년 8월 5일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설립허가와 동시에 업무를 개시하였다는 점이다. 8월 12일에 법인등기 등록하였고 8월 14일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다.

#### 다. 조직 및 인력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직과 인력은 다음의 <표 1-57>과 <그림 1-12>와 같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 정원은 40명이며 현원 역시 40명이다.

표 1-57. 스포츠윤리센터 인력 현황(2021)

(단위: 명)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6급	전문위원 (변호사)
정원	40	1	1	2	5	8	21	2
현원	40	1	1	2	5	7	22	2

※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내부자료(2021)

스포츠윤리센터의 이사장과 이사회에 관할 아래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그리고 청문감사 담당관을 두고 있다. 사무국은 2실 5팀 1소의 체제로 구성된다. 경영기획팀은 직속으로 사무국장 관리 체제로 편입되며, 사업기획팀과 교육홍보팀은 정책실에, 조사1팀과 조사2팀은 조사실에 소속된다. 지역사무소는 경기, 경남, 대전지역 사무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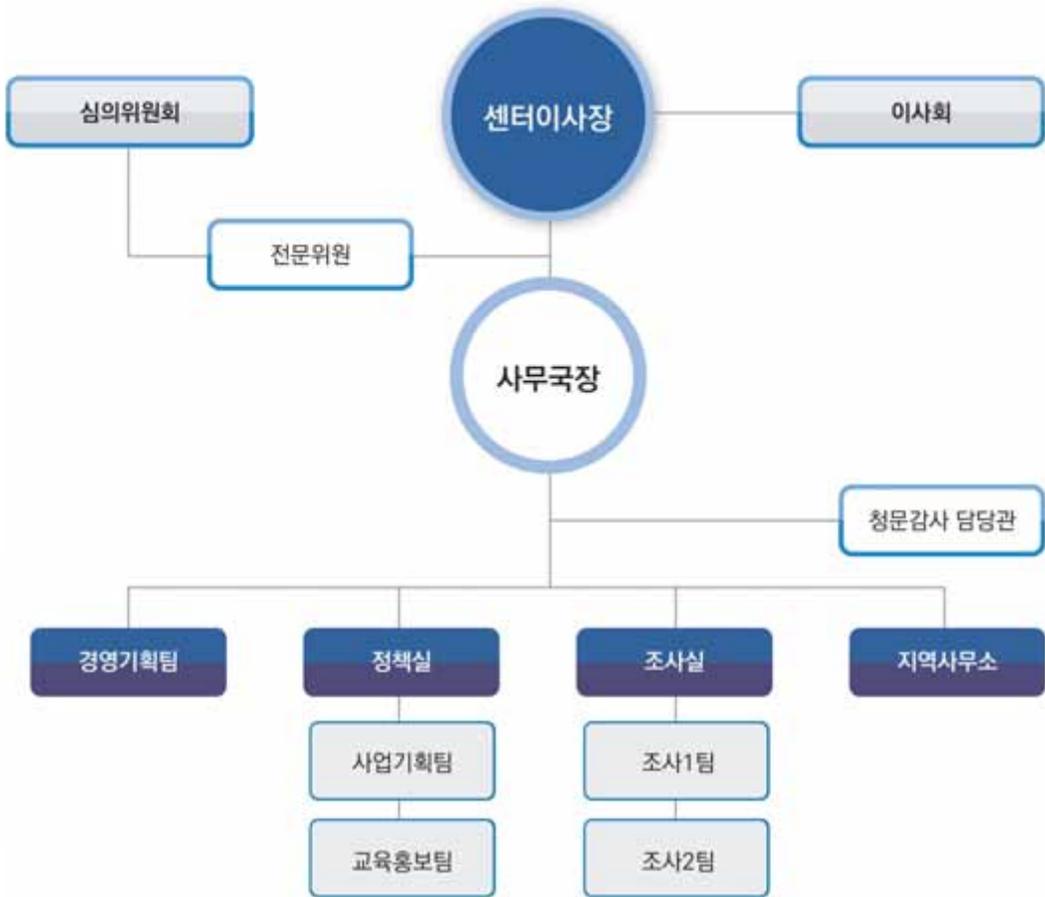


그림 1-12. 스포츠윤리센터 조직도

스포츠윤리센터(2021)

### 라. 주요사업

스포츠윤리센터의 주요사업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기관 설립 및 제반 법정사업에 착수한다. 둘째,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 관련 업무이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넷째,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방지와 비리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주요업무가 다음 <표 1-58>에 정리되었다.

표 1-58. 스포츠윤리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

주요업무	내용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3항, 제18조의7 등에 따른 상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성폭력, 비리 등 피해에 대한 신고·상담</li> <li>- 피해자 의료, 심리, 주거, 법률 등 지원 및 전문가관 연계</li> <li>- 피해 대상별(장애인, 외국인, 청소년 등) 지원 등</li> </ul> </li> </ul>
신고접수·조사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3항, 제18조의5 등에 따른 신고 접수 및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li> <li>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li> <li>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li> <li>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li> <li>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항</li> </ul> </li> <li>「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8, 제18조의9 등에 따른 고발, 징계요구 등 후속조치</li> </ul>
조직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리조사실(비리 조사) 인권대응팀(인권조사)의 조사 기능 일원화</li> <li>- (기존) 인권진흥실(인권대응팀, 교육홍보팀) 및 비리조사실(조사1·2팀)</li> <li>- (변경) 정책실(사업기획팀, 교육홍보팀) 및 조사실(조사1팀(비리), 조사2팀(인권))</li> <li>- 전문위원(변호사) 채용 및 심의위원회 분과 운영(인권/비리)을 통한 심의위 운영 효율화</li> <li>* '21년도 심의위11회 개최, 114건 심의 및 81건 처리(71%)</li> </ul> </li> </ul>
징계정보시스템 등 구축 및 징계사실유무 확인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 구축</li> <li>「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7 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li> <li>「법」 제18조의13 및 스포츠윤리센터 「정관」에 따른 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6.9. 법 개정에 따른 징계사실유무확인서(수기) 발급 개시</li> <li>* 1,712건 발급, 징계확인 44건</li> </ul> </li> </ul>
스포츠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3항, 제18조의11등에 따른 스포츠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li> <li>-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스포츠인권 교육</li> <li>- 스포츠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li> </ul> </li> <li>기타 스포츠인권 확산을 위한 교육</li> <li>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li> </ul>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3항, 제18조의 16등에 따른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 학생선수 대상 스포츠인권 실태 전수조사 실시</li> <li>* 프로·실업팀 선수 대상 스포츠인권 실태 전수조사 실시</li> <li>* 초·중·고 학생선수 학부모 대상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실시</li> </ul> </li> </ul> </li> </ul>
스포츠윤리센터 및 주요 사업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인 소통채널 활성화(SNS 등 뉴미디어 채널 운영, 콘텐츠 제작)</li> <li>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현장홍보</li> <li>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li> <li>서포터즈 운영(센터 및 사업 안내, 카드뉴스, 동영상 제작 등)</li> </ul>
인권감시관 (인권살피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3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 점검</li> </ul> </li> </ul>
지역사무소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 경남,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및 개소('21. 12. 17.)</li> </ul>

※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내부자료(2021)

### 마. 재정현황

스포츠윤리센터의 2021년도 예산은 총 53억 1,200만 원으로서, 자원별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1-59>와 같다.

표 1-59. 스포츠윤리센터 예산 현황(2021)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A)	자원별					자체수입비중 (B/A)×100(%)
		국고	기금	지방비	기타	자체수입(B)	
2020	3,191	-	3,191	-	-	-	0
2021	5,312	-	5,312	-	-	-	0

※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내부자료(2021)

표에서처럼, 스포츠윤리센터의 재정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되어 기관 설립과 센터 운영에 사용되었다.

## 제3절 체육진흥재원

## 1. 체육진흥재원의 구성

국가의 체육진흥재원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정부 국고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비로 관리 및 운용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한체육회 등 민간체육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체 재원이 핵심이다. 다음의 <표 1-60>은 재정 구성 부분별 체육진흥재원의 구체적 규모다.

표 1-60. 체육진흥재원의 구성(2012~2021)

(단위: 억 원)

연도	국고 <sup>1</sup>	국민체육진흥기금 <sup>2</sup>	지방비 <sup>3</sup>	체육단체 <sup>4</sup>	합계
2012	1,516	7,559	28,198	2,365	39,638
2013	1,717	9,216	32,130	2,724	45,787
2014	1,488	9,120	35,527	2,045	48,180
2015	1,344	12,224	34,819	3,690	52,077
2016	1,355	14,031	36,695	4,327	56,408
2017	1,338	13,684	41,686	10,844	67,552
2018	1,287	10,389	48,939	14,328	74,943
2019	2,374	12,074	49,702	3,322	67,472
2020	2,475	14,261	49,846	1,721	68,303
2021	1,932	15,662	53,497	2,795	73,886

1. 국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협력관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2. 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운영비, 전출금, 여유자금 등 제외한 순 사업비(편성기준)

3. 지방비: 시·도 및 시·군·구 일반회계 최종예산

4. 체육단체: 대한체육회,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자체수입 예산, 대한장애인체육회 자체수입 예산,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스포츠안전재단, 태권도진흥재단, 평창조직위원회(2018평창기념재단),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스포츠윤리센터 자체수입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2021)

체육진흥재원 규모의 10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3조 9,633억 원 규모였다가 2015년 5조원 대를 넘어섰고, 2016년 이후 매년 약 1조 원씩 증가하여 2017년 6조 7,552억 원, 2018년 7조 4,943억 원에 도달하였다. 이때는 특히 체육단체의 자체 재원이 많았는데, 평창조직위원회의 동계올림픽 관련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조직위원회 중심의 자체수입이

없어지고 난 후 2019년에는 국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지방비는 늘었으나, 체육단체 수입이 줄어들면서 2017년과 2018년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인 6조 7,472억 원의 체육진흥재원이 구성되었다. 2020년에는 체육단체 재원을 제외한 모든 체육진흥재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총계가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도 국고를 제외한 모든 체육진흥재원이 증가하여 전체 체육진흥재원 총계는 7조 3,8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상향되었다.

## 2. 중앙정부의 체육재정

중앙정부의 체육재정은 국고(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즉, 세금 기반의 국고와 기금사업 중심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합쳐져 중앙정부 체육재정으로 구성되는 형태로서, 다음의 <표 1-61>은 국고 예산이 체육 분야별로 분포된 현황이다.

표 1-61. 체육 분야별 국고예산 현황(2012~2021)

(단위: 백만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생활체육	89,248	104,227	146,491	132,976	134,357
전문체육	40,845	47,131	-	-	-
국제교류	9,802	10,316	1,011	876	886
스포츠산업	3,759	3,496	985	200	190
장애인체육	7,747	6,307	110	110	110
기타	214	205	241	245	233
합계	151,615	171,682	148,838	134,407	135,776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생활체육	130,354	127,523	235,869	245,955	191,851
전문체육	-	-	-	-	-
국제교류	865	878	880	997	553
스포츠산업	120	147	134	134	127
장애인체육	88	108	258	235	223
기타	172	158	227	178	472
합계	131,599	128,814	237,368	247,499	193,226

※ 주: 「기타」는 체육국, 체육협력관의 기본경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2021)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2021년 중앙정부 체육재정 중 국고는 2020년에 비해 542억 7,300만 원 감소한 1,932억 2,6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분야별로 봤을 때, 생활체육 분야에서 약 581억 원이, 국제교류 분야에서 약 4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다. 국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에 2,135억 1,900만 원에서부터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8년에 1,288억 1,400만 원으로 가장 낮아졌다가 2019년도에 2,000억 원대로 다시 진입하여 2020년 체육분야 국고는 최근 12년간 가장 많은 금액이 집행되었으나 2021년 체육분야 국고가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체육재정의 변화 추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도 볼 수 있다. 2020년 1조 4,260억 8,300만 원의 체육진흥기금이 2021년에 1조 5,662억 1,500만 원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다음 <표 1-62>는 중앙정부 체육재정 중 체육진흥기금의 분야별 현황이다.

표 1-62. 체육분야별 체육진흥기금 재정 현황(2012~2021)

(단위: 백만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생활체육	223,028	301,137	214,628	338,822	359,895
전문체육	124,213	132,292	208,384	331,379	418,666
국제체육	316,584	393,686	387,009	413,212	409,525
스포츠산업	55,894	48,062	39,039	86,321	155,507
장애인체육	36,214	46,422	62,913	52,693	59,486
합계	755,933	921,599	911,973	1,222,427	1,403,079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생활체육	398,068	369,173	548,365	645,041	680,837
전문체육	410,029	327,854	349,006	388,106	393,889
국제체육	353,864	137,730	105,894	85,435	88,982
스포츠산업	143,309	142,204	138,811	216,094	311,586
장애인체육	63,148	61,974	65,282	91,407	90,911
합계	1,368,418	1,038,935	1,207,358	1,426,083	1,566,205

※ 주: 기금운영비 및 여유자금 등은 제외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2021)

2021년 체육 분야별 체육진흥기금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체육 분야가 6,808억 3,700만 원('20년 대비 5.5% 증가)으로 전체 기금 중 45.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전문체육이 3,938억 8,900만 원이었고('20년 대비 1.5% 증가), 전체 기금 대비 25.1%로 나타났다. 2021년 스포츠산업 분야 체육진흥기금은 3,115억 8,600만 원('20년 대비

44.2% 증가)으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국제 체육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889억 8,200만 원('20년 대비 4.2% 증가)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장애인체육 분야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909억 1,100만 원('20년 대비 0.5% 감소)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10년간 장애인체육분야의 체육진흥기금 구성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음의 <표 1-63>은 정부의 전체 재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차지하는 점유율,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체육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의 10년 경향을 나타낸 결과다.

표 1-63. 정부예산대비 체육예산 현황(2012~2021)

(단위: 억 원, %)

연도	정부재정(A)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부문	
		재정(B)	점유율(B/A, %)	재정(C)	점유율(C/A, %)
2012	3,254,076	37,194	1.14	8,877	0.27
2013	3,419,677	41,723	1.22	10,933	0.32
2014	3,558,051	44,224	1.24	10,608	0.30
2015	3,754,033	49,959	1.33	13,568	0.36
2016	3,863,996	54,948	1.42	15,389	0.40
2017	4,005,459	56,971	1.42	15,022	0.38
2018	4,288,339	52,578	1.23	11,676	0.27
2019	4,695,752	59,233	1.26	14,448	0.31
2020	5,122,504	64,803	1.27	16,734	0.33
2021	5,580,000	68,637	1.23	17,594	0.32

※ 주: 본 표는 국고 및 기금의 분예산으로 작성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2021)

표에서처럼 2021년 우리나라 정부재정은 총 558조 원이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은 6조 8,637억 원(점유율 1.23%)이었고, 그 중 체육부문은 1조 7,594억 원으로서, 0.32%의 점유율을 보였다. 정부 재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은 모두 2020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체육부문 국가 예산 또한 전년보다 860억 원 증가하였다. 2012년부터 10년 간의 변화 추이를 볼 때, 국가재정에서 체육부문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던 때는 2016년으로서 0.4%였고, 낮았던 때는 2012년과 2018년으로 0.27%였다. 10년 간 평균 점유율은 0.32% 수준으로, 최근 10년 간 매년 전체 정부재정의 약 0.32%에 해당하는 재원이 체육부문 예산으로 배정되었다.

### 3. 지방자치단체 체육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국고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기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교부세·지원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비로 구성된다. 다음의 <표 1-64>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체육예산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1-64. 지방자치단체 체육예산(광역+기초)

(단위: 백만 원, %)

자치단체명	2021			2022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서울특별시	53,665,775	460,847	0.86	52,064,982	428,241	0.82
부산광역시	21,098,418	176,783	0.84	18,815,445	204,610	1.09
대구광역시	13,110,025	171,847	1.31	15,029,162	139,033	0.93
인천광역시	20,842,061	296,525	1.42	18,631,739	314,508	1.69
광주광역시	10,283,965	212,446	2.07	9,206,102	161,240	1.75
대전광역시	9,485,799	140,690	1.48	8,584,171	125,578	1.46
울산광역시	6,552,696	123,601	1.89	6,406,715	161,769	2.52
세종특별자치시	2,214,612	30,949	1.40	1,885,764	29,318	1.55
경기도	76,646,605	1,007,080	1.31	77,340,266	1,044,177	1.35
강원도	19,628,117	457,603	2.33	18,440,059	413,663	2.24
충청북도	16,725,003	311,529	1.86	15,668,038	303,518	1.94
충청남도	22,937,484	332,610	1.45	22,405,339	306,664	1.37
전라북도	21,584,649	284,408	1.32	20,700,958	299,884	1.45
전라남도	26,997,325	340,515	1.26	26,247,662	369,000	1.41
경상북도	30,821,577	425,261	1.38	27,986,922	452,926	1.62
경상남도	32,140,209	482,913	1.50	30,141,348	458,292	1.52
제주특별자치도	5,621,430	94,062	1.67	5,352,701	97,609	1.82
합계	390,355,750	5,349,669	1.37	374,907,373	5,310,030	1.42

※ 주: 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최종예산

※ 주: 2022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본예산

※ 주: 기초자치단체 예산 포함한 금액임(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예산)

※ 주: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항목 부재

※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21)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되는 중앙정부의 예산에 영향을 받기에(30~50%인 국고 보조율에 따라 지방비 확보),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

예산 증가는 지방비 증가로 이어진다. 2021년도 최종 결산된 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체육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390조 3,557억 원의 자치단체 예산총액 중 체육 분야는 약 5조 3,496억 원(1.37%)의 예산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년 1.36%). 또한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된 예산(2022년도)의 경우에는 지자체 전체 예산 374조 9,073억 원 중 체육 분야 예산은 1.42%에 해당하는 5조 3,100억 원이 편성되었다. 다음의 <표 1-65>는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 체육예산을 제시한 내용이다.

표 1-65. 광역자치단체 체육예산

(단위: 백만 원, %)

자치단체명	2021			2022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서울특별시	33,482,498	189,682	0.57	31,342,460	154,888	0.49
부산광역시	12,644,465	117,073	0.93	11,128,167	144,388	1.30
대구광역시	10,032,521	100,303	1.00	9,583,500	93,059	0.97
인천광역시	13,096,788	239,576	1.83	11,534,621	244,499	2.12
광주광역시	6,191,665	149,474	2.41	5,756,752	128,759	2.24
대전광역시	5,846,307	105,946	1.81	5,366,837	104,048	1.94
울산광역시	3,770,131	60,953	1.62	3,659,112	60,954	1.67
세종특별자치시	2,214,612	30,949	1.40	1,885,764	29,318	1.55
경기도	28,520,870	135,573	0.48	33,517,909	170,565	0.51
강원도	7,830,600	111,151	1.42	7,116,094	96,063	1.35
충청북도	6,809,502	94,651	1.39	6,160,789	91,945	1.49
충청남도	8,065,223	96,257	1.19	9,012,961	89,319	0.99
전라북도	8,278,445	82,206	0.99	7,440,809	79,045	1.06
전라남도	11,107,600	79,411	0.71	10,047,042	76,674	0.76
경상북도	12,208,619	89,348	0.73	9,757,400	89,295	0.92
경상남도	12,384,249	147,944	1.19	11,330,253	121,807	1.08
제주특별자치도	2,352,409	34,325	1.46	2,228,531	45,083	2.02
합계	184,836,504	1,864,822	1.01	176,869,001	1,819,709	1.03

※ 주: 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최종예산

※ 주: 2022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본예산

※ 주: 광역자치단체 예산만 계산(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제외)

※ 출처: 각 광역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21)

광역자치단체별(17개 시·도) 예산 총액은 최종결산 기준으로 2021년 184조 8,365억 원 이었고, 이 중 체육 부문 예산 총액은 1조 8,648억 원(1.01%)으로서, 이는 2020년 174조

5,949억 원 중 1조 8,679억 원(1.07%)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별 (228개 시·군·구) 예산 역시 다음의 <표 1-66>에 나타난 바와 같았다.

표 1-66.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

(단위: 백만 원, %)

자치단체명	2021			2022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서울 (25)	종로구	478,191	9,215	1.93	490,833	9,769	1.99
	중구	482,852	5,681	1.18	523,788	5,093	0.97
	용산구	502,568	4,019	0.80	575,898	4,535	0.79
	성동구	601,065	20,748	3.45	659,831	18,909	2.87
	광진구	610,063	8,070	1.32	732,324	9,122	1.25
	동대문구	976,092	8,374	0.86	743,651	7,580	1.02
	종랑구	807,000	10,199	1.26	905,064	8,136	0.90
	성북구	1,104,262	15,265	1.38	993,908	12,572	1.26
	강북구	739,077	10,890	1.47	827,510	7,291	0.88
	도봉구	828,519	19,187	2.32	727,138	10,316	1.42
	노원구	1,012,515	21,451	2.12	1,144,501	16,852	1.47
	은평구	1,205,559	11,754	0.97	1,113,664	7,582	0.68
	서대문구	668,579	5,934	0.89	690,837	5,617	0.81
	마포구	735,557	6,418	0.87	763,613	23,923	3.13
	양천구	768,582	12,457	1.62	853,733	14,090	1.65
	강서구	1,030,445	10,780	1.05	1,156,996	11,959	1.03
	구로구	739,160	12,627	1.71	836,420	11,993	1.43
	금천구	545,733	5,750	1.05	622,601	6,844	1.10
	영등포구	708,060	10,468	1.48	784,852	12,092	1.54
	동작구	679,452	2,728	0.40	739,476	3,115	0.42
	관악구	779,450	9,304	1.19	905,655	8,913	0.98
	서초구	699,669	12,682	1.81	793,862	12,747	1.61
	강남구	1,482,430	14,268	0.96	1,200,115	17,234	1.44
	송파구	1,210,016	10,055	0.83	1,064,155	9,185	0.86
	강동구	788,381	12,841	1.63	872,097	17,884	2.05
소계	20,183,277	271,165	1.34	20,722,522	273,353	1.32	
부산 (16)	중구	221,809	752	0.34	182,446	700	0.38
	서구	369,502	1,375	0.37	328,756	1,131	0.34
	동구	285,536	1,537	0.54	307,106	1,185	0.39

자치단체명	2021			2022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부산 (16)	영도구	480,215	10,363	2.16	435,096	7,609	1.75
	부산진구	636,685	6,836	1.07	784,755	1,437	0.18
	동래구	393,132	2,954	0.75	443,735	2,905	0.65
	남구	700,879	1,418	0.20	418,269	1,682	0.40
	북구	699,315	2,143	0.31	564,180	1,914	0.34
	해운대구	908,764	2,530	0.28	750,453	2,876	0.38
	사하구	791,511	7,585	0.96	572,979	3,138	0.55
	금정구	609,851	2,900	0.48	510,633	3,739	0.73
	강서구	483,938	1,860	0.38	450,658	1,841	0.41
	연제구	548,484	2,091	0.38	474,571	4,146	0.87
	수영구	336,453	1,607	0.48	372,486	1,099	0.30
	사상구	429,303	4,411	1.03	460,198	3,732	0.81
	기장군	558,576	9,328	1.67	630,957	21,088	3.34
	소계	8,453,953	59,690	0.71	7,687,278	60,222	0.78
대구 (8)	중구	335,000	2,934	0.88	287,000	2,000	0.70
	동구	721,100	4,138	0.57	766,900	3,220	0.42
	서구	572,810	2,240	0.39	484,850	2,151	0.44
	남구	635,165	2,109	0.33	531,515	2,339	0.44
	북구	738,792	2,710	0.37	838,741	3,792	0.45
	수성구	933,304	38,549	4.13	767,378	20,128	2.62
	달서구	868,333	3,633	0.42	953,278	3,812	0.40
	달성군	973,000	15,231	1.57	816,000	8,532	1.05
소계	5,777,504	71,544	1.24	5,445,662	45,974	0.84	
인천 (10)	중구	538,363	3,632	0.67	475,628	2,919	0.61
	동구	273,927	1,801	0.66	282,773	1,906	0.67
	미추홀구	991,348	2,795	0.28	876,065	6,362	0.73
	연수구	617,800	4,821	0.78	702,719	4,830	0.69
	남동구	1,215,349	8,490	0.70	1,091,914	7,255	0.66
	부평구	1,072,802	16,572	1.54	1,009,188	15,611	1.55
	계양구	749,395	3,213	0.43	617,530	4,983	0.81
	서구	1,377,173	7,241	0.53	1,039,470	5,127	0.49
	강화군	584,749	3,537	0.60	614,674	4,862	0.79
	옹진군	324,367	4,847	1.49	387,157	16,154	4.17
소계	7,745,273	56,949	0.74	7,097,118	70,009	0.99	

자치단체명	2021			2022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광주 (5)	동구	506,694	5,818	1.15	484,097	2,520	0.52
	서구	731,455	9,687	1.32	629,795	4,498	0.71
	남구	659,280	13,256	2.01	516,463	5,094	0.99
	북구	1,154,673	25,801	2.23	973,002	14,039	1.44
	광산구	1,040,198	8,410	0.81	845,993	6,330	0.75
	소계	4,092,300	62,972	1.54	3,449,350	32,481	0.94
대전 (5)	동구	681,554	6,429	0.94	619,600	7,755	1.25
	중구	664,382	1,953	0.29	561,369	2,852	0.51
	서구	981,659	12,610	1.28	869,129	4,758	0.55
	유성구	730,058	10,158	1.39	651,786	3,678	0.56
	대덕구	581,839	3,594	0.62	515,450	2,487	0.48
	소계	3,639,492	34,744	0.95	3,217,334	21,530	0.67
울산 (5)	중구	408,385	10,253	2.51	426,639	10,249	2.40
	남구	537,314	6,429	1.20	593,581	8,648	1.46
	동구	392,589	6,659	1.70	317,652	6,150	1.94
	북구	511,871	15,056	2.94	438,508	14,786	3.37
	울주군	932,406	24,251	2.60	971,223	60,982	6.28
	소계	2,782,565	62,648	2.25	2,747,603	100,815	3.67
경기 (31)	수원시	3,547,644	51,854	1.46	2,877,428	60,836	2.11
	고양시	2,697,543	33,473	1.24	3,072,367	38,808	1.26
	성남시	3,601,252	80,163	2.23	3,263,923	78,518	2.41
	용인시	3,053,327	41,549	1.36	2,725,797	38,795	1.42
	부천시	2,847,045	56,606	1.99	2,056,282	57,803	2.81
	안산시	2,195,826	48,104	2.19	1,910,599	46,692	2.44
	남양주시	2,359,784	57,560	2.44	2,199,962	48,173	2.19
	안양시	1,302,123	23,564	1.81	1,314,178	20,984	1.60
	화성시	2,652,564	69,231	2.61	2,802,579	69,231	2.47
	평택시	2,611,088	17,864	0.68	2,015,649	24,194	1.20
	의정부시	1,322,889	28,238	2.13	1,391,554	30,876	2.22
	시흥시	1,601,914	25,582	1.60	1,347,993	23,640	1.75
	파주시	1,998,044	37,236	1.86	1,662,316	32,695	1.97
	김포시	2,076,836	48,352	2.33	1,350,360	43,718	3.24
광명시	945,377	8,846	0.94	957,818	9,692	1.01	

자치단체명	2021			2022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경기 (31)	광주시	1,573,317	24,206	1.54	1,256,315	35,146	2.80
	군포시	699,710	7,546	1.08	746,795	17,879	2.39
	오산시	716,208	16,071	2.24	698,689	4,859	0.70
	이천시	912,533	12,618	1.38	992,084	21,414	2.16
	양주시	1,046,897	8,633	0.82	919,149	6,857	0.75
	안성시	1,316,033	22,386	1.70	1,226,148	25,543	2.08
	구리시	992,265	29,641	2.99	808,987	28,000	3.46
	포천시	829,363	11,678	1.41	896,381	11,204	1.25
	의왕시	508,028	17,287	3.40	556,282	9,589	1.72
	하남시	855,007	22,260	2.60	749,320	20,851	2.78
	여주시	927,685	14,678	1.58	1,147,888	18,136	1.58
	동두천시	625,225	1,605	0.26	548,918	2,852	0.52
	과천시	407,674	6,434	1.58	399,087	5,747	1.44
	양평군	719,567	19,584	2.72	894,822	15,024	1.68
	가평군	635,703	21,458	3.38	472,071	17,974	3.81
	연천군	547,264	7,200	1.32	560,616	7,882	1.41
소계	48,125,735	871,507	1.81	43,822,357	873,612	1.99	
강원 (18)	춘천시	1,480,223	41,123	2.78	1,303,460	29,307	2.25
	원주시	1,236,243	25,526	2.06	1,325,341	22,855	1.72
	강릉시	1,512,629	37,367	2.47	1,301,739	27,673	2.13
	동해시	443,166	12,027	2.71	495,095	5,758	1.16
	태백시	365,367	19,399	5.31	398,992	12,519	3.14
	속초시	371,295	13,748	3.70	409,760	8,538	2.08
	삼척시	811,900	15,135	1.86	630,051	12,211	1.94
	홍천군	725,672	17,484	2.41	746,869	23,407	3.13
	횡성군	615,449	13,993	2.27	641,434	11,178	1.74
	영월군	504,459	7,928	1.57	538,268	12,045	2.24
	평창군	571,103	19,228	3.37	506,028	19,322	3.82
	정선군	572,008	9,098	1.59	479,480	20,190	4.21
	철원군	512,534	13,392	2.61	522,055	13,088	2.51
	화천군	330,951	12,535	3.79	334,706	15,034	4.49
	양구군	484,844	28,633	5.91	384,298	33,203	8.64
인제군	482,216	37,532	7.78	563,351	23,678	4.20	

자치단체명		2021			2022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강원 (18)	고성군	440,985	10,325	2.34	383,243	15,486	4.04
	양양군	336,473	11,979	3.56	359,795	12,108	3.37
	소계	11,797,517	346,452	2.94	11,323,965	317,600	2.80
충북 (11)	청주시	3,468,880	29,286	0.84	3,009,322	25,503	0.85
	충주시	1,125,959	36,718	3.26	1,395,165	36,718	2.63
	제천시	1,219,999	31,712	2.60	1,006,658	25,856	2.57
	옥천군	540,711	13,690	2.53	501,645	21,115	4.21
	증평군	269,255	15,418	5.73	243,024	7,553	3.11
	괴산군	492,183	12,661	2.57	640,432	12,661	1.98
	음성군	701,906	22,990	3.28	671,092	24,514	3.65
	단양군	543,043	9,590	1.77	403,756	8,221	2.04
	진천군	686,135	15,698	2.29	646,880	18,402	2.84
	보은군	392,836	16,534	4.21	421,903	12,255	2.90
	영동군	474,594	12,581	2.65	567,372	18,775	3.31
소계	9,915,501	216,878	2.19	9,507,249	211,573	2.23	
충남 (15)	천안시	2,824,000	30,831	1.09	2,340,000	27,561	1.18
	공주시	1,087,406	15,775	1.45	855,500	7,707	0.90
	보령시	1,141,029	23,332	2.04	897,103	18,723	2.09
	아산시	1,624,300	28,124	1.73	1,207,300	25,744	2.13
	서산시	1,171,583	24,221	2.07	1,135,054	27,496	2.42
	논산시	1,101,170	7,156	0.65	928,080	11,190	1.21
	계룡시	322,394	7,043	2.18	224,941	4,151	1.85
	당진시	965,875	23,136	2.40	1,158,829	19,922	1.72
	금산군	627,529	12,526	2.00	615,781	13,193	2.14
	부여군	652,000	13,930	2.14	786,300	13,930	1.77
	서천군	505,485	8,093	1.60	578,226	12,451	2.15
	청양군	588,476	9,908	1.68	525,551	8,501	1.62
	홍성군	911,500	13,233	1.45	735,256	8,818	1.20
	예산군	678,372	12,257	1.81	769,808	12,741	1.66
	태안군	671,142	6,788	1.01	634,649	5,217	0.82
소계	14,872,261	236,353	1.59	13,392,378	217,345	1.62	
전북 (14)	전주시	2,392,131	35,639	1.49	2,669,724	43,426	1.63
	군산시	1,412,826	20,005	1.42	1,455,585	26,423	1.82

자치단체명	2021			2022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전북 (14)	익산시	1,735,406	20,261	1.17	1,575,563	22,554	1.43
	정읍시	1,083,031	17,164	1.58	1,046,523	18,640	1.78
	남원시	935,841	17,643	1.89	962,201	24,596	2.56
	김제시	901,469	10,673	1.18	940,386	13,613	1.45
	완주군	925,231	12,930	1.40	805,402	11,489	1.43
	진안군	456,474	7,804	1.71	488,445	8,151	1.67
	무주군	478,267	2,353	0.49	486,556	3,793	0.78
	장수군	519,797	12,980	2.50	459,122	6,519	1.42
	임실군	491,915	12,787	2.60	484,252	11,647	2.41
	순창군	454,018	6,469	1.42	470,000	8,709	1.85
	고창군	794,652	9,519	1.20	706,326	9,656	1.37
	부안군	725,146	15,975	2.20	710,064	11,623	1.64
	소계	13,306,204	202,202	1.52	13,260,149	220,839	1.67
	전남 (22)	목포시	855,570	42,507	4.97	1,032,568	49,755
여수시		1,221,247	21,158	1.73	1,640,272	18,286	1.11
순천시		1,805,775	16,488	0.91	1,752,036	21,434	1.22
나주시		1,068,686	15,188	1.42	888,778	30,239	3.40
광양시		1,012,923	22,182	2.19	1,160,256	21,757	1.88
담양군		432,782	3,785	0.87	472,542	6,334	1.34
곡성군		445,612	3,832	0.86	489,873	3,515	0.72
구례군		313,944	8,731	2.78	325,824	8,936	2.74
고흥군		712,045	14,392	2.02	906,309	9,184	1.01
보성군		635,108	11,700	1.84	533,965	5,058	0.95
화순군		632,527	6,536	1.03	669,804	6,904	1.03
장흥군		513,134	9,412	1.83	534,469	11,652	2.18
강진군		376,872	8,983	2.38	441,070	8,636	1.96
해남군		1,024,282	11,880	1.16	925,419	18,997	2.05
영암군		719,489	9,880	1.37	683,293	19,873	2.91
무안군		529,096	5,737	1.08	550,693	6,190	1.12
함평군		512,699	7,699	1.50	520,871	9,729	1.87
영광군		633,230	5,649	0.89	603,840	10,779	1.79
장성군	451,700	2,961	0.66	488,106	3,041	0.62	

자치단체명	2021			2022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전남 (22)	완도군	614,940	15,472	2.52	534,762	10,753	2.01
	진도군	583,277	7,895	1.35	422,713	4,681	1.11
	신안군	794,787	9,037	1.14	623,157	6,593	1.06
	소계	15,889,725	261,104	1.64	16,200,620	292,326	1.80
경북 (23)	포항시	2,255,000	56,359	2.50	2,326,500	49,718	2.14
	경주시	1,581,000	16,787	1.06	1,432,000	16,391	1.14
	김천시	1,232,200	22,990	1.87	1,230,000	28,116	2.29
	안동시	1,359,200	31,991	2.35	1,310,000	29,318	2.24
	구미시	1,466,200	22,672	1.55	1,284,500	32,401	2.52
	영주시	768,700	15,091	1.96	736,900	13,453	1.83
	영천시	905,355	6,318	0.70	891,400	13,202	1.48
	상주시	957,900	15,478	1.62	1,042,000	24,490	2.35
	문경시	655,000	18,349	2.80	738,000	14,504	1.97
	경산시	1,145,820	12,659	1.10	1,039,600	16,033	1.54
	군위군	337,460	8,986	2.66	337,595	2,652	0.79
	의성군	686,786	13,775	2.01	592,000	7,934	1.34
	청송군	383,700	4,706	1.23	410,000	4,484	1.09
	영양군	314,100	4,712	1.50	314,100	5,098	1.62
	영덕군	501,305	4,106	0.82	531,900	7,553	1.42
	청도군	482,000	1,751	0.36	540,291	2,017	0.37
	고령군	399,239	11,597	2.90	477,049	15,927	3.34
	성주군	476,100	11,815	2.48	518,400	12,726	2.45
	칠곡군	587,100	14,764	2.51	543,600	13,942	2.56
	예천군	620,793	21,612	3.48	585,862	25,873	4.42
봉화군	509,000	3,844	0.76	472,000	6,730	1.43	
울진군	750,237	14,355	1.91	634,825	19,513	3.07	
울릉군	238,763	1,196	0.50	241,000	1,556	0.65	
소계	18,612,958	335,913	1.80	18,229,522	363,631	1.99	
경남 (18)	창원시	4,322,600	57,029	1.32	3,749,143	81,348	2.17
	진주시	1,594,389	16,863	1.06	1,799,206	19,634	1.09
	통영시	861,652	7,268	0.84	717,932	10,637	1.48
	사천시	849,568	18,570	2.19	851,258	15,830	1.86

자치단체명	2021			2022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자치단체 예산총액(A')	체육예산(B')	비율 B'/A'×100(%)	
경남 (18)	김해시	2,197,696	28,561	1.30	1,967,887	27,513	1.40
	밀양시	1,041,906	16,042	1.54	941,269	14,060	1.49
	거제시	1,008,319	13,195	1.31	1,125,101	13,880	1.23
	양산시	1,640,708	19,087	1.16	1,662,573	17,784	1.07
	의령군	545,373	10,955	2.01	481,365	6,355	1.32
	함안군	517,492	11,429	2.21	596,035	8,878	1.49
	창녕군	671,551	20,516	3.06	615,057	24,213	3.94
	고성군	585,168	29,061	4.97	574,451	20,131	3.50
	남해군	505,466	11,051	2.19	591,408	13,921	2.35
	하동군	957,399	17,625	1.84	751,576	15,400	2.05
	산청군	501,283	6,359	1.27	555,780	6,330	1.14
	함양군	584,303	12,675	2.17	561,200	15,085	2.69
	거창군	738,003	17,687	2.40	655,238	14,404	2.20
	합천군	633,084	20,996	3.32	614,616	11,082	1.80
소계	19,755,960	334,969	1.70	18,811,095	336,485	1.79	
제주 (2)	제주시	1,872,158	34,461	1.84	1,763,703	28,801	1.63
	서귀포시	1,127,621	25,276	2.24	1,068,714	28,635	2.68
	소계	2,999,779	59,737	1.99	2,832,417	57,436	2.03
합계	207,950,004	3,484,827	1.68	197,746,619	3,495,231	1.77	

※ 주: 2021년도 자치단체예산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최종예산

※ 주: 2022년도 자치단체예산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본예산

※ 주: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 항목부재

※ 출처: 각 기초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21)

228개의 기초지자체 예산 총액은 207조 9,500억 원으로서, 이 중 체육 부문에 사용된 예산은 전체 1.68%에 해당하는 3조 4,84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의 전체 예산 191조 3,469억 원 중 3조 1,150억 원(1.63%)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였다.

다음의 <표 1-67>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체육 부문 예산이 체육 각 분야별로 어떻게 배정되어 사용되었는가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 1-67.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2021)

(단위: 백만 원)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 체육	국제 교류	체육시설 (전문, 생활)	공공체육 시설 위탁관리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sup>1</sup>
서울특별시	59,440	24,520	14,661	108	147,513	172,267	29,895	12,443	460,847
부산광역시	18,938	22,228	8,496	610	51,486	8,152	8,116	58,757	176,783
대구광역시	13,840	17,411	4,105	1,245	94,452	22,520	14,437	3,837	171,847
인천광역시	17,687	26,347	5,696	5	69,604	54,745	18,503	103,938	296,525
광주광역시	26,708	15,573	15,041	30	93,412	10,669	8,926	42,087	212,446
대전광역시	13,719	15,978	5,655	-	69,546	26,489	4,569	4,734	140,690
울산광역시	11,054	12,413	2,695	40	46,613	38,395	11,874	517	123,601
세종특별자치시	1,637	5,866	2,009	-	18,747	-	1,541	1,149	30,949
경기도	88,688	89,986	32,202	84	443,850	203,505	112,719	36,046	1,007,080
강원도	38,335	46,099	5,197	-	248,422	36,975	30,610	51,965	457,603
충청북도	25,295	22,692	9,343	775	207,673	8,466	29,435	7,850	311,529
충청남도	36,587	34,719	16,550	-	179,311	10,970	34,961	19,512	332,610
전라북도	40,271	21,958	5,820	-	176,258	12,562	15,447	12,092	284,408
전라남도	36,292	24,427	8,154	-	214,094	17,141	26,281	14,126	340,515
경상북도	38,372	47,971	6,818	1,290	254,113	25,475	35,816	15,406	425,261
경상남도	38,726	51,116	8,935	-	308,072	26,121	25,955	23,988	482,913
제주특별자치도	4,863	5,684	6,084	407	52,757	2,120	7,503	14,644	94,062
합계	510,452	484,988	157,461	4,594	2,675,923	676,572	416,588	423,091	5,349,669
총액 대비(%)	9.5	9.1	2.9	0.1	50.0	12.6	7.8	7.9	100.0

1. 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체육분야 최종예산

※ 주: 기초자치단체 예산 포함 금액(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예산)

※ 주: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항목 부재

※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21)

2021년 지방자치단체 체육 부문 총 예산 5조 3,497억 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분야는 ‘체육시설(50.0%)’ 이었고,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비(12.6%)’가 뒤를 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생활체육(9.5%)’, ‘전문체육(9.1%)’, ‘기타(7.9%)’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7.8%)’ 순으로 예산이 배정되었다.

다음의 <표 1-68>은 광역자치단체 예산 중 체육 분야별 예산 배정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는 1조 8,648억 원의 체육 부문 예산이 어느 분야에 중점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표 1-68. 광역자치단체 예산 중 체육 분야별 예산 현황(2021)

(단위: 백만 원)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 체육	국제교류	체육시설 (전문, 생활)	공공체육 시설 위탁관리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sup>1</sup>
서울특별시	25,237	24,287	12,423	-	67,641	26,141	22,876	11,077	189,682
부산광역시	7,724	22,228	8,365	-	17,988	-	3,302	57,466	117,073
대구광역시	6,024	17,411	4,066	1,245	37,274	21,024	9,769	3,490	100,303
인천광역시	6,888	25,978	5,491	5	39,691	47,723	11,041	102,759	239,576
광주광역시	18,776	15,573	14,119	30	46,511	7,651	4,856	41,958	149,474
대전광역시	6,070	15,934	4,770	-	45,309	25,295	3,904	4,664	105,946
울산광역시	3,806	12,413	2,513	-	14,749	22,108	5,259	105	60,953
세종특별자치시	1,637	5,866	2,009	-	18,747	-	1,541	1,149	30,949
경기도	25,633	14,924	14,625	-	70,411	2,950	6,972	58	135,573
강원도	6,471	13,690	1,000	-	61,119	-	8,370	20,501	111,151
충청북도	5,133	10,219	6,085	-	66,218	440	3,935	2,621	94,651
충청남도	8,769	14,254	6,946	-	51,702	-	11,952	2,634	96,257
전라북도	10,119	15,699	3,382	-	40,889	2,006	3,626	6,485	82,206
전라남도	8,747	11,908	5,529	-	47,937	842	3,969	479	79,411
경상북도	7,019	15,020	4,317	-	56,351	-	6,570	71	89,348
경상남도	7,359	19,635	5,202	-	93,611	-	3,851	18,286	147,944
제주특별자치도	600	4,297	4,518	407	10,284	712	5,050	8,457	34,325
합계	156,012	259,336	105,360	1,687	786,432	156,892	116,843	282,260	1,864,822
총액 대비(%)	8.4	13.9	5.6	0.1	42.2	8.4	6.3	15.1	100.0

1. 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체육분야 최종예산  
 ※ 출처: 각 광역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21)

표에서 볼 수 있듯, 광역자치단체 총 예산 중 42.2%가 '체육시설'에 배정되었고, 뒤를 이어 '기타(15.1%)', '전문체육(13.9%)' 그리고 '생활체육(8.4%)'과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비(8.4%)'에 예산이 투자되었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예산 중 체육 분야별 현황은 <표 1-69>와 같다.

표 1-69. 기초자치단체 예산 중 체육 분야별 예산 현황(2021)

(단위: 백만 원)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 체육	국제교류	체육시설 (전문, 생활)	공공체육 시설 위탁관리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sup>1</sup>	
서울 (25)	종로구	637	-	40	10	398	8,000	130	-	9,215
	중구	310	-	10	-	1,067	3,674	620	-	5,681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 체육	국제 교류	체육시설 (전문, 생활)	공공체육 시설 유지관리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sup>1)</sup>	
서울 (25)	용산구	1,002	-	30	-	5	2,866	-	116	4,019
	성동구	7122	-	51	-	50	13,293	232	-	20,748
	광진구	915	-	191	-	576	5,860	292	236	8,070
	동대문구	1,045	138	56	-	932	5,539	-	664	8,374
	종랑구	1,472	15	2	42	4,013	4,159	496	-	10,199
	성북구	1,076	-	245	-	6,987	6,429	528	-	15,265
	강북구	940	25	78	-	6,928	2,919	-	-	10,890
	도봉구	935	-	73	-	17,667	-	512	-	19,187
	노원구	1,915	-	150	-	8,788	10,245	353	-	21,451
	은평구	1,365	-	206	14	4,978	4,149	814	228	11,754
	서대문구	788	-	120	22	939	4,065	-	-	5,934
	마포구	959	-	106	-	976	4,333	-	44	6,418
	양천구	977	-	37	20	500	10,923	-	-	12,457
	강서구	933	-	42	-	869	8,936	-	-	10,780
	구로구	1,524	-	76	-	4,866	5,659	502	-	12,627
	금천구	860	-	64	-	631	3,705	490	-	5,750
	영등포구	835	55	79	-	3,240	6,259	-	-	10,468
	동작구	550	-	82	-	501	970	625	-	2,728
	관악구	969	-	81	-	1,423	6,831	-	-	9,304
	서초구	1,285	-	3	-	10,363	1,031	-	-	12,682
강남구	1,683	-	205	-	2,262	9,653	465	-	14,268	
송파구	2,090	-	171	-	694	6,539	561	-	10,055	
강동구	2,016	-	40	-	219	10,089	399	78	12,841	
소계	34,203	233	2,238	108	79,872	146,126	7,019	1,366	271,165	
부산 (16)	중구	391	-	3	-	236	20	102	-	752
	서구	364	-	9	-	227	465	297	13	1,375
	동구	633	-	-	-	761	-	143	-	1,537
	영도구	596	-	-	-	9,516	-	251	-	10,363
	부산진구	857	-	29	-	5,950	-	-	-	6,836
	동래구	601	-	-	-	1,984	-	369	-	2,954
	남구	568	-	17	-	115	-	522	196	1,418
	북구	491	-	-	-	898	-	426	328	2,143
	해운대구	1,102	-	23	610	354	-	424	17	2,530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 체육	국제 교류	체육시설 (전문, 생활)	공공체육 시설 위탁관리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sup>1</sup>	
부산 (16)	사하구	721	-	23	-	6,231	-	610	-	7,585
	금정구	1,718	-	-	-	1,182	-	-	-	2,900
	강서구	684	-	6	-	471	-	686	13	1,860
	연제구	592	-	-	-	1,188	-	311	-	2,091
	수영구	435	-	-	-	564	-	374	234	1,607
	사상구	926	-	19	-	2,878	277	301	10	4,411
	기장군	681	-	-	-	1,093	7,554	-	-	9,328
	소계	11,360	0	129	610	33,648	8,316	4,816	811	59,690
대구 (8)	중구	560	-	-	-	1,983	-	391	-	2,934
	동구	1,055	-	-	-	2,619	-	464	-	4,138
	서구	1,029	-	-	-	839	-	372	-	2,240
	남구	894	-	-	-	808	100	307	-	2,109
	북구	614	-	-	-	1,529	-	567	-	2,710
	수성구	1,323	-	-	-	36,242	-	657	327	38,549
	달서구	1,506	-	39	-	1,354	-	734	-	3,633
	달성군	835	-	-	-	11,804	1,396	1,176	20	15,231
	소계	7,816	0	39	0	57,178	1,496	4,668	347	71,544
인천 (10)	중구	936	-	15	-	1,135	684	862	-	3,632
	동구	437	-	11	-	481	-	872	-	1,801
	미추홀구	983	-	15	-	390	532	828	47	2,795
	연수구	1,675	-	43	-	1,429	524	1,150	-	4,821
	남동구	1,774	209	24	-	5,245	639	570	29	8,490
	부평구	1,712	10	3	-	12,048	2,226	537	36	16,572
	계양구	707	-	6	-	164	1,160	768	408	3,213
	서구	924	-	88	-	3,922	1,051	597	659	7,241
	강화군	1,477	150	-	-	930	206	774	-	3,537
	옹진군	174	-	-	-	4,169	-	504	-	4,847
소계	10,799	369	205	0	29,913	7,022	7,462	1,179	56,949	
광주 (5)	동구	968	-	51	-	3,547	650	602	-	5,818
	서구	1,326	-	232	-	7,131	-	998	-	9,687
	남구	1,073	-	231	-	10,469	200	1,283	-	13,256
	북구	2,969	-	239	-	21,966	-	627	-	25,801
	광산구	1,596	-	169	-	3,788	2,168	560	129	8,410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 체육	국제 교류	체육시설 (전문, 생활)	공공체육 시설 유턴관리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sup>1</sup>	
소계	7,932	0	922	0	46,901	3,018	4,070	129	62,972	
대전 (5)	동구	1,331	44	19	-	5,035	-	-	6,429	
	중구	1,181	-	19	-	653	100	-	1,953	
	서구	1,664	-	668	-	9,812	466	-	12,610	
	유성구	1,749	-	17	-	7,232	425	665	10,158	
	대덕구	1,724	-	162	-	1,505	203	-	3,594	
	소계	7,649	44	885	0	24,237	1,194	665	34,744	
울산 (5)	중구	1,464	-	157	-	6,963	1,179	354	10,253	
	남구	1,927	-	12	40	950	1,985	1,309	6,429	
	동구	825	-	-	-	2,607	2,748	479	6,659	
	북구	909	-	-	-	8,678	4,190	1,279	15,056	
	울주군	2,123	-	13	-	12,666	6,185	3,194	24,251	
	소계	7,248	0	182	40	31,864	16,287	6,615	62,648	
경기 (31)	수원시	1,547	8,526	1,479	-	2,078	13,914	24,224	86	51,854
	고양시	6,604	897	357	80	3,779	15,624	5,926	206	33,473
	성남시	2,436	18,075	2,048	-	18,533	28,605	9,957	509	80,163
	용인시	2,142	4,248	1070	-	18,799	10,795	4,327	168	41,549
	부천시	3,459	7,126	893	-	24,685	14,671	3,898	1,874	56,606
	안산시	553	1,242	959	-	32,956	186	5,628	6,580	48,104
	남양주시	2,922	375	328	-	29,055	22,500	2,157	223	57,560
	안양시	1,474	959	887	-	6,034	5,699	4286	4,225	23,564
	화성시	7,319	3,546	804	-	16,995	28,542	10,290	1,735	69,231
	평택시	1,389	1,874	569	-	7,175	-	5,252	1,605	17,864
	의정부시	866	1,041	575	-	10,494	8,449	4,515	2,298	28,238
	시흥시	2,333	2,673	775	-	13,070	2,668	1,818	2,245	25,582
	파주시	1,208	2,822	502	-	20,714	6,573	1,864	3,553	37,236
	김포시	1,355	6,131	555	-	34,479	3,433	2,306	93	48,352
	광명시	2,115	1,772	540	-	693	1,017	2,008	701	8,846
	광주시	1,369	500	363	-	12,443	5,914	3,098	519	24,206
	군포시	756	933	441	-	3,329	1,842	-	245	7,546
	오산시	890	2,580	484	-	-	11,563	554	-	16,071
이천시	673	1,536	404	-	9,021	100	565	319	12,618	
양주시	1,295	1,097	498	-	4,892	-	827	24	8,633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 체육	국제 교류	체육시설 (전문, 생활)	공공체육 시설 위탁관리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sup>1</sup>	
경기 (31)	안성시	2,437	394	376	-	12,243	-	1,950	4,986	22,386
	구리시	1016	226	232	-	23,065	4,826	276	-	29,641
	포천시	2723	1214	589	-	3,917	475	2760	-	11,678
	의왕시	830	915	345	4	12,915	2,278	-	-	17,287
	하남시	738	672	95	-	12,242	6,643	1,582	288	22,260
	여주시	1,576	608	153	-	7,280	1,023	542	3,496	14,678
	동두천시	881	88	4	-	632	-	-	-	1,605
	과천시	993	986	259	-	3,244	-	952	-	6,434
	양평군	4,890	1,499	132	-	7,588	3,215	2,260	-	19,584
	가평군	2,099	213	465	-	17,349	-	1,322	10	21,458
	연천군	2,167	294	396	-	3,740	-	603	-	7,200
소계	63,055	75,062	17,577	84	373,439	200,555	105,747	35,988	871,507	
강원 (18)	춘천시	2,245	5,403	1,283	-	1,172	28,404	1,714	902	41,123
	원주시	1,072	2,855	298	-	12,336	3,532	1,498	3,935	25,526
	강릉시	827	2,335	356	-	19,403	-	3,623	10,823	37,367
	동해시	439	1,262	44	-	8,489	-	1,252	541	12,027
	태백시	2,520	2,637	5	-	11,341	860	282	1,754	19,399
	속초시	824	740	537	-	10,665	96	796	90	13,748
	삼척시	2,192	1,745	370	-	8,506	-	2,174	148	15,135
	홍천군	1,343	2157	544	-	10,688	2,387	365	-	17,484
	황성군	1,390	2,155	253	-	9,322	-	873	-	13,993
	영월군	2,421	390	121	-	3,065	-	1,931	-	7,928
	평창군	1,234	3,891	47	-	12,702	-	1,354	-	19,228
	정선군	620	903	18	-	5,327	-	1,291	939	9,098
	철원군	2,507	2,054	47	-	7,979	-	700	105	13,392
	화천군	1,691	2,361	44	-	7,174	-	1,161	104	12,535
	양구군	2,009	300	32	-	16,000	1,692	1,380	7,220	28,633
	인제군	6,248	121	-	-	30,529	-	634	-	37,532
	고성군	815	580	107	-	7,813	4	359	647	10,325
양양군	1,467	520	91	-	4,792	-	853	4,256	11,979	
소계	31,864	32,409	4,197	0	187,303	36,975	22,240	31,464	346,452	
충북 (11)	청주시	2,340	2,294	833	-	15,219	1,298	7,302	-	29,286
	충주시	1,312	1,369	539	775	19,230	6,478	5,129	1,886	36,718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 체육	국제 교류	체육시설 (전문, 생활)	공공체육 시설 유턴관리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sup>1)</sup>	
충북 (11)	제천시	1,316	1,595	305	-	25,333	-	2,256	907	31,712
	옥천군	1,054	280	192	-	10,362	-	1,521	281	13,690
	증평군	1,069	235	181	-	12,372	250	1,306	5	15,418
	괴산군	3,720	2,445	130	-	4,800	-	1,566	-	12,661
	음성군	2,257	181	403	-	18,307	-	1,842	-	22,990
	단양군	1,931	452	19	-	6,816	-	-	372	9,590
	진천군	2,358	818	374	-	9,980	-	1,189	979	15,698
	보은군	1,325	1,000	210	-	12,200	-	1,000	799	16,534
	영동군	1,480	1,804	72	-	6,836	-	2,389	-	12,581
	소계	20,162	12,473	3,258	775	141,455	8,026	25,500	5,229	216,878
충남 (15)	천안시	3,016	5,207	1,282	-	10,490	5,602	2,824	2,410	30,831
	공주시	1,681	348	454	-	12,261	-	1,031	-	15,775
	보령시	2,616	2,560	669	-	14,223	150	1,678	1,436	23,332
	아산시	1,244	1,454	1,265	-	11,432	4,430	3,122	5,177	28,124
	서산시	2,977	1,438	840	-	13,495	-	2,341	3,130	24,221
	논산시	2,478	344	481	-	2,482	-	1,257	114	7,156
	계룡시	1,494	340	401	-	4,127	-	681	-	7,043
	당진시	583	2,015	700	-	17,811	-	2,027	-	23,136
	금산군	1,811	-	444	-	9,171	-	961	139	12,526
	부여군	1,715	100	143	-	6,164	418	1,036	4,354	13,930
	서천군	1,361	1,218	1,020	-	3,250	70	1,133	41	8,093
	청양군	707	3,519	426	-	4,022	-	1,234	-	9,908
	홍성군	2109	325	591	-	8,860	300	971	77	13,233
	예산군	1,844	1,059	528	-	7,451	-	1,375	-	12,257
태안군	2,182	538	360	-	2,370	-	1,338	-	6,788	
소계	27,818	20,465	9,604	0	127,609	10,970	23,009	16,878	236,353	
전북 (14)	전주시	4,167	1,499	729	-	17,758	8,394	1,757	1,335	35,639
	군산시	3,779	2,824	316	-	10,349	-	1,235	1,502	20,005
	익산시	3,605	441	274	-	13,301	132	2,355	153	20,261
	정읍시	1,974	730	205	-	12,115	-	1,661	479	17,164
	남원시	1,157	330	110	-	15,478	-	568	-	17,643
	김제시	1,843	-	91	-	6,030	-	662	2047	10,673
	완주군	1,600	-	58	-	10,884	-	388	-	12,930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 체육	국제 교류	체육시설 (전문, 생활)	공공체육 시설 유탁관리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sup>1</sup>	
전북 (14)	진안군	1,434	-	149	-	5,683	-	538	-	7,804
	무주군	1,293	130	37	-	324	477	92	-	2,353
	장수군	1,906	-	124	-	10,268	-	682	-	12,980
	임실군	1,239	-	82	-	9,588	1,553	325	-	12,787
	순창군	2,524	-	54	-	3,371	-	520	-	6,469
	고창군	1,847	215	113	-	6,764	-	580	-	9,519
	부안군	1,784	90	96	-	13,456	-	458	91	15,975
	소계	30,152	6,259	2,438	0	135,369	10,556	11,821	5,607	202,202
전남 (22)	목포시	1,349	464	321	-	33,515	-	4,578	2,280	42,507
	여수시	2,853	268	733	-	8,716	3,738	2,597	2,253	21,158
	순천시	3,403	1,110	341	-	8,210	-	2,472	952	16,488
	나주시	783	541	182	-	11,524	103	1,607	448	15,188
	광양시	935	1,147	297	-	16,916	146	1,306	1,435	22,182
	담양군	1,253	260	89	-	2,183	-	-	-	3,785
	곡성군	489	-	28	-	2,036	-	657	622	3,832
	구례군	1,382	-	20	-	6,662	-	625	42	8,731
	고흥군	1,310	-	32	-	-	11,819	512	719	14,392
	보성군	684	5	2	-	10,352	-	329	328	11,700
	화순군	1,611	102	47	-	3,743	-	960	73	6,536
	장흥군	1,665	48	62	-	5,580	22	400	1,635	9,412
	강진군	1,346	2,526	91	-	3,564	-	1,010	446	8,983
	해남군	893	1,753	98	-	7,565	-	1,278	293	11,880
	영암군	1,489	-	24	-	6,306	-	2,038	23	9,880
	무안군	1,401	1,127	116	-	2,299	-	762	32	5,737
	함평군	724	-	2	-	5,930	129	459	455	7,699
	영광군	434	1,667	69	-	2,781	-	-	698	5,649
	장성군	823	115	28	-	1,223	342	403	27	2,961
	완도군	367	-	17	-	14,502	-	319	267	15,472
진도군	1,011	373	19	-	6,441	-	-	51	7,895	
신안군	1,340	1,013	7	-	6,109	-	-	568	9,037	
소계	27,545	12,519	2,625	0	166,157	16,299	22,312	13,647	261,104	
경북 (23)	포항시	1,948	4,727	375	-	43,690	455	3,505	1,659	56,359
	경주시	520	4,198	442	-	9,296	-	1,685	646	16,787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 체육	국제 교류	체육시설 (전문, 생활)	공공체육 시설 유턴관리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sup>1)</sup>	
경북 (23)	김천시	2,732	2,307	60	-	11,593	-	2,929	3,369	22,990
	안동시	2,640	3,221	514	-	21,928	384	3,086	218	31,991
	구미시	2,578	1,558	333	-	8,705	2,872	4,088	2,538	22,672
	영주시	3,276	444	102	-	9,726	-	1,385	158	15,091
	영천시	925	1,363	58	-	2,247	-	1,725	-	6,318
	상주시	2,218	3,237	128	-	8,695	-	1,200	-	15,478
	문경시	868	3,195	34	-	2,508	9,000	2,744	-	18,349
	경산시	1,073	1,725	126	-	6,854	-	2,857	24	12,659
	군위군	673	250	8	-	8,055	-	-	-	8,986
	의성군	697	288	1	-	10,891	736	1,135	27	13,775
	청송군	1,346	550	57	780	1,733	240	-	-	4,706
	영양군	1,161	-	11	-	2,870	-	-	670	4,712
	영덕군	558	1,720	14	-	1,814	-	-	-	4,106
	청도군	1,296	425	30	-	-	-	-	-	1,751
	고령군	464	-	3	-	11,130	-	-	-	11,597
	성주군	804	22	54	-	9,251	50	580	1,054	11,815
	칠곡군	697	461	61	-	-	11,624	530	1,391	14,764
	예천군	1,544	1,580	35	60	14,968	27	1,085	2,313	21,612
	봉화군	1,062	-	30	-	2,752	-	-	-	3,844
	울진군	1,371	1,670	25	450	8,772	87	712	1,268	14,355
울릉군	902	10	-	-	284	-	-	-	1,196	
소계	31,353	32,951	2,501	1,290	197,762	25,475	29,246	15,335	335,913	
경남 (18)	창원시	3,482	7,074	1,067	-	19,784	16,618	9,004	-	57,029
	진주시	4,116	2,124	606	-	8,643	-	1,256	118	16,863
	통영시	1,209	2,465	210	-	2,435	-	949	-	7,268
	사천시	6,479	-	253	-	11,134	-	704	-	18,570
	김해시	1,434	2,749	383	-	18,114	-	5,271	610	28,561
	밀양시	993	447	31	-	10,202	2,632	1,127	610	16,042
	거제시	219	711	215	-	8,337	686	451	2,576	13,195
	양산시	2,096	998	490	-	14,190	-	1080	233	19,087
	의령군	1,013	-	15	-	9,410	-	402	115	10,955
	함안군	2,146	900	28	-	5,765	1,987	603	-	11,429
창녕군	865	2,122	42	-	14,053	2,733	630	71	20,516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 체육	국제 교류	체육시설 (전문, 생활)	공공체육 시설 위탁관리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기타	예산총액 <sup>1</sup>	
경남 (18)	고성군	744	4,780	6	-	23,456	-	-	75	29,061
	남해군	1,086	659	244	-	7,825	873	364	-	11,051
	하동군	633	864	16	-	15,676	-	-	436	17,625
	산청군	1,342	398	20	-	3,808	150	-	641	6,359
	함양군	1,239	165	3	-	11,248	-	-	20	12,675
	거창군	1,539	1,006	68	-	14,921	-	-	153	17,687
	합천군	732	4019	36	-	15,460	442	263	44	20,996
	소계	31,367	31,481	3,733	0	214,461	26,121	22,104	5,702	334,969
제주 (2)	제주시	1,923	328	784	-	24,684	-	1,189	5,553	34,461
	서귀포시	2,340	1,059	782	-	17,789	1,408	1,264	634	25,276
	소계	4,263	1,387	1,566	0	42,473	1,408	2,453	6,187	59,737
합계	354,586	225,652	52,099	2,907	1,889,641	519,844	299,747	140,351	3,484,827	
총액 대비(%)	10.2	6.5	1.5	0.1	54.2	14.9	8.6	4.0	100.0	

1. 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체육 분야 최종예산  
 ※ 주: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항목 부재  
 ※ 출처: 각 기초자치단체별 내부자료(2021)

기초자치단체 체육 예산 총액 3조 4,848억 원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배정된 분야는 광역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체육시설(54.2%)’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리비(14.9%)’ ‘생활체육(10.2%)’,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8.6%)’ 등의 순서로 배정 되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는 체육 예산의 50% 이상이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비용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생활체육보다는 전문체육 분야에, 반대로 기초자치단체는 전문체육보다는 생활체육 분야에 좀 더 높은 비율의 예산을 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 4. 국민체육진흥기금

### 1) 설치근거 및 연혁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졌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36호, 1972년 8월 14일)이 제정되어 1974년 1월 1일부터 ‘운동장에 대한 체육시설 입장료 부가금’이 신설되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법적기반이 조성되었다. 이와 함께 기금 조성 및 관리 기관인 ‘국민체육진흥재단’도 문교부장관 허가를 받아(1972년 9월 23일) 설립되었다. 이후, 1982년에는 「정부조직법」(법률 제3540호, 1982년 3월 20일) 개정 법률에 따라 체육진흥업무가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이관되고, 1982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다. 현재 운용되는 국민체육기금은 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부터 32조에 의거하여 운용된다. 또한 1980년대까지 국민체육기금 운용 기관이었던 ‘국민체육진흥재단’은 1989년 4월 20일에 해산되고, 그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잉여금 3,110억 원을 포함한 3,521억 원의 발족기금으로 현재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 2) 기금 조성

#### 가. 기금 구성 및 조성 현황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따라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조성된다. 대표적으로,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사업 수입금,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수익금, 경륜·경정사업에 따른 수익금,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따른 기금출연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시설물의 대여, 임대수입 등)이 재정의 주요 원천이다.

#### 나. 기금 조성 현황

1989년 올림픽 잉여금 3,110억 원과 국민체육진흥재단의 411억 원을 합친 3,521억 원의 발족기금으로 시작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4조 2,32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자세한 조성 현황은 <표 1-70>과 같다.

표 1-70.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1989~2021)

(단위: 억 원)

구분	1989~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총 조성액	121,030	15,767	16,546	18,288	17,228	21,158	210,017
총 지출액	105,099	13,895	10,783	13,177	15,084	17,167	175,205
(기금지원) <sup>1</sup>	(87,493)	(12,862)	(9,728)	(11,551)	(13,123)	(15,193)	(149,950)
(사업비·운영비 등)	(17,606)	(1,033)	(1,055)	(1,626)	(1,961)	(1,974)	(25,255)
순 조성액	15,931	1,873	5,763	5,111	2,144	3,991	34,813
기타조정 <sup>2</sup>	△86	43	△24	201	305	163	-
기금순자산 <sup>3</sup>	22,755	24,671	30,410	35,722	38,171	42,325	-
(금융성자산) <sup>4</sup>	(4,952)	(8,199)	(11,393)	(19,944)	(20,277)	(24,718)	-

1.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국제체육 장애인체육, 기금간거래 프로그램 지출액 중 건설가계정 및 응자·출자금 제외
  2. 기타조정: 투자증권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자산재평가 등)의 조정,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등
  3. 기금순자산 = 전년도 기금순자산 + (당해년도 순 조성액 + 기타조정)
  4. 금융성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 장·단기금융상품, 장·단기투자증권, 공자금
-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2021년 국민체육기금 총 조성액은 2조 1,158억 원으로서, 2020년 조성액인 1조 7,228억 원에 비해 3,930억 원(22.8%) 증가했고, 총 지출액은 2020년보다 2,083억 원(13.8%) 증가한 1조 7,167억 원을 기록했다.

### 3) 기금 지원

####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사업, 체육시설 확충 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 사업,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 복지 사업에 지원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2021년도 진흥기금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표 1-71>과 같다.

표 1-71.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1989~2021)

(단위: 억 원)

구분	실적								
	1989~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체육 진흥 사업	전문체육	6,008	640	771	1,080	1,586	1,237	1,322	2,072
	생활체육	8,368	1,434	1,931	1,692	1,952	2,229	2,814	2,089
	국제체육	3,957	221	810	2,216	2,643	3,158	3,935	3,898

구분	실적							
	1989~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스포츠산업	24	67	69	87	118	265	264	263
장애인체육	181	216	279	220	269	362	464	629
총계	18,538	2,578	3,860	5,295	6,568	7,251	8,799	8,951

구분	실적							총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체육 진흥 사업	전문체육	3,262	4,098	4,108	3,283	3,503	3,766	3,838	40,574
	생활체육	3,305	3,455	3,858	3,664	5,522	6,466	7,871	56,650
	국제체육	4,083	4,074	3,432	1,309	1,043	750	815	36,344
	스포츠산업	428	778	928	941	957	1,339	1,845	8,373
	장애인체육	527	595	624	618	641	871	902	7,398
총계	11,605	13,000	12,950	9,815	11,666	13,192	15,271	149,339	

※ 주: 청소년육성 지원 774억 원, 올림픽기념사업 지원 271억 원('89~'04 총계에 포함)

※ 주: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 지원 2,103억 원 (전문체육 부문에 포함)

- 연도별 지원액: '99년 100억 원, '00년 1,903억 원, '01년 100억 원

- 6개 도시: 서울 300억 원, 인천 418억 원, 울산 346억 원, 수원 440억 원, 전주 314억 원, 서귀포 285억 원

※ 주: 평창동계올림픽대회시설비 1조 1,198억 원 지원(국제체육 부문에 포함)

- 연도별 지원액: '12년 76억 원, '13년 982억 원, '14년 1,329억 원, '15년 2,914억 원, '16년 3,409억 원, '17년 2,112억 원, '18년 376억 원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2021년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20년에 비해 약 15.8% 증가한 총 1조 5,271억 원이 체육 각 분야에 지원되었다. 세부적으로, 전문체육 분야에 3,838억 원('20년 대비 1.9% 증가), 생활체육 분야에 7,871억 원(21.7% 증가;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대폭 증가), 국제체육 분야에 815억 원(8.7% 증가), 스포츠산업 분야에 1,845억 원(37.8% 증가; 각종 R&D 지원 및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투입 비용 확대), 장애인체육 분야에 902억 원(3.6% 증가)이 지원되었다.

#### 나.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의거, 1991년부터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를 시작한 스포츠산업 융자는 2021년에 5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361억 원이 지원되었다('20년 지원금액 대비 7.9% 증가).

표 1-72.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실적(1991~2021)

(단위: 백만 원, 건수)

구분	계		체육시설업체		체육용구 생산업체		스포츠 서비스업체		국제경기대회 경기시설설치자	
	금액	지원건수	금액	지원건수	금액	지원건수	금액	지원건수	금액	지원건수
1991~2008	144,391	532	117,688	417	15,928	103	2,775	10	8,000	2
2009	9,050	28	7,550	19	1,350	8	150	1	-	-
2010	8,073	28	5,490	17	2,283	10	300	1	-	-
2011	7,491	28	5,444	19	1,697	7	350	2	-	-
2012	8,240	28	7,440	24	800	4	-	-	-	-
2013	5,579	23	3,710	13	1,369	7	500	3	-	-
2014	6,478	20	5,278	13	900	6	300	1	-	-
2015	13,714	41	12,114	33	1,500	7	100	1	-	-
2016	31,525	51	29,582	41	1,403	7	540	3	-	-
2017	38,300	95	36,354	81	1,626	11	320	3	-	-
2018	41,576	67	40,507	61	419	2	650	4	-	-
2019	55,999	129	51,339	107	2,710	11	1,950	11	-	-
2020	126,100	822	118,879	776	3,125	22	4,096	24	-	-
2021	136,100	549	132,397	527	2,573	12	1,130	10	-	-
계	632,616	2,441	573,772	2,148	37,683	217	13,161	74	8,000	2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융자 지원 금액을 스포츠산업 업종별로 각각 세분화하면, 체육시설업체의 경우 527건, 1,323억 9,700만 원('20년 지원금액 대비 7.9% 증가), 체육용구 생산업체는 12건에 25억 7,300만 원('20년 지원금액 대비 17.7% 감소), 그리고 스포츠서비스업체의 경우에는 총 10건, 11억 3,000만 원('20년 지원금액 대비 72.4% 감소)이 융자되었다.

#### 4) 운용 성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의거 설치되어, 동법 제36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비용 및 그 밖의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1989년 4월에 설립되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 및 운용한다. 지난 30년 간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체육 재정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을 합치면 총 21조 17억 원에 달한다. 물론 늘어나는 조성 기금만큼 지원되는 규모 역시 늘어나는 추세여서,

2021년까지 기금 지원 총 금액은 14조 9,339억 원에 이른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문체육 분야에 4조 574억 원(27.2%), 생활체육 분야에 5조 6650억 원(37.9%)을, 국제체육 분야에 3조 6,344억 원(24.3%), 스포츠산업 분야에 8,373억 원(5.6%), 장애인체육 분야에는 7,398억 원(5.0%)이 지원되었다.

본 기금은 경륜, 경정사업,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포토)사업 등의 수입금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국민체력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표선수 등 메달리스트 연금 지원,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대회 지원, 체육단체 및 체육지도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때문에 공단은 여유자금을 중심으로 기금을 금융권에 위탁운영하며 수익을 내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평잔(해당 기간에 대한 매일의 잔액 평균) 기준 총 9,451억 원이며, 이 중 46.5%를 제2금융권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중이다.

## 제4절 체육관련 법제

## 1. 체육관계법의 구분

‘체육관계법’은 체육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실정법을 뜻한다. 이 법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체육관계법 체계를 실정법 체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체육관계법은 기본적으로 국내 법령체계 내에서 법률 단계에 속하여 형식이나 내용 또는 효력에 따라 다양하게 제정 및 적용되어 활용되는 법으로서, 주로 공법(公法)적인 측면에서 분류될 수 있다.

체육관계법에서 대표적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고, 「경륜·경정법」, 「스포츠산업진흥법」,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은 ‘특별법’ 형태로 이 법에 속한다. 또한 「정부조직법」, 「청소년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처럼 체육이나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진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관련 내용을 다루는 법률 역시 체육관계법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사법(私法)에서는 직접적으로 스포츠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단지 「민법」이나 「상법」 등의 법률이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뿐이다. 즉, 사고와 관련하여 그 주체가 사인이면 「민법」상 불법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은 그 적용순서에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법률의 적용에서는 특별법(적용 대상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제정된 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 또한 법령은 시간적인 효력에 따라서 일반법과 한시법으로도 분류된다.

## 1) 일반법

‘체육관계법’에서 ‘일반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 없이 국내 체육환경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 2) 특별법

체육과 관계된 ‘특별법’으로는 「경륜·경정법」,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이는 특정한 스포츠 환경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을 뜻한다.

## 3) 한시법

‘한시법’이란 일정 기간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이다. 물론, 한시법이라 해도 그 법률의 실효시기, 즉 효력을 잃은 시기가 도래한 후에도 그 법이 유효했던 당시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유효한 법률 규정으로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이 있다. 명문으로 규정된 효력기간이 지나 이 법은 그 효력이 자동 상실되었다.

## 2. 체육관계법 현황

###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 가.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7일 제정된 후 2007년 4월 11일 전면 개정된 법률이다. 이는 ‘국민 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총 6장 5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체육진흥의 기본을 이루는 법으로서, 제1장에서는 체육 분야의 여러 개념(체육,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 운동경기부 등)을 규정(제2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체육활동의 권장·보호·육성의무를 명시(제3조)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의무를 규정(제4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립 의무를 규정(제5조)한다. 이와 더불어, 제2장에서는 체육지도자 양성, 체육시설 설치, 선수 육성 등 전반적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및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한다. 또한 제3장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사용을 명시하고,

제4장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및 사업 위탁 규정을, 제5장에서는 각 체육단체(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육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2007년 전면 개정 이후 매년 꾸준히 소폭 개정되었는데, 2010년에는 대표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과 구매 제한 사항이 변경되었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에 국내외 운동경기대회가 추가되었고, 투표권 연간 발행 회차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이 투표권 구매 제한 대상을 기존 ‘미성년자’에서 ‘청소년’으로 조정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2011년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제도가 개정되었다. 기존에서 대상별, 기능별 세분화가 추구된 개정이 이루어지며,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기존 자격 종류가 분류된 것이다. 또한 일정 수준의 자격검정을 거친 후 현장 중심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프로선수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격검정이나 연수 과정을 일부 면제해 주는 조정 절차도 포함되었다. 덧붙여,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근거도 마련되었고,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요건도 보완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소득층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었다(제22조제11항).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 구체화 및 관련 벌칙 신설과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및 발행 관련 사항도 개정되면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 대상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금지까지 명확히 설정되었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의 벌칙과 징역 및 벌금의 병과 규정이 새로 설치되었다.

2014년에는 신설된 조항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경기단체 범위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되지 아니한 프로스포츠단체가 포함토록 하였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 외에도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제14조 선수 등의 금지행위). 한편,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가 대표나 그 지도자로 소집되어 국제경기 및 훈련이나 이를 위한 지도 중 사망하거나 상이(부상)에 이른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되었다(제14조의2 대한민국체육

유공자의 보상).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 관리를 지원하고자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시책도 신설되었는데(제16조의 2 생활체육활동 및 체력 인증), 이를 바탕으로 ‘국민체력100센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2015년에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직 통합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 선진국형 체육조직을 구성하려는 차원에서 관련 조항이 개정 및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체육회는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사업,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선수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체육인의 복지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사업, 그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에서 아마추어 선수의 도핑검사 의무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는 입법적 불비(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음)를 보완하고, 프로선수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자 경기단체 등록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제35조의2 선수의 도핑검사).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전문개정).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토록 하고, 스포츠산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도 강화되었다. 더불어, 장애인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신고 및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피해 운동선수들이 정보유출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법적으로 마련하였다.

2017년에는 금지자산 및 한정자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중 금지자산자 또는 한정자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동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별도 관리·운영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의 재정 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정하였다.

2019년에 이루어진 법 개정 중 대표적인 것은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조항이다. 즉,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와 지회는 제외)의 장을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 민간회장 선출 방식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2020년 1월 15일까지 선거를 통한 회장 선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마련되었다.

2020년에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 장려금 환수 근거 마련,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과 체육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021년 8월 10일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 생활 안정 및 복지 지원을 위한 「체육인복지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정된 법에 따른 기금 사용 등의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1989년 3월 31일 제정·공포된 법률로서 2007년 4월 11일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공공 체육시설 설치와 민간체육시설업 권리 및 의무를 정하고 있다. 총 5장 40조로 구성된 이 법률은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로 세분화한다. 또한 이 법은 사인에 의한 체육시설 설치·운영과 체육지도자 배치·시설 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할 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직장의 장에게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부가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해 동 체육시설을 개방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한다.

이 법률 또한 해를 거듭하면서 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2012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을 촉진하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시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며,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한 체육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였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어린이 체육 교실 운영자가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체육시설업자에게 등록 취소 처분을 취해 영유아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도 이루어졌다.

2015년도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을 요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고(제4조제2항), 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 운영·관리자에게는 기능 및 안전성 유지관리의 의무가 부여되었다(제4조제3항).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제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련 사항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위탁기관을 통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었다(제4조의3). 한편,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정지 제재 조치를 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2조의2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 공개).

2016년에는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이 개정되었다(제22조). 즉,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 개정이었다. 이에 따라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및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내용이 개정되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는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히 관련된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2018년에는 두 번에 걸쳐 법률의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첫 번째는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최근 IT기술 발달에 따른 가상 환경 이용 시설에 대한 체육시설 분류기준과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며 특히 ‘골프 연습장업’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스크린 골프장이 기존 규정의 한계로 대부분 불법시설로 운영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2019년에는 다양한 종류의 체육교습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 대상 체육교습을 체육교습업으로 신설하는 법률 개정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2020년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제4조의3)하였고,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제8조제2항) 하는 한편, 스포츠클라이밍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암벽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제10조제1항제2호)하였다.

2021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방역 및 예방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체육시설의 종류·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제4조)하는 동시에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제35조제3항 신설)하였다.

#### 다. 경륜·경정법

「경륜·경정법」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경륜 및 경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히 보급하여 국민 여가선용과 청소년 건전육성 및 국민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원 마련, 나아가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경륜·경정의 시행, 수익금 사용 등도 규정한다. 이 법은 처음 체육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쓰이다가, 경륜·경정의 저변 확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수육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14년에 개정되기에 이른다. 경륜·경정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중 출연금으로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케 한 것이다.

2016년에도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되었다. 즉, 승자투표 방법 중 특별승식의 경우 그 종류와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한 개정이었다. 이러한 법 개정은 2017년에도 이어지면서,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 수익금으로 실시하던 사업을 국민체육기금 등으로 편입하여 수익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토록 개정되었다. 이는 종전의 경륜 및 경정 시행에 따른 수익금 사업 활용이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국가재정활동으로 발행하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원칙)에 위배되면서 국정감사와 감사원에 의해 지적되었기에 이루어진 개정이었다.

법 개정은 2018년에도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이 반영되며 이루어진 것이다. 10월에는 경륜·경정 선수에게도 도핑검사 의무를 부과했고, 12월에는 처벌정도에 있어 다른 법률과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즉, 선수나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 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으로 고친 것이 개정의 요점이었다.

2019년에는 경륜 및 경정법 제24조(유사행위 등의 금지)와 관련,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두 가지가 추가되었다. 첫째, 외국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또는 모터보트 경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둘째, 영리 목적으로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승자투표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그것이었다.

2021년 이루어진 법 개정에서는 경주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제9조의2제1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보장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재정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 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2007년 1월 26일 제정되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

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행산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경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경기를 포함한다. 전체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및 기능, 불법사행산업의 감시 및 신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마. 스포츠산업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은 2007년 4월 6일 제정된 법이다.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전체 23조로 구성되었고,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진흥 시설 지정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한다. 이 법은 그 이후 여러 측면에서 개정이 되어 왔다.

2010년에는 프로구단의 관객 유치와 서비스 향상을 지원하고자 종전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던 프로구단의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사용 및 수익기간을 25년 기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6년에는 2007년에 제정된 현행법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함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정비되었다. 이를 위해 스포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2020년에는 스포츠산업 기본계획에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5조제2항제8호 신설)되도록 하고, 프로스포츠 경기 일정을 재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제18조제2항 신설). 또한,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급을 통해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제18조의2 신설).

2021년에는 스포츠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제5조제1항)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제5조의2 신설)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제17조제4항 신설)하였다.

#### 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었다. 이는 ‘우리 민족의 고유 무예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예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5장 24조로 구성되었고, 태권도의 체계적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진흥 기본방향, 지도자 교육·양성 등, 태권도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효율적인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법은 2014년에 주요한 개정 작업을 거친다. 당시 조성 중이었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국비 및 민간자본 투자)의 성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민간 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마련하여 임대료 감면 및 임대기간에 대한 혜택을 포함하고, 둘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 도로망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케 하며, 셋째, 이행강제금 제도와 도로 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 입찰 방법을 도입,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도로법」 정비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2016년에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같은 고유 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문제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기원의 태권도 품·단증 발급 및 태권도지도자 교육 업무에서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태권도 품·단증은 경찰공무원 시험 등 여러 국가시험에 활용되기에, 국기원의 고유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고유 식별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개정된 것이다.

2017년에는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허가 민원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하였다.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승인과 관련,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2019년에도 제21조2의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의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태권도의 지속적인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세 가지 요건(첫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 보유, 둘째,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 셋째, 윤리성 적합)을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었다. 2020년에는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태권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2021년에는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 사.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은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법이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전체 6조로 구성되며, 국가가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 육성, 전통무예 지도자 육성 사업을 수행토록 규정한다. 이 법은 2017년에 처음 개정되었다. 2016년에 발족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명시적 근거 마련 때문이었다. 전통무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II)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1년에도 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였다.

#### 아. 씨름진흥법

「씨름진흥법」은 2012년 1월 17일 제정된 법이다.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8조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씨름의 날 지정 및 행사진행, 씨름 시설의 지원 등의 사업들을 수행토록 한다. 「씨름진흥법」 역시 2021년 개정을 통해 씨름진흥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 추진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자.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은 2012년 1월 26일,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전체 19조로 구성된 이 법은 학교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학교체육 진흥 조치, 학교시설설치,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관련한 내용을 담는다. 또한 이 법은 건강체력교실,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운영,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도 지닌다. 한 마디로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할 토대를 만듦으로써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한 법인 것이다.

이 법의 주요 개정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이루어졌다. 2016년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학교체육진흥원의 사업에 있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실제적 규정이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포함되었다. 2017년에는 제12조의2에 ‘도핑 방지 교육’이 포함되었는데, 금지약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대상으로 학생선수과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명시되면서 도핑 방지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도록 규정되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주요 개정되었다. 2020년에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의 장의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고(제6조제3항 신설), 학생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2021년에는 학생 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기 중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제11조 학교운동부 운영 등)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차.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2년 1월 26일 제정된 법으로서, 이는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3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8장 92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은 조직위원회, 대회지원위원회, 대회관련시설,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운영,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벌칙 등을 규정한다. 이 법의 첫 개정은 2015년에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전월세시장 수급불균형 현상 완화, 둘째, 공공주택 관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 셋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식수용 저수지 건설사업 및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가 그 내용이었다. 올림픽 준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2017년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대회 참가자를 보호하고 대회 안전을 확보하고자 대회 관계자나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수단, 국내·외 주요 인사, 관중 등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 개정·시행한 현행법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크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회 후원사 및 방송중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은 제2장 제25조의3(매복마케팅의 금지)란을 구성하며 신설되었다.

이 특별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제정된 ‘특별법’이었는데, 2019년에 들어 올림픽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이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의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9월). 이는 ‘2018평창기념재단’이 올림픽 시설과 유산 사후활용에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기념재단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은 첫째, 사후 활용계획 수립·시행, 둘째, 동계올림픽 개최 성과 계승 및 기념을 위한 사업, 셋째, 대회시설 위탁관리 및 위탁운영 사업, 넷째,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관광 활성화 사업 등으로 개정법률에 명시되었다.

### 카.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2012년 11월 23일 제정된 법으로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6장 34조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그동안 서울하계올림픽대회, FIFA 한일월드컵축구경기대회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 유치 시 개별 입법 중심으로 제정되던 한시적 특별법 대신,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의 일반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수립되었다.

이 법의 여러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 및 체육단체가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끔 만든 것이다(제2장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국제대회 유치 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제동 장치를 만들어 놓음에 따라 난립하는 국제대회 유치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대회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장관이 이를 포함한 대회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만든 조항도 포함되었다. 대회의 사전 및 사후 평가를 강화하려는 시도였다(제2장 제7조 대회에 대한 사전·사후평가).

#### 타.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대적 과제로서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되었다. 총 16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필요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법의 제정은, 현재는 대한체육회와 통합된 ‘국민생활체육회’의 단체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전국적으로 4백만 여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1년 700억 원의 국가예산을 집행했던 국민생활체육회로 하여금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간의 연계를 강화, 체육정책의 통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 이 법은 제정 후 개정 작업이 거의 없다가, 2019년 12월 3일, 제6조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호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2020년 12월 22일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에서의 감염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2021년에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첫째로는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제6조)하였으며 둘째로는 스포츠클럽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삭제하기 위함이었다.

#### 파.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2015년 5월 18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의 유지 및 국민 전체의 행복 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전체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과 여가가 균형을 이루어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전체의 행복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여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관광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관광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체육, 생활체육을 포함하며,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한다. 총 17조로 구성된 이 법은 여가 활성화 조사 및 연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시설·공간 확충, 여가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등 여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2021년에는 장기간의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 아동의 여가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 하. 바둑진흥법

「바둑진흥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4월 17일 제정되었다.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바둑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바둑전문인력의 양성 등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총 12조로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바둑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양성, 재원 확보 사항을 기본계획 형식으로 수립할 내용과 함께, 관계 기관과의

협조,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하는 시책이 포함되었다. 2021년에는 바둑진흥기본 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바둑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 가. 스포츠클럽법

「스포츠클럽법」은 2021년 6월 15일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존 생활체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 체계적 지원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등을 구체화하고자 한 것이다. 전체 23조로 구성된 이 법의 핵심은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제6조)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과 운영기준, 그리고 지정스포츠 클럽을 통한 종목별 전문선수 양성 및 비인기종목 육성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제9조,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제12조) 등에 대하여 명시하는 데 있다.

#### 나. 스포츠기본법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분야를 총괄하고 각 업무영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고자 2021년 8월 10일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그리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제2조)으로 하며, 전체 27조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스포츠 정책 수립 및 시행의 기본원칙(제7조)부터 시작하여 전문·생활·장애인·학교·프로스포츠와 스포츠산업, 스포츠클럽, 스포츠 시설 및 인력, 스포츠 윤리 및 스포츠 가치, 스포츠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스포츠 국제(남북)교류, 스포츠 기부문화 등 스포츠 각 분야별 업무 영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 다. 체육인복지법

「체육인복지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1년 8월 10일 「스포츠기본법」과 같이 제정되었다. 전체 5장 28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 및 보상(제7조),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정 및 보상(제8조), 학생선수 장학사업 지원(제10조 및 제11조), 체육인 진로 및 창업 지원 등(제12조 및 제13조), 체육인 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제16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2) 행정규칙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또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정의된다. ‘행정규칙’의 정의에 대해 법령 등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4조의3조제1항에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훈령·예규 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조제1항에서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규정·규칙·지침 등을 ‘훈령·예규 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이를 실무상이나 강학상 행정규칙이라고 부르고 있다.

체육 분야의 행정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으로 나타난다. 2021년 기준 체육 분야 행정규칙은 총 35개가 시행되고 있다. 먼저, 훈령(訓令)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체육 분야 훈령으로는 제463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467호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등 9개가 있으며, 2021년에는 제454호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 문서 외의 문서를 말하며, 체육 분야 예규로는 제66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가 있다.

고시는 법령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규적 사항을 정하

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고시는 그 내용이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인 경우에만 행정규칙에 해당하며 고시의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통지인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고시가 일반적·구체적 성질을 가질 때에는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법령의 위임에 따른 법령보충규칙 유형의 고시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2021년 기준 체육분야의 고시는 총 24개이며, 2021년에는 제2021-2호 「국민체육진흥기금 용자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 제2021-20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제2021-32호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2021-44호 「체육지도자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재교육기관 지정 고시」 등이 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침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공고 문서의 형식을 지니는 문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지침 중 체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침은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이 있다.

2021년에 일부개정 또는 새롭게 제정된 체육 관련 행정규칙은 다음과 같다.

####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용자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2호)

「국민체육진흥기금 용자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는 감염병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다음 업종을 스포츠산업 용자의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 본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에 의거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 중 전국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집합금지 조치로 부수적인 피해를 입은 겨울레저스포츠시설 용품 판매 및 임대업에 대해 스포츠산업 용자대상으로 추가한다는 것이 이 고시의 주요 내용이다(시행일 2021.01.05.).

#### 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20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2021년 4월 5일 제정되었다. 직장운동경기부 근로자용 표준계약서(근로자용 표준계약서는 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에 대한 내용) 및 직장운동경기부 비전속용 표준계약서(프리랜서 형태로 실업팀에 종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타 영리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및 수익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계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시행일 2021.04.05.).

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2호)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프로스포츠 5종(야구, 축구, 배구, 여자농구, 남자농구)의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선수와 구단의 의무, 선수계약 일반사항 및 선수 신분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다(시행일 2021.06.03.).

라. 체육지도자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재교육기관 지정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44호)

「체육지도자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재교육기관 지정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2년 주기 재교육 이수 의무화됨에 따라, 원활한 재교육 시행을 위해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재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하고자 제정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6항에 따른 재교육기관으로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를 지정한다는 것이 이 고시의 내용이다(시행일 2021.07.15.).

마.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54호)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14조로 구성되었으며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에 대하여 규정한다(시행일 2021.11.14.).

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0호)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 국제행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타당성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국제행사의 합리적인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2010년 6월 4일에 제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총 17조로 구성되었다. 2021년에는 국제행사 주관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광역자치

단체로 명확히 하고,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행사에 대해서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 제14조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며 총사업비 50억 원 미만 행사에 대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 제14조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타당성·경제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시행일 2021. 03.15.).

#### 사.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2호)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8월 24일 제정되었다. 2021년에는 부실복무자의 편입취소 및 국외여행 허가 제한 등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8003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직무교육 및 부실 또는 허위 실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봉사활동 수행시까지 왕복 이동시간을 인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시행일 2021.10.14.).

#### 아.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67호)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제정되었으며 총 10조로 구성되었다. 2021년에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매년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스포츠 단체가 자체적으로 문제 상황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자 개정이 이루어졌다(시행일 2021.01.14.).

#### 자.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인정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25호)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인정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1]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에 근거하여, 같은 영 제9조 내지 제9조의5의 자격종류별 종목 중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9년 4월

16일 제정되었다. 2021년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절차 진행 결과, 총 11개 종목(자격증 17개)의 신설이 결정됨에 따라 해당 종목을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으로 추가 인정하고 2022년부터 해당 종목에 대한 자격검정을 시행토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시행일 2021.04.22.).

### 3) 자치법규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권한을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보장받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조례 또는 규칙, 즉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 관련 자치법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수립 및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2년 11월 기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한 332개 조례, 「스포츠클럽법」에 의거한 20개 조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한 206개 조례, 「학교체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한 14개 조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1개 조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의거한 12개 조례 등의 자치법규들이 시행되고 있다.

### 4) 체육유관법령

#### 가.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8일 제정된 법으로서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과’에서 담당한다. 총 8장 59조로 이루어진 이 법의 2011년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조종면허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의 근거 마련과 조종면허 결격사유, 갱신기간 등의 기준 등이 명확히 기술되었다. 그리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범위를 10해리로 확대하고,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설립하는 것이 신설되었다. 또한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의 보완·신설내용을 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였고,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등록기준 완화, 수상레저사업자가 교육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2019년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제10조의 2), 수상레저사업자의 재개업 시 신고에 대한 사항(제42조), 면허시험 기관의 업무정지처분에 따른 공익 훼손에 대한 과징금 사항(제51조의2)이 신설되었다. 2020년에는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등록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제19조 2항)되었으며, 그 외에도 임시운항의 허가(제38조의2) 및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제48조의2)에 대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법으로서, 약칭 ‘자전거법’이라고 한다. 총 4장 25조로 구성된 이 법은 1995년 1월 5일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개정되어 오고 있다. 이 법의 2011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도시 계획’을 ‘도시·군 계획’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약칭 ‘사격장안전법’으로 불린다. 총 25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1961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출발하여 2021년까지 열 번의 개정을 거쳐 오면서 현재 법에 이르렀다.

####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법률로서 이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주요 조문 내용이 포함되는데,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서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한다. 즉, 제1항에서는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019년에는 제8조의2(실태조사) 항목이 신설되면서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 마. 말산업육성법

「말산업육성법」은 2011년 3월 9일 제정된 법으로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말 이용업’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 트래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승마장 및 승마장업과 업종구분이 불명확하여 행정절차 및 시설·안전기준 등이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안전한 승마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제5조 제2항제10호(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를 신설함으로써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 계획에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승마시설 및 승마안전사고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2009년 6월 9일 제정되어 ‘마리나 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마리나 항만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도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촉진 등이 포함된 법이다. 2012년 개정을 통하여 위반행위별로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3개월 이내 및 1년 이내)으로써 위반 행위자의 의무이행 기간을 명확히 하였다. 2020년에는 마리나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28조의2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8조의11 및 제28조의12를 신설함으로써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의 의무와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는 등 일부 항목이 개정되었다.

#### 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2005년 8월 4일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약칭 ‘산림휴양법’으로 불린다. 체육과 관련한 2011년 주요개정을 살펴보면 숲길의 정의를 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로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숲길의 종류를 신설하여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에 따라 등산로, 트래킹 길, 레포츠 길, 탐방로, 휴양·치유숲 길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정의하였다. 또한, 등산로에 한하여 지원하던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 등산로를 포함하여 트래킹 길(주요 산의 둘레 길과 트레일 포함), 전국 또는 국제규모의 산악레포츠 대회에 필요한 산악레포츠길, 역사·문화적으로 복원할 가치가 있는 옛길과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휴양·치유숲길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하도록 개정되었다. 2012년에는 산림을 휴양, 보건, 문화, 교육 등 복지적 측면에서 활용 하려는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국민의 산림복지·교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 하였다. 2019년에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라는 제4조7항이 신설되었고, 더불어 제12조(산림레포츠지도사), 즉 ‘산림레포츠를 지도하는 사람’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 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은 2012년 8월 26일 제정된 법률로서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싸움 경기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

소싸움 경기 투표권에 관한 사항, 소싸움경기장 설치, 심판 및 조교사 등록 및 면허, 소싸움 경기 규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이 법률에 규정되었다.

#### 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2016년 5월 29일 제정된 법으로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수중레저 활동의 증진, 안전관리 및 준수 의무, 수중레저사업 등을 수행토록 한다. 2017년에는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 안전·재난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자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하고 정부기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 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약칭 ‘낚시관리법’으로 불리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2011년 3월 9일 제정된 법으로서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8장 55조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로 하여금 낚시 관리, 미끼 관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 지원·육성 등을 수행토록 한다. 2019년에는 낚시어선 이용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낚추·낚시용 미끼 무단 투기 등으로 해양 수질과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낚시 인기 어종에 대한 남획으로 수산자원 감소와 해당 지역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낚시어선 사고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바, 불법 행위 근절과 낚시어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금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등 낚시를 하는 경우의 금지행위 추가(제7조의2),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실시,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안전사고 발생 시 영업의 폐쇄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 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2년 2월 17일 ‘이(e)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약칭 ‘이스포츠법’으로 불린다. 전체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지방 이스포츠 진흥, 전문 인력 양성,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등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2018년에는 이스포츠 시설을 현행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장 등에서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정의하면서 이스포츠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이스포츠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스포츠 산업지원센터로 하여금 관련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도 하였다. 2020년에도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스포츠 산업의 용역 계약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법의 많은 부분이 기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다.

### 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은 1995년 1월 5일 제정된 법으로서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5장 3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의 관리 등을 수행토록 한다. 2017년에는 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2019년에는 국민들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직장 내에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범위에 신체활동장려 및 건강 친화제도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제6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 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하도록 하는 한편(제16조의3 신설),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 및 보완되었다. 2021년에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인 '건강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제6조의5 신설).

#### 파. 기타 법률

그밖에 체육관련 조문을 두고 있는 것에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장애인복지법」, 「병역법」 등이 있다. 또한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과 하천법」,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된 「민법」, 「상법」, 「조세법」, 「부가가치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작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체육 관련법에 해당한다.

2021 체육백서

2021 Sport White Paper

# 2

## 생활체육

제1절 생활체육 개관  
제2절 생활체육 현황  
제3절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정책

## 제1절 생활체육 개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3항은 생활체육을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정의한다. 생활체육은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의사와 함께 일상생활 및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행하는 신체활동이다. 이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개인이 그 어떤 차별 없이 생활체육 활동에 참가하여 건강권과 여가 향유권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 「생활체육진흥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필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고 규정한 이유다(제4조).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의 출발을 1975년 3월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 각국 체육부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헌장에서 찾는다. 즉, 당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 유럽 헌장’이 채택되고, 그 후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과 국가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역사적 흐름이며, 스포츠 활동 참여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임을 천명한 헌장이기 때문에 이 헌장이 갖는 의미는 크다. 그렇다면 ‘모두를 위한 스포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 이는 과거까지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스포츠 활동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즐겨야 함을 말한다.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별, 연령, 인종, 종교의 차별 없이 스포츠가 주는 혜택을 당연히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생활체육 개념이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회자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당시에는 ‘생활체육’이 아닌 ‘사회체육’이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1985년에 설립된 ‘한국사회체육진흥회’란 단체명에서 볼 수 있듯, 체육을 통한 건전한 시민 육성이란 기치 아래 적용되었던 개념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사회체육이란 개념은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과 더불어 지금의 ‘생활체육’ 개념으로 변경되어 쓰이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생활체육 욕구가 증가하면서 1991년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라는 민간단체가 신설되며 관련 프로그램, 전문 인력 양성(자격증 제도), 시설 확충 같은 생활체육 관련 정책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생활체육 정책은 기존의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방향에서 ‘스포츠는 복지’라는 표어 하에

지역 내 공공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형 체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장에서는 제1절 ‘생활체육 개관’을 선두로 하여 내용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생활체육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현황’을 살펴본다. 현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1) 생활체육 참여 현황, 2) 생활체육 진흥 관련 정책, 3) 생활체육 인프라 현황(지도자 및 시설)이 정리되었다. ‘생활체육 참여 현황’은 매년 집계되는 「국민생활체육조사(국가통계 승인번호 제113003호)」에서 직접참여 및 간접참여 관련 내용이 일부 발췌되었다. 이 조사는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명칭으로 1994년부터 실시되었고, 2006년부터 격년으로 발행된다. 2015년부터는 매년 실시되어 오고 있다. 명칭 또한 2019년부터 현재의 「국민생활체육조사」로 변경되었다. ‘생활체육 진흥 관련 정책’은 역대 정부 순서로 생활체육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중심으로 정리되었고, 마지막 ‘생활체육 인프라 현황’에서는 생활체육 시설과 지도자 양성 현황을 정리하였다.

마지막 3절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여기에서는 먼저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정리하였는데, 시설 지원 사업이나 KSPO가치센터 건립,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력 100센터 운영 지원사업’, 그리고 지난 『2030스포츠비전』을 통해 추진되었던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였다. 이들 정책은 기존의 생활체육 환경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향을 실천한 것이다.

다음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정책’을 정리하였다. 앞선 기반 확충 사업 지원과 달리, 이들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각 세부 분야에 따라 지역민들의 상황과 수요에 맞춰져 구성된 여러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추어 졌다. 이들 지원 사업에는 생활체육 광장 사업에서부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운영 사업, 스포츠7330 봉사단 운영 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체육 활동 사업 등이 포함되었고, 생활체육 단체 및 대회 개최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생활체육 홍보 지원 등의 내용도 함께 다루었다.

## 제2절 생활체육 현황

제2절 '생활체육 현황'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룬다. 첫째,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현황이다. 둘째, 생활체육 관련 정책 현황이다. 셋째, 생활체육 인프라 현황으로서, 지도자와 시설 중심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 1. 생활체육 참여 현황

## 1)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국민들이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가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은 <표 2-1>과 같다.

표 2-1.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2017~2021)

(단위: %)

연도	전혀 하지 않는다	월 3회 이하	주 1회	주 2~3회	주 4~5회	주 6회	매일	주 1회 이상	주 2회 이상
2017	28.9	11.9	11.1	27.2	15.1	1.6	4.3	59.2	48.2
2018	28.0	9.8	9.8	30.0	15.4	2.4	4.6	62.2	52.4
2019	25.9	7.6	14.4	34.8	11.8	1.4	4.1	66.6	52.2
2020	29.5	10.4	13.1	30.7	11.9	1.7	2.8	60.1	47.0
2021	28.7	10.6	11.0	33.7	10.3	1.9	3.9	60.8	49.8
남성	25.2	14.7	14.0	30.7	10.3	1.6	3.5	60.1	46.1
여성	32.2	6.4	7.9	36.6	10.4	2.1	4.4	61.4	53.5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표 2-1>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꾸준히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60.8%로 2020년의 60.1%과 유사한 수준이나 소폭(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활동 참여 빈도와 관련해서는 주 1회가 11.0%로 작년에 비해 2.1%p 감소했고, 주

2~3회 참여율의 경우 33.7%로서 작년보다 3.0%p 증가하였다. 생활체육 참여율(주1회 이상)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참여율이 2020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 연령대에서 2020년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유행이 2021년까지도 지속됨에 따라 각종 야외활동 및 스포츠시설 이용에 대한 제한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성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율에서는 여성(61.4%)이 남성(60.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령대별 체육활동 참여 비율도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연령대별 주 2회 이상 체육활동 참여비율은 <표 2-2>와 같다.

표 2-2. 연령대별 체육활동(주 2회 이상) 참여율(2017~2021)

(단위: %)

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7	45.3	46.5	51.1	47.8	47.2	52.1	48.8
2018	44.3	52.6	52.8	52.2	53.2	54.9	55.7
2019	34.1	55.9	55.5	56.2	51.9	55.3	50.1
2020	34.6	44.6	46.3	48.1	50.8	50.2	50.1
2021	41.4	53.3	48.4	50.3	48.0	51.8	53.4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표 <2-2>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참여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연령대는 70대 이상(53.4%)이었다. 그 뒤를 이어 20대(53.3%), 60대(51.8%), 40대(50.3%), 30대(48.4%), 50대(48.0%), 10대(41.4%) 순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 한 점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주 2회 이상 체육활동 참여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20대와 10대의 참여율이 각각 전년 대비 8.7%p, 6.8%p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 2) 체육활동 참여 종목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종목 10개를 조사한 결과, 2021년에도 작년과 같이 1순위는 ‘걷기’로 나타났다. 10개 참여종목의 순위 내용은 <표 2-3>과 같다.

표 2-3. 체육활동 참여 종목 순위(2017~2021)

(단위: %)

연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2017	걷기 (31.8)	등산 (17.0)	보디빌딩 (14.7)	수영 (8.2)	축구/풋살 (7.2)	요가/필라테스 /태보 (7.1)	자전거/사이클 /MTB (5.9)	배드민턴 (5.4)	골프 (4.6)	당구 (4.5)
2018	걷기 (35.2)	등산 (21.0)	보디빌딩 (13.9)	수영 (7.8)	자전거/사이클 /MTB (7.6)	축구/풋살 (7.3)	요가/필라테스 /태보 (7.2)	골프 (4.9)	당구 (4.7)	배드민턴 (4.3)
2019	걷기 (41.6)	등산 (17.3)	보디빌딩 (16.2)	수영 (9.0)	요가/필라테스 /태보 (7.8)	축구/풋살 (6.7)	자전거/사이클 /MTB (6.0)	골프 (5.0)	체조 (5.0)	당구 (4.6)
2020	걷기 (41.9)	등산 (17.6)	보디빌딩 (13.3)	축구/풋살 (7.0)	요가/필라테스 /태보 (6.7)	자전거/사이클 /MTB (6.6)	수영 (6.2)	체조 (6.1)	골프 (5.5)	당구/ 포켓볼 (5.5)
2021	걷기 (41.4)	등산 (13.5)	보디빌딩 (13.4)	요가/필라테스 /태보 (7.2)	골프 (6.8)	자전거/사이클 /MTB (6.2)	축구/풋살 (5.8)	체조 (4.9)	배드민턴 (4.3)	수영 (4.0)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종목은 걷기(1순위, 41.4%), 등산(2순위, 13.5%), 보디빌딩(3순위, 13.4%)으로 2017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상위 세 종목의 순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2021년에는 축구/풋살과 수영의 순위가 하락한 반면 요가/필라테스/태보, 골프, 배드민턴의 순위가 상승하였다. 한편 매년 4~5%대를 유지하던 당구/포켓볼은 2021년 조사에서는 상위 10개 종목 안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 3) 체육활동 참여 시간

한 번 체육활동을 할 때 지속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체육활동 참여 지속 시간’은 2020년 평균 86분에서 2021년 평균 88분으로 2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2-4〉와 같다.

표 2-4. 체육활동 참여 지속 시간(2017~2021)

(단위: %)

연도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2시간 미만	2시간~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평균(분)
2017	0.3	16.7	44.3	15.4	15.9	7.3	85
2018	0.1	18.7	39.0	16.2	16.6	9.4	89.8
2019	0.7	23.0	45.3	13.4	11.8	5.8	77.6

연도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2시간 미만	2시간~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평균(분)
2020	0.4	15.2	41.5	18.6	17.5	6.9	85.8
2021	0.4	15.4	40.5	17.0	18.0	8.7	88.3
남성	0.1	10.5	33.9	17.3	25.7	12.5	100.8
여성	0.6	20.9	47.7	16.7	9.5	4.6	74.6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국민 중 절반 이상(60.8%)은 1시간 30분 미만의 체육활동 참여 지속 시간을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시간대는 '1시간~1시간 30분 미만(40.5%)'으로 최근 5년 간 변동이 없었다. 2021년의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1시간~1시간 30분 미만'과 '1시간 30분~2시간 미만'의 체육활동 참여 인구 비율이 줄고, '2시간~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등 장시간 체육활동 참여 인구 비율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장시간 체육활동 비중의 증가 추세는 2019년도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육활동 평균 지속 시간이 '20년(86분)보다 소폭 상승한 88분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 지속시간에서는 남성이 평균 100.8분, 여성이 74.6분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높았으나 참여 지속 시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26.2분 높았다.

#### 4) 체육활동 참여 기간

〈표 2-5〉는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의 참여 기간을 보여준다. 2021년 체육활동 참여 기간은 평균 8.2개월로서, 2020년의 8.6개월보다 0.4개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5.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참여 기간(2017~2021)

(단위: %)

연도	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평균(개월)
2017	5.2	15.1	20.8	58.8	8.9
2018	5.0	14.9	22.0	58.1	8.8
2019	4.8	19.3	26.4	49.6	8.1
2020	4.3	16.6	24.8	54.4	8.6
2021	3.7	20.9	26.8	48.6	8.2

연도	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평균(개월)
남성	3.3	20.8	28.4	47.2	8.1
여성	4.0	20.5	27.3	48.2	8.1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2021년 체육활동 참여 기간은 '9개월 이상'이 48.6%로 다른 기간에 비해 높았으며 2020년에 비해 5.8%p 감소하였다. '3개월 미만'의 경우 3.7%로 전년(4.3%) 대비 소폭(0.6%p) 감소한 한편, '3개월~6개월 미만'은 20.9%로 전년(16.6%) 대비 4.3%p 증가하였다. '6개월~9개월 미만' 또한 26.8%로 전년 대비(24.8%) 소폭(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월 이상' 장기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중 평균 체육활동 참여 기간은 '20년(8.6개월) 대비 소폭 하락한 8.2개월로 나타났다.

### 5) 체육활동 참여 강도

다음의 <표 2-6>은 체육활동 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참여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로서, 2021년도에는 '저강도' 참여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중강도'와 '고강도' 참여 인구가 증가하였다.

표 2-6.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참여 강도(2017~2021)

(단위: %)

연도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2017	22.2	63.5	14.3
2018	18.9	63.8	17.3
2019	26.6	61.1	12.3
2020	29.2	57.5	13.3
2021	24.5	59.0	16.5
남성	18.6	59.1	22.4
여성	31.1	58.8	10.1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위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의 59.0%가 중강도의 체육활동을 즐기고 있었고, 저강도로 활동하는 비율은 24.5%, 고강도는 16.5%로 나타났다. 매년 중강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저강도 참여 인구의 비율이 줄고 중강도와 고강도 참여 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의 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강도의 경우 중강도 체육활동을 즐기는 인구 비중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고강도 참여 비율이 높았으며(남성 22.4%, 여성 10.1%), 여성이 남성보다 저강도 참여 비율이 높은 것(남성 18.6%, 여성 31.1%)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강도 높은 체육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6) 체육활동 참여 장소

다음의 <표 2-7>은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활동 시설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2021년 국민들이 주로 이용한 체육활동 장소는 민간체육시설로 나타났다.

표 2-7.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시설(2017~2021)

(단위: %)

연도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학교/직장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	자가시설
2017	31.6	30.8	17.8	16.1	3.7
2018	38.9	29.6	16.2	12.6	2.6
2019	26.4	28.9	14.1	17.9	4.0
2020	27.8	30.6	9.2	25.9	4.2
2021	27.9	30.3	10.7	26.1	5.0
남성	29.8	33.5	11.4	22.4	2.9
여성	25.8	26.7	10.0	30.2	7.4

※ 주: 기타 체육시설: 공공주택 단지 체육시설, 복지시설, 청소년 체육시설 등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위의 표에서처럼 체육활동 참여 장소 중 가장 많이 이용된 곳은 ‘민간체육시설(30.3%)’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공공체육시설(27.9%)’, ‘기타 체육시설(26.1%)’, ‘학교/직장체육시설(10.7%)’, ‘자가시설(5.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눈에 띄는 점은 2021년과 2020년에는 이전에 비해 학교/직장 체육시설 활용 비율이 낮은 반면, 기타 체육시설 이용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학교와 직장 체육시설 이용에 제약이 생긴 체육활동 참가자가 주택 단지 내 체육시설 등 대체 시설 활용을 모색한 결과로 보인다.

## 7) 체육활동 경비

〈표 2-8〉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1년 기준 체육활동 참여자들이 체육활동으로 지출한 경비는 월 평균 6만 3,104원으로서, 2020년에 비해 평균 4,589원 증가하였다.

표 2-8.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2017~2021)

(단위: %)

연도	없음	3만 원 미만	3~6만 원 미만	6~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평균(원)
2017	24.9	17.6	23.3	11.7	22.4	56,755
2018	20.5	17.3	27.0	13.9	21.2	60,992
2019	25.1	13.3	24.3	13.4	23.9	78,214
2020	28.8	16.2	21.8	10.7	22.4	58,515
2021	35.2	14.1	18.6	8.4	23.6	63,104
남성	27.3	13.9	22.3	9.2	27.2	72,093
여성	43.9	14.3	14.5	7.6	19.6	53,18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표 2-8〉에 따르면, 2021년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와 관련하여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10만 원 이상(23.6%)’, ‘3~6만 원 미만(18.6%)’, ‘3만 원 미만(14.1%)’, ‘6~10만 원 미만(8.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용 지출을 전혀 하지 않거나 ‘10만 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늘어난 반면, 체육활동 경비로 지출은 하되 ‘10만 원 미만’의 지출을 하는 응답자 비율은 감소하였다.

한편 성별에 따른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에서는 남성(72,093원)이 여성(53,183원)보다 월 평균 18,910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별 간 차이는 전년 대비 1,66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8) 체육활동 참여 영향 주체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를 알아본 결과, 2021년 ‘스스로’ 참여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2-9〉와 같다.

표 2-9. 체육활동 참여 영향 주체(2017~2021)

(단위: %)

연도	스스로	친구	가족/친지	대중매체	직장/지역 사회	체육동호회	지도자	학교	기타
2017	27.4	33.9	25.1	4.3	3.8	1.8	2.5	1.3	-
2018	30.8	32.9	22.5	4.4	3.4	2.7	2.3	0.8	-

연도	스스로	친구	가족/친지	대중매체	직장/지역 사회	체육동호회	지도자	학교	기타
2019	28.5	33.8	25.8	4.8	2.6	1.8	1.3	1.2	-
2020	30.4	30.8	28.1	4.7	2.5	2.3	0.9	0.4	-
2021	34.5	30.1	23.3	4.8	3.1	2.1	1.6	0.4	0.1
남성	33.9	32.6	19.7	4.2	4.5	3.2	1.3	0.5	0.1
여성	35.1	27.3	27.3	5.6	1.6	0.8	1.9	0.3	0.1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표 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1년 체육활동 참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주체로는 ‘스스로(34.5%)’, ‘친구(30.1%)’, ‘가족/친지(23.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다른 영향 주체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주체로는 상위 세 그룹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도부터 2020년에 걸쳐 체육활동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주체에 대한 응답으로는 ‘친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2021년도 조사에서는 체육활동 참여에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나 이전의 조사와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영향 주체에서는 남성은 ‘스스로(33.9%)’, ‘친구(32.6%)’, ‘가족/친지(19.7%)’의 순으로 나타난 한편, 여성의 경우 ‘스스로(35.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27.3%)’와 ‘가족/친지(27.3%)’는 동일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 9) 체육활동 동반자

〈표 2-10〉은 체육활동 동반 참여자의 비율이다. 2021년 혼자 체육활동을 하는 비율이 35.4%로 다른 동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2-10. 체육활동 동반 참여자(2017~2021)

(단위: %)

연도	유형	혼자	친구 (연인 포함)	가족 및 친인척	동호회 회원	직장동료	지역주민	기타
2017		38.0	34.5	9.8	4.5	5.0	5.1	3.1
2018		35.2	35.7	13.1	6.9	3.6	5.4	0.0
2019		39.1	32.0	15.8	6.1	3.4	3.5	0.1
2020		38.9	33.7	16.5	6.3	2.4	2.2	0.0
2021		35.4	33.2	18.8	6.1	3.3	3.2	0.0
	남성	31.6	36.1	16.4	9.3	4.9	1.9	0.0
	여성	39.6	30.0	21.5	2.6	1.5	4.7	0.0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표 2-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1년 기준 체육활동 동반 참여자로 ‘혼자(35.4%)’가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친구(연인 포함)(33.2%)’가 따랐다. 다음으로는 ‘가족 및 친인척(18.8%)’, ‘동호회 회원(6.1%)’ 순이었으며, ‘직장동료(3.3%)’, ‘지역주민(3.2%)’는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가족 및 친인척’과 체육활동을 함께 참여하는 비율이 2017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 10) 체육활동 참여 및 비참여 이유

〈표 2-11〉은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거나 비참여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참여 이유와 관련해서는 ‘건강유지 및 체력증진(56.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여가 선용(14.7%)’과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9.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5.5%)’, ‘대인관계 및 사교(4.1%)’, ‘개인의 즐거움(3.6%)’ 등이 순위를 차지하여 사회적 교류와 정신건강 유지가 체육활동 참여 이유로 보고되었다.

표 2-11. 체육활동 참여 및 비참여 이유(2017~2021)

(단위: %)

유형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남성	여성
참여 이유	건강유지 및 체력증진	44.7	42.9	42.6	44.6	56.3	55.4	57.3
	여가선용	20.1	18.2	21.8	25.8	14.7	16.0	13.3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	12.2	17.9	15.0	13.0	9.8	6.0	14.0
	스트레스 해소	5.3	6.2	5.9	4.8	5.5	6.7	4.2
	대인관계 및 사교	4.3	3.1	2.7	3.5	4.1	5.2	2.8
	개인의 즐거움	4.0	4.2	4.2	3.1	3.6	4.3	2.8
	자아실현 및 자기만족	5.5	4.3	5.3	2.6	3.1	3.1	3.1
	신체 수행 능력 향상	3.0	2.0	2.0	2.1	1.8	2.0	1.5
	시간 소비	0.4	0.5	0.1	0.2	0.9	0.9	0.8
	가족과의 유대 강화	0.4	0.5	0.5	0.3	0.3	0.4	0.2
기타	-	0.1	0.0	0.0	0.1	0.0	0.1	
참여 중단 이유	체육활동 가능시간 부족	54.2	53.3	55.7	57.7	56.8	67.0	47.8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	9.9	9.5	13.9	11.2	12.2	8.4	15.5
	건강상의 문제	8.9	8.4	8.2	5.5	8.0	6.7	9.2
	체육활동 지출비용 부담	3.3	4.1	3.7	4.7	4.4	2.9	5.8
	체육활동 정보 부족	3.3	1.2	2.2	3.1	3.9	1.7	5.7
	체육시설 접근성 낮음	3.6	4.8	4.8	5.9	3.5	2.3	4.6
	체육에 소질이 없음	2.7	3.1	2.7	4.4	3.0	1.4	4.3

유형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남성	여성
	건강·체력에 자신 있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2.0	1.0	1.3	1.5	2.6	3.4	1.9		
	동반 참여자 부재	3.6	3.0	3.5	2.0	2.1	2.9	1.4		
	소득수준 낮음	3.0	7.1	2.0	3.3	2.1	1.9	2.2		
	체육프로그램 부족	0.9	1.0	2.0	0.6	1.1	0.9	1.2		
	실외운동을 선호하지 않음	1.3	1.2	-	-	-	-	-		
	땀 흘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음	2.5	1.8	-	-	-	-	-		
	체육지도자 부재	0.7	0.5	-	-	-	-	-		
	기타	-	-	0.1	0.1	0.4	0.5	0.2		

유형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남성	여성
비 참 여 이 유	체육활동 가능시간 부족	47.4	53.0	50.2	50.0	45.9	46.4	45.5		
	건강상의 문제	15.3	10.3	12.8	10.2	15.9	13.5	17.5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	9.0	9.2	15.5	11.7	8.4	8.3	8.5		
	체육시설 접근성 낮음	6.2	3.1	4.9	4.5	5.6	4.1	6.7		
	체육활동 지출비용 부담	3.5	3.4	1.5	4.7	5.1	5.4	4.9		
	건강·체력에 자신 있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2.3	3.9	0.7	1.6	4.3	6.3	2.9		
	소득수준 낮음	3.3	5.0	3.5	3.1	3.7	5.1	2.7		
	체육활동 정보 부족	2.7	1.9	3.9	4.2	3.4	1.5	4.8		
	체육에 소질이 없음	2.8	2.8	3.0	5.3	2.7	2.8	2.7		
	체육프로그램 부족	0.7	0.2	1.8	2.4	2.3	2.7	2.0		
	동반 참여자 부재	1.9	2.2	2.0	1.6	2.1	3.1	1.3		
	실외운동을 선호하지 않음	1.8	1.7	-	-	-	-	-		
	땀 흘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음	2.8	3.2	-	-	-	-	-		
	체육지도자 부재	0.3	0.1	-	-	-	-	-		
	기타	-	-	0.3	0.7	0.5	0.8	0.4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참여 중단 이유 및 비참여 이유 부문에서는 공통적으로 ‘체육활동 가능시간 부족’이 가장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다(참여 중단 56.8%, 비참여 45.9%). 또한 참여 중단 이유로는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12.2%)’과 ‘건강상의 문제(8.0%)’가 뒤를 이었으며, 비참여 이유는 반대로 ‘건강상의 문제(15.9%)’와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8.4%)’이 주요 이유로 조사되었다. 그 외의 참여 중단 이유로 ‘체육활동 지출 비용 부담(4.4%)’, ‘체육활동 정보 부족(3.9%)’, ‘체육시설 접근성 낮음(3.5%)’, ‘체육에 소질이 없음(3.0%)’ 등이 뒤를 이었으며, 비참여 이유로는 ‘체육시설 접근성 낮음(5.6%)’, ‘체육활동 지출비용 부담(5.1%)’, ‘건강과 체력에 자신 있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4.3%)’ 등이 뒤를 이었다.

### 11) 참여희망 운동종목

〈표 2-12〉는 체육활동 참여자 및 비참여자 중 향후 시간 및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운동종목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운동종목으로는 ‘수영(13.3%)’이 1순위로 나타났고,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운동종목으로는 ‘골프(21.5%)’가 1순위를 차지하였다. 수영과 골프는 각각 시간적, 금전적 여유 시 참여 희망 운동종목에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1순위를 차지하는 종목이다. 또한, 향후 참여 희망 종목 2순위는 시간적 여유 시 및 금전적 여유 시 모두 ‘요가 등’으로 나타났다.

표 2-12.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자 및 비참여자 참여희망 운동종목(2017~2021)

(단위: %)

범주	연도	시간적 여유 시					금전적 여유 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참여자	2017	수영 (13.4)	요가 등 (6.9)	보디빌딩 (6.6)	자전거 등 (4.9)	골프 (4.7)	골프 (13.4)	수영 (10.2)	요가 등 (6.4)	승마 (5.2)	보디빌딩 (4.0)
	2018	수영 (14.8)	보디빌딩 (7.3)	요가 등 (7.1)	자전거 등 (5.8)	등산 (5.8)	골프 (15.1)	수영 (10.4)	요가 등 (7.5)	승마 (5.2)	댄스스포츠 (4.5)
	2019	수영 (15.2)	요가 등 (9.4)	등산 (7.0)	보디빌딩 (5.0)	낚시 (4.5)	골프 (20.2)	요가 등 (9.6)	수영 (9.2)	승마 (5.7)	스킨스쿠버 (4.0)
	2020	수영 (13.5)	요가 등 (7.9)	등산 (6.8)	보디빌딩 (6.6)	낚시 (5.1)	골프 (17.5)	요가 등 (10.1)	수영 (7.6)	승마 (5.8)	댄스스포츠 (4.6)
	2021	수영 (13.3)	등산 (9.4)	보디빌딩 (7.2)	요가 등 (6.3)	걷기 (5.2)	골프 (21.5)	요가 등 (9.7)	수영 (7.7)	승마 (4.3)	스킨스쿠버 (4.1)

범주	연도	시간적 여유 시					금전적 여유 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비참여자	2017	요가 등 (13.4)	수영 (12.7)	보디빌딩 (9.0)	걷기 (8.5)	등산 (7.1)	수영 (12.8)	골프 (11.2)	요가 등 (10.2)	보디빌딩 (5.5)	댄스스포츠 (3.9)
	2018	수영 (15.8)	요가 등 (11.6)	등산 (7.8)	보디빌딩 (7.6)	걷기 (7.2)	수영 (13.5)	골프 (12.5)	요가 등 (10.9)	댄스스포츠 (4.8)	스노보드 등 (4.4)
	2019	등산 (13.4)	수영 (13.4)	요가 등 (13.4)	걷기 (9.4)	보디빌딩 (5.7)	골프 (15.6)	수영 (12.0)	요가 등 (11.5)	댄스스포츠 (5.3)	스노보드 등 (5.3)
	2020	수영 (14.1)	걷기 (11.9)	요가 등 (9.6)	보디빌딩 (7.9)	등산 (7.1)	골프 (14.7)	수영 (11.9)	요가 등 (11.9)	보디빌딩 (4.6)	승마 (4.4)
	2021	걷기 (17.0)	수영 (11.3)	요가 등 (10.6)	등산 (8.6)	보디빌딩 (7.3)	골프 (15.4)	요가 등 (11.6)	수영 (11.3)	낚시 (6.6)	등산 (5.3)

※ 주: [요가 등]: 요가/필라테스/태보 [자전거 등]: 자전거/사이클/산악자전거 [스노보드 등]: 스노보드/스키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체육활동 비참여자들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참가하고 싶은 활동 1순위는 '걷기(17.0%)'이었고, 2순위는 '수영(11.3%)'이었다. 2020년 2순위였던 '걷기'에 대한 응답이 6.1%p 증가하면서 '걷기'와 '수영'에 대한 순위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희망하는 체육활동에 대한 응답으로는 1순위가 '골프(15.4%)', 2순위가 '요가 등(11.6%)', 그리고 3순위가 수영(11.3%)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4순위와 5순위를 차지했던 보디빌딩과 승마 대신 '낚시(6.6%)'와 '등산(5.3%)'이 각각 4순위와 5순위를 차지했다.

## 12) 생활체육 간접 참여 현황

〈표 2-13〉은 생활체육 간접 참여 현황으로서의 스포츠 관람 인원을 조사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프로스포츠로서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종목을 조사하였다.

표 2-13. 프로스포츠 관람객 현황(2017~2021)

(단위: 건, 명)

종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야구	경기 수		720	720	720	720	721
	경기당 평균관중		11,668	11,214	10,119	456	1,686
	총 관중		8,400,688	8,073,742	7,286,008	328,317	1,216,019
축구	경기 수		412	333	401	299	412
	경기당 평균관중		4,644	3,439	5,784	382	1,392
	총 관중		1,913,164	1,145,346	2,319,478	114,357	573,773
농구 (남)	경기 수		292	292	291	213	290
	경기당 평균관중		3,136	2,887	2,984	3,022	380
	총 관중		915,716	842,973	868,567	643,651	110,235
농구 (여)	경기 수		105	105	105	82	90
	경기당 평균관중		1,072	1,037	1,040	1,038	-
	총 관중		112,571	108,885	109,222	85,133	-
배구 (남, 여)	경기 수		230	229	228	192	230
	경기당 평균관중		2,242	2,240	2,525	2,047	116
	총 관중		515,735	512,851	575,746	393,059	26,709

※ 주: 데이터 최신 업데이트 2020.09.15. 기준

※ 주: 경기 수 = 리그전체 (정규리그 + 포스트시즌, 올스타전 등)

※ 주: 코로나19로 인해 농구(남), 배구(남, 여)는 2019~2020 시즌, 농구(여)는 2020~2021시즌 무관중 경기로 진행됨.

※ 출처: 한국프로스포츠협회(2022). 프로스포츠 정보광장 프로스포츠 통계 <http://data.prosports.or.kr>.

표 <2-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1년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평균 관람객은 프로야구가 1,68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프로축구(1,392명)과 남자프로농구(380명), 프로배구(116명)가 순서대로 뒤를 이었으며, 여자프로농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시즌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프로스포츠는 무관중 경기, 제한적 관중 입장 등으로 관람 여건이 크게 위축되었다.

## 2. 생활체육 정책의 변화 및 현황

생활체육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삶을 지향한다. 이 때문에 정권에 따라 관련 정책의 결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그 기초는 생활체육활동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한 기초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정권 변화에 따라 변화한 생활체육 관련 정책의 흐름을 살펴본다. 요약된 내용은 다음의 <표 2-14>와 같다.

표 2-14. 정권 변화에 따른 생활체육 관련 정책 개요

정부	사업명	담당 부서	정책 목표 (민간단체체육기구)	주요사업(추진내용)
제3공화국 (1963~1972)	사회체육진흥 5개년계획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	'체력은 국력' (대한체육회 산하 사회체육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체육진흥법 제정(1962년)</li> <li>• 사회체육진흥 5개년계획</li> <li>• 지역사회체육과 직장체육 중심 전개</li> </ul>
제5공화국 (1981~1988)	새마을운동 (새마을체육)	체육부	'체육을 통한 건전한 시민육성' 체육입국 (한국사회체육진흥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부 신설(1982년 3월)</li> <li>• '86, '88 양 대회 준비에 우선</li> <li>• 엘리트체육 집중육성</li> <li>• 1985년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설립</li> </ul>
제6공화국 (1988~1993)	국민생활체육 진흥종합계획 (호돌이계획)	체육 청소년부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체육 → 생활체육</li> <li>•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신설(1991년 1월)</li> <li>•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li> <li>• 직장체육프로그램 개발</li> <li>•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제도 개선</li> </ul>
문민정부 (1993~1998)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문화 체육부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의식 고취</li> <li>• 체육활동 공간 확충 및 생활체육지도자 양성</li> <li>• 국민체육활동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li> <li>• 국민 건전여가 기회 확대</li> </ul>
국민의 정부 (1999~2003)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문화 관광부	생활체육 참여환경 구축 및 지역공동체 중심의 체육활동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주민활동 장으로서 체육 시설 확충</li> <li>• 미 참여 인구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 확대</li> <li>• 생활체육 지도인력 육성 및 활용</li> <li>• 국민체력관리 과학적 지원</li> <li>• 민간 주도적 생활체육 확산</li> </ul>

정부	사업명	담당 부서	정책 목표 (민간단체체육기구)	주요사업(추진내용)
참여정부 (2003~2008)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문화 관광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친화형 생활체육 공간 확충</li> <li>•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li> <li>• 과학적 국민체력관리시스템 구축</li> <li>• 레저스포츠 발전 방안 마련</li> <li>• 생활체육 지도인력 양성 및 활용</li> <li>• 생활체육 인식 제고 및 추진체제 강화</li> </ul>
이명박 정부 (2008~2013)	문화비전 2008~2012	문화체육 관광부	‘15분 프로젝트’ (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생활체육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li> <li>• 체육인력 활용 제고 및 국민체력 향상</li> <li>• 맞춤형 체육복지 구현</li> <li>• 전통무예 지정 및 육성 보급 강화</li> <li>•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활용 제고</li> <li>• 레저스포츠시설, 공간 확충</li> </ul>
박근혜 정부 (2013~2017)	스포츠비전 2018	문화체육 관광부	손에 닿는 스포츠 ‘스포츠로 사회를 바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을 기준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형스포츠클럽(9개소 → 229개소)</li> <li>- 수혜인원(3,600명 → 91,600명)</li> <li>- 국민체력인증제(49,000명 → 1,004,000명)</li> <li>- 일반/노인 생활체육지도자(2,230명 → 2,730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230명 → 600명)</li> </ul> </li> <li>• 작은체육관(2017년까지 900여 개소) 조성</li> <li>•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 개·보수(400개소)</li> <li>• 생활체육콜센터(316,800콜 → 4,222,400콜)</li> <li>• 체육시설지도 구축(4,000여 개 → 56,000개)</li> <li>• 저소득층 대상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확대 (274개소 → 680개소)</li> </ul>
	국민생활체육 진흥종합계획		스마일 100 ‘스포츠를 마음껏 일상적으로 100세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 증진 ‘13년 43.3%에서 ‘17년 60%</li> <li>- 유소년기(유아7만 및 스포츠 활동 우수 학교인증제 도입 등)</li> <li>- 청소년기(학교스포츠클럽 정착 및 지역스포츠클럽과 연계시스템 구축 등)</li> <li>- 성인기(국민체력100 정착 및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등)</li> <li>- 은퇴기 이후(찾아가는 체력관리 및 생활체육교실 확대 등)</li> </ul>
문재인 정부 (2017~2022)	국민생활체육 진흥기본계획	문화체육 관광부	일상 속의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지원 강화</li> <li>• 생활 속 스포츠의 일상화</li> </ul>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 조성</li> <li>• 스포츠가치 확산으로 건강한 공동체 형성</li> </ul>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li> <li>• 스포츠클럽 간 연계 및 리그 확산</li> </ul>
			기반이 되는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적 체육지도자 양성과 지원</li> <li>• 수요자 중심 체육시설 및 정보 제공</li> </ul>
	2030 스포츠비전	신나는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 즐기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li> <li>• 언제나 편하게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li> <li>• 우수 체육지도자에게 배우는 스포츠 강습</li> </ul>	
			함께하는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동네 스포츠클럽</li> <li>• 소외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환경</li> </ul>

※ 출처: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기본계획(2013), 국민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2018), 2030스포츠비전(2018)

제3공화국(1963~1972) 생활체육 정책에서의 특징은 ‘체력은 국력’이라는 정책과제를 실행하고자 대한체육회 산하 ‘사회체육위원회’에서 수립한 『사회체육진흥5개년계획』이다.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부는 지역사회의 체육활동과 직장에서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제3공화국 수립 바로 이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1962년)」도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5공화국(1981~1988)은 엘리트 체육이 집중적으로 육성되던 시기였다. 1982년 3월, 기존의 ‘과’ 단위였던 체육과가 ‘부’ 단위로 승격되면서 중앙정부에 체육담당 부처로서 ‘체육부’가 신설된다. 1985년에는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서 새마을운동과 결부된 ‘새마을 체육사업’을 추진, ‘체육을 통한 건전한 시민육성’을 통한 체육입국을 강조하였지만,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준비에 집중하느라 사회체육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제6공화국(1988~1993)에서는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개칭되었고, 두 개의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흥미로운 점은 1990년에 지금껏 사용되어 오던 ‘사회체육’이란 용어가 ‘생활체육’으로 변경되면서 1991년 1월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이후, 생활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직장체육 프로그램 개발, 생활체육 지도자 양성제도 개선과 같은 사업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문민정부(1993~1998)에 들어와서는 ‘문화체육부’로 개칭되면서 체육과 문화가 함께 다뤄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가장 주목할 점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수립이다. 이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생활체육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여러 제도가 도입된다. 체육활동 공간 확충,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국민체육활동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국민 건전여가 기회 확대가 이 계획을 기점으로 정부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국민의 정부(1998~2003)에서는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개칭되며 ‘부’ 단위의 체육 행정의 ‘국’ 단위로 축소되었다. 정권 출범과 함께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이 수립되었고, 생활체육 참여 환경을 좀 더 확장하려는 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공동체 주민활동의 장으로써 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 미참여 인구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 생활체육 지도인력의 육성 및 활용, 국민체력관리의 과학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생활체육 확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참여정부(2003~2008)에서는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이 수립된다. 대표적

으로 ‘스포츠클럽 육성’이라는 정책 사업이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주민 친화형 생활체육 공간 확충,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과학적 국민체력관리 시스템 구축, 레저스포츠 발전 방안 마련, 생활체육 지도인력 양성 및 활용, 생활체육 인식 제고 및 추진체제 강화 등의 여러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한국형 스포츠클럽 육성 계획’이 수립되면서 지금의 공공스포츠클럽 정책의 첫 발이 떴어졌다.

이명박 정부(2008~2013)에 들어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앙정부의 체육담당부처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지금까지의 ‘기본계획’ 중심에서 ‘비전’ 형태로 체육정책 수립 방식이 변경되었다. 바로 『문화비전 2008~2012』가 구상되었으며, 여기에 연차별 스포츠 정책 비전이 포함되었다(2008년: 스포츠 선진 국가 실현; 2009년: 스포츠로 건강한 사회; 2010년: 스포츠로 스마일 대한민국; 2011~2012년: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이 당시 생활체육 정책 주요 목표는 ‘15분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생활체육활동 접근성 확보였다. 이를 위해 지역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 체육인력 활용 제고 및 국민체력 향상, 맞춤형 체육복지 구현 같은 방향이 설정되었고, 그 동안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불리던 조직의 명칭이 ‘국민생활체육회’로 변경되었다.

박근혜 정부(2013~2017)에서는 생활체육과 관련한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 먼저 2015년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에는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된 ‘통합체육회’가 탄생하기도 했다(정식 명칭은 ‘대한체육회’). 더불어,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을 2013년 43%에서 2017년 60%로 증진시킨다는 목표의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이 만들어졌고, 『스포츠비전2018』을 중심으로 정부의 주요 체육정책도 새롭게 수립되었다. ‘100세 시대,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라는 비전이 포함된 이 정책은 ‘손에 닿는 스포츠’를 추진전략으로, 국민 모두가 일상적,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사업이 포함되었다.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종합형스포츠클럽’ 조성이었다. 현재의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위한 ‘국민체력인증제(현재의 국민체력100센터)’가 도입되었고, 경로당이나 폐교 및 폐 파출소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작은 체육관 조성’도 이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정책들이었다.

문재인 정부(2017~2022)에 들어와서도 생활체육 정책은 큰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전과 유사하게 『국민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과 『2030스포츠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정책을 수립하였다. 『국민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은 ‘스포츠가 있는 일상, 모두가 누리는 행복’이란 비전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요 정책방향이 설정되었다. 첫째,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로서, 누구나 공평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국가가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향이다. 둘째, ‘스포츠 가치 확산’으로서, 스포츠를 스포츠답게 즐길 수 있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셋째, ‘스포츠클럽 정착’으로서, 유아에서 노년기까지 체계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도록 스포츠클럽 중심의 생활체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유사하게 『2030스포츠비전』 역시 생활체육 중심의 정책이 다수 포함되었다.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란 비전을 중심으로 운동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고자 스포츠클럽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사업이 고안되었다. 평생 동안 즐기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한 스포츠 활동 습관화에서부터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스포츠시설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우수 체육지도자에게 스포츠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 시스템 선진화가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우리 동네 스포츠클럽’을 핵심과제로 설정, 스포츠클럽 생태계를 다양화하여 이곳을 기반으로 전문선수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도입되었다.

### 3. 생활체육 기반 현황

#### 1) 생활체육 시설의 개괄적 현황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시설’이다. 시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체육백서 8장의 ‘체육시설’에서 다루지만, 정책적으로 생활체육 시설은 크게 ‘공공 체육시설’과 다양한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로 구분되어 다뤄져 왔다. 공공체육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건설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이 포함된다.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시설을 마련, 시도지사에게 등록했거나(등록체육시설), 규정에 맞춘 시설을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신고체육시설)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러한 생활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자 노력해왔고, 그 증가 추세는 <표 2-15>와 같다.

표 2-15. 정권별 생활체육시설 증가 추세(1983~2021)

(단위: 개소)

정부 구분	기준	공공체육시설현황	체육(등록, 신고) 시설업 현황	증가추이
제5공화국	1983.12.	451	1,056	-
	1987.12.	689	4,055	
제6공화국	1990.12.	986	29,034	공공체육 1,409 증가
	1992.12.	2,098	35,294	시설업 31,239 증가
문민 정부	1994.12.	2,661	41,740	공공체육 1,532 증가
	1997.12.	3,630	41,740	시설업 6,446 증가
국민의 정부	2001.12.	6,150	41,984	공공체육 3,093 증가
	2002.12.	6,723	42,320	시설업 580 증가
참여 정부	2003.12.	6,901	43,567	공공체육 4,223 증가 시설업 3,480 증가
	2005.12.	8,717	42,703	
	2006.12.	9,949	43,168	
	2007.12.	10,946	45,800	
이명박 정부	2008.12.	12,342	38,664	공공체육 6,211 증가 시설업 10,622 증가
	2009.12.	13,968	53,851	
	2010.12.	15,179	55,648	
	2011.12.	16,127	56,807	
	2012.12.	17,157	56,422	
박근혜 정부	2013.12.	19,398	56,124	공공체육 7,146 증가 시설업 1,899 증가
	2014.12.	21,317	56,629	
	2015.12.	22,662	55,857	
	2016.12.	24,303	58,321	
문재인 정부	2017.12.	26,927	58,884	공공체육 2,624 증가 시설업 563 증가
	2018.12.	28,578	56,854	공공체육 1,651 증가 시설업 2,030 감소
	2019.12.	30,185	52,960	공공체육 1,607 증가 시설업 3,894 감소
	2020.12.	31,554	52,274	공공체육 1,369 증가 시설업 686 감소

※ 주: 공공체육시설현황 최신집계 기준.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표 2-1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체육시설은 정부의 변화를 거치면서 꾸준히 증가했다. 처음 제5공화국 시절(1983년) 공공체육시설 451개소, 체육(등록/신고)시설업 1,056개소 였다가 4년 후 1987년에는 각각 689개소와 4,055개소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제6공화국(1988~1993년)에서 공공체육시설은 2,098개소, 체육시설업은 35,294개소(1992년 기준)로 집계되었다. 이전 정부에 비해 공공체육시설 1,409개소, 체육시설업 31,239개소가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세는 문민정부(1993~1998년)까지 이어져, 1997년 기준 공공체육시설은 3,630개소, 체육시설업은 41,740개소가 되었고(제6공화국에 비해 공공체육시설 1,532개소, 체육시설업 6,446개소 증가), 국민의 정부(1998~2003년) 때도 2002년 기준으로 공공체육시설 6,723개소, 체육시설업 42,320개소로 증가, 이전 정부에 비해 각각 3,093개소와 580개소 더 많아졌다.

체육시설은 참여정부(2003~2008년) 들어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 기준, 공공체육시설은 10,946개소, 체육시설업은 45,800개소로 국민의 정부에 비해 각각 4,223개소와 3,480개소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때의 공공체육시설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반해, 체육시설업과 관련해서는 소폭 감소한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 때의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2012년 기준 공공체육시설 17,157개소, 체육시설업은 56,442개소로 참여정부에 비해 각각 6,211개소, 10,622개소 증가하였는데, 이때도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공공체육시설과 달리 체육시설업의 경우 그 추세가 일정치 않았다. 그럼에도 2008년 38,664개였던 체육시설업이 2012년에는 현 정부 수준인 56,422개로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한 증가 추세는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들어서도 이어졌다. 2016년 기준, 공공체육시설은 24,303개소, 체육시설업은 58,321개소로 집계, 이명박 정부에 비해 각각 7,146개소, 1,899개소 증가하였다.

문재인 정부(2017~2022년)의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공공체육시설 26,927개소, 체육시설업은 58,884개소로 집계되었는데, 2016년에 비해 공공체육시설이 2,624개소, 체육시설업은 563개소 증가한 수치였다. 2018년의 경우에는 공공체육시설이 28,578개, 체육시설업이 56,854개로, 이전 해에 비해 공공체육시설은 1,651개 증가하였고 체육시설업은 2,030개 감소하였다. 2019년 공공체육시설은 전년에 비해 1,607개 증가, 체육시설업은 3,894개 감소하였다. 2020년 공공체육시설은 전년보다 1,369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육시설업은 686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2) 생활체육분야 지도자 현황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시설과 함께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요한 기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전문적인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 제도는 1986년 2급을 시작으로, 1989년부터 3급, 1995년부터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5년에 들어와 지도 분야와 대상을 고려, 자격제도가 개편되어 총 여섯 개 분야(전문스포츠지도사 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 2급,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 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자격이 세분화되었다. 이와 관련한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은 <표 2-16>와 같다.

표 2-16. 생활체육분야 지도자 양성 현황(1986~2021)

(단위: 명)

정부별	연도	1급	2급	3급	계	증가 추이
제5공화국	1986	-	177	-	177	805명 양성
	1987	-	628	-	628	
제6공화국	1988	-	-	-	-	13,446명 양성
	1989	-	435	2,629	3,064	
	1990	-	-	3,808	3,808	
	1991	-	126	3,497	3,623	
문민정부	1992	-	166	2,785	2,951	18,301명 양성
	1993	-	108	3,153	3,261	
	1994	-	217	3,131	3,348	
	1995	17	193	3,261	3,471	
	1996	21	137	3,777	3,935	
국민의 정부	1997	23	158	4,105	4,286	32,956명 양성
	1998	52	401	5,716	6,169	
	1999	48	370	6,542	6,960	
	2000	36	404	5,537	5,977	
	2001	40	481	6,064	6,585	
참여정부	2002	48	163	7,054	7,265	48,735명 양성
	2003	47	440	6,934	7,421	
	2004	50	218	8,599	8,867	
	2005	65	588	8,549	9,202	
	2006	61	715	11,724	12,500	
	2007	73	408	10,264	10,745	

정부별	연도	1급	2급	3급	계	증가 추이	
이명박 정부	2008	57	372	10,683	11,112	53,202명 양성	
	2009	61	357	8,982	9,400		
	2010	70	319	11,211	11,600		
	2011	57	287	10,430	10,774		
	2012	51	254	10,011	10,316		
박근혜 정부	2013	69	343	12,695	13,107	51,506명 양성	
	2014	97	498	21,365	21,960		
	2015	건강	1급	2급	계		6,716
		234	185	6,297			
	2016	284	276	9,163	9,723		
문재인 정부	2017	179	257	6,915	7,351	45,549명 양성	
	2018	94	243	8,899	9,236		
	2019	235	258	10,171	10,664		
	2020	-	34	981	1,015		
	2021	368	394	16,521	17,283		
계		2,437	10,610	251,453	264,500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21).

1986년 제5공화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배출된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805명이었다. 이는 제6공화국에 들어와 13,446명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후 생활체육지도자는 문민정부에서 18,301명, 국민의 정부에서 32,956명, 참여정부에서 48,735명, 이명박 정부에서 총 53,202명이 양성되었다. ‘생활체육지도자’에서 ‘생활스포츠지도사’로의 명칭 변경과 자격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던 박근혜 정부에서는 총 51,506명의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양성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까지 총 45,549명의 생활스포츠지도사를 양성하였는데, 이로써 2021년 12월 31일 기준 생활체육지도사는 총 264,500명이 양성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제3절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정책

제3절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정책을 폭넓게 다룬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분류된다. 첫째, 생활체육 기반 확충이다. 이는 특히 생활체육과 관련한 시설 확충과 연결된다. 둘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이다.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이 그 핵심이다.

### 1.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 1) 체육시설 지원 사업

‘체육시설 지원 사업’은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행되었다. 연도별 체육시설 지원 실적은 <표 2-17>과 같으며, 2021년도에는 총 3,374억 원이 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사용되었다.

표 2-17. 체육시설 지원 실적 종합(1989~2021)

(단위: 억 원)

구분	계	1989~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민체육센터	14,260	4,866	518	537	484	468	291	322	1,865	2,454	2,455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2,313	497	93	113	253	147	133	220	301	376	180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4,690	-	-	-	435	464	1,070	647	687	751	636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1,101	-	-	-	90	225	265	147	136	135	103
운동장생활 체육시설	5,462	4,782	680	-	-	-	-	-	-	-	-
농어촌복합시설	270	240	30	-	-	-	-	-	-	-	-
레저스포츠시설	210	160	50	-	-	-	-	-	-	-	-
축구센터/공원	650	650	-	-	-	-	-	-	-	-	-
마을단위 체육시설	496	496	-	-	-	-	-	-	-	-	-

구분	계	1989~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농구장/족구장	28	28	-	-	-	-	-	-	-	-	-
합계	29,780	11,719	1,371	650	1,262	1,304	1,759	1,336	2,989	3,716	3,374

※ 주(1):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정부 생활SOC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대체('21년)  
 ※ 주(2): 기초생활체육저변 확산: 민간 및 공단 직접수행 사업 제외  
 ※ 주(3):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농어촌복합시설, 레저스포츠시설: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14년)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 가.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지원 사업은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 및 체력측정실 등 국민들이 선호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하고자 시행된다. 2021년 지원 금액은 <표 2-18>과 같다.

표 2-18. 국민체육센터 지원 실적(1997~2021) (단위: 억 원, 개소)

구분	계	1997~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액	14,260	4,866	518	537	484	468	291	322	1,865	2,454	2,455
개소 수	614	178	6	19	11	6	9	27	148	139	71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이 사업은 199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018년부터는 '생활권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과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로 구분되어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9년부터 생활권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추진되었다. 2021년 국민체육센터 지원 금액은 총 2,455억 원으로서 71개소 신축에 사용되었고, 지금까지의 총 사업 투자 금액은 14,260억 원이었다.

### 나.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체육관을 건립,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지원 사업 내용은 <표 2-19>와 같다.

표 2-19.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지원 실적(2011년 이전~2021) (단위: 억 원, 개소)

구분	계	2009~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액	2,313	497	93	113	253	147	133	220	301	376	180
개소 수	284	98	19	21	31	24	23	28	26	14	-

※ 주: 2021년부터 정부 생활SOC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대체되어 추진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2009년도부터 시행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은 지자체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되어 왔다. 현재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학교내 일반형, 학교내 수영장형, 산업단지 내 복합형으로 구분되며, 학교 내 일반형의 경우 30% 정률, 학교 내 수영장형은 30억원, 산업단지 내 복합형은 50억 원 이내 50% 정률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관을 보유하지 않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 및 지원해온 것이다. 2021년부터는 정부 생활SOC학교복합화 사업으로 대체되어 추진됨에 따라 180억 원이 지원되면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284개소를 대상으로 2,313억 원이 지원되었다.

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내 노후 시설 및 이용자 안전 관련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이루어지는데, 상세한 지원 내역은 <표 2-20>과 같다.

표 2-20.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실적(2015~2021) (단위: 억 원, 개소)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액	4,690	435	464	1,070	647	687	751	636
개소 수	1,942	248	144	606	218	262	218	246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2015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되어 낡았거나 국민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해 긴급하게 개·보수가 필요한 전국 공공체육시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이다. 2021년에는 246개의 공공체육시설에 636억 원이 지원되면서 지금까지 1,942개를 대상으로 총 4,690억 원이 사용되어 체육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졌다.

라.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사업은 유·청소년기에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스포츠의 즐거움 및 소질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를 통한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자 신규 체육 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2021년 지원 실적은 <표 2-21>과 같다.

표 2-21.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 실적(2014~2021) (단위: 억 원)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액	1,101	-	90	225	265	147	136	135	103
개소 수	57	-	6	6	9	9	10	9	8

※ 주: 민간 및 공단 직접수행 사업 제외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2014년에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을 대상으로 실내빙상장, 복싱센터, 다목적체육관,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문화체육컴플렉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등의 시설을 지원해 왔다. 2021년에는 8개소에 103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57개소를 대상으로 1,101억 원이 지원되었다.

## 2) KSPO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사업

KSPO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사업은 스포츠가 지니는 다양한 가치(조화, 건강, 공정, 도전, 즐거움 등)를 교육으로 전파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직 구성원 및 체육관련 단체들의 핵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설립을 위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진주시에 부지 48,742㎡, 건축연면적 11,200㎡(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402억 원(국민체육진흥기금)이 투입된다. 이 스포츠가치센터에 투입 될 총 사업비 및 연도별 계획은 <표 2-22>와 같다.

표 2-22. KSPO스포츠가치센터 총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2017 이전~2022) (단위: 백만 원)

구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공사비	-	-	-	1,596	3,444	28,999	34,039	
건설보상비	-	3,398	-	26	-	-	3,424	
시설 부대 경비	설계비	259	425	793	79	-	273	1,829
	감리비	-	-	-	360	521	966	1,847
	시설부대비	-	6	38	32	40	8	124
계	259	3,829	831	2,093	4,005	30,246	41,263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KSPO스포츠가치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체험 시설동, 편의 시설동, 야외시설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주요 시설에 따른 내용은 <표 2-23>에 제시되었다.

표 2-23. KSPO스포츠가치센터 주요 시설

구분	주요시설	시설내용
체험 시설동	지하1층	관리시설 •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지상1층	체험시설 • 다목적 실내코트(농구·배구·배드민턴), 미니 스포츠 체험존 • 실내 클라이밍존, 체조연습존, 가상스포츠체험관 • 스포츠전시관, 국민체력인증센터(체력측정실, 운동처방실) • 탈의실 및 샤워실, 물품보관소, 의무실, 휴게실, 준비실, 수유실

구분		주요시설	시설내용
	지상2층	교육시설	• 챌린지 시설, 대강의실(307석), 체육강습실(1·2), 운영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편의 시설등	지상1층	편의시설	• 식당, 주방, 세탁실, 매점, 운영관리실
	지상2~3층	숙박시설	• 2층: 장애인실(1개), 2인실(5개), 4~6인실(25개) • 3층: 장애인실(1개), 2인실(5개), 4~6인실(25개) * 숙박 수용인원 : 최소 222명/최대 322명
야외시설		체육시설	• 다목적운동장(축구·풋살·육상트랙 3레인) • 다목적 체육마당(1·2), 국궁체험장, 미니골프장, 피크닉장 • 주차장(100대), 자전거보관소(20대), 휴게쉼터 등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KSPPO스포츠가치센터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2016년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은 후 같은 해에 건립 사업 총사업비가 확정 통보되었다. 그 다음해 가치센터 건립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 2018년에는 건립 사업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된 후 매입 계획 및 매매계약이 체결되고(공단과 진주시), 가치센터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

### 3) 공공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회원에게 다양한 종목 중심의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비영리사단법인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단체이다. 종합형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하는 ‘공공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공공스포츠클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스포츠 시스템의 선진화와 평생체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둘째, 학교체육-생활체육-엘리트체육 연계를 통해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셋째, 선진화된 스포츠클럽 기반을 구축한다.

공공스포츠클럽의 유형은 크게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학교연계형으로 구분된다. 대도시형은 인구 20만 이상의 시·군·구 지역에서 700명 이상의 회원을 목표로 5종목 이상 운영할 수 있는 대규모클럽이며, 최대 5년간 9억 원을 지원받는다. 중소도시형은 인구 20만 명 미만 시·군·구 지역에서 500명 이상의 회원을 목표로 3종목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중소클럽으로, 5년 간 최대 6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학교연계형은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회원의 50% 이상이 학생으로 구성되고 회원수 250명을 목표로 1종목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클럽을 의미한다.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거나 자체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공공스포츠클럽은 다세대·다수준·다연령을 원칙으로 한다. 즉, 생애주기 프로그램, 뉴스포츠 종목, 기능 수준별 프로그램,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남녀노소, 소외계층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제공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을 유인할 수 있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 및 프로그램을 권장한다.

종합형스포츠클럽 조직 및 육성 현황은 <표 2-24>와 같다. 지난 2005년부터 ‘한국형 스포츠 클럽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다양한 명칭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고, 2013년 8개소를 시작으로 현재의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발전해왔다. 2013년 8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총 63개소(대도시형 5개소, 중·소도시형 12개소, 학교연계형 46개소)가 선정됨으로써 2021년 12월 31일 기준, 총 226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이 조직되었다.

표 2-24. 공공스포츠클럽 조직 및 육성 현황(2013~2021)

연도	공공스포츠클럽 유형	개소 수(신규)	개소 수(유형별 누적)
2013	대도시형	8	8
2014	대도시형	9	17
2015	대도시형	5	22
	중소도시형	6	6
2016	대도시형	3	25
	중소도시형	1	7
	거점형	3	3
2017	대도시형	13	38
	중소도시형	6	13
	거점형	-	3
2018	대도시형	10	48
	중소도시형	11	24
	거점형	-	3
2019	대도시형	7	55
	중소도시형	14	38
	거점형	-	3
2020	대도시형	8	63
	중소도시형	3	41
	학교연계형	56	56
	거점형	-	3

연도	공공스포츠클럽 유형	개소 수(신규)	개소 수(유형별 누적)
2021	대도시형	5	68
	중소도시형	12	53
	학교연계형	46	102
	거점형	-	3
합계		226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 4) 국민체력100 운영 지원 사업

##### 가. 추진배경 및 성과

국민체력100은 과학적 체력관리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개인별 체력 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4개소)부터 처음 시작되었다. 그 후, '국민체력인증사업'이 '국민체력100'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에 체력 인증센터가 확산되었다. 이 사업의 운영 성과로는 첫째, 국민들이 체력관리에 관심을 갖게 한 점, 둘째, 각 연령대 '체력인증 기준'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현재 체력 수준을 비교하도록 만든 점을 들 수 있다. 각각의 인증 기준은 성인('10년), 어르신('12년), 청소년('15년), 유소년('18년)으로 나뉘어 개발되었다.

##### 나. 운영 현황

국민체력100 사업은 2010년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원액과 운영 센터, 연간 참여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표 2-25>는 국민체력100 연간 지원액의 변화 추이다. 2021년에 지원된 금액은 167억 3,900만 원이었다.

표 2-25. 국민체력100 연간지원액 현황(2010~2021)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10~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액	89,272	6,435	5,611	6,748	6,996	8,021	9,082	10,923	18,717	16,739

※ 주: 2021년부터 지자체 운영 체력인증센터 정률지원(기금8:지방비2) : 센터별 165백만원 보조금 교부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표 2-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지원액 뿐 아니라 실제 운영 되는 센터의 개소 수 역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26.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현황(2021)

수도권(24개소)	충청·강원권(16개소)	제주·호남권(18개소)	영남권(1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림픽공원 대표센터</li> <li>• 성동 성수2가공공복합청사</li> <li>• 서초 구민체육센터</li> <li>• 동작 시당종합체육관</li> <li>• 마포 구민체육센터</li> <li>• 중구 충무스포츠타센터</li> <li>• 서대문 문화체육회관</li> <li>• 강북 웰빙스포츠타센터</li> <li>• 강동 천호희망아우름센터</li> <li>• 인천 연수 기천대학교</li> <li>• 인천 동구 송림체육관</li> <li>• 인천 미추홀 국민체육센터</li> <li>• 화성 국민체육센터</li> <li>• 부천 오정레포츠센터</li> <li>• 오산 스포츠타센터</li> <li>• 성남 종합스포츠타센터</li> <li>• 의정부 종합운동장</li> <li>• 시흥정왕 어울림체육센터</li> <li>• 광주 동원대학교</li> <li>• 고양 체육관</li> <li>• 포천 영중체육문화센터</li> <li>• 안산 한양대여체능대학체육관</li> <li>• 양평 물맑은실내체육관</li> <li>• 수원 경기대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li> <li>• 청주 종합운동장</li> <li>• 영동 문화체육센터</li> <li>• 충주 종합운동장</li> <li>• 증평 생활체육관</li> <li>• 보은 다목적체육관</li> <li>• 진천 초평생활체육공원</li> <li>• 세종 중촌복합커뮤니티센터</li> <li>• 천안 종합운동장</li> <li>• 계룡 구룡공도</li> <li>•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li> <li>• 원주 국민체육센터</li> <li>• 강릉 가톨릭관동대학교</li> <li>• 삼척 시민체육관</li> <li>• 춘천 강원대학교</li> <li>• 태백 고원2체육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원 춘향골체육관</li> <li>• 전주 화산체육관</li> <li>• 군산 월명체력증진센터</li> <li>• 익산 종합운동장</li> <li>• 정읍 샘골보건지소</li> <li>• 광주 광산 첨단다목적체육센터</li> <li>•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li> <li>• 광주 북구 태봉생활체육관</li> <li>• 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li> <li>• 광주 서구 국민체육센터</li> <li>• 목포 국제축구센터</li> <li>• 순천 원도심수영장</li> <li>• 곡성 레저문화센터</li> <li>• 나주 동신대학교체육관</li> <li>• 신안 국민체육센터</li> <li>• 영암 세안대학교</li> <li>• 무안 목포대학교</li> <li>• 제주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월배 국민체육센터</li> <li>• 대구 수성 육상센터</li> <li>• 포항 종합경기장</li> <li>• 안동 시민운동장</li> <li>• 김천 종합운동장</li> <li>• 구미 경운대학교</li> <li>• 경산 대구한대</li> <li>• 영주 철탄체육관</li> <li>• 부산 남구 국민체육센터</li> <li>• 부산 사하 국민체육센터</li> <li>• 부산 사상 국민체육센터</li> <li>• 부산 금정 스포원스포츠타센터</li> <li>• 부산 동구 국민체육문화센터</li> <li>• 부산 연제 거제국민체육센터</li> <li>• 창원 시민생활체육관</li> <li>• 사천 국민체육센터</li> <li>• 창원마산회원 마산대학교</li> <li>• 울산 울산대학교</li> </ul>

※ 주: 서울 강동 체력인증센터의 경우 자체재원으로 운영 중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2020년까지 전국에 총 76개소가 운영 중이고, 2021년에 새롭게 운영되기 시작한 센터는 1개 센터(강동 천호희망아우름센터)였다. 76개소 중 직영으로 운영되는 체력인증센터는 4개소로서, 송파 올림픽공원 대표센터,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대구 수성 육상진흥센터 및 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외 72개소는 지역에 지정·위탁 운영 방식이다. 국민체력100 사업은 ‘체력인증(관리 영역)’과 ‘체력증진교실(교육 영역)’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표 2-27>은 2011년부터 국민체력100 인증센터의 연간 참여인원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표 2-27. 국민체력100 연간 참여인원(2011~2021)

(단위: 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체력인증 참여인원	1,485,939	159,790	122,739	161,122	219,450	267,401	303,772	79,774	171,891
체력증진교실 참여인원	1,187,422	114,436	138,556	109,060	115,368	125,066	144,245	24,438	416,253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체력인증 참여인원은 2011년 4,583명을 시작으로 2021년 17만 1,891명이었고, 체력 증진교실은 2012년 1,250명을 시작으로 2021년 41만 6,253명이 참여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체력인증에는 총 148만 5,939명이, 체력증진교실에는 총 118만 7,422명이 참여하였다.

표 2-28. 국민체력100 체력측정항목

유소년기(만11~12세)			청소년기(만13~18세)		
구분	요인	측정항목	구분	요인	측정항목
체격	신체조성	신장(cm), 체중(kg)	체격	신체조성	신장(cm), 체중(kg)
		신체질량지수(BMI, kg/m <sup>2</sup> )			신체질량지수(BMI, kg/m <sup>2</sup> )
		허리둘레(cm)			체지방률(%body fat, BIA 활용)
		허리둘레-신장비(WHR)			
건강 체력	심폐지구력	15m 왕복오래달리기	건강 체력	심폐지구력	20m 왕복오래달리기, 스텝검사, 트레드밀 검사
	근력	상대약력		근력	상대약력
	근지구력	윗몸 말아올리기		근지구력	윗몸 말아올리기, 반복점프
	유연성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cm)		유연성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cm)
운동 체력	민첩성	반복옆뛰기	운동 체력	민첩성	일리노이 민첩성 검사
	순발력	제자리멀리뛰기		순발력	체공시간 검사
	협응력	벽패스		협응력	눈-손 협응력 검사
성인기(만19~64세)			노인기(만65세 이상)		
구분	요인	측정항목	구분	요인	측정항목
체격	신체조성	신장(cm), 체중(kg)	체격	신체조성	신장(cm), 체중(kg)
		신체질량지수(BMI, kg/m <sup>2</sup> )			신체질량지수(BMI, kg/m <sup>2</sup> )
		체지방률(%body fat, BIA 활용)			체지방률(%body fat, BIA 활용)
건강 체력	심폐지구력	20m 왕복오래달리기, 스텝검사, 트레드밀 검사	건강 체력	근기능(상지)	상대약력
	근력	상대약력		근기능(하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회/30초)
	근지구력	교차윗몸일으키기		심폐지구력	6분 걷기(m), 2분 제자리 걷기
	유연성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cm)		유연성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cm)
운동 체력	민첩성	10m 왕복달리기, 반응시간 검사	운동 체력	평형성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초)
	순발력	제자리멀리뛰기, 체공시간 검사		협응력	8자 보행(초)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 홈페이지(2021).

〈표 2-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체력100 측정항목 및 방법은 대상별로 다르게 구성되었다. 모든 연령대에 걸쳐 체격(신체조성)과 체력(건강체력, 운동체력)이 측정된다. 체격에는

신장과 체중을 활용한 신체질량지수(BMI)와 체지방률(%FAT)이 포함되는데, 유소년기에는 허리둘레-신장비(WHR) 측정이 추가된다. 건강체력의 측정 요인은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평형성인데, 노인기의 경우 상지와 하지로 나누어 근기능을 측정한다. 운동 관련 체력 요인으로는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등이 포함되며 성인기의 경우 협응력이, 노인기의 경우 민첩성과 순발력이 제외된다. 측정하는 요인과 각 요인별 측정 항목은 연령대 별로 조금씩 상이하다.

### 5)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육성팀에서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이라는 첨단기술기반의 산업혁신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실적은 <표 2-29>와 같다.

표 2-29.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실적(2016~2021)

(단위: 개소)

구분	2016(시범)	2017(시범)	2018	2019	2020	2021	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2	10	121	103	124	99	459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이 사업의 목적은 초등학교 내 실내 스크린 기반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축구 시뮬레이터 등 체육기반 융합 교육 콘텐츠 등, 청소년용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전국에 확산하는 것이다. 2016년 서울 옥수초등학교와 서울 신정초등학교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2017년 전국 10개교로 확산, 2021년에는 99개의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설치되는 등 지금까지 총 459개의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초등학교에 보급되었다.

## 2.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1)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사업 운영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은 2019년 종료된 생활체육광장 사업을 이어받아 2021년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모임 현장에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마을 단위로 기초적인 생활체육 참여환경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13개 시도의 145개소에서 13,246회 실시된 이 사업에는 총 270,016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였다. 2021년 이 사업의 구체적인 실적은 <표 2-30>과 같다.

표 2-30.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사업추진 실적(2021)

연도	구분	시도 수(개)	개소 수(개소)	지도자 수(명)	누적 운영횟수(회)	누적 참여인원(명)
2021		13	145	145	13,246	270,016

※ 출처: 17개 시도체육회 제출 사업 실적(2021).

## 2) 취약계층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지원

### 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 근거하여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시범사업 형식으로 2011년까지 시행되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정 만 5~18세 유·청소년 및 만 12~64세 장애인에게 스포츠 활동 수강료를 년 7개월 동안 월 8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09년 시범사업부터 2021년까지 집행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금액의 상세한 내용은 <표 2-31>과 같다.

표 2-31.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실적(2009~2021)

(단위: 백만 원, %, 명)

구분	2009~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사업비)	34,744	10,584	11,760	12,848	17,358
집행률	100	100	100	100	100
이용자 수(실인원)	60,550 (시범사업 기간 제외)	30,484	32,019	34,483	40,826
구분	2018	2019	2020	2021	계
예산액(사업비)	19,600	23,218	26,679	32,256	189,047

구분	2018	2019	2020	2021	계
집행률	100	100	100	100	100
이용자 수(실인원)	52,129	59,432	66,757	77,142	453,822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2021년 지원비는 322억 5,600만 원으로, 2020년에 비해 약 56억 원(20.9%) 증가하였고, 이용자 수 역시 7만 7,142명으로 작년보다 1만 385명(15.6%) 증가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금액은 총 1,890억 4,700만 원이고, 이용자는 45만 3,822명이 되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표 2-32>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표 2-32. 스포츠강좌 이용권 추진 방식(2009~2021)

구분	내용	비고
2009 ~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내 만 7~19세 유·청소년</li> <li>• (신청절차) 신청→지자체선정→이용권사용→정산(지자체에서 각 사업자별)→관리(지자체, 수기)</li> <li>• (이용권내용) 매월 체육활동 수강료 6만 원 한도 지원과 연 1회 용품지원(6만5천 원 한도)</li> </ul>	신규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내 만 7~19세 유·청소년</li> <li>• (절차) 홈페이지신청→자격확인(행복e음망)→지자체선정→카드발급→이용권사용→일괄정산→통계관리(전산)</li> <li>• (이용권내용) 매월 체육활동 수강료 6만 원 한도 지원과 연 1회 용품지원(6만5천 원 한도)</li> </ul>	카드결제 방식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내 만 7~19세 유·청소년</li> <li>• (절차) 홈페이지신청→자격확인(행복e음망)→지자체선정→카드발급→사용→일괄정산→통계관리</li> <li>• (이용권내용) 매월 체육활동 수강료 7만 원 한도 지원</li> <li>• 종목별 차등으로 형평에 문제 대두, 용품지원 폐지 대신 수강료 1만 원 상향조정</li> </ul>	카드결제 방식
2013 ~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내 만 5~19세 유·청소년(연령 확대)</li> <li>• (절차) 홈페이지신청→자격확인(행복e음망)→지자체선정→카드발급→사용→일괄정산→통계관리</li> <li>• (이용권 내용) 매월 체육활동 수강료 7만 원 한도 지원</li> </ul>	카드결제 방식
2015 ~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만 5~18세 유·청소년(민법개정 반영)</li> <li>• (절차) 홈페이지신청→자격확인(행복e음망)→지자체선정→카드발급→사용→일괄정산→통계관리</li> <li>• (이용권 내용) 매월 체육활동 수강료 7만 원 한도 지원</li> </ul>	카드결제 방식
2017 ~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만 5~18세 유·청소년</li> <li>• (절차) 홈페이지신청(실시간자격확인)→지자체선정→카드발급→사용→일괄정산→통계관리</li> <li>• (지원내용) 매월 체육활동 수강료 8만 원 한도 지원</li> </ul>	카드결제 방식
2019 ~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만5~18세 유·청소년 및 만19~64세 장애인</li> <li>• (절차) 홈페이지 신청(실시간자격확인)→지자체선정→카드발급→사용→일괄정산→통계관리</li> <li>• (지원내용) 매월 체육활동 수강료 8만원 한도 지원</li> </ul>	카드결제 방식

※ 스포츠관람이용권 이관(2013년,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장애인 사업대상 [ '19 ] 만12~39세 / [ '20 ] 만12~49세 / [ '21 ] 만12~64세(12~18세 저소득층, 19~64 소득제한 폐지)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이용권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은 2019년~2021년까지 동일하나 2020년에는 ‘만 12~39세의 장애인’이 ‘만 12~49세의 장애인’으로, 2021년에는 ‘만 12~64세의 장애인’으로 이용권 이용대상이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2020년부터 최소 지원기간이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되었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2018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서 제안된 내용을 근거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고, 애초 장애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용 대상이 너무 협소하여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 나. 스포츠버스 지원사업 운영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 지원 사업은 도서·벽지·접적 지역 학교나 시설 등을 찾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스포츠버스를 체험하게 해주고, 작은 운동회 및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이다. 스포츠버스는 내부와 외부가 달리 구성되는데, 내부에는 VR 및 스포츠 체험 존, 미디어 존 등이, 외부에는 드론 축구, 스포츠로 떠나는 세계여행, 트릭아트 등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표 2-33>와 같이 2021년 스포츠버스는 전국적으로 총 30회 실시되어 총 1,206명이 참여하였다.

표 2-33. 스포츠버스 지원사업 실적(2017~202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개소수	60	53	55	코로나19로 미실시	30
참여자수	10,553	6,032	6,608		1,206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 다.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운영

‘행복나눔 스포츠교실’은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포츠참여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주관하는 종목별 교실강습회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표 2-34>는 2021년에 실시된 행복나눔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사업의 구체적 현황이다.

표 2-34. 행복나눔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실시 현황(2021)

(단위: 개소, 명)

번호	종목	개소 수	개소별 현황		누적 현황
			강습 횟수(개소별)	개소별 참가인원	총 인원
1	복싱	7	11	89	979
2	배구	7	15	105	1,980
3	럭비	7	15	1,213	1,213
4	롤러	7	10	100	921
5	파크골프	11	16	179	2,864
6	배드민턴	11	15	10~16	1,860
7	검도	33	15	9~22	5,754
8	댄스스포츠	26	20	10~25	7,614
9	스키	6	6	6~20	102
10	바이애슬론	3	3	15~20	60
11	축구	29	25	15명 이하	9,384
12	핸드볼	2	15	20	474
13	볼링	13	15	15	2,656
14	유도	8	15	13~20	1,846
15	우슈	18	30	12~18	7,920
16	에어로빅합합	20	15	7~23	3,030
17	테니스	8	15	15	1,665
18	빙상	13	10	12	2,290
19	국학기공	60	15	15~20	9,854
20	택견	14	15	8~15	2,507
21	산악	14	10	15	1,890
22	궁도	15	15	138	3,120
23	탁구	10	13~14	138	2,400
24	체조	16	15	7~15	2,294
계		358	-	-	74,677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이 사업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인근 체육관 등에서 소외계층 청소년(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보육원 및 교화기관 등)을 대상으로 강습회 또는 캠프를 운영하며 이루어지는 것으로, 2021년에는 국학기공, 검도, 축구, 댄스스포츠를 포함한 총 24개 종목(20년 10개 종목)이 실시되었다. 전국 358개소에서 7만 4,67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코로나19로 대면 접촉 및 행사 개최가 더욱 어려웠던 2020년 164개소 1만 8,667명에 비해 각각 194개소 56,010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 라.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또바기 체육돌봄 운영

‘또바기 체육돌봄 운영 사업’은 이주배경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강습형) 운영과 생활체육 어울림캠프 및 운동회 등(캠프형)에 대한 지원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021년 기준 생활체육교실 강습형 프로그램의 경우 41개소에서 총 10,136명의 누적 인원이 참여하였고, 캠프 및 운동회 등 캠프형 프로그램의 경우 15개소에서 누적 694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세부적인 사업 운영 실적은 아래의 <표 2-35>와 같다.

표 2-35.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또바기 체육돌봄 운영 실적(2021)

(단위: 개소, 명)

①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연번	운영기관	개소 수	개소별 현황		누적 현황
			강습 횟수	참여 인원	총 인원
1	대한력비협회	2	15	18	1,050
2	대한배드민턴협회	5	12	15	945
3	대한빙상경기연맹	1	6	10	60
4	대한세탁타크로협회	1	10	10	100
5	대한우슈협회	4	30	14	1,680
6	대한민국족구협회	1	15	19	285
7	대한체조협회	6	15	9	691
8	대한카라테 연맹	3	22	13	810
9	대한축구협회 (한국풋살연맹)	10	15	15	1,967
10	대구광역시체육회	6	11	20	1,168
11	전라북도체육회	2	23	15	1,380
계		41	174	158	10,136
② 생활체육 어울림캠프 및 운동회 등 지원					
연번	운영기관	개소 수	개소별 현황		누적 현황
			강습 횟수	참여 인원	
1	대한산악연맹	7	1	20	138
2	강원도체육회	1	1	46	46
3	울산광역시체육회	4	1	53	210
4	전라남도체육회 (구례군 체육회)	3	1	100	300
계		15	4	219	694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 3) 스포츠 보급 지원

#### 가. 전통스포츠 보급 지원

‘전통스포츠보급’은 전통스포츠의 재미를 일깨우고 향후 전통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재참여 의사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통스포츠 체험과 전통놀이 운동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페스티벌, 전통스포츠 대회, 전통스포츠 강습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찾아가는 강습회를 통해 스포츠 소외계층(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도서지역, 군장병 등)에게 전통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1년 전통스포츠보급 사업 유형별 내용 및 참여 인원 현황은 아래의 <표 2-36>과 같다.

표 2-36. 전통스포츠보급 사업 유형별 내용 및 참여 인원 현황(2021)

(단위: 명)

구분	내용	참가자 수
페스티벌	• 11개 시·도별 전통체험장 운영: 전통스포츠 체험장 운영, 전통놀이 운동회 등	2,693
대회	• 족구대회 개최(1회)	420
강습	• 강습회 운영(2회): 줄다리기, 줄넘기	1,030
계		4,143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 나. 레저스포츠 보급 지원

‘레저스포츠 보급 지원 사업’은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대비,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레저스포츠 보급 지원 사업 실적은 <표 2-37>과 같다.

표 2-37. 레저스포츠 보급 지원 실적(2016~2021)

(단위: 백만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레저스포츠연구	-	134	117	107	51	80	489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	-	204	141	136	125	130	736
레저스포츠 안전정보시스템 관리	-	-	195	-	20	25	240
레저스포츠 시설 안전점검	133	184	344	344	355	350	1,710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164	22	181	86	28	212	693
레저스포츠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854	980	555	640	2	300	3,331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485	410	518	498	5	500	2,416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지역특성화 레저스포츠 활성화사업 지원	210	-	-	-	-	-	210
계	1,846	1,934	2,051	1,811	586	1,597	9,825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레저스포츠 체험활동 영역을 확장, 국민들의 레저스포츠 관심을 도모하는 것이 주 목적인 이 사업은, 2016년 약 18억 원의 지원액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총 15억 9,7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지금까지 레저스포츠 보급 지원을 위해 투입된 총 예산은 총 98억 2,5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 4)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체육활동 지원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체육활동은 체육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임신, 출산, 육아,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의 구체적인 지원 실적은 <표 2-38>과 같다.

표 2-38. 여성체육활동 지원 실적(2021)

(단위: 개, 명, 회)

대면 교실 프로그램 운영				
연번	종목	교실 수	참여 인원	운영 횟수
1	에어로빅	25	3,490	372
2	산악	25	7,389	500
3	댄스스포츠	35	5,002	520
4	국학기공	20	2,859	364
5	태권도	11	641	72
6	치어리딩	19	2,913	297
계		135	22,294	2,125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연번	종목	온라인 콘텐츠	홍보 등 활용 매체	
1	에어로빅	4	SNS	
2	산악	7	유튜브, SNS 등	
3	댄스스포츠	4	유튜브, SNS 등	
4	국학기공	16	SNS	
5	치어리딩	4	SNS	
계		35	-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에는 일반여성 및 다문화가정 여성 등을 대상으로 6종목 135개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5종목 35개 온라인 콘텐츠 제작도 병행하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대면 및 비대면 프로그램 병행으로 안전한 생활체육 참여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하였다.

## 5)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 가. 체육동호인 조직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동호인 조직’을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인 생활체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으로 규정한다(제2조 7항). 이들 조직을 육성하고자 정부는 생활체육 동호인을 등록하고, 종목별 동호인대회와 생활체육 동호회리그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 체육동호인 등록 현황은 <표 2-39>와 같다.

표 2-39. 지역별 체육동호인 등록 현황(2021)

(단위: 개, 명)

구분	동호인 선수			동호인 팀			
	남	여	계	남	여	혼성	계
서울	2,203	780	2,983	134	12	229	375
부산	685	251	936	69	3	60	132
대구	1,312	392	1,704	98	5	87	190
인천	749	680	1,429	58	6	72	136
광주	495	556	1,051	111	10	83	204
대전	284	150	434	55	1	31	87
울산	631	312	943	69	5	52	126
세종	590	141	731	16	3	41	60
경기	2,186	1,132	3,318	195	17	238	450
강원	980	357	1,337	86	5	63	154
충북	1,077	326	1,403	81	9	81	171
충남	374	225	599	59	4	58	121
전북	1,125	238	1,363	58	5	63	126
전남	451	183	634	54	6	65	125
경북	755	397	1,152	109	9	60	178
경남	519	265	784	64	4	59	127
제주	934	603	1,537	35	3	106	144
계	15,350	6,988	22,338	1,351	107	1,448	2,906

※ 주: 대한체육회 동호인등록시스템 등록 생활체육동호인(2021.12월 기준)

※ 출처: 대한체육회(2021). 2021년 각종 정보·통계자료.

※ 주: 대한체육회(2021) 연구에서 지방체육회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체육동호인 선수 279만 2,359명, 동호인 팀은 7만 1,127개로 조사됨.

### 나.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

동호인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서, 전국 종목별 대회 지원,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지원으로 나뉜다. 종목별 동호인 행사를 지원하는 이유는 종목별 동호인 대회를 내실화하여 권위 있는 전국대회로 육성하고 생활체육을 생활화 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연합회별로 지방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동호인 행사에 대한체육회가 대회 운영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한다.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 행사 지원 현황은 <표 2-40>과 같다.

표 2-40.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행사지원 현황(2012~2021)

(단위: 개, 회,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대회종목 수	46	49	54	49	45	39	44	45	12	18
대회 수	130	130	134	81	73	64	67	72	14	23
참가규모	127,022	141,588	111,040	98,009	60,793	44,835	47,805	52,819	5,949	17,611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종목별 동호인 행사는 전국 단위에서 종목별로 연중 개최되며, 주로 전국종목별 연합회가 주관하여 대회를 운영한다. 2021년 지원 규모를 보면, 총 18개 종목에 23개 대회가 개최되었고, 참가 인원은 17,611명이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체육 행사가 전면 중단되었으나 2021년 일부 규제 완화가 시작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 참가자 규모가 다소 증가한 수치인 것이다.

### 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지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17개 시·도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서 2001년 ‘국민생활체육전국 한마당축전’으로 시작된 대회다. 1년 주기로 전국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친선 및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다. 이 대회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명예와 성취감을 고취할 기회뿐 아니라 지역과 계층 간 생활체육으로 통합할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간 통합 후에도 이 대회는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매년 각 시·도별 순회 개최가 원칙이다. 이 축전은 단지 체육 대회만이 아닌 다양한 지역 문화행사와 축제, 내 고향 특산물 전시회, 뉴스포츠 체험, 온 가족 함께 걷기 대회, 지역 명소 탐방, 이동건강검진센터 등의 행사가 병행된다. 2020년과 2021년

에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대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 라. 생활체육동호회리그 지원

2018년까지 종목별 클럽리그로 운영되던 사업이 2019년부터 '생활체육동호회 리그'로 변경되어 지원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시·군·구 지역단위에서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종목을 지원하여 약 9개월 간 동호회 풀리그로 운영된다.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공모 시 '도시형(최소 3~10종목)'과 '비도시형(최소 2~3종목)'으로 구분하여 참여할 수 있고, 리그 운영기준은 한 종목 당 최소 10팀(군 단위 6팀) 이상이 참가해야 한다. 생활체육동호회리그 지원 사업 실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표 2-41>와 같다.

표 2-41. 생활체육동호회리그 지원 사업 실적(2019~2021)

(단위: 개)

실적내용	2019	2020	2021	성과분석(전년대비 개선효과)
① 운영 종목 수	14	17	16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참가 시군구 및 대회 경기 수 증가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② 참가 시·군·구 수	31	42	72	
③ 대회 부문 수	4	9	7	
④ 대회 리그 수	77	89	117	
⑤ 대회 경기 수	-	5,031	20,670	
⑥ 참여 인원 수	12,621	38,096	36,037	
⑦ 참가 팀 수	2,180	7,989	7,152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의 경우, 14개 시·도, 72개의 시·군·구가 선정되면서 총 16개 종목의 117개 리그가 운영되었다. 대회의 규모에서 보면, 7,152개 팀에서 3만 6,037명이 2만 670개 대회에 참여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기존 성인 동호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범위를 벗어나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다세대 및 다계층이 참가하였다.

### 6) 종목별 승강제 리그 운영

승강제 리그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대회 간 연계를 통해 종목의 저변을 확대하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생활-전문 통합 리그로, 2017년도부터 각 종목의 특성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기반 시설과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7년 축구 4부 구축을 시작으로, 2020년 첫 축구 2~4부 리그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2021년에는 축구 2~4부, 야구·당구·

탁구 3~4부가 운영되었다. 종목별 승강제 리그 운영 결과는 <표 2-42>와 같다.

표 2-42. 종목별 승강제 리그 운영 결과(2021)

(단위: 개)

종목	리그 수		클럽 수	종목	리그 수		클럽 수
축구	2부(K5)	11	72	탁구	3부(T3)	79	731
	3부(K6)	29	183		4부(T4상)	149	1,687
	4부(K7)	183	1,150		4부(T4하)	226	2,616
	소계	223	1,405		소계	454	5,034
야구	3부(D5)	4	24	당구	3부(D4)	24	106
	4부(D6)	80	490		4부(D5)	143	590
	소계	84	514		소계	167	696
총계	축구 2~4부, 야구·당구·탁구 3~4부 리그 운영				928	7,649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표 2-42>에서처럼, 축구의 경우 총 1,405개 클럽이 참여한 가운데 223개 리그가 운영되었으며, 탁구는 5,034개 클럽에서 454개 리그가 이루어졌다. 야구는 514개 클럽이 참여하여 84개 리그가, 당구는 696개 클럽이 참여하여 167개 리그가 운영되었다.

## 7) 생활체육 홍보 지원 사업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21년도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스포츠7330’ 홍보를 중심으로,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각종 생활체육정보포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의 여러 홍보 지원 사업이 전개되었다.

### 가. 스포츠7330 홍보

‘스포츠7330’은 스포츠 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하자’를 의미하는 캠페인이다. ‘일주일에 3번 운동’은 과학적으로 인체가 신체활동 같은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영향이 지속되는 시간이 약 48시간(2일)이기 때문에 설정된 것이다. 또한 ‘하루 30분 운동’ 역시 운동 시작 후 30분부터 지방이 분해 및 소모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포츠7330’은 지난 2005년부터 정부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홍보되기 시작했다.

생활체육 순기능과 유용성을 알려 스포츠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스포츠7330’

캠페인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표 2-43>은 기존 ‘스포츠7330’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으며, 2016년 이후 ‘SPORTS1’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고 있는 다양한 스포츠 소식과 정보를 담은 대한체육회 월간 간행물의 연간 발행 실적이다.

표 2-43. SPORTS1 발간 실적

(단위: 부, 회, 면)

항목	2009~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발행부수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발행횟수	12	12	12	12	12	12	12
간별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면수	60	64	64	64	64	64	64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스포츠7330 홍보는 이처럼 매월 발간되는 잡지 뿐 아니라 각종 방송·인쇄 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방송광고(TV 및 라디오) 채널에 공익광고를 송출하였고(총 263회), 지면광고(신문)를 통해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하였다(303회). 또한 2021년 6월~10월에는 ‘스포츠7330’ 캠페인 공모전을 접수하여 총 공모작 4,778편 중 32편(표어와 포스터 부문에서 각각 16편씩)을 선정하여 수상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홍보 노력의 결과, ‘스포츠7330’ 캠페인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스포츠7330’ 인지도 조사 결과는 <표 2-44>와 같다.

표 2-44. 스포츠7330 캠페인 인식 조사 결과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인지도	42%	44.3%	52.5%	53.4%	60.4%
종합만족도	-	62.1%	72.6%	73.9%	75.7%

※ 주: 3,000명 조사('21년 11월~12월)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 ‘스포츠7330’ 캠페인의 인지도는 전년보다 7%p 상승한 60.4%로 나타나 설문 참여자 절반 이상이 생활체육7330 캠페인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스포츠7330’ 캠페인에 대한 종합만족도 역시 75.7%로 전년 대비 1.8% 상승하였다.

<표 2-45>는 ‘스포츠7330’ 캠페인이 처음 기획되었던 2005년부터 이어져온 2018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실행되었던 대중언론매체 캠페인 실적에 대한 종합이다.

표 2-45. 스포츠7330 대중언론매체 캠페인 실적

1 단계 (2005~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 명칭 확정, 브랜드 알리기 위한 전략수립</li> <li>• 스포츠7330 선포식 및 퍼레이드 전개</li> </ul>
2 단계 (2007~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기관과 연계(세미나, 학술대회, 교과과정에 편성)</li> <li>• 관공서 및 사회단체 집회 시 스포츠7330 이슈화</li> <li>• 종목별 동영상 프로그램 보급 확산</li> <li>• 지역문화 축제 및 각종 행사시 스포츠7330 캠페인과 연계</li> <li>• 생명보험사 및 기업체와 연계 공동 프로젝트 추진</li> <li>• 체계적인 스포츠 인프라 구축, 스포츠클럽 활성화</li> <li>• 브랜드 상품개발(캐릭터개발, 브랜드의 상품화 등)</li> <li>• 브랜드 해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체육국제교류, 세계한민족축전 참가자들을 통한 홍보</li> <li>- 각종 국제대회 시 한국선수단을 통한 노출</li> <li>- 재외공관, 한인회, 한국관광공사, 문화원 등을 통한 홍보</li> </ul> </li> </ul>
3 단계 (2011~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기법의 다변화(온-오프라인 병행, 틈새광고 시행)</li> <li>• 방송-언론매체를 통한 대상별 맞춤형 캠페인 지속 추진</li> <li>• 대국민 참여를 통한 캠페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체육 각종 공모전 실시(수기, 사진 등)</li> <li>- SNS 및 블로그, 유튜브 개설 운영</li> <li>- 명예기자단, 홍보대사 재능기부 실시</li> </ul> </li> <li>• Sub 슬로건 '운동은 밥이다!', "스포츠7330" 상표 등록 및 홍보</li> <li>• 각종 포털과 업무제휴를 통한 스포츠 콘텐츠 제공(네이버, 카카오)</li> <li>• 완성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지역의 홍보매체 확산, 전파</li> </ul>
4 단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 콘텐츠 제공</li> <li>• 각종 포털과의 협업을 통한 스포츠7330 캠페인 전개</li> <li>• 생활체육 캠페인 확산을 위한 캐릭터(팀 달리) 개발 및 각종 콘텐츠 제작 시 활용</li> <li>• 스포츠7330 캠페인 및 체육활동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실시</li> <li>• 스포츠7330 캠페인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라디오), 신문 기획시리즈 보도</li> <li>• 대국민 참여를 통한 캠페인 전개(공모전, SNS이벤트 등)</li> </ul>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표 2-45〉에서 알 수 있듯이, '스포츠7330' 대중매체 활용 전략은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단계를 거듭할수록 점점 홍보의 수단이 종이 매체에서 온라인 매체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공모전 홍보 다각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참가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7330' 캠페인에 대한 인지도와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 동기가 증진되고 있다.

## 나.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

정부는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체육 참여 의식을 높이려는 범국민 생활체육 캠페인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범국민 생활체육캠페인은 TV·라디오, 주요 일간지 및 기타 간행물, 지하철, 전광판, 인터넷, 극장 등을 활용, 생활체육에 관련된 이미지 광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광고에는 생활체육정책,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방법 및 효과, 외국 사례, 뉴스포츠, 동호인 활동사항 등의 기사가 포함된다. <표 2-46>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시행되었던 범국민 생활체육 캠페인 추진 현황을 요약한 자료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범국민 생활체육 캠페인 보도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신문광고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고, 2019년과 2020년 실시되지 않았던 TV광고는 31회 실시되었으며, 라디오광고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표 2-46. 범국민 생활체육 캠페인 추진 현황(2017~2021)

(단위: 회)

구분	보도실적	신문광고	TV광고	라디오광고
2017	3,940	353	303	331
2018	5,381	510	205	538
2019	5,224	525	-	326
2020	5,823	525	-	173
2021	6,107	303	31	232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범국민 생활체육 캠페인을 위해 기존의 전통 매체뿐 아니라 블로그나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홍보도 지속하였다. <표 2-47>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생활체육 홍보 실적으로서, 블로그 채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2020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2-47. 온라인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실적(2021)

(단위: 건, 명, 회)

홍보채널	제공 콘텐츠	순방문자	비고
대한체육회 블로그	319→304(↓ 4.7%)	724,436('20년: 925,860)	(조회수) 901,969
대한체육회 페이스북	340→645(↑ 89.7%)	102,016('20년: 93,601)	(도달) 4,163,125
대한체육회 인스타그램	327→575(↑ 75.8%)	23,517('20년: 10,337)	(좋아요) 951,811

1) 대한체육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sports\\_7330](https://blog.naver.com/sports_7330)): 2012.05.30일부터 운영2) 대한체육회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oreaOlympic>): 2012.04.19일부터 운영3) 대한체육회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ksoc\\_official](https://www.instagram.com/ksoc_official)): 2018.03.03일부터 운영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대한체육회 블로그의 경우 2021년 한 해 동안 304건의 내용을 게시하였고, 순 방문자는 72만 4,436명이었으며, 2020년에 비해 약 20만여 명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305건 증가한 645건의 내용을 게재하면서 순방문자 10만 2,016명을 기록하여 2020년에 비해 약 8,000여 명 증가하였다. 인스타그램은 가장 최근에 개설된 SNS 채널로, 575건의 게시물과 23,517명의 순방문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순방문자 인원이다. 또한 생활체육 캠페인 대국민 홍보는 '온라인 영상 채널'에서도 실시되었는데, 스포츠 활동이 '동영상'으로 구성될 때 좀 더 생동감 있게 소비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21년 기준 운영되었던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내용은 <표 2-48>과 같다.

표 2-48. 대국민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2021)

(단위: 명)

구분(명칭)	도메인	이용자 수
메인 홈페이지	tv.sports.or.kr	7,176
네이버TV	tv.naver.com/koreasports	202,359(누적 조회수)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XU3UhTVOX7w6NhQpzxEeJQ	18,386(구독자)

※ 출처: 대한체육회(2021). 2021 스포츠미디어콘텐츠 서비스 강화사업 자체평가보고서.

2021년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 관련 내용을 메인 홈페이지인 대한체육회TV(7,176명)와 네이버TV(20만 2,359회 누적 조회)를 이용하여 제공하였다. 대한체육회TV의 이용자 수는 2020년 7,456명보다 소폭 감소하였고, 네이버TV 역시 작년의 약 25만회의 누적 조회수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의 경우 2020년 약 1만 5천명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페이스북을 활용한 인터넷 콘텐츠도 제공하였으나, 2021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다. 체육포털 서비스 운영

정부는 또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포함, 우리나라 스포츠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된 정보를 제공,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체육포털 서비스(sportal.or.kr)'을 운영한다. 이곳을 통해 스포츠 미디어 관련하여 다양한 스포츠 영상, 관련 사진, 스포츠 잡지 기사 등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정보와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정보, 스포츠버스 및 푸드 트럭과

같은 정보도 이곳을 통해 접할 수 있게 만들었다. 생활체육 등록에서부터 대회 정보, 행복 나눔체육교실과 같은 소식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도 이 포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 포털 서비스는 그 이용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지난 2017년 3월부터 모바일 웹 형태로도 구동되고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 확대 실시 및 디자인 개선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 소개 및 강습동영상 제작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중이다.

2021 체육백서

2021 Sport White Paper

3

## 전문체육

제1절 전문체육 개관  
제2절 전문체육 현황  
제3절 전문체육 활성화 정책

## 제1절 전문체육 개관

전문체육은 ‘엘리트 스포츠(elite sports)’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엘리트’란 ‘신에 의해 선택된’이란 의미의 단어로서, 엘리트 스포츠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스포츠를 뜻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2항은 ‘전문체육’을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으로 정의하며, 제2조4항은 ‘선수’는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전문체육이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이 된다. 그렇기에 전문체육은 자연스럽게 ‘경기력 향상’과 ‘기록 달성’의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또한 전문체육은 경기력 향상과 기록 달성이라는 개인적 성취 목표뿐 아니라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나아가 전 사회 분야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국가대표 제도를 통해 국가적 위상을 높이거나, 지역과 국가를 대표함으로써 지역민과 국민을 통합하기도 하며, 국제대회에서의 성취는 국민 개개인의 자긍심을 높여준다. 또한 전문체육 분야에서 선수들의 훌륭한 경기력과 성취는 청소년들의 역할 모델로 기능하면서 정당한 노력이 보상 받는다는 스포츠의 ‘공정성’ 가치를 사회적으로 전파하기도 한다. 게다가 자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나 해외에서 열리는 스포츠경기에 참가하면서 스포츠산업 분야를 활성화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정부가 전문체육에 정책적으로 개입하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이유다.

정부가 전문체육을 육성하고자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체육영재에서부터 꿈나무선수, 청소년대표선수, 후보 선수, 국가대표선수 등 체계적 선수 육성 경로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둘째,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스포츠 과학을 지원하고 이들의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각종 대회를 개최한다. 셋째, 효과적이고 편리한 ‘훈련시설’을 제공한다. 태릉선수촌에서 최근의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이르기까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한다. 넷째, 체육인 복지를 위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선수들의 주요 역할인 운동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필수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은퇴선수 취업 지원 같은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면서 전문체육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다.

‘우수선수’는 4단계 선수양성 체계로 이루어진다. 이 4단계는 꿈나무선수, 청소년대표선수, 후보선수, 국가대표선수로 구성된다. ‘체육영재’ 사업은 참여자의 연령대가 꿈나무선수 참여자 연령대와 중복되므로 2019년부터 ‘꿈나무선수’ 사업에 편입되었다. 위의 분류에 따라 2021년에는 꿈나무선수(1단계) 22개 종목에 선수 844명, 청소년대표선수(2단계) 29개 종목에 901명, 국가대표 후보선수(3단계) 29개 종목의 선수 1,310명,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선수(4단계) 총 45개 종목에 1,486명의 선수가 선발되어 집중적인 훈련 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전문체육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각 지역에 ‘스포츠과학센터’를 운영하고, 국가대표선수들에게는 ‘현장 밀착형 스포츠과학 지원(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 스포츠과학센터는 2021년 기준 총 11개가 운영 중이며 체력측정 및 처방(18,013명), 대표선수 밀착지원(63종목), 스포츠과학교실(160회)을 실시하였다. 국가대표선수들을 위한 현장 밀착형 스포츠과학 지원 사업에는 총 3,026명의 선수들이 체력, 스포츠심리, 기술, 영상, 장애인스포츠 등의 분야별 지원을 받았고, 국가대표 심층지원 연구의 경우 총 19건이 수행되었다. 또한, 꿈나무-청소년-후보선수를 위한 차세대스포츠과학 지원 사업이 병행되었으며, 2021년 체력(615건), 기술영상(533건), 심리(738건) 각 분야별로 지원이 실시되었다.

전문체육 선수들의 경기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은 ‘전문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나타난다. 전문체육 대회에는 하계·동계전국체육대회(약칭 ‘전국체전’)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별 전국대회, 종목별 시·도 대회, 시·도별 종합대회, 종목별 협회장기, 시·도 지사기 대회 등이 포함된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하계체육대회는 학생선수들의 진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세 이하부만 경북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41개 종목에서 13,512명의 학생선수들이 참가하였다. 2021년 제102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종목별 겸임대회로 개최되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태릉과 태백, 진천에 선수촌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와 지도자의 꾸준한 역량 증진을 위하여 체육계열 학교 지원과 지도자 해외연수, 외국인 코치 초청 지원 사업도 진행하였다. 또한 체육인 복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대표선수 능력개발 교육(일반분야 및 어학분야 총 6,782명 교육 수강)과 은퇴선수 취업 지원(총 471명 취업지원서비스 실시) 및 체육인 복지 지원(장학금 및 복지지원금 지원, 체육발전유공자 및 대한민국체육상 포상) 등을 실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전문체육 관련 정책 현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 제2절 전문체육 현황

전문체육 현황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문체육 인력 및 팀 등록 현황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문체육 정책의 변천 및 현황을 탐색하고,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설 및 전문스포츠 지도사 양성 현황을 상세히 살펴본다.

## 1. 전문체육 인력 및 팀 등록 현황

전문체육의 인적 구성은 크게 전문체육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나눌 수 있다. <표 3-1>은 전문체육 선수와 지도자의 최근 5개년 등록 현황을 나타낸 자료다.

표 3-1. 전문체육 선수 및 지도자 등록 현황(2017~2021)

(단위: 명)

구분 연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실업)*			미 지정**			총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17	60,604	20,767	81,371	11,091	3,089	14,180	22,464	7,390	29,854	10,063	577	10,640	136,045
2018	68,907	20,832	89,739	10,547	2,931	13,478	21,990	7,186	29,176	2,621	623	3,244	135,637
2019	69,080	20,892	89,972	10,266	2,834	13,100	18,442	5,725	24,167	2,557	548	3,105	130,344
2020	65,846	18,624	84,470	10,056	2,730	12,786	17,358	5,417	22,775	1,758	534	2,292	122,323
2021	70,847	20,853	91,700	10,808	2,940	13,748	16,974	5,617	22,591	1,762	561	2,323	130,362
<b>등록 지도자</b>													
2017	11,271	2,742	14,013	1,204	153	1,357	2,531	435	2,966	1,189	67	1,256	19,592
2018	12,073	2,922	14,995	1,231	143	1,374	2,411	434	2,845	679	72	751	19,965
2019	12,335	2,997	15,332	1,265	166	1,431	2,604	522	3,126	853	75	928	20,817
2020	12,498	2,956	15,454	1,480	176	1,656	2,819	597	3,416	648	80	728	21,254
2021	13,994	3,305	17,299	1,788	211	1,999	3,106	626	3,732	796	119	915	23,945

\* 일반부(실업): 시도청, 시도체육회, 경기단체, 기업, 공공기관, 군·경찰, 기타

\*\* 미지정: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등록 신청 시 '분류'를 지정하지 않고 등록된 경우

※ 주: 등록현황 중 동호회 제외한 운동부 및 클럽 검색 결과

※ 출처: 대한체육회(2021). 스포츠 지원포털 등록현황 및 통계정보(<https://g1.sports.or.kr/stat/stat01.do>)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된 전문체육 선수는 총 13만 362명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증가한 수치이다. 지도자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일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에는 등록 지도자 수가 23,945명으로 전년(21,254명) 대비 대폭 증가하였다. 종목별 심판 역시 전문체육을 구성하는 인력 중 하나로서, <표 3-2>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등록 심판 현황이 제시되었다.

표 3-2. 심판 등록 현황(2017~2021)

(단위: 명)

종목	인원										합계
	국내					국제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2017	10,159	19,771	90,389	7,611	127,930	507	781	1,457	918	3,663	131,593
2018	14,062	24,486	105,826	9,218	153,592	631	826	1,550	756	3,763	157,355
2019	14,605	25,309	113,925	11,357	165,196	623	866	1,540	799	3,828	169,024
2020	2,311	1,846	2,732	3,105	9,994	188	109	153	125	575	10,569
2021	1,846	1,429	1,834	2,509	7,618	144	85	107	80	416	8,034

※ 주: 2017~2019 등록된 심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이유는 경기단체별 자격증 발급수의 누적 숫자이기 때문

※ 주: 2020년부터 스포츠지원 포털에 심판등록 현황자료가 집계됨에 따라 실제 활동 중인 심판 인원 확인 가능

※ 주: 국내, 국제 자격증이 있을 경우 국내자격증으로 적용

※ 출처: 대한체육회(2021). 스포츠 지원포털 등록현황 및 통계정보,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0 체육백서

2021년 등록된 심판은 총 8,034명으로서, 국내심판 7,618명(94.8%)과 국제심판 416명(5.2%)로 집계되었다. 심판 등록 현황의 경우, 스포츠지원 포털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통계에 맞춰 경기단체에서 데이터를 수정한 관계로 이전 연도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한편, 전문체육 등록 팀 현황은 아래 제시된 <표 3-3>과 같다.

표 3-3. 전문체육 팀 등록 현황(2017~2021)

(단위: 명)

연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실업)*				미 지정**				총계
	남	여	혼성	계	남	여	혼성	계	남	여	혼성	계	남	여	혼성	계	
2017	3,162	1,771	8,151	13,084	380	155	680	1,215	531	291	2,421	3,243	377	15	325	717	18,259
2018	3,474	1,781	8,665	13,920	363	144	701	1,208	542	298	2,438	3,278	62	16	322	400	18,806
2019	3,469	1,784	8,943	14,196	352	142	626	1,120	422	259	1,955	2,636	64	11	289	364	18,316
2020	3,338	1,691	8,115	13,144	337	122	650	1,109	397	246	1,970	2,613	35	10	287	332	17,198
2021	3,496	1,736	9,223	14,455	365	128	710	1,203	396	260	2,109	2,765	45	13	315	373	18,796

\* 일반부(실업): 시도청, 시도체육회, 경기단체, 기업, 공공기관, 군·경찰, 기타

\*\* 미지정: 대한체육회에 팀 등록 신청 시 '분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주: 등록현황 중 동호회 제외한 운동부 및 클럽 검색 결과

※ 출처: 대한체육회(2021). 스포츠 지원포털 등록현황 및 통계정보(<https://g1.sports.or.kr/stat/stat01.do>)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된 전문체육 팀은 총 1만 8,796개로, 이는 2020년 1만 7,198개에서 1,598개(9.3%) 증가한 수치이다.

## 2. 전문체육 정책 변천 및 현황

우리나라 전문체육은 1962년 9월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이후 1966년 6월 태릉 선수촌 건립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1970년대부터 전문체육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며 여러 제도가 도입, 전문체육 역량 강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표 3-4>는 문민정부에서 2021년까지의 전문체육 활성화 정책의 흐름과 현황이다.

표 3-4. 정부별 전문체육 정책 흐름 및 현황

구분	기본시책명	정책과제(목표)	주요사업(추진내용)
문민정부 (1993~1998)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전문체육 지속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선수 과학적·체계적 양성</li> <li>국내경기대회 운영의 개선</li> <li>체육인 복지향상 및 체육단체의 자율성 제고</li> </ul>
국민의 정부 (1998~2003)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2002한일월드컵 성공적 개최로 국가 발전 재도약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회준비 운영체제 구축, 경기장 등 대회시설 확보</li> <li>경기운영, 개최식 등 대회운영 단계적 준비</li> <li>범국민적 대회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정부적 지원</li> </ul>
		경쟁력 있는 체육과학 발전추구 및 체육행정 능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체육과학연구원(現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기능 증대</li> <li>국민체력증진 연구 및 경기력향상 연구 역량 강화</li> <li>체육부문 종합정보망 구축 및 다양한 체육정보 제공</li> <li>체육 인력 전문성 제고 및 지방체육조직에 전문 인력 배치</li> </ul>
참여정부 (2003~2008)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과학적 훈련지원을 통한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선수 발굴·육성 체계 확립</li> <li>전문체육시설의 다기능·현대화</li> <li>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등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li> <li>전문체육단체 자율성 및 재정자립 기반 강화</li> </ul>
이명박 정부 (2008~2013)	문화비전 2008~2013	전문체육 및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2 런던하계올림픽대회 대비 국가대표선수 훈련 과학화</li> <li>우수선수 자원의 확대 및 육성시스템 강화</li> <li>비인기 종목 활성화</li> <li>스포츠의과학 및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li> <li>전문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li> </ul>
박근혜 정부 (2013~2017)	스포츠비전 2018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스포츠로 국격을 바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대표 지도자 자격 부여 및 학교 스포츠강사 처우개선</li> <li>국가대표 선수훈련장의 효율적 기능 분담</li> <li>스포츠산업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올림픽 스포츠코플렉스 조성</li> <li>학생선수 '체육중점학급' 운영 및 과학적 훈련지원</li> <li>운동부지도자 교육 강화, 은퇴 후 대비 진로 교육 확대</li> <li>지역별 스포츠과학 거점센터 설치로 과학화 지원대상 확대</li> </ul>

구분	기본시책명	정책과제(목표)	주요사업(추진내용)
문재인 정부 (2017~2022)	2030 스포츠비전	공정하고 도전적인 스포츠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포츠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li> <li>전문선수 육성시스템 선진화 및 교육환경 개선</li> <li>전략적인 스포츠과학서비스 지원</li> </ul>
		국격을 높이고 우호를 증진하는 국제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스포츠 기관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 체계화</li> <li>국제스포츠 교류지원 법적 기반 마련</li> <li>태권도 리더십 강화 및 한중일 스포츠교류 확대</li> <li>스포츠 ODA 효과성 확대</li> <li>스포츠교류 양해각서 체결국 간 교류 실질화</li> </ul>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2021)

우리나라 전문체육은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및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면서부터 정책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전까지의 체육 업무는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에서 이루어졌으나, 1982년 ‘과’에서 ‘부’ 단위로 승격된 ‘체육부’가 신설,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했다. 특히 1983년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국위선양’ 항목(법 목적)과 선수 양성 및 지원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향후 맞이할 아시아경기대회와 올림픽경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160개국 8,391명이 참가한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성적도 종합 4위(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후 ‘문민정부’로 들어와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8)』이 대표적이다. 이 계획에는 우수선수 체계적 양성, 국내경기대회 운영 개선, 우수 경기지도 인력 양성, 체육인 복지향상 및 체육단체 자율성 제고와 같은 사업이 포함되었고, 이 기본 틀은 다음의 ‘국민의 정부’로 이어졌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8~2003)』을 통해 정부는 2002년 FIFA 한일월드컵축구대회 준비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였으며, 체육과학 발전과 능률적 체육행정을 위한 체육과학연구원(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기능 증대, 국민체력 증진 및 경기력 향상 연구 역량 강화, 체육부문 종합정보망 구축으로 체육정보 제공 및 체육 인력 전문성 제고와 같은 정책을 수립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계획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도 지속되었다.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 계획(2003~2008)』을 수립하면서 정부는 우수선수 육성 체계 확립, 전문체육 시설의 다 기능화 및 현대화,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등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전문체육단체 자율성 및 재정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는 학교운동부 문화를 ‘공부하는 학생선수’ 방향으로 조성하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을

시도하는 등 기존 체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체육진흥계획 중심의 체육정책 수립 경향은 이명박 정부로 들어와 『문화비전 2008~2013』 형식으로 변화했다. 체육 분야만 별도로 정책화하던 체계와 달리 문화와 관광, 체육 간 조화를 이룬 정책 수립을 위한 시도였고, 이때부터 정책 보고서 명칭은 모두 ‘비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정책 계획에 포함되었던 주요사업은 2012년 런던하계올림픽대회 대비 선수 양성 및 훈련 과학화, 우수선수 자원 확대 및 육성 시스템 강화, 비인기 종목 활성화, 스포츠 의과학 및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전문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 여건 개선과 같은 기존 체계의 고도화 및 효율화가 중심을 차지하였다.

박근혜 정부 때는 『스포츠비전 2018』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서에서 정부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육성 기반 조성, 체육인 복지 강화, 지도자 처우개선 및 진로지원, 국가대표 선수촌의 효율화,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체육중점 학급’ 운영 및 과학적 훈련지원, 지역별 스포츠과학 거점센터 설치와 같은 사업을 포함시켰다. 특히 2016년에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로 이분되어 있던 체육단체가 통합되었는데, 이는 행정 중복 및 낮은 효율성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 수준으로까지 단체 통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2030스포츠비전』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서 전문체육과 관련한 주요 사업으로는 체육 관련 제도 개선, 스포츠 공정인식 개선 및 정착, 스포츠 인재 양성시스템 검토, 전문선수 육성시스템 선진화, 스포츠과학의 서비스 지원 전략 강화, 운동선수 교육환경 개선 등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국제스포츠계에서 주요 직위 진출 등 외교적 영향력 발휘를 위한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스포츠 교류 지원을 체계화하고 국제스포츠 교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기관 역량을 강화할 사업도 수립되었다.

### 3. 전문체육 기반 현황

전문체육과 관련한 정책과 함께 살펴볼 내용으로는 시설과 전문인력에 대한 부문으로, 전문체육 시설 및 전문스포츠지도사 양성에 관한 부문이 해당된다. 향후 좀 더 자세히 기술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중심으로 한 ‘전문체육 시설’과 전문인력으로서의 ‘전문스포츠지도사’ 현황이 개괄되었다.

## 1) 전문체육 시설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전문체육 시설로는 ‘선수촌’을 들 수 있다. 국가대표를 포함한 전문체육 선수들에게 과학화된 훈련 환경과 합숙 시설을 제공, 경기력을 향상하고자 건립된 시설이다. 현재 세 개의 국가대표선수촌(태릉선수촌, 태백선수촌,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이 운영 중이며 <표 3-5>는 선수촌 관련 개괄적 현황이다.

표 3-5. 선수촌 현황

구분	태릉선수촌	태백선수촌	진천국가대표선수촌
건립연월	1966년 6월	1998년 6월	2017년 9월
소재지	서울 노원구	강원 태백시	충북 진천군
대지면적*	183,879㎡(55,623평)	32,276㎡(9,763평)	1,405,554㎡(425,180평)
총면적*	62,470.44㎡(18,897평)	2,538㎡(768평)	191,481㎡(57,923평)
수용종목 및 인원	빙상 등 3종목 250명	전 종목 순환훈련	36종목 1,150명
선수 숙소	1개동 238실	1개동 15실	8개동 823실
시설 현황	실내훈련시설 5개소 옥외훈련시설 2개소 부대지원시설 3개소	실내체육시설 1개소 옥외훈련시설 2개소 선수숙소 1개소	실내훈련시설 11개소 옥외훈련시설 10개소 부대지원시설 11개소

\* 설명: [대지면적] 해당 건물을 짓도록 허가된 땅(대지)의 크기  
[총면적] 건물 내부의 모든 층 바닥 면적을 더한 크기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태릉선수촌은 국가대표 선수와 후보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과학화된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통해 국위선양 및 국민통합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66년 6월에 건립되었다. 이후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이 지어지면서 현재 태릉선수촌은 축소되어 2021년 기준 실내훈련시설 5개소, 옥외훈련시설 2개소, 부대지원시설 3개소가 운영되며, 빙상 등 3종목 250명을 수용하고 있다.

태백선수촌은 고(高)지대 훈련을 통한 심폐기능 강화 및 지구력 증강 목적으로 1998년 6월에 건립되었다. 주로 국가대표선수 및 회원종목단체 등록선수(프로팀 소속 선수도 입촌 가능)들이 이용한다. 현재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하고, 고지대 훈련이 필요한 동-하계 종목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 총 면적이 2,538㎡(768평)로서, 선수 숙소는 1개동 15실로 구성되어 있고, 훈련시설의 경우엔 실내체육시설 1개소, 옥외훈련시설 2개소, 선수숙소 1개소를 보유한다. 세 개의 선수촌 중 규모가 가장 작다.

현재 우리나라 선수촌 중 유일하게 ‘국가대표 선수촌’이란 명칭이 붙은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은 2017년 9월에 혁신도시로 선정된 충북 진천군에 건립되었다. 이곳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총면적만 191,481㎡(57,923평)로서, 현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체육 시설이다. 규모로만 보면 태릉선수촌보다 세 배 이상 크다. 36개 종목에 1,150명을 수용하고, 숙소는 8개동 823개실, 훈련시설로는 실내훈련시설 11개소, 옥외훈련시설 10개소, 부대지원시설 11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 2) 전문스포츠지도사 현황

전문체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반이 되는 또 하나는 바로 ‘지도전문인력 육성’이다. 이는 ‘전문스포츠지도사’라는 자격제도로 이루어지는데, 처음 ‘경기지도자’로 시작된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전문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이 변경, 1급과 2급으로 나뉘어 양성 중이다. <표 3-6>은 1974년부터 2021년까지의 전문스포츠지도사 배출 현황이다.

표 3-6. 전문스포츠지도사(구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1974~2021)

(단위: 명)

연도	1급	2급	계
1974~2014년	1,139	31,263	32,402
2015년	69	1,428	1,497
2016년	77	2,739	2,816
2017년	66	1,164	1,230
2018년	41	1,780	1,821
2019년	48	1,808	1,856
2020년	-	564	564
2021년	106	3,996	4,102
총계	1,546	44,742	46,288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21)

우리나라 전문스포츠지도사는 1974년에 2급 137명의 경기지도자 양성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체육지도자 자격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문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양성되어 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격시험 일정이 지연되어 추가취득만 시행된 바, 단 564명(1급 0명, 2급 564명)만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반면, 2021년에는 1급 106명, 2급

3,996명으로 총 4,102명이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예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1974년부터 2021년까지 배출된 전문스포츠지도사(구 경기지도자) 자격 취득자는 총 46,288명(1급: 1,546명, 2급: 44,742명)으로 집계되었다.

### 제3절 전문체육 활성화 정책

전문체육 활성화 정책은 크게 여섯 부문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국가대표를 포함한 ‘우수 선수 육성 체계 지원’, 둘째, 스포츠과학을 적용한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셋째, 하계 전국체육대회, 동계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의 ‘전문체육대회 개최 지원’, 넷째, 국가대표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선수촌 운영’, 다섯째, 학생선수의 훈련 여건 개선 및 체계적 육성, 선수의 경기력과 지도자의 코칭역량 향상 등을 위한 ‘체육계 학교 및 지도자 역량강화 지원’, 마지막으로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인 복지 지원’이다.

#### 1. 우수선수 육성 체계 지원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체육영재 확보는 전문체육 활성화에 있어 핵심이다. 제한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전문선수 양성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초종목(육상, 수영, 체조 등) 육성(‘21년 45억),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21년 229개 클럽 전문선수반 운영), 운동경기부 창단 및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꿈나무선수-후보선수-국가대표선수’로 이루어진 3단계에서 2010년부터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선수-후보선수-국가대표선수’의 『4단계 선수양성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선수 발굴 및 육성에 힘쓰고 있다.

##### 1) 1단계: 꿈나무선수

‘꿈나무선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어린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선발된 선수에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차세대 국가대표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 가. 꿈나무선수 현황

꿈나무선수 선발은 종목별로 각 시·도에서 추천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추천자를 대상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선발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선발 과정은 <그림 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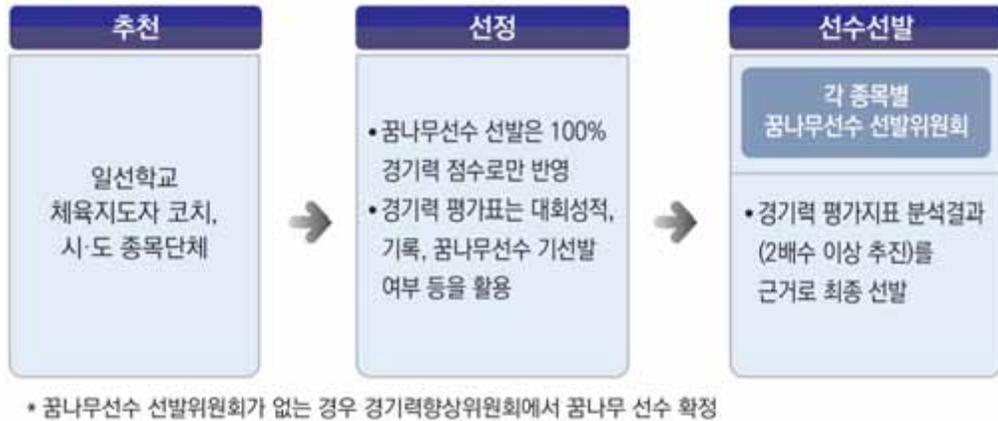


그림 3-1. 꿈나무선수 선발 과정

대한체육회(2021)

1단계에서는 일선 학교 체육지도자(체육교사, 체육단체 코치, 스포츠클럽지도자 등)가 꿈나무선수 후보자를 해당 종목의 시·도 협회에 추천한다. 이렇게 추천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 측정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2단계 선정의 평가기준은 100% 경기력 점수로만 구성되며 대회성적, 기록, 꿈나무선수 기선발 여부 등이 활용된다. 3단계에서는 최종 선발 인원의 2배수 이상의 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각 종목별 꿈나무선수 선발위원회 또는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세부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종목의 꿈나무선수를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차세대스포츠과학지원팀(TF)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선수 향상도 평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꿈나무선수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 팀은 꿈나무선수 선발 제도 모델링을 통해 체격, 기초체력, 전문체력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 및 종목 특이적 측정항목을 개발하며, 측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1년에 선발된 꿈나무선수는 <표 3-7>과 같이 총 22개 종목 844명(남자 390명, 여자 416명)이었다.

표 3-7. 종목별 꿈나무선수 현황(2021)

(단위: 명)

연번	종목		선발인원	경기력향상도 측정평가인원	성별		
					남	여	
1	육상	단거리	120	120	37	19	18
		중장거리			26	13	13
		도약			29	15	14
		투척			28	14	14
2	수영	경영	60	60	40	20	20
		다이빙			15	7	8
		아티스틱스위밍			5	-	5
3	체조	기계	50	50	34	16	18
		리듬			16	-	16
4	빙상	스피드	52	52	28	14	14
		피겨			24	1	23
5	스키	알파인	49	49	13	9	4
		크로스컨트리			11	8	3
		스노보드			11	7	4
		프리스타일			9	5	4
		스키점프			5	4	1
6	핸드볼	40	40	20	20		
7	탁구	32	32	16	16		
8	유도	38	-	-	-	코로나19로 평가 미 신청	
9	테니스	16	16	8	8		
10	하키	44	44	22	22		
11	배드민턴	40	40	20	20		
12	레슬링	24	24	17	7		
13	사격	28	28	14	14		
14	플러레	36	36	12	6	6	
	에베			12	6	6	
	사브르			12	6	6	
15	아이스하키	23	23	-	23		
16	바이애슬론	22	22	11	11		
17	컬링	19	19	10	9		
18	철인3종	10	10	5	5		
19	근대5종	20	20	12	8		
20	태권도	56	56	32	24		
21	소프트테니스	36	36	18	18		
22	자전거	29	29	15	14		
합계		844	806	390	416		

※ 주: 2021년도 꿈나무선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력 점수만 반영하여 각 해당종목 꿈나무선수 선발위원회 또는 경기력향상위원회 등에서 선발함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나. 꿈나무선수 훈련 및 관리

꿈나무선수 훈련과 관리는 ‘하계 및 동계훈련’과 ‘전담지도자 순회지도’로 이루어진다. 전담지도자 순회지도는 꿈나무선수 및 소속지도자의 평상시 훈련 동기부여를 위한 사업으로서, 22개 종목별로 각 1명씩 전담지도자가 배정되어 합숙훈련 및 순회 지도를 총괄하고 지도계획을 수립한다. 선수와 소속 지도자는 이를 통해 정기적인 훈련점검과 우수경기 관련 정보를 받는다. <표 3-8>은 종목별 꿈나무선수 하계 합숙훈련 현황이다.

표 3-8. 종목별 꿈나무선수 하계합숙훈련 현황 (단위: 명)

연번	종목	기간	훈련장소	훈련 인원/정원						
				선수		지도자		계		
				남	여	남	여	선수	지도자	
1	근대5종	2021.09.09.~09.15.	각 소속팀	12	8	3	1	20	4	
2	레슬링	2021.08.09.~08.15.	소속팀 훈련장	17	7	4	1	24	5	
3	바이애슬론	2021.07.26.~07.31.	각 소속팀 시도	11	11	3	1	22	4	
4	배드민턴	2021.08.20.~08.26.	각 팀 훈련장 및 자택	20	20	5	2	40	7	
5	빙상	스피드	2021.07.25.~07.31.	개인 훈련지	14	14	2	2	28	4
		피겨	2021.08.09.~08.15.	개인 훈련지	1	23	-	2	24	2
6	사격	2021.07.21.~07.27.	개인별 훈련장	14	14	3	2	28	5	
7	소프트테니스	2021.08.06.~08.12.	소속팀 훈련장	18	18	3	3	36	6	
8	수영	경영	2021.09.27.~10.03.	소속팀 훈련장	20	20	5	1	40	6
		다이빙			7	8	-	3	15	3
		아티스틱스위밍			-	5	-	1	5	1
9	스키	알파인	2021.08.02.~08.08.	소속 훈련장	9	4	2	-	13	2
		크로스컨트리	2021.07.26.~08.01.	각 지역 훈련장	8	3	1	1	11	2
		스노보드	2021.08.02.~08.08.	비대면훈련	7	4	2	-	11	2
		프리스타일	2021.08.02.~08.08.	개인소속팀 훈련장	5	4	1	1	9	2
		스키점프	2021.07.21.~07.23. 2021.07.26.~07.29.	소속 훈련장	4	1	1	-	5	1
10	아이스하키	2021.12.13.~12.21.	온라인	-	23	1	3	23	4	
11	유도	2021.07.26.~07.31.	온라인	21	17	4	3	38	7	
12	육상	단거리	2021.08.17.~08.21.	각 소속 훈련장	19	18	4	2	37	6
		중장거리/경보			13	13	4	1	26	5
		도약			15	14	4	1	29	5
		투척			14	14	5	1	28	6

연번	종목		기간	훈련장소	훈련 인원/정원					
					선수		지도자		계	
					남	여	남	여	선수	지도자
13	자전거	트랙	2021.08.01.~08.07.	소속 훈련장	5	4	2	-	9	2
		BMX			10	10	3	1	20	4
14	철인3종		2021.08.02.~08.08.	소속 훈련장	5	5	2	1	10	3
15	체조	남자	미 실시	미정	-	-	-	-	0	0
		여자	2021.09.06.~09.12.	각 선수 훈련장 및 자택	-	18	-	4	18	4
		리듬	2021.09.04.~09.10.		-	16	-	2	16	2
16	컬링		2021.07.09.~07.11. 2021.07.15.~07.18.	온라인	10	9	1	3	19	4
17	탁구		2021.11.15.~11.22.	각 학교 훈련장	16	16	4	2	32	6
18	태권도		2021.08.02.~08.08.	소속 훈련장	32	24	5	2	56	7
19	테니스		2021.08.30.~09.05.	소속 훈련장	8	8	2	2	16	4
20	펜싱	플러레	2021.08.10. (1일간 전체 참여) 2021.08.11.~08.12.	각 소속팀 훈련장 및 개인	6	6	3	3	12	6
		에페	2021.08.13.~08.14.		6	6	-	-	12	0
		사브르	2021.08.16.~08.17.		6	6	-	-	12	0
21	하키		2021.09.24.~09.30.	온라인	22	22	5	2	44	7
22	핸드볼		2021.08.16.~08.22.	소속 훈련장	20	20	4	2	40	6
합계					395	433	88	56	828	144
					828		144		972	

※ 주: 하계비대면훈련기간: 2021.07.~2021.08.(코로나19로 인하여 12월까지 유연하게 실시)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 꿈나무선수 하계합숙훈련은 총 22개 종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훈련에 참가한 총 인원은 선수 828명, 지도자 144명으로 총 972명이 선발되었다.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 역시 하계합숙훈련과 동일하게 총 22개 종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1년 동계훈련에 참가한 인원은 선수 841명과 지도자 148명으로, 총 989명이었다. 아래의 <표 3-9>는 종목별 꿈나무선수 동계 합숙훈련 현황이다.

표 3-9. 종목별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 현황

(단위: 명)

연번	종목	기간	훈련장소	훈련 인원/정원						
				선수		지도자		계		
				남	여	남	여	선수	지도자	
1	근대5종	2021.12.01.~12.23.	소속 훈련장	10	10	3	1	20	4	
2	레슬링	2022.02.14.~02.19.	소속팀 훈련장	18	6	4	1	24	5	
3	바이애슬론	2021.11.15.~11.20.	각종 소재지	11	11	3	1	22	4	
4	배드민턴	2021.12.02.12.08.	각 팀 훈련장 및 자택	20	20	5	2	40	7	
5	빙상	스피드	2022.01.10.~01.16.	개인 훈련지	14	14	2	2	28	4
		피겨			1	23	-	2	24	2
6	사격	2022.01.10.~01.16.	개인별 훈련장	14	14	3	2	28	5	
7	소프트테니스	2022.02.14.~02.20.	소속팀 훈련장	18	18	3	3	36	6	
8	수영	경영	2021.12.15.~12.20.	소속 훈련장	20	20	5	1	40	6
		다이빙			7	8	-	3	15	3
		아티스틱스위밍			-	5	-	1	5	1
9	스키	알파인	2021.12.13.~12.19.	소속 훈련장	9	4	2	-	13	2
		크로스컨트리	2022.01.10.~01.16.	각 지역 훈련장	8	3	1	1	11	2
		스노보드	2022.01.09.~01.15.	비대면훈련	7	4	2	-	11	2
		프리스타일	2022.01.09.~01.15.	개인 소속팀 훈련장	5	4	1	1	9	2
		스키점프	2021.12.01.~12.03. 2021.12.06.~12.09.	소속 훈련장	4	1	1	-	5	1
10	아이스하키	2022.01.24.~01.28.	온라인	-	23	1	3	23	4	
11	유도	2022.01.10.~01.15.	자택 및 학교훈련장	21	17	4	3	38	7	
12	육상	단거리	2021.12.14.~12.18.	각 소속 훈련장	18	18	4	2	36	6
		중장거리			13	13	4	1	26	5
		도약			15	13	4	1	28	5
		투척			14	14	5	1	28	6
13	자전거	트랙	2021.11.21.~11.27.	소속 훈련장	9	4	2	-	13	2
		BMX			6	10	2	2	16	4
14	철인3종	2021.12.27.~2022.01.04.	소속 훈련장	5	5	2	1	10	3	
15	체조	남자	2022.01.10.~01.16.	각 선수 훈련장 및 자택	16	-	4	-	16	4
		여자	2021.12.13.~12.19.	각 선수 훈련장 및 자택	-	18	-	4	18	4
		리듬	2022.01.24.~01.30.	각 선수 훈련장 및 자택	-	16	-	2	16	2
16	컬링	2021.12.18.~12.24.	온라인	9	9	1	3	18	4	
17	탁구	2022.01.11.~01.18.	각 학교 훈련장	16	16	4	2	32	6	
18	태권도	2022.01.03.~01.09.	소속 훈련장	32	24	5	2	56	7	

연번	종목	기간	훈련장소	훈련 인원/정원					
				선수		지도자		계	
				남	여	남	여	선수	지도자
19	테니스	2022.01.16.~01.22.	소속 훈련장	8	8	3	1	16	4
20	펜싱	플러레 사브르 에페	2021.12.06.~12.13. 각 소속팀 훈련장 및 개인	6	6	1	1	12	2
				6	6	1	1	12	2
				6	6	1	1	12	2
21	하키	2022.01.25.~01.31.	온라인	22	22	5	2	44	7
22	핸드볼	2021.11.08.~11.14	소속 훈련장	20	20	4	2	40	6
합계				408	433	92	56	841	148
				841		148		989	

주: 동계 비대면훈련기간: 2021.12.~2022.02.(코로나19로 인하여 11월부터 유연하게 실시)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 2) 2단계: 청소년대표선수

청소년대표선수는 기존의 3단계 우수선수 육성체계에서 2010년에 새롭게 고안된 4단계에 처음 포함된 급으로서, 과거부터 관련하여 제기되어 오던 꿈나무선수와 국가대표 후보 선수 간 공백을 메울 중간 연령대 역할의 필요로 인해 도입되었다.

### 가. 청소년대표선수 현황

청소년대표선수는 14세에서 18세까지의 선수를 대상으로 공인된 입상성적(국내 전국규모 대회와 국제대회)과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각 종목별 경기력향상위원회가 평가 및 선발한다. 2021년에는 <표 3-10>과 같이 29개 종목에 총 901명이 선발되었다.

표 3-10. 종목별 청소년대표선수 사업 인력 현황(2021)

(단위: 명)

연번	종목	선수			지도자			물리치료사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	육상	19	13	32	5	-	5	1	-	1	25	13	38
2	수영	32	18	50	7	2	9	1	-	1	40	20	60
3	체조	15	28	43	3	6	9	-	1	1	18	35	53
4	레슬링	42	-	42	7	-	7	-	1	1	49	1	50
5	복싱	19	3	22	4	-	4	1	-	1	24	3	27
6	역도	16	14	30	5	-	5	1	-	1	22	14	36
7	유도	18	14	32	3	2	5	1	-	1	22	16	38
8	양궁	12	12	24	-	5	5	-	-	0	12	17	29

연번	종목	선수			지도자			물리치료사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9	사격	22	22	44	4	2	6	-	1	1	26	25	51	
10	핸드볼	21	21	42	4	2	6	-	-	0	25	23	48	
11	하키	24	24	48	4	3	7	-	1	1	28	28	56	
12	탁구	15	15	30	4	1	5	1	-	1	20	16	36	
13	펜싱	22	22	44	6	1	7	-	1	1	28	24	52	
14	테니스	6	6	12	5	-	5	1	-	1	12	6	18	
15	자전거	19	16	35	4	2	6	1	-	1	24	18	42	
16	조정	16	14	30	4	2	6	1	-	1	21	16	37	
17	요트	19	10	29	6	-	6	1	-	1	26	10	36	
18	카누	18	8	26	4	1	5	-	-	0	22	9	31	
19	소프트볼	-	17	17	2	1	3	-	1	1	2	19	21	
20	배드민턴	20	20	40	5	2	7	1	-	1	26	22	48	
21	태권도	25	23	48	4	1	5	-	-	0	29	24	53	
22	근대5종	8	7	15	3	-	3	1	-	1	12	7	19	
23	아이스하키	-	23	23	1	2	3	-	1	1	1	26	27	
24	빙상	스피드	8	7	15	1	1	2	1	-	1	10	8	18
		쇼트트랙	8	7	15	2	1	3	-	-	0	10	8	18
		피겨	2	8	10	-	2	2	-	-	0	2	10	12
		소계	18	22	40	3	4	7	1	0	1	22	26	48
25	바이애슬론	9	9	18	3	1	4	-	-	0	12	10	22	
26	스키	알파인	8	4	12	2	-	2	-	-	0	10	4	14
		크로스	8	2	10	2	-	2	-	-	0	10	2	12
		스키점프	2	1	3	1	-	1	-	-	0	3	1	4
		스노보드	8	2	10	2	-	2	-	-	0	10	2	12
		프리스타일	6	1	7	2	-	2	-	-	0	8	1	9
		소계	32	10	42	9	0	9	0	0	0	41	10	51
27	컬링	5	4	9	2	1	3	1	-	1	8	5	13	
28	철인3종	5	5	10	2	1	3	1	-	1	8	6	14	
29	력비	24		24	1	-	1	-	-	0	25	0	25	
합계		501	400	901	114	42	156	15	7	22	630	449	1,079	

※ 공통기준: 대상연령: 14세~18세, 선수선발기준: 종목별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발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 청소년대표선수 사업에는 29개 종목 901명의 선수(남자 501명, 여자 400명)와 전담 또는 전문 지도자 156명, 물리치료사 22명을 포함한 총 1,079명이 참가하였다. 선수의 경우, 2020년 29개 종목 847명(남자 468명, 여자 379명)에 비해 참가 인원이 54명 증가하였다.

## 나. 청소년대표선수 훈련 및 관리

청소년대표선수 훈련은 방학을 이용한 합숙훈련과 국외전지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합숙훈련은 전면 비대면 훈련으로 전환되었으며, 국외전지훈련의 경우 실시되지 않았다. <표 3-11>은 청소년대표선수 종목별 합숙훈련 현황이다.

표 3-11. 종목별 청소년대표선수 합숙훈련 현황

(단위: 명)

연번	종목	기간	훈련장소	인원									
				선수		지도자		의무트레이너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계	
1	육상	'21.08.17.~08.21. (1차) '21.12.14.~12.18. (2차)	비대면 훈련	19	13	5	-	1	-	25	13	38	
2	수영	'21.09.13.~09.18. (1차) '21.12.13.~12.18. (2차)	비대면 훈련	32	18	7	2	1	-	40	20	60	
3	체조	남자기계	'21.09.04.~09.10. (1차) '21.12.04.~12.08. (2차)	비대면 훈련	15	-	3	-	-	18	0	18	
		여자기계	'21.09.08.~09.14. (1차) '21.12.13.~12.19. (2차)	비대면 훈련	-	14	-	3	-	1	0	18	18
		리듬체조	'21.08.30.~09.05. (1차) '21.12.06.~12.10. (2차)	비대면 훈련	-	14	-	3	-	-	0	17	17
4	레슬링	'21.08.09.~08.15. (1차) '21.12.08.~12.14. (2차)	비대면 훈련	42	-	7	-	-	1	49	1	50	
5	복싱	'21.07.19.~07.24. (1차) '21.11.08.~11.10. (2차)	비대면 훈련	19	3	4	-	1	-	24	3	27	
6	역도	'21.07.29.~08.06. (1차) '21.12.06.~12.14. (2차)	비대면 훈련	16	14	5	-	1	-	22	14	36	
7	유도	'21.07.26.~07.31. (1차) '21.12.19.~12.24. (2차)	비대면 훈련	18	14	3	2	1	-	22	16	38	
8	양궁	'21.07.19.~07.23. (1차) '21.11.22.~11.24. (2차)	비대면 훈련	12	12	-	5	-	-	12	17	29	
9	사격	'21.07.23.~07.29. (1차) '21.11.21.~11.27. (2차)	비대면 훈련	22	22	4	2	-	1	26	25	51	
10	핸드볼	'21.08.02.~08.08. (1차) '21.12.06.~12.12. (2차)	비대면 훈련	21	21	4	2	-	-	25	23	48	
11	하키	'21.08.25.~08.31. (1차) '21.12.17.~12.23. (2차)	비대면 훈련	24	24	4	3	-	1	28	28	56	
12	탁구	'21.07.26.~08.01.	비대면 훈련	15	15	4	1	1	-	20	16	36	
13	펜싱	'21.08.22.~08.28. (1차) '21.12.06.~12.13. (2차)	비대면 훈련	22	22	6	1	-	1	28	24	52	
14	테니스	'21.08.25.~08.31. (1차) '21.12.08.~12.14. (2차)	비대면 훈련	6	6	5	-	1	-	12	6	18	

연번	종목	기간	훈련장소	인원									
				선수		지도자		의무트레이너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계	
15	자전거	'21.08.16.~08.22. (1차) '21.11.21.~11.27. (2차)	비대면 훈련	19	16	4	2	1	-	24	18	42	
16	조정	'21.09.13.~09.17. (1차) '21.12.06.~12.10. (2차)	비대면 훈련	16	14	4	2	1	-	21	16	37	
17	요트	'21.08.02.~08.08. (1차) '21.11.06.~11.27. (2차)	비대면 훈련	19	10	6	-	1	-	26	10	36	
18	카누	'21.09.10.~09.16. (1차) '21.11.15.~11.23. (2차)	비대면 훈련	18	8	4	1	-	-	22	9	31	
19	소프트볼	'21.08.07.~08.08. '21.08.14.~08.16. (1차) '21.12.19.~12.22. (2차)	비대면 훈련	-	17	2	1	-	1	2	19	21	
20	배드민턴	'21.08.23.~08.29. (1차) '21.11.15.~11.23. (2차)	비대면 훈련	20	20	5	2	1	-	26	22	48	
21	태권도	'21.08.07.~08.13. (1차) '21.12.13.~12.19. (2차)	비대면 훈련	25	23	4	1	-	-	29	24	53	
22	근대5종	'21.09.09.~09.15. (1차) '21.12.17.~12.23. (2차)	비대면 훈련	8	7	3	-	1	-	12	7	19	
23	아이스하키	'21.11.15.~11.19. (1차) '21.11.27.~12.01. (2차)	비대면 훈련	-	23	1	2	-	1	1	26	27	
24	빙상	'21.07.25.~07.31. '21.08.09.~08.15. (1차) '21.12.13.~12.19. (2차)	비대면 훈련	18	22	3	4	1	-	22	26	48	
25	바이애슬론	'21.07.26.~07.31. (1차) '21.11.15.~11.20. (2차)	비대면 훈련	9	9	3	1	-	-	12	10	22	
26	스키	알파인	'21.07.01.~07.07. (1차) '21.12.11.~12.17. (2차)	비대면 훈련	8	4	2	-	-	-	10	4	14
		크로스 컨트리	'21.08.01.~08.07. (1차) '21.12.19.~12.25. (2차)	비대면 훈련	8	2	2	-	-	-	10	2	12
		스키점프	'21.07.12.~07.20. (1차) '21.12.13.~12.21. (2차)	비대면 훈련	2	1	1	-	-	-	3	1	4
		스노보드	'21.07.01.~07.07. (1차) '21.11.22.~11.28. (2차)	비대면 훈련	8	2	2	-	-	-	10	2	12
		프리스타 일	'21.08.01.~08.07. (1차) '21.01.16.~01.22. (2차)	비대면 훈련	6	1	2	-	-	-	8	1	9
27	컬링	'21.08.09.~08.15. (1차) '21.11.11.~11.21. (2차)	비대면 훈련	5	4	2	1	1	-	8	5	13	
28	철인3종	'21.08.09.~08.15. (1차) '21.12.13.~12.19. (2차)	비대면 훈련	5	5	2	1	1	-	8	6	14	
29	럭비	'21.12.07.~12.10. (1차) '21.12.27.~12.29. (2차)	비대면 훈련	24	-	1	-	-	-	25	0	25	
합계				501	400	114	42	15	7	1,079			
				901		156		22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 청소년대표선수 합숙훈련에는 29개 종목에 대하여 선수 901명, 지도자 156명, 의무트레이너 22명 등 총 1,079명이 참여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대표 합숙 훈련은 전 종목 비대면 훈련 방식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실시되었다. 2021년 청소년국가대표 합숙훈련 인원은 총 1,079명으로 2020년에 비해 82명 증가하였다.

### 3) 3단계: 국가대표 후보선수

세 번째 단계인 ‘국가대표 후보선수’는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운영된다. 첫째, 잠재력 있는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함으로써 우수선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둘째, 국가대표선수와의 상호경쟁 및 우수선수층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며, 셋째, 국가대표선수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 가. 국가대표 후보선수 현황

국가대표 후보선수 육성사업은 1982년 대한체육회가 주관, 잠재력 있는 우수 선수 4,359명 선발을 시작으로 1983년부터 매년 각 경기단체 중심의 선발로 지속되는 중이다. <표 3-12>는 2021년도에 선발된 국가대표 후보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코로나19 전담 지원 요원 현황이다.

표 3-12. 종목별 국가대표 후보선수 및 지도자 현황

(단위: 명)

종목	선수			지도자					코로나19 전담 지원요원			합계	
	남	여	계	전임		전문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남	여						
1 육상	단·허들	20	13	33	1	-	3	1	5	1	1	2	40
	중·장거리	24	14	38	1	-	3	1	5	-	2	2	45
	도약·혼성	18	17	35	-	1	4	-	5	1	1	2	42
	투척	15	14	29	1	-	3	-	4	-	1	1	34
	소계	77	58	135	3	1	13	2	19	2	5	7	161
2 수영	경영	33	33	66	1	-	4	1	6	2	1	3	75
	다이빙	14	13	27	1	-	1	1	3	-	1	1	31
	수구	15	-	15	-	-	2	-	2	1	-	1	18
	아티스틱스위밍	-	10	10	-	1	-	1	2	-	-	0	12
	소계	62	56	118	2	1	7	3	13	3	2	5	136
3 체조	기계	27	21	48	1	1	2	2	6	2	-	2	56
	리듬	-	12	12	-	1	-	1	2	-	1	1	15
	소계	27	33	60	1	2	2	3	8	2	1	3	71

종목		선수			지도자					코로나19 전담 지원요원			합계	
		남	여	계	전임		전문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남	여						
4	레슬링	자유형	21	8	29	1	-	1	1	3	-	1	1	33
		그레코로만형	21	-	21	-	-	2	-	2	-	1	1	24
		소계	42	8	50	1	0	3	1	5	0	2	2	57
5	복싱	26	6	32	1	-	3	-	4	2	-	2	38	
6	역도	18	12	30	1	-	2	1	4	1	-	1	35	
7	유도	24	24	48	1	-	3	1	5	-	2	2	55	
8	양궁	20	20	40	1	-	3	-	4	2	-	2	46	
9	사격	49	35	84	1	1	4	4	10	2	2	4	98	
10	배구	18	18	36	1	-	2	1	4	1	-	1	41	
11	핸드볼	24	24	48	1	-	1	2	4	1	-	1	53	
12	하키	24	24	48	1	-	3	-	4	1	1	2	54	
13	탁구	16	16	32	1	-	3	1	5	1	1	2	39	
14	펜싱	24	24	48	1	-	2	2	5	2	1	3	56	
15	테니스	12	12	24	1	-	2	1	4	-	-	0	28	
16	자전거	25	15	40	1	-	2	3	6	-	1	1	47	
17	조정	16	14	30	1	-	3	1	5	-	1	1	36	
18	요트	25	4	29	1	-	3	-	4	1	1	2	35	
19	카누	18	8	26	1	-	3	-	4	1	-	1	31	
20	야구소프트볼	-	17	17	-	1	-	1	2	-	1	1	20	
21	배드민턴	30	30	60	1	-	3	2	6	1	2	3	69	
22	태권도	24	24	48	1	-	2	1	4	1	1	2	54	
23	근대5종	10	5	15	1	-	1	-	2	1	-	1	18	
24	축구	-	30	30	-	1	1	1	3	1	-	1	34	
25	아이스하키	23	-	23	1	-	2	-	3	1	-	1	27	
26	빙상	스피드	15	15	30	1	-	2	1	4	-	1	1	35
		피겨	3	9	12	-	-	-	2	2	-	1	1	15
		쇼트트랙	24	12	36	1	-	3	1	5	2	-	2	43
		소계	42	36	78	2	0	5	4	11	2	2	4	93
27	바이애슬론	9	9	18	1	-	1	1	3	1	-	1	22	
28	스키	알파인	11	4	15	1	-	1	-	2	1	-	1	18
		크로스	8	6	14	1	-	1	-	2	-	1	1	17
		스키점프	4	-	4	-	-	1	-	1	1	-	1	6
		스노보드	9	1	10	-	-	1	-	1	1	-	1	12
		프리스타일	8	2	10	-	-	1	-	1	1	-	1	12
		소계	40	13	53	2	0	5	0	7	4	1	5	65
29	컬링	5	5	10	1	-	1	1	3	-	1	1	14	
합계 (29개 종목, 43개 세부종목)		730	580	1,310	32	7	85	37	161	34	28	62	1,533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 국가대표 후보선수는 29개 종목에서 1,310명이 선발되었고, 지도자도 총 161명(전임 39명, 전문 122명)이 선발되었다. 이렇게 선발된 후보선수 중에는 당해에 국가대표 결원 등의 이유로 국가대표에 선발되기도 하는데, <표 3-13>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대표 후보선수의 국가대표 선발 비율(당해 결원 충원율)을 보여준다.

표 3-13. 당해 국가대표 후보선수의 국가대표선수 충원 현황(2017~2021)

(단위: 명, %)

연도	발굴	탈락	최종선발(육성인원)	국가대표선수 충원	비율
2017	1,310	-	1,310	67	5.1
2018	1,310	-	1,310	66	5.0
2019	1,310	5	1,305	68	5.2
2020	1,310	4	1,306	-	-
2021	1,310	-	1,310	23	1.8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 선발된 1,310명의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원이 최종적으로 훈련에 참가하였으며, 이 중 당해 국가대표 결원 발생 등의 이유로 국가대표가 된 선수는 23명(1.8%)이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의 국가대표 '결원 충원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평균 3.4%였다. 당해 결원 충원율이 아닌, 2021년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후보선수 출신' 비율을 조사하면 <표 3-14>와 같다.

표 3-14. 종목별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 비율(2021)

(단위: 명, %)

연번	종목	국가대표 후보선수 수	국가대표 선수 수	후보선수 출신 국가대표선수 수(%)		비후보선수 출신 국가대표선수 수(%)	
				수	(%)	수	(%)
1	근대5종	15	14	12	85.71%	2	14.29%
2	레슬링	50	42	32	76.19%	10	23.81%
3	바이애슬론	18	16	14	87.50%	2	12.50%
4	배구	36	24	19	79.17%	5	20.83%
5	배드민턴	60	40	35	87.50%	5	12.50%
6	복싱	32	26	21	80.77%	5	19.23%
7	빙상	78	50	48	96.00%	2	4.00%
8	사격	84	57	42	73.68%	15	26.32%
9	소프트볼	17	15	12	80.00%	3	20.00%
10	수영	118	31	30	96.77%	1	3.23%
11	스키	53	44	33	75.00%	11	25.00%

연번	종목	국가대표 후보선수 수	국가대표 선수 수	후보선수 출신 국가대표선수 수(%)		비후보선수 출신 국가대표선수 수(%)	
12	아이스하키	23	24	23	95.83%	1	4.17%
13	양궁	40	16	15	93.75%	1	6.25%
14	역도	30	26	15	57.69%	11	42.31%
15	요트	29	19	17	89.47%	2	10.53%
16	유도	48	36	36	100.00%	0	0.00%
17	육상	135	37	34	91.89%	3	8.11%
18	자전거	40	32	26	81.25%	6	18.75%
19	조정	30	16	15	93.75%	1	6.25%
20	체조	60	34	29	85.29%	5	14.71%
21	축구	30	23	21	91.30%	2	8.70%
22	카누	26	12	8	66.67%	4	33.33%
23	컬링	10	11	2	18.18%	9	81.82%
24	탁구	32	13	9	69.23%	4	30.77%
25	태권도	48	23	4	17.39%	19	82.61%
26	테니스	24	11	6	54.55%	5	45.45%
27	펜싱	48	48	44	91.67%	4	8.33%
28	하키	48	48	48	100.00%	0	0.00%
29	핸드볼	48	35	35	100.00%	0	0.00%
합계		1,310	823	685	83.23%	138	16.77%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2021년 ‘종목별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 비율’은 당해 기준이 아닌, 올해 국가대표 선수 중 과거에 후보선수를 경험해 본 비율을 파악한 수치다. 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가대표선수 823명 중 후보선수 출신은 685명(83.23%; '20년 81.50%)이었고, 후보선수를 거치지 않은 국가대표선수는 138명(16.77%; '20년 18.61%)이었다.

#### 나.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 및 관리

국가대표 후보선수를 대상으로 실시된 합숙훈련은 종목에 따라 각기 그 장소를 달리 선정하여 매년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합숙훈련 및 전지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하계 합숙훈련은 코로나19의 악화된 상황 속에서 훈련이 모두 연기 또는 취소되었다. <표 3-15>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 합숙훈련 시행 결과의 내용이다.

표 3-15. 종목별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 합숙훈련 현황

(단위: 명)

연번	종목	기간	훈련장소	인원							
				선수			지도자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1	육상	단거리-허들	2022.1.3.~1.16.	예천공설운동장	19	14	33	3	1	4	37
		중 장거리/경보	2022.1.3.~1.16.	해남우슬경기장	26	12	38	4	1	5	43
		도약-혼성	2022.1.3.~1.16.	예천공설운동장	19	16	35	4	1	5	40
		투척	2022.1.3.~1.16.	여수망마경기장	15	14	29	4	-	4	33
2	수영	경영	2022.1.9.~1.28.	국군체육부대	33	33	66	4	2	6	72
		다이빙	2022.1.7.~1.20.	인천문학박태환수영장	14	13	27	2	1	3	30
		수구	2022.1.11.~1.23.	인천문학박태환수영장	15	-	15	2	-	2	17
		아티스틱스위밍	2022.2.5.~2.11.	김천실내수영장	-	10	10	-	2	2	12
3	체조	기계(남)	2022.1.19.~1.29.	인천체고	27	-	27	3	-	3	30
		기계(여)	2022.2.4.~2.13.	인천체고	-	21	21	-	3	3	24
		리듬체조	2021.12.19.~12.30.	광주여대체육관	-	12	12	-	2	2	14
4	레슬링	자유형	2022.1.12.~1.25.	평창 국민체육센터	21	8	29	2	1	3	32
		그레코	2022.1.12.~1.25.	평창 국민체육센터	21	-	21	2	-	2	23
5	복싱	2022.1.12.~1.21.	청양군민체육관	27	5	32	4	-	4	36	
6	역도	2022.1.18.~1.31.	보성군다목적체육관	18	12	30	3	1	4	34	
7	유도	2022.1.15.~1.28.	여수진남경기장	24	24	48	4	1	5	53	
8	양궁	2022.1.8.~1.21.	여주시청양궁장/ 원주양궁장	20	20	40	4	-	4	44	
9	사격	2022.1.13.~1.26.	대구국제사격장/ 포항실내사격장	42	42	84	5	5	10	94	
10	배구	남자	2021.12.20.~12.31.	하동실내체육관	18	-	18	2	-	2	20
		여자	2022.1.3.~1.14.	하동실내체육관	-	18	18	-	2	2	20
11	핸드볼	남자	2022.1.10.~1.21.	삼척고등학교체육관	24	-	24	2	-	2	26
		여자	2022.2.7.~2.18.	제주공천포 전지훈련체육관	-	24	24	-	2	2	26
12	하키	2022.2.14.~2.27.	동해썬라이즈 국제하키경기장	24	24	48	4	-	4	52	
13	탁구	2022.1.27.~2.2.	결초보은체육관	16	16	32	4	1	5	37	
14	펜싱	2022.1.3.~1.17.	익산실내체육관	24	24	48	3	2	5	53	
15	자전거	2022.1.2.~1.15.	전남 강진군일원	22	18	40	3	3	6	46	
16	조정	2022.1.6.~1.19.	강원 화천군 일원	16	14	30	4	1	5	35	
17	요트	2022.2.14.~2.27.	부산수영만요트경기장	18	11	29	4	-	4	33	
18	카누	2022.1.13.~1.26.	전남 목포시 일원	16	10	26	4	-	4	30	
19	야구소프트볼	2022.2.8.~2.17.	기장소프트볼구장	-	17	17	-	2	2	19	
20	배드민턴	2022.1.10.~1.23.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30	30	60	4	2	6	66	

연번	종목	기간	훈련장소	인원						계	
				선수			지도자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21	태권도	2022.1.3.~1.12.	구례실내체육관	24	24	48	3	1	4	52	
22	근대5종	2022.1.9.~1.23.	국군체육부대	8	7	15	2	-	2	17	
23	축구	2022.1.2.~1.8.	양산종합운동장	-	30	30	1	2	3	33	
24	아이스하키	2022.1.20.~1.21./ 1.24.~1.28.	경기단체회의실/ 고려대링크장	23	-	23	3	-	3	26	
25	빙상	스피드	2022.2.13.~2.19.	태릉실내빙상장	18	12	30	3	1	4	34
		피겨	2022.1.11.~1.22.	태릉실내빙상장	3	9	12	-	2	2	14
		쇼트트랙	2022.1.24.~1.30.	고양어울림누리빙상장	22	14	36	4	1	5	41
26	바이애슬론	2022.1.16.~1.29.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	9	9	18	2	1	3	21	
27	스키	알파인	2022.2.11.~2.24.	용평리조트	10	5	15	2	-	2	17
		크로스	2022.1.3.~1.16.	알펜시아	10	4	14	2	-	2	16
		스키점프	2022.1.1.~1.14.	알펜시아	1	1	2	1	-	1	3
		스노보드	2022.1.3.~1.16.	휘닉스 평창	9	1	10	1	-	1	11
		프리스타일	2022.2.14.~2.27.	휘닉스 평창	9	1	10	1	-	1	11
28	컬링	2021.12.11.~12.22.	강릉컬링센터	5	4	9	2	1	3	12	
합계(28종목)				700	583	1,283	111	45	156	1,439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 합숙훈련에는 28개 종목 총 1,439명(선수 1,283명, 지도자 156명)이 참여하였고, 이는 2020년 27개 종목 1,362명에서 77명 늘어난 수치이다.

국내 합숙훈련과 함께 매년 실시되는 국외전지훈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에는 11개 종목에 대해서만 실시되었으며, 이는 <표 3-16>과 같다.

표 3-16. 종목별 국가대표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 현황(2021)

(단위: 명)

연번	종목	기간	장소	인원						계	
				선수			지도자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1	레슬링	2021.11.17.~11.28.	이집트	8	-	8	2	-	2	10	
2	바이애슬론	2021.11.28.~12.20.	이태리	5	5	10	3	-	3	13	
3	빙상	스피드	2022.1.16.~2.1.	오스트리아	5	5	10	2	-	2	12
4	스키	알파인	2021.11.10.~12.5.	프랑스	5	3	8	2	-	2	10
		스노보드	2021.11.14.~12.5.	독일, 러시아	5	1	6	2	-	2	8
		프리스타일	2021.11.11.~11.25.	스웨덴	1	-	1	1	-	1	2
		크로스컨트리	2021.11.31.~12.17.	이태리	4	2	6	1	-	1	7

연번	종목	기간	장소	인원						계	
				선수			지도자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5	아이스하키	2021.12.7.~12.21.	루마니아	23	-	23	3	-	3	26	
6	컬링	2022.1.4.~1.26.	캐나다	5	4	9	2	1	3	12	
7	태권도	2022.2.3.~2.15.	UAE, 터키	12	12	24	3	1	4	28	
8	하키	남자	2021.11.19.~12.7.	인도	18	-	18	2	-	2	20
합계(11종목)				91	32	123	23	2	25	148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에는 선수 123명과 지도자 25명 등 총 148명이 참여하였다.

#### 4) 4단계: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는 우수선수 육성 체계에서의 최종 단계로서,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선수를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진천국가대표선수촌과 태릉선수촌에 입촌하여 훈련을 하거나 촌외에서 종목별로 가장 적합한 곳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 가. 국가대표선수 현황

국가대표선수 단계에는 선수뿐 아니라 코치 및 트레이너 등 다양한 훈련 인원이 포함된다. 2021년 기준 국가대표선수 및 관련된 훈련 인원 현황은 <표 3-17>과 같다.

표 3-17. 종목별 국가대표선수 및 훈련 인원 현황(2021)

(단위: 명)

구분	연번	종목	엔트리			훈련인원					훈련인원 합계
			남	여	소계	선수			코치	체력·심리· 의무 트레이너	
						남	여	소계			
하계 올림픽 대회 종목 (32)	1	양궁	3	3	6	8	8	16	5	1	22
	2	육상	24	23	47	22	11	33	9	1	43
	3	배드민턴	8	8	16	20	20	40	6	2	48
	4	야구소프트볼	24	15	39	24	15	39	5	1	45
	5	농구	16	16	32	16	16	32	6	2	40
	6	복싱	8	5	13	16	10	26	6	1	33
	7	카누	11	5	16	11	5	16	4	-	20
	8	자전거	21	19	40	21	14	35	6	3	44

구분	연번	종목	엔트리			훈련인원					훈련인원 합계	
			남	여	소계	선수			코치	체력·심리· 의무 트레이너		
						남	여	소계				
하계 올림픽 대회 종목 (32)	9	승마	12	-	12	12	-	12	3	-	15	
	10	펜싱	12	12	24	24	24	48	7	2	57	
	11	축구	18	18	36	18	18	36	4	-	40	
	12	골프	4	4	8	6	6	12	2	2	16	
	13	체조	6	11	17	14	20	34	10	2	46	
	14	핸드볼	14	14	28	22	22	44	7	2	53	
	15	하키	18	18	36	24	24	48	6	2	56	
	16	유도	7	7	14	18	18	36	7	2	45	
	17	카라테	4	4	8	7	5	12	2	-	14	
	18	근대 5종	2	2	4	7	7	14	5	2	21	
	19	조정	24	24	48	8	8	16	4	1	21	
	20	력비	12	-	12	18	-	18	2	1	21	
	21	요트	8	8	16	17	4	21	6	1	28	
	22	사격	15	15	30	32	28	60	11	2	73	
	23	스케이트보드	6	6	12	4	2	6	1	-	7	
	24	산악	2	2	4	4	4	8	2	1	11	
	25	수영	45	42	87	26	20	46	11	2	59	
	26	탁구	3	3	6	10	10	20	4	1	25	
	27	태권도	4	4	8	14	14	28	6	2	36	
	28	테니스	6	6	12	6	6	12	2	1	15	
	29	철인3종	3	3	6	4	4	8	3	1	12	
	30	배구	16	16	32	18	18	36	5	2	43	
	31	역도	4	4	8	16	10	26	5	2	33	
	32	레슬링	12	6	18	30	12	42	8	4	54	
	소계(32개 종목)			372	323	695	497	383	880	170	46	1,096
	하계 아시아 경기 대회 종목 (7)	1	양궁 컴파운드	3	3	6	4	4	8	2	-	10
		2	볼링	6	6	12	8	8	16	4	-	20
		3	카바디	14	14	28	12	12	24	2	-	26
		4	세팍타크로	15	15	30	12	12	24	4	-	28
		5	소프트테니스	6	6	12	10	10	20	2	2	24
		6	스쿼시	4	4	8	5	5	10	2	-	12
		7	우슈	12	6	18	10	4	14	3	-	17
소계(7개 종목)			60	54	114	61	55	116	19	2	137	
전체 합계(38개 종목)			432	377	809	558	438	996	189	48	1,233	
	1	빙상	27	27	54	24	26	50	8	2	60	

구분	연번	종목	엔트리			훈련인원					훈련인원 합계
			남	여	소계	선수			코치	체력·심리· 의무 트레이너	
						남	여	소계			
동계 올림픽 대회 종목 (7)	2	스키	64	60	124	33	12	45	17	-	62
	3	아이스하키	25	23	48	25	23	48	4	1	53
	4	바이애슬론	6	6	12	8	8	16	4	-	20
	5	컬링	9	9	18	6	6	12	5	-	17
	6	봅슬레이/스켈레톤	18	11	29	18	6	24	5	1	30
	7	루지	7	3	10	5	4	9	2	-	11
		소계(7개 종목)	156	139	295	119	85	204	45	4	253
	합계 (45개 종목)	588	516	1,104	677	523	1,200	234	52	1,486	

※ 엔트리: 각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출전 기준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국가대표선수는 크게 세 가지 대회를 기준으로 구성된다. 하계올림픽대회 종목 32개,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7개, 동계올림픽대회 종목 7개이다. 각 분류에 따라 2021년도 국가대표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하계올림픽대회 종목에는 총 880명(남자 497명, 여자 383명),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에는 116명(남자 61명, 여자 55명), 동계올림픽 대회 종목에는 총 204명(남자 119명, 여자 85명)이 포함되며, 전체 45개 종목 합계 총 1,200명(남자 677명, 여자 523명)으로 집계되었다.

#### 나. 국가대표선수 훈련

국가대표선수에게 있어 경기력 향상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정부는 훈련지원 체계 개편, 의과학 현장지원 강화, 선수 생애주기교육 프로그램 등의 복지와 교육을 결합하면서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선진화한다. 특히 2021년에는 제32회 도쿄하계올림픽 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올림픽 대비 전담지원팀 운영 등 맞춤형 지원, 현지적응 훈련 지원 강화 등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훈련환경을 개선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가대표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훈련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선수와 지도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신속 대응 매뉴얼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외전지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3-18>은 2021년에 실시된 하계종목 국외전지훈련 현황이다.

표 3-18. 국가대표선수 하계종목 국외전지훈련 지원 현황(2021)

(단위: 명)

연번	종목	세부종목	장소	기간	인원		
					선수	임원	전체
1	수영	다이빙	일본(도쿄)	04.27.~05.07.	8	4	12
2		아티스틱	스페인(바르셀로나)	06.06.~06.15.	8	3	11
3		경영	카타르(도하)	10.18.~10.24.	14	3	17
4		경영	UAE(아부다비)	12.13.~12.22.	15	5	20
5	양궁	리커브, 컴파운드	미국(양크턴)	09.15.~09.28.	12	9	21
6		리커브, 컴파운드	방글라데시(다카)	11.13.~11.19.	16	8	24
7	육상	마라톤	아프리카(케냐)	03.01.~03.31.	1	2	3
8		수직도약(장대/높이)	미국(졸라비스타, 월넛)	04.10.~05.20.	2	2	4
9		마라톤	아프리카(케냐)	04.01.~04.30.	1	2	3
10		마라톤	아프리카(케냐)	05.27.~05.31.	1	2	3
11		마라톤	아프리카(케냐)	06.01.~06.30.	2	2	4
12		마라톤	아프리카(케냐)	07.01.~07.29.	2	2	4
13	배드민턴	전 종목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09.23.~11.02.	18	7	25
14	농구	여자	요르단(암만)	09.24.~10.05.	12	2	14
15		남자	필리핀	02.22.~03.01.	12	2	14
16	카누	스프린트, 슬라럼	태국(파타야)	04.23.~05.08.	9	6	15
17	펜싱	남자사브르	헝가리(부다페스트)	03.08.~03.16.	7	2	9
18		남자에베	러시아(카잔)	03.16.~03.25.	8	2	10
19		남자플러레	카타르(도하)	03.23.~03.29.	6	2	8
20		남여사브르	프랑스(오를레앙)	11.08.~11.15.	16	3	19
21		남자 에베	스위스(베른)	11.17.~11.23.	8	2	10
22		여자 에베	에스토니아(탈린)	11.16.~11.23.	8	1	9
23		여자 플러레	프랑스(생모르)	12.08.~12.14.	8	2	10
24		여자 플러레	프랑스(생모르)	12.08.~12.14.	8	2	10
25	체조	리듬체조	우즈베키스탄	06.02.~06.11.	8	2	10
26		기계체조	카타르	06.19.~06.27.	1	2	3
27		기계체조	일본 (기타규슈)	10.13.~10.25.	10	7	17
28	핸드볼	여자	노르웨이(베르겐)	11.23.~11.29.	17	2	19
29	하키	남자	방글라데시(다카)	12.08.~12.24.	18	5	23
30	카라테	카타/쿠미테	UAE(두바이)	11.10.~11.22.	8	2	10
31	유도	전 종목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02.28.~03.09.	14	4	18
32			키르기즈스탄(비슈케크)	04.01.~04.11.	18	4	22
33	근대5종	전 종목	헝가리(부다페스트), 불가리아(소피아)	03.20.~04.20.	4	3	7

연번	종목	세부종목	장소	기간	인원		
					선수	임원	전체
34			불가리아(소피아)	04.02.~04.20	3	3	6
35			헝가리(세케스페헤르파)	05.10.~05.17.	2	2	4
36	력비	남자 력비	미국(로스엔젤레스)	06.19.~06.27.	12	2	14
37			UAE(두바이)	11.12.~11.22.	18	4	22
38	요트	470	포르투갈	04.08.~05.09.	2	1	3
39		RS:X	스페인	04.08.~04.29.	1	1	2
20		레이저	포르투갈(빌라모우라),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스페인, 벨기에	05.21~07.08.	1	1	2
41		49er	오만(무스카트)	11.10.~11.24.	4	1	5
42	사격	소총	인도(뉴델리)	03.14.~03.23.	3	2	5
43	산악	스포트츠클라이밍	러시아(모스크바)	09.14.~09.22.	2	2	4
44	탁구	전 종목	카타르	09.16.~10.06.	10	2	12
45			미국(휴스턴)	11.18.~11.30.	11	5	16
46	태권도	겨루기	레바논(베이루트) 라 지역	06.10.~06.20.	12	2	14
47	테니스	남자	미국(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	09.03.~09.19.	6	2	8
48	레슬링	GR/FS/WW	카자흐스탄(알마티), 불가리아(소피아)	03.31.~05.11.	13	36	49
21개 종목(48회)				합계	400	174	574

※ 주: 훈련 지원 횟수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음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2021년 하계종목 국가대표선수 국외전지훈련에는 21개 종목에서 574명(선수 400명, 임원 174명)이 참가하였으며, 총 48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는 17개 종목에 대하여 49회 실시된 2020년 국가대표선수 하계종목 국외전지훈련과 규모는 유사하나, 참가인원의 경우에는 2020년 469명(선수 346명, 임원 123명)에 비해 105명 증가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표 3-19>은 동계종목 국가대표선수의 국외전지훈련 현황이다.

표 3-19. 국가대표선수 동계종목 국외전지훈련 지원 현황(2021)

(단위: 명)

연번	종목	장소	인원		
			선수	임원	전체
1	스키	미국, 핀란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캐나다	37	35	72
2	빙상	중국, 일본, 헝가리,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49	27	76
3	아이스하키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49	13	62

연번	종목	장소	인원		
			선수	임원	전체
4	봅슬레이스켈레톤	중국, 캐나다, 미국	49	28	77
5	바이애슬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10	10	20
6	컬링	캐나다,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18	16	34
7	루지	러시아, 라트비아	15	14	29
합계			227	143	370

※ 주: 훈련 지원횟수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으며 종목별 훈련인원은 중복을 허용함.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2021년 국가대표 동계종목 국외전지훈련은 7개 종목의 370명(선수 227명, 임원 14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전지훈련 및 국제대회가 대부분 취소되어 4개 종목 91명(선수 51명, 임원 40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2020년에 비해 2021년 동계 시즌은 비교적 정상화되면서 참여 인원 역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다.

## 2.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과정에는 또한 그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도 포함된다. 특히 스포츠과학 지원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스포츠과학을 활용한 경기력 향상 지원 사업을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 1) 지역별 스포츠과학센터 운영

전문체육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력측정 및 처방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지역별 ‘스포츠과학센터’가 운영되었다. 이 센터는 지금까지 서울의 수도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만 제공되던 스포츠과학 혜택을 지역의 모든 전문체육 선수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자 시작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내 한국 스포츠정책과학원이 총괄하는 지역 스포츠과학 거점운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각 시도 체육회가 위탁운영을 맡는다. 2015년 3개 도시(서울, 대전, 광주)에서 처음 시작한 이 스포츠과학센터는 2021년 현재 전국에서 11개가 운영 중이다. 지역스포츠과학센터 개소 현황은 <표 3-20>과 같다.

표 3-20. 지역스포츠과학센터 현황 및 위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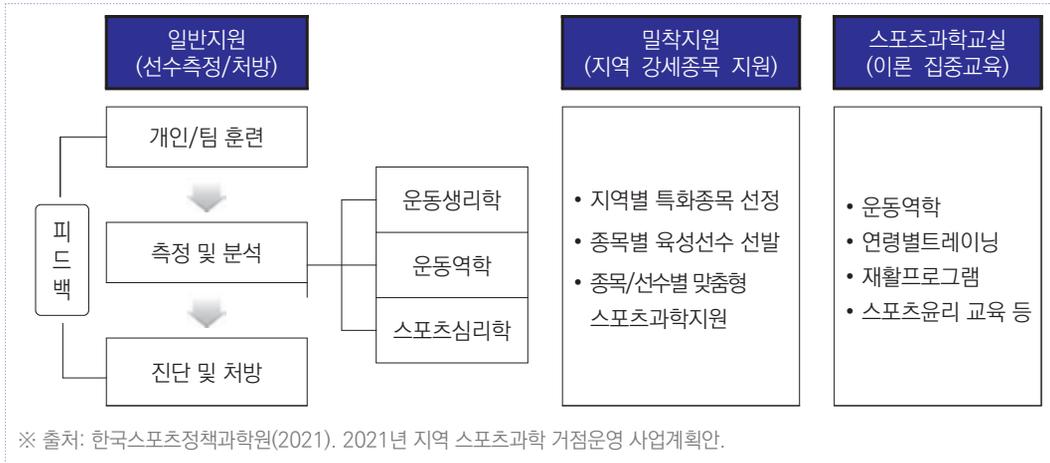
구분	운영기관	주소	개소일	규모(㎡)	인력현황			
					센터장	선임 연구원	연구원	측정 보조원
서울센터	서울시체육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	'15. 9.15	563	1	1	2	1
대전센터	대전시체육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15. 9.14	362	1	1	2	1
광주센터	광주시체육회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15. 9.23	540	1	1	2	1
대구센터	대구시체육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16. 9.29	390	1	1	2	1
경기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16. 9.30	678	1	1	2	1
전북센터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62	'16. 9.27	483	1	1	2	1
인천센터	인천시체육회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17. 9.29	804	1	1	2	1
충남센터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24	'17.10.13	836	1	1	2	1
전남센터	전라남도체육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41	'18.12. 3	553	1	1	2	1
제주센터	제주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길 20	'18.12.24	525	1	1	2	1
강원센터	강원도체육회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80	'20.12.11	542	1	1	2	1
합계					55명			

※ 주: 2021.12.31. 기준

※ 출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22). 2021년 일자리 과제 추진실적.

지역거점 스포츠과학센터는 일반적으로 지역 명칭을 앞에 붙여, '○○스포츠과학센터'로 불린다. 2020년 12월에 개소한 강원센터를 포함하여 현재 17개 시·도 광역시 중 11개 지역에서 운영 중에 있다. 각 센터의 인력 구성은 센터장, 선임연구원, 연구원, 측정보조원으로 이루어진다.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지원은 <표 3-21>과 같이 이루어진다.

표 3-21.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지원내용



지역스포츠과학센터에서 운영되는 지원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서, 첫째, ‘체력측정 및 처방(‘일반지원’으로 불린다)’, 둘째, ‘밀착지원’, 셋째, ‘스포츠과학교실’이다. ‘일반지원’에는 지원대상자들(운동선수)에게 기초/전문체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처방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며, 체력·기술·심리 부문의 현장지원이 제공된다. ‘밀착지원’이란 각 지역별 강세·중점종목 지원 선수나 팀을 대상으로 스포츠과학 분야별 전문가가 밀착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과학교실’이란 효과적인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운동역학 등의 기본적 이론 교육과 기타 소양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센터의 경쟁력 강화 및 센터운영 안정화 노력이 더해져 수혜인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5년 개소 이후 2019년까지(코로나19로 2020년은 전국체육대회 미개최, 2021년은 종목별 겸임대회로 개최)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수혜를 받은 인원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거둔 성과로는 총 1,478개의 메달(금메달 440개, 은메달 469개, 동메달 569개)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스포츠과학센터 운영과 관련한 2021년 세부 실적은 <표 3-22>와 같다.

표 3-22.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지원성과(2018~2021)

구분	체력측정 및 처방(명)				밀착지원(종목)				스포츠과학교실(회)			
	2018	2019	2020	2021	2018	2019	2020	2021	2018	2019	2020	2021
서울	1,508	1,443	349	1,243	7	7	6	4	11	11	13	5

구분	체력측정 및 처방(명)				밀착지원(종목)				스포츠과학교실(회)			
	2018	2019	2020	2021	2018	2019	2020	2021	2018	2019	2020	2021
대구	1,479	1,537	703	1,470	8	8	6	6	10	12	5	12
인천	1,450	1,438	492	1,392	8	7	4	4	13	18	-	23
광주	1,468	1,759	382	2,473	6	6	7	6	13	17	6	16
대전	1,447	1,466	481	1,664	8	7	8	7	12	11	6	13
경기	1,471	1,560	396	1,438	6	5	6	5	10	10	1	10
강원	-	-	-	1,296	-	-	-	9	-	-	-	17
충남	1,535	1,510	809	2,566	13	8	11	11	13	17	20	25
전북	1,422	1,550	387	1,606	8	5	6	5	11	12	13	16
전남	169	1,410	680	1,402	-	6	4	1	-	12	5	12
제주	152	1,427	336	1,463	-	7	1	5	-	10	2	11
계	12,101	15,100	5,015	18,013	64	66	59	63	93	130	71	160

※ 출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22). 2021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평가 결과.

2021년 11개 지역의 스포츠과학센터가 운영된 대면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일반지원(체력 측정 및 처방)’의 경우 18,013명, ‘밀착지원’의 경우 63종목을 대상으로, ‘스포츠과학교실’의 경우 160회에 걸쳐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사업의 2020년 ‘일반지원’ 5,015명, ‘밀착지원’ 59종목, ‘스포츠과학교실’ 71회 실시되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제한되었던 대면활동이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거점 스포츠과학센터는 향후 스포츠과학지원체계 전국망을 구축하고 지원 내용을 표준화하여 전문선수 뿐 아니라 스포츠클럽 등록 선수와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스포츠과학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2) 국가대표 현장밀착형 스포츠과학 지원 사업

지역의 전문체육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과학센터와 달리, ‘국가대표’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지원사업도 수행되었다. 이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스포츠과학연구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대표 현장밀착형 스포츠과학 지원 사업(약칭 ‘스포츠과학 밀착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총 40억 6,700만 원(스포츠과학 연구사업 및 진천센터 운영 9억 6,700만 원, 국가대표현장밀착형 스포츠과학지원 31억 원)이 지원되었다. 2021년 스포츠과학 밀착지원사업 실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표 3-2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23. 국가대표 현장밀착형 스포츠과학 지원사업 실적(2016~2021)

(단위: 명,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스포츠과학 지원 수혜 국가대표선수	4,023	5,051	3,717	3,322	3,489	3,026
국가대표 심층지원 연구	12	19	17	16	17	19
스포츠과학 연구기반 특허출원 및 등록	3	6	6	-	-	-
국민건강체력 증진 연구	4	4	5	-	5	1
합계	4,042	5,080	3,745	3,338	3,511	3,046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스포츠과학 밀착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동·하계 전 종목 전담연구위원 지정(기술·영상/체력/심리/장애인체육) 및 밀착지원, 국가대표 맞춤지원 심층연구과제 수행(과학적 훈련 프로그램 개발, 스포츠영재 발굴 및 육성기반 구축, 종목별 맞춤형 전략 및 전술개발), 스포츠 의학·과학·공학 융복합 연구 및 첨단 경기력 향상 장비 개발(경기력 향상을 위한 용품 개발) 등으로 구성된다. 2021년 각 분야 및 종목별로 동·하계 국가대표팀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과학 밀착지원(전담연구위원 지정) 실적은 <표 3-24>와 같다.

표 3-24. 국가대표 현장밀착형 스포츠과학 종목별 지원 현황(2021)

(단위: 명, 건)

종목 지원분야	하계종목	동계종목	장애인종목
체력	경륜, 근대5종, 기계체조, 럭비, 레슬링, 배드민턴, 사이클, 세팍타크로, 수구, 수영(경영), 스쿼시, 아티스틱스위밍, 양궁, 유도, 육상(투척), 육상(수평도약), 육상(단거리), 육상(경보), 육상(혼성), 카누, 카라데, 태권도, 펜싱, 필드하키, 핸드볼 (25개)	루지, 바이애슬론, 쇼트트랙, 스노보드, 알파인, 스피드스케이팅, 알파인스키, 컬링, 크로스컨트리, 프리스타일 스키 (9개)	-
컨디셔닝	기계체조, 레슬링, 복싱, 사이클, 수구, 스쿼시, 아티스틱스위밍, 역도, 유도, 카라데, 필드하키, 핸드볼 (12개)	루지, 알파인스키, 컬링, 트라이애슬론, 피겨스케이팅 (5개)	-
스포츠심리	레슬링, 리듬체조, 배드민턴, 사격(소총), 사격(클레이), 세팍타크로, 양궁, 역도, 유도, 육상(수직도약), 카누, 펜싱 (12개)	루지, 쇼트트랙, 스노보드, 알파인스키, 컬링, 크로스컨트리, 프리스타일 스키, 피겨스케이팅 (8개)	장애인태권도, 휠체어농구, 파라아이스하키 (3개)
기술	기계체조, 사격(소총), 수구, 아티스틱스위밍, 역도, 육상(투척), 육상(수평도약), 육상(수직도약), 육상(단거리), 펜싱, 핸드볼 (11개)	루지, 스키점프, 컬링, 프리스타일 스키 (4개)	-
영상	근대5종, 기계체조, 럭비, 레슬링, 배드민턴, 사격(클레이), 양궁, 역도, 유도, 육상(수평도약), 태권도, 펜싱, 필드하키, 핸드볼 (14개)	루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알파인스키, 피겨스케이팅 (5개)	보치아 (1개)

종목 지원분야	하계종목	동계종목	장애인종목
장애인 스포츠	-	-	골볼, 보치아, 장애인수영, 장애인태권도, 핸드사이클, 휠체어농구, 파라아이스하키 (7개)

※ 출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22). 2022 국가대표 현장밀착형 스포츠과학 지원사업 계획(안).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영상 콘텐츠 및 SNS 등을 활용한 비접촉·비대면 스포츠과학 지원을 추진하는 등 비대면 스포츠과학지원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2021년 한 해 동안 스포츠과학밀착지원팀은 하계종목 74개 종목(중복 포함), 동계종목 13개 종목, 장애인스포츠 7개 종목을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스포츠과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 3) 차세대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사업

차세대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 사업은 국가대표 중심의 스포츠 과학 지원체제의 사각 지대인 국가대표 하위 육성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2020년 5월 신설되었다. 차세대 국가대표(꿈나무-청소년대표-국가대표 후보선수)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스포츠과학지원팀(TF)’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과학연구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차세대스포츠과학지원팀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표 3-25>와 같다.

표 3-25. 차세대스포츠과학지원팀 주요사업

주요사업	사업내용
차세대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력, 기술/영상, 심리 측정 및 분석, 피드백 제공</li> <li>• 국내·외 훈련 및 대회 지원</li> </ul>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 및 지도자 대상 스포츠과학 기초 및 상식 등 교육</li> <li>• 체력, 기술/영상, 심리 피드백 제공을 위한 교실 운영</li> <li>• 국내·외 훈련기간 중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li> </ul>
스포츠과학 토크 콘서트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 지도자, 학부모 대상 스포츠과학 토크 콘서트 개최(체력관리, 영양, 운동기술, 심리, 진로 등)</li> <li>• 유명 선수 또는 스포츠의학 전문의 등 현장 경험자 중심 강의 및 토론회</li> </ul>
스포츠과학 정보넷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 국가대표 경기력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li> <li>• 스포츠과학 교재, 부상방지 위밍업, 쿨다운 등 스포츠과학 콘텐츠 제공</li> <li>• 경기력 측정 결과, 현장지원 결과 등 선수 경기력 정보관리 및 제공</li> </ul>

주요사업	사업내용
연구과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력측정 항목 개발, 온라인 심리 측정도구 개발, 수준별 스포츠과학 교재개발, 적정훈련 지침서 개발, 종목전이 빅데이터 분석 등 차세대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을 위한 기반 연구 수행</li> </ul>

※ 출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21), 2021 차세대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사업 계획안.

차세대스포츠과학지원팀은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력 지원, 기술/영상 지원, 심리 지원 등 스포츠과학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운동선수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과학교실과 스포츠과학 토크 콘서트 개최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도모하였다. 또한 차세대 선수-지도자-학부모-스포츠과학 지원팀과의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스포츠과학 정보넷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지원팀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2021년의 세부 운영 실적은 <표 3-26>과 같다.

표 3-26. 차세대스포츠과학지원팀 운영 실적(2021)

(단위: 건)

구분	21년 건수	종목(지원 방식)
체력 지원	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훈련 프로그램 실습(워밍업, 근력보강, 체력훈련 등)</li> <li>체력측정 및 결과분석 피드백(스포츠과학정보넷 활용)</li> <li>체력강화, 컨디셔닝을 위한 훈련 콘텐츠 개발 및 배포</li> </ul>
기술영상 지원	5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활동량 및 전술 분석 및 피드백</li> <li>동작·빈도분석 기반 기술 분석</li> <li>종목별 득/실점 분포도 분석 및 피드백</li> </ul>
심리 지원	7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리요인별 분석 및 피드백(스포츠과학정보넷 활용)</li> <li>전인적 성장 및 심리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배포</li> <li>선수 인권교육 및 심리상담</li> </ul>
계	1,886	

※ 주: 2021년 3월~2022년 2월 운영 실적

※ 출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내부자료(2022)

2021년 차세대스포츠과학지원팀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 스포츠과학 현장지원 사업은 체력지원, 기술영상지원 그리고 심리지원으로 구분된다. 각 현장에서 체력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술·영상을 분석하고, 심리 측정 및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스포츠과학교실을 개최하여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과학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 발달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2021년에는 체력지원 615건, 기술영상 지원 533건, 심리지원 738건으로 총 1,886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 4) 첨단기술기반 산업혁신 사업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산업육성팀에서는 국가대표 전략·전술 고도화 및 경기력 극대화를 위한 한국형 동·하계 솔루션 개발을 위한 첨단기술기반 산업혁신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1년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첨단기술기반 산업혁신 사업 지원 실적은 <표 3-27>과 같다.

표 3-27. 첨단기술기반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사업 지원 실적(2018~2021)

(단위: 백만 원)

구분		협약기관	2018	2019	2020	2021	합계
동계 종목	봅슬레이·스켈레톤	한국정보공학(주)	980	995	995	995	3,965
하계 종목	축구	포항공과대학교	980	995	995	995	3,965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스포츠분야 도입 및 적용을 통한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및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은 민간 경상보조로 운영되며, 주요 사업 내용은 선수 데이터 수집용 융합 센서 기반 웨어러블 기기, 경기/훈련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플랫폼 적용을 위한 한국형 동·하계 솔루션 개발 등이 있다. 2018년 사업시행 공고를 시작으로 1차년도 사업이 추진되었다. 4차년도인 2021년의 경우 동계종목은 한국정보공학(주)의 봅슬레이·스켈레톤 종목 사업에, 하계종목은 포항공과대학교의 축구 종목 사업에 각각 9억 9,500만 원이 지원되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동·하계 종목에 각각 총 39억 6,500만 원씩 지원되었다.

### 3. 전문체육대회 개최 지원

전문체육을 위한 지원에는 대회 운영 지원도 포함된다. 전문체육대회에는 하계·동계 전국 체육대회(약칭 '전국체전')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별 전국대회, 종목별 시·도 대회, 시·도별 종합대회, 종목별 협회장기와 시·도 지사기대회 등이 포함된다.

#### 1) 전국하계체육대회

전국 규모의 체육경기대회는 192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전조선야구대회를 그 시초로 본다. 하지만 전국체육대회의 효시는 1934년 개최된 조선종합경기대회라 할 수 있으며, 기록상

이 대회가 제 15회 '전조선종합경기대회'다. 이 대회에서의 종목은 축구, 야구, 정구, 농구, 육상 등 다섯 종목이었고 경성운동장, 육천운동장, 배재고보운동장, 철도운동장 등의 보조 경기장이 사용되었다. 이후 1948년 조선종합경기대회는 전국체육대회로 개칭되었고, 시·도 대항제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1950년 제31회 전국체전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지만, 1951년 제32회 전국체전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개최되었다. 1952년 제33~37회 대회까지는 서울에서 대회가 개최되었지만, 1957년 제38회 대회부터는 지방순회 개최 원칙이 도입되었다. 이는 지역 체육시설 확충 및 시·도민의 체육 관련 인식을 제고하고, 전국적으로 체육이 보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1972년 제53회 대회부터 전국체육대회는 형식상 변화가 발생한다. 초등부와 중등부가 전국체육대회에서 분리되어 전국소년체육대회로 별도 개최되기 시작하였고, 해외동포 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최초로 재미동포가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국체육대회는 국내·외 동포 모두의 성대한 체육제전으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19년 전국체육대회는 100회를 맞이하였으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였다. 2021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는 경상북도에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 19상황에서 학생들의 진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세 이하부만 부분 개최되었다.

전국하계체육대회의 최근 10개년도의 개최 현황은 <표 3-28>과 같다.

표 3-28. 전국(하계)체육대회 개최 현황(2012~2021)

(단위: 종목, 명)

회차	대회기간	개최지	참가종목	참가인원	순위		
					1위	2위	3위
93회	2012.10.11.~10.17.	대구	45	24,159	경기	대구	서울
94회	2013.10.18.~10.24.	인천	46	24,524	경기	서울	인천
95회	2014.10.28.~11.03.	제주	47	24,807	경기	서울	경남
96회	2015.10.16.~10.22.	강원	47	24,780	경기	강원	서울
97회	2016.10.07.~10.13.	충남	47	24,811	경기	충남	서울
98회	2017.10.20.~10.26.	충북	46	25,130	경기	충북	서울
99회	2018.10.12.~10.18.	전북	46	24,924	경기	서울	전북
100회	2019.10.04.~10.10.	서울	47	20,102	서울	경기	경북
101회	코로나19로 취소						
102회	2021.10.08.~10.14.	경북	41	13,512	-	-	-

※ 주: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선수들의 진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세 이하부만 부분 개최

※ 주: 대학, 일반부 미개최로 종합시상 및 순위 미결정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 2)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1923년 1월 동아일보 주최로 개최된 대동강빙상대회를 시작으로, 1925년 조선체육회 주최의 제1회 전조선빙상경기대회로 시작했다. 그 밖에 조선학생 빙상 경기연맹을 비롯하여 조선빙상경기연맹 등 경기단체에 의해 크고 작은 빙상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1946년 1월 광복 이후 한강 특설링크에서 개최된 빙상대회는 오늘날 빙상경기 대회로 이어진다. 그리고 스키는 1930년 2월 제1회 조선스키선수권대회가 원산체육협회의 주최 하에 조선체육협회 등의 후원으로 원산시 신평리 스키장에서 개최되었다. 2021년 제102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021년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비 선수 안전을 위하여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표 3-29>는 2021년도를 제외한 최근 10개년도의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 현황이다.

표 3-29.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 현황(2011~2020)

(단위: 종목, 명)

회차	대회기간	개최지	종목	참가인원	순위		
					1위	2위	3위
92회	2011.02.15.~02.18.	강원도	9	2,545	경기	강원	서울
93회	2012.02.14.~02.17.	전라북도	9	2,550	경기	서울	강원
94회	2013.02.18.~02.21.	강원도	9	2,653	경기	서울	강원
95회	2014.02.26.~03.01.	강원도	9	2,677	경기	강원	서울
96회	2015.02.25.~02.28.	강원도	9	2,752	경기	서울	강원
97회	2016.02.23.~02.26.	강원도	11	2,953	경기	서울	강원
98회	2017.02.09.~02.12.	강원도	11	2,969	경기	서울	강원
99회	2017.12.25.~02.04.	강원도 분산 개최	11	2,918	경기	서울	전북
100회	2019.02.19.~02.22.	서울, 강원, 충북, 경북 분산개최	7	2,723	경기	서울	강원
101회	2020.02.13.~2.21.	서울, 경기, 강원, 경북 분산개최	7	2,645	경기	서울	강원

※ 주: 2021년 제102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비 선수 안전을 위하여 미개최 결정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전국동계체육대회와 관련하여 1964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링크인 동대문실내링크가 개장된 해였다. 이에 따라 1967년에는 우리나라 동계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의 세 종목이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 이후 1986년 제67회 대회부터 빙상대회와 스키대회를 동계대회로 통합하고, 종합 점수제를 실시하여 동계종합대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동계체전의 발전으로 우리나라는 1992~

2018년까지 개최된 여덟 번의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총 여섯 번 세계 10위 안에 진입할 수 있었다(16회 알베르빌동계올림픽대회 10위, 17회 릴레함메르동계올림픽대회 6위, 18회 나가노동계올림픽대회 9위, 20회 토리노동계올림픽대회 7위, 21회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 5위, 23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7위). 특히 과거 빙상종목에 국한되던 메달 획득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서는 스켈레톤, 봅슬레이, 컬링, 스노보드 등으로 다양화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수준의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 잡는 데에는 전국동계체육대회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 3)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1972년 제53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초등부와 중등부가 분리되며 별도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종합대회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표어 아래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 중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2021년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종목별 겸임대회로 개최되었다. <표 3-30>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30.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현황(2010~2019)

(단위: 명, 종목)

회차	대회기간	개최지	참가인원	순위			종목 수 (정식/시범)	비고
				1위	2위	3위		
39회	2010.08.11.~08.14.	대전	12,140	개인시상			30/3	시범종목(3): 소프트볼, 요트, 트라이애슬론
40회	2011.05.28.~05.31.	경남	12,085	개인시상			33	
41회	2012.05.26.~05.29.	경기	11,778	개인시상			33	
42회	2013.05.25.~05.28.	대구	12,208	개인시상			33	
43회	2014.05.24.~05.27.	인천	12,113	개인시상			33	
44회	2015.05.30.~06.02.	제주	12,419	개인시상			35	골프, 바둑 추가
45회	2016.05.28.~05.31.	강원	12,377	개인시상			36	승마 추가
46회	2017.05.27.~05.30.	충남	12,194	개인시상			35	종목통합(야구 소프트볼)
47회	2018.05.26.~05.29.	충북	12,233	개인시상			36	종목분리(체조, 에어로빅)
48회	2019.05.25.~05.28.	전북	12,340	개인시상			36	

※ 주: 2020년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개최

※ 주: 2021년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종목별 겸임대회로 개최

※ 출처: 대한체육회(2021). 2020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1972년 전국체육대회와 분리되어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대회의 명칭은 ‘전국스포츠 소년대회’로서, 정식종목 19개로 처음 실시되었다. 그 이후 부산에서의 제4회 대회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시·도 간 과열경쟁, 선수 혹사, 수업 결손, 진로 문제 등 대회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종합점수제 폐지(1980~1981년), 메달 공식집계 발표 및 종합시상 폐지(1982년), 종합 점수제 부활(1983~1988년) 등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정선수 및 개최도시 개·폐회식 학생 동원 폐해 및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1989~1991년까지 전국소년체전은 개최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국가체육의 미래와 꿈나무선수 육성을 위해 1992년에 제21회 대회로 다시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종합체점제 폐지(종목별 개인시상만 실시), 수업결손 최소화(경기 일자에 휴일 포함) 등 기존 문제를 보완하면서 재개최된 것이다. 이런 조치로 1994년부터는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에서 5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4일 간 대회를 치렀다. 또한 2004년 제33회 대회에는 대회시상 처음 도핑검사가 실시되었고, 2010년 제39회 대회 때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5~6월에 열리던 대회를 방학 중인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하였으나, 여름철 무더운 기후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우려로 2011년 제40회 대회부터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하기로 재조정되었다(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 제5조).

#### 4.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선수촌 운영

전문체육 진흥, 특히 국가대표의 체계적이고 과학적 훈련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선수촌을 운영한다. 선수촌은 세 개가 운영 중인데, 개촌 순서대로 보면 태릉선수촌(1966년), 태백선수촌(1998년), 진천국가대표선수촌(2017년)이다. 2021년 이들 선수촌에는 <표 3-31>과 같이 국가대표선수들이 입촌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표 3-31. 대회 및 선수촌 구분에 따른 국가대표선수 훈련 현황(2021)

구분	훈련 현황		
	태백선수촌 입촌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입촌	촌외
올림픽대회종목(39)	2종목(복싱 등)	28종목(산악 등)	23종목(양궁 등)
아시아경기대회종목(6)	-	3종목(세팍타크로 등)	4종목(세팍타크로 등)
합계	2종목 72명	31종목 3,669명	27종목 719명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에는 태릉선수촌에 올림픽대회 2종목 총 72명,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올림픽대회 28종목과 아시아경기대회 3종목 총 3,669명, 그리고 촌외에서 올림픽대회 23종목과 아시아 경기대회 4종목 총 719명이 훈련에 참여하였다. 다음에는 각 선수촌의 시설 현황과 운영의 구체적 내용이 정리되었다.

### 1) 태릉선수촌 시설 및 운영 현황

1966년 6월 30일에 건립된 태릉선수촌은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에 위치하여, 2020년 현재 부지면적 18만 3,879㎡에 연면적 6만 2,470㎡의 규모로 대표선수 2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을 갖춘 곳이다. 처음 건립된 후 1978년까지 다양한 시설이 차례로 건립되면서 종합훈련원의 형태를 갖추었다(1970년 수영장, 1971년 옥외 스케이트장, 1972년 남자선수 숙소, 1973년 체육관 및 여자선수 숙소, 1975년 개선관, 1976년 선수식당, 1978년 월계관 및 테니스장). 지금은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거의 모든 종목이 이촌되어 빙상 종목만 운영 중이다.

#### 가. 태릉선수촌 시설 현황

태릉선수촌은 총 세 가지 종류의 시설로 구분되면서 2021년 현재 9개의 건물, 2개의 옥외 훈련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숙소’의 경우 올림픽의집이, ‘훈련시설’로는 월계관, 승리관, 국제스케이트장 등 다섯 개, ‘부대시설’에는 챔피언하우스를 포함한 세 개다. <표 3-32>는 태릉선수촌의 시설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3-32. 태릉선수촌 시설 현황(2021)

지역	구분	건물명	용도 및 수용	규모	건립 연도	비고
태릉	숙소 (1)	올림픽의집	238실, 선수식당	지상4, 지하2(13,906㎡)	1997	
	훈련 시설 (5)	월계관	체력단련장	지상1(1,697㎡)	1978	
		승리관	탁구, 유도	지상3(2,075㎡)	1978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지상3, 지하1(27,067㎡)	2000	
		실내빙상경기장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지상4, 지하1(5,478㎡)	2006	
		운동장	육상, 하키	400m트랙 6레인, 인조잔디	1984	71x100m
	부대 시설	챔피언하우스	편의시설(영화관, 북카페, 당구장)	지상2, 지하1(2,505㎡)	1986	리모델링 (’07년)

지역	구분	건물명	용도 및 수용	규모	건립연도	비고
	(3)	행정동	행정업무, 기계실	지상2, 지하2(1,917㎡)	1990	
		수위실	선수촌 정문	지상1(31㎡)	2003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 나. 태릉선수촌 운영 현황

현재 대부분 종목의 훈련시설이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옮겨짐에 따라 태릉선수촌은 2021년 국가대표 후보선수의 동계합숙 훈련장소로 활용되었는데, 관련한 훈련 현황은 <표 3-33>에 정리된 것과 같다.

표 3-33. 태릉선수촌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지원 현황(2021)

(단위: 명)

종목	합숙훈련기간	인원
빙상(스피드)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	2022.2.13.~2.19.	30
빙상(피겨)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	2022.2.13.~2.19.	12
계		42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빙상(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종목의 국가대표 후보선수 42명(누적 인원)이 2021년 태릉선수촌에 입촌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태릉선수촌은 지난 2009년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그 주변 지역(태릉과 강릉)이 문화유산 보존 지역으로 설정되어 철거 위기를 맞이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7월 1일, 태릉선수촌 시설 철거가 포함된 정비 추진 계획에서 챔피언하우스 등 8개 시설물(챔피언하우스, 운동장, 승리관, 월계관, 개선관, 올림픽의집, 영광의집, 행정동)을 보호 신청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고, 2018년 7월 11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 결과, 이 중 4개 시설(챔피언하우스, 운동장, 승리관, 월계관)의 조건부 보존이 결정되었다.

## 2) 태백선수촌 현황

태백국가대표선수촌은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 확충, 고지대훈련(해발 1,330m)을 통한 심폐기능 강화 및 지구력 증진 등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1997년 12월에 건립(1998년 6월 개촌)되었다. 태백국가대표선수촌의 시설 현황은 <표 3-34>와 같다.

표 3-34. 태백국가대표선수촌 시설 현황

구분		용도 및 수용인원	비고
건물 (1개동)	숙소	17실(3인 1실) / 51명(남 33, 여 18)	지상 2층, 지하 1층
	간이체육관	목재바닥 및 농구골대(120평)	
	관리동	사무실, 체력단련실, 식당, 주방, 물리치료실, 오락실	
운동장		400m 우레탄트랙(4레인) 운동장	
크로스컨트리코스		소로골코스(6,154m), 사내골코스(7,912m)	포장, 비포장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태백국가대표선수촌은 총면적 3만 2,267㎡에 연면적 2,538㎡의 규모이며, 120평 규모의 실내체육관, 400m 우레탄 트랙 4레인, 크로스컨트리 훈련이 가능한 3개 코스(소로골 코스 6.2km, 사내골 코스 7.9km, 함백산 정상 3.5km), 체력단련실 등의 훈련시설을 갖추었다. 그리고 5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17실, 3인 1실 기준)와 다양한 휴게시설, 의무실과 식당, 사무실 등의 관리시설도 갖추어졌다. 2021년 태백국가대표선수촌에서는 빙상(쇼트트랙)과 복싱 종목의 국가대표선수 훈련이 이루어졌는데 관련 현황은 <표 3-35>와 같다.

표 3-35. 태백선수촌 국가대표선수 훈련 현황

(단위: 명)

종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빙상(쇼트트랙)		-	-	-	-	-	13	18	18	-	-	-	-	49
복싱		-	-	-	-	-	-	-	13	10	-	-	-	23
총계		0	0	0	0	0	13	18	31	10	0	0	0	72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빙상(쇼트트랙)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 49명(누적 인원)과 복싱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 23명 등 총 2종목에서 72명이 2021년 태백선수촌에 입촌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 3) 진천국가대표선수촌

2017년 9월, 충청북도 진천에 또 하나의 국가대표 선수촌이 개촌되었다.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이다. 과거 태릉선수촌이 국가대표 선수촌을 상징했다면, 이제는 진천선수촌이 ‘국가대표선수촌’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새롭게 진천에 국가대표선수촌을 건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태릉선수촌의 노후화된 시설 및 수용 한계의 극복, 둘째, 훈련 시설 현대화 및 과학화를 도모하여 국가대표선수 경기력의 향상이 그것이다. 물론 그 전부터 이어져온

문화재청의 태릉선수촌 이전 요구도 이처럼 새로운 지역에 국가대표선수촌을 건립해야 할 배경이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3년부터 새로운 국가대표선수촌 건립 관련 논의를 시작하였고, <표 3-36>에 선수촌 조성 과정과 관련한 구체적 과정이 정리되었다.

표 3-36. 인천국가대표선수촌 조성 추진 현황

연도	사업내용	비고
2001.06.	문화재복원정비 관련 선수촌 이전 요구(3회)	문화재청
2003.03.	선수촌 장기 이전 계획안 수립	대한체육회
2003.06.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반영	문화관광부
2003.08.	2003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출	문화관광부
2003.11.	2003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획예산처
2004.03.09.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	한국개발연구원
2004.12.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 통보(사업승인) - 조사결과: 단계별 사업추진 · 1단계: 현 태릉선수촌에 없는 시설물 건립 제2선수촌 형태로 부분이전(2005~2010) · 2단계: 향후 태릉선수촌 사용불가여부, 체육정책, 엘리트체육육성 방향 검토하여 추진(2011~2015)	기획예산처
	제2선수촌 이전 대상지 선정 - 13개 후보지 중 2개 우수후보지 선정(음성, 진천) - 2개 우수후보지 평가를 위한 용역 의뢰 - 선수촌 이전 추진자문위원회(6차 회의/진천군 선정)	대한체육회
2005.11.	선수촌 이전사업 마스터플랜 현상 공모 당선작 선정	대한체육회
2006.03.	선수촌 이전 마스터플랜 각계 의견수렴 및 최종 확정	대한체육회
2006.05.	부지 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진천군, 대한체육회
2007.01.~2008.10.	기본 설계	대한체육회
2008.11.28.	공사계약(던키 방식)	대한체육회
2009.02.05.	진입도로공사 착공	대한체육회
2009.05.18.	본 공사 착공	대한체육회
2011.08.18.	1단계 공사완공	대한체육회
2010.12.~2011.09.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및 결과 - B/C 1.49, AHP 0.666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결론	기획재정부
2012~2017	2단계 사업 추진 - 훈련시설(13): ①필승관(복싱, 카라테, 태권도, 우슈, 유도) ②개선관(역도, 볼링, 펜싱, 레슬링, 체조, 실내육상) ③오류관(세팍타크로, 스퀘시, 탁구, 핸드볼, 배드민턴), ④실내양궁장 ⑤빙상장(컬링,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⑥벨로드롬(사이클) ⑦웨이트트레이닝센터 ⑧크로스컨트리 트랙 ⑨하키장 ⑩력비장 ⑪실외양궁장 ⑫다목적필드 ⑬제2육상장 - 지원시설(7): ①선수숙소 ②선수식당 ③행정센터 ④스포츠과학센터 ⑤편의시설 ⑥하모니하우스 ⑦메디컬센터	대한체육회

연도	사업내용	비고
2017	- 선수촌 명칭 확정 “국가대표선수촌”(2017.08.) - 국가대표선수촌 2단계 공사 준공(2017.09.) - 국가대표선수촌 개촌식(2017.09.27) - 태릉선수촌 입촌 중목 → 국가대표선수촌 이전 추진(2017.10.~2017.11.)	대한체육회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조성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선수촌 장기운영 계획안이 수립된 후 2004년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가 최종 통보되었다. 2009년 5월 1단계 공사가 착공되어 2011년 8월 1단계 공사가 완공되었고(2011년 10월 일부 개촌), 2010년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2년 12월 2단계 공사가 착공된 후, 2017년 10월 2단계 공사가 완공되었다. 동시 훈련 가능인원은 1단계 공사 완료 시 11종목 350명에서 2단계 완공 후 36종목 1,150명으로 증가했다. <표 3-37>은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시설 현황이다.

표 3-37.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시설 현황

지역	구분	건물명	용도 및 수용	규모	건립연도	
진천		수영센터	· 경영풀 10레인(50m×25m), 2m 수심 · 아티스틱스위밍(수구): 33m×20m, 3m 수심 · 다이빙풀: 25m×25m, 5m 수심, 트램블링실 · 클라이밍장: 리드월, 볼더링월, 스피드월, 트레이닝월 (가변식월)	8,966㎡	2011	
		실내테니스장	· 지하 1층/지상 1층 · 케미컬 코트 4면	4,621㎡		
		조정·카누장	· 카누훈련장, 조정훈련장, 샤워·탈의실(지하 1층)	1,657㎡		
		농구·배구장	· 농구 훈련장, 배구 훈련장, 체력단련장	6,884㎡		
		실내사격장	· 10m·25m·50m 사대, 총기수리실	7,162㎡		
	훈련 시설 (22)	필승관	· 복싱 링 3면, 카라테 4면, 태권도 4면 · 우수 4면(산타2, 투로2), 유도 8면	15,282㎡	2017	
		개선관	· 역도 36면, 볼링 18레인, 펜싱 · 씨스트 30레인, 레슬링 8면, 체조리듬 2면 · 실내육상 100m 4레인	25,661㎡		
		오륜관	· 세팍타크로 4면 스쿼시 4면(단3, 복1) · 탁구 16면 핸드볼 2면 배드민턴 20면	14,149㎡		
		실내양궁장	· 양궁 4사로	3,453㎡		
		빙상장	· 컬링 5레인 아이스하키 1면 쇼트트랙 1면	12,446㎡		
		벨로드롬	· 사이클 경기장 1면(250m)	12,483㎡		
		웨이트트레이닝센터	· 체력훈련장	4,237㎡		
		제1육상장	· 400m(6레인) 및 100m(10레인)			2011

지역	구분	건물명	용도 및 수용	규모	건립연도
전남	주요 시설 (9)	테니스·정구장	·케미컬 코트 6면 ·클레이 코트 4면	10면	2017
		야구소프트볼장	·야구소프트볼	110m×110m	
		클레이사격장	·전용사대 3면	759㎡	
		크로스컨트리 트랙	·트랙 7개소(무이산 연결/내부순환 4.4km)	4.4km	
		하키장	·하키 경기장 2면	953㎡	
		력비장	·력비 경기장 1면	736㎡	
		실외양궁장	·양궁 경기장 16사로(124×83m)	1,435㎡	
		다목적필드	·1면 100m·200m 육상트랙	3,199㎡	
		제2육상장	·투척 경기장(창던지기, 해머, 투포환, 원반)	110m×60m	
	지원 시설 (10)	화랑관	·남·여 선수숙소(학습지원센터 포함)	48,290㎡	2011 2011 (19년 증축) 2017 2011 2017 2017
		선수식당	·선수식당(화랑관 내)	8,217㎡	
		행정센터	·사무실, 종합상황실, 직원식당, VIP실	8,217㎡	
		챔피언하우스	·강당, 교실, 회의실, 도서관, 종교실	6,884㎡	
		웰컴센터	·안내센터, 경비실, 홍보관, 만남의 장소	1,908㎡	
		스포츠과학센터	·영상분석실, 각종 측정실, 실험실	2,366㎡	
		게스트하우스	·2인실 40실, 4인실 18실, 20인실 2실	3,011㎡	
		편의시설	·북카페, 마사지실, 영화감상실 등	화랑관 내	
		하모니하우스	·원룸형 40실	2,529㎡	
		메디컬센터	·진료실, 각종 치료실, 검사실, 측정실	2,053㎡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은 크게 숙소시설, 실내훈련 및 실외훈련시설, 지원시설 세 종류로 구성되었다. <표 3-36>에서처럼, '숙소'의 경우, 화랑관(지상 15층, 지하 1층)이 8개 동에 823실을 갖춘 선수 숙소로 운영되며 총 1,150명을 수용한다. 또한 파트너종목의 숙박시설 용도로 총 60실의 게스트하우스와 직원용으로 활용되는 40실의 원룸형 숙소도 있다. '훈련 시설'은 총 22개다. 먼저 실내훈련시설은 수영센터, 농구배구장, 실내테니스장, 조정·카누장, 실내사격장, 필승관, 개선관, 오륜관, 실내양궁장, 빙상장, 벨로드롬이 있다. 실외훈련시설로는 제1육상장, 실외테니스장, 야구소프트볼장, 클레이사격장, 크로스컨트리트랙, 하키장, 력비장, 실외양궁장, 다목적 필드, 제2육상장 등이 마련되었다. '지원시설'에는 앞서 소개한 화랑관 숙소를 포함하여 식당, 행정센터, 메디컬센터, 스포츠과학센터, 웰컴센터, 챔피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하모니하우스 등의 지원시설이 갖추어졌다. 특히 숙소인 화랑관 내에서 선수들의 학습을 지원해줄 수 있는 '학습지원센터'가 갖추어져 선수들의 교육을 담당한다.

## 나.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운영

2021년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한 국가대표선수들의 훈련 지원 현황을 월별 및 총 인원수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표 3-38>과 같다.

표 3-38. 진천국가대표선수촌 국가대표선수 훈련지원 현황(2021)

(단위: 명)

월	대상 일수	인원
1월	31	176
2월	28	288
3월	31	285
4월	30	248
5월	31	383
6월	30	404
7월	31	352
8월	31	152
9월	30	169
10월	31	285
11월	30	477
12월	31	450
총계	365	3,669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2021년에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하여 훈련을 실시한 인원은 총 3,669명으로 2020년 2,122명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은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수시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 조성 및 식생활 개선을 통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선수촌 홍보를 통해 체육 문화 확산과 국민 참여 확대를 증진한다. 2021년에도 선수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선수들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다음 <표 3-39>와 같이 다양한 개선 사업이 이루어졌다.

표 3-39. 진천국가대표선수촌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

시설 구분	개선 요구	조치 결과
양궁장	국제대회 훈련 환경 조성	차폐식재 및 영상분석훈련시스템개선, 적응훈련시설 백보드 조성 등으로 경기력 향상 도모
스포츠클라이밍 훈련장	훈련장 보강	보더링벽 및 캠핑싱보드 추가로 기초 근력 강화 및 국제대회 우수 성적 도모

시설 구분	개선 요구	조치 결과
배드민턴장	안전쿠션 설치	모래훈련장 안전쿠션 설치로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
농구장, 배구장	LED 조명등 교체	LED 조명등 설치로 최적의 훈련 환경 제공
크로스컨트리	크로스컨트리 정비	계단 및 등산로 보수, 야자매트 추가 설치 등
럭비장	그늘막 필요	막구조물 및 인조잔디 설치
주거 및 편의시설	사우나 개선	사우나 설비시스템 및 마감 개선
	초화류 식재	초화류식재를 통한 내부 경관 향상 도모
	휴게공간 개선	목재 데크 오일스테인 칠 작업
	유해요소 차단	뱀망웁스 및 맨홀뚜껑 보수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의 입촌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선수 불편 사항에 대응하여, 위의 표에서처럼 2021년에는 양궁장, 스포츠클라이밍 훈련장, 배드민턴장, 주거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여러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뿐만 아니라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은 외부에서의 방문견학을 실시해왔는데, 다음의 <표 3-40>은 2021년 국가대표 선수촌으로의 외부 방문견학 세부 현황을 요약한 내용이다.

표 3-40.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방문견학 세부 현황(2021)

(단위: 명)

구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건수(회)	2	2	1	2	0	0	2	2	6	4	14	10	45
인원수(명)	9	7	4	6	0	0	4	7	14	19	84	37	191

※ 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인 견학 프로그램 일시 중단,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프로그램(유관 단체 대상)으로만 실시하였음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방문견학은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일반 국민이 체험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며,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하여 왔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인 견학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으며, 경기 단체 등 유관단체 대상으로만 45회 실시하였으며 191명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이들 시설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가대표선수들의 훈련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존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는데, <표 3-41>은 지금까지 3개의 선수촌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41. 선수촌 시설확충 현황(2003~2021)

(단위: 백만 원)

연도	사업내용	금액
2003	종합체육관 건립	3,070
	실내빙상경기장 신축	2,439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	1,000
	소계	6,509
2004	실내빙상경기장 신축	5,000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	3,500
	소계	8,500
2005	실내빙상경기장 신축	4,561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	4,500
	소계	9,061
2006	선수회관 리모델링	750
2007	선수회관 외장공사	345
	올림픽의 집 화장실 리모델링	135
	필승기숙사동(A, B, C동) 철거 후 부지정리	452
	소계	1,682
2008	감래관 보수 및 증축공사	2,437
	태백국가대표선수촌 다목적체육관 건립	1,000
	소계	3,437
2009	올림픽의 집 환경개선	364
2010	국제스케이팅장 냉동설비보강 및 전기승압공사	267
2011	국제스케이팅장 링크복도 및 환경개선	300
2012	국제스케이팅장 재정비(리모델링공사)	9,900
2013	실내빙상장 컬링장 재정비(면수확대 2면 → 3면)	1,000
2014	실내빙상장 재정비(단열보강, 내부도장 등)	1,000
2015	태백국가대표선수촌 개·보수 선수촌시설보강 및 진천국가대표선수촌운영(LED조명등 교체 등 전기설비)	1,129
2016	국제스케이팅장 링크바닥 보수공사	3,000
2017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완공 및 개촌 - 1,405,554㎡(425,180평), 35개 종목, 1,150명 동시 수용 가능 - 동시 훈련 가능인원 2단계 35종목 1,150명으로 증가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완공으로 인하여 별도의 확충 소요비용 없음
2018	- 훈련시설 개선(컬링 LED보완공사, 럭비훈련장, 아이스하키장, 펜싱, 유도 등) - 선수식당 환경개선 공사 등 - 조경 유지 관리 등	400
2019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웰컴센터 증축	800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크린골프 훈련장 설치	113

연도	사업내용	금액
2019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클라이밍 훈련장 설치	465
	진천국가대표선수촌 학습지원센터 설치	42
	소계	1,420
2021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웰컴센터 VR체험실 조성	139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에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만 개·보수 지원이 이루어졌다.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웰컴센터에 VR체험실을 조성하는 데 1억 3,900만 원이 지원되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보전하고 동계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평창선수촌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부지면적 9,653㎡, 연면적 9,909㎡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될 평창선수촌은 설상종목(스키, 봅슬레이, 바이애슬론, 루지) 전용 훈련장의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동계종목 훈련센터, 하계종목 순환훈련, 꿈나무-청소년-국가대표 후보선수 합숙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되며, 2021년에는 대한체육회로 평창국가대표선수촌 건립 부지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공사 발주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가 실시되었다.

## 5. 체육계 학교 및 지도자 역량강화 지원

### 1) 체육계 학교 지원

체육계 학교 지원 사업은 훈련여건 개선 및 우수 학생선수의 체계적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장비, 대회 개최,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자 실시된다. <표 3-42>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루어졌던 체육계 학교 지원 사업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3-42. 체육계 학교 지원 현황(2016~2021)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지원 학교	27개 체육중고	27개 체육중고	27개 체육중고	27개 체육중고	27개 체육중고	
체전 개최장소	인천체고	광주체고	부산체고	미개최	미개최	순환 개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연구학교	서울체중 강원체고 충북체고	경기체중 인천체고 충북체고	폐지	-	-	교육부 지정 '19.01.폐지

※ 주: 2017년 사업이관(국민체육진흥공단 → 대한체육회)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에도 총 27개 체육중고등학교에 훈련장비와 훈련기구, 용품 구입비, 선수 훈련비, 시설 보수비용이 지원되었다. 전국 순환개최가 원칙인 체육고등학교 전국체육대회는 2020~2021년에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연구학교 사업은 2019년 1월 폐지되었다.

## 2) 외국인 코치 초청 지원

‘외국인 코치 초청’ 사업은 세계 정상급 지도자와의 교류를 위한 것이다. 국내 선수 및 지도자들의 경기력과 코칭역량을 향상시키고 종목별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시행되어 왔다. <표 3-43>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외국인 코치 초청 현황이다.

외국인 코칭 초청 인원은 2017년에 4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21년에는 7개 국가 7개 세부종목의 7명만 초청되었다. 이 사업은 초기에 국비로 지원(2006~2013년)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진행되고, 2021년에는 표에서처럼 2억 1,577만 원이 사업에 지원되었다.

표 3-43. 외국인코치 초청 현황(2017~2021)

(단위: 종목, 명, 개국, 천 원)

연도	종목 수 (세부종목)	인원 수 (명)	국가 수 (개국)	지원 금액(천 원)		
				국고	기금	합계
2017	14(28)	49	14	-	1,849,482	1,849,482
2018	10(16)	16	14	-	343,084	343,084
2019	6(7)	9	7	-	311,706	311,706
2020	5(5)	5	5	-	229,800	229,800
2021	6(7)	7	7	-	215,772	215,772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 3) 국외정보수집(지도자 해외연수)

국외정보수집(지도자 해외연수) 사업은 각종 해외 세미나 및 연수 참가를 지원, 종목별

선진국의 훈련 및 경기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대표선수 전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종목은 메달획득 유망종목을 우선 선정하며, 지원대상은 종목별 국가대표 지도자 및 지원 요원들이다. <표 3-44>는 2021년 국외정보수집 사업 현황이다.

표 3-44. 국외정보수집(지도자 해외연수) 사업 현황(2017~2021)

(단위: 종목, 명, 개국, 천 원)

연도	종목 수 (회)	인원 수 (명)	국가 수 (개국)	지원 금액(천 원)		
				국고	기금	합계
2017	17(24)	36	25	-	113,980	113,980
2018	28(33)	41	21	-	108,807	108,807
2019	19(25)	34	13	-	83,158	83,158
2020	2(3)	3	3	-	12,092	12,092
2021	10(11)	20	8	-	82,471	82,471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지도자 해외연수 사업은 2013년(29개 종목 52명 지원)까지 국고 지원으로 이루어지다가 2014년(29개 종목 50명 지원)부터는 기금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021년에는 11종목에서 20명이 8개국으로 파견되었고, 약 8,200만 원이 지원금으로 사용되었다.

## 6. 체육인 복지 지원

정부가 실시하는 체육인 대상의 복지 사업은 생애주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부터 은퇴 선수 취업 지원, 체육인 일자리 창출 지원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은 2020년에 이루어졌던 체육인 복지 강화 사업의 세부적 내용이다.

### 1) 국가대표 능력개발 교육

국가대표 능력개발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데, <표 3-45>는 2020년과 2021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다.

표 3-45. 국가대표 능력개발 교육 운영 현황(2020~2021)

구분	계				증가율 (%)	일반				어학			
	과정 수(회)		인원(명)			과정 수(회)		인원(명)		과정 수(회)		인원(명)	
	'20	'21	'20	'21		'20	'21	'20	'21	'20	'21	'20	'21
계	3,079	7,013	9,560	6,782	-29.1	2,269	2,834	4,444	1,254	810	4,179	5,116	5,528
온라인교육	2,708	5,359	7,027	4,208	-40.1	2,130	2,657	3,042	318	578	2,702	3,985	3,890
집합교육	208	667	1,905	1,977	3.8	139	177	1,402	936	69	490	503	1,041
전화교육	163	987	628	597	-4.9	-	-	-	-	163	987	628	597

※ 주: 증가율은 인원수 총계에 대한 2020년 대비 2021년의 상승률임.

※ 주: 집합교육(전체) 667회는 화상교육+소양교육, 집합교육(어학) 490회는 화상교육임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도 국가대표 능력개발 프로그램에는 2020년도에 비해 2,778명이 감소한 총 6,782명이 참가하였다. 국가대표 선수 대상 능력개발 교육의 세부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표 3-46>과 같다.

표 3-46. 국가대표선수 능력개발 교육 현황(2021)

구분	교육방법	수강인원(명)	세부프로그램(수강인원)
일반 분야	온라인교육	318	자격증(44), 기초소양(35), 리더십(71), 재테크(47), 기타(121)
	화상교육	523	실시간화상(14), 손상예방 운동(15), 트레이닝 시리즈(17), 외 88개(477)
	소양교육	413	최신TECH(63), 불안감해소(55), 팀웍과 리더십(43), 외11개(252)
어학 분야	온라인교육	3,890	영어(2,723), 중국어(265), 일본어(817) 외 11개(85)
	전화교육	597	영어(438), 일본어(125), 중국어(34)
	화상교육	1,041	영어(906), 일본어(111), 중국어(24)
합계		6,782	

※ 주: 월별 중복 수강인원 포함.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교육이 다양화되고 세부 프로그램 수 역시 대폭 증가했다. 위의 표에서처럼 2021년 생애주기 교육 현황을 보면, 국가대표선수들의 경우 일반분야에서는 자격증, 손상 예방 및 트레이닝, 최신기술, 심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고, 어학분야의 경우 주로 영어 프로그램에 선수들 대부분이 참여하며 일본어 프로그램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은퇴선수 취업 지원

은퇴선수 취업 지원 사업은 현역 운동선수(잠재은퇴선수)를 대상으로 선수시절부터 은퇴 이후까지 취업 지원(교육, 상담, 멘토링 등), 직업훈련 교육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유도하고자 실시된다. 2021년 지원 추진 성과는 <표 3-47>과 같다.

표 3-47. 은퇴선수 취업 지원 추진 성과(2017~2021)

(단위: 건,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	취업	비율	지원	취업	비율	지원	취업	비율	지원	취업	비율	지원	취업	비율
취업지원서비스	102	38	37.3	252	82	32.5	278	77	27.7	498	51	10.2	471	33	7.0
맞춤형직업훈련(지원인원)	211			203			폐지*			-			-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지원(교육인원)	3,196			4,037			5,380			3,014 (온라인 전환)			2,420 (실시간 온라인 교육)		

※ 폐지 이유: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 중복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은퇴선수 취업 지원은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으로 구성되며 체육인 진로지원통합센터 및 다섯 개 권역센터(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에서 운영된다. 맞춤형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도’와 중복되어 2019년 폐지되었다. 2021년에는 471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이 중 33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또한 상기 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은퇴선수 진로지원은 단순한 취업인원 증대보다 선수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진로설계가 더 중요하므로 선수들의 경력 개발과 구직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 집중직업훈련을 마친 인원이 ‘기타 진로전환’ 실적으로 별도 집계되었다. 2021년의 경우 77명이 ‘기타 진로전환’ 실적으로 추가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체육인 복지 지원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인 복지를 위해 장학금, 보조금, 포상금 등의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은퇴국가대표 및 학생 유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 및 체육진흥을 위해 공헌한 체육인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표 3-48>은 2021년에 지원된 장학금과 보조금 현황이다.

표 3-48. 체육인 장학금 및 보조금 지원 현황(2021)

구분	대상	지원내용	지원결과		
			2019년	2020년	
장학금	대학원 진학	은퇴 국가대표선수	1인 1학기 300만원 내(2년)	136명/ 374,730천 원	121명/ 335,919천 원
	체육장학생	초·중·고 유망선수	초: 30만 원씩 지원 중: 50만 원씩 지원 고: 100만 원씩 지원	553명/ 353,600천 원	663명/ 427,300천 원
보조금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 연구비	올림픽 등 국제대회 입상선수 및 지도자	평가점수에 따른 월정금/일시금	28명/13명	78명/36명
	생활보조비	현역 국가대표선수	1인 매월 50만 원	12명	11명
	전환지원금	연금지급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이하 자	1인 매월 50만원	-	2명
	특별보조금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 공이 있는 불우체육인	대상자별 상이	1명	1명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 장학금 지원의 경우, 784명의 선수에게 약 7억 6,300만 원이 지원되었고('20년 784명에게 약 7억 2,800만 원), 보조금도 14명('20년 13명)에게 지원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경기지도자 연구비, 체육장학금 등 다양한 체육인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추진에 따른 최근 5개년간 연도별 체육인 복지지원금 지급 현황은 <표 3-49>에 정리되었다.

표 3-49. 체육인 복지지원금 지급 현황(2017~2021)

(단위: 천 원, 명)

연도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		경기지도자 연구비		체육유공자*		체육장학금		선수지도자 보호지원금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2017	8,193,600	1,072	342,100	50	115,694	5	500,000	787	622,000	1,489
2018	8,940,200	1,120	838,700	166	120,420	6	498,700	777	622,000	1,513
2019	8,782,500	1,153	286,900	49	131,165	6	380,100	605	589,000	1,555
2020	8,781,650	1,161	133,100	16	134,512	6	353,600	533	589,000	1,500
2021	9,916,075	1,193	569,200	34	128,956	6	427,300	663	589,000	1,500
연도	특별보조금		국외유학 지원금		복지후생금		합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2017	-	-	50,331	2	414,616	76	10,238,341			3,481
2018	-	-	41,396	2	444,462	85	11,505,878			3,669
2019	-	-	13,541	1	424,953	77	10,608,159			3,446

연도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		경기지도자 연구비		체육유공자*		체육장학금		선수지도자 보호지원금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2020	9,000	1	-	-	448,744	100	10,449,606			3,317
2021	20,000	2	-	-	386,924	138	12,037,455			3,536

※ 주: 경기력향상연구연금과 체육유공자 지급 인원은 역대 지원인원(누적) 표기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체육인 복지지원금은 8개 분야에 걸쳐 지급되고 있다. 2021년 지급된 체육인 복지지원금은 약 120억 3,700만 원으로, 총 3,536명이 지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이 월정식으로 99억 1,600만 원, 경기지도자 연구비 5억 6,900만 원, 체육유공자 1억 2,900만 원, 체육장학금 4억 2,700만 원, 선수지도자 보호지원금 5억 8,900만 원, 특별보조금 2,000만 원, 복지후생금 3억 8,7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국외유학 지원 사업의 경우 2020~2021년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체육인 복지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운동과 학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우수 체육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즉 학업 의지가 높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저소득층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 선수 1,3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학생선수는 우선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담임)교사의 추천서를 받으면 신청이 접수된다. 이후 학교 및 시·도 교육청별로 장학생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심사 및 선발이 이루어진다. 이 사업은 2018년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2021년까지 추진된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예산과 지원 인원 현황은 다음 <표 3-50>과 같다.

표 3-50.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성과(2019~2021)

(단위: 백만 원, 명)

연도	사업 예산	지원 인원	주요 개선사항(성과)
2019	7,500	1,118	
2020	5,667	1,3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발 장학생 증원 및 관리체계기반 구축</li> <li>- 문체부·교육부·교육청 등 협업으로 관리체계기반 구축</li> <li>- 장학금 포인트 지급방식 개선 등을 통한 집행 투명성 강화</li> </ul>
2021	5,667	1,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차 선발 진행으로 장학생 지원인원 확대 및 집행률 제고</li> </ul>

연도	사업 예산	지원 인원	주요 개선사항(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률 89.7%: 2020년(81.6%) 대비 8.1%p 상승</li> <li>• 장학금 수혜자 실시간 저소득 자격관리 강화</li> <li>- 사업관리 전용시스템 구축 및 카드사 사회보장정보원 등 연계</li> </ul>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1). 2021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계획(안),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실적보고서.

이러한 지원과 더불어 대한체육회는 매년 각 분야(경기, 지도자, 심판, 생활체육, 학교체육, 공로, 연구)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또는 기관 및 팀에게 포상을 실시하는데, <표 3-51>은 2021년에 이루어진 포상내역이다.

표 3-51. 포상내역 현황(2021)

(단위: 명, 팀)

구분	경기	지도	심판	생활체육	학교체육	공로	연구	스포츠가치			계
								나눔	인권혁신	안전	
체육대상	-										-
최우수상	2명	2명	1명	1명	1명	2명	1명	1명	-	1단체	11명 1단체
우수상	3명	3명	2명	2명	2명	2명	2명	1명	1단체	-	17명 1단체
장려상	14명 5팀	12명	10명	10명	4명	10명	1명	-	2단체	2명	63명 7단체(팀)
합계	19명 5팀	17명	13명	13명	7명	14명	4명	2명	3단체	2명 1단체	91명 9단체(팀)

※ 주: 시상식은 2021년 2월 23일, 올림픽공원 뮤즈라이브에서 진행됨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 이루어진 제67회 대한체육회체육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다수의 대회 개최 및 참가가 불가능했던 상황으로 인해 체육대상 수상자가 없었으며, 총 여덟 분야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합쳐 총 9개 팀과 91명에 대한 수상이 이루어졌다. 이는 10개 팀, 131명의 수상이 이루어졌던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수상 단체(팀)과 인원 모두 줄어든 모습이다. 2021년에는 2020년 신설되어 시범 운영으로 진행되었던 ‘스포츠가치 부문’이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표 3-52>는 체육발전유공자 포상과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에 관련한 내용이다.

표 3-52. 체육발전유공자 및 대한민국체육상 포상내역 현황(2021)

2021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추천								
목적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선수, 지도자 등 체육인에게 훈장 수여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추천인원	종목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포장	계
	17종목	5	8	9	3	3	3	31
제59회 대한민국체육상 추천								
목적	체육진흥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 표창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상부문	[대통령상] 경기상(추천), 지도상(추천), 연구상, 공로상(추천), 진흥상(추천), 극복상, 특수체육상 [장관상] 심판상(추천), [특별상] 체육인의 장한 아버지상(추천)							

※ 주: 전수식 및 시상식 2021년 10월 15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됨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 체육발전유공자 전수식에서 17종목 총 31명을 대상으로 훈장 전수 및 포상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체육상은 대통령상과 장관상으로 나누어지는데, 올해에는 대통령상 7개 부문과 장관상 2개 부문에 대해 시상이 진행되었다. 더불어,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공헌한 체육인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제도가 시행 중인데, 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선수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이하)을 공급한다. 올해에는 총 31개 종목에서 101명이 혜택을 받았다.

2021 체육백서

2021 Sport White Paper

4

## 학교체육

- 제1절 학교체육 개관
- 제2절 학교체육 현황
- 제3절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 제1절 학교체육 개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는 ‘학교체육’을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으로 정의한다. 정규 교과목으로서의 체육수업이나 방과 후나 점심시간에 학교 안에서 즐겼던 스포츠 동아리나 운동 등이 모두 학교체육 범주에 포함된다. 이처럼 19세기 말 근대식 학교의 도입과 함께 자리 잡기 시작한 학교체육은 인간을 중심으로 삼는 교육을 실시하며, 지덕체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교육 인식론 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하는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체육은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과 함께 한국 체육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회 제도로서 기능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하며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이 공존하는 형태를 지닌다. 이 때문에 학교체육은 일반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 증진과 함께 선수 학생들의 운동 재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이중적 기능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과는 다소 다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동시에 학교체육에 개입하는 구조적 이유다. 주로 교육부가 교육과정 및 학교체육정책 수립을 통해 학교체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안과 밖의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및 스포츠강사 지원, 저소득·다문화 학생 등 취약계층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공급, 학교운동부 및 지역사회 스포츠클럽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학교체육 담당 부처의 이중성은 오랜 역사를 지닌다. 해방 후부터 1981년 4공화국까지는 주로 ‘문교부’ 내 체육 담당 부처에서 학교체육을 관장하였다. 이를 ‘교육부처 존치기’라 한다. 이후 학교체육은 1982년 5공화국에서 1993년 문민정부 이전까지 ‘체육부’로 관장 부서가 이관되며 ‘체육부처 이양기’를 겪다가, 1994년 문민정부부터는 교육부(‘21년 ‘교수학습평가과’)와 문화체육관광부(‘21년 ‘체육진흥과’)가 함께 학교체육을 관장하는 ‘양부처 협력기’를 형성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이 뿐 아니라, 학교체육은 각 지역의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원 및 관리를 받고, 체육회와 종목단체 역시 관련 사업 중심으로 학교체육에 개입한다. 여기에 덧붙여, ‘학교체육진흥회(17개 시도교육청이 회원인 비영리법인)’가 설립되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자 한다.

학교체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제도가 뒷받침된다. 우선적으로 학교체육을 관장하는 기관과 법, 그리고 교육과정 등의 ‘운영 체계’가 중심에 있다. 또한 학교체육 활성화에 중심 역할을 하는 체육 담당교원 및 학생, 그리고 체육관 같은 인적 및 시설 자원도 관련 요소로서 학교체육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제도와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교육청 등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에는 학교체육 수업 내실화 정책에서 학생의 ‘건강 체력’을 증진하려는 프로그램 지원,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 활성화 시책, 나아가 학교운동부 선진화 및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 정책 등이 포함된다.

2021년은 체육수업 내실화, 교원 지도 역량 강화 및 체육교육 전문인력 지원,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운영,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등 기존의 학교체육내실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학교체육 수업 및 신체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수업모형, 학습 상황별 성취기준 재구조화 및 수업·평가 자료, 온라인 체육수업 자료 등을 개발 및 보급하여 블랜디드 체육수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 대면 방식의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수준별 교내리그, 마을단위·지역리그 운영을 통한 1학생 1스포츠 저변을 확대하여 비대면·대면 스포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전문체육과 관련해서는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체육 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체육시설 CCTV 설치 근거와 스포츠분야 인권교육 의무화를 포함하였다. 또한,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정례화 및 운동부 지도자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였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를 감축(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하고 수업결손 보충을 위한 학생선수 e-school 운영(2,855교, 47,551명)을 통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20년 14.2% → ‘21년 10.5%)을 줄였다.

마지막으로는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인식 개선’을 추진하였는데, 체육활동에 대한 중요성 인식 개선 및 학교체육 네트워크 지원체계 구축,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리 등을 통해 이를 실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체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스포츠윤리센터 등 범부처 합동으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2021년에 이루어졌던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은 ‘운동하는 일반학생’과 ‘공부하는

학생선수'라는 지금까지의 학교체육 관련 정책 기조를 따르면서 이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비대면 자료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의 신체활동 감소를 막는 데 집중하였다.

## 제2절 학교체육 현황

‘학교체육 현황’에서는 먼저 학교체육 거버넌스와 관련법이 포함되어 이루어진 ‘운영 체계’를 시작으로, 체육과 교육과정, 학생 및 체육 담당교원, 학교체육 관련 시설, 학생건강 체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운동부와 체육계열 학교 현황을 정리하였다.

### 1. 학교체육 운영체계 현황

‘학교체육 운영체계’ 관련 내용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교체육에 개입하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학교체육진흥회, 대한체육회 같은 거버넌스 체계와 함께 학교체육 관련법 등이 정리되었다.

#### 1) 학교체육 조직 간 협력 체계

학교체육에 연계된 주요 조직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학교체육진흥회, 대한체육회(학교체육부)로 이루어졌다. 이 조직들은 서로 간에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한다. 각 조직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는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 중앙행정부처이다. 유아, 초·중등 및 고등교육, 교육 복지, 평생교육, 학술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기관 및 소속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그 명칭이 변경되어 왔다. 1948년에는 문교부로 시작하여 1990년 교육부,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 이후 다시 현재의 ‘교육부’ 명칭을 유지하는 중이다. 2020년 기준으로 교육부는 장·차관 각 1명과 3실(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지원실), 4국(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 평생교육국,

교육안전정보국), 7관(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산학협력정책관,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36과로 이루어져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의 학교체육 관련 업무는 1982년 체육부로 이관 후 극히 일부만 관장하다, 2005년 3월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체육보전급식과가 신설되며 폭넓은 학교체육 정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성체육예술과가 민주시민교육과로 개편 되면서, 실제 체육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는 다시 사라졌다. 2021년 현재 교육부 내 학교체육 관련 담당자는 총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파견연구사 2명)으로 교수학습평가과 체육 예술교육지원팀에 소속되어 있다. 교육부는 매년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체육 기본계획의 기준이 되는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는데, 2021년 교육부의 학교체육 주요 계획은 <그림 4-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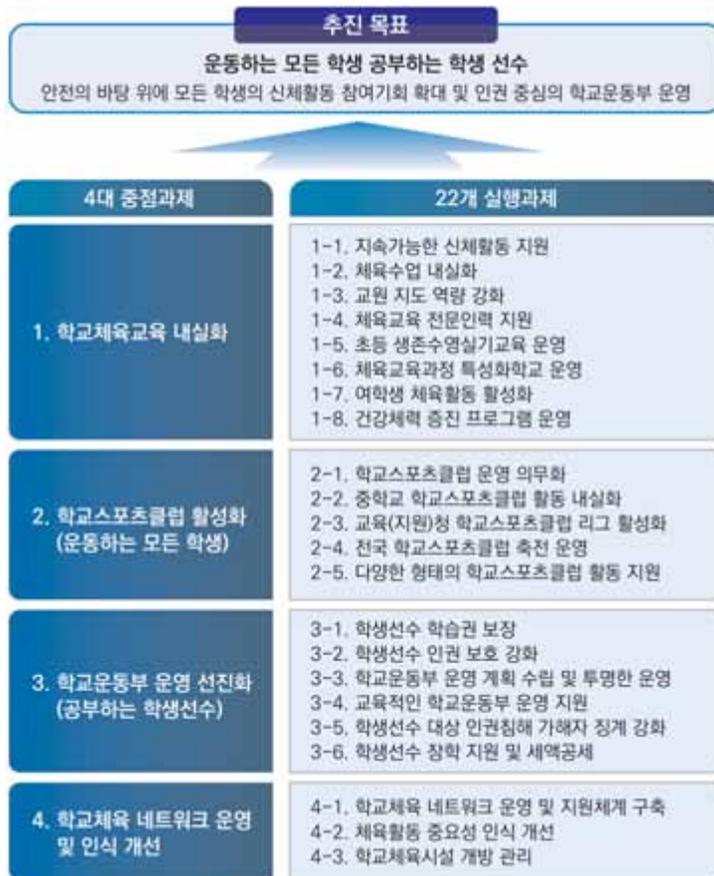


그림 4-1. 학교체육 정책목표·추진과제

교육부(2021)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

2021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는 네 가지 중점과제가 포함되었다. 첫째,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다. 이 과제에는 지속가능한 신체활동 지원, 체육수업 내실화, 교원 전문역량 강화, 체육교육 전문인력 지원,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확대,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이 실행과제로 설정되었다. 둘째,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다. 이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내실화,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운영, 다양한 형태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등이 실행과제로 포함되었다. 셋째, 학교 운동부 운영 선진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생선수 인권 보호 강화,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 및 투명한 운영, 교육적인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학생선수 대상 인권침해 가해자 징계 강화, 학생선수 장학 지원 및 세액공제 등이 주요 실행과제로 설정되었다. 넷째,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인식 개선이다. 이 과제를 실행하고자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체육활동 중요성 인식 개선,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리 등이 세부과제로 마련되었다.

#### 나.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를 목적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에 설치된 총 17개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이다. 교육감을 중심으로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된 교육 및 학예 관련 업무를 집행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등의 학예 관련 사무를 관장하고, 심의·의결기관인 시·도교육위원회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교육청 내에는 체육 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데, 각 시·도의 교육 방향과 교육부에서 매해 수립하는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시·도에 적합한 체육 관련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물론 각 시도교육청별 체육 담당 부서의 명칭이 동일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체육 담당 장학관 1인과 장학사 7인이 ‘평생진로교육국’ 내 ‘체육건강문화 예술과’에 소속되어 있다. 매년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을 통해 서울특별시 교육방향에 따른 학교체육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2021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생활 속에서 스포츠가치를 실천하는 건강한 생태·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학생 1스포츠 참여 활성화, 학생 체력격차 회복 및 건강체력 증진, 서울형 학교운동부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지원한다.

다. 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

지역교육청은 한 마디로 시도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시·도 광역자치체의 교육·학예 관련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운영된다. 지역교육청에는 교육장의 감독아래, 광역자치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 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등의 사무를 위임받아 관장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2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해진다. 지역교육청은 2009년까지 ‘교육청’의 명칭을 사용했으나, 2010년 법령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동부 교육청은 2010년 이후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의 명칭으로 사용된다. <표 4-1>은 2021년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176개의 지역교육청 현황이다.

표 4-1. 전국 시도교육청별 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 현황

시도	연번	기관명	시도	연번	기관명	시도	연번	기관명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대구	19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경기도	37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2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광역시	20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38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3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21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39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4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22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4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5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23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4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6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24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42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7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25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43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8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광주	26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44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9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광역시	27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45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10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대전	28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46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11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광역시	29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47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12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울산	30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48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13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광역시	31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4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14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경기도	32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50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15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33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51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16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34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52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17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경기도	35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53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18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36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54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시도	연번	기관명	시도	연번	기관명	시도	연번	기관명
경기도	55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충청남도	95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경상북도	135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56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96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136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57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97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137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58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98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138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59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99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139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60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100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140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61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101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141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62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102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142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63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103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143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64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104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144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
	65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105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		145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66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106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146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67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107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		147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68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108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		148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강원도	69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109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149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		
	70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110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150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71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111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151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7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112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152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73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113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153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74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114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154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75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115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155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76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116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156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77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117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157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78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118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158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79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119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159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80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120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160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81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121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161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82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122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162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83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123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	163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전라북도	84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124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164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85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125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165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86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126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166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87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127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167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88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128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168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89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129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	169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90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130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	170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91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131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	171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92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132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	172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93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133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	173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94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134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174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시도	연번	기관명	시도	연번	기관명	시도	연번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175	제주시교육지원청	17개 시도(세종시는 교육지원청 없음) 176개 교육지원청					
	17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2022)

〈표 4-1〉에 정리된 지역교육청은 관할 구역 내 각급학교의 학교체육에 관한 운영·관리와 지도 및 감독을 수행하지만, 실제 학교에 가장 가까이에 있기에 관리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장학 및 각종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학교운동부 운영 및 전국(소년)체전 기획 및 지원 등 지역단위 학교체육 활성화의 중심에 있으며, 지역 내 체육교사의 교류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의 주축이 되는 등 지역 학교체육 발전의 주된 역할을 한다.

#### 라. 학교체육진흥위원회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근거하여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효율적 추진과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표 4-2〉는 학교체육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관련 법규가 정리된 내용이다.

표 4-2. 학교체육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관	위원회	역할	관련 법규
교육부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학교체육 진흥 및 활성화 관한 사항 심의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시·도 조례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위원회	학교운동부지도자 배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학교체육 진흥 및 활성화 관한 사항 심의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시·도 조례
단위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체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시·도 조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출처: 교육부(2021),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단위 학교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규에 근거한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된다. 이 위원회를 통해 각 학교체육 추진 주체들은 학교체육 진흥 및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 마. 학교체육진흥회

학교체육진흥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학교체육 정책의 집약적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다. 17개 시도교육청을 회원으로 하며 교육부, 시도교육청, 문체부, 대한체육회의 협력체계 하에 운영된다. 지난 2012년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후, 6년 만인 2018년에 설립되었다.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일반학생) 및 학교운동부(학생선수) 운영, 학생선수 학사 관리와 진로·진학 지원, 일반학생 체육활동 확대 등을 교육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7조에 의거 학교체육진흥원이 교육부 소속 산하 단체로 설립되도록 근거하였으나, 2018년 10월 26일 창립총회를 거쳐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이사장으로 하며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사장 1명과 교육부 추천인 2명, 시도교육청 추천인 3명,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포함) 추천인 3명, 외부인원 2명으로 구성된 총 11명의 이사진이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교육부 내에 체육전담부서가 없는 현실에서 교육부의 다양한 정책을 현장에 시행하는 데 학교체육진흥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사회, 대의원총회,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무처(사무처장 1명 및 직원 4명)가 관련 사무를 수행한다. 학교체육진흥회는 학교체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체육수업 질 제고, 학생 및 교사의 학교체육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및 운영, 학교운동부 활동 및 운영, 학교체육 지도자 역량 강화, 국내 외 학교체육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2019년까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다가 2020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의 분담금(17개청 당 70백만 원 = 1,190백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 바. 대한체육회(학교체육부)

대한체육회는 학교체육을 둘러싼 거버넌스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명시된 특수법인이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한국의 아마추어 스포츠를 육성하고 경기단체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이다. 스포츠 체계 혁신, 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스포츠 참여 확대,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주요 사업으로 두며, 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생애주기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에서 학교체육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 학교운동부 지원, 학교 안/밖 스포츠 활동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및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운영 지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지원, 학교스포츠 활성화 정책 건의 등이 포함된다.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는 ‘학교체육위원회’도 있다. 학교체육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 및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학교체육 진흥, 학교체육 진흥 조사·연구, 체육연구 논문발표 및 강습회 개최, 학교체육시설, 학교체육행사, 학교체육공로자 표창 추천,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시·도 학교체육위원회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학교체육 위원회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들을 심의한다.

더불어 학교체육과 관련하여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운영 계획 수립·추진,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인건비 등),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대회·전국대회 지원,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별 주관단체 대응투자 확보(5:5), 학교스포츠클럽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대회 개최 시 인적(심판 등) 및 물적(용품 등) 지원,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종목 지역 클럽팀 참가 허용, 대회참가 횟수를 포함한 참가신청서 개선, 자유학기제,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체육 지도자 지원, 학교와 지역스포츠클럽 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사항을 협조한다.

## 2) 학교체육 관련법: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체육은 2007년 12월 교육기본법 제22조의 2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는 학교체육 관련 조항이 신설되며 급격히 발전하였다. 이어 체육계는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교체육 관련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해왔고, 다각도의 노력이 펼쳐진 결과 2012년 1월 「학교체육 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기본 시책 수립 및 시행

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역시 이러한 정부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학교체육의 진흥이 국가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역 단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또한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및 그 밖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조치하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 법을 근거로 지난 2018년 12월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 기본 계획에서는 크게 네 가지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둘째 운동하는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셋째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체육인재 육성 체계 변화, 넷째,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그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2019년과 2020년에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이 교육부에서 발표되었고, 각 지역의 현장에서는 이에 기초한 관련 사업이 시행되었다.

2017년 4월 18일 일부개정(2017.10.19. 시행)을 통해 금지약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의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0년 10월 20일 일부개정(2021.04.21. 시행)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인 학교체육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2021년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만,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 2. 체육과 교육과정 변천 및 현황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변화되어 왔다. 체육과 교육과정은 총 10번의(1~7차 교육과정, 2007, 2011,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을 거쳤고, 2021년 현재는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중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까지는 전쟁 발발 등 사회적 혼란스러운 여건 속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교수요목기(1946~1954)의 체육은 국민학교(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까지 필수교과였고, 교과명칭이 일제강점기 ‘체조’라는 명칭에서 초등학교에서는 ‘보건’, 중학교에서는 ‘체육·보건’, 고등학교에서는 ‘체육’으로 명칭이 변화되었다. <표 4-3>은 1954년 제1차부터 2015년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4-3. 초·중·고등학교 체육교과 명칭 및 이수단위 변천

구분	제1차 (1954)	제2차 (1963)	제3차 (1973)	제4차 (1981)	제5차 (1987)	제6차 (1992)	제7차 (1997)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초등 학교	보건 (3)	체육 (3)	체육 (1학년, 2 2~6학년, 3)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7)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7)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7)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6)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6)	즐거운 생활 (384)	즐거운 생활 (384)
				3~6학년 체육(3)	3~6학년 체육(3)	3~6학년 체육(3)	3~6학년 체육(3)	3~6학년 체육(3)	3~4학년 (204)	3~4학년 (204)
중학교	체육 (2)	체육 (2-4)	체육 (3)	체육(3)	체육(3)	체육(3)	1,2학년 체육(3) 3학년 체육(2)	1,2학년 체육(3) 3학년 체육(2)	1~3학년 (272)	1~3학년 (272)
고등 학교	체육 (1)	체육 (24단위)	체육 (14~18 단위)	체육: 필수 (6~8단위) 체육: 선택 (8~10단위)	체육: 필수 (6단위) 체육: 선택 (8단위)	체육: 필수 (8단위) 체육: 선택 (8단위)	체육과건강 (4단위) 체육이론 (4단위) 체육실기 (4단위) 이상	1학년 (4단위) 2~3학년 선택: 운동과 건강 생활 (4단위), 스포츠 문화(4단위), 스포츠 과학(6단위)	체육교과 10(5)	체육교과 10

※ 3차까지는 연간 35주 기준(고등학교는 36주 기준). 이후 연간 34주 기준. 1시간은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단위임

※ 과목명에 붙은 괄호는 주당 편성 시간

※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의미함(예, 1학기(18주 기준), 18시간 이수하면 1단위)

※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초등학교는 학년군별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 중학교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 고등학교 1단위는 50분 기준으로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의미함(괄호 안의 숫자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

※ 출처: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ncic.go.kr)

제1차 교육과정기(1955년~1963년)의 체육교과 명칭은 초등학교에서는 ‘보건’, 중등학교에서는 ‘체육’이었다. 보건교과 및 체육교과의 목표는 신체적 발달의 목표, 사회적 발달의 목표, 위생 및 민주생활을 위한 세 가지로 설정되었다. 체조, 스포츠, 무용, 위생, 체육이론의 내용이 다루어졌고, 중학교부터 남녀별로 교육내용이 다르게 제시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기(1963년~1973년)에는 체육과 명칭이 ‘체육’으로 통일되었다. 학교급에 따라 목표가 다른 형식으로 제시된 것이다. 목표에 제시된 핵심어는 놀이, 운동, 스포츠, 건강, 표현, 보건, 안전, 레크리에이션 등이 대표적이었고, 내용 측면에서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레크레이션’이라는 새 영역이 중등학교에 추가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년)에는 체육목표를 일반목표와 학년별 목표로 구체화하였다. ‘목표’는 운동을 통한 체력향상과 운동기능 습득, 경기규칙과 질서준수, 보건 및 체육 활동에 관한 기초지식과 실천을 통한 안전한 생활능력과 태도함양 등이 강조되었다. 특히, 내용 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였고(예. 중학교 6개 영역 → 10개 영역), 초등학교의 경우 놀이 대신 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내용 수준을 높였다. 이 시기에는 당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초·중·고등학교에서 순환운동과, 초·중학교에서 질서운동이 새로운 영역으로 도입되었고, 좀 더 특징적인 점은 남녀별로 교육 내용을 달리 제시(예. 중학교 축구와 투기는 남학생만, 무용은 여학생들에게만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년)는 후속 체육교육과정(5~7차) 내용 영역 설정에 모체가 되는 ‘영역’의 기본 체제를 확립한 시기였다. 국민학교(현 초등학교)의 경우 움직임 교육 과정의 영향으로 기본 운동 영역이 도입되었고, 기본운동, 무용, 게임, 등 8가지 영역으로 내용이 세분화되었다. 중·고등학교에는 순환운동과 계절운동이 삭제되었으나,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평생 스포츠 및 야외 활동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년) 체육과는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심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육체계를 설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학교의 경우 심동적 영역은 육상운동, 체조, 수영, 개인 및 단체운동, 무용, 체력운동, 인지적 영역은 이론, 보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의 내용이 심동적 영역과 분리되어 제시된 부분은 한계로 지적된다.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년)에는 체육과의 ‘성격’이 문서에 추가되어, 신체적 능력과 환경 적응 능력의 개발로 인한 운동 욕구의 실현과 건강 추구 목적을 강조하였다. 내용 체제표에 심동적, 정의적, 인지적 영역이 삭제되고, 하위 영역을 대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초등학교에

체력 운동이 새로운 영역으로 추가되었으며, 평가에 있어서 운동 기능 평가의 종목 수와 비율이 제시되고, 지식 및 태도 평가에 대한 지침이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제7차 교육과정(1997~2007년)에는 체육과의 성격을 움직임 욕구 실현 및 체육 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내재적 가치와, 체력 및 건강의 유지, 증진, 정서순화, 사회성 함양이라는 외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하는 교과로 규정하였다. 총론의 변화에 따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 1~10학년은 '체육', 선택중심 교육과정인 11~12학년은 '체육과 건강', '체육 이론', '체육 실기'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개정 방식의 변화에 따라 수시 개정된 첫 번째 체육과 교육과정이란 의미를 지닌다. 이 시기는 그동안의 운동기능 습득 지향 교육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체육과의 다양한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가치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이에, 체육을 기능과 가치를 모두 함양하는 교과로 정의하면서 기존의 체육과 내용 영역을 확장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온 교육과정이라 평가된다. 교육과정 내 세부적인 분류는 건강의 가치, 도전의 가치, 경쟁의 가치, 표현의 가치, 여가의 가치라는 다섯 가지 신체활동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단순히 운동기능이나 지식, 바람직한 태도를 넘어, 기능 외에도 기술·표현·체력을, 지식이 아니라 분석력·문화 비평력·문제 해결력의 구체적인 인지적 측면을, 바람직한 태도를 팀워크·스포츠맨십·타인배려·리더십 등으로 구체화하면서 인지, 심동, 정의의 통합된 목표를 제시했다는 특징을 지닌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이다.

이후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2011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2011년 고시된 이 교육과정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큰 흐름을 유지하며,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부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총론의 학년군 개념이 도입되어 초등학교는 3~4학년군, 5~6학년군, 중학교는 1~3학년 군으로 교육과정 내용체계가 변화되었다. 더불어 창의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총론의 기초에 따라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에 '창의·인성'을 더욱 가중하는 형태로 변화를 모색하였다. 내용 요소를 재정립하고, 2007년 개정 체육교과 교육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개선되었으나, 총론의 변화에 따른 개정일 뿐 2007년 개정의 연장선에 있으며 거의 동일한 성격을 나타낸다.

현재 적용되는 '2015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의 인재를 위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체육교과 성격이 '체육교과의 본질과 역할', '체육교과 역량', '체육교과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이 교육과정의 큰 특징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체육교과 역량'이란 개념이 제시된 것이다. 체육과의 역량은 신체활동을 체험하고 그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포괄하는 총체적 능력이며, 신체 움직임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건강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과 내용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 1)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초등학교 및 중학교)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통 교육과정, 고등학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공통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내용이 제시되었고, 체육과 목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제시되었다. 체육 교과는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체육과의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전인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신체활동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습득, 스스로 미래의 삶을 기획할 기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목표가 설정되었다.

- 가. 건강의 가치를 이해하고 건강 및 체력을 증진하며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 나. 도전의 가치를 이해하고 도전의 신체활동을 수행하며 도전 정신을 발휘한다.
- 다. 경쟁의 가치를 이해하고 경쟁의 신체활동을 수행하며 선의의 경쟁을 실천한다.
- 라. 표현의 가치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신체 표현을 수행하며 심미적 안목을 갖는다.
- 마. 신체활동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수행하며 안전 의식을 함양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체육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신체활동의 기본 및 기초 교육’을, 중학교에서는 ‘신체활동의 심화 및 적용 교육’을 담당한다. 그에 따른 내용은 <표 4-4>에서처럼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의 다섯 가지 대영역을 중심으로 각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제시되었다.

표 4-4.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내용체계표

영역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3~4학년군		5~6학년군		1~3학년군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한 생활 습관</li> <li>운동과 체력</li> <li>자기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한 여가 생활</li> <li>체력 운동 방법</li> <li>실천 의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한 성장 발달</li> <li>건강 체력의 증진</li> <li>자기 수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동과 여가 생활</li> <li>운동 체력의 증진</li> <li>근면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과 신체 활동</li> <li>체력의 측정과 평가</li> <li>자기 존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과 생활 환경</li> <li>체력 증진과 관리</li> <li>자기조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과 여가 활동</li> <li>운동처방</li> <li>자율성</li> </ul>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속도 도전의 의미</li> <li>속도 도전 활동의 기본 기능</li> <li>속도 도전 활동의 방법</li> <li>끈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작 도전의 의미</li> <li>동작 도전 활동의 기본 기능</li> <li>동작 도전 활동의 방법</li> <li>자신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리 도전의 의미</li> <li>거리 도전 활동의 기본 기능</li> <li>거리 도전 활동의 방법</li> <li>적극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적/투기 도전의 의미</li> <li>표적/투기 도전 활동의 기본 기능</li> <li>표적/투기 도전 활동의 방법</li> <li>겸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작 도전 스포츠의 역사와 특성</li> <li>동작 도전 스포츠의 경기 기능과 과학적 원리</li> <li>동작 도전 스포츠의 경기 방법과 전략</li> <li>용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록 도전 스포츠의 역사와 특성</li> <li>기록 도전 스포츠의 경기 기능과 과학적 원리</li> <li>기록 도전 스포츠의 경기 방법과 전략</li> <li>인내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기 도전 스포츠의 역사와 특성</li> <li>경기 기능과 과학적 원리</li> <li>경기 방법과 전략</li> <li>절제</li> </ul>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 활동의 의미</li> <li>경쟁 활동의 기초 기능</li> <li>경쟁 활동의 방법과 기본 전략</li> <li>규칙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역형 경쟁의 의미</li> <li>영역형 게임의 기본 기능</li> <li>영역형 게임의 방법과 기본 전략</li> <li>협동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드형 경쟁의 의미</li> <li>필드형 게임의 기본 기능</li> <li>필드형 게임의 방법과 기본 전략</li> <li>책임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트형 경쟁의 의미</li> <li>네트형 게임의 기본 기능</li> <li>네트형 게임의 방법과 기본 전략</li> <li>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역사와 특성</li> <li>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기능과 과학적 원리</li> <li>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방법과 전략</li> <li>페어플레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역사와 특성</li> <li>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기능과 과학적 원리</li> <li>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방법과 전략</li> <li>팀워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역사와 특성</li> <li>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기능과 과학적 원리</li> <li>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방법과 전략</li> <li>운동 예절</li> </ul>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움직임 표현의 의미</li> <li>기본 동작</li> <li>구성 방법</li> <li>신체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듬 표현의 의미</li> <li>리듬 표현의 기본 동작</li> <li>리듬 표현의 구성 방법</li> <li>민감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속 표현의 의미</li> <li>민속 표현의 기본 동작</li> <li>민속 표현의 구성 방법</li> <li>개방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표현의 의미</li> <li>주제 표현의 기본 동작</li> <li>주제 표현의 구성 방법</li> <li>독창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포츠 표현의 역사와 특성</li> <li>스포츠 표현의 표현 동작과 원리</li> <li>스포츠 표현의 수행과 창작</li> <li>심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 표현의 역사와 특성</li> <li>전통 표현의 표현 동작과 원리</li> <li>전통 표현의 수행</li> <li>공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 표현의 역사와 특성</li> <li>현대 표현의 표현 동작과 원리</li> <li>현대 표현의 수행과 창작</li> <li>비판적 사고</li> </ul>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활동과 안전</li> <li>수상 활동 안전</li> <li>위험 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동장비와 안전</li> <li>게임 활동 안전</li> <li>조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 처치</li> <li>빙상·설상 활동 안전</li> <li>침착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동시설과 안전</li> <li>야외 활동 안전</li> <li>상황 판단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포츠 유형별 안전</li> <li>운동 손상 예방과 처치</li> <li>의사 결정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포츠 생활과 안전</li> <li>스포츠 시설·장비 안전</li> <li>존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 스포츠와 안전</li> <li>사고 예방과 구급·구조</li> <li>공동체 의식</li> </ul>

※ 출처: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1~2학년은 ‘즐거운 생활’ 내에서 체육관련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6학년은 주당 3시간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사실상 통합교과로 진행되고 담임교사 지도 체계로 운영되는 초등학교 현실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체육수업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3~6학년의 체육수업은 초등전담교사 제도 및 스포츠 강사 파견 사업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기간 중 총 272시간 이수가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다만, 2012년 9월 창의적 체험활동 내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이 도입(연간 34~68시간)되며, 2013년부터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68시간(주당 2시간) 운영해야 하는 학년에서는 34시간(주당 1시간)을 체육수업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비록 정식적인 교육과정에서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중학교의 체육수업 시수가 증가했다는 차원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체육 교과는 보통교과로서 ‘선택과목’으로 분류된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3년간 10단위(1단위는 50분 기준으로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를 이수해야 하며, 체육교과는 3년간 매학기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총 6학기 중 2개 학기는 주당 2시간을, 나머지 4개 학기는 주당 1시간 체육수업을 운영한다. 선택과목은 <표 4-5>와 같이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선택과목에는 ‘체육’과 ‘운동과 건강’이, 진로선택과목에는 ‘스포츠 생활’과 ‘체육 탐구’ 두 개 교과목이 포함된다.

표 4-5. 2015년 개정 고등학교 체육 보통교과

교과(군)	선택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 출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일반 선택과목의 ‘체육’은 중학교 체육 학습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신체활동이나 운동, 스포츠를 통해 평생 체육에 관한 안목을 기르고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운동과 건강’은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운동 관리 능력을 개발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진로 선택과목의

‘스포츠 생활’은 다양한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스포츠 특성을 이해하고 신체 수련 능력과 게임 수행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배양과 지속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체육 탐구’는 운동이나 스포츠를 수행하며 창의·융합 사고능력, 정보처리능력, 심미적 감성능력을 활용하여 체육의 인문적·자연과학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이 주 목적이다.

표 4-6. 2015년 개정 고등학교 체육 전문교과(Ⅰ)

교과(군)	과목			
체육계열	스포츠 개론	체육과 진로 탐구	체육 지도법	육상 운동
	체조 운동	수상 운동	개인·대인 운동	단체 운동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체육 전공 실기 심화	체육 전공 실기 응용	
	스포츠 경기 체력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경기 분석	

※ 출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또한 ‘전문교과’가 포함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전문 교과Ⅰ과 전문 교과Ⅱ로 구분되었다. 체육은 ‘전문 교과Ⅰ’에 포함되었다. 체육계열 전문 교과에 포함된 세부 과목은 앞의 <표 4-6>과 같이 총 14개로 선정되었다. 이 ‘전문 교과Ⅰ’에는 체육 이외에도 과학,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이 포함되었다.

### 3. 학생 및 체육교사 현황

학교체육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인적 현황에는 학교급별 학생 수와 각 학교급에 따라 체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포함된다. 여기에서는 전국 초·중·고교 학생 현황과 함께 각 학교급별 체육 담당 교사의 현황을 살펴본다.

#### 1) 전국 초·중·고 학생 현황

2021년 현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 개수는 총 1만 1,777개이고, 총 학생수는 548만 2,704명이었다. 구체적인 학교급별 학생 현황은 <표 4-7>과 같다.

표 4-7. 학교급별 학생 현황(2021)

학교급	학교 수(개)	학생 수(명)	다문화 학생 수(명)	학교급별 총 학생 수(명)
초등학교	6,157	2,672,340	111,371	2,783,711
중학교	3,245	1,350,770	33,950	1,384,720
고등학교	2,375	1,299,965	14,308	1,314,273
합계	11,777	5,323,075	159,629	5,482,704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연보 2021.

위의 <표 4-7>에 정리된 것처럼, 2021년 초등학교 수는 총 6,157개이고, 학생수는 278만 3,711명으로 집계되었고 중학교의 경우엔 총 3,245개교에 138만 4,720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또한 고등학교는 총 2,375개교에 131만 4,273명이 재학 중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제결혼자녀와 외국인 가정의 자녀를 의미하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1만 1,371명(4.0%), 중학교는 3만 3,950명(2.5%), 고등학교에는 1만 4,308명(1.1%)이 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 2) 체육 담당 교원 현황

### 가.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는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만을 담당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원 배치 현황은 다음의 <표 4-8>과 같다.

표 4-8.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원 배치현황

(단위: 교, 명)

연도	전체학교 수	배치학교 수	배치인원
2017	6,027	3,841	5,360
2018	6,029	3,726	5,113
2019	6,087	3,505	5,032
2020	6,210	-	자료 부존재
2021	6,157	-	5,363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2021)

기간제 교원 및 정규 교원 모두 체육전담교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체육교과 전문성(교대 체육심화과정 이수자, 체육관련 대학 또는 대학원 이수자, 체육부장 및 체육전담교사 경력자)을 가진 교사를 우선 지정하는데, 2021년 기준 총 5,363명의 체육전담교사가 배치

되었다. 이들에게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체육교과 연수과정 이수 권장 및 교육대학의 체육 심화과정을 고려, 체육전담교사 연수과정이 제공된다.

나. 중등(중학교, 고등학교) 체육교사

〈표 4-9〉는 2021년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고등학교 전체 체육교사는 총 1만 5,777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4-9. 중·고등학교 성별 체육교사 현황 (단위: 명)

연도	남			여			합계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2017	6,812	5,870	12,682	1,606	922	2,528	8,418	6,792	15,210
2018	6,949	5,839	12,788	1,737	979	2,716	8,686	6,818	15,504
2019	7,002	5,792	12,794	1,802	975	2,777	8,804	6,767	15,571
2020	7,171	5,681	12,852	1,834	988	2,822	9,005	6,669	15,674
2021	7,262	5,639	12,901	1,861	1015	2,876	9,123	6,654	15,777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 자료.

성별에 따라서는 총 15,777명 중 남자체육교사가 12,901명(81.8%), 여자체육교사가 2,876명(18.2%)으로 나타났다. 체육교사의 총 인원수는 2020년(15,674명)에 비해 103명 증가했다. 중등학교 급별 체육교사 현황과 더불어 중등학교 설립별(국립·공립·사립) 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표 4-10〉과 같다.

표 4-10. 중·고등학교 설립별 체육교사 현황 (단위: 명)

연도	국립			공립			사립			합계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2017	31	55	86	6,962	4,003	10,965	1,425	2,734	4,159	15,210
2018	33	55	88	7,232	4,054	11,286	1,421	2,709	4,130	15,504
2019	31	60	91	7,348	4,042	11,390	1,425	2,665	4,090	15,571
2020	32	51	83	7,538	3,997	11,535	1,435	2,621	4,056	15,674
2021	32	51	83	7,666	4,009	11,675	1,425	2,594	4,019	15,777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 자료.

2021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설립유형별 체육교사 수는 총 1만 5,777명 중 국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83명(0.5%), 공립 중·고등학교는 1만 1,675명(74.0%), 사립 중·고등학교는

4,019명(25.5%)으로 집계되었다. 사립 중고등학교에서는 2020년에 비해 34명 감소한 반면, 국·공립학교 중등학교 체육교사 수는 13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학교체육시설 관련 현황

학교체육시설은 학교체육을 구성하는 인적 요소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여기에서는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과 인프라 확충, 개방 현황을 중심으로 내용이 정리되었다.

##### 1) 학교체육시설 현황

‘학교체육시설’의 법적 정의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시된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는 체육시설 정의에 빗대어 보면, 학교체육시설은 ‘학생들이 수업 및 수업 외적인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이해된다. 이 학교체육시설에 포함되는 시설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체육관, 강당, 수영장, 운동장, 기타(테니스장 등)로 구분될 수 있다. 실제 학교체육시설의 현황을 통계화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들 모든 시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학교급별 체육관, 강당, 수영장을 중심으로 한 집계는 가능하다. <표 4-11>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학교 관련 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에서 조사된 학교 내 체육관, 강당, 수영장 현황을 정리한 자료다.

표 4-11. 초·중·고 학교체육시설 현황(2018~2021)

(단위: 개)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체육관	강당	수영장									
2018	3,145	2,382	70	1,754	1,058	21	1,928	1,071	34	6,827	4,511	125
2019	3,325	2,377	70	1,835	1,061	22	1,960	1,062	35	7,120	4,500	127
2020	3,618	2,348	71	1,936	1,035	24	1,988	1,088	32	7,542	4,471	127
2021	3,911	2,402	72	2,024	1,044	24	2,029	1,094	30	7,964	4,540	126

※ 특수학교, 그 외 학교는 제외.

※ 출처: 학교별 공시정보 ‘학교알리미’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공시자료(www.schoolinfo.go.kr)

〈표 4-11〉에서 볼 수 있듯,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중 체육관은 총 7,964개, 강당은 4,540개, 수영장 126개로 집계되었다. 2020년에 비해 체육관은 증가폭이 컸지만, 그에 비해 강당은 소폭 증가하였고 수영장의 경우 1개 감소하였다. 2021년 초·중·고등학교가 총 1만 1,943개임을 비추어 본다면, 체육관 보유 학교의 비율은 66.7%, 강당 보유 학교 비율은 38.0%, 수영장 보유 학교 비율은 1.1%로 나타난다.

## 2) 학교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학교체육시설이기에, 정부는 학교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대표적으로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계획(2006~2010)’,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2009~2012)’,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 사업’, ‘탈의실 설치 확충’ 사업 등이 있다.

‘인조운동장 조성 계획’은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09년 당시 11,310개교 중 986개교(8.7%), 천연잔디운동장은 337개교(3.0%)가 조성되었다. 이 사업은 2008년 종료되고,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운동장의 바닥을 첨단소재로 바꾸는 사업으로서, 학교운동장을 잔디(천연 및 인조)운동장, 우레탄 시설(다목적구장, 트랙 등), 흙 운동장(황토, 마사토 등)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조성하도록 학교 선택권을 강화한 사업이다.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은 학교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교육청(50%), 지방자치단체(20%), 문화체육관광부(30%)가 재원을 분담하여 사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단순히 시설 나눠 쓰기가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학교체육의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다.

2021년에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학교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에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탈의실 설치가 있다. 탈의실 확충을 위해서는 2017년 5,710개교, 2018년 6,345개교, 2019년 7,000개교, 2020년 3,038개교를 지원하였고, 2021년 전체 학교의 100%에 탈의실을 설치하는 성과를 보였다.

### 3)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지원 현황

학교체육시설은 학생의 체육 활동 공간일 뿐 아니라 국민 생활체육 시설기반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주목 받으나, 시설 관리 어려움으로 일부 시간대만 개방되거나 개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을 실시했고, <표 4-12>는 2021년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에 참여했던 전국의 155개 학교다.

표 4-12.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 운영 현황(2021)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155	1	-	5	1	1	10	6	1	12	10	5	19	20	34	19	7	4

시도	시군구	학교명	시도	시군구	학교명
서울(1)	영등포구	신길중학교	세종(1)	세종시	두루고등학교
대구(5)	달서구	장기초등학교	경기(12)	가평군	가평초등학교
	달서구	신서초등학교		고양시	백양초등학교
	달성군	현풍초등학교		고양시	한수중학교
	달성군	화동초등학교		부천시	부천동여자중학교
	서구	이현초등학교		부천시	옥길중학교
인천(1)	부평구	부일중학교		부천시	심곡초등학교
광주(1)	서구	금호중학교		시흥시	배곧고등학교
대전(10)	유성구	중일고등학교		시흥시	군서초등학교
	서구	관저중학교		안산시	삼일초등학교
	중구	대전고등학교		여주시	가남초등학교
	서구	대전서부초등학교		수원시	수원광교초등학교
	중구	충남여자중학교		화성시	동탄중앙초등학교
	중구	동문초등학교	인제군	인제중학교	
	중구	동산고등학교	인제군	인제고등학교	
	중구	오류초등학교	인제군	신남중학교	
	서구	대전서중학교	인제군	인제남초등학교	
	서구	변동초등학교	정선군	화동초등학교	
울산(6)	울주군	경외고등학교	강원(10)	철원군	김화공업고등학교
	북구	상안초등학교		철원군	철원여자고등학교
	울주군	언양초등학교		철원군	김화고등학교
	남구	삼신초등학교		철원군	와수초등학교
	울주군	중남초등학교		철원군	철원고등학교
	동구	화정초등학교		충북(5)	영동군

시도	시군구	학교명	시도	시군구	학교명
충북(5)	제천시	화산초등학교	전북(20)	정읍시	정읍남초등학교
	제천시	봉양초등학교		진안군	진안초등학교
	충주시	노은초등학교		진안군	부귀중학교
	충주시	대림초등학교		강진군	도암초등학교
	부여군	용강중학교		강진군	강진중학교
충남(19)	서산시	서산중학교		강진군	강진여자중학교
	서산시	서산초등학교		강진군	강진중앙초등학교
	서산시	대산중학교		강진군	강진군동초등학교
	서산시	서령중학교		곡성군	고달초등학교
	서산시	서산부춘중학교		곡성군	죽곡초등학교
	서천군	장향고등학교		곡성군	삼기초등학교
	예산군	예산중학교		곡성군	한울고등학교
	예산군	예산중앙초등학교		광양시	광양서초등학교
	예산군	신례원초등학교		광양시	광양마로초등학교
	태안군	남면초등학교		광양시	광양중학교
	태안군	이월초등학교		나주시	다시초등학교
	태안군	태안초등학교		나주시	노안남초등학교
	태안군	만리포고등학교		나주시	노안중학교
	태안군	창기초등학교		나주시	나주중학교
	태안군	안면고등학교		나주시	한아름초등학교
	태안군	태안고등학교	나주시	산포초등학교	
	태안군	태안여자중학교	나주시	세지초등학교	
	태안군	근흥초등학교	목포시	목포북교초등학교	
	전북(20)	고창군	고창초등학교	목포시	목포삼학초등학교
고창군		고창중학교	무안군	망운초등학교	
군산시		군산동초등학교	영광군	영광초등학교	
김제시		용지중학교	영광군	영광공업고등학교	
김제시		금산중고등학교	영암군	삼호중학교	
김제시		부용초등학교	영암군	영암초등학교	
남원시		오동초등학교	영암군	영암여자고등학교	
남원시		용성초등학교	장흥군	회덕중학교	
남원시		중앙초등학교	장흥군	안양초등학교	
남원시		인월초등학교	장흥군	장흥여자중학교	
순창군		순창초등학교	장흥군	부산초등학교	
완주군		삼례초등학교	장흥군	대덕초등학교	
익산시		원광중학교	장흥군	장흥초등학교	
익산시		함열고등학교	장흥군	장흥서초등학교	
장수군		계남초등학교	경산시	평산초등학교	
장수군		산서초등학교	경산시	경산 정평초등학교	
장수군		장수중학교	봉화군	내성초등학교	

시도	시군구	학교명	시도	시군구	학교명	
경북(19)	상주시	용운중고등학교	경북(19)	의성군	의성고등학교	
	상주시	중모고등학교		의성군	의성초등학교	
	상주시	화동초등학교		거제시	신현중학교	
	상주시	화령초등학교		고성군	동해초등학교	
	성주군	성주중앙초등학교	경남(7)	산청군	산청초등학교	
	성주군	성주중학교		양산시	어곡초등학교	
	안동시	안동영호초등학교		진주시	진주중학교	
	안동시	안동영가초등학교		창녕군	남지중학교	
	안동시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하동군	하동여자고등학교	
	영양군	영양초등학교		제주(4)	서귀포시	서귀포여자중학교
	영주시	제일고등학교			서귀포시	신산중학교
	영주시	영광고등학교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영주시	영주고등학교	제주시		세화초등학교	
	영천시	영천초등학교	합계	전국 155개소 (초등 89, 중등 38, 고등 28)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시군구체육회가 해당 학교와 학교체육 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매니저를 배치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업인 것이다.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던 2015년에는 180개소가 참여하였고, 2021년도에는 이보다 감소한 155개교가 참여하였다. 이 지원사업은 종료 후 참여한 학교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표 4-13>과 같은 평가를 실시한다.

표 4-13.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실적(2021)

실적내용	'21년			성과분석 (전년대비 개선효과)
	목표 (개, 명, 점)	실적 (개, 명, 점)	달성률 (%)	
학교 참여 수	155	155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동결로 목표 개소 수 유지(2020년 155개 → 2021년 155개)</li> <li>○ 2021년도 목표치(155개) 달성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스포츠 서비스 제공</li> </ul>
월 평균 이용 인원	353명	320명	9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대체) 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월 평균 이용인원을 측정 하였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전전년도의 50%의 목표치를 설정 하였으며,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목표치의 약 91%를 달성함. 포스트 코로나로 돌입하는 2022년의 기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함</li> </ul>

실적내용	'21년			성과분석 (전년대비 개선효과)
	목표 (개, 명, 점)	실적 (개, 명, 점)	달성률 (%)	
참가자 만족도 (자체조사)	90	91.5	101.7%	○ '21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대체) 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측정함. 약 102%의 달성률을 기록하여 기존 학교체육시설 외의 대체시설에서도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출처: 대한체육회(2022). 대한체육회 2021 기금성과보고서.

2021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평가 결과를 정리한 표에 따르면, 참여 학교 수는 초기 155개 목표에서 155개 모두 참여로 100%의 달성률을 보였다. 여기에는 월 평균 이용 인원 320명과 참가자만족도 91.5점에 대한 평가가 함께 반영되었다.

## 5. 학교운동부 및 체육계열 학교

### 1) 학교운동부 현황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표 4-14>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학교에서 운영 중인 운동부 현황을 정리한 결과로서, 전체적으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팀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볼 수 있다.

표 4-14. 학교운동부 현황 비교(2017~2021)

(단위: 교, 팀, 명)

연도	급별	학교 수	학교운동부 팀 수	전체 학생 수 (초3~고3)	학생선수 수 (초3~고3)	전체코치 수 (전임+일반)
2017	초	6,006	1,654	1,622,869	20,619	1,805
	중	3,248	1,641	1,257,824	23,319	2,277
	고	2,371	1,106	1,390,788	20,895	1,844
	합계	11,625	4,401	4,271,481	64,833	5,926
2018	초	6,209	1,818	1,524,895	22,964	1,757
	중	3,184	1,576	1,166,464	20,487	2,237
	고	2,246	1,059	1,242,170	19,578	1,815
	합계	11,639	4,453	3,933,529	63,029	5,809
2019	초	6,142	1,606	1,840,873	18,106	1,736
	중	3,208	1,610	1,259,074	21,436	2,211
	고	2,345	1,078	1,291,099	19,604	1,814
	합계	11,695	4,294	4,391,046	59,146	5,761

연도	급별	학교 수	학교운동부 팀 수	전체 학생 수 (초3~고3)	학생선수 수 (초3~고3)	전체코치 수 (전임+일반)
2020	초	6,120	1,470	1,796,178	17,386	1,599
	중	3,223	1,474	1,315,846	20,473	2,127
	고	2,367	1,004	1,337,312	18,655	1,831
	합계	11,710	3,948	4,449,336	56,514	5,557
2021	초	6,157	1,440	1,819,598	17,237	1,598
	중	3,245	1,477	1,350,770	20,493	2,161
	고	2,375	943	1,299,965	16,606	1,739
	합계	11,777	3,860	4,470,333	54,336	5,498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2021)

〈표 4-14〉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전국 3,860개교(32.8%)에서 학교운동부가 운영 중이었으며, 운동부에서 활동 중인 학생선수는 54,336명(전체 학생의 1.2%)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 대비 학교운동부의 경우 88개 감소, 학생선수는 2,178명이 감소한 수치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시·도 교육청이 임용한 전임코치와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임용한 계약직 일반코치)의 경우, 2021년에는 총 5,498명으로 2020년의 5,557명에 비해 5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체육중·고등학교 현황

체육중·고등학교는 1971년 서울, 1972년 경북을 시작으로 각 권역별로 설립된 특수목적 학교다. 이 학교설립의 주된 목적은 전문적인 학생선수를 양성하는 것으로서, 〈표 4-15〉는 2021년 기준 전국의 체육중·고등학교 학생 현황이 정리된 결과다.

표 4-15. 전국 체육중·고등학교 학생 현황(2021)

(단위: 명)

학교급	지역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체육 중학교	서울	23	37	60	30	30	60	33	27	60	86	94	180
	부산	14	5	19	20	12	32	27	14	41	61	31	92
	대구	8	7	15	12	5	17	14	16	30	34	28	62
	광주	44	40	84	33	39	72	42	25	67	119	104	223
	대전	19	8	27	20	11	31	22	18	40	61	37	98
	울산	10	12	22	13	5	18	10	15	25	33	32	65
	경기	14	15	29	16	18	34	18	16	34	48	49	97
	강원	16	16	32	13	12	25	20	12	32	49	40	89

학교급	지역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체육 중학교	전북	9	9	18	4	9	13	12	11	23	25	29	54
	전남	30	14	44	20	20	40	26	8	34	76	42	118
	경북	11	16	27	14	11	25	24	14	38	49	41	90
	합계	198	179	377	195	172	367	248	176	424	641	527	1,168
체육 고등학교	서울	83	34	117	88	51	139	85	52	137	256	137	393
	부산	65	25	90	70	25	95	77	18	95	212	68	280
	대구	34	18	52	26	25	51	34	26	60	94	69	163
	인천	62	26	88	56	37	93	56	33	89	174	96	270
	광주	63	35	98	44	27	71	56	26	82	163	88	251
	대전	50	21	71	17	46	63	46	28	74	113	95	208
	울산	32	10	42	15	29	44	90	44	134	137	83	220
	경기	41	34	75	59	36	95	54	34	88	154	104	258
	강원	54	29	83	34	26	60	50	12	62	138	67	205
	충북	60	21	81	56	21	77	49	24	73	165	66	231
	충남	55	26	81	45	23	68	46	20	66	146	69	215
	전북	41	21	62	45	18	63	51	16	67	137	55	192
	전남	34	15	49	27	12	39	19	13	32	80	40	120
	경북	49	20	69	36	21	57	50	26	76	135	67	202
경남	57	33	90	55	21	76	51	30	81	163	84	247	
합계		780	368	1,148	673	418	1,091	814	402	1,216	2,267	1,188	3,455

※ 주: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체육고등학교 미설치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표 4-15〉에 따르면, 2021년 체육중학교 소속의 학생선수는 총 1,168명(남학생 641명, 여학생 527명)으로서, 2020년의 1,199명에 비해 31명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체육고등학교의 경우엔 2021년 기준 총 3,455명(남학생 2,267명, 여학생 1,188명)이었는데, 2020년 3,506명에 비해 5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구 체육중점학교)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구 체육중점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 체육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성화 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체육 심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뜻한다. 2020년에는 체육 중점학교에서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일반 고등학교

(자율 고등학교 포함)에서는 체육 교과 중심의 중점학교 운영이 가능하고, 이 경우 자율 편성 단위(86단위)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는 체육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그 소질을 계발하고자 2010년부터 교육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학생의 소질에 적합한 진로 설계에 도움을 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에 목적이 있다. 운영형태는 크게 별도의 학급을 구성하는 학급 구성형과 자율편성 단위에 체육계열(전문교과 등)을 추가 편성·운영하는 과목편성형이 있다. 학급구성형에서는 해당 학급에 맞춤형 지도를 하되 20명 내외(최소 15명)으로 구성하며, 과목편성형에서는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심화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를 보장한다. <표 4-16>은 2021년 기준 전국의 체육 중점학교 및 학급 수 현황이다.

표 4-16.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운영 현황(2021)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계
학급 구성형	학교 수	7	3	1	6	2	6	2	3	3	-	33
	학급 수	20	9	3	7	3	11	4	4	8	-	69
과목 편성형	학교 수	6	-	-	2	-	4	1	2	-	1	16
	학급 수	9	-	-	3	-	4	1	3	-	1	21

※ 출처: 교육부(2021). 2021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도교육청은 학교체육진흥회와 협력하여 운영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 예산 사용 계획,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학급구성형은 학급당 15백만 원 이내, 과목편성형은 학교당 12백만 원 이내를 특수교부로 지원한다. 2021년에는 10개 교육청 49개교 90학급이 운영되어 16,000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 4) 체육계열 학교 및 학교운동부 지원

대한체육회는 체육계열 중·고등학교(및 학교운동부)의 우수 학생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개최비용과 연구학교 운영으로 내실 있는 체육계열 학교 운영도 <표 4-17>처럼 지원하였다.

표 4-17. 학교운동부 지원 현황

(단위: 개교, 천 원)

연도	초		중		고		합계	
	학교 수	금액	학교 수	금액	학교 수	금액	학교 수	금액
2021	76	683,000	135	1,604,496	94	1,209,876	305	3,497,372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위의 <표 4-17>에서처럼,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학교운동부에 과학적 훈련장비 및 훈련 기구와 용품비를 학교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총 305개 학교 운동부에 약 34억 9,700만 원 가량이 지원되었다. 이는 2020년의 학교운동부 지원규모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준이었다(20년 326개교 약 38억 4,600만 원). 이 뿐 아니라 대한체육회는 체육계열 학교와 학교운동부도 지원했는데, 세부 내역은 <표 4-18>과 같다.

표 4-18. 체육계 학교 및 학교운동부 지원 실적

실적내용	'20년	'21년			성과분석 (전년대비 개선효과)
	(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학교운동부 수(개교)	326	180	305	169	○ “종목별 주요 지원 물품리스트” 작성 및 배포 - 사업실적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종목별 지원 물품 리스트 배포, 사업 만족도 제고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비율(%)	21	21	21	100	○ 청소년체육부 SNS를 통한 각종 이벤트 개최 및 카드 뉴스 제작 등을 통한 홍보 확대 ○ 현수막 및 스티커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사업 인지도 제고 노력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체육계열 학교에는 선수 훈련비, 훈련시설 보수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였는데, 지원금은 학생 수에 비례하여 27개교에 차등 지급되었다. 여기에는 선수경기력 향상을 위한 직접 소요 훈련·대회 참가비(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참가 숙식비, 교통비 등)와 선수훈련 시 직접 소요 되는 소모성 훈련용품·용구 구입비가 포함된다. 2021년 체육계학교 지원 사업 예산은 약 29억 원이었으며, 이는 2020년보다 다소 증액된 수준이었다(20년 사업 예산 약 27억 원).

## 제3절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학교체육과 관련하여 정부는 2005년 ‘학교체육 혁신방안’과 2012년 「학교체육 진흥법」에 포함된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을 적극 시행 중이다. 특히 교육부는 2021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운동부 운영 선진화,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인식 개선을 4대 중점과제로 하여 지원을 해왔다. 또한, 2010년에 출범한 한국대학스포츠협회를 중심으로 대학스포츠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대학스포츠의 교육적 가치 달성을 중심으로 대학스포츠 활성화가 전개되고 있다.

### 1.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 1) 지속가능한 신체활동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신체활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교수업 시 안전한 체육 활동 방안을 마련하였다. 각종 체육활동 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보급하였으며, 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생존수영 교육으로 구분하여 각 활동별 기본사항과 운영 방안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원격수업, 원격·등교수업 병행,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 등 학습상황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육과 성취기준을 재구조화하였으며, 수업·평가 예시자료를 개발 및 보급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온·오프라인 수업 모형을 제공하여 체육교과의 교수·학습을 지원하였다.

#### 2) 체육수업 내실화 및 학교체육 역량 강화

체육과 교육과정 내실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3학년~6학년) 주당 3시간, 중학교 272시간, 고등학교 10단위 이상 6학기 편성과 실제 학교수업 운영이 다르지 않도록 현장점검 및

지원을 강화하여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실 운영에 힘쓰고자 하였다. 중학교 체육수업 확보를 위해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2시간 운영하는 학년은 학교장 재량으로 1시간을 체육 수업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으며, 수업시수로 전환할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추가 배치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측면에서는 학교 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수당, 학생 스포츠 활동 지원, 체육교재, 시설, 기자재, 용품 확보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편성(학교운동부 예산은 별도 편성)하도록 권장하였다.

한편, 중학교 자유학년(학기)제 체육 영역 내실 운영을 위해서 교과를 조정하여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하는 경우 특정교과(군)에서 활용 가능한 학기당(학년당) 시수 제한을 삭제하였다. 다만, 학교스포츠클럽은 자유학기 활동으로 조정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기(학년)당 전체 시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 3) 교원 지도역량 강화

2021년 교원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은 크게 체육교과 교원 전문역량 강화, 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역량 강화,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지도역량 강화, 그리고 체육계열 진로 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체육교과 교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자 및 교원 등 대상별 학교 체육 관련 ‘수요자 맞춤형 연수’ 과정을 확대하여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리자 연수는 체육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연수를 통해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단위학교 환경 개선 및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사 연수의 경우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및 운영, 수업 및 실기 지도 전문성 향상 연수와 일반교사 대상 기본 실기 및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초등 체육전담 교사 연수의 경우 초등 체육수업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연수를 추진하여 초등 체육활동 내실화 도모하였으며, 초등 체육전담교사의 30% 이상에게 연수를 실시하도록 권장하였다.

둘째로,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도강사 및 지도교사의 실기 지도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의 주요 내용은 학교체육정책,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이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인성 지도, 학교안전교육의 이해, (성)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이루어졌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15시간 내외, 일반교과 지도교사의 경우 2~4시간으로 연수 시간이 구성되었다.

한편, 학교 단위에서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초등교원과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도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수영교육 매뉴얼을 활용한 생존수영의 이해, 안전사고 예방·각종 장비사용·자기구조법·타인구조법의 지도방법 등에 대해 다룬다. 교육부 주관 초등생존수영 관련 교원 대상 원격 연수 콘텐츠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육계열 진로·진학 희망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교사 및 담임교사의 체육 진로·진학 지도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진로교육 역량강화 원격 연수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유·초·중등교원, 교육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운영주관인 중앙교육연수원 누리집(www.neti.go.kr)에서 ‘체육(스포츠) 진로교육의 이해와 실제’라는 과정이 운영 되었으며,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수강 신청 및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4) 초·중·고 체육교육 전문인력 지원

##### 가.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는 초등학교에서 체육 교과만을 담당하여 지도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는 한 교사가 담당 학급을 대상으로 전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교과에서는 전담교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체육 전담교사에게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가 권장되고, 교육대학 체육심화과정을 고려한 연수과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시작된 교과전담교사제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는 체육전담교사를 우선 지정하고, 6학급(1, 2학년 제외) 이상의 초등학교는 체육전담교사를 필수적으로 한 명 이상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총 5,363명의 초등 체육교과전담교사가 지정되어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수업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체육전담교사 지정확대를 위해 평가 및 전보 시 우대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나.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스포츠강사란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 강사를 의미한다(「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고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실시된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은 소정의 자격 수준을 갖춘

스포츠강사를 선발, 체육교사와 함께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위해 배치하게끔 설계되었다. <표 4-19>는 2021년 초등 및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현황이다.

표 4-19. 초등 및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현황(2021)

(단위: 명)

지역	초등			특수			소계		
	공립	사립	소계	공립	사립	소계	공립	사립	소계
서울	329	-	329	7	5	12	336	5	341
부산	50	-	50	-	-	0	50	0	50
대구	47	-	47	3	-	3	50	0	50
인천	46	-	46	-	-	0	46	0	46
광주	40	-	40	-	-	0	40	0	40
대전	75	-	75	3	2	5	78	2	80
울산	40	-	40	1	-	1	41	0	41
세종	25	-	25	1	-	1	26	0	26
경기	123	-	123	1	1	2	124	1	125
강원	274	2	276	7	1	8	281	3	284
충북	67	-	67	-	3	3	67	3	70
충남	106	-	106	5	2	7	111	2	113
전북	119	-	119	1	1	2	120	1	121
전남	159	3	162	2	4	6	161	7	168
경북	64	1	65	3	2	5	67	3	70
경남	224	-	224	2	-	2	226	0	226
제주	34	-	34	2	-	2	36	0	36
합계	1,822	6	1,828	38	21	59	1,860	27	1,887

※ 출처: 시도교육청 취합자료(2021)

<표 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배치된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1,860명, 특수학교 27명 등, 총 1,887명이다(20년 초등학교 1,842명, 특수학교 57명). 이는 2013년 처음 3,800명이 배치되었으나 시작 규모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다. 이 초등스포츠강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추어야 임용이 가능하고, 계약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재임용도 가능하다.

#### 다. 중학교 스포츠강사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중학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은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편성·운영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에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중학교마다 체육시수와 학교스포츠클럽 시수가 다를 수 있다. 중학교 스포츠강사를 단위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100%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며, 시·도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1항 '산학겸임 교사 등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며,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보조의 역할을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을 담당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강사의 경우,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단독 수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과정별 운영 시수의 상이함과 자료 확보의 낮은 실효성으로 인해, 중학교 스포츠강사 관련 현황에 대한 별도의 통계자료 구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

교육부는 토요일에 학교 내 체육활동을 강화하고자 매주 토요일을 '스포츠데이(Sports Day)'로 지정하고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 교육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이 사업은 2018년부터 각 시·도의 자체 추진 계획에 따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구 토요일스포츠데이)'으로 진행된다. <표 4-20>은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의 2021년 스포츠강사 배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4-20.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현황(2021)

(단위: 명, %)

구분	총원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특별시체육회	2	2	100	-	-
부산광역시체육회	793	519	65.45	274	34.55
대구광역시체육회	770	436	56.62	334	43.38
인천광역시체육회	275	202	73.45	73	26.55
대전광역시체육회	370	260	70.27	110	29.73
경기도체육회	540	434	80.37	106	19.63
강원도체육회	810	692	85.43	118	14.57

구분	총원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충청북도체육회	450	367	81.56	83	18.44
충청남도체육회	833	577	69.27	256	30.73
전라북도체육회	756	560	74.07	196	25.93
전라남도체육회	957	772	80.67	185	19.33
경상북도체육회	822	615	74.82	207	25.18
경상남도체육회	959	714	74.45	245	25.55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300	197	65.67	103	34.33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87	61	70.11	26	29.89
합계	8,724	6,408	73.45	2,316	26.55

※ 출처: 대한체육회(2021). 대한체육회 체육포털 <https://portal.sports.or.kr/main.do>.

〈표 4-20〉에 따르면, 2021년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를 위해 전국적으로 배치된 인력은 총 8,724명(남자 6,408명, 여자 2,316명)이다. 2021년 가장 많은 스포츠강사가 배치된 지역은 경상남도(959명)와 전라남도(957명)였으며,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배치되지 않았다.

###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2016년 5월 4일 「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여학생이 선호하는 스포츠클럽의 의무적 운영,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 전용 학교체육시설 설치의 제도화,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내 여성 참여 비율 설정 등이 있다.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양성평등적인 체육활동 환경 조성, 신체능력과 여학생의 선호를 고려하는 종목 선정,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를 촉진하는 여학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여학생 선호 종목 및 여학생의 감성을 자극하여 참여가 쉬운 종목을 수업에 활용하도록 하며, 중·고등학교 혼성학급에서는 남녀를 분리 수업 또는 혼성으로 운영 가능한 종목을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시·도 교육청별로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특색 프로그램이 운영 되었는데,

여학생 대상 기자단, 스포츠리더단, 심판아카데미, 여학생 스포츠 어울림 한마당 등 여학생의 감성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발굴되어 시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녀공학 학교의 경우 ‘여학생 체육활동의 날’을 지정하여 매주 특정 요일에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을 여학생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으며, 여학생 재학 학교의 경우 2종목 이상 여학생 특화 종목(치어리딩, 요가, 방송댄스, 줄넘기, 롤러, 배드민턴 등 여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종목)을 지정하여 교내 대회를 지원하도록 권장하였다. 지역단위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에서는 여학생 참여 종목을 5개 이상 운영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여학생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종목별 스포츠교실을 운영하였다. 기존의 단순 종목 강습에서 벗어나 즐겁고 재미 있는 체육활동을 지향하고 지도 전문성을 높여 생활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종목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대한체육회가 운영했던 여학생 대상의 종목별 스포츠 교실 운영 결과(〈표 4-21〉)에 따르면, 2021년의 스포츠 교실은 주 1~2회에 걸쳐 총 3~10개월 간 지도가 이루어졌고, 15개 종목 및 536개 교실에 총 18만 2,215명의 여학생이 참가하였다.

표 4-21. 대한체육회 여학생 스포츠 교실 운영 현황(2018~2021)

사업명	내용				
여학생 스포츠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초·중·고 여학생들을 대상 주 1~2회 3~10개월 지도</li> <li>15종목(검도, 궁도, 근대5종, 농구, 배구, 배드민턴, 스쿼시, 야구소프트볼, 에어로빅 합합, 축구, 풋살, 태권, 핸드볼, 요가, 플로어볼)</li> <li>536교실 운영</li> </ul>				
	연도별 성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운영 종목 수(종목)	14	14	15	15
	운영 개소 수(개소)	808	787	636	536
	참가자 수(명)	259,022	291,218	125,668	182,215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나아가 정부는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공간을 재구성함으로써 여학생들의 선호 종목과 참여가 용이한 종목이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내 체육실 확충 및 탈의실 설치 지원, 나아가 학교신설 및 체육관 증축 및 개축 시 탈의실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6) 다양한 스포츠 활동 지원

## 가. '학교 안·밖' 체육프로그램 운영

2014년부터 국민생활체육회 및 시·군·구 생활체육회에서 시작된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사업은 2021년 현재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로 대한체육회 학교체육부에 의해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학교 안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학교 밖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표 4-22>는 2020년과 2021년의 학교 안과 밖 주말체육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다.

표 4-22. 학교 안·밖 프로그램 현황(2020~2021)

구분	학교 안 프로그램			학교 밖 프로그램		
	학교 수(개교)	강사 수(명)	종목 수(개)	프로그램 수(개)	운영횟수(개)	종목 수(개)
2020년	1,426	1,426	53	1,411	16,507	103
2021년	1,915	1,915	71	2,232	35,806	99
증가율	34.3%	34.3%	34.0%	58.2%	116.9%	-3.9%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학교 안 프로그램'은 대한체육회에서 배치한 스포츠강사가 매주 토요일 2시간씩 30주 동안 강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1년에 운영된 종목은 배드민턴, 축구, 뉴스포츠, 피구, 농구, 배구, 탁구, 풋살 등을 포함한 71개였다. 참가자는 해당 학교별로 20명 내외이며,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모집되었다. 2021년에는 총 1,915개교에서 운영하였으며, 이는 2020년 1,426개교에 비해 34% 증가하였다. 학교 안 프로그램 개설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운영된 종목은 배드민턴(437개, 22.82%), 축구(437개, 12.53%), 뉴스포츠(197개, 10.2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3>은 학교 안 프로그램의 2021년 종목별 현황이다.

표 4-23. 학교 안 프로그램 종목별 현황(2021)

연번	종목명	프로그램 수(개)	비율 (%)	연번	종목명	프로그램 수(개)	비율 (%)	연번	종목명	프로그램 수(개)	비율 (%)
1	배드민턴	437	22.82	25	인라인스케이팅	8	0.42	49	당구	2	0.1
2	축구	240	12.53	26	육상	7	0.37	50	레슬링	2	0.1
3	뉴스포츠 (기타)	197	10.29	27	태권도	7	0.37	51	비보이댄스	1	0.05
4	피구	138	7.21	28	유도	6	0.31	52	등산	1	0.05
5	농구	129	6.74	29	연식야구	6	0.31	53	사격	1	0.05

연번	종목명	프로그램 수(개)	비율 (%)	연번	종목명	프로그램 수(개)	비율 (%)	연번	종목명	프로그램 수(개)	비율 (%)
6	배구	116	6.06	30	정구	5	0.26	54	특수체육	1	0.05
7	탁구	114	5.95	31	헬스	5	0.26	55	자전거	1	0.05
8	풋살	97	5.07	32	야구	4	0.21	56	생활체조	1	0.05
9	티볼	76	3.97	33	스포츠스태킹	4	0.21	57	바둑	1	0.05
10	플로어볼	34	1.78	34	호신술	4	0.21	58	피클볼	1	0.05
11	플라잉디스크	30	1.57	35	소프트볼	4	0.21	59	크로스핏	1	0.05
12	프리테니스	25	1.31	36	창작댄스	4	0.21	60	조정	1	0.05
13	넛볼	21	1.1	37	매직테니스	4	0.21	61	파크골프	1	0.05
14	킨볼	20	1.04	38	양궁	3	0.16	62	보치아	1	0.05
15	방송댄스	19	0.99	39	보디빌딩	3	0.16	63	댄스스포츠	1	0.05
16	핸드볼	18	0.94	40	외발자전거	3	0.16	64	스내그골프	1	0.05
17	족구	16	0.84	41	검도	2	0.1	65	필라테스	1	0.05
18	음악줄넘기	15	0.78	42	기타	2	0.1	66	크리켓	1	0.05
19	테니스	11	0.57	43	국학기공	2	0.1	67	휘타구	1	0.05
20	치어리딩	10	0.52	44	츄크볼	2	0.1	68	웨이크보드	1	0.05
21	줄넘기	9	0.47	45	요가	2	0.1	69	롤러	1	0.05
22	골프	9	0.47	46	카바디	2	0.1	70	한궁	1	0.05
23	씨름	8	0.42	47	라인댄스	2	0.1	71	에어로빅	1	0.05
24	학교체육 (기초체력 등)	8	0.42	48	승마	2	0.1		총계	1,915	100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학교 밖 프로그램’은 전국 227개의 시·군·구 생활체육회에서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개의 종목을 선택하여 30주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볼링, 골프, 수영, 승마, 테니스, 클라이밍 등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종목 포함 99개 종목이 포함되었다. 2021년 ‘학교 밖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는 2,232개였으며, 운영 횟수는 35,806회였다(20년 프로그램 수 1,411개, 운영 횟수 6,507회). ‘학교 밖 프로그램 개설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운영된 종목은 볼링(207개, 9.27%), 골프(163개, 7.30%), 탁구(161개, 7.2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4>는 학교 밖 프로그램의 2021년 종목별 현황이다.

표 4-24. 학교 밖 프로그램 종목별 현황(2021)

연번	종목명	프로 그램 수(개)	비율 (%)	연번	종목명	프로 그램 수(개)	비율 (%)	연번	종목명	프로 그램 수(개)	비율 (%)
1	볼링	207	9.27	34	헬스	14	0.63	67	배구	4	0.18
2	골프	163	7.3	35	치어리딩	14	0.63	68	태극민턴	4	0.18
3	탁구	161	7.21	36	수상스키	14	0.63	69	호신술	3	0.13
4	수영	122	5.47	37	스케이팅	14	0.63	70	트릭킹	3	0.13
5	풋살	102	4.57	38	뉴스포츠(기타)	12	0.54	71	k-pop댄스	3	0.13
6	방송댄스	101	4.53	39	트램폴린	12	0.54	72	스노클링	2	0.09
7	축구	98	4.39	40	펜싱	11	0.49	73	씨름	2	0.09
8	승마	93	4.17	41	서핑	10	0.45	74	프리테니스	2	0.09
9	농구	77	3.45	42	드론축구	10	0.45	75	레저복싱	2	0.09
10	배드민턴	71	3.18	43	카약	10	0.45	76	BMX	2	0.09
11	테니스	59	2.64	44	춤댄스	10	0.45	77	아쿠아로빅	2	0.09
12	클라이밍	58	2.6	45	벨리댄스	8	0.36	78	리듬체조	2	0.09
13	점핑피트니스	50	2.24	46	댄스스포츠	8	0.36	79	그라운드골프	2	0.09
14	검도	46	2.06	47	주짓수	8	0.36	80	EXTREME- GAMES	2	0.09
15	요가	43	1.93	48	롤러	7	0.31	81	바른성장체조	2	0.09
16	복싱	41	1.84	49	우슈	7	0.31	82	스피닝	2	0.09
17	인라인스케이팅	40	1.79	50	매직테니스	7	0.31	83	무에타이	2	0.09
18	태권도	36	1.61	51	정구	7	0.31	84	아이스하키	2	0.09
19	음악출넘기	36	1.61	52	바른자세	7	0.31	85	발란스트레이닝	2	0.09
20	야구	31	1.39	53	궁도	6	0.27	86	요트	2	0.09
21	유도	28	1.25	54	택견	5	0.22	87	플로어볼	1	0.04
22	필라테스	26	1.16	55	민속벨리댄스	5	0.22	88	스내그골프	1	0.04
23	출넘기	25	1.12	56	에어로빅	5	0.22	89	파크골프	1	0.04
24	바둑	25	1.12	57	족구	5	0.22	90	조정	1	0.04
25	스쿼시	25	1.12	58	티볼	5	0.22	91	번지플라이	1	0.04
26	발레	23	1.03	59	킥복싱	5	0.22	92	해동검도	1	0.04
27	당구	22	0.99	60	라인댄스	4	0.18	93	스포츠스태킹	1	0.04
28	합기도	21	0.94	61	스탠드업 패들보드	4	0.18	94	보디빌딩	1	0.04
29	사격	20	0.9	62	자전거	4	0.18	95	윈드서핑	1	0.04
30	플라잉요가	18	0.81	63	생활체조	4	0.18	96	모터스포츠	1	0.04
31	양궁	18	0.81	64	생존수영	4	0.18	97	배드민턴	1	0.04
32	스크린골프	17	0.76	65	플라잉디스크	4	0.18	98	비보이댄스	1	0.04
33	피구	15	0.67	66	컬링	4	0.18	99	육상	1	0.04
총계										2,232	100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 나. 초등학교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반학생들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또 다른 정책으로는 ‘초등학교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스포츠실 보급’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와 황사 등 야외활동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는 안전한 체육 활동 여건을 마련, 초등학생의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 증진 및 체육교육 활성화, 체육기피 학생의 체육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2016년 서울옥수 초등학교와 서울신정초등학교에 시범설치 및 운영을 계기로 지금까지 확대·운영되고 있다. <표 4-25>는 2021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현황이다.

표 4-25.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현황(2016~2021)

(단위: 개소)

사업명	2016 (시범)	2017 (시범)	2018	2019	2020	2021	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2	10	121	103	124	99	459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이 사업의 기본적인 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초등학교다.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비가 1:1로 매칭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은 2016년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의 주관 하에 R&D 정책과제로 시작되어 2017년 시범사업(전국 10개소)을 거쳐 2018년 121개소, 2019년 103개소, 2020년 124개소, 그리고 2021년에는 99개소가 설치·운영되는 등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2021년 3월에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통합 플랫폼 서비스가 출범 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다문화 가정과 특수학급 등 체육활동에서 소외된 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었으나, 교사와 일반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현재는 특수학교 및 도서벽지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전국 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 공공(체육)시설에도 지원되고 있다.

#### 다. 유·청소년 축구클럽 리그(I-리그) 운영 지원

대한체육회에서는 또한 축구 종목과 다양한 문화·교육 콘텐츠를 결합한 유·청소년 축구 상시리그를 운영함으로써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21년에는 40개 지역별 축구리그를 실시하여 총 858팀의 12,900명이 참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2021 I-League 찾아가는 축구 축제’를 개최하여 8개 지역의 162개 팀에서 총 1,895명이 참가하였다. <표 4-26>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I-리그 운영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4-26. 유·청소년 축구클럽 리그(I-리그) 운영 현황(2019~2021)

(단위: 개, 명)

종목	지역(리그) 수			참가 팀 수			참가자 수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축구	198	108	187	923	649	858	13,004	9,086	12,900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 7)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확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 안전교육 및 생존수영 교육(수중에서 위기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조치 능력 배양 교육)은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 시 자기 생명 보호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2014년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중등 체육교사 선발 실기 시험에 수영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2015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 전면 실시와 함께, 2016년에는 그 대상을 초등학교 3~4학년으로 확대, 지역 시설 여건에 따라 수영 실기교육 10시간 이상을 편성하게 했다. 2021년에는 지역적 시설 여건을 고려하되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 1~6학년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관련 현황자료는 <표 4-27>과 같다.

표 4-27. 수영 실기교육 현황(2016~2021)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
참여교육(지원)청	143개	177개	177개	177개	177개	177개
학생수	35만여 명	81만여 명	104만 명	123만 명	134만 명	135만 명
대상	초등 3~4학년	초등 3~5학년	초등 3~6학년	초등 2~6학년	초등 1~6학년	초등 1~6학년

※ 출처: 교육부(2021), 2021년 학교체육활성화 추진 계획

<표 4-27>에서처럼, 2021년에는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생존 기능, 수영 기능, 구조 기능을 포함한 수영실기교육을 10시간 이상 편성 및 운영하였다. 총 135만 명의 학생들이 수영 실기교육에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생존수영실기교육 매뉴얼과 해경청 학습 영성자료 및 이론수업 자료, 생존수영 동영상 콘텐츠도 적극 활용되었다.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청이 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안적 수영시설 확보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지역수영시설이 부족한 교육(지원)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 교실' 등 조립식 수영장을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수영장에서의 실기교육, 이론교육 그리고 실내체험교육을 병행하였다.

## 2. 학생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 1) 학생건강체력평가

1951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던 학생체력검사가 1993년에 폐지된 이후, 교육부는 2005년 5월 체육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학생건강체력평가(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PAPS)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장에서 ‘팍스(PAPS)’로 불리는 이 검사는 일종의 ‘학생 건강 및 체력 평가제’로서, 기존 학생신체능력검사를 건강과 체력 중심으로 개선한 제도다. 운동기능 중심의 평가에서 건강 및 체력 중심의 종합 체력 평가와 운동 처방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인 신체활동 증진으로 연결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따르면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체력을 정확히 측정하여 학생들의 체력 수준을 진단,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운동처방이 개인별로 제공되는 것이 의무로 설정된 것이다. 2020년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중이며,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에는 측정이 선택적이다.

학생 건강체력평가는 체력 요소별로 한 개의 검사 항목을 선택,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평가는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주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다. 검사 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입력하여 학생·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체력증진 관련 정보를 게시하거나 ‘국민체력 100사업’이나 체육수업과 연계할 수 있으며, 관련된 대회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동기 제고 및 개인별 운동 처방 제공으로 학생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여러 방안이 병행 실시되는 중이다. 이러한 방안에는 또한,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우수학생에 대해 학교장 표창을 수여하여 학생의 자율적인 체력증진을 유도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학생건강체력검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표 4-28>과 같다.

표 4-28. 학생건강체력검사 평가 항목 및 방법

구분	학생건강체력 평가시스템
적용 학년	• 초5~고3

구분	학생건강체력 평가시스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관련체력 위주: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유연성, 체지방, 순발력 등</li> <li>※ 학생개인의 건강체력 측정에 초점</li> </ul>			
종목	5개 체력요인별로 1개 항목 선택			
	- 심폐지구력	① 왕복오래달리기	② 오래달리기-걷기	③ 스텝검사
	- 유연성	④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⑤ 종합유연성검사	
	- 근력·근지구력	⑥ (무릎 대고)팔굽혀펴기	⑦ 윗몸말아올리기	⑧ 악력검사
	- 순발력	⑨ 50m달리기	⑩ 제자리멀리뛰기	
	- 체지방	⑪ 체질량지수(BMI)		
등급(점수)	1~5등급(종목별 20점, 전체 100점 만점) ※ 신체활동 성취동기 유발			
측정	학년 초 1회(년) 실시하며, 다양한 IT기술을 적용한 측정도구 사용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건강체력 정보의 누적 관리 및 운동처방을 받음.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건강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웹기반으로 구축</li> <li>비만 학생의 선별 및 관리</li> <li>선택평가 있음(학교장 결정: 심폐지구력정밀평가, 비만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li> </ul>			

※ 출처: 교육부(2021), 2021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표 4-28〉의 내용에서 설명되었듯, 측정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며, 측정 횟수는 연 1회다. 체력 요소별로 한 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급학교에서는 정확한 측정을 통한 체력 수준을 진단하고 측정결과와 운동처방을 학생 개인별로 안내한다. 측정 항목은 심폐지구력, 근력·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비만 등 학생 개인의 건강과 체력 측정에 초점을 맞춘다. ‘심폐지구력’은 왕복 오래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스텝검사로 측정하고, ‘근력·근지구력’은 (무릎 대고)팔굽혀펴기, 윗몸말아올리기, 악력검사로, ‘유연성’은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종합유연성검사로 실시하며, ‘순발력’의 경우엔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로 측정 및 평가한다. 학생의 비만 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대표적인 측정 방법인 ‘체질량지수(BMI)’가 활용된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측정 및 평가 방법 외에도 학생들은 학교장 결정에 따라 체지방 측정기를 활용한 비만 평가에서부터, 심폐지구력 정밀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 등을 선택하여 학생건강 체력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 가. 초등학교 건강체력검사 결과

〈표 4-29〉는 2021년에 초등학생(총 84만 7,8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생건강체력검사 결과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면등교가 추진되면서 전체

검사인원수는 전년(10만 8,192명)보다 73만 9,645명 감소하였다. 참여인원은 초등학교 5학년 5만 43만 5,198명과 6학년 41만 2,639명이었다.

표 4-29. 초등학교 학생건강체력검사 결과(2020~2021)

(단위: 명, %)

연도	학년	성별	1등급 (100~80)		2등급 (79~60)		3등급 (59~40)		4등급 (39~20)		5등급 (19~0)		검사 인원수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20	5	남	1,016	3.7	7,746	28.6	13,316	49.1	4,573	16.9	477	1.8	27,128
		여	926	3.7	8,530	33.7	12,766	50.4	2,840	11.2	258	1.0	25,320
	6	남	1,575	5.4	9,159	31.5	13,497	46.5	4,339	14.9	481	1.7	29,051
		여	889	3.3	8,552	32.0	13,601	51.0	3,356	12.6	295	1.1	26,693
2021	5	남	8,016	3.6	64,115	28.6	111,736	49.8	37,040	16.5	3,352	1.5	224,259
		여	8,177	3.9	77,147	36.6	103,389	49.0	20,716	9.8	1,510	0.7	210,939
	6	남	10,350	4.9	66,451	31.3	100,379	47.3	32,155	15.1	3,003	1.4	212,338
		여	7,544	3.8	68,863	34.4	99,885	49.9	22,525	11.2	1,484	0.7	200,301

※ 출처: 교육부(202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추출자료.

2021년 학생건강체력검사 참여인원 중 1등급은 3만 4,087명, 2등급은 27만 6,576명, 3등급은 41만 5,389명, 4등급은 11만 2,436명, 5등급은 9,349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체력우려학생'으로 분류되는 4등급과 5등급 평균 비율은 2021년 각각 13.2%(4등급)과 1.1%(5등급)로 나타났으며, 2020년 13.9%(4등급) 및 1.4%(5등급)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 나. 중학교 건강체력검사 결과

〈표 4-30〉은 2021년 중학생(총 127만 7,6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생건강 체력검사 결과이다. 중학생 역시 2021년에 전면 등교수업이 추진됨에 따라 2020년 22만 3,646명에 비해 전체 검사인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105만 3,959명 증가). 세부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 42만 5,030명, 2학년 44만 7,027명, 3학년 40만 5,548명이었다.

표 4-30. 중학교 학생건강체력검사 결과(2020~2021)

(단위: 명, %)

연도	학년	성별	1등급 (100~80)		2등급 (79~60)		3등급 (59~40)		4등급 (39~20)		5등급 (19~0)		검사 인원수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20	1	남	2,501	6.2	12,285	30.3	17,592	43.4	7,089	17.5	1,082	2.7	40,549
		여	2,453	6.3	15,451	39.4	16,552	42.2	4,211	10.7	530	1.4	39,197
	2	남	3,087	8.4	12,580	34.2	15,012	40.8	5,411	14.7	747	2.0	36,837
		여	2,381	6.7	14,781	41.4	14,897	41.7	3,359	9.4	323	0.9	35,741

구분			1등급 (100~80)		2등급 (79~60)		3등급 (59~40)		4등급 (39~20)		5등급 (19~0)		검사 인원수
연도	학년	성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21	3	남	3,136	8.6	12,720	34.9	14,725	40.5	5,110	14	708	1.9	36,399
		여	2,223	6.4	14,070	40.3	14,477	41.5	3,713	10.6	440	1.3	34,923
	1	남	12,007	5.5	65,292	29.9	96,874	44.3	39,829	18.2	4,708	2.2	218,710
		여	14,630	7.1	86,794	42.1	83,974	40.7	19,416	9.4	1,506	0.7	206,320
	2	남	16,107	7.0	73,862	32.1	96,390	41.9	38,987	16.9	4,895	2.1	230,241
		여	12,511	5.8	88,943	41.0	92,104	42.5	21,561	9.9	1,667	0.8	216,786
	3	남	14,593	6.9	69,489	33.1	87,991	41.9	33,793	16.1	4,270	2.0	210,136
		여	10,432	5.3	77,123	39.5	84,986	43.5	21,099	10.8	1,772	0.9	195,412

※ 출처: 교육부(202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추출자료.

중학생들의 학생건강체력검사 결과는 1등급 8만 280명, 2등급 46만 1,503명, 3등급 54만 2,319명, 4등급 17만 4,685명, 5등급 1만 8,81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등급 중 체력 우려학생에 속하는 4등급과 5등급 평균 비율은 2021년 각각 13.6%(4등급)과 1.5%(5등급)로 나타나면서, 2020년의 12.8%(4등급) 및 1.7%(5등급)에 비해 4등급은 증가, 5등급은 소폭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 다. 고등학교 건강체력검사 결과

〈표 4-31〉은 2021년 고등학생(총 121만 6,69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생건강체력검사 결과로서, 참가 인원은 1학년 38만 6,670명, 2학년 41만 745명, 3학년 41만 9,281명이었다. 전체 검사인원수는 전년(24만 7,307명)보다 96만 9,389명 증가하였다.

표 4-31. 고등학교 학생건강체력검사 결과(2020~2021)

(단위: 명, %)

구분			1등급 (100~80)		2등급 (79~60)		3등급 (59~40)		4등급 (39~20)		5등급 (19~0)		검사 인원수
연도	학년	성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20	1	남	2,312	5.8	12,873	32.3	16,545	41.5	7,130	17.9	1,017	2.6	39,877
		여	2,035	4.8	14,921	35.3	19,092	45.1	5,671	13.4	604	1.4	42,323
	2	남	1,773	4.3	11,686	28.6	17,296	42.3	8,683	21.2	1,472	3.6	40,910
		여	1,844	4.3	13,542	31.7	19,823	46.4	6,811	15.9	742	1.7	42,762
	3	남	1,268	3.1	9,902	24.6	17,236	42.8	9,932	24.6	1,955	4.9	40,293
		여	1,418	3.4	11,783	28.6	19,355	47.0	7,351	17.9	1,235	3.0	41,142

구분			1등급 (100~80)		2등급 (79~60)		3등급 (59~40)		4등급 (39~20)		5등급 (19~0)		검사 인원수
연도	학년	성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21	1	남	9,384	4.7	60,451	30.3	86,018	43.1	38,236	19.2	5,570	2.8	199,659
		여	8,440	4.5	66,663	35.6	85,433	45.7	24,180	12.9	2,295	1.2	187,011
	2	남	7,318	3.4	54,544	25.7	91,277	43.0	49,959	23.5	9,399	4.4	212,497
		여	6,580	3.3	58,497	29.5	94,706	47.8	34,493	17.4	3,972	2.0	198,248
	3	남	6,599	3.0	50,229	23.1	93,247	42.9	55,433	25.5	11,873	5.5	217,381
		여	7,185	3.6	58,883	29.2	95,443	47.3	35,592	17.6	4,797	2.4	201,900

※ 출처: 교육부(202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추출 자료.

고등학생 검사 결과에 따르면 1등급은 4만 5,506명, 2등급 34만 9,267명, 3등급 54만 6,124명, 4등급 23만 7,893명, 5등급 3만 7,90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체력우려학생에 속하는 4등급과 5등급 평균 비율은 2021년 각각 19.4%(4등급)과 3.1%(5등급)로 나타나면서, 2020년의 18.5%(4등급) 및 2.9%(5등급)에 비해 증가하였다.

## 2) 건강체력교실 운영

「학교체육진흥법」 제9조 ‘건강체력교실 등 운영’에 근거하여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등급(4~5등급: 체력우려학생)을 받은 학생은 건강체력교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각 학교는 매년 건강체력 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저체력, 비만학생의 건강체력 향상에 노력해야 하는데, 저등급 판정을 받은 저체력 및 비만 학생들이 교내 스포츠 클럽, 체육관련 동아리, 무료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 병행 실시될 수 있다. 또한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학생건강체력평가 피드백을 제공하고, 체육 단체 혹은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3.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학교스포츠클럽은 <표 4-32>와 같이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학생의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다.

표 4-32.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관련 「학교체육 진흥법」 내용

해당 조문	내용
제10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시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6.02.03.>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63호, 2017.04.18. 일부개정」

이에 따라 ‘1학생 1스포츠 활동’이 적극 권장되고, 방과 후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학급 단위의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활성화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모든 학생이 한 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섯 종목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어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단체종목’ 중심의 학급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권장된다. 최근에는 체육교사 외에 일반교과 교사도 한 가지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할 수 있도록 ‘1교사 1종목 매칭’ 운영 방식을 권장하고, 전담교사가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대회를 진행하는 학급 단위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활성화하는 추세이다.

## 2)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내실화

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내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을 위해서 각 학교별로 전담교사 한 명을 지정하는 정책도 진행된다. 이들은 스포츠강사 관리 및 학교 단위 연수 실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기획 등의 역할을 하며, 이에 지도 활동비(지도 교육청 또는 단위학교 자체예산 확보)가 지원 중이다. 교육청에서는 인근 체육시설의 시설 이용료를 지원하여 학교 내 시설 부족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스포츠클럽 담당 강사 연수도 스포츠강사(연간 15시간 내외), 일반교사(2~4시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연수 내용은 학교체육 정책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이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인성 지도,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의 실제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길잡이」를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탑재, 단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지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지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리그를 1·2학기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2021년에는 총 12억 3,200만 원의 사업예산이 교육지원청 수 및 학생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교부되었다. 덧붙여,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체육지역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의 인적 및 물적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되었다. 여기에, 리그운영 지원을 위해 전담코디네이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고(2021년 10개 시도 각 1명), 청소년들의 자율적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을 위한 학생심판 양성교육(9개 종목) 및 청소년 대상 심판교육 영상 제작 지원(6개 종목)도 병행되었다. 지역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4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 지역 예·결선의 성격으로 이루어진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6개 시도에서 38개의 온·오프라인 지역대회가 개최되었다.

### 4) 전국 학교스포츠클럽축전 운영

전국 학교스포츠클럽축전(구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은 일반 학생들이 평소 같고 닮은 종목별 기량을 발휘하는 계기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학생 간의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그 자리를 잡았다. 경기 승패와 경쟁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 연계 체험활동 연계를 통해 축제형 대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에서는 순위에 따른 시상을 폐지하는 대신 페어플레이상을 시상하여 바람직한 스포츠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토너먼트를 폐지하고 다양한 리그제를 도입함으로써 참가 학생들이 경기를 최대한 즐기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대회는 교내 대회, 교육지원청 대회를 거쳐, 시도교육청 대회, 전국축전 순으로 개최된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번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체력 저하 예방과 신체활동 결손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2021년에는 탁구 종목이 추가되어 2020년 15개였던 운영 종목의 수가 16개로 확대되었으며, 단체전 운영이 추가되었다. 단체전의 경우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기록을 합산하는 방식(3개 종목) 또는 충분한 거리를 둔 2~4명 이내의 소규모 방식으로 운영하고, 녹화중계 방식(2020년 6개 종목)에서 실시간 생중계(2021년 9개 종목)로 변경되었다.

표 4-33. 전국 학교스포츠클럽축전 개요

(단위: 개, 명)

대회회차	연도	개최 시·도	대회기간	종목	참가 선수(명)
10	2017	17개 시·도	11.04.~12.03.	24	20,175
11	2018	16개 시·도	11.03.~12.02.	23	19,311
12	2019	16개 시·도	10.26.~12.01.	23	18,243
13	2020	17개 시·도	11.16.~12.12.	15	24,755
14	2021	17개 시·도	11.01.~11.27.	16	29,022
시행 종목	티볼, 연식야구, 에어로빅, 소프트볼, 족구,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검도, 피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킨볼, 농구, 플로어볼, 치어리딩, 넷볼, 탁구, 풋살, 프리테니스, 창작댄스, 축구, 국학기공 ※ 2021년은 비대면으로 축구, 육상, 배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스포츠테킹, 저글링, 줄넘기, 체력(매달리기, 버피텐, 넉걸이, 플랭크), 티볼, 표현(치어리딩), 탁구가 진행됨				

※ 출처: 교육부(2021), 2021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보도자료.

## 5) 다양한 형태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 가.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은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인근 학교와 지역사회 기반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시스템이다. <표 4-34>에서 볼 수 있듯, 2021년에는 총 15개 시·도가 참여하여 2억 1,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표 4-34.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예산(2021)

(단위: 백만 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지원액	14	14	14	14	14	14	-	14	-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지원액	16	16	14	14	16	14	16	14	218

※ 출처: 교육부(2021), 2021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은 운영의 단위가 학교가 아닌 ‘마을’이다. 즉, 특정 지역에 거주

하는 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이 확장 지원된 것이다. 이는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각 학교급 간 연계, 인근 학교 간 연계,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여 학생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여기에 덧붙여 학교스포츠클럽 거점 학교와 같은 운영 방식을 병행하며 다양한 종목 선정과 활동 프로그램 계획도 수립하여 실시한다.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은 운영 기간이나 참가 모집 학교(급), 교육내용 선정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클럽 운영을 시도한다. 운영시간은 방과후, 토요일, 방학기간 등 다양한 시간대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기능이나 경기규칙, 전술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며, 자체 경기를 통해 스포츠맨십,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사업이 구성된 것이다.

#### 나. 학생심판 양성교육

학생 심판연수는 지도자에게 부여되는 업무 부담을 경감, 리그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수급과 교내리그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연중 상시 리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여 단위 학교의 스포츠클럽 운영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표 4-35>는 2021년에 운영되었던 ‘학생심판 양성연수’ 운영 현황이다.

표 4-35. 학생심판연수 운영 현황(2021)

종목수	종목명	운영 개소 수(개)	참가자 수(명)
9개 종목	농구, 배구, 족구, 줄넘기, 축구,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피구, 핸드볼	210	4,861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학생심판연수는 심판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로 심판 연수를 교육할 담당자가 찾아가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시·도 교육청 혹은 종목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였고, 예산은 대한체육회가 지원하였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2021년에는 총 9개 종목 전체 210개소가 운영되었고, 총 4,861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심판연수를 받았다. 이는 9종목 198개 연수 프로그램에 4,861명이 참가한 2020년보다 운영 개소 수는 증가하였으나 참가자 수는 감소하였다.

#### 다.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는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 등 소속에 상관없이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참가하는 지역 및 전국단위 대회이다.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며 학교·생활·전문 체육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통합의 의미를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21년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는 종목별·시도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종목별 대회는 13개 종목 13개 대회에 1,303명이 참가하였고, 시도별 대회에서는 9개 시도 17개 종목 17개 대회에 2,769명이 참여하였다.

표 4-36.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운영 현황(2021)

(단위: 개, 회, 명)

연도	종목별 대회			시도별 대회			
	종목 수	대회 수	참여자 수	시·도 수	종목 수	대회 수	참여자 수
2020	6	6	831	8	19	19	4,763
2021	13	13	1,303	9	17	17	2,769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 4. 학교운동부 운영 선진화

### 1)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정부는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모토로 학생선수들이 신체 및 정서적으로 조화로운 발달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 향상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전형에 내신 성적 반영을 의무화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학생선수 학사관리 강화, 최저학력제, 학생선수 e-School을 들 수 있다.

#### 가. 학생선수 학사관리 강화

학생선수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에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생선수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수업 일수의 3분의 1 범위(63~64일)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는데, 2020년에는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0일, 고등학교 40일로, 2021년에는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로 단계적으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축소하였다. 다만, 국가를 대표한 대회나 훈련 및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 참가는 허용일수에 포함되지 않게 하였다. 또한, 국가대표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장소 인근학교에서 위탁(교환)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하였다.

학생선수는 수업, 학급활동, 학교행사 등 소속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내에 훈련장소가 없고 안전관리 상 야간에 훈련이 어려운 종목의 경우에는 보충학습·안전대책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해당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학생선수 수업 결손 발생시,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을 활용하여 보충학습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대회나 훈련 참가로 수업결손이 발생한 경우 학생선수 e-School 수강(1일 결손-3시간, 2시간 결손-1시간)을 의무화 하였다.

#### 나. 최저학력제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학력 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성격으로 도입된 제도다. 적용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선수다. ‘최저학력제’라는 용어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학교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조항에 명시되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으며, 같은 조 2항에서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3항에는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21년 기준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경기대회 출전 범위가 제한되어 국가, 지자체,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 출전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올림픽, 월드컵, 아시아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는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저학력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다만 고등학생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가 해당)의 성적이 기준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최저학력의 기준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에서 해당 학년 학생 전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초·중학교) 또는 3개(고등학교) 교과를 대상으로 교과별 평균 성적에 초등학교는 100분의 50, 중학교는 100분의 40, 고등학교는 100분의 30을 곱한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타교과로 대체가 가능하며,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직후 학기에는 최저학력을 미적용한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후 영어와 사회를 수학과 과학으로 대체할 수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영어는 수학으로, 사회는 과학 또는 전문 교과로 대체 가능 하도록 하였다.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이하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에서는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에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위학교에 안내하는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경우 중학교(5교과)는 교과별로 12시간씩, 고등학교(3교과)는 20시간씩 운영된다.

학교장은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제한 범위부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시기 및 방법,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자의 대회참가 제한 해제 방안 같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들에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되는데, 각 학교장의 이와 같은 실행을 뒷받침하고자 정부는 단위학교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구축되어 시행되는 학생선수 e-school 시스템이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전면시행되었고, 이를 희망하는 학교에는 컨설팅과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기도 한다.

#### 다. 학생선수 e-School 운영

2015년부터 학생선수를 위한 학습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에 127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이 실시된 후, 2017년부터 학생선수가 소속된 전국 중·고등학교로 전면 실시되었다. 국가대표 학생선수와 학생선수를 중단하고 일반학생으로 전환한 학생들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강이 가능하다.

표 4-37. 학생선수 이스쿨(e-School) 학교급별 활용 현황(2021)

(단위: 교, 명)

구분	학교	교사	학생
중학교	일반중	1,729	10,469
	체육중	11	447
	소계	1,740	10,916
고등학교	일반고	1,034	5,428
	체육고	16	734
	소계	1,050	6,162
합계	2,790	17,078	35,967

※ 주: 학생선수 이스쿨(e-School)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1차시 이상의 학습기록이 있는 학생을 기준으로 산정한 데이터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내부자료(2021)

이와 같은 전면 실시 과정에 포함된 학교는 비단 일반중·고등학교의 운동부 뿐 아니라 체육중·고등학교도 있다. <표 4-37>에서 볼 수 있듯, 학교급별 e-school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총 2,790개의 학교에서 총 3만 5,967명이 이 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황은 <표 4-38>에 정리된 시·도별 현황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표 4-38. 학생선수 이스쿨(e-school) 시·도별 활용 현황(2021)

(단위: 교, 명)

연번	시·도	학교	교사	학생	연번	시·도	학교	교사	학생
1	서울	358	1,524	6,588	10	강원	146	848	2,067
2	부산	147	1,101	2,111	11	충북	123	711	1,526
3	대구	137	1,166	1,815	12	충남	132	917	1,775
4	인천	167	866	2,005	13	전북	86	436	839
5	광주	91	835	1,362	14	전남	102	666	1,208
6	대전	74	360	764	15	경북	165	881	2,200
7	울산	83	576	996	16	경남	183	1,077	1,864
8	세종	25	181	143	17	제주	41	390	524
9	경기	730	4,543	8,180	합계		2,790	17,078	35,967

※ 주: 학생선수 이스쿨(e-School)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1차시 이상의 학습기록이 있는 학생을 기준으로 산정한 데이터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내부자료(2021)

e-school의 수강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소양)진로분야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체 교과 관련 콘텐츠를 포함하여 중학교 66과목, 고등학교 89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학생선수가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대리 수강을 방지하기 위한 학습 시간을 고려하였다. 정규 수업시간 및 심야 시간대를

제외하고, 아침(06:00~09:00), 점심(11:30~13:30), 오후 및 저녁시간(15:00~02:00), 주말 및 공휴일(06:00~익일 02:00)로 정해졌다. 또한 e-School 운영자 연수를 개최,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학습 노트 작성 여부를 지도 점검하여 학생선수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2)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지도자 교육 강화

### 가.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지도자 교육 관련 법령

「학교체육진흥법」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표 4-3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학교체육진흥법」 내용

해당 조문	내용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1조(학교운동 부 운영 등)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12조(학교운동 부지도자)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1.6.24.」, 「법률 제17960호, 2021.3.23. 일부개정」

또한,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해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2021년 3월 23일에는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한 연수교육 이외에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교폭력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당사자의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조치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제16조)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를 마련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가해자인 경우 학교체육진흥법(제12조 4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감은 또한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5항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 후 운영해야만 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에는 기존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토록 권장되는데,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도, 배정 및 운영 계획 수립, 부당 계약 해지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심의(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6항), 기존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역할 등을 수행하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 나.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조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성희롱·성폭력 등 학교폭력 근절,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교육 및 성(희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 하였다. 시도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연 1회 2시간 이상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 학부모,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학생선수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을 포함하여 학교운동부 운영학교가 학기별 1회(연 2회) 이상 집합 또는 사이버 연수를 주관한다. 교육(지원)청이 주관 가능하며 일반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활동 고민사항을 점검·해소하기 위해서 담임교사, 감독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를 통해 월 1회 면(상)담일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학생선수의 건강관리, 경기력 향상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진로진학 등에 대한 면(상)담 내용을 누가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학생선수 인권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합숙훈련의 병폐를 막기 위해 학기 중 상시 합숙 훈련을 근절하도록 하였다. 단순 숙식제공과 주거 생활만 하는 합숙소 형태의 기숙사 운영을 불가하였고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는 전담 교직원이 근무하는 조건에서 운영하도록 하였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와 더불어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주말 및 휴일에 과도한 학생선수 지도를 지양하고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혹서(한)기 훈련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훈련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직무교육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에 참가해야 하는데, <표 4-40>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된 지도자 직무교육 현황을 보여준다.

표 4-40. 학교운동부 지도자 직무교육 현황(2017~2021) (단위: 명)

연도	합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7 (기본)	359	36	16	32	12	13	13	9	2	78	37	13	18	3	13	29	35	-
2017 (보수)	662	54	18	35	30	31	22	30	1	162	59	18	17	12	57	56	53	7
2018 (기본)	478	51	16	24	41	23	19	9	3	152	28	20	13	10	16	19	25	9
2018 (보수)	824	70	32	39	43	19	40	31	3	266	45	43	19	14	33	39	80	8
2019 (기본)	401	42	32	26	24	11	13	7	4	110	14	23	27	8	10	29	13	8
2019 (보수)	780	55	32	57	38	21	33	17	4	257	17	47	22	16	32	54	73	5
2020 (기본)	1,082	140	79	48	105	9	36	24	11	179	139	55	64	48	7	70	59	9
2021 (기본)	749	114	47	39	28	56	29	7	6	137	69	39	43	22	32	46	25	10
2021 (보수)	2,400	253	89	112	129	94	102	106	11	532	238	124	105	88	90	165	140	22
합계	7,735	815	361	412	450	277	307	240	45	1,873	646	382	328	221	290	507	503	78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학교운동부 지도자 직무교육은 초·중·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지도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받아야 할 필수 교육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재육성팀에서 주관한다. 초·중·고 학교

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기 수료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체계를 갖춘 교육 프로그램인 것이다. 기본교육에서는 학교운동부의 이해(8시간), 스포츠 인권 및 안전(6시간), 지도자 전문성(8시간)이 실시되고,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지도자 자질 교육(3시간) 및 스포츠인권(6시간), 그리고 지도자 전문성(12시간)이 포함되었다. 학생선수 진로상담, 학교체육의 변화와 발전, 응급처치를 다루는 지도자 자질교육은 공통교육이며, 지도자 전문성교육은 코칭방법, 운동상해, 스포츠심리, 스포츠분석, 트레이닝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기본과정에는 여기에 스포츠 영양학이 신설되었다. 2021년 현재 지도자 전문성 교육은 희망하는 1강좌를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되어 있으며, 3년 주기로 지도자 전문성 교육 5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라. 학생선수 도핑방지교육

2017년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2가 신설되어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의 도핑방지교육 실시가 의무화되었다. 도핑방지교육의 시행 주체는 시도교육청이다. 도핑 개념, 금지 약물 정보, 도핑 관련 규정 등의 교육내용을 견학이나 체험활동, 정보·통신 매체 이용 원격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전수한다.

표 4-41. 교육부 주관 도핑방지교육 실시 현황(2021)

학교 수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지도자
3,860개교	54,336명(100%)	5,498명(100%)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2021).

위의 <표 4-41>에서 볼 수 있듯, 관련법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핑방지교육이 실시되었다. 학교운동부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 모든 학교의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1년에 1회 이상 도핑방지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총 6,860개의 학교에서 5만 4,336명의 학생과 5,498명의 지도자가 관련 교육을 받았다.

### 3) 투명하고 교육적인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 학교운동부지도자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학교운동부 채용 조건 강화, 대입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 학교운동부 운영 방식 선진화, 학교운동부 비리 관련 징계 강화, 학교운동부 해외 전지훈련 관리 철저,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항 12호(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근거하여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별도 수립하거나 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운영 계획에는 학교운동부의 일반현황, 운영 예산 확보·집행,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훈련·대회 참가, 안전대책, 학부모 부담금 회계처리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입상실적 평가방식은 전국대회 입상을 위해 학생선수에게 비교육적인 방법과 과도한 훈련을 수행하게 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유발하였다. 이에 직무수행 실적, 복무태도, 운동부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전국대회 입상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와 같은 조항이 삭제되었고, 체육부장, 학교운동부 담당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으로 평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이와 더불어 학부모 부담의 학교운동부 운영경비는 반드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법인 카드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을 시도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게 만들었다. 또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선발에 있어서 반드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채용하도록 하며, 채용 지원자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경기단체 (징계)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 채용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였다.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2020학년도부터 대입 전형에 체육특기자 교과 성적 및 출석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제도화되었고, 최대한 객관적인 경기실적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는 대학 모집요강 발표 시 각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종목별, 포지션별 선발인원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에 따라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되었다. 모집인원을 ‘0명 내외’ 또는 ‘0명 이내’라고 규정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각 대학은 학생선발 시 학생선수의 운동(실기)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실적 평가항목에 축구는 출전시간, 공격포인트(골, 어시스트 등), 야구는 타율, 안타, 도루, 방어율 등의 객관적인 개인기록을 반영하게 한

것이다. 나아가, 면접/실기평가 시 3인 이상 참여하고, 1인 이상의 외부위원(타 대학교수)과 타 학과 교수 또는 입학사정관, 공정성 위원 참여가 의무화되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대학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자유롭게 복수 지원(수시 6회, 정시 3회)이 가능하도록 한 것 역시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방안으로 만들어진 한 측면이다. <표 4-42>는 관련된 대책을 요약한 자료다.

표 4-42.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

구분	내용	성과
사전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시행</li> <li>• 체육특기자 대입설명회 개최(온라인)</li> <li>•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요강 발간 및 배포</li> <li>• 체육특기자대입포털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가이드라인 도출 및 회원대학 권고(2021)</li> <li>- 체육특기자 선발 시 교과 성적 및 출석의 실질반영비율 최소 30% 이상, 단계별전형의 경우 1단계 반영</li> <li>• 체육특기자 경기력 평가 기준 마련 연구 진행(2019~)</li> <li>- 농구, 배구, 야구, 축구 경기력 평가 지표 개발</li> <li>• 체육특기자 대입설명회 개최(온라인 전화 상담, 65개교)</li> <li>•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발간 및 배포</li> <li>- 전국 운동부 운영 고교 1,043개 포함 총 1,379개 유관기관</li> <li>• 체육특기자대입포털 운영을 통한 정보 제공</li> <li>- 대입 선발 79개 종목, 128개 대학, 163개 전형 정보 제공</li> </ul>
사후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비리 대학교 운동부 대회 출전 정지 및 지원 제한</li> </ul>	

※ 출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2022),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2021연감.

교육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초·중학교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의 조화로운 발달과 학습권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이수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는 기존의 과도한 훈련을 탈피하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체육분야 진로개척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종목별 인원 적정화 등을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부모 부담금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교육적인 운동부 운영(예.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최저학력제 등)실태에 대해 연 1회 학교운동부를 점검하였다.

특히, 학교운동부 비리와 관련해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우수선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운동부 경비집행 부정행위, (성)폭력 등에 대해 지도자·선수 등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였다.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 학습권 박탈, 폭력, 금품·향응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학교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4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 및 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학생선수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일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입학비리 연루 학생선수에 대해 영구제명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학교폭력, 성폭력 등 주요

비위행위의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 경우,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반성과 자숙을 위해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해외 전지훈련은 가급적 사양하되 방학 중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교육청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전·사후 보고 및 결과 공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학부모의 부담 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시키고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 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를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인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와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항과 제32조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5. 대학스포츠 활성화

### 1) 개관

대한민국에서 대학스포츠가 국가체육의 일부로 전개되던 시기가 있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시대에 부각된 스포츠의 정치적 가치에 기인해 정부가 직접 스포츠분야에 개입한 것이 시작이었다. 정부의 주도 아래 펼쳐진 체육정책 안에서 스포츠가 과학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엘리트 스포츠(전문체육)가 발전하게 되었다. 그 중심에 대학스포츠가 존재했다. 대학스포츠는 엘리트 스포츠와 프로스포츠의 자원을 육성하는 산실이었으며, 전문 스포츠 지도자를 육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간의 대학스포츠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대학 운동부 출신들이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나아가 올림픽에서도 괄목할만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찬란한 순간들에는 늘 대학 운동부 선수들이 있었던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난 이후 한국 스포츠가 줄곧 주요 스포츠이벤트에서 세계 10위권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학스포츠를 통해 양성된 엘리트 선수 출신들 덕택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대학스포츠가 그려낸 궤적은 성과측면에서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과'의 의미를 다시금 조명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전보다 늘어난 메달 수(數)나 상승된 순위로 규정되는 성과주의를 들어내 보면, 안타깝게도 대학스포츠는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한 스포츠의 순수

기능을 매우 제한하는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학스포츠의 빛나는 순간 이면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인 것이다. 고등교육기관의 스포츠 주체로써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스포츠가 국가체육의 일부로써 메달 획득을 향한 일방향의 폐쇄적인 관점에서 작동하여 대학스포츠 주체의 활동 범위를 제한한 것, 전문선수와 비선수를 가르는 단절로써 기능하고 승리지상주의, 폐쇄주의 안에서 대학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학생선수의 학습권 박탈, 인권 침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 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프로스포츠의 성장과 2000년대 이후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대학교육 현장에 밀어닥친 변화로 대학스포츠의 역할과 의미 재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학 스포츠의 정상화, 활성화, 선진화를 모토로 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창설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학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지향, 대학스포츠의 위상 정립,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통한 전인적 스포츠 인재 성장 시스템 구축 등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 2)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대학운동부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 운영비를 차등지원을 통해 대학운동부 운영 방향성 제시 및 대학스포츠 정상화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학 구조 조정 여파 속에서 학교운동부 축소 및 폐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대학운동부를 지원하여 대학스포츠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선수의 체계적 육성 및 경기력 향상 도모를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는 2021년 111개 대학의 469개 운동부, 8,123명의 학생 선수에 대해 대학 당 최저 1,150만 원에서 최고 1억 9,750만 원까지 총 77억 원을 지원(훈련비, 훈련용품비, 대회출전비 등)하였다. <표 4-43>은 대학운동부 지원 현황이다.

표 4-43. 대학운동부 지원 현황(2021)

대학	운동부	학생선수
111개	469개	8,123명

※ 출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2022).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2021연감.

이와 더불어 체육계 대학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한국체육대학교 24개 종목, 28개 운동부의 총 933명의 학생선수에게 훈련비, 훈련용품비, 대회출전비 등 총 10억 원이 지급되었다.

### 3) 학생선수 교육 및 학사관리

대학운동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외에도, 대학운동부 학생선수의 기본소양 함양 및 윤리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소양교육, 대학운동부 주장 학생선수의 개인 역량 강화 및 리더십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리더십 교육, 신입 학생선수의 대학생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신입생 교육 등 학생선수 맞춤형 교육 역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 4-44>는 2021년 실시된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맞춤형 교육 현황을 보여준다.

표 4-44. 학생선수 맞춤형 교육 현황(2021)

구분	일정	내용	성과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소양교육	온라인 교육 (2022.1.10. ~ 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포츠인권</li> <li>스포츠윤리</li> <li>도핑방지</li> <li>도박예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6개 대학, 516개 운동부, 학생 선수 9,291명 수강</li> <li>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인권 교안 개발 (2021. 7. 23. ~ 10. 20.)</li> </ul>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리더십교육	온라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팀 응집력을 강화하는 리더의 습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소양교육과 연계, 학생선수 질문 사전 수렴 및 전문가 답변을 통한 상호 교육구조 도입</li> </ul>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신입생 교육	온라인 교육 (2021.3.18. ~ 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USF 온라인 교육플랫폼 활용</li> <li>KUSF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캠퍼스 가이드북 2021 배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6개 대학 2,868명 수강</li> <li>가이드북 137개교 1,500부 배포</li> </ul>

※ 출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2022).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2021연감.

### 4) KUSF 대학스포츠 리그 지원

대학스포츠 엘리트리그 및 클럽리그 활성화를 위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관련 리그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대학생 1인 1스포츠 문화 확산 및 대학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KUSF 클럽 챔피언십이 개최되었다. 구체적인 개최 현황은 <표 4-45>와 같다.

표 4-45. KUSF 클럽챔피언십 운영현황(2021)

(단위: 개, 명)

종목	예선		결선	
	참가팀	참가선수	참가팀	참가선수
농구(남)	75	1,142	8	96
농구(여)	27	379	8	96
배구(남)	32	453	8	120
배구(여)	19	253	8	120

종목	예선		결선	
	참가팀	참가선수	참가팀	참가선수
야구(남)	57	1,377	4	80
축구(남)	22	439	8	144
축구(여)	12	293	8	144
합계	244	4,336	52	800

※ 출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2022),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2021연감.

클럽챔피언십은 전 경기 KUSF 유튜브 채널 생중계 및 주요경기(8강 이후)네이버 스포츠 동시 중계 등 인터넷 생중계가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아이스하키, 소프트테니스 등 6개 종목을 대상으로 U-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U-리그의 종목별 참가 팀을 살펴보면, 농구 종목의 경우 남자는 12개 대학, 여자는 6개 대학에서 참가하였으며, 배구는 남자 10개 대학, 여자 4개 대학에서 참가하였다. 야구는 43개, 축구는 85개 대학에서 참여하였으며, 소프트테니스와 아이스하키는 각각 10개, 4개 대학에서 참가하였다.



2021 체육백서

2021 Sport White Paper

5

## 장애인체육

- 제1절 장애인체육 개관
- 제2절 장애인 생활체육
- 제3절 장애인 전문체육
- 제4절 장애인 국제체육

## 제1절 장애인체육 개관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 발전 과정에서 1981년 제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는 장애인체육의 확장성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1988년 제8회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를 준비 및 개최하며 1989년 장애인체육 전담조직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결성하여 장애인체육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당시 장애인체육은 지금과는 달리 주로 장애인 재활을 위한 복지 차원의 접근이 주류를 이뤘다. 이 때문에 국민체육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생활·전문체육으로 분화하여 정책을 추진하기엔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이후 국제사회에 장애인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내 장애인 권리가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며, 국민체육진흥법까지 개정됨에 따라 현재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 장애인체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18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용품·차량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체육을 향유하는 정책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장애인 체육, 모두를 위한 체육의 시작’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①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②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③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과 8대 핵심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150개소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2005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관할 하에 체육국 체육협력관 내의 장애인체육과를 설치하였다. 장애인체육과는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각종 대회 지원, 국가대표 장애인선수 육성 지원, 장애인체육교류 활성화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체육 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각 시도 협회 및 가맹경기단체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 장애인체육은 크게 4가지 측면에 집중하였다. 첫째,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참여자 확산이다. 교실 및 동호인 지원 확대(‘20년 857개소 → ’21년 996개소), 공공스포츠 클럽 운영 내실화(‘20년 프로그램 45개 → ’21년 프로그램 58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상담 지원 확대(‘20년 13,747건 → ’21년 15,738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확대

(’20년 915명 → ’21년 955명)하였다. 둘째, 스포츠활동 기반 조성이다.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형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2020년 23개소에 이어서 2021년에 13개소를 추가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연령을 확대(’20년 만 12세~49세, ’21년 만 12세~64세)하였다.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2020년도에 8번째 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2021년도에 10번째 센터를 개소하였다. 셋째, 전문체육 기반 강화를 위한 육성체계 마련 및 경기력 향상 지원 강화에도 집중하였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국가대표 비대면 훈련 및 촌외훈련을 시행하여 29종목 541명(선수 355명, 임원 186명)의 훈련을 완료하였다. 2020 도쿄패럴림픽과 2021 바레인장애인청소년아시아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참가 지원을 통해 2020 도쿄패럴림픽대회에서는 종합 41위(금 29, 은 35, 동 33 획득), 2021 바레인장애인청소년아시아경기대회 종합 4위(금 14, 은 11, 동 2 획득)의 성과를 거두었다. 넷째,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 및 장애인 은퇴 선수 지원이다. 미디어 및 인터넷 TV 중계 등 장애인체육 홍보를 다양화하고 시도별 장애인 선수 권익보호 전문인력풀 운영 및 은퇴선수 취업 지원 및 관리를 강화(’20년 4개 과정 → ’21년 7개 과정)하였으며, 인권 감수성 향상 캠프를 개최하였다.

이 장에서는 장애인체육의 세부 정책 영역인 장애인 생활체육, 장애인 전문체육, 장애인 국제체육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2절에서는 생활체육 참여 현황과 장애인체육 참여 확산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공공스포츠클럽 및 동호인 지원)을 포함하였다. 제3절에서는 장애인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육성체계 및 이천선수촌과 관련한 통계, 나아가 전문체육 선수들이 참가하는 각종 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선수를 위한 복지 정책 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 제4절에서는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국제체육기구의 체계 및 역할과 장애유형별 국제체육기구 소개와 국제체육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장애인 국제 체육대회를 정리하였다.

## 제2절 장애인 생활체육

## 1. 장애인 생활체육 현황

정부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촉진 노력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인들을 더 많이 체육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편의 향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 및 프로그램(교실, 동호회, 스포츠클럽 등) 지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홍보 및 체육활동 신규 참여자 발굴(상담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및 어울림(통합)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표 5-1>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현황이다.

표 5-1.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2017~2021)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생활체육 참여율	20.1	23.8	24.9	24.2	20.2
전년대비 증가(%p)	2.4	3.7	1.1	-0.7	-4.0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위의 <표 5-1>에서 볼 수 있듯 2017년 20.1%였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9년 24.9%로 최고조에 달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로 전년 대비 4.0%p 감소하였으며, 이는 최근 5개년 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 비율은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주 2회 이상, 1회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을 하는 자)’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이러한 생활체육 참여율은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표 5-2>는 2021년 기준 시·도별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이다.

표 5-2. 시·도별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2021)

(단위: 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수	8	3	3	2	2	8	2	1	11	2	5	4	5	4	5	3	1	69

※ 주: 본 현황은 시·도 장애인체육회 등을 통해서 취합한 자료로서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

※ 주: '20년 재조사를 통해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소관 9개 체육시설을 제외한 결과임.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21)

또한,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형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2020년 23개소에 이어서 2021년에 13개소를 지원하였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유산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및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2027년까지 시·군·구 단위로 150개소의 신규 건립을 지원한다. 개소당 30억에서 40억 원을 3~4년에 걸쳐 지원하며, 체육관형(특수학교 내 건립), 수영장형(특수학교 내 건립), 종목특화형(동·하계 종목, 해양 종목, 장애유형 특화) 모델 중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추진되며,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비장애인들도 함께 활용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시·도 및 종목별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현황도 장애인 생활체육 현황을 살펴 보는데 중요한 지표다. <표 5-3>은 2021년 기준 시·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현황이다.

표 5-3. 시·도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현황(2021)

(단위: 개)

연번	시·도 종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	검도	-	-	-	-	-	1	-	-	2	-	-	-	-	-	-	-	-	3
2	게이트볼	1	1	-	1	3	-	-	-	7	-	2	13	4	1	-	24	-	57
3	골볼	-	-	-	-	1	-	-	-	-	-	-	1	-	-	-	-	-	2
4	농구	3	1	1	-	1	-	-	-	5	1	-	3	-	-	-	-	-	15
5	다트	1	-	-	-	-	-	-	-	2	-	-	-	-	-	-	-	-	3
6	당구	2	1	-	-	-	2	-	-	4	2	1	6	8	3	-	8	-	37
7	댄스스포츠	-	-	2	-	-	1	4	-	-	-	-	-	1	1	-	-	-	9
8	럭비	-	2	-	-	-	1	-	-	-	-	1	-	-	-	-	-	-	4
9	론볼	6	4	5	-	1	-	4	-	5	-	3	8	5	1	1	2	-	45
10	바둑	-	-	-	-	-	-	1	-	-	1	-	-	-	1	-	2	-	5
11	배구	-	-	-	-	1	-	1	-	4	1	-	7	2	2	-	2	1	21
12	배드민턴	6	5	8	1	3	4	3	1	9	1	2	10	4	4	-	5	-	66
13	보치아	6	7	2	1	3	-	1	-	11	2	2	9	4	3	2	3	-	56
14	볼링	12	6	5	-	2	2	1	-	20	5	11	16	5	5	1	22	2	115

연번	시·도		종목																	합계
	종목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	사격	-	-	-	-	1	-	-	-	-	-	1	1	1	-	-	3	-	7	
16	사이클	1	1	-	2	-	-	-	-	3	-	-	-	-	1	-	1	-	9	
17	수영	4	-	1	-	2	1	2	-	3	2	-	1	-	-	-	3	2	21	
18	술런	2	2	1	1	-	-	3	-	3	-	3	6	2	-	-	9	1	33	
19	스키	-	-	-	-	-	-	-	-	-	-	-	-	-	-	-	-	-	0	
20	승마	-	-	-	-	-	-	-	-	-	-	-	-	1	1	-	-	-	2	
21	아이스 슬레지하키	1	-	-	-	-	-	-	-	-	-	-	1	-	-	-	-	-	2	
22	야구소프트볼	2	-	2	-	-	-	-	-	-	1	-	-	1	-	-	1	-	7	
23	양궁	-	-	-	-	-	-	-	-	1	-	-	-	-	4	-	-	-	5	
24	역도	-	2	-	-	1	-	-	-	-	-	-	3	-	-	-	-	-	6	
25	요트	-	-	-	-	-	-	-	-	-	-	-	-	-	-	-	1	-	1	
26	유도	-	-	-	-	-	-	-	-	-	-	-	-	-	-	-	-	-	0	
27	육상	1	-	-	-	-	-	-	-	-	-	-	2	-	-	-	1	-	4	
28	조정	-	-	-	-	-	-	-	-	-	-	-	-	-	-	-	-	-	0	
29	축구	2	2	1	2	-	3	3	-	3	1	-	6	3	1	-	7	-	34	
30	컬링	1	3	-	-	-	-	-	-	-	-	-	-	-	-	-	-	-	4	
31	탁구	9	6	5	2	8	1	6	1	21	2	5	24	6	4	-	22	1	123	
32	태권도	-	-	1	-	1	3	4	-	2	-	1	-	3	-	-	-	-	15	
33	테니스	-	1	1	1	1	-	-	-	2	-	1	1	-	-	-	-	-	8	
34	파크골프	15	1	10	3	9	1	3	-	22	4	4	14	3	2	5	25	-	121	
35	펜싱	-	-	-	-	1	-	-	-	-	-	-	-	-	-	-	-	-	1	
36	플라잉디스크	-	-	-	-	-	-	-	-	-	-	-	-	-	-	-	-	-	0	
37	플로어볼	-	-	-	-	-	1	-	-	-	-	-	-	-	-	-	-	-	1	
38	기타	20	10	4	3	1	3	56	-	8	1	4	7	5	6	1	25	-	154	
합계		95	55	49	17	40	24	92	2	137	24	41	139	58	40	10	166	7	996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1). 통합정보시스템.

〈표 5-3〉에서 알 수 있듯, 시·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는 총 996개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0년 1,054개의 동호회 현황에 비해 약 5.5% 감소한 수치이다. 이들 생활체육 종목 중 가장 많은 동호회를 보유한 종목은 탁구(123개), 파크골프(121개), 볼링(115개) 순이었다.

## 2.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여건 조성

정부는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소외지역 생활체육 확산, 비활성화 종목육성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여 모든 연령 및 계층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인별 체력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신규 개소한 2개 센터를 포함하여 전국 10개 센터에서 체력측정 9,279명, 체력증진교실 911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공공체육시설 대상 장애인접근성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1,498개소 대상 장애인 이용률 및 편의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였으며, 국내체육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및 장애인 친화 이용환경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올해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6,539명, 단기 스포츠 강좌 471명 등 총 7,014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은 1,568개소로 집계되었다. 이외에도 정부는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 휠체어 및 용품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궤적은 <표 5-4>에 정리된 것과 같다.

표 5-4.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 현황(2008~2021)

년도	생활체육 분야	세부내용
2008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통합체육수업 매뉴얼 개발</li> <li>직장장애인 체육활동 효과분석 연구</li> <li>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 구성</li> <li>기개발 종목 보급(파크골프, 등산 등) 및 장애인체육활동 사진공모전</li> </ul>
	생활체육 기초조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외형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이용가능환경 실태 및 리모델링 방안 연구</li> <li>장애인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 연구</li> </ul>
	생활체육 기초조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생활체육 사업 평가 연구</li> </ul>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콜서비스 운영</li> <li>생활체육 잠재군 발굴 및 생활체육정보센터 관리</li> <li>전일제 장애인체육지도자 관리 및 운영</li> </ul>
2010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지원</li> <li>프로그램 7종 개발(인라인하키, 트레일 오리엔티어링, 휠체어핸드볼, 태권, 핀수영, 좌구, 스포츠스태킹)</li> </ul>

년도	생활체육 분야	세부내용
2010	생활체육 기초조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0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li> <li>장애인차별금지법 대응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화 실태조사</li> </ul>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콜서비스 운영</li> <li>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본회 3명, 시·도 16명)</li> <li>서비스 전용차량 5대 시·도 지원 및 장애인스포츠포인트 구매</li> </ul>
2012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체육 동영상 자료집(리드업프로그램) 개발 제작 보급</li> <li>전체 시·도 장애인체육회 등 보급</li> </ul>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 시설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li> <li>청각장애인 건강체력 인증사업을 위한 기반조사 및 측정기준 개발</li> </ul>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종목 강습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시·도, 총 32회 운영</li> </ul>
2013	건강체력인증제 마스터플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형별 장애인 건강 체력 인증 가능한 기준 준거자료 마련</li> </ul>
	생활체육 프로그램 동영상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li> <li>생활체육 프로그램개발: 티볼, 휠체어사이클</li> </ul>
	해외우수 장애인 생활체육 운영현장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생활체육 선진 프로그램 정보 및 최신 동향 수집 등</li> <li>기간 및 장소: 2013.09.10. ~ 09.15. / 호주 시드니</li> </ul>
	생활체육 개발프로그램 강습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프로그램 강습회: 전체 시·도 강습회 51회 지원</li> </ul>
2014	장애인 체력관리 및 운동상담 사업 운영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 모델 마련</li> <li>- 사업기간: 2013.05. ~ 2013.12.</li> </ul>
	생활체육 프로그램 동영상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체육종목 안내: 전동휠체어축구</li> <li>체력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동영상 제작</li> </ul>
	해외우수 장애인 생활체육 운영현장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생활체육 선진 프로그램 정보 및 최신 동향 수집 등</li> <li>- 장소: 영국 런던(9명), 일본(2명)</li> </ul>
2015	정당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 및 제작</li> <li>- 사업기간: 2015.05. ~ 2015.12.</li> </ul>
	해외우수 장애인 생활체육운영현장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생활체육 선진 프로그램 정보 및 최신동향수집 등</li> <li>- 기간 및 장소: 2015.09.08. ~ 09.15. / 캐나다</li> </ul>
	광주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엘리트체육 및 동호인 활동지원 등 비장애인인 장애인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li> </ul>
2016	국민체력100 장애인분야 도입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체력100 장애인분야 도입 연구 및 체력증진 운동지침서, 영상제작</li> <li>- 사업기간: 2015.12. ~ 2016.09.</li> </ul>
	제주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엘리트체육 및 동호인 활동지원 등 비장애인인 장애인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li> </ul>
	해외우수 장애인 생활체육 운영현장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생활체육 선진 프로그램 정보 및 최신동향수집 등</li> <li>- 기간 및 장소: 2016.07.06. ~ 07.13. / 미국</li> </ul>
2017	생활체육 기초조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 장애인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li> </ul>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콜서비스 운영</li> <li>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본회 3명, 시·도 17명)</li> <li>특장버스 2대 및 서비스 승합차량 6대 시·도 지원</li> <li>장애인스포츠포인트 구매</li> </ul>
2018	해외우수 장애인 생활체육 운영현장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생활체육 운영프로그램 국내 활용방안 연구 등</li> <li>- 기간 및 장소: 2017.08.26. ~ 09.02. / 호주</li> </ul>

년도	생활체육 분야	세부내용
2018	해외우수 장애인 생활체육 운영현장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생활체육 선진 프로그램 정보 및 최신동향수집 등 - 기간 및 장소: 2018.09.07. ~ 09.14. / 미국, 캐나다</li> </ul>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체력인증센터 3개소(광주, 대전, 인천) 운영지원</li> <li>장애인체력인증센터 전산시스템 구축</li> <li>사업기간: 2018.01. ~ 2018.12.</li> </ul>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콜서비스 운영</li> <li>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본회 3명, 시·도 17명)</li> <li>특장버스 2대 및 서비스 승합차량 6대 시·도 지원</li> <li>이동차량 래핑지원(61대)</li> <li>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팀 운영지침 개정</li> </ul>
2019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체력인증센터 6개소(신규 3개소) 운영지원</li> <li>장애인체력인증센터 BI 개발</li> </ul>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서비스 운영</li> <li>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본회 3명, 시·도 17명)</li> <li>이동차량 지원(특장버스 4대, 승합차량 6대)</li> <li>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 운영</li> </ul>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생활체육 실행 실태(완전 실행자 24.9%)</li> </ul>
	장애인 생활체육 휠체어 및 용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목적 스포츠 휠체어(170대) 및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46대) 신규 보급</li> <li>시도 용품 구입비 지원(568백만 원)</li> <li>중증장애인 전동축구 휠체어(보급형) 8대 지원</li> </ul>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선정(30개소) 및 지원</li> </ul>
2020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체력인증센터 8개소(신규 2개소) 운영지원</li> </ul>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서비스 운영</li> <li>서비스 상담인력 인건비 지원(본회 3명, 시도 17명)</li> <li>이동차량 지원(특장버스 4대, 승합차량 6대)</li> <li>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 운영</li> </ul>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생활체육 실행 실태(완전 실행자 24.2%)</li> </ul>
	장애인생활체육 휠체어 및 용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용 스포츠 휠체어 170대 보급</li> <li>골프장 전용 휠체어(스쿠터) 5대 보급</li> <li>시도 용품 구입비 지원(595백만 원)</li> </ul>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선정(23개소) 및 지원</li> </ul>
2021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체력인증센터 10개소(신규 2개소) 운영지원</li> </ul>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서비스 운영</li> <li>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본회 3명, 시도 17명)</li> <li>이동차량 지원(특장버스 1대, 승합차량 15대)</li> <li>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 운영</li> </ul>

년도	생활체육 분야	세부내용
2021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 실태(완전 실행자 20.2%)
	장애인생활체육 휠체어 및 용품 지원	• 휠체어 총 143대 보급[범용50, 종목60(배드민턴32, 탁구28), 수영장 입수용30, 골프장 전용 휠체어(스쿠터)3] • 시도지회 생활체육용품 구입비 지원(695백만 원)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원	•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선정 (13개소) 및 지원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과 생활체육 기초 조사연구 등이 본격화되었다. 이를 위해 시·도 지부를 설치하며 광역권의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을 구축했고, 시·도 장애인체육회가 생활체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정비하였다.

2010년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시행하였고, 2012년에는 인구 30만에서 50만 명 사이의 기초자치단체로 그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조사 결과(적정설치율은 2010년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시설에서 54.6%, 2012년 인구 30만에서 50만 사이 기초자치단체 시설에서 48.9%)에 따라 정부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였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설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교육을 시행하는 등 장애인 시설환경 개선에 자원을 투자하였다.

2015년부터는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개관(2015년 5월 7일)하였는데, 이곳은 장애유형 및 체력수준을 고려한 운동처방 및 스포츠 연계로 장애인들이 손쉽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된 센터였다. 또한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없는 생활체육참여 환경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국민체력100 장애인분야 도입 연구(국민체력100 장애인분야 도입 연구 및 체력증진 운동지침서, 영상제작 등)가 이루어졌고, 우수 장애인 대상 해외 생활체육 운영 현장 견학사업(장애인 생활체육 선진 프로그램 정보 및 최신 동향수집 등)도 함께 추진되었다. 나아가 2017년에는 생활체육 기초조사 연구(2017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와 함께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콜서비스 운영, 서비스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 서비스

차량 지원 및 장애인 스포츠용품 구매 등) 및 해외우수 장애인 생활체육 운영현장 견학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운영프로그램 국내 활용방안 연구)도 실시되었다.

2018년에는 지역별 생활체육연합회 및 종목별 동호회 지원 확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확대,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전개와 생활체육 홍보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 강화의 사업목표를 설정하며, 2017년에 실시된 생활체육 기초조사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력인증센터 3개소(광주, 인천, 대전)를 선정하여 재정을 지원하였다. 2019년도에는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를 신규로 3개소(충남, 전북, 대구) 추가 선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차원에서 콜서비스나 이동차량 지원, 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2020년에는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2곳이 신규 개소(서울, 경남)하였으며,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이 2019년 30개소에 이어 2020년에도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나아가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와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가 지속되었으며, 장애인 휠체어(범용 스포츠 휠체어, 골프장 전용 스쿠터)와 생활체육 용품 구입비(5억 9,500만 원)가 지원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은 2021년에도 이어져, 장애인체력인증센터 2개소가 신규 개소하였으며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가 운영되었다. 장애인생활체육조사를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 역시 지속되었으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역시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장애인생활체육을 위한 143대의 휠체어가 보급되었으며, 장애인 시도지회의 생활체육용품 구입을 위한 비용(6억 9,500만 원)이 지원되었다.

### 3.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 1)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정부는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동호회 지원, 공공스포츠클럽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지원 등이 있다.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과 동호인 클럽 지원은 2021년 기준 총 996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장애유형별(시각, 청각)과 대상 맞춤형(아동, 직장인, 여성 등) 교실 및 수중운동 교실 운영과 공공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지원 등 맞춤형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동영상(장애인 노인 건강관리 동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비대면 체육활동이 필요한 시기에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활용도 높은 영상 콘텐츠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밖에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용품 구입 및 관리비를 지원하고 동·하계 용품 관리 유지비를 운영하였다.

〈표 5-5〉와 같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기타 프로그램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레저스포츠 활동지원에서 생활체육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표 5-5.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기타 프로그램 지원 실적(2017~2021)

(단위: 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생활체육교실	548	546	574	604	705
레저스포츠	-	-	3	3	2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프로그램	-	-	21	45	58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사업은 설립 초기 청소년 교실, 전통종목 교실, 여성 교실 등으로 세분화한 상태로 지원되었지만, 시·도 장애인체육회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교실 종류를 선택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 위의 〈표 5-5〉를 살펴보면, 2021년 생활체육교실 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705개소에 운영과 관련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생활체육교실뿐 아니라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에 대해서도 관련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표 5-6〉을 통해 그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표 5-6.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실적(2017~2021)

(단위: 개,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동호인클럽	278	349	293	253	291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생활체육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매년 지역장애인체육회가 우수 동호인과 동호인클럽을 선정하여 용·기구, 지도자, 클럽매니저를 지원한다. 〈표 5-6〉에서처럼, 2021년 기준 지원을 받은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은 총 291개이다. 클럽매니저 교육은 2014년 이후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대한장애인 체육회는 지난 2008년부터 '생활체육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매년 지역장애인체육회가 우수 동호인과 동호인클럽을 선정하여 용·기구, 지도자, 클럽매니저를 지원한다. <표 5-6>에서처럼, 2021년 기준 지원을 받은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은 총 291개이다. 클럽매니저 교육은 2014년 이후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이다. <표 5-7>에서 볼 수 있듯 2021년 개최된 장애유형 통합대회는 장애유형별 종합대회 3개소, 장애유형별 생활체육대회 1개소, 지역생활체육대회 16개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4개소, 종목별 국내대회 44개소, 소외종목 육성대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어울림대회 각 1개소로 총 70개 대회에 총 1만 2,148명이 참여하였다. 이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 대회에 1,425명이 참가한 2020년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다.

표 5-7. 장애유형 통합대회 개최 현황(2021)

연도	대회명	개소	참가인원
2021	장애유형별 종합대회	3개소	462명
	장애유형별 생활체육대회	1개소	544명
	지역생활체육대회	16개소	1,932명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4개소	791명
	종목별 국내대회	44개소	7,427명
	소외종목 육성대회	1개소	120명
	20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어울림대회	1개소	872명
계	70개소	12,148명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먼저, 장애유형별 종합대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표 5-8>과 같이 전국농아인 체육대회,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 전국쇼다운대회 등 총 3개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총 462명이 참가하였다.

표 5-8. 장애유형별 종합대회 개최 현황(2021)

(단위: 명)

연번	종목	대회명	기간	장소	인원
1	농아인	제18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	11.11.~11.13.	경상남도 양산	237
2	시각	2021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	06.30.~07.01.	부산 대연김스볼링장	125

연번	종목	대회명	기간	장소	인원
3	시각	2021 전국쇼다운대회	12.02.~12.04.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	100
합계				3개소	462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이와 함께 장애유형별 생활체육대회도 개최되었는데, 2021년 장애유형별 생활체육대회는 <표 5-9>에서 볼 수 있듯, 마라톤 종목 한 종목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표 5-9. 장애유형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2021)

(단위: 명)

연번	종목	대회명	기간	장소	인원
1	마라톤	제7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	11.18. 11.23.	서울 남산공원길	544
합계				1개소	544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 장애유형별 생활체육대회는 1개 대회에 총 544명이 참여하였다. 시도별 생활체육 동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생활체육대회도 개최되었는데, <표 5-10>은 2021년 개최되었던 대회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5-10. 지역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2021)

(단위: 명)

연번	시·도	대회명	기간	장소	인원
1	부산	2021부산어울림테니스대회	11.24.	스포원테니스코트	60
2	대구	2021대구배드민턴동호인대회	07.18.	대구장애인국민체육센터	72
3	대구	2021년 대구생활체육영남권론볼동호인대회	11.11.~11.12.	대구 론볼경기장	90
4	인천	2021년 인천광역시장애인검도어울림생활체육대회	11.22.~11.27.	인천광역시유도회	150
5	대전	2021대전배드민턴어울림대회	11.27.	대전장애인체육센터	100
6	울산	2021장애유형별어울림생활체육축구대회	09.09.~09.10.	문수양궁장	199
7	울산	2021울산장애인생활체육파크골프동호인대회	09.27.	태화강파크골프장	90
8	울산	2021장애인생활체육볼링대회	10.30.	삼성SDI볼링장	66
9	강원	2021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어울림배드민턴대회	12.04.	세경대학교 체육관	105
10	전북	어울림 론볼 생활체육대회	12.04.	익산 론볼장	100
11	전북	보치아어울림대회	12.10.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	110
12	전북	어울림당구대회	12.11.	캐롬빌리지당구장	120
13	전남	2021전남장애인생활체육파크골프어울림대회	10.29.	목포국제파크골프장	140
14	경북	2021년 생활체육영남권어울림바다낚시대회	10.02.	경북 포항 양포리 앞바다	30

연번	시·도	대회명	기간	장소	인원
15	경남	2021경남시각장애인어울림트레킹대회	06.09.	진해드림로드길	250
16	제주	2021제주지역생활체육게이트볼동호인어울림대회	10.15.	서귀포시전천후게이트볼장	250
합계				16개소	1,932

※ 주: 2020년 12월 말 기준.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위에 <표 5-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에는 전국 11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16개 대회가 개최되었다. 16개 대회를 기준으로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 인원은 총 1,932명이었다. 이는 전국 6개 시·도 8개 대회의 1,094명이 참여한 2020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더불어, 2021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게이트볼, 댄스스포츠, 플라잉디스크 및 종합대회를 포함하여 총 4개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현황은 <표 5-11>과 같다.

표 5-11.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2021)

(단위: 명)

연번	종목	구분	대회명	기간	장소	인원
1	게이트볼	종목별	제1회 대한장애인게이트볼연맹회장배 전국장애인게이트볼 생활체육대회	12.09.~12.10.	창동게이트볼 전용구장	300
2	댄스 스포츠	어울림	2021 여수거북선배 전국장애인댄스스포츠 어울림대회 및 프르, 아마추어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11.07.	여수진남 실내체육관	67
3	플라잉 디스크	종목별	전국장애학생플라잉디스크 생활체육대회	11.29.~12.01.	비대면 대회 (개인별 경기장)	300
4	종합	어울림	2021 전국시각장애인 어울림생활체육대회	11.27. 12.15.	송파시각장애인 축구장 등	124
합계					4개소	791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이와 함께 각 종목별 국내대회(선수부, 동호인부, 경기력 수준별, 장애유형별 등)가 2021년 한 해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 현황은 <표 5-12>에 자세하게 정리되었다.

표 5-12. 종목별 국내대회 개최 현황(2021)

(단위: 명)

연번	종목	대회명	기간	장소	인원
1	골볼	2021년 전국시각장애인 골볼 통합대회	05.29.~05.30.	고덕사회체육센터	95
2	골볼	제14회 전국시각장애인골볼선수권대회	11.27.~11.28.	고덕사회체육센터	80
3	골프	제6회 경북장애인골프협회장배 전국장애인골프대회	11.29.	경상북도 구미CC	70

연번	종목	대회명	기간	장소	인원
4	농구	고양시장컵 제26회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	04.17.~04.20.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500
5	농구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	11.19.~11.22.	제주 구좌 체육관	185
6	당구	제1회 서울컵전국장애인당구대회	07.03.~07.04.	Q52 당구클럽	200
7	당구	2021 대한장애인당구협회장배 전국장애인당구대회	12.03.~12.04.	보훈재활체육센터	200
8	댄스	2022년 장애인댄스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	11.07.	박정희체육관	59
9	력비	제13회 전국휠체어력비 선수권대회	12.02.~12.05.	구미시장애인체육관	250
10	론볼	2022년 론볼 국가대표 1차 선발전	11.16.~11.17.	인천 론볼경기장	140
11	론볼	2022년 론볼 국가대표 2차 선발전	12.01.~12.02	잠실 론볼경기장	50
12	배구	2021년 전국지적장애인배구대회	12.06.~12.07.	대전 장애인체육센터	60
13	배구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전국좌식배구대회	12.11.~12.12.	제주 애월체육관	300
14	배드민턴	2021년 전국장애인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06.25.~06.27.	서수원칠보체육관	230
15	볼링	2021년 전국장애인볼링종목별선수권대회	11.30.~12.03	강릉 그랜드볼링장	400
16	볼링	2022 장애인볼링 국가대표 선발전	12.14.~12.16.	대구 현대볼링장	100
17	사격	2021 회장배 전국장애인사격대회 겸	05.10.~05.14.	전라남도사격장	210
18	사격	2021 종별사격선수권대회	05.14.~05.18.	전라남도사격장	210
19	사이클	해남이배전국장애인사이클대회	04.10.	전라북도 군산시	100
20	사이클	2021년 전국장애인사이클도로록주대회	04.24.	전라북도 군산시	100
21	사이클	2021년 전국장애인사이클도로선수권대회	11.13.~11.14.	전라북도 군산시	114
22	수영	2021 제7회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배 대회	11.20.~11.21.	전라북도 완산수영장	250
23	스키	제2회 대한장애인스키협회장배 스키 대회	12.28.	웰리힐리 파크	90
24	스키	제2회 대한장애인스키협회장배스노보드대회	12.29.	웰리힐리 파크	60
25	승마	2021 풀부리 경기도 전국승마대회	11.06.~11.07.	궁평캠ป์ 승마장	145
26	승마	제1회 대한장애인승마협회장배전국장애인승마대회	12.04.~12.05.	충북 증원대학교	100
27	아이스하키	제15회 이성근배 전국파라아이스하키대회 A풀	10.16.~10.17.	강릉하키센터	160
28	아이스하키	제15회 이성근배 전국파라아이스하키대회 B풀	10.30.~10.31.	강릉하키센터	160
29	양궁	2021전국장애인양궁종별대회	06.18.~06.20.	수원시 양궁장	110
30	역도	제20회 전국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	06.29.~07.02.	강원도 홍천	450
31	역도	제9회 경기도지사기 전국장애인역도대회	12.09.~12.13.	경기도 평택	300
32	요트	제14회 전국장애인요트대회	11.22.~11.26.	수영만요트 경기장	50
33	유도	전국하계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	07.10.~07.11.	대전과학기술대학교	110
34	육상	제15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11.17.~11.19.	구미시민운동장	350
35	축구	제40회 전국농아인축구대회	11.27.~11.28.	봉양건강축구캠프장	232
36	컬링	제5회 경기도지사배 전국휠체어컬링 선수권대회	06.08.~06.19.	이천 선수촌	80
37	컬링	2021 국가대표선발전(컬링)	06.22.~06.24.	이천 선수촌	80

연번	종목	대회명	기간	장소	인원
38	컬링	21/22시즌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국가대표 선발전	12.05.~12.08.	강릉 컬링센터	60
39	태권도	2021년도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선발대회	04.10.	충북보건대학교	150
40	태권도	제11회 전국한마음장애인태권도대회	10.03.~10.04.	김동문배드민턴체육관	110
41	태권도	제7회 한라배 전국장애인한마음태권도대회	12.04.~12.05.	제주시민회관	420
42	테니스	2021부산광역시 전국휠체어 테니스대회	11.22.~11.24.	스포원파크 테니스장	85
43	펜싱	제17회 춘계전국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	03.06.~03.07.	산청군체육관	100
44	술련	제5회 대한장애인술련협회장배 술련대회	12.18.	비대면대회	122
합계				44개소	7,427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 이루어진 종목 통합대회는 44개소로 총 7,427명이 참가하였다. 2020년에는 16개소에 총 1,737명이 참가하였던 데 반해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보다 대회 및 참가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아울러 2021년 소외종목 육성대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대회도 이루어졌으며, 다음 <표 5-13>과 같이 각각 1개소씩 개최되었다.

표 5-13. 소외종목 육성대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대회 개최 현황(2021)

(단위: 명)

소외종목 육성대회						
연번	종목	대회명	기간	장소	인원	
1	파워싸커	2021 장애인 파워싸커대회	11.18.	인천광역시 일원	120	
합계				1개소	1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대회						
연번	종목	구분	대회명	기간	장소	인원
1	조정	어울림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어울림실내조정대회	11.20.~11.21.	시도별 경기장 (비대면)	872
합계				1개소	872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 소외종목 육성대회는 파워싸커 종목으로 실시되었으며,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대회는 시도별 경기장에서 비대면으로 조정대회가 시행되었다.

## 2)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정부는 2007년부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확대하여 총 20명의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시·도 11명, 경기단체 4명, 총 15명)와 보조 생활체육지도자(시·도 5명) 배치를 시작하였다. 2021년에는 <표 5-14>와 같이 전국적으로 총 955명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었다. 이는 2020년 915명에 비해 4.4% 증가한 수치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제공함으로써 참여인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시도에 배치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비대면 지도(21,735건, 235,957명) 및 영상콘텐츠 제작(1,568건, 조회수 126,106회)을 통하여 생활 체육 참여 기초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상담실적의 경우 2021년 기준 15,738건으로 전년도의 9,52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는 방문상담이 6,604건, 인터넷상담이 493건, 전화 상담이 9,181건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신규 참여 인원을 발굴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2021년 신규 참여 인원은 9,181명으로 이는 2020년의 2,448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5-14.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2021)

(단위: 명)

연번	구분	인원	연번	구분	인원
1	서울	132	10	강원	45
2	부산	55	11	충북	45
3	인천	28	12	충남	118
4	대구	60	13	전북	45
5	광주	42	14	전남	54
6	대전	30	15	경북	45
7	울산	37	16	경남	46
8	세종	17	17	제주	24
9	경기	132	합계		955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 3)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 및 홍보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실시된 사업에는 TV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에서부터 방송해설자 양성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표 5-15>는 2021년에 시행한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결과이다.

표 5-15.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 현황(2021)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실적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the15' 테마 영상 3편 제작, 방송 3사 유튜브 채널 총 132,246명 시청</li> <li>- MBC 14F : '화제의 피트니스 4관왕! 저는 절단 장애인입니다.'</li> <li>- SBS스포츠머그 : '금단의 벽을 깬다! 도장깨기 끝판왕이야기'</li> <li>- KBS스포츠 : '특별한 남녀의 평범한 브이로그'</li> </ul>
장애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 장애학생선수를 위한 하나은행장학금 지원사업 시행</li> <li>- 하나은행 장애학생장학금 60,000,000 유치 및 지급</li> </ul>
달력제작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2021년도 장애인스포츠테마달력 제작 및 판매</li> <li>- 수익금 3,000,000원</li> </ul>
후원사 유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체육발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후원사 후원금 유치(총 375,000,000원)</li> <li>- 도요타 235,879,062원 / 하나은행 100,000,000원 / 한국청과 30,000,000원 / 바이트댄스 10,000,000원</li> </ul>
온라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NS 구독자 수(페이스북 16,210명, 인스타그램 6,308명, 트위터 6,143명, 유튜브 3,494명, 틱톡 2,074명, 카카오톡 8,840명)</li> <li>• 대한장애인체육회 뉴스레터 매주 화요일 발행(연 52회/ 약 1,567명 문자 및 2,557명 이메일 발송)</li> </ul>
2020도쿄패럴림픽 홍보콘텐츠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PG 사전붙임 유튜브 콘텐츠 제작</li> <li>- 제목: 김민경, 박소영의 패럴림픽 경연수업 시즌2</li> <li>- 편수: 3편(휠체어농구, 보치아, 이천선수촌 방문)</li> <li>- 주요내용: 장애인선수 및 비장애인선수 간 패럴림픽 종목 대결 등</li> <li>- 조회수: 총 162,469회 시청</li> </ul>
사보 및 웹진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KPC SPORTS 사보 및 웹진 제작(매월)</li> <li>- 사보: 월 3,650부 제작 및 배포(점자 50부, 저시력자 100부 발행)</li> <li>- 웹진: 사보 제작 후 웹사이트 게재(<a href="https://kpcsports.koreanpc.kr">https://kpcsports.koreanpc.kr</a>)</li> </ul>
방송 해설자 양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SPOTV 방송아카데미 및 상암 SPOTV 방송국</li> <li>• 선수 및 종목별 관계자 대상 방송해설자 양성 교육</li> <li>• 1차(기본 4회, 보수 1회), 2차(기본 4회, 보수1회)</li> <li>• 교육수료자: 1차 9명, 2차 7명</li> <li>• 중계방송 해설위원 투입: 방송사(14개 종목, 25명), 인터넷 중계(12개 종목, 14명)</li> </ul>
인터넷 TV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PC TV 채널 운영을 통해 대회 및 행사현장 중계</li> <li>- 5종목, 51회 중계(국내대회 47회, 행사 4회)</li> <li>- 조회수: 72,696회 / '20년 42,655회 대비 30,041회(70%) 증가</li> </ul>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위의 <표 5-15>에 정리되었듯, 장애인체육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2021년 한 해 동안 실시되었고, 이를 위하여 국민체육기금 6억 9,100만 원이 지원되었다.

## 제3절 장애인 전문체육

## 1. 장애인 전문체육 현황

장애인 전문체육은 경기력 강화를 위해 꿈나무선수-신인선수-국가대표선수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선수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8년 제12회 평창올림픽대회에는 동계 패럴림픽대회에 참가한 이래 최초로 전 종목 출전권을 획득, 최다 종목 최대 인원의 선수(6종목, 36명)가 출전하여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 공동 16위를 차지하였으며 2021 바레인장애인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에서는 종합 4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한 만큼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는 중이다.

장애인 전문체육에 있어 정부는 장애인 가맹단체 직원 인건비를 증액하는 등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장애인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을 매년 육성하고 있으며('21년 25개 팀 지원), 체계적인 훈련지원을 위해 이천선수촌 시설을 보완하는 등 장애인 전문체육 인프라 구축과 국가대표 훈련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전문체육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상임 심판 제도를 운영(19종목, 24명)하고 심판아카데미 개최(5회, 364명)를 통한 심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의 상시훈련을 시행(29종목, 541명)하였으며 2020 도쿄패럴림픽을 대비하여 장애인스포츠과학화지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대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의거하면서도 비대면 및 촌외훈련 운영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저하방지 및 컨디션 유지를 도모하였으며, 훈련기간 중 철저한 방역을 이행함으로써 국가대표 선수단의 코로나19 감염률 제로를 달성하였다.

## 1)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등록 현황

'장애인선수'란 매년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뜻한다. 등록은 시·군·구 경기단체에 선수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해당 시·도 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을 확인받고 해당 중앙경기단체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완료된다.

〈표 5-16〉은 2018~2021년의 장애인선수 등록현황이다.

표 5-16. 시도 등록선수 현황(2018~2021)

(단위: 명)

연번	구분	2018			2019			2020			2021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13,039	9,746	3,293	13,538	10,084	3,454	10,839	8,169	2,670	13,178	9,831	3,347
1	서울	1,234	924	310	1,379	1,017	362	1,125	841	284	1,296	947	349
2	부산	709	550	159	688	540	148	496	375	121	615	480	135
3	대구	591	469	122	612	429	183	485	341	144	571	388	183
4	인천	623	439	184	675	531	144	587	471	116	561	442	119
5	광주	621	439	182	592	430	162	502	366	136	561	407	154
6	대전	637	484	153	611	453	158	485	370	115	564	429	135
7	울산	535	409	126	585	444	141	473	363	110	514	380	134
8	경기	2,473	1,829	644	2,492	1,828	664	2,181	1,624	557	2,786	2,078	708
9	강원	556	434	122	600	458	142	406	324	82	575	451	124
10	충북	806	599	207	749	555	194	591	449	142	667	496	171
11	충남	871	646	225	978	704	274	786	566	220	1,021	743	278
12	전북	666	493	173	705	533	172	495	374	121	653	504	149
13	전남	715	563	152	774	603	171	578	461	117	724	560	164
14	경북	710	520	190	747	558	189	593	443	150	883	645	238
15	경남	676	505	171	682	520	162	525	422	103	570	449	121
16	제주	456	326	130	517	366	151	425	297	128	503	349	154
17	세종	160	117	43	152	115	37	106	82	24	114	83	31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1). 통합정보시스템.

〈표 5-16〉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장애인선수로 등록된 인원은 총 1만 3,178명으로서, 남자선수가 9,831명(74.6%), 여자선수는 3,347명(25.4%)이다. 이 인원은 2020년의 1만 839명에 비해 2,339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장애인 등록선수는 지역별뿐 아니라 각 종목별로도 그 경향이 다르다. 〈표 5-17〉은 2021년 기준 종목별 장애인선수 등록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17. 연도별·종목별 등록선수 현황 (2018~2021)

(단위: 명)

연번	구분	2018			2019			2020			2021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계	9,746	3,293	13,039	9,710	3,290	13,000	8,169	2,670	10,839	9,831	3,347	13,178
1	게이트볼	433	228	661	484	218	702	284	121	405	339	191	530
2	골볼	107	57	164	99	55	154	59	38	97	74	42	116
3	농구	567	62	629	537	51	588	525	49	574	564	72	636

연번	구분	2018			2019			2020			2021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4	당구	428	98	526	377	94	471	367	82	449	471	116	587
5	댄스스포츠	110	120	230	96	124	220	51	52	103	53	50	103
6	디스크골프	77	23	100	-	-	-	-	-	-	-	-	-
7	론볼	383	158	541	463	199	662	457	191	648	492	210	702
8	바이애슬론	-	-	-	23	4	27	25	10	35	16	5	21
9	배구	233	80	313	200	81	281	167	66	233	207	75	282
10	배드민턴	321	132	453	358	127	485	331	121	452	497	187	684
11	보치아	299	114	413	352	173	525	264	120	384	341	167	508
12	볼링	628	284	912	585	274	859	555	251	806	539	241	780
13	사격	167	39	206	183	42	225	173	45	218	157	47	204
14	사이클	167	47	214	183	42	225	150	44	194	159	41	200
15	수영	505	187	692	171	47	218	553	196	749	552	191	743
16	술련	-	-	-	126	110	236	37	30	67	182	132	314
17	스노보드	18	1	19	18	2	20	15	1	16	14	-	14
18	스키	50	17	67	45	18	63	55	20	75	44	13	57
19	승마	51	16	67	36	13	49	49	19	68	64	23	87
20	아이스하키	94	0	94	99	1	100	100	2	102	104	3	107
21	양궁	76	20	96	73	20	93	67	19	86	77	19	96
22	역도	398	207	605	403	199	602	363	174	537	356	179	535
23	요트	24	5	29	25	5	30	27	3	30	21	3	24
24	유도	109	26	135	79	18	97	72	20	92	70	21	91
25	육상	912	409	1,321	932	430	1,362	371	145	516	655	276	931
26	조정	294	180	474	279	158	437	150	84	234	228	127	355
27	축구	1,135	14	1,149	1,194	-	1,194	786	2	788	941	2	943
28	크로스컨트리	20	9	29	44	18	62	49	26	75	39	19	58
29	탁구	970	396	1,366	1,060	397	1,457	1,060	401	1,461	1,177	453	1,630
30	태권도	96	43	139	176	61	237	142	53	195	259	102	361
31	파크골프	381	169	550	501	193	694	482	187	669	612	227	839
32	플로어볼	75	9	84	-	-	-	-	-	-	-	-	-
33	휠체어력비	153	8	161	159	11	170	151	11	162	163	10	173
34	휠체어컬링	85	30	115	86	39	125	90	49	139	105	50	155
35	휠체어테니스	87	16	103	91	18	109	87	14	101	102	16	118
36	휠체어펜싱	62	25	87	60	27	87	55	24	79	61	22	83
37	e스포츠	167	30	197	113	21	134	-	-	-	96	15	111
38	다트	1	-	1	-	-	-	-	-	-	-	-	-
39	기타	63	34	97	-	-	-	-	-	-	-	-	-

※ 주: 2021년 12월 31일 기준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1). 통합정보시스템.

2021년 종목별 선수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선수가 등록한 상위 세 종목은 ‘탁구(1,630명, 12.4%)’, ‘축구(943명, 7.2%)’, 그리고 ‘육상(931명, 7.1%)’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위 세 종목이 ‘탁구’, ‘볼링’, ‘축구’로 나타난 것에 비해 올해는 ‘육상’ 종목 선수 등록 비율이 증가하였다.

## 2) 이천선수촌 운영

이천선수촌 건립은 2005년 정부 정책사업 차원으로 추진하여 2009년 10월 15일 개원하였다. 상시 전문체육 훈련장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표준화, 지도자 양성 및 교육의 장인 이천선수촌은 총 3단계 계획에 따라 건립되었으며, 1단계 건립은 2007년에서 2009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선수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종합체육동(제1, 2, 3, 4체육관)과 생활관 등이 건설되었다. 그 이후 2단계는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훈련시설(양궁장 및 다기능체육관)과 교육시설 등이 건립되었고,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의 3단계 때는 사격장과 컬링장이 건립되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단계 건립 과정에서는 생활관과 체력단련장이 건립되었다. 건립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표 5-18>과 같다.

표 5-18. 이천선수촌 건립 단계별 시설 내역

(단위: 억 원)

시설명		적용시설(규격·규모)	사업비	건립 연도	건립 단계
종합 체육동	제1체육관(종합플로어)	• 농구, 배구, 배드민턴	500	2007~2009	이천선수촌 건립 1단계
	제2체육관(실내수영장)	• 50m×8레인			
	제3체육관(종목별훈련장)	• 역도, 펜싱, 탁구, 유도, 골볼장			
제4체육관(스포츠의과학실)		• 스포츠의과학실 / 체력단련실			
생활관-1		• 2인 72실(144명)			
대운동장(축구장, 육상장)		• 인조잔디구장, 육상트랙			
기타시설		• 선수식당(150석), 세탁실, 기계실 등 • 여가시설(당구장, 게임방, 노래방) 등			
생활관-2		• 28실 88명(2인 12실, 4인 16실)	36	2011	이천선수촌 건립 2단계
훈련 시설	양궁장	• 90m×14사로	83	2012~2013	
	다기능체육관	• 탁구, 휠체어러비			
교육시설		• 강당, 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	83	2013~2015	
옥외체육시설		• 시각축구장, 뇌성축구장, 실외테니스장	42		

시설명	적용시설(규격·규모)	사업비	건립연도	건립단계
사격장	• 50m×10레인, 25m×10레인, 10m×20레인	60	2014 ~ 2016	이천선수촌 건립 3단계
컬링장	• 컬링장(4레인), 지도자실, 회의실, 사무실 등	172		
생활관	• 102실(102명, 1인 1실)	135	2019 ~ 2021	이천선수촌 건립 4단계
체력단련장	• 체력단련실, 스트레칭실, 측정평가실, 사무실 등	58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1). 주요업무 통계자료.

총 사업비 1,169억 원으로 완공된 이천선수촌에서의 훈련은 2010년부터 국가대표선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대관사업도 병행되어 실시되었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천선수촌의 시설 이용 현황은 <표 5-19>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5-19. 이천선수촌 시설 이용 현황(2017~2021)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대표선수훈련	31,681	33,791	29,574	10,889	21,289	127,224
대관 (생활체육, 강습, 행사 등)	31,633	23,998	21,349	1,627	2,939	81,546
합계	63,314	57,789	50,923	12,516	24,228	208,770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1). 주요업무 통계자료.

2021년 기준으로 이천선수촌이 활용된 현황을 살펴보면, 대표선수훈련을 위한 선수가 총 2만 1,289명('20년 1만 889명), 대관과 관련해서는 총 2,939명('20년 1,627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부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훈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선수촌 기능보강 및 토대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입촌 선수들의 보다 나은 훈련환경 제공을 위해 코로나19 대비 방역 및 철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였으며 노후시설 교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시설유지 보수 등을 통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코로나 19로 인한 대관 중단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 이용 인원이 증가하였다.

## 2. 장애인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경기력 향상 지원

### 1) 장애인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가. 꿈나무선수 및 신인선수, 국가대표선수 선발

꿈나무선수와 신인선수 육성은 국제수준의 경기력을 갖춘 국가대표선수의 세대교체와 2016년 제15회 리우데자네이루하계패럴림픽대회·2018년 제12회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부터 30세 이하 선수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표 5-20>은 2021년 기준 장애인 우수선수 선발 현황이다.

표 5-20. 장애인 꿈나무선수·신인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선발 현황(2021)

(단위: 명)

연번	종목	국가대표 선수 인원			꿈나무선수·신인선수 선발인원		
		남	여	계	남	여	계
1	골볼	7	6	13	8	-	8
2	배드민턴	4	10	14	5	1	6
3	보치아	8	3	11	3	2	5
4	사격	18	6	24	2	3	5
5	사이클	6	2	8	4	1	5
6	수영	8	2	10	3	1	4
7	알파인스키	5	1	6	1	-	1
8	아이스하키	17	-	17	3	-	3
9	양궁	9	6	15	4	1	5
10	역도	6	6	12	5	-	5
11	유도	4	1	5	2	2	4
12	육상	6	1	7	-	-	0
13	조정	6	2	8	5	2	7
14	컬링	4	1	5	3	2	5
15	탁구	14	9	23	-	-	0
16	테니스	5	2	7	1	4	5
17	펜싱	4	3	7	3	1	4
18	노르딕스키	3	-	3	2	2	4
19	스노보드	4	-	4	-	1	1
20	태권도	11	5	16	3	1	4
21	농구	16	-	16	-	-	0

연번	종목	국가대표 선수 인원			꿈나무선수·신인선수 선발인원		
		남	여	계	남	여	계
22	볼링	11	7	18	-	-	-
23	댄스스포츠	6	6	12	-	-	-
24	럭비	11	1	12	-	-	-
25	론볼	6	4	10	-	-	-
26	요트	4	-	4	-	-	-
27	축구	40	-	40	-	-	-
28	배구	11	11	22	-	-	-
29	승마	6	-	6	-	-	-
합계		260	95	355	57	24	81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에는 29개 종목에 국가대표선수 355명, 꿈나무선수와 신인선수는 81명이 선발되었다(20년 국가대표선수 194명, 꿈나무 및 신인선수 105명). 국가대표 인원이 가장 많은 종목은 축구(40명)였으며, 가장 적은 종목은 노르딕스키(3명)였다. 해당 국가대표선수들은 정기적으로 이천선수촌을 포함하여 전국의 다양한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하였다.

#### 나. 국가대표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현황

국가대표선수는 경기력 향상과 국제대회 입상을 위해 이천선수촌을 포함하여 여러 장소에서 훈련을 진행하는데, 2021년에 실시된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현황은 <표 5-21>과 같다.

표 5-21.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훈련 현황(2021)

(단위: 일, 명)

연번	종목	일수	장소	선수			임원			합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1	보치아	137	이천선수촌	8	3	11	8	5	13	24
2	사격	70	전남, 이천선수촌	18	6	24	5	7	12	36
3	수영	176	이천선수촌	8	2	10	3	1	4	14
4	양궁	186	이천선수촌	9	6	15	5	-	5	20
5	유도	184	경북, 전주, 충남, 부산, 제주	4	1	5	8	-	8	13
6	탁구	108	이천선수촌	14	9	23	7	2	9	32
7	사이클	195	익산, 군산, 양양, 순창, 전주, 하남, 이천선수촌	6	2	8	6	2	8	16

연번	종목	일수	장소	선수			임원			합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8	역도	164	이천선수촌	6	6	12	2	2	4	16
9	육상	134	영암, 이천선수촌	6	1	7	5	2	7	14
10	조정	180	하남, 충주, 화천, 안동, 이천선수촌	6	2	8	1	5	6	14
11	테니스	118	이천선수촌, 순천	5	2	7	4	-	4	11
12	펜싱	156	부산, 제주, 홍성, 이천선수촌	4	3	7	1	3	4	11
13	농구	120	이천선수촌	16	-	16	4	-	4	20
14	배드민턴	125	이천선수촌	4	10	14	2	2	4	18
15	볼링	111	포항 등	11	7	18	3	2	5	23
16	골볼(여)	80	천안, 서울, 이천선수촌	-	6	6	2	4	6	12
	골볼(남)	60	아산, 청주, 이천선수촌	7	-	7	3	1	4	11
17	댄스스포츠	86	이천	6	6	12	-	3	3	15
18	럭비	28	천안, 서울, 이천선수촌	11	1	12	4	3	7	19
19	룬볼	104	대구, 익산, 제주	6	4	10	4	-	4	14
20	요트	150	부산, 보령, 양양	4	-	4	3	-	3	7
21	태권도(청각)	44	제주, 평창, 청주	5	5	10	1	-	1	11
	태권도(지체)	76	제주, 평창, 청주, 이천선수촌	6	-	6	5	-	5	11
22	축구(시각)	60	대전	10	-	10	4	-	4	14
	축구(뇌성)	112	목포, 이천선수촌	13	-	13	2	1	3	16
	축구(청각)	24	대전	17	-	17	3	1	4	21
23	아이스하키	216	강릉, 이천선수촌	17	-	17	6	1	7	24
24	노르딕스키	282	평창, 핀란드, 캐나다	3	-	3	7	-	7	10
25	컬링	113	강릉, 이천선수촌, 캐나다, 스웨덴	4	1	5	7	2	9	14
26	알파인스키	223	평창, 오스트리아, 스위스	5	1	6	5	1	6	12
27	승마	30	제주	6	-	6	5	5	10	16
28	스노보드	248	평창,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4	-	4	3	-	3	7
29	배구(남)	60	천안, 인제	11	-	11	2	-	2	13
	배구(여)	37	천안, 인제	-	11	11	1	-	1	12
합계				260	95	355	131	55	186	541

※ 주: 국가대표선수 및 임원 수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이천선수촌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전용훈련장이 없이 산발적으로 국가대표선수 훈련이 실시되었으나, 이천선수촌 건립 이후부터는 훈련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국가대표선수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17년에는 27개 종목에 총 479명(선수 및 임원 포함), 2018년 28개 종목에 총 515명(선수 340명, 임원 175명), 2019년 28개 종목에 총 539명(선수 354명, 임원 185명), 2020년에 28개 종목에 총 511명(선수 316명, 임원 195명)이 훈련에 참가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훈련과 촌외훈련을 병행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국가대표 훈련에 참여한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단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29개 종목에 총 541명(선수 355명, 임원 186명)이 참여하여 전년보다 30명 증가하였다. 국가대표 훈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훈련과 입촌 및 촌외훈련을 병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훈련 중단기간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은 장애인선수의 훈련여건 보장을 통한 경기력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안정성 보장 등을 목적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201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표 5-22>는 2021년에 운영된 종목별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이다.

표 5-22.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운영 현황(2021)

(단위: 개, 명)

연번	종목	팀 수	팀 구성(인원)			연번	종목	팀 수	팀 구성(인원)		
			선수	임원	계				선수	임원	계
1	골볼	3	18	4	22	14	알파인스키	1	1	-	1
2	농구	4	35	8	43	15	아이스하키	1	12	1	13
3	당구	1	1	1	2	16	양궁	6	27	5	32
4	댄스스포츠	1	4	1	5	17	역도	12	46	15	61
5	론볼	2	13	3	16	18	유도	3	10	3	13
6	배구	3	28	3	31	19	육상	7	30	7	37
7	배드민턴	7	23	10	33	20	컬링	3	15	5	20
8	보치아	4	13	7	20	21	탁구	11	50	15	65
9	볼링	2	3	1	4	22	테니스	2	8	4	12
10	사격	7	29	8	37	23	펜싱	2	8	2	10
11	사이클	2	2	3	5	24	태권도	3	8	3	11
12	수영	8	31	8	39	25	조정	2	11	2	13
13	노르딕스키	1	3	1	4	26	축구	1	11	1	12
합계								99	440	121	561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표 5-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종목별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종목은 총 26개였고, 총 99개 팀에서 561명(선수 440명, 임원 121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20년 96개 팀 총 499명(선수 382명, 임원 117명)). 정부는 각종 공공기관이나 공공기업, 민간기업에서 이와 같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도록 유도하고자 지속적으로 창단 지원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선수의 경제적 안정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현황이 〈표 5-23〉에 정리되었다.

표 5-23.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현황(2017~2021) (단위: 백만 원, 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	1,320	1,320	1,320	1,320	1,320
지원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실업팀) 수	15	20	22	25	25
전체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실업팀) 수	68	75	84	96	99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표 5-23〉에서처럼 2021년 창단을 지원한 직장운동경기부는 총 25개 팀으로 2020년과 동일하였으며, 2017년부터 전반적으로 지원 팀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애인실업팀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총 1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기존 구성된 14개 팀과 2021년 신규 창단된 8개 팀 및 작년부터 선정한 특별지원 3개 팀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력 향상 및 선수의 경제적 안정 기반을 도모하였다. 2021년에 장애인실업팀을 위해 이루어진 구체적 지원 현황은 〈표 5-24〉와 같다.

표 5-24. 장애인실업팀 지원 현황(2021) (단위: 명)

연번	구분	종목	운영기관	인원		
				선수	지도자	계
1	기존 5팀 (지원 4년차)	역도	평택시청(경기도장애인체육회)	4	1	5
2		유도	평택시청(경기도장애인체육회)	5	1	6
3		골볼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6	1	7
4		론볼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8	2	10
5		탁구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6	1	7
6	기존 4팀 (지원 3년차)	골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4	1	5
7		육상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	1	3

연번	구분	종목	운영기관	인원		
				선수	지도자	계
8		휠체어농구	춘천시장애인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	7	3	10
9		골볼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8	2	10
10		휠체어컬링	창원시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5	2	7
11	기존 5팀 (지원 2년차) (’20년 상반기)	육상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5	1	6
12		사격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5	1	6
13		수영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	1	3
14		역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3	1	4
15		펜싱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홍성군장애인체육회)	5	1	6
16	기존 4팀 (지원 1년차) (’20년 하반기)	역도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홍성군장애인체육회)	3	1	4
17		양궁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	-	2
18		보치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	1	3
19		탁구	장수군장애인체육회	2	2	4
20	창단 4팀	태권도	대승엠엔에스	5	1	6
21		배구	백양실업	9	1	10
22		탁구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4	1	5
23		탁구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5	1	6
24	기존 3팀 (특별지원)	휠체어컬링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5	2	7
25		사격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7	2	9
합계				119	32	151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장애인 종목의 실업팀의 경기력을 향상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지원이 이루어진 25개 장애인실업팀은 기존 14개팀, 창단 8개팀, 특별지원 3팀으로 구분된다. 기존 14개팀은 다시 지원 2년차 6팀, 지원 3년차 4팀, 지원 4년차 5팀으로 분류되며, 창단팀은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규 8팀을 대상으로 한다. 2020년부터는 특별지원 팀(’20년 2팀, ’21년 3팀)을 선정하여 기금 지원이 종료된 장애인실업팀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였다.

## 라. 전임지도자 배치

전임지도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격, 역도, 탁구, 테니스 등 4개 종목에 국가대표 선수 지도를 목적으로 각 경기단체에 배치하여 운영된 사업이다. 이후 종목이 늘어나면서, 2021년에도 <표 5-25>와 같이 20개 종목 중 육상을 제외한 19개 종목에 각 한 명씩의 전임 지도자가 배치되었다.

표 5-25. 전임지도자 배치 현황(2021)

(단위: 명)

연번	종목	배치인원			연번	종목	배치인원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1	골볼	-	1	1	11	역도	1	-	1
2	배드민턴	1	-	1	12	유도	1	-	1
3	보치아	1	-	1	13	육상	-	-	0
4	사격	1	-	1	14	조정	-	1	1
5	사이클	-	1	1	15	컬링	1	-	1
6	수영	1	-	1	16	탁구	1	-	1
7	스노보드	1	-	1	17	테니스	1	-	1
8	알파인스키	-	1	1	18	펜싱	-	1	1
9	아이스하키	1	-	1	19	노르딕스키	-	1	1
10	양궁	1	-	1	20	태권도	1	-	1
합계							13	6	19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전임지도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임지도자 배치사업은 2011년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에서 직접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전임지도자 배치종목 역시 2013년 13개 종목에서 2014년 15개 종목, 2015년 19개 종목, 2016년에는 23개로 점진적으로 증가 하였으나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개 종목으로 제한되었고, 2020년 19개 종목을, 2021년에는 20개 종목을 운영하였다.

## 2) 국내대회 지원 현황

국내대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장애인과 비장애인선수들이 함께 참가하는 ‘통합 대회’로까지 그 지원 영역이 확대되었다. <표 5-26>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현황의 추이를 보여준다.

표 5-26. 국내대회 지원 현황(2017~2021)

(단위: 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종목	29	28	30	14	27
국내대회 개최 수	121	115	117	17	44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 지원종목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0년 14개 종목보다 13개 증가한 27개 종목이 지원되었고, 대회 수 역시 2020년 17개보다 27개 증가한 44개 대회가 개최되었다.

### 3) 전문인력 양성 현황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지원은 종목별 장애인 전문심판 양성 및 지도자 보수교육을 통한 현직 지도자 역량강화를 주된 목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표 5-27>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전문인력인 등급분류사 및 심판의 양성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27. 전문인력(등급분류사, 심판) 양성 현황(2017~2021)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등급분류사	137	98	113	33	8
심판	430	757	625	284	719
합계	567	855	738	317	727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위 <표 5-27>에서 볼 수 있듯, 2021년에는 국제 등급분류 강습회를 개최하며 8명의 등급분류사를 양성하였고, 국내 심판강습회를 통해 719명의 심판도 양성하였다. 종목별 등급분류사 및 심판 양성 강습회에 대한 세부 내용은 <표 5-28>과 같다.

표 5-28. 전문인력(등급분류사, 심판) 양성 사업 세부 현황(2021)

(단위: 명)

연번	단체	분류	사업명	기간	인원
1	농구	심판	국내심판강습회	2021.05.29.~05.30.	35
2	당구	심판	국내심판강습회	2021.07.30.~07.31.	30
3			국내심판강습회	2021.10.01.~10.02.	45
4	댄스스포츠	심판	국내심판강습회	2021.05.29.~05.30.	20
5	럭비	심판	국내심판강습회	2021.07.10.~07.11.	22
6	배구	심판	국내심판강습회	2021.08.07.~08.08.	70

연번	단체	분류	사업명	기간	인원
7	배드민턴	심판	국내심판강습회	2021.05.29.~05.30.	25
8	볼링	심판	국내심판강습회	2021.10.06.~10.07.	40
9	수영	심판	국내심판강습회	2021.10.06.~10.07.	40
10			국내심판강습회	2021.12.04.~12.05.	20
11	스노보드	심판	국내심판강습회	2021.12.02.	31
12	스키	심판	국내심판강습회	2021.12.13.~16.	25
13	승마	심판	국내심판강습회	2021.07.22.~07.23.	30
14	아이스하키	심판	국내심판강습회	2021.06.26.~06.27.	19
15	역도	심판	국내심판강습회	2021.06.21.~06.22.	50
16	육상	심판	국내심판강습회	2021.09.25.~09.26.	26
17	조정	심판	국내심판강습회	2021.12.03.~12.04.	25
18	컬링	심판	국내심판강습회	2021.11.28.~11.29.	29
19	태권도	심판	국내심판강습회	2021.08.26.~08.27.	54
20	테니스	심판	국내심판강습회	2021.11.04.~11.05.	34
21	펜싱	심판	국내심판강습회	2021.10.16.~10.17.	49
22	시각장애인스포츠포츠연맹	등급분류	등급분류 강습회	2021.12.23.~12.30.	6
23	국제배드민턴연맹	등급분류	등급분류 강습회	2021.11.27.~12.04.	2
합계					727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단체 사업결과보고서(2021).

### 3. 장애인체육 선수복지

장애인체육선수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이후, 1989년 7월부터 우수선수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지급 초기에는 패럴림픽대회에 입상한 선수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7년 1월부터 지급대상을 농아인올림픽대회 입상 선수들까지 확대하였다. <표 5-29>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루어진 장애인체육선수들의 복지지원금 지급 현황이다.

표 5-29. 장애인체육선수 복지지원금 지급 현황(2017~2021)

(단위: 천 원, 명)

연도	합계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		경기지도자 연구비		선수지도자 보호지원금		체육장학금		복지후생금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2017	5,031,309	4,240,575	268	312,700	12	244,443	643	90,000	64	143,591	26
2018	4,606,821	3,055,500	304	984,700	62	288,000	500	89,500	59	189,121	32

연도	합계	경기력 향상 연구 연구금		경기지도자 연구비		선수지도자 보호지원금		체육장학금		복지후생금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2019	3,828,772	3,081,340	310	213,800	21	256,000	550	75,000	63	202,632	43
2020	3,645,095	3,036,575	312	36,500	4	256,000	600	102,500	82	213,520	37
2021	4,336,797	3,401,250	316	412,800	16	256,000	600	115,000	81	151,747	33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이 복지지원금은 2005년 11월 25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 2006년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와 육성)와 제22조(기금의 사용 등)에 따라 각종 경기대회에서 국위 선양한 체육인들과 국가대표선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2021년에는 다섯 분야에 걸쳐 약 43억 3,680만 원이 총 1,046명에게 지원되었고, 2020년에 비해 약 11억 원이 줄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체육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은퇴선수의 안정적인 사회 재참여와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상담 및 경력개발 전문인력(장애인 선수출신 포함)이 배치되어 있으며,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 2021년에 실시된 장애인 은퇴선수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표 5-30>에 정리되었다.

표 5-30. 장애인 은퇴선수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2021)

연번	사업명	기간	장소	인원
1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과정	'21.01.30.~02.28.	신한대학교 평생교육관	6명
2	장애인스포츠택지도사 2급 필기교육(특강)(1차)	'21.01.23.~02.20.	인지어스교육장	27명
	장애인스포츠택지도사 2급 필기교육(특강)(2차)	'21.04.24.~04.25.		
3	장애인식개선 교육강사 양성과정	'21.08.28.~10.02.	메타국제교육원, 웹엑스	29명
4	2021년 지역소재 대학연계 취업지원 교육	'21.09.~12.	서울, 대구, 경기	129명
5	2021년 지도자 아카데미 교육	'21.10.23.~11.13.	메타국제교육원, 웹엑스	31명
6	장애인스포츠택지도사 2급 필기교육	'21.11.20.~12.11.	이천선수촌, 웹엑스	41명
7	2021년 스포츠분석가 교육	'21.12.07.~12.19.	메타국제교육원, 웹엑스	16명
합계			총 7회	279명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 장애인은퇴선수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은 2020년 4개 교육과정에서 7개 교육과정으로 확대 운영되었다.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자격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재편 및 신설되었으며, 실태조사를 근거로 실제 은퇴선수들의 요구에 맞춰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하고자 하였다. 7개 과정 8회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총 279명이었으며, 이는 2020년 141명에 비해 138명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장애인식개선 교육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장애인선수 출신의 교육강사를 양성하여 교육이 필요한 유관기관 및 기타기관에 배치하고 있다.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자세한 현황은 <표 5-31>에 정리되었다.

표 5-31.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2021)

(단위: 회)

구분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전북	제주	충북	합계
장애인식개선교육	8	2	8	6	1	6	2	3	7	8	8	5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4	-	2	1	-	-	1	1	-	-	3	12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전국 11개 시·도에서 18명의 강사를 중심으로 59회 이루어졌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전국 6개 시·도에서 5명의 강사를 중심으로 12회 이루어졌다.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센터는 향후에도 장애인선수 출신 교육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전국적인 인력풀 구성 및 배치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4. 장애인체육 국내대회 지원

### 1) 하계전국장애인체육대회

1981년 UN이 제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장애인체육은 제1회 하계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였다. 그 이전까지 정립회관이 주최하는 ‘전국지체부자유청소년체육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주최하는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전국정신지체인축구대회’ 등 각 장애 유형에 따른 대회가 있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참여하는 종합체육행사는 이 대회가 최초였다. 1981년 제1회 대회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개최했고, 2회부터 4회까지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문화방송이 공동주최하였다. <표 5-32>는 1981년 첫 대회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하계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이다.

표 5-32.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

(단위: 개, 명)

회차	개최기간	개최지	개최종목	참가선수단(명)			순위		
				계	선수	임원	1위	2위	3위
1회	1981.10.02.~10.04.	서울	5	1,011	761	250	-	-	-
2회	1982.10.11.~10.12.		7	1,295	945	350	-	-	-
3회	1983.09.15.~09.16.		7	1,140	860	280	-	-	-
4회	1984.10.24.~10.25.		8	1,507	1,157	350	-	-	-
5회	1985.10.19.~10.20.		7	1,624	1,224	400	-	-	-
6회	1986.10.11.~10.13.		9	1,733	1,314	419	-	-	-
7회	1987.09.19.~09.22.		16	1,932	1,500	432	-	-	-
8회	제8회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로 개최하지 않음								
9회	1989.10.15.~10.17.	서울	16	1,469	1,129	340	서울	경기	대구
10회	1990.05.14.~05.26.		15	1,443	1,052	391	서울	경기	경남
11회	1991.05.22.~05.24.		16	1,588	1,189	399	서울	경기	경북
12회	1992.05.07.~05.09.		16	1,708	1,304	404	서울	경기	부산
13회	1993.05.25.~05.27.		16	1,637	1,222	415	서울	경기	경남
14회	1994.05.14.~05.16.		16(시범1)	1,733	1,310	423	서울	경남	부산
15회	1995.05.23.~05.25.		17	1,695	1,276	419	경기	서울	부산
16회	1996.05.14.~05.16.		17	1,740	1,305	435	경기	서울	대구
17회	1997.05.20.~05.22.		17	1,756	1,340	416	경기	서울	충북
18회	1998.05.19.~05.21.		17	1,735	1,312	423	경기	서울	충북
19회	1999.05.25.~05.27.		17	1,766	1,334	432	경기	서울	충북
20회	2000.06.13.~06.15.	인천	17	1,867	1,375	492	경기	서울	충북
21회	2001.05.09.~05.11.	부산	17	2,020	1,500	520	경기	서울	부산
22회	제22회 대회는 한일월드컵축구대회, 아시아대회,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으로 개최되지 않음								
23회	2003.05.14.~05.16.	충남	17	2,020	1,500	520	경기	서울	충남
24회	2004.05.11.~05.14.	전북	17	2,291	1,656	635	경기	서울	충남
25회	2005.05.10.~05.13.	충북	18	2,586	1,885	701	서울	경기	충남
26회	2006.09.12.~09.15.	울산	19	3,272	2,462	810	경기	서울	부산
27회	2007.09.11.~09.14.	경북	22(시범1, 전시1)	4,031	2,991	1,040	경기	서울	경북
28회	2008.10.05.~10.09.	광주	23(전시2)	5,459	3,987	1,472	경기	서울	광주
29회	2009.09.21.~09.25.	전남	24(시범1, 전시1)	6,350	4,692	1,658	경기	서울	충북
30회	2010.09.06.~09.10.	대전	22(시범1, 전시1)	6,746	4,825	1,921	경기	서울	경북
31회	2011.10.17.~10.21.	경남(진주)	27(시범1, 전시2)	7,095	4,964	2,131	경기	서울	경남
32회	2012.10.08.~10.12.	경기(고양)	27(전시2)	6,995	4,839	2,156	경기	서울	인천
33회	2013.09.30.~10.04.	대구	27(전시1)	7,419	5,154	2,265	경기	대구	서울
34회	2014.11.04.~11.08.	인천	26	7,460	5,029	2,431	경기	인천	서울

회차	개최기간	개최지	개최종목	참가선수단(명)			순위		
				계	선수	임원	1위	2위	3위
35회	2015.10.28.~11.01.	강원	27(전시1)	7,687	5,247	2,440	경기	서울	대전
36회	2016.10.21.~10.25.	충남	26	7,938	5,481	2,457	경기	서울	충남
37회	2017.09.15.~09.19.	충북	26	8,529	5,833	2,696	충북	경기	서울
38회	2018.10.25.~10.29.	전북	26	8,596	5,907	2,689	경기	충북	서울
39회	2019.10.15.~10.19.	서울	30(전시4)	8,978	6,025	2,953	서울	경기	충북
40회	제40회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되지 않음								
41회	2021.10.20.~10.25.	경북	28	7,816	5,857	1,959	경기	서울	경북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최 해를 제외하고 1989년부터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매년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주최 및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제10회 하계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만 대회가 개최되면서 몇몇 문제가 발생했다. 장애인 선수들의 참여 의식 결여, 일반 시민 참여 곤란(군부대가 선수촌 및 경기장이었기에), 서울 경기 지역의 빈번한 대규모 행사로 인한 국민 관심 분산, 장애인체육 홍보 부족 등이 대표적인 문제였다.

이에, 장애인체육대회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장애인 복지의 시·도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장애인체육의 저변 확대 및 지역주민 관심 제고를 위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순회 개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많은 논의 끝에 2000년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제20회 대회를 기점으로 전국 순회개최 제도가 시행되었고, 2005년 11월 25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 26회 대회부터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로 대회가 준비 및 개최되기 시작했다. 2021년 열린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21년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6일간) 경북에서 개최되었고, 총 7,816명(선수 5,857명, 임원 1,959명)이 참여했다.

## 2)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들의 동계스포츠 참여 분위기 및 인구 제고와 국제 동계 장애인스포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4년부터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하계종목에 비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동계종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동계 장애인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5-33>은 지금까지의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이다.

표 5-33.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

(단위: 개, 명)

회차	개최기간	개최지	개최 종목	참가선수단(명)			순위		
				계	선수	임원	1위	2위	3위
1회	2004.02.24.~02.25.	춘천, 용평	4	150	100	50	-	-	-
2회	2005.02.17.~02.18.	춘천, 용평	3	150	80	70	-	-	-
3회	2006.02.22.~02.24.	춘천, 보광	4	209	102	107	-	-	-
4회	2007.02.21.~02.24.	춘천, 하이원	4	224	117	107	서울	경기	울산
5회	2008.02.19.~02.22.	춘천, 하이원, 울산	4	446	215	231	서울	강원	경기
6회	2009.02.10.~02.13.	춘천, 하이원, 의성	4	607	304	303	경기	강원	서울
7회	2010.01.16.~01.29.	하이원, 서울, 이천	4	660	330	330	서울	강원	충북
8회	2011.02.15.~02.18.	춘천, 하이원, 서울, 창원	4	685	338	347	서울	인천	강원
9회	2012.02.28.~03.02.	전북(전주, 무주)	4	731	365	366	서울	경기	강원
10회	2013.02.25.~02.28.	강원도 일원	4	738	372	366	경기	인천	서울
11회	2014.02.11.~02.14.	강원도 일원	5	729	344	385	경기	인천	강원
12회	2015.02.09.~02.12.	강원도 일원	6	754	376	378	서울	인천	강원
13회	2016.02.16.~02.19.	강원도 일원	6	818	405	413	경기	강원	서울
14회	2017.02.07.~02.10.	강원도 일원	7	880	421	459	서울	경기	강원
15회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로 인해 개최되지 않음								
16회	2019.02.12.~02.15.	강원도 및 경기도 일원	7	885	395	490	경기	서울	강원
17회	2020.02.11.~02.14.	강원도 일원	7	922	461	461	경기	서울	강원
18회	제18회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되지 않음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여건상 동계 스포츠 시설(스키장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개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2004년 1회 대회부터 거의 모든 대회가 용평이나 무주 등, 강원도 일대에서 치러졌다. 2018년 동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때문에 개최되지 않았다. 강원도 일원에서 펼쳐진 2020년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20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규모는 총 922명(선수 461명, 임원 461명)으로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2021년 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개최되지 않았다.

### 3)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학생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사회통합, 다양성의 존중과 포용성 함양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대회다. 제1회 대회는 지역별로 분산되어 자체 개최되었고, 2회 대회부터 본격적으로 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표 5-34>는 2007년 1회 대회부터 지금까지 치러졌던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현황이다.

표 5-34.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현황

(단위: 개, 명)

회차	개최기간	개최지	참가종목	참가인원(명)				장애유형별 선수 참가현황					
				계	선수	임원	보호자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청각
1회	1회는 일부 지역에서 지역별 대회로 자체적으로 개최												
2회	2008.10.28.~31.	광주	9개 종목 (정식7, 시범1, 전시1)	1,434	912	306	216	912	86	-	92	586	148
3회	2009.05.12.~15.	전남 (여수, 목포)	11개 종목 (정식10, 전시1)	2,006	1,315	526	165	1,315	38	57	82	941	197
4회	2010.05.17.~20.	대전	13개 종목 (정식12, 전시1)	2,428	1,561	640	227	1,561	50	97	83	1,141	190
5회	2011.05.24.~27.	경남 (진주)	13개 종목 (정식11, 시범2)	2,731	1,701	738	292	1,701	175	-	80	1,258	188
6회	2012.05.01.~04.	경기	15개 종목 (정식11, 시범2, 전시2)	2,710	1,615	843	252	1,615	47	132	77	1,162	197
7회	2013.05.11.~14.	대구	15개 종목	3,018	1,773	1,012	233	1,773	54	153	80	1,277	209
8회	2014.11.04.~08.	인천	15개 종목	2,723	1,644	826	253	1,644	41	147	134	827	495
9회	2015.05.19.~22.	제주	15개 종목	2,717	1,477	1,003	237	1,477	38	156	69	1,055	159
10회	2016.05.17.~20.	강원	15개 종목 (보급10, 육성5)	3,000	1,640	1,060	300	1,640	45	191	72	1,157	175
11회	2017.05.16.~19.	충남	15개 종목 (보급10, 육성5)	3,139	1,637	1,002	500	1,637	51	188	73	1,172	153
12회	2018.05.15.~18.	충북	16개 종목 (보급, 육성, 전시)	3,364	1,748		1,616	1,748	42	208	67	1,288	143
13회	2019.05.14.~17.	전북	16개 종목	3,600	1,878		1,722	1,878	67	193	83	1,411	124
14회	제14회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되지 않음												
15회	2021.08.~12.	분산 개최	16개 종목 (보급, 육성, 전시)	2,401	1,148		1,253	1,148	41	94	33	925	55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구분되어 총 15개 종목에 출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 '전시종목'이 포함되면서 2018년부터는 16개 종목이 대회에서 치러졌다. 이 16개 경기종목은 '육성종목(패럴림픽 및 장애인아시아경기 대회 종목)'과 '보급종목(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종목)'으로 나뉘고, 여기에 '어울림 스포츠'로서 술런(Sjoelen)이 '전시종목'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2016년 이후 매 대회 참가 인원이 3,000명을 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어 왔으나, 2020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대회가 취소되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장애 학생들의 체육활동 증대를 위해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비대면 온라인 대회 방식으로 종목별로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완료하였다.

## 제4절 장애인 국제체육

### 1. 국제체육기구 및 진출인사

장애인국제스포츠기구의 임원으로 자국의 인사를 진출시키는 것은 국내의 장애인스포츠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대회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를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장애인국제체육기구로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sian Paralympic Committee: APC), 스페셜 올림픽(Special Olympics),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종목별/장애유형별 국제스포츠기구 등을 들 수 있다. <표 5-35>는 2021년 이들 장애인국제체육기구에서 개최했던 다양한 국제회의 및 워크숍에 우리나라가 참가한 현황이다.

표 5-35. 국제회의 및 워크숍 참가 현황(2021)

연번	회의명	지역/장소	기간	참가인원
1	CPISRA 정기총회	비대면(서면)	1차: 01.25.~01.29. 2차: 02.01.~02.05.	1명
2	제87차 IPC 집행위원회의	비대면	03.22.~03.23. 03.26.~03.27.	2명
3	제26차 APC 집행위원회의	비대면	05.25.~05.26.	2명
4	제88차 IPC 집행위원회의	비대면	06.21.~06.22. 06.24.~06.25.	2명
5	IPC 선수위원회의	비대면	4월 3주차	1명
6	IPC 선수위원회의	일본 도쿄	08.22.	1명
7	제89차 IPC 집행위원회의 참가	일본 도쿄	08.22.	1명
8	IPC 집행위원회 컨퍼런스콜	비대면	01.25. / 04.22. / 05.25. 07.21. / 10.27. / 11.08.	2명
9	APC 위원장 주최 화상회의	비대면	10.19.	2명
10	아프리카패럴림픽위원회 정기총회 참가연계 NPC스포츠교류	모로코/라바트	10.28.~11.02.	4명
11	제27차 APC 집행위원회의	하이브리드 (바레인 마나마 및 비대면)	11. 29.	2명
12	2021 APC 정기총회	비대면	11.30.~12.01.	2명
13	제90차 IPC 집행위원회의 참가	하이브리드 (독일 본 및 비대면)	12. 08.~12.09.	2명
14	2021 IPC 정기총회 및 집행위원선거	비대면(줌, 루미글로벌)	12.11.~12.12.	5명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21).

2021년 우리나라에서는 총 14회에 걸친 국제회의 및 워크샵에 총 29명의 관계자가 참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 8회,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 3회 등이다.

### 1)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는 1989년 9월 22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창립되었으며 본부는 독일에 위치해 있다. 위원장은 브라질 출신의 앤드류 파슨스(Andrew Parsons)이며, 부위원장은 뉴질랜드 출신의 두안 케일(Duane Kale)이다. <그림 5-1>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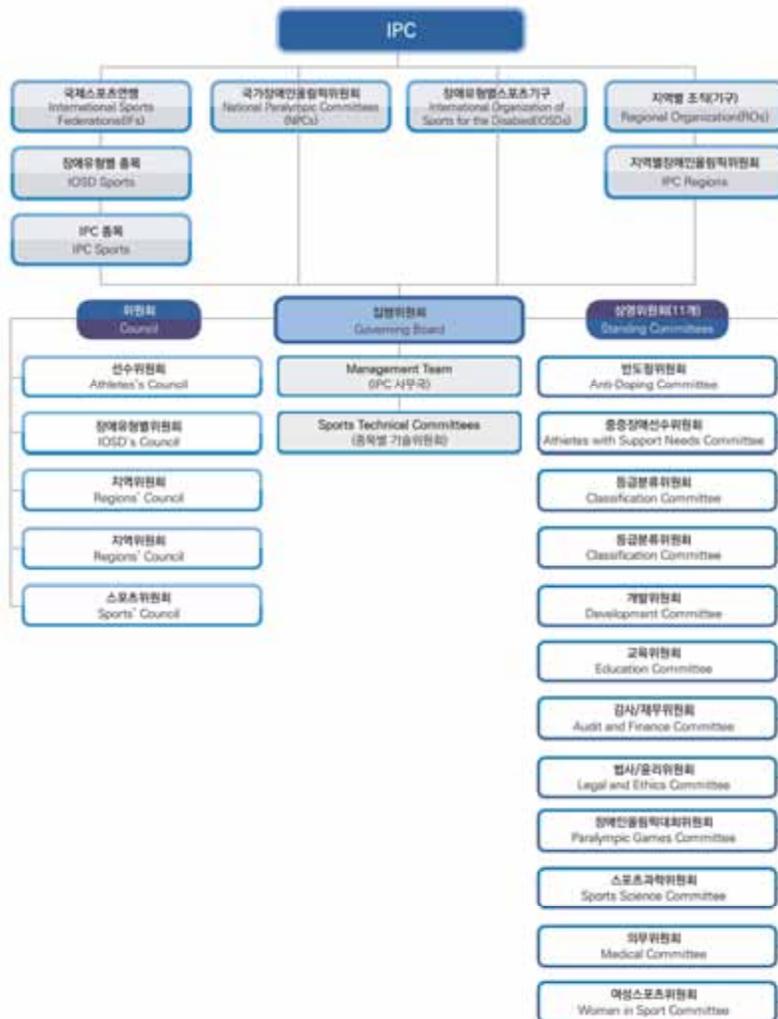


그림 5-1.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조직 구조

대한장애인체육회(2021)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관장하는 관련 기구 및 단체로는 국제스포츠연맹, 국가패럴림픽위원회, 장애유형별국제스포츠기구, 지역별 기구 등이 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집행위원회, 위원회, 상임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집행위원회는 IPC 사무국과 종목별 기술위원회로 구성되며, 4개 위원회는 선수위원회, 장애유형별위원회, 지역위원회, 스포츠위원회로 구성된다. 11개 상임위원회는 반도핑위원회, 중증장애선수위원회, 등급분류위원회, 개발위원회, 교육위원회, 감사/재무위원회, 법사/윤리위원회, 장애인올림픽대회위원회, 스포츠과학위원회, 의무위원회 그리고 여성 스포츠위원회로 구성된다. <표 5-36>은 2021년 12월 기준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위원 현황이다.

표 5-36.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대한민국 위원 현황

성명	직위	주요경력	임기
정재준	집행위원회 위원	(現)대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2021.12.~2025.12.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21).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위원은 집행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정재준 현 대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이 제20회 IPC 총회 집행위원 선거에서 4년 임기의 집행위원에 선임되어 2025년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이었던 김성일 전 집행위원회 위원과 홍석만 전 선수위원회 위원은 2021년을 끝으로 임기를 마쳤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역대 우리나라 위원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1988년 제8회 서울하계 패럴림픽대회를 기점으로 국제무대에 진출, 같은 해 서울장애자올림픽조직위원회 조일묵 사무총장이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임명되어 1989년부터 4년간 활동하였다. 이후, 2009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장향숙 초대회장이 집행위원으로 4년간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활동하였고, 그 바통을 대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이었던 나경원 의원이 2013년 11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진행된 제16차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당선되어 2017년 9월까지 활동하였다.

## 2)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sia Paralympic Committee: APC)는 IPC의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장애인스포츠기구다. 아시아 지역 내 각종 국제대회 승인과 패럴림픽 무브먼트

운동 확산,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조직의 주요 목적으로 둔다. 이 위원회는 2005년 11월, 아시아패럴림픽평의회(Asia Paralympic Council, APC)와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FESPIC) 연맹이 합병되어 설립되었다. 총 네 개의 상임위원회(대회 및 스포츠개발위원회, 선수위원회, 스포츠의과학위원회, 여성스포츠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집행위원은 4년마다 선출된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15명의 집행위원이 활동 중이고,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아랍에미리트 출신 마지드 라쉬드(Mr. Majid Rashed), 부위원장은 세 명으로서, 일본의 마사유키 미즈노(Mr. Masayuki Mizuno), 중국의 자오 수 징(Ms. Zhao Su-jing), 한국의 장향숙(Ms. Jang Hyang Sook)이다. APC는 총 43개의 국가패럴림픽위원회(NPC)를 회원국으로 하며, 이들은 다섯 개의 하위 지역(중앙아시아 6개국, 동아시아 8개국, 서아시아 12개국, 남아시아 6개국, 동남아시아 11개국)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박창일 부위원장과 김임연 선수대표가 초대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민규 부위원장을 포함한 세 명의 집행위원이 활동하였다.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선출된 유호경 선수(사격)가 2018년까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위원은 집행위원회 소속의 이정민 집행위원, 상임위원회 소속의 7명의 위원장 및 위원이다. <표 5-37>은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 내 우리나라 집행위원 및 상임위원 현황이다.

표 5-37.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 대한민국 집행위원 및 상임위원 현황(2021)

구분	성명	직위	주요경력	임기
APC집행위원회 (1명)	이정민	선수위원장 (집행위원)	(現) KPC국제위원회국제위원 (前) 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선수	'19.02 ~ '23.02
	배하석	의과학위원장	(現) KPC 스포츠등급분류위원장	'19.04 ~ '23.04
APC상임위원회 (7명)	박찬	의과학위원회 의무위원	(現)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기획운영부장	'19.07 ~ '23.07
	이재원	의과학위원회 스포츠과학위원	(現) 용인대학교 교수	'19.07 ~ '23.07
	한승훈	의과학위원회 등급분류위원	(現) 구리한양대병원 교수	'19.07 ~ '23.07
	정복자	여성스포츠위원	(現) KPC 여성스포츠위원장	'19.07 ~ '23.07
	윤석민	대회스포츠개발위원	(現) KPC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19.07 ~ '23.07
	강래혁	법사윤리위원	(現) KPC 법제상벌위원회 위원	'19.07 ~ '23.07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21).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위원은 총 8명(집행위원회 1명, 상임위원회 7명)으로, 2023년까지 임기가 예정되어 있다.

### 3)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SOI)

장애인스포츠경기대회는 일반적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패럴림픽대회는 신체장애 및 시각장애인 선수가, 농아인올림픽대회(데플림픽대회)는 청각장애인 선수가, 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에는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인 선수가 참가한다. 이 중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Special Olympics International)는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인국제스포츠 기구를 지칭하는 명칭이며, 여기서 주최하는 대회가 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Special Olympic World Games)이다. <표 5-38>은 2021년 기준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집행위원 현황이다.

표 5-38.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 현황

구분	성명	직위	주요경력	임기
SOI 집행위원회	나경원	이사	17, 18, 19, 20대 국회의원 (前)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2011.05.~계속
SOI 집행위원회	김병덕	이사	(現)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고문 (現) 동아시아본부 협의회 의장	2017.09.~2021.08.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21).

스페셜올림픽 기구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인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Eunice Kennedy Shriver)가 1963년 미국의 메릴랜드에서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캠프를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68년 설립되었으며,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다. 현재 174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IOC 인정단체다. 이사회는 비즈니스 및 스포츠 리더, 운동선수, 교육자 및 전 세계 지적 장애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의장 1명, 부의장 3명, 재무이사 1명, 집행위원회 위원장 1명, 최고법률책임자 1명을 포함해 그 밖에 총 36명이 이사회를 구성한다.

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는 1968년에 시카고 솔저필드에서 제1회 하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스페셜올림픽운동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으며, 2년마다 하계대회와 동계대회가 교대로 열리고 있고, 각 대회의 주기는 4년이다. 2013년에는 동계 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가 대한민국 평창에서 8일 간(1월 29일~2월 5일) 개최되었고, 동계스페셜올림픽대회 최대 규모인 120개국, 3,300여 명의 지적장애인선수들이 참가하였다.

### 4)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ICSD)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는 프랑스인 루벤 알카이스(E. Rubens-Alcais)가 1924년 8월

파리에서 열린 대회(국제농아인경기대회)를 기점으로 만들어졌다. 첫 대회에는 총 9개 나라의 선수들이 참가했고, 여섯 개 국가의 농아인경기연맹이 후원했다. 참가한 9개국의 대표들은 대회가 끝난 후 모든 청각장애인 경기단체를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 기구의 정관을 정하는 모임을 가졌다.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Silent Sports)로 알려지며 시작된 이 기구는 1979년 총회에서 명칭이 ICSD(Comite International des Sports des Sourds)로 바뀌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협력단체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인정단체이다. 현재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두고 있고, 115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표 5-39>는 현재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 임원 현황이다.

표 5-39.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대한민국 임원 현황(2021)

구분	성명	직위	주요경력	임기
ICSD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정봉규	태권도기술위원장	(現)한국농아인체육연맹 사무국장	2018.02.~2022.07.
		정기기술위원		2018.02.~2022.10.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21).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는 올림픽과 패럴림픽과 같이 4년마다 개최되는 동·하계 데플림픽(Deaflympics)을 주관한다. 처음에는 ‘세계농아인경기대회’였으나, 2001년 5월 IOC 집행 위원회에서 이를 ‘데플림픽’으로 변경 요청이 있어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의 요구를 승인 하여 변경되었다. 현재 국내 인사 중에서는 한국농아인체육연맹 정봉규 사무국장이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의 기술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5) 장애유형별 국제스포츠기구

장애유형에 따른 국제스포츠기구들은 <표 5-40>처럼 구분된다. 이들 기구는 국제패럴림픽 위원회(IPC)의 회원단체로서, 국내에서도 관련 장애인체육단체가 회원으로 속해 있다.

표 5-40. 장애유형별 국제스포츠기구 개요

연번	영문 명칭	국문 명칭	국내 회원단체	비고
1	CPISRA	국제뇌성마비인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IPC 회원단체 (IOSD)
2	IBSA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3	IWAS	국제휠체어 및 절단장애인스포츠연맹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	INAS	국제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21)

#### 가. 국제뇌성마비인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협회(CPISRA)

이 협회는 국제뇌성마비인협회(International Cerebral Palsy Society) 산하의 스포츠 레저분과위원회가 1978년 독립되어 만들어졌다. 이 분과위원회는 1968년 프랑스에서 뇌성마비인 선수들을 위한 최초의 국제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서 활동해 왔는데, 1978년 국제장애인경기연맹(ISOD)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국제대회에서 국제뇌성마비인경기연맹(Cerebral Palsy-International Sports and Recreation Association, CP-ISRA)의 정관을 승인하면서 독립된 협회로 창설시킨 것이다. 그 이후 1988년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에서 처음으로 주도권을 지닌 스포츠 조직인 세계장애인스포츠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회원이 되었다. CPISRA는 현재 46개의 회원국을 보유하며 뇌성마비인을 위한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개발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지난 수년간 대회 개최, 세미나, 영화, 설명회와 워크샵, 코치 연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활동도 펼쳤다. 이 협회는 14개 종목에서의 경기 참가기회를 제공하고, 뇌성마비인들의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나.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IBSA)

1981년에 설립된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은 시각장애인 스포츠를 위한 국제적인 경기 단체로서 권위를 지닌 조직이다. 시각장애인 스포츠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기구이고 현재 121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다. 독일 본에 본부를 두고 있고, 1985년 노르웨이 후르달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승인받아 지금의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으로 탄생했다.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에서 다루는 종목에는 육상, 5인제 축구, 골볼, 유도, 수영, 텐핀 볼링, 사격, 체스, 역도, 나인핀 볼링, 쇼다운, 토르볼(Tor Ball: 현대 핸드볼 종목의 전신) 등이 있고, 연맹의 국내 회원단체로는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Korea Blind Sports Association, BSA)’이 가입되어 있다.

#### 다. 국제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INAS)

국제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for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AS)은 지적장애를 담당하는 스포츠 기구로서 가장 최근에 조직된 국제기구다. 지적장애인들(지적장애, 자폐증, 다운증후군)이 국제행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며,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기구의

목표로서, 1986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결성되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연맹은 1989년 7월 스웨덴에서 열린 최초의 세계육상 및 수영 선수권대회와 1992년 9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지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올림픽대회 등의 국제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00년 시드니 장애인올림픽에서 육상, 수영, 탁구, 농구 4개의 정식종목에 참여했으나 농구 종목의 부정선수 사건으로 인해 정식종목 참여가 다시 유보되어 2004년 아테네 장애인올림픽 대회에는 소수의 지적장애인 선수들만이 시범종목에 참가하게 되었다. 현재 76개의 회원국이 있고 육상, 사이클, 노르딕스키, 수영, 테니스, 탁구 등의 개인종목 및 축구와 농구 같은 팀 종목에서 지적장애인 선수들에게 참가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페셜올림픽 코리아’가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 라. 국제휠체어 및 절단장애인스포츠연맹(IWAS)

국제휠체어/절단장애인경기연맹(International Wheelchair and Amputee Federation, IWAS)은 국제스트크맨드빌휠체어경기연맹(ISMWSF)과 국제장애인경기연맹(ISOD)의 2003년 합병과 동시에 창설되었다. 영국 버킹엄셔에 본부가 있는 연맹은, 2005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첫 번째 세계휠체어/절단장애인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두 번째 대회는 2007년 대만에서 개최하였다. 이 연맹은 휠체어와 절단장애인 선수들의 후원 조직으로서, 장애인스포츠 초보자부터 엘리트선수를 포함하는 국제적 운동, 발전과 참여라는 스트크맨드빌 경기의 정신을 이어받아 활동하는 중이다. 현재 45개의 회원국을 보유하며, 휠체어 펜싱, 전동휠체어 하키(Powerchair Hockey)등의 종목을 관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 2. 국제대회

### 1) 패럴림픽대회

#### 가. 기본이념

패럴림픽대회의 기본이념은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 우정과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인류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올림픽 정신과 이념을 기초로 하여 스포츠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즉, 올림픽이 인종, 국가, 정치, 문화 및 이념을 초월한 인간의 건강증진과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화합, 나아가 인간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범세계적인 축제로서 세계 젊은이들의 힘과 기록의 제전이라면, 패럴림픽대회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역량과 한계를 뛰어넘어 이를 통해 세계에 감동을 주고, 영감을 불어넣는 대축제이다.

#### 나. 어원

패럴림픽(Paralympics)이란 말은 하반신마비를 뜻하는 paraplegia의 접두어 para와 olympics의 어미lympics를 조합한 합성어로 이는 지난 1964년 동경패럴림픽대회 당시 주최 측의 해석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 후 올림픽과 함께 개최되면서 참가선수의 폭이 넓어져, 척수장애 이외에 시각장애, 뇌성마비, 절단 및 기타 장애 등 전반적인 장애인을 포괄하게 되자, 세계장애인스포츠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World Sports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에서는 공식해석을 내려 para를 ‘부수적인(attached to)’의 뜻으로 정의하였다. 오늘날의 패럴림픽이란 용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림픽대회와 함께 치러지는 장애인의 올림픽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뜻하여 para-는 the same(같은), 혹은 next to(~옆에)로 해석되고 있다.

#### 다. 하계패럴림픽대회

1989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창립되고, 1999년 독일의 본에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여 국제장애인스포츠의 체계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왔다. 2000년 시드니장애인올림픽대회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양대 위원장의 서명으로 장애인스포츠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였다. 특히 이 협약은 동계·하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는 반드시 장애인올림픽대회를 동반 개최하여야 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하계대회는 2008 베이징올림픽대회부터, 동계대회는 2010 밴쿠버 동계패럴림픽대회부터 장애인올림픽을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였다.

아래 <표 5-41>은 1960년 제1회 로마 하계패럴림픽대회부터 2021년 제16회 도쿄 하계 패럴림픽대회까지 역대 하계패럴림픽대회 개최 현황이다.

제1회 대회는 1960년 로마 이탈리아에서 개최되었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연기된 2020 하계패럴림픽 대회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22개 종목에 4,403명이 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 14개 종목에 선수단 159명(선수 86명, 임원 73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2개(탁구 1개, 보치아 1개), 은메달 10개(탁구 6개, 배드민턴 3개, 사격 1개), 동메달 12개(탁구 6개, 배드민턴 1개, 사격 2개, 유도 2개, 태권도 1개)를 획득하여 종합 41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표 5-41. 하계패럴림픽대회 개최 현황

(단위: 개국, 개, 명)

회차	연도	개최장소	패럴림픽대회 규모			대한민국 선수단 참가 결과					비고
			참가국	개최 종목	참가 선수	종목	선수/임원	금	은	동	
1회	1960	로마 (이탈리아)	23	8	400	-	-	-	-	-	-
2회	1964	도쿄 (일본)	21	9	375	-	-	-	-	-	-
3회	1968	텔아비브 (이스라엘)	29	10	750	2	10 (6/4)	-	-	-	첫 참가
4회	1972	하이델베르크 (독일)	43	10	984	2	16 (10/6)	4	2	1	종합 16위 (첫 메달 획득)
5회	1976	토론토 (캐나다)	40	13	1,657	2	11 (7/4)	1	2	1	종합 27위
6회	1980	안헨 (네덜란드)	43	13	1,973	2	15 (10/5)	2	2	1	종합 26위
7회	1984	뉴욕 (미국)	45	18	1,800	6	25 (14/11)	-	-	1	동반 개최, 종합 37위
	1988	스토크맨더빌 (영국)	41	18	1,100	2	24 (12/12)	-	2	1	
8회	1988	서울 (대한민국)	61	18	3,057	16	366 (236/130)	40	35	19	종합 7위
9회	1992	바르셀로나 (스페인)	83	16	3,001	10	92 (65/27)	11	15	18	종합 12위
10회	1996	애틀랜타 (미국)	104	19	3,259	13	92 (64/28)	13	2	15	종합 12위
11회	2000	시드니 (호주)	122	18	3,881	13	119 (89/30)	18	7	7	종합 9위
12회	2004	아테네 (그리스)	135	19	3,808	13	123 (82/41)	11	11	6	종합 16위
13회	2008	베이징 (중국)	146	20	3,951	13	131 (77/54)	10	8	13	종합 13위
14회	2012	런던 (영국)	164	20	4,237	13	149 (88/61)	9	9	9	종합 12위
15회	2016	리우 (브라질)	160	22	4,333	11	139 (81/58)	7	11	17	종합 20위
16회	2021	도쿄 (일본)	162	22	4,403	14	159 (866/73)	2	10	12	종합 41위

※ 출처: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웹사이트(2021)

## 라. 동계패럴림픽대회

동계패럴림픽대회는 1976년 스웨덴 외른셀스비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하계대회가 올림픽 개최국가에서 관례적으로 개최되는데 비해 동계패럴림픽은 환경적 요인으로 주로 유럽지역에서 개최되어 왔다. 현재에는 동계올림픽대회 직후 동일 지역에서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제21회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통해 통일된 조직안에서 조직, 인력, 물자, 시설 등을 그대로 승계, 동계패럴림픽대회를 동반 개최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이다. <표 5-42>는 지금까지의 대회 개최 현황이다.

표 5-42.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 현황

(단위: 개국, 개, 명)

회차	연도	개최장소	패럴림픽대회 규모			대한민국 선수단 참가 결과					비고
			참가국	개최종목	참가선수	종목	선수/임원	금	은	동	
1회	1976	외른셀스비크(스웨덴)	16	2	250	-	-	-	-	-	
2회	1980	게일로(노르웨이)	18	3	250	-	-	-	-	-	
3회	1984	인스부르크(오스트리아)	21	3	457	-	-	-	-	-	
4회	1988	인스부르크(오스트리아)	22	4	397	-	-	-	-	-	
5회	1992	티니-알베르빌(프랑스)	24	4	475	1	2	-	-	-	첫 출전
6회	1994	릴레함메르(노르웨이)	31	5	471	1	2	-	-	-	
7회	1998	나가노(일본)	31	5	561	1	4	-	-	-	
8회	2002	솔트레이크(미국)	36	4	416	1	14(6/8)	-	1	-	종합 21위 (알파인스키)
9회	2006	토리노(이탈리아)	38	5	474	1	7(3/4)	-	-	-	
10회	2010	밴쿠버(캐나다)	44	5	502	5	49(25/24)	-	1	-	종합 18위 (휠체어컬링)
11회	2014	소치(러시아)	45	5	547	4	57(27/30)	-	-	-	
12회	2018	평창(대한민국)	49	6	570	6	83(36/47)	1	-	2	종합 15위 (크로스컨트리 신의현, 동계 첫 금메달)

※ 출처: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웹사이트(2021)

가장 최근 개최된 2018년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는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되었다.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는 제11회 소치패럴림픽대회에서보다 1개 종목(스노보드)이 추가되어 총 6개 종목(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80개 세부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49개국, 참가

선수 570명(남성 434명, 여성 136명)의 규모를 보였다. 대한민국에서는 선수 36명 및 임원 47명으로 총 83명이 전 종목에 참가하였다.

## 2)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 가. 기본이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전신인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Far East and South Pacific Games for the Disabled)는 극동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모할 목적으로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FESPIC)에 가입되어 있는 42개 회원국이 참가하여 패럴림픽대회 개최 연도 사이에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애인 종합국제대회였다. 2006년 쿠알라룸푸르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 종료 이후 IPC 정책 기조에 맞춰, IOC와 동일한 대륙구조로 지역위원회가 재편되면서, 종전의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 비회원국인 중동지역 국가들이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과 병합하여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sian Paralympic Committee: APC)가 설립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대회부터 대회명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Asian Para Games)로 변경하였다.

### 나. 대회역사

1970년 인도네시아 장애체육지도자재단(Yayasan Pembina Olahraga Cacat)은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을 회원국으로 하여 장애인재활 사업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인지, 가칭 '아세안장애인스포츠기구' 설립을 관계국에 건의하는 등 아시아지역 장애인스포츠기구 설립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같은 시기에 장애인 병원 및 재활시설을 운영하던 일본 오이타의 유다카 나카무라 박사가 장애인스포츠 기구의 회원을 아세안 5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대상지역을 보다 폭넓게 확대 하길 건의하여 이에 대한 최종 합의로 1974년 10월 8일, 아시아태평양장애인연맹이 정식 발족하였다. 이후 제1회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FESPIC) 대회는 1975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일본 오이타에서 18개국 973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표 5-43.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참가 현황

(단위: 개국, 개, 명)

회차	연도	개최장소	대회 규모			대한민국 선수단 성과					비고
			참가국	개최 종목	참가 선수	종목	선수단	금	은	동	
1회	1975	일본 오이타	18	8	973	-	-	-	-	-	미 참가
2회	1977	호주 파라마타	16	13	430	2	6	6	-	1	최초 참가, 국가보훈처 주관
3회	1982	홍콩 사틴	23	9	744	2	11	8	4	3	국가보훈처 주관
4회	1986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	19	12	834	13	76	40	19	9	종합 6위
5회	1989	일본 고베	41	13	1,646	13	114	73	29	29	종합 4위
6회	1994	중국 베이징	42	14	2,081	14	131	48	28	17	종합 3위
7회	1999	태국 방콕	34	15	2,258	14	137	31	26	27	종합 4위
8회	2002	대한민국 부산	43	17	1,867	17	306	62	68	20	종합 2위
9회	200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47	19	3,641	19	256	58	42	43	종합 3위
10회	2010	중국 광저우	41	19	3,773	19	300	27	43	33	종합 3위
11회	2014	대한민국 인천	41	23	3,847	23	484	72	62	77	종합 2위
12회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44	18	3,800	17	306	53	45	46	종합 2위

※ 주: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의 설립에 따라 2010년 중국 광저우대회부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라는 대회명칭을 사용하였다.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2010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제1회 대회로 한다.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21).

위의 <표 5-43>에서 볼 수 있듯, 대한민국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에서 개최된 2회 대회부터 참가하였으나 2회와 3회 대회에는 국가보훈처 주관, 4회 대회는 서울장애인자율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참가를 주관하였고, 5회부터 8회 대회까지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참가를 주관했다. 2005년 대한장애인체육회 발족 후, 2006쿠알라룸푸르아시아태평양 장애인대회부터 2018인도네시아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2018.10.06.~10.13)까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는 e스포츠를 제외한 17개 종목에 총 306명이 선수단으로 참가하였다.

### 3) 농아인올림픽대회(데플림픽)

#### 가. 기본이념

농아인올림픽대회는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사회로부터 분리·배제되어온 농아인들을 위한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서, 스포츠를 통해 평등을 실현하고 의사소통의 장벽을 뛰어넘는

장이기도 하다. 농아인올림픽대회(Deaflympic Games)는 4년마다 개최되는 종합국제대회로서 장애인올림픽대회와 동일하게 하계와 동계로 나뉘어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 나. 어원

농아인올림픽대회는 농아인이라는 deaf와 olympics의 어미lympics을 조합한 합성어로 만들어졌으며 종전에는 세계농아인경기대회(World Games for the Deaf)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농아인올림픽대회(Deaflympic Games)로 명칭변경을 요청한 ICSD International 집행위원회가 승인(2001년 5월)하여 제19회 대회부터 농아인올림픽대회(Deaflympics)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 다. 대회역사

1924년 8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1회 하계대회를, 1949년 1월 오스트리아 지펠트에서 제1회 동계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3회의 하계농아인올림픽대회와 18회의 동계농아인올림픽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은 1985년 7월에 열린 제15회 로스앤젤레스하계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3개 종목(탁구, 육상, 사이클)에 참가하여 육상 마라톤 4위, 육상 2만 미터 걷기경기 5위, 탁구 개인전 5위, 육상 1만 미터 6위와 사이클 도로경기 7위를 기록하였다. 1997년 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38위에 머물렀던 우리나라는 2005년 종합 7위에 도달하고 2009년부터는 종합 3위를 달성하였다. 2017년 7월 터키에서 열린 제23회 삼순하계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는 종합 3위(금메달 18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14개)의 성적을 거두었다. 2021년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제24회 브라질 카시아스두술 하계 농아인올림픽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2022년 개최될 예정이다.

아래의 <표 5-44>와 <표 5-45>는 각각 역대 하계농아인올림픽대회와 동계농아인올림픽대회의 개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5-44. 하계농아인올림픽대회 개최 현황

(단위: 개국, 개, 명)

회차	연도	개최장소	대회 규모			대한민국 선수단		비고
			참가국	개최종목	참가선수	종목	선수	
1회	1924	프랑스 파리	9	6	148	-	-	-
2회	1928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0	5	212	-	-	-
3회	1931	독일 뉘른베르크	14	6	316	-	-	-
4회	1935	영국 런던	12	5	221	-	-	

회차	연도	개최장소	대회 규모			대한민국 선수단		비고
			참가국	개최종목	참가선수	종목	선수	
5회	1939	스웨덴 스톡홀름	13	6	250	-	-	-
6회	1949	덴마크 코펜하겐	14	7	391	-	-	-
7회	1953	벨기에 브뤼셀	16	7	483	-	-	-
8회	1957	이탈리아 밀라노	25	9	635	-	-	-
9회	1961	핀란드 헬싱키	24	10	613	-	-	-
10회	1965	미국 워싱턴 D.C.	27	9	687	-	-	-
11회	1969	유고슬라비아 벨그라드	33	12	1,189	-	-	-
12회	1973	스웨덴 말뫼	31	11	1,116	-	-	-
13회	1977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32	11	1,150	-	-	-
14회	1981	서독 콜론	32	11	1,198	-	-	-
15회	1985	미국 로스앤젤레스	29	11	995	14	10	-
16회	1989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30	12	955	10	21	-
17회	1993	불가리아 소피아	52	12	1,679	13	25	-
18회	1997	덴마크 코펜하겐	65	14	2,028	9	29	38위
19회	2001	이탈리아 로마	67	14	2,208	19	28	11위
20회	2005	호주 멜버른	63	14	2,038	13	35	7위
21회	2009	대만 타이페이	80	17	2,670	34	65	3위
22회	2013	불가리아 소피아	83	16	2,711	47	69	3위
23회	2017	터키 삼순	97	18	1,897	36	79	3위

※ 주: 제24회 브라질 카시아스두솔 하계 농아인올림픽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2022년 개최 예정.

※ 출처: 데프림픽 웹사이트(2021). 경기결과. <http://www.deaflympics.com/games>.

표 5-45. 동계농아인올림픽대회 개최 현황

(단위: 개국, 개, 명)

회차	연도	개최장소	대회 규모			대한민국 선수단		비고
			참가국	개최종목	참가선수	종목	선수/임원	
1회	1949	오스트리아 제펠트	5	2	33	-	-	-
2회	1953	노르웨이 오슬로	6	1	44	-	-	-
3회	1955	독일 오버아머가우	8	1	59	-	-	-
4회	1959	스위스 몬테나-버멜라	9	1	53	-	-	-
5회	1963	스웨덴 아레	9	1	60	-	-	-
6회	1967	독일 베르히테스가덴	12	1	77	-	-	-
7회	1971	스위스 아델보덴	13	1	92	-	-	-
8회	1975	미국 레이크플래시드	13	3	139	-	-	-
9회	1979	프랑스 메리벨	14	1	113	-	-	-
10회	1983	이탈리아 마돈나 디 캄피그리오	15	2	147	-	-	-
11회	1987	노르웨이 오슬로	15	2	129	-	-	-

회차	연도	개최장소	대회 규모			대한민국 선수단		비고
			참가국	개최종목	참가선수	종목	선수/임원	
12회	1991	캐나다 벤프	16	3	181	-	-	-
13회	1995	핀란드 일라스	18	2	258	-	-	-
14회	1999	스위스 다보스	18	2	265	-	-	-
15회	2003	스웨덴 슌스발	21	2	247	-	-	-
16회	2007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23	3	298	-	-	-
17회	2011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취소			-	-	-
18회	2015	러시아 한티만시스크	27	5	692	3	14/28	첫 출전 메달 성과 없음
19회	2019	이탈리아발테리나-발키아벤나	34	6	1,187	4	16/34	첫 동메달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21). 데플림픽 웹사이트(2021). 경기결과.<http://www.deaflympics.com/games>.

#### 4) 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 가. 기본이념

‘스페셜올림픽(Special Olympics)’으로 불리는 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동생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Eunice Kennedy Shriver)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대회다. 지적발달 장애인의 운동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축제다. 이는 1988년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IOC 외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회로 공식 승인 받았다. 이로 인해 올림픽 및 패럴림픽과 함께 IOC에서 인정하는 3대 올림픽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대회의 설립 이념으로 인해 대회에서는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스페셜올림픽의 가장 큰 목적은 발달장애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쟁보다는 공존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매기고, 참가한 모든 선수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응원을 보낸다. 그래서 스페셜올림픽은 3위 밖의 선수들도 단상에 올라설 기회를 준다. 4~8위 선수들은 메달 대신 ‘리본’을 받는다. 또한 패럴림픽과 달리, 스페셜올림픽은 8주 이상만 훈련받으면 바로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런 대회의 목적으로 인해 참가자는 ‘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국가에서 ‘희망 여부’와 ‘추첨’에 의해 선발된다. 스페셜올림픽대회의 동·하계 종목은 <표 5-46>과 같다.

표 5-46. 스페셜올림픽대회 동·하계 종목

구분	실시 종목
하계 스페셜올림픽대회	육상, 배드민턴, 3대3농구, 비치발리볼, 보체, 볼링, 사이클, 승마, 축구, 풋살, 골프, 체조, 리듬체조, 핸드볼, 유도, 카약, 실외수영, 역도, 롤러스케이팅, 조정, 요트, 수영, 탁구,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배구
동계 스페셜올림픽대회	알파인스키,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스노보드, 스노슈잉, 크로스컨트리, 플로어볼

※ 출처: 2022 카잔 동계 스페셜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및 2023 베를린 하계 스페셜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나. 스페셜올림픽 역대 개최 도시

스페셜올림픽은 2년 주기로 한 번씩 하계대회와 동계대회를 번갈아가며 개최된다. <표 5-47>은 지금까지 스페셜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도시 현황이다.

표 5-47. 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개최 현황

하계스페셜올림픽대회				동계스페셜올림픽대회			
회차	연도	개최국	개최도시	회차	연도	개최국	개최도시
1	1968	미국	시카고	1	1977	미국	스팀포트스프링스
2	1970	미국	시카고	2	1981	미국	스머글러너치, 스토우
3	1972	미국	로스앤젤레스	3	1985	미국	파크시티
4	1975	미국	마운트플레즌트	4	1989	미국	리노, 타호호
5	1979	미국	브락포트	5	1993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솔라드밍
6	1983	미국	배턴루지	6	1997	캐나다	토론토, 콜링우드
7	1987	미국	노터데임	7	2001	미국	앵커리지
8	1991	미국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8	2005	일본	나기노
9	1995	미국	뉴헤이븐	9	2009	미국	보이시
10	1999	미국	더럼, 롤리, 채플힐	10	2013	대한민국	평창
11	2003	아일랜드	더블린	11	2017	오스트리아	그라츠, 솔라드밍
12	2007	중국	상하이				
13	2011	그리스	아테네				
14	2015	미국	로스앤젤레스				
15	2019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 출처: 스페셜올림픽홈페이지(2021). <https://www.specialolympics.org/>.

※ 주: 2021년 스웨덴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개최를 포기하면서 일정 연기 및 2022년도 동계 스페셜올림픽 대회 러시아 카잔 확장

스페셜올림픽은 1968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제1회 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한 이래, 1977년 미국 콜로라도 스팀보트 스프링스에서 제1회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2년에 한 번씩 하계대회와 4년에 한 번씩 동계대회를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2013년 평창에서 동계 스페셜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가장 최근의 스페셜올림픽은 2019년에 아부다비에서 치러졌고, 한국은 12개 종목에 106명의 선수가 이 대회에 참가하여 총 120개의 메달 혹은 리본을 획득했다. 구체적으로 금메달 44개, 은메달 25개, 동메달 28개, 4위 리본 15개, 5위 리본 3개, 6위 리본 1개, 7위 리본 3개, 8위 리본 1개를 획득했다. 2021년 스웨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동계 스페셜올림픽은 개최국 조직위원회가 개최를 포기하면서 일정이 연기되어 2022년도에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5) 종목별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표 5-48〉은 2021년에 개최되었던 종목별 국제대회 현황이다. 2021년에는 총 17개 종목의 선수들이 31개의 장애인 국제대회에 참가하였다. 총 351명(남자선수 148명, 여자선수 48명, 임원 155명)이 참가하였으며, 세부 종목별로 금메달 32개와 은메달 38개, 동메달 33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3개 종목 4개 대회에 34명이 참가하여 16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던 2020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 확산에 따라 3월 이후 모든 국제대회가 취소되었기 때문이며, 2021년 일부 국제대회가 다시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표 5-48.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현황(2021)

(단위: 명, 개)

연번	종목	대회명	참가 인원				획득 메달		
			소계	임원	선수		금	은	동
					남	여			
합계			351	155	148	48	32	38	33
1	태권도	2021 도쿄패럴림픽아시아대륙선발전	8	4	4	-	-	-	-
		제1회 세계청각장애인태권도챔피언십	14	4	5	5	1	1	4
		제9회 세계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	10	5	5	-	-	1	-
2	보치아	2021 두바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선수권대회	23	13	6	4	2	5	3
3	배드민턴	2021 스페인장애인배드민턴국제대회	17	5	8	4	4	2	3
4	사격	2021년 리마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9	5	-	4	3	3	-
5	수영	2021 베를린 WPS 월드컵시리즈	3	2	1	-	-	-	-
6	양궁	장애인양궁세계랭킹토너먼트 및 패럴림픽자격부여대회	22	12	7	3	-	2	-

연도	종목	대회명	참가 인원				획득 메달		
			소계	임원	선수		금	은	동
					남	여			
7	유도	2021 IBSA 유도 그랑프리 바쿠	8	3	4	1	-	-	2
		2021 IBSA 유도 그랑프리 워솔	8	3	4	1	1	-	1
		2021년 농아인유도세계선수권대회	18	4	9	5	3	1	3
8	역도	2021년 두바이 역도 월드컵대회	8	3	2	3	-	-	-
		트빌리시 2021 세계장애인역도 주니어 및 시니어 대회	17	5	6	6	-	-	-
9	댄스스포츠	프라하 2021 WPDS 국제대회	15	3	6	6	11	10	5
10	축구	Asia Pacific Deaf Basketball&Football Qualifying Rounds	20	4	16	-	-	-	-
11	테니스	2021 케말사힌 오픈	6	2	4	-	1	1	1
		2021사힌 키라비크 오픈	6	2	4	-	1	-	1
		2021 BNP파리바스 월드팀컵	6	3	3	-	-	-	-
12	조정	2021 가비라테 국제장애인조정대회	5	3	1	1	-	-	1
13	알파인스키	말분 유럽컵&네셔널컵	12	8	3	1	-	-	1
		악삼 WPAS, 네셔널컵	12	8	3	1	1	7	6
		게를리젠 WPAS, 네셔널컵	12	8	3	1	-	2	1
14	스노보드	2021 콜레레 월드컵	5	3	2	-	-	-	-
		2021 랑그라프 유럽컵&월드컵	7	3	4	-	1	2	1
		2021 푸하 유럽컵&월드컵	7	3	4	-	3	1	-
15	노르딕스키	2021 WPNS 스웨덴 오스터순드 월드컵대회	8	5	3	-	-	-	-
		2021 WPNS 핀란드 부오카티 월드컵대회	8	5	3	-	-	-	-
		2021 WPNS 캐나다 캔모어 월드컵대회	10	7	3	-	-	-	-
16	컬링	Kuntai World Wheelchair Curling Championship 2021	8	3	4	1	-	-	-
		Jonkoping Wheelchair Curling Cup	12	7	4	1	-	-	-
17	아이스하키	2021 체코-오스트라바 세계선수권대회 A-Pool	27	10	17	0	-	-	-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22). 202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 3. 교류의향서 및 양해각서 체결 현황

〈표 5-49〉는 지금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관련 협회가 국제적으로 맺은 교류의향서 및 양해각서 체결현황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 2021년 현재까지 총 30개국과 교류의향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가장 최근 실적은 2019년 유럽 동쪽 지역에 있는 ‘조지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었다.

표 5-49. 교류의향서 및 양해각서 체결 현황

연번	구분	국가명	구분	체결일자	비고	
1	아시아	이란	양해각서	2011.02.	국내	
2		서	이라크	의향서	2010.12.	2010 광저우 APG 기간
3			쿠웨이트		2012.05.	쿠웨이트
4			남		인도	의향서
5		파키스탄				
6		스리랑카				
7		중앙	우즈베키스탄	양해각서	2008.10.	국내
8			카자흐스탄	의향서	2017.09.	UAE
9		동	중국	의향서	2010.12.	2010 광저우 APG 기간
10			일본		2009.10.	국내
11			대만		2009.02.	국내
12			몽골		2008.10.	국내
13			홍콩		양해각서	2018.07.
14		동남	베트남	양해각서	2010.07.	베트남
15			싱가포르		2009.11.	싱가포르
16			필리핀		2010.07.	필리핀
17			캄보디아		2010.07.	캄보디아
18			태국		2012.11.	국내
19			동티모르	의향서	2008.10.	국내
20	유럽	터키	양해각서	2010.07.	국내	
21		동		슬로바키아	2010.12.	2010 광저우 APG 기간
22				조지아	2019.09.	국내
23		북	스웨덴	의향서	2010.03.	국내
24		서	네덜란드		2010.07.	국내
25	남	스페인	2012.07.	스페인		
26	아프리카	북	의향서	2009.09.	국내	
27		동		케냐	2009.09.	국내
28	대양주	대륙	호주	2010.09.	국내	
29	아메리카	중	멕시코	2012.10.	국내	
30		북	캐나다	2015.02.	국내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2021).

2021 체육백서

2021 Sport White Paper

6

## 국제체육

- 제1절 국제체육 개관
- 제2절 국제체육 정책거버넌스
- 제3절 국제체육계 동향 및 아젠다
- 제4절 국제스포츠대회 참가 및 유치

## 제1절 국제체육 개관

국제체육 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제대회 유치와 개최기획 및 추진과 같은 직·간접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스포츠를 통한 종목과 경기, 인적자원의 국제교류협력을 포괄하는 정책 일반을 그 범위로 한다. 우리나라는 남북한 냉전 대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1988년 제10회 서울하계올림픽대회와 장애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1991년 UN에 북한과 동시가입을 하는 등 국제스포츠의 외교적 영향력을 일찍이 경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의 유산을 통해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기금의 조성 및 집행에 통해 스포츠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와 이를 통한 유산이 우리나라 체육발전에 주는 의미는 적지 않다.

국제체육정책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협력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1947년에 공식 국가올림픽위원회로 인정을 받은 대한체육회가 국민체육기금을 활용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는 스포츠 외교역량의 강화를 위한 국제체육인재 양성, 국가 간 스포츠교류협력의 증대 및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위시한 스포츠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와 같은 국제대회의 유치와 개최 역시 국민체육기금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제체육정책은 대한민국 스포츠정책이 각 영역별에서 이룬 발전의 성과를 다른 나라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국가 간 우호를 증진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견인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전 영역에 긍정적인 성장 동기를 부여하고, 동력을 제공하는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 외,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정치, 경제와 같은 하드파워를 통한 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때, 대화의 물꼬를 트는 소프트파워의 역할을 해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국제체육정책은 국제사회에서 교류와 협력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은 물론 UN과 함께 이를 선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다.

## 제2절 국제체육 정책거버넌스

### 1. 국제체육 현황

#### 1) 국제체육 담당 조직

우리나라 국제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협력관 내의 ‘국제체육과’와 대한체육회의 ‘국제교류부’ 및 ‘국제대회부’가 주로 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의 주요업무는 정책개발 및 정보화, 국제체육 인재양성 및 교류, 남북 체육교류,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으로서, 이와 관련한 2021년 주요 업무는 <표 6-1>와 같다.

표 6-1.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주요 업무(2021)

구분	주요업무
정책개발 및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국제체육 지원 전문인력 양성</li> <li>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지원</li> <li>국제체육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보급</li> </ul>
국제체육인재양성 및 국제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체육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li> <li>국가 간 체육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및 후속 조치</li> <li>개발도상국 체육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동반자프로그램, 드림프로그램, 스포츠공적개발원조</li> </ul> </li> <li>체육 외교력 강화 및 올림픽언 국제 체육활동 지원</li> <li>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지원</li> <li>국제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심판 양성 등 국제체육 인재양성에 관한 업무</li> </ul> </li> <li>WADA 및 UNESCO 반도핑</li> <li>청소년 국제교류, 친선경기 초청 및 파견 등 KSOC 국제교류업무</li> </ul>
남북한 체육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약에 관한 사항</li> </ul>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 도쿄올림픽 참가 지원</li> <li>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 지원</li> </ul> </li> </ul>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22.07.01.)

정부 내 국제체육 업무는 2018년에 체육협력관 내 신설된 ‘스포츠유산과’와 더불어 진행 되는데, 이 주무부서의 담당 업무는 국제경기대회 시설 사후활용 등 스포츠유산 창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장에 따른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에 관한 사항, 태권도 진흥 정책의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이론·기술 등의 조사·연구 및 보존·보급, 태권도에 관한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사업 육성과 태권도 국제교류 활성화 등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국제체육 주요 업무내용은 <표 6-2>와 같다.

표 6-2.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 업무계획(2021)

현안	세부현안	내용	세부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 희망과 자부심을 주는 K-스포츠	동아시아 연속 올림픽·패럴림픽 성과 창출	2020 도쿄올림픽 참가지원  2022 베이징 올림픽 참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선수단 ‘안전 최우선’의 대회 참가 지원</li> <li>• 우리 선수단 선전 및 남북 공동진출 등 ‘국민자긍심’ 고취</li> <li>• 경기력·안전 중심의 대회 참가 체계적 준비</li> <li>• 동아시아 연속 올림픽 계기, 한국 문화·관광 홍보 강화</li> </ul>
	국가올림픽 위원회연합회 (ANOC)총회	총회 성공개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체육계 인사 대상, 안전하고 편안한 총회참가 환경 제공</li> <li>• 2032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등 스포츠 외교의 장으로 활용</li> <li>• 한국 고유의 문화·관광 체험 기회 제공</li> </ul>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	세부 계획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협력 통한 체계적인 대회준비</li> <li>• 전세계 청소년 참여 상징체계 공모 및 대회 사전 홍보</li> <li>• 계기별 전략적 조직위 확충 및 현장 운영체제로 전환</li> </ul>
	국제대회 국내 개최 및 해외참가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적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대응,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준비 지원</li> <li>•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 안전한 참가지원</li> </ul>
	체육교류·협력을 통한 평화가치 확산	남북체육교류 및 평창동계올림픽 유산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체육교류 재개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li> <li>•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활용, ‘새로운 지평(NewHorizon)’ 확장</li> </ul>
	전략적 스포츠 외교 및 반도핑 정책 선진화	스포츠교류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신남방·신북방·한중일) 전략적 스포츠 교류 추진</li> <li>• 국제스포츠 인재양성을 통한 국제기구 진출 지원</li> <li>• 반도핑 정책 선진화로 깨끗한 스포츠 환경 조성</li> </ul>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업무계획.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체육 업무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전세계 확산으로 인해 한 해 연기된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과 창출,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성공개최 지원과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 국제대회 국내개최 및 해외참가, 남북체육교류·협력을 통한 평화가치 확산, 스포츠교류 사업 추진을 통한 전략적 스포츠 외교 및 반도핑 정책 선진화에 집중되었다.

<표 6-2>에서 알 수 있듯이 2021년의 국제체육 관련 업무에 대해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희망과 자부심을 주는 K-스포츠'라는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또한,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2022 베이징올림픽·패럴림픽 준비와 동시에 국가올림픽위원회(ANOC)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는데, 국제체육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총회참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2032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등 스포츠 외교의 장으로 활용하고, 한국 고유의 문화·관광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지원도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남북 체육교류 재개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및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활용을 바탕으로 체육교류·협력을 통한 평화가치 확산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권역별 스포츠교류 사업 추진, 국제스포츠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등을 통한 전략적 스포츠 외교 및 반도핑 정책 선진화 역시 2021년의 주요 업무 내용이었다.

대한체육회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을 지정받아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같은 국제 체육기구와 공조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대한체육회는 <표 6-3>과 같은 2021년 주요 업무 범위를 설정하였다.

표 6-3. 대한체육회 부서별 국제스포츠 주요 업무(2021)

부서	주요업무
국제교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스포츠기구(IOC, OCA, ANOC, TAFISA 등) 관련 업무</li> <li>국제회의 참가 및 초청</li> <li>개도국스포츠발전 지원</li> <li>스포츠교류협정체결</li> <li>국제스포츠이벤트유치 및 역량 강화</li> <li>남북체육교류 및 협력관련 업무</li> <li>국제기구 한국인 임원 진출 지원 (IOC, IF 등)</li> <li>국제스포츠기구 진출</li> <li>국제업무 전문인력 및 동계종목 대외협력관 업무</li> <li>종목별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li> <li>국제스포츠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li> <li>2024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후속 지원</li> <li>세계선수권 및 기타대회 참가 지원</li> <li>국제친선경기 초청 및 파견</li> <li>국제종합대회 코리아하우스 운영</li> <li>올림픽솔리다리티, 올림픽아카데미 등 올림픽 운동에 관한 업무</li> <li>국제위원회, 문화·환경·교육위원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운영</li> </ul>

부서	주요업무
국제대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종합경기대회(동하계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기타 국제종합경기대회 등)의 대한민국 선수단 구성 및 파견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단 구성 및 파견</li> <li>- 선수단 대상행사 개최(결·해단식, 교육)</li> <li>- 항공 및 수송, 물품 지원</li> <li>- 단장회의 및 사전조사단 파견</li> <li>- 현지선수단 운영 및 예산 업무</li> </ul> </li> <li>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아시아대학스포츠연맹(AUSF) 관련 업무</li> <li>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 운영 지원</li> </ul>
생활체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간 생활체육 교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생활체육교류 초청, 파견, 실무자 회의</li> <li>- 한·중 생활체육교류 초청, 파견, 실무자 회의</li> <li>*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미실시</li> </ul> </li> </ul>
청소년체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청소년스포츠교류(한·일 동·하계, 한·중 하계 스포츠교류)</li> <li>한·중·일 주니어종합 경기대회</li> <li>*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비대면)만 개최</li> </ul>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대한체육회의 국제체육업무는 크게 국제교류부, 국제대회부, 생활체육부, 청소년체육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국제본부’를 주무부서로 국제교류부와 국제대회부가 각각 교류와 대회를 담당하고, ‘생활체육본부’의 생활체육부와 청소년체육부에서는 각각 생활체육과 청소년체육의 국제교류를 지원한다.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제대회와 스포츠교류 등 국제스포츠 주요 사업 중 일부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표 6-4>는 2021년 대한체육회 국제체육 관련 중점 업무이다.

표 6-4. 대한체육회 국제체육 중점과제(2021)

중점과제	세부과제	내용
도쿄올림픽 우수성적 달성	국가대표 강화 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대표 강화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도쿄하계올림픽 대비 등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성적 달성 기반 조성</li> <li>- 스포츠 선진국 국외전지훈련, 국외정보수집(유럽, 미주 등), 외국인 코치 초청 지원 등</li> <li>- 종목별 영상분석시스템 활용,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 등</li> </ul> </li> <li>2020 도쿄하계올림픽 대비 전담지원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목별 전담매니저 지원을 통한 밀착 행정지원, 정기적인 전담팀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li> </ul> </li> </ul>

중점과제	세부과제	내용
도쿄올림픽 우수성적 달성	국가대표 선수촌 환경 개선 및 선수단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적의 국가대표 훈련여건 조성을 위한 국가대표 선수촌 환경 개선</li> <li>• 국가대표 현지적응 훈련지원으로 경기력 향상 도모</li> <li>• 2020도쿄하계올림픽 선수단 파견 운영</li> <li>• 2020도쿄하계올림픽 급식지원센터 운영</li> </ul>
	스포츠 의·과학을 접목한 선수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도쿄올림픽 대비 스페셜케어팀 운영</li> <li>• 경기력분석 모니터링 운영 및 훈련시스템 과학화 추진</li> <li>• 국가대표 선수촌 부속의원 및 협력병원 연계 국가대표선수 건강 관리</li> <li>• 국가대표 도핑방지 교육 확대 및 반도핑 홍보 강화</li> </ul>
우수선수 발굴 및 체계적 육성·지원	전문선수 양성 저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종목 육성 및 경기력 향상 추진</li> <li>•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li> <li>• 국내 유·청소년 축구 유망주 발굴 ‘골든일레븐’ 운영</li> <li>• 동계종목 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지원</li> </ul>
	우수선수 발굴·육성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나무 선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하계 비대면 훈련 실시, 체육영재 국내합숙 특별훈련 실시, 꿈나무선수 선발·지도 및 관리를 위한 전담지도자 배치, 경기력향상도 측정·평가 실시</li> </ul> </li> <li>• 청소년 대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훈련→비대면 훈련 전환 실시, 청소년선수 선발·지도 및 관리를 위한 전담지도자 배치</li> </ul> </li> <li>• 국가대표 후보선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계비대면 훈련 및 동계합숙훈련 실시, 국외전지훈련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종목별 전임감독 운영</li> </ul> </li> </ul>
	동계종목 국가대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국가대표선수촌 건립 추진(~'21년)</li> <li>• 2022베이징올림픽 대비,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제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국외정보수집, 외국인 전문가 영입 추진, 훈련장 개선 등</li> <li>• 설상종목 전용숙소 및 전용 훈련시설 운영</li> </ul>
	국제대회 참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2회 도쿄하계올림픽대회 참가 지원</li> <li>• 25개 종목단체 대상 세계선수권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참가지원</li> </ul>
	제26차 ANOC총회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OC집행부, IOC위원장 등 국제스포츠계 주요인사 참석 예정</li> <li>•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협력 증진, 외교력 및 역량 향상, 스포츠를 통한 평화 구현 등</li> </ul>
국제스포츠 선진국 위상 강화	스포츠 외교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스포츠 협력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OC, IF, NOC, FISU, TAFISA 등 주요 국제스포츠기구 참가 및 초청 활동</li> <li>- 국제스포츠기구 진출지원 등</li> </ul> </li> <li>• 국제스포츠정보센터(GSIC) 홈페이지 운영</li> <li>• 회원종목단체 국제업무 전문인력 지원</li> <li>• 2020도쿄하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li> <li>• 종목단체 및 지자체의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역량 강화 등</li> </ul>

중점과제	세부과제	내용
국제스포츠 선진국 위상 강화	국제 청소년·성인 스포츠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한·일/한·중청소년스포츠교류 및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li> <li>• (성인)한·일, 한·중 생활체육 국제교류</li> </ul>
	개발도상국 스포츠 발전 지원(O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 선수단을 초청하여 합동훈련을 통한 기술공유 및 선진 코칭 기법 전수로 사업 참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 및 국제대회 참가 역량 강화</li> <li>• 개도국 지도자를 대상으로 국제연맹에서 발급하는 국제 지도자 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개도국 국제 지도자 양성 지원</li> <li>• 개도국 대상 국내 우수 지도자 파견 및 용품지원을 통해 교류국의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국제대회 참가 역량 강화</li> </ul>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NOC징계 관련 사안 확인 및 동향 모니터링, 국제정세 파악 노력</li> </ul>
	올림픽 무브먼트 및 레거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림픽까지 확산을 위한 올림픽데이, 올림픽아카데미 운영</li> <li>• 올림픽 솔리다리티 지원 및 관리</li> <li>• IOC헌장 및 OCA 규정 관리 및 보급</li> </ul>

※ 출처: 대한체육회(2021). 2021 대한체육회 주요사업계획서.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대한체육회는 2021년에 ‘도쿄올림픽 우수성적 달성’과 ‘우수선수 발굴 및 체계적 육성·지원’, ‘국제스포츠 선진국 위상 강화’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13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실행하였다. 특히 2020도쿄올림픽에 대비하여 국가대표선수촌 개선, 선수단 지원체계 구축 및 스포츠의·과학을 접목한 과학적인 선수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우수선수 발굴 및 체계적 육성과 관련하여 종목 저변을 확대하고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 및 전문선수 운영을 확대하는 사업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제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2022년 제26차 ANOC총회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스포츠 외교 기반을 강화하고 올림픽 유산을 바탕으로 국제 스포츠교류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스포츠 발전 지원(ODA) 및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었다.

## 2) 국제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전 세계 국가 간이나 국가올림픽위원회 간의 양해각서 체결은 국제체육 교류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목별 경기력 향상과 교류 확대에 의한 외교적 국가 위상 증진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표 6-5>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지금까지 43개 국가와 57개의 국가올림픽위원회 등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해왔다.

표 6-5. 체육교류협정 체결 현황

연도	정부 간	올림픽위원회 간
1979	-	대만(12.20.)
1980	도미니카(03.28.)	바레인(10.15.)
1983	-	미국(01.15.), 쿠웨이트(09.22.), 서독(10.06.), 영국(11.03.), 스웨덴(11.10.)
1984	-	일본(09.13.), 튀니지(12.10.), 이탈리아(07.26.), 캐나다(11.08.)
1985	-	코스타리카(05.17.), 프랑스(09.27.)
1986	-	탄자니아(04.26.)
1987	스페인(11.16.)	페루(08.08.)
1988	폴란드(05.04.), 이란(09.20.)	베냉(09.30.)
1989	말리(03.09.), 유고(05.21.), 불가리아(05.23.), 루마니아(05.25.), 모로코(05.28.)	-
1990	체코(05.29.)	멕시코(05.21.)
1991	헝가리(02.12.), CIS(06.02.)	라오스(10.25.), 베트남(10.23.)
1992	태국(01.25.)	몽골(04.16.)
1993	-	카자흐스탄(07.22.), 중국(09.09.), 러시아(11.24.)
1994	베트남(11.24.)	칠레(04.23.), 키르기스스탄(07.29.), 투르크메니스탄(08.01.), 호주(10.04.), 슬로바키아(12.16.), 이탈리아(1984.07.26. / 12.01. 재체결)
1995	모리셔스(05.06.), 중국(06.09.), 나이지리아(10.22.)	예멘(02.27.), 요르단(02.27.), 우즈베키스탄(04.19.), 말레이시아(05.21.), 필리핀(05.22.), 네팔(05.22.), 캄보디아(05.22.), 카타르(05.21.), 카메룬(07.28.), 몽골(1992.04.16./08.10. 재체결), 레바논(09.20.)
1996	슬로바키아(01.21.), 싱가포르(06.20.)	리비아(10.05.)
1997	에티오피아(08.11.)	스와질랜드(09.02.), 아이보리코스트(10.13.)
1999	알제리(11.23.), 몽골(05.28.)	시리아(03.04.), 이집트(06.21.), 레바논(1995.09.20./03.05. 재체결), 대만(1979.12.20./08.11. 재체결), 베트남(1991.10.23./05.13. 재체결)
2001	멕시코(11.22.)	-
2002	수단(5.18.), 중국(1995.6.9./10.13. 재체결)	-
2004	이집트(08.01.)	일본(1984.09.13./08.25. 재체결), 멕시코(1990.05.21./02.25. 재체결)
2005	-	-
2006	-	우크라이나(02.10.), 이탈리아(1984.07.26. / 1994.12.01. 재체결/09.07. 재체결), 과테말라(11.05.), 멕시코(1990.05.21./2004.02.25. 재체결/11.06. 재체결)

연도	정부 간	올림픽위원회 간
2007	쿠웨이트(07.30.), 이란(1988.09.20./08.23. 재체결)	스웨덴(1983.11.10./01.16. 재체결), 알제리(01.27.), 싱가포르(03.30.), 폴란드(12.03.)
2008	우루과이(01.05.), 벨로루시(10.01.)	루마니아(08.07.), 방글라데시(10.27.)
2011	온두라스(08.09.)	뉴질랜드(09.26.)
2012	이란(1988.09.20./2007.08.23. 재체결/07.03. 재체결), 콜롬비아(08.19.), 필리핀(10.17.)	부탄(01.06.), 피지(03.06.)
2013	스리랑카(10.01.)	태국(07.03.), 카타르(1995.05.21./06.15. 재체결)
2014	타지키스탄(04.12.), 투르크메니스탄(04.13.), 불가리아(05.14.)	핀란드(02.23.), 스리랑카(09.30.), 과테말라(2006.11.05./11.08. 재체결), 캐나다(1984.11.08./11.08. 재체결)
2015	볼리비아(02.23.), 인도네시아(05.16.), 몽골(1999.05.28/05.19. 재체결), 프랑스(06.03.)	미국(1983.01.15./02.03. 재체결)
2016	-	네덜란드(08.14.)
2018	프랑스(02.12./2016년 LOI를 MOU로 재체결), 조지아(02.12.), 러시아(06.22.), 인도(11.05.)	러시아(1993.11.24./11.28. 재체결)
2019	사우디아라비아(06.26.), 피지(10.30.)	-
2020	-	크로아티아(04.28.)
2021	-	카메룬(1995.07.28./10.25. 재체결)
합계	43개 국가	57개 NOC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최근에 이루어진 양해각서에는 2018년 조지아와 러시아 정부 간 협약(1993년 국가올림픽 위원회 간 협약체결 이후 재협정 체결)과 2016년 프랑스 정부와 체결했던 의향서의 양해각서 발전 등이 대표적이다. 201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피지 정부가 우리나라와 정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의 스포츠교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으며, 2020년에는 크로아티아 국가올림픽위원회와 교류협약을 체결하였다. 2021년에는 1995년 7월 교류협약을 체결하였던 카메룬 국가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위원회 간 양해각서를 재체결하였다.

### 3) 국제체육 전문인력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교류로 외교력을 강화하고자 은퇴선수, 지도자, 스포츠 행정가들에게 외국어과정, 해외인턴 및 학위과정, 실무·전문 과정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 중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사업은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시작되었으나, 2008년 이후 부터 대한체육회와 체육인재육성재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2016년 1월 1일 체육인재육성재단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합병되면서 공단 내의 연구기관인 한국스포츠정책

과학원(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을 주관하다가 현재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내 체육인재실(인재육성팀, 국제인재팀)에서 사업을 맡고 있다. <표 6-6>은 2021년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지원 실적 현황이다.

표 6-6.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지원 실적(2021)

구분	기간	추진실적	주요 내용
외국어 집중과정	4개월	29명 수료	- 외국어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 국제스포츠 분야 채용 및 직무역량 교육
직무 집중과정	2~6개월	26명 수료	- 국제스포츠 분야 직무능력 향상 교육(전 영어수업) - 우수 교육생 대상 국내·외 행정현장 실습(최대 6개월)
맞춤형 임원양성과정	4개월	11명 수료	- 국내·국제 경기연맹 임직원 또는 분과위원 대상 국제기구 임원 진출을 위한 맞춤형 경력개발 교육
온라인 해외연수	4개월	15명 수료	- '20년 수료생 중 우수 교육생 대상 미국 플로리다대학 스포츠 전공강의 등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4개월	30차수 제작완료	- 스포츠 영어 및 국제스포츠 동향 관련 콘텐츠 제작 - 국제스포츠기구 직무 및 채용 관련 콘텐츠 제작

※ 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등을 고려, 안정적 교육 운영을 위하여 국내과정은 대면/비대면 운영(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준수) 및 해외과정은 비대면 온라인 과정으로 변경운영.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국제 스포츠 인재 양성은 스포츠 전문인력의 국제 및 전문 역량 배양을 통해 국제 스포츠 리더로서의 자질을 마련하고 나아가 스포츠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주로 국제스포츠인재 및 스포츠행정가,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와 국제심판 양성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수준별 영어교육, 스포츠 전공 및 직무전문성 교육, 채용 역량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 2021년에는 총 80명(20년 201명)의 체육인재가 관련 과정을 수료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표 6-7>처럼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현장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표 6-7. 국제스포츠인재 양성사업 수료생 성과 사례(2021)

구분	참고사항
외국어 집중과정	한국도핑방지위원회, IMG 코리아 등 진출
직무집중과정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등 진출 * 본 교육과정 내 인턴십(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파견 2명)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온라인 해외연수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대한자전거연맹(국제업무 담당) 등 진출
차세대 임원과정	국제근대5종연맹/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분과위원 등 진출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육성팀 내부자료(2021).

이들 프로그램 중 특히 국제스포츠행정가 양성 과정은 국내 차세대 국제스포츠 행정 리더 양성과 국제스포츠 발전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목적을 두고 국내 스포츠 행정가와 선수 경력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는데 집중한다. 기존 개설되어 있는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1기 6명 입학으로 2021년 9기에 이르기까지 총 28명이 입학하여 이 중 19명이 졸업을 하였다. 2021년에는 4명이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이다. <표 6-8>은 개발도상국 및 국제스포츠 행정가 교육사업의 최근 5개년 실적이다.

표 6-8.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교육 및 국제스포츠행정가 양성 실적(2017~2021)

연도	구분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ODA) 교육		국제스포츠행정가 양성	
		입학	졸업(재학)	입학	졸업(수료, 재학)
2017(5기)		22개국 23명	22개국 23명 졸업	1명	1명 졸업
2018(6기)		21개국 21명	20개국 21명 졸업	2명	1명 졸업, 1명 수료
2019(7기)		17개국 18명	17개국 18명 졸업	1명	1명 졸업
2020(8기)		19개국 22명	19개국 21명 졸업	5명	5명 수료
2021(9기)		20개국 22명	20개국 22명 재학	4명	4명 재학

※ 주: 이 수치는 9기생 입학인원으로서 현재 교육 중. 8기생 '22.8월 졸업예정.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 교육은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하고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을 위한 스포츠 국제개발협력 참여 방안의 일환으로 고안되었다.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 분야 또는 국제대회 참가 경험이 있는 선수 경력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학위 교육과정과 비교과과정(한국문화체험, 스포츠현장 체험, 명사특강 등), 졸업생 사후 관리 프로그램(졸업생 대상 성과공모전, 심화교육, 인턴십, 국제포럼 등)을 제공한다. 2013년 16개국 18명 입학과 함께 시작된 이후 현재에 이르렀다. 2021년에는 총 45개국 106명이 지원하였고 20개국 22명이 선발되어 9기로 입학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심판 양성과정’도 진행되었다. 국제심판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국제심판 진출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국제심판 자격 취득 과정(자격 취득, 승급 및 유지 관련 해외 강습회 참가)과 글로벌 역량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사업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종목별 국제심판 자격취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되지 않아 국제심판 자격취득 가이드북 제작으로 대체되었다. <표 6-9>는 국제심판 자격취득을 위한 종목별 지원 현황이다.

표 6-9. 종목별 국제심판 자격취득 지원사업 지원현황(2009~2021)

(단위: 명)

연번	종목	'09~'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1	공수도	7	1	2	1	1	0	1	0	0	0	13
2	농구	0	0	0	4	0	0	1	2	0	0	7
3	레슬링	11	0	0	7	5	7	8	8	0	0	46
4	배구	2	0	0	0	0	0	2	2	0	0	6
5	배드민턴	0	0	0	0	1	0	0	0	0	0	1
6	복싱	0	0	6	1	0	0	0	0	0	0	7
7	봅슬레이	0	0	1	0	0	0	0	0	0	0	1
8	빙상	9	2	3	3	3	1	0	1	0	0	22
9	소프트볼	2	0	0	0	2	0	0	0	0	0	4
10	수영	6	0	2	2	3	1	3	0	0	0	17
11	스켈레톤	2	0	0	0	0	0	0	0	0	0	2
12	스키	16	4	1	4	0	3	0	5	0	0	33
13	승마	11	2	0	0	0	0	0	0	0	0	13
14	아이스하키	8	0	0	0	0	0	0	0	0	0	8
15	양궁	2	0	0	0	0	1	0	0	0	0	3
16	역도	2	0	0	0	0	0	0	0	0	0	2
17	요트	2	1	1	0	1	0	0	0	0	0	5
18	우슈	4	0	3	0	4	0	7	0	0	0	18
19	유도	9	1	2	1	4	2	5	2	0	0	26
20	인라인	2	0	0	0	0	0	0	0	0	0	2
21	체조	3	4	0	3	11	7	0	0	0	0	28
22	조정	0	0	0	0	0	1	2	1	0	0	4
23	카누	1	0	0	1	0	0	0	0	0	0	2
24	컬링	5	0	5	1	0	4	1	3	0	0	19
25	탁구	2	2	1	2	2	6	4	8	0	0	27
26	태권도	5	0	0	0	0	0	0	0	0	0	5
27	테니스	8	2	0	2	1	3	1	4	0	0	21
28	트라이애슬론	1	0	2	2	1	4	2	0	0	0	12
29	펜싱	0	0	0	0	2	0	0	0	0	0	2
30	하키	0	0	0	0	0	1	0	0	0	0	1
31	핸드볼	9	0	0	0	0	0	0	0	0	0	9
32	장애인농구	2	3	0	0	0	0	0	0	0	0	5
33	장애인력비	2	0	0	0	0	0	0	0	0	0	2
34	장애인배구	1	0	0	0	0	0	0	0	0	0	1
35	장애인사격	6	0	0	0	0	0	0	0	0	0	6
36	장애인아이스하키	3	0	0	0	0	0	0	0	0	0	3

연번	종목	'09~'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37	장애인조정	2	0	0	0	0	0	0	0	0	0	2
38	장애인컬링	0	3	0	0	0	0	0	0	0	0	3
계		145	25	29	34	41	41	37	36	0	0	388

※ 장애인 체육종목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자체추진으로 '14년부터 지원 중단

※ ('20~'2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잠정 중단, 국제심판 자격취득 가이드북 제작으로 대체(총 20개 종목)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표 6-9〉와 같이, 최근 10년 간 38종목 388명을 대상으로 국제심판 자격취득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또한, 국제심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스포츠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표 6-10〉과 같이 이루어졌다.

표 6-10. 연도별 국제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인원(2015~2021)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인원	42	32	39	30	24	35	30	232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2021년에는 총 30명의 지원자가 국제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232명의 국제심판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 2. 국제체육 인재 현황

### 1)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

우리나라 인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를 비롯, 아시아 올림픽평의회(OCA),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세계체육기자연맹(AIPS), 국제대학 스포츠연맹(FISU) 등의 국제체육기구에 진출하여 정직원 및 임원직으로 활동 중이다. 2021년 한국인 국제체육기구 임원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20년 138명→'21년 165명), 아시아체육기구 임원은 소폭 감소하였다('20년 221명→'21년 218명). 주요 국제 스포츠기구를 살펴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한국인 임원 14명(집행위원 2명, 분과위원 14명)이 선출되었으며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경우 한국인 임원 20명

(회장단 1명, 집행위원 3명, 분과위원 16명)이 선출되었다. 국제대학스포츠위원회(FISU)에는 한국인 임원 9명(집행위원 1명, 분과위원 7명, 기타 1명)이 활동하고 있다.

#### 가.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위원 현황

국제체육기구와 경기연맹 등 국제체육조직에 진출한 한국인 위원은 2021년 기준 총 38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20년의 359명에 비해 24명이 증가하였다.

표 6-11.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위원 현황(2012~2021)

(단위: 명)

국제기구명	연도별 위원 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제올림픽위원회(IOC)	6	5	7	7	10	9	10	11	13	14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	1	1	1	1	1	1	1	1	1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	-	-	-	-	-	-	-	-	-
국제체육기자연맹(AIPS)	1	1	1	1	1	1	1	1	1	1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8	8	7	8	12	12	9	9	10	9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9	10	10	18	18	18	14	17	19	20
동아시아올림픽협의회(EAOC)	4	4	3	3	3	4	4	4	4	4
아시아경기연맹총연합회(GAASF)	-	-	-	-	-	-	-	-	-	-
아시아체육기자연맹(ASPU)	1	1	1	1	1	1	1	-	1	1
아시아대학체육연맹(AUSF)	2	2	2	2	-	1	1	1	1	1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	-	1	1	1	1	1	1	1	1	1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	-	1	1	1	2	3	3	3	2
소계	31	33	34	43	48	50	45	48	54	54
경기연맹										
국제경기연맹(IFs)	105	110	116	123	123	122	126	108	109	137
아시아경기연맹(AF)	205	215	198	195	182	184	189	180	196	192
소계	310	325	314	318	305	306	315	288	305	329
합계	341	358	348	361	353	356	360	336	359	383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 나.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분과위원 현황

국제체육기구 내 다양한 분과위원회로 진출한 우리나라 임원 현황은 <표 6-12>에 정리되었다. 2021년 기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포함하여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등 다양한 국제체육기구에서 한국인 임원이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특히 아시아올림픽

평의회(OCA)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부회장)을 필두로 유승민 IOC위원(선수관계자 위원회 위원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스포츠와 환경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16명의 분과위원이 소속되어 있어 총 20명의 한국인 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표 6-12.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분과위원 현황(2021)

기구	직위	성명	피선 년도	임기	국내직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	유승민	2016	8년	평창기념재단 이사장, ISF 이사장	
	위원	이기흥	2019	-	대한체육회 회장	
	올림픽교육위원회	이기흥	2020	2년	대한체육회 회장	
	윤리위원회 위원장	반기문	2017	4년	전 UN사무총장	
	선수위원회(부위원장)	유승민	2020	2년	평창기념재단 이사장, ISF 이사장	
	올림픽교육위원회	유승민	2020	2년	평창기념재단 이사장, ISF 이사장	
	올림픽프로그램위원회		유승민	2021	2년	평창기념재단 이사장, ISF 이사장
			김재열	2020	2년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국제부위원장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조정 위원회	김재열	2020	-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국제부위원장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조정 위원회	이희범	2020	-	전 평창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2026밀라노동계올림픽평가 위원회	이기흥	2020	-	대한체육회 회장	
	스포츠와 활력사회위원회	차영태	2020	2년	삼성전자 부장	
	올림픽지속가능성및레거시위원회	유승민	2020	2년	평창기념재단 이사장, ISF 이사장	
2028로스앤젤레스조정위원회	유승민	2019	-	평창기념재단 이사장, ISF 이사장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ANOC)	국제관계분과위원	김재열	2019	-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국제부위원장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부회장	최태원	2020	4년	SK그룹 회장	
	선수관계자위원회 위원장	유승민	2019	4년	평창기념재단 이사장, ISF 이사장	
	스포츠와 환경위원회 위원장	유경선	2019	4년	유진그룹 회장	
	조정분과위원	문대성	2019	4년	전 IOC위원	
	자문분과위원	이기흥	2019	4년	IOC위원	
	자문분과위원	유승민	2019	4년	IOC위원	
	선수분과위원	김재범	2019	4년	KSOC 선수위원회부위원장	
	선수분과위원 호선위원	유승민	2019	4년	평창기념재단 이사장, ISF 이사장	
	의무분과위원	임경수	2019	4년	KSOC 의무위원장	
교육분과위원	손영화	2019	4년	KSOC 문화환경교육위원회 위원		

기구	직위	성명	피선 년도	임기	국내직위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문화분과위원	한정규	2019	4년	KSOC 문화환경위원장
	재정분과위원	민병덕	2019	4년	KSOC 마케팅위원장
	미디어분과위원	정철의	2019	4년	KSOC 홍보미디어위원장
	규정분과위원	강래혁	2019	4년	KSOC 법무팀장
	생활체육분과위원	김창준	2019	4년	KSOC 생활체육위원장
	국제관계분과위원	문희정	2019	4년	KSOC 국제위원회 위원
	여성과스포츠분과위원	김설향	2019	4년	KSOC 여성체육위원장
	스포츠평화분과위원	박철근	2019	4년	KSOC 사무부총장
	반도핑위원회위원	박주희	2019	4년	ISF 사무총장
스포츠분과위원	김승호	2019	4년	전 KSOC 사무총장	
세계생활체육연맹 (TAFISA)	회장	장주호	2017	4년	한국체육인회 회장
세계도핑방지기구 (WADA)	이사	오영우	2021	4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TUE 전문가 그룹위원	이영희	2018	4년	KADA 위원장
국제대학스포츠연맹 (FISU)	집행위원	유병진	2019	4년	명지대학교 총장
	명예위원	김종량	2015	계속	전 KUSB위원장, 한양대학교 이사장
	CIC 국제조정위원회 위원	하용용	2020	4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EduC 교육위원회 실무위원	조미혜	2020	4년	인하대학교 교수
	CMI 의무위원회 위원	윤택림	2020	4년	전남대학병원장
	CdE 학생위원회 위원	이경은	2020	4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격 국제기술위원회 부위원장	김일환	2020	4년	상지대학교 교수
	빙상(쇼트트랙) 기술위원장	김소희	2020	4년	동양대학교 교수
기술위원장(핸드볼)	홍정호	2020	4년	원광대학교 교수	
세계체육기자연맹 (AIPS)	집행위원	정희돈	2017	4년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아시아대학스포츠연맹 (AUSF)	집행위원회 동아시아지역대표	하용용	2017	4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아시아체육기자연맹 (ASPU)	수석부회장	정희돈	2017	4년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동아시아올림픽위원회 (EAOC) *구 EAGA	협의회위원	박철근	2019	4년	KSOC 사무부총장
	규정과 스포츠 위원	박인규	2019	4년	KSOC 국제본부장
	의무분과위원	하철원	2019	4년	KSOC 의무위원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우리나라는 3회 연속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 연임에 성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임기의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영희 한국도핑방지

위원회 위원장이 TUE 전문가 그룹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이 외에도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세계체육기자연맹, 아시아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체육기자연맹, 동아시아올림픽위원회 등 다양한 국제체육기구에서 각각의 임기를 두고 많은 한국인 임원이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한국인 위원 등록 현황

국제스포츠기구 중 가장 상위기구라 할 수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내 국내 위원은 2021년 기준 <표 6-13>과 같이 총 두 명의 위원이 있다.

표 6-13. 국제올림픽위원회 한국인 위원 현황(2021)

직위	성명	피선년도	임기	국내직위
위원	유승민	2016	8년	평창기념재단, ISF 이사장
위원	이기흥	2019	4년	대한체육회 회장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유승민 위원은 선수위원으로 IOC위원직을 맡은 반면,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국가 올림픽위원회(NOC) 자격으로 위원직에 선출되었다. <표 6-14>는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IOC위원 현황이다.

표 6-14. 국제올림픽위원회 역대 한국인 위원

순서	직위	성명	임기	국내직위
1	위원	이기봉	1955~1966	서울 시장
2	위원	이상백	1964~1966	조선체육회 이사장
3	위원	장기영	1967~1977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국회의원
4	위원	김택수	1977~1983	세계아마추어복싱연맹 부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위원장
5	위원	박종규	1984~1985	세계사격연맹 부회장, 국회의원
6	위원	김운용	1986~2005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대한체육회 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7	위원	이건희	1996~2017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아마추어레슬링협회 명예회장, 국제올림픽위원회 명예위원
8	위원	박용성	2002~2007	국제유도연맹 회장, 대한체육회 회장
9	위원	문대성	2008~2016	태권도 최초 그랜드슬램 달성
10	위원	유승민	2016~2024	대한체육회 이사, 선수위원장
11	위원	이기흥	2019~현재	대한체육회 회장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 이전까지는 1955년에 이기봉(前 부통령), 1964년 이상백(前 대한체육회 부회장), 1967년 장기영(前 대한축구협회 회장), 김택수(前 대한체육회장) 등 4명이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1984년 박종규(前 대한체육회장), 1986년 김운용(前 IOC 부위원장), 1996년 이건희(前 대한레슬링협회장), 2002년 박용성(前 대한체육회장), 2009년 문대성(前 국회위원), 2016년 유승민(前 국가대표선수) 등 6명이 배출되었다. 2015년에는 2명의 IOC위원(이건희, 문대성)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 문대성에 이어 유승민이 선수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2017년 이건희 위원이 개인사유로 위원직을 사퇴한 뒤, 명예위원으로 추대되었다. 이기흥(제40대 대한체육회 회장)은 2017년 자신을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IOC 후보로 등록한 후 투표를 거쳐 2019년 IOC 134차 총회에서 신규위원으로 최종 선출되었다.

#### 라. 국제경기연맹 한국인 임원 진출 현황

다음은 국제경기연맹에 진출한 한국인 임원 현황이다. <표 6-15>에서 보듯, 2021년에는 총 137명의 임원이 각 국제경기연맹의 회장단, 집행위원, 분과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표 6-15. 국제경기연맹 한국인 임원 현황(2021)

(단위: 명)

직위	올림픽대회 종목	인원	그 외 종목	인원
회장단	태권도(3), 배드민턴, 양궁, 루지	6	소프트테니스, 검도, 세팍타크로, 당구, 바둑(2)	6
사무국	-	0	-	0
집행위원	탁구, 빙상, 유도, 체조, 사격(2), 태권도(2), 골프, 근대5종, 산악	11	검도, 수중핀수영, 우슈, 트라이애슬론, 게이트볼	5
분과위원	축구, 탁구(6), 핸드볼, 역도, 빙상(2), 체조, 사이클, 농구, 배구(2), 야구(2), 스키(41), 하키, 사격(5), 펜싱(2), 태권도(7), 조정, 양궁(6), 근대5종(2), 산악(4), 스포츠클라이밍, 산악스키, 봅슬레이(4)	93	검도, 수중핀수영(3), 우슈	5
기타	육상(4), 빙상, 유도, 레슬링(2), 배드민턴, 양궁	10	댄스스포츠	1
합계		137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국제경기연맹뿐 아니라 아시아경기연맹에도 많은 수의 우리나라 임원들이 진출하였다. 다음의 <표 6-16>에 정리되어 있듯, 2021년 기준으로 총 192명이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및 기타 종목을 관장하는 아시아경기연맹 임원으로 활동 중이다.

표 6-16. 아시아경기연맹 한국인 임원 현황(2021)

(단위: 명)

직위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인원	그 외 종목	인원
회장단	축구(동아시아), 소프트테니스, 탁구, 역도, 역도(동아시아), 복싱, 빙상, 유도(동아시아), 농구, 농구(동아시아), 야구, 스키, 하키, 바이애슬론, 펜싱, 태권도(3), 조정, 배드민턴, 롤러, 요트, 양궁, 근대5종,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산악, 세팍타크로, 우슈, 트라이애슬론, 스쿼시, 바둑, 소프트볼, 볼링	33	보디빌딩(동아시아), 당구	2
사무국	축구(동아시아), 역도, 빙상, 바이애슬론, 태권도, 양궁, 산악, 세팍타크로, 바둑, 볼링(동아시아태평양)	10	당구	1
집행위원	소프트테니스, 핸드볼, 방상, 체조, 사이클, 배구, 럭비, 레슬링, 수영, 스키, 태권도(4), 조정, 배드민턴, 골프, 근대5종, 세팍타크로, 테니스	20	보디빌딩, 수중핀수영, 당구, 게이트볼(2)	5
분과위원	육상(2), 축구(15), 소프트테니스, 탁구(3), 핸드볼(6), 역도(3), 복싱(6), 빙상, 유도(4), 체조(4), 농구(3), 배구(4), 럭비(2), 수영(4), 야구, 하키(6), 펜싱(2), 조정(5), 배드민턴(4), 요트(2), 양궁(4), 수상웨이크보드(6), 우슈(3), 트라이애슬론(7), 스쿼시(7), 소프트볼(3)	108	-	0
기타	소프트테니스, 탁구, 역도, 유도, 유도(동아시아), 사이클, 배구, 레슬링, 양궁(2), 근대5종, 수중핀수영, 스쿼시(동아시아)	13	-	0
합계		192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 3. 국제체육 교류 현황

국제체육교류협력은 ‘정부 간 체육협력 강화’와 ‘스포츠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체육협력 강화는 국가 간 체육교류협력에서 세계도핑방지위원회 이사국 진출 등 체육 다자간 교류로 이루어고, 스포츠공적개발원조로는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 연수,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초청 합동훈련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 1) 국제친선 및 교류사업

##### 가. 국제청소년교류

대한체육회의 청소년체육부는 한·일 하계, 한·일 동계, 한·중 하계스포츠교류,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하계)의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일, 한·중 교류의 경우 선수단의 초청, 파견 형식으로 진행되며, 한·중·일 종합경기대회는 3국이 순서대로 돌아가며

개최국을 맡아 다른 두 나라를 초청하는 형식이다. <표 6-17>은 2021년에 이루어진 한·일 및 한·중 청소년스포츠교류 현황이다.

표 6-17. 한·일/한·중 청소년 스포츠교류(2021)

사업	구분	집행실적
한·일 동계	추진일정	코로나19로 인한 미개최
	장소	
	참여자	
	참여인원	
한·일 하계	추진일정	2021.12.19.(일), 09:00~16:00
	장소	참가자별 가정 또는 개별 개인장소
	참여자	5종목(농구, 배구, 배드민턴, 축구, 탁구) 양국 초등학교 및 중학생 총 190명(한국 103명, 일본 87명)
	추진내용	온라인 비대면 교류(강연, 퀴즈서바이벌, 언어배우기, 음식체험 등)
한·중	추진일정	코로나19로 인한 미개최
	장소	
	참여자	
	추진내용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국제청소년교류 사업은 하계와 동계에 이루어지는데, 하계는 1997년부터, 동계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한·일 하계 스포츠교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스포츠교류 활동이 취소되었다. 2021년 한·일 하계 스포츠교류 행사에서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축구, 탁구 5개 종목에 대하여 양국 초등학교 및 중학생 총 190명이 참여하였다(한국 103명, 일본 87명).

한·중·일 세 나라가 동시에 교류를 진행한 사업으로는 2019년에 제27회를 맞은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가 있다. 이 대회를 통해 매년 11개 종목(농구, 럭비, 배구, 배드민턴, 육상, 소프트테니스, 축구, 탁구, 테니스, 핸드볼, 역도)에 대하여 세 나라의 청소년 스포츠교류 활동을 이어왔으나,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가 취소되었다.

#### 나.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은 체육교류협정국 및 저개발 국가들과의 교류확대를 위해 시행

하는 사업이다. 지도자 파견과 용품 지원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교류국 간의 우의를 증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표 6-18>은 2021년에 실시된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현황이다.

표 6-18.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사업성과(2021)

연번	구분	종목	기간	교류국
1	지도자 파견	펜싱	01.01.~12.31.	태국
2		핸드볼	01.01.~12.31.	태국
3		배드민턴	01.01.~08.31.	네팔
4		요트	01.01.~12.31.	베트남
5		양궁	01.01.~12.31.	부탄
6		레슬링	01.01.~03.10.	태국
7		야구	03.26.~12.31.	라오스
8		축구	04.23.~12.31.	부탄
9		탁구	06.01.~12.31.	몽골
10		소프트테니스	06.04.~12.31.	라오스, 캄보디아
1	용품 지원	펜싱	01.01.~12.31.	태국
2		핸드볼	01.01.~12.31.	태국
3		배드민턴	01.01.~08.31.	네팔
4		요트	01.01.~12.31.	베트남
5		양궁	01.01.~12.31.	부탄
6		레슬링	01.01.~03.10.	태국
			12.07.~12.31.	캄보디아
7		축구	04.23.~12.31.	부탄
8		탁구	06.01.~12.31.	몽골
9	소프트테니스	06.04.~12.31.	라오스, 캄보디아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에는 총 10개 종목(펜싱, 핸드볼, 배드민턴, 요트, 양궁, 레슬링, 야구, 축구, 탁구, 소프트테니스)의 지도자가 7개국(태국, 네팔, 베트남, 부탄,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으로 파견되었다. 용품지원과 관련해서는 총 9개 종목(펜싱, 핸드볼, 배드민턴, 요트, 양궁, 레슬링, 축구, 탁구, 소프트테니스)에 7개국(태국, 네팔, 베트남, 부탄,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다. 개발도상국 스포츠발전지원

개발도상국 스포츠 발전지원 사업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포츠 선진국의 위상에 맞는

스포츠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개발도상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과 지도자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표 6-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초청 합동훈련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지도자교육과정만 이루어졌다.

표 6-19. 개발도상국 스포츠 발전지원 사업 현황(2017~2021)

연도	사업명	예산(백만 원)	참가국(개국)	인원(명)	사업 수(종목)
2017	합동훈련	623	15	251	15
	지도자교육과정	1,534	60	233	4
합계		2,157	75	484	19
2018	합동훈련	623	14	259	15
	지도자교육과정	1,425	60	232	4
합계		2,048	74	491	19
2019	합동훈련	720	17	339	19
	지도자교육과정	1,504	65	268	4
합계		2,224	82	607	23
2020	합동훈련	-	-	-	-
	지도자교육과정	-	-	-	-
합계		0	0	0	0
2021	합동훈련	-	-	-	-
	지도자교육과정	1,504	48	142	3
합계		1,504	48	142	3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2021년 지도자 교육과정은 3개 종목을 중심으로 48개국 14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15억 400만 원의 재정이 지원되었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과 지속적인 체육교류를 유지함으로써 국가 간 우의를 증진시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2021년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의 사업성과는 다음의 <표 6-20>과 같다.

표 6-20. 개발도상국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 사업 성과(2021)

(단위: 명, 개국)

연번	종목	기간	장소	초청인원	초청대상
1	철인3종	08.10.~11.23.	온라인 교육	65명	34개국
2	태권도	10.04.~10.26.	무주 태권도원	25명	12개국
3	사이클	12.16.~12.31.	온라인 교육	52명	11개국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사업결과보고서.

개발도상국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은 2021년 코로나19 시대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연맹, 국내 및 개발도상국 NF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였다. 2021년 실시되었던 3개 종목 중 철인3종과 사이클 종목의 경우 국제연맹 최초로 온라인 국제 지도자 교육과정을 도입하였으며, 태권도 종목은 우리 정부의 외국인 입국 절차 및 격리 지침을 각 개발도상국에 공지하고, 국내 초청 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였다.

## 2) 국제체육기구 교류사업

### 가. 국제체육기구 인재파견

국제체육기구 인재파견은 국제체육기구 내 한국인 직원 진출 확대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체육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기구의 행정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표 6-21>은 2021년에 이루어진 국제체육기구 파견사업 현황이다.

표 6-21. 국제체육기구 파견사업 현황(2021)

파견기구	인원
국제도핑검사기구(ITA)	1명
국제볼링연맹(IBF)	1명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2021년 국제체육기구진출지원 사업에 의해 국제도핑검사기구와 국제볼링연맹에 각각 1명씩 총 2명의 인원이 파견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인 직원이 국제체육기구에 진출하여 정직원으로 전환된 실적 현황은 <표 6-22>와 같다.

표 6-22. 국제체육기구 정직원 전환 실적(2017~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적	종목	실적	종목	실적	종목	실적	종목	실적	종목
2명	야구소프트볼, 농구	1명	카누	1명	양궁	0명	-	1명	기타(AISTS)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국제체육기구 인재 파견사업의 결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의 종목단체 등에서 5명의 파견자가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국제체육기구 파견사업과 별개로 대한체육회는 2016년부터 대한체육회 누리집에 국제스포츠정보센터를 운영하였고, <표 6-23>은 2021년 등록 현황이다.

표 6-23. 국제스포츠정보센터 등록 현황(2017~202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등록자	1,812명	1,963명	2,138명	2,350명	2,413명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국제스포츠정보센터(Global Sports Information Center: GSIC)는 2016년까지 ‘국제스포츠인재풀’로 운영되다가 2017년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보센터는 국제스포츠기구 및 각종 종합경기대회 등을 포함한 최신 동향과 채용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으로서, 국제체육기구 파견자나 국제 업무 전문인력 선발을 위한 창구로 활용된다. 2021년에 등록된 인원은 총 2,413명이었다.

#### 나. 국제체육회의 파견

국제체육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제체육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스포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양한 국가 및 국제경기단체와 체육교류와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각종 국제회의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 2021년 이루어진 국제체육교류 및 국제회의 파견 사업은 다음의 <표 6-24>와 같이 IOC 총회 1회 및 ANOC 총회 1회로 총 2건이었다.

표 6-24. 국제체육교류 지원 및 국제회의 파견 사업 현황(2021)

연번	사업명	파견기간	장소
1	제138차 IOC 총회	2021.07.20.~2021.07.21.	일본, 도쿄
2	2021 ANOC 총회	2021.10.24.~2021.10.25.	그리스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 4. 국내의 국제체육 관련기관

국내에서 운영 중인 국제체육 관련 기관은 대표적으로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와 ‘유네스코국제무역센터’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기관의 설립배경 및 목적, 연혁, 조직 및 인력, 주요업무 및 재정현황을 자세히 정리한다.

## 1)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 가. 설립 목적 및 연혁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International Sport Strategy Foundation: ISF)는 국제스포츠의 핵심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하여 체육분야의 정보 접근성을 수월히 하고 국제스포츠 전문가를 꿈꾸는 미래 인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국제스포츠계에서 활동하는 국내 인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위상 제고와 스포츠외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설립 목적을 바탕으로,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는 우리나라 스포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스포츠외교 활동을 통해 스포츠 저개발 국가를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2년 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최초 재단법인 한국스포츠외교연구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국제스포츠 협력활동을 체계화 하고 재단의 목적성을 뚜렷이 하고자 2012년 7월 국제스포츠협력센터(ISC)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국제스포츠협력센터’로 변경된 2012년 10월, 연례 국제 컨퍼런스인 ‘ISC Conference 2012’가 개최되었고, 그 이후로 이 센터는 국제스포츠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6년 국제스포츠 협력활동의 분산화에 따라 대한민국 스포츠외교 역량 강화와 협력활동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유사한 목적을 가진 외교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인 국제스포츠외교재단(iSR)과 기관 통합을 추진하였다. 이후 2016년 7월 1일자로 국제스포츠재단으로 새롭게 조직개편 한 후 전문가 의견 및 여론 수렴을 거쳐 2017년 9월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iSF)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의 연혁은 <표 6-25>와 같다.

표 6-25.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연혁

날짜	회의
2011. 12. 02.	한국스포츠외교연구센터 창립
2012. 07. 23.	법인 명칭 변경(한국스포츠외교연구센터 → 국제스포츠협력센터(ISC))
2012. 10. 29.	ISC Conference 2012 개최
2013. 01. 21.	국제스포츠외교재단(iSR) 설립
2013. 06. 22.	2013 iSR국제포럼 개최
2013. 10. 08.	ISC Conference 2013 개최
2014. 04. 28.	ISC Conference 2014 개최

날짜	회의
2014. 09. 22.	2014 iSR국제포럼 개최
2015. 01. 24.	iSR-ANOC(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2015. 06. 04.	iSR-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15. 09. 04.	iSR아카데미 개원
2015. 09. 04.	2015 iSR국제포럼 개최
2015. 10. 26.	ISC Conference 2015 개최
2015. 12. 07.	iSR-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업무협약 체결
2016. 07. 01.	국제스포츠협력센터-국제스포츠외교재단 통합
2017. 09. 25.	유승민 이사장 취임
2017. 11. 17.	2018평창동계올림픽및패럴림픽조직위원회업무협약체결
2018. 03. 14.	법인명칭변경: (재)국제스포츠재단 → (재)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승인 기준)
2019. 03. 18.	(사)김운용스포츠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19. 05. 0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19. 06. 19.	한국체대 올림픽연구센터 업무협약 체결
2019. 09. 05.	2018 평창 기념재단 업무협약 체결
2019. 09. 10.	경기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2019. 09. 25.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공로 대통령표창 수상
2019. 12. 04.	하나은행 2020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19. 12. 18.	대한장애인체육회 업무협약 체결
2019. 12. 19.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업무협약 체결
2020. 05. 06.	한국체육지도자연맹, 한국복싱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2021. 02. 05.	한국체육학회 업무협약 체결
2021. 02. 24.	대한체육회 업무협약 체결
2021. 06. 22.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2021. 10. 09.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출처: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홈페이지(2021).

#### 나. 조직 및 인력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는 이사장 및 사무처(이사회와 위원회)로 운영된다. 사무처는 1실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F팀은 특별 프로젝트에 따라 별도로 운영한다. <그림 6-1>과 <표 6-26>는 2021년 기준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의 조직도 및 인력 현황이다.



그림 6-1.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조직도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2021)

표 6-26.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인력 현황(2021)

(단위: 명)

구분	이사회	감사	사무처	계
현원	5	1	9	15

※ 출처: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내부자료(2021).

기획홍보팀은 스포츠 국제협력 활동을 위한 기획/홍보 계획 수립, 국제포럼 개최, 국내 관계기관 협력 및 예산 등의 업무를, 국제협력팀은 국제스포츠리더 활동 지원 및 국외 관계 기관 협력, 국제 대회 및 회의 협력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그리고 교육연구팀은 국제스포츠 동향 파악 및 정보·지식 연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다. 재정현황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는 기금 및 기부금 등과 같은 자체수입으로 예산을 구성하고 있다. <표 6-27>은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예산 현황이다.

표 6-27.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예산 현황(2017~2021)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A)	자원별				자체수입비중 (B/A)×100(%)
		국고	기금	적립금	자체수입(B)	
2017	473	-	371	-	102	21.6
2018	417	-	358	-	59	14.1
2019	874	-	808	-	66	7.6
2020	1,069	-	806	-	263	24.6
2021	1,005	-	808	-	197	19.6

※ 출처: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내부자료(2021).

2012년부터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스포츠 정보·지식 사업 및 국제포럼 개최 등 주요사업에 대해 국민체육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기타 운영 및 추가 예산에 관해서는 자체수입을 통해 운영된다. 또한, 2016년 은퇴선수 경력전환 교육프로그램의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예산지원으로 자체수입이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총 10억 5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고, 이중 자체수입비용은 1억 9,700만 원(19.6%)이었다.

#### 라. 주요사업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는 한국 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지식기반 국제네트워크 구축과 국내 관계자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는 혁신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국제스포츠정보 제공, 국제포럼 개최, 국제스포츠협력과 청소년 올림픽 캠프 활동을 진행해왔다. ‘청소년 올림픽 캠프’는 스포츠 소외 지역 및 계층을 포함한 전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올림픽 가치를 교육하고 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청소년 개발 및 평화를 도모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스포츠 영향력과 외교적 입지 공고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국제포럼’은 국내 스포츠 관계자들과 국제스포츠 주요 인사 간 네트워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적 견해 공유의 시·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2년부터 진행한 연례 포럼이다. 매년 최대의 국제스포츠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IOC위원 및 OCA관계자 등 국내·외 주요인사와 분야별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 국내 관계자들과 학생 및 일반인 등과 견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IOC의 공식 후원을 받았고, 다수의 국제스포츠 인사들이 이 포럼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국제스포츠협력 및 연구 활동’의 경우에는 국제스포츠 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 및 국제스포츠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스포츠 외교 활동 상호 협력과 레거시 연구, 전문인력 파견 등을 통해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 2)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 가. 설립목적 및 연혁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for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 ICM)는 2015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체육 기구다. 본 센터는 유네스코 인문사회 과학 분야 청소년스포츠와 산하에 설립된 유일한 무예 분야 카테고리2 기구로서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무예의 역할 및 기여에 대한 연구와 지식의 공유
- 무예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청소년의 발달, 지역사회 참여 증진
- 세계무예에 관한 기록과 자료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자료처리센터의 설립과 운영
- 무예를 통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증진
-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

이와 더불어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는 전 세계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데, 특정 참가국 및 참가자 선발이 필요할 경우 유네스코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 평등과 같은 국제 의제 혹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집중전략과의 정합성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업을 진행한다. <표 6-27>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의 연혁이다.

#### 표 6-28.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연혁

- 2011.05. 센터 설립 제안서 제출(문체부 → 외교부 → 유네스코)
- 2012.04. 센터 명칭 협의 완료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 2012.05. 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실시(유네스코 본부)
- 2013.04. 제190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센터 설립 의제 심의 의결(191 EX/Decision 14 VI)
- 2013.11. 제37차 유네스코 총회 센터 설립 결의안 승인(37 C/Resolution 41)
- 2015.12.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센터 설립 협정(조약 제2267호) 체결
- 2016.12. 재단법인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설립 등기 및 제1차 이사회 개최
- 2017.11. 전통무예진흥법에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설립’ 조항 신설
- 2019.11.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CIGEPS(체육 교육과 스포츠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자문 기구 자격 획득
- 2020.11.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신축개관

※ 출처: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웹사이트(2021).

#### 나. 조직 및 인력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의 조직은 정관에 의거,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와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으로 나뉘며 <그림 6-2>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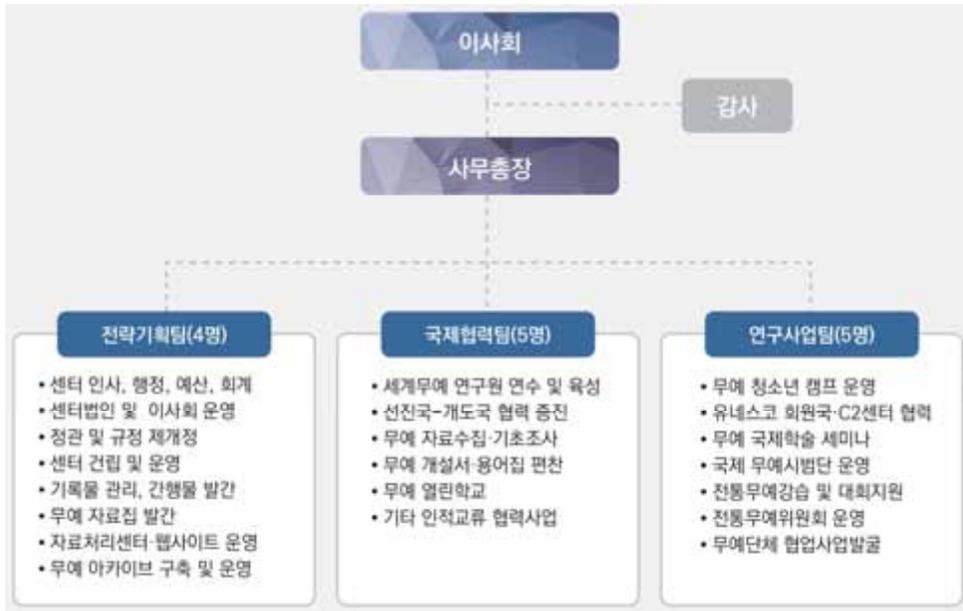


그림 6-2.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조직도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2021)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는 크게 전략기획팀, 국제협력팀, 연구사업팀 등 3팀 체계로 운영된다. 전략기획팀은 인사, 행정, 예산, 회계, 자문단 및 이사회 운영, 기록물 관리, 센터 건립 사업, 간행물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협력팀은 세계무예 연구원 연수 및 육성, 무예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 무예 공동체 운영 지원과 열린 학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구사업팀은 청소년 캠프, 무예 콘텐츠 사업, 교류 사업과 기타 연구 및 지식공유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021년 인력 현황은 <표 6-29>와 같다.

표 6-29.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인력 현황(2021)

(단위: 명)

구분	사무총장(1급)	본부장(2급)	팀장(3급)	팀원(4~7급)	계
정원	1	2	4	11	18
현원	1	-	3	11	15

※ 출처: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내부자료(2021).

#### 다. 주요사업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는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표 6-30>은 센터의 설립목적별 사업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여준다.

표 6-30.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설립목적 및 사업기능(2021)

설립목적	사업기능
연구 및 지식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는 다음 사항에 관한 연구 및 지식공유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와 화해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무예의 역할</li> <li>- 무예가 젊은 남녀의 건강 발달과 그들의 개인적·사회적 발달에 기여</li> <li>- 폭력 방지에 대한 무예의 기여</li> <li>- 지역별 젊은 남녀의 무예에 대한 인식과 수용 태도 관련 연구, 무예가 건강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li> <li>- 무예에서의 여성의 역할</li> </ul> </li> <li>• 젊은 연구원의 무예 연구 장려</li> </ul>
청소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예 철학, 문화적 가치와 심신을 단련하는 기예가 포함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청소년의 발달, 지도력 향상과 사회 공동체에의 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자원봉사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청소년을 위한 무예 훈련 세미나 및 여름학교 실시</li> <li>- 무예 '열린 학교', 공동체와 문화센터 설립 지원</li> <li>- 무예 관련 국제 세미나 및 학술회의의 조직</li> <li>- 세계 무예 청소년 모임 조직</li> </ul> </li> </ul>
무예 정보처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무예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수집, 보관 및 전파하는 자료처리센터 설립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관련 자료의 수집</li> <li>-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나 웹사이트 개발과 운영</li> <li>- 온라인 소식지를 포함한 정기적인 정보지 발행</li> <li>- 세계 무예도서관 겸 박물관 운영에 참여</li> <li>- 국제 무예 축제 및 박람회 개최 지원</li> </ul> </li> <li>•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계 전통 무예 개설서 및 용어집을 편찬</li> </ul>
선진국-개발도상국 협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소지역의 젊은 남녀를 전통 무예 활동에 참여시킴</li> <li>•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앞서 적시된 연구 요소에 기반을 둔 사업을 개발</li> </ul>

※ 출처: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내부자료(2021).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센터 설립 협정(조약 제2267호) 및 정관(2018.12. 개정)

라. 재정현황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는 2016년 5억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2021년에는 약 23억으로 예산이 증가하였다. <표 6-31>은 센터의 2021년 재정 현황이다.

표 6-31.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예산 현황(2017~2021)

(단위: 백만 원, %)

연도	자원별					합계
	국고(기금)	도비	시비	소계(국고(기금)+도비+시비)	자체수입	
2017	545	273	545	1,363	8	1,371
2018	703	351	703	1,757	6	1,763

연도	자원별					합계
	국고 (기금)	도비	시비	소계 (국고(기금)+도비+시비)	자체수입	
2019	703	351	703	1,757	4.3	1,761.3
2020	777	688.5	887	2,352.5	-	2,352.5
2021	777	688.5	877	2,342.5	-	2,342.5

※ 출처: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내부자료(2021).

〈표 6-31〉과 같이 2021년 예산은 총 23억 4,250만 원으로서, 대부분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에서 지원되고, 도비와 시비가 추가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년 개최되는 정기 의사회에서 의결되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자체 수업 등으로 구성된다.

### 3) 올림픽연구센터

#### 가. 강원대학교 올림픽연구센터

강원대학교 올림픽연구센터는 제1호 승인기관으로 2016년 9월에 올림픽 관련 연구를 통한 올림픽 운동의 확산, 올림픽 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 올림픽 분야 인재 양성과 국제스포츠이벤트 개최 타당성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7년 8월 ‘아시아스포츠 경영학회’를 개최하고 2018년 1월 ‘국제 스포츠 비즈니스 심포지엄’을 독일 마인츠대학 올림픽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사무처는 1실 4팀으로 기획팀, 연구팀, 교육팀 및 대외협력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팀은 센터 운영 총괄, 재정 확보와 사업 기획과 평가 등의 업무를, 연구팀은 올림픽 운동 연구와 올림픽 관련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팀은 연계전공 교육과정의 운영과 올림픽 관련 강좌 기획 등의 업무를, 대외협력팀은 타 올림픽 연구센터와 교류, 국내·외 학회와 협력, 올림픽 운동 관련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나. 한국체육대학교 올림픽연구센터

한국체육대학교 올림픽연구센터는 제2호 승인기관으로 2018년 8월에 올림픽과 올림픽 운동에 대한 지식 연구, 올림픽 레거시 유지와 연구, 올림픽 개최 이후 사회발전 연구, 국제 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 기록물 유지, 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 양성체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설립 승인을 받았다. 이어 11월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연구센터로

등재하고 올림픽 연구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대한체육회와 강원대학교 올림픽연구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2019년 6월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림픽 운동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 역량과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으며, 2021년 국제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았다. 사무처는 학술활동부, 교육활동부와 운영부의 1실 3부로 운영하고,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학문후속세대위원회의 3개 위원회는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학술활동부는 자체연구과제 수행, 외부연구과제 수행, 국내·외 스포츠정보 수집과 성과 확산 활동 등의 업무를 하고 교육활동부는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 교육 운영과 기부를 주요 업무로 한다. 운영부는 학술과 교육활동 지원, 대내·외 협력활동 등의 업무를 통해 올림픽연구센터 운영 관련 지원을 한다.

## 제3절 국제체육계 동향 및 아젠다

### 1. 세계 주요국 체육정책 동향

세계 주요국의 체육정책 동향을 개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체육 정책 및 지원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다섯 개 국가를 중심으로 <표 6-32>에 체육담당부처 현황 및 역할을 정리하였다.

표 6-32. 세계 주요국 체육담당부처 및 역할

국가	체육담당부처	역할
미국	대통령체력·스포츠·영양자문위원회	생활·학교체육 관련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제시
	미국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	전문체육 육성 핵심 역할 담당, 국가올림픽위원회 운영, 장애인올림픽, 판아메리카대회 운영, 재정 독립 운영, 올림픽·패럴림픽트레이닝센터 운영
	전미대학체육협회	학교체육 담당기관, 미국/캐나다 대학 운동경기 프로그램 관장, 대학스포츠에서 선수의 안전과 공정성 증진 및 선수 학습권 보장 등 환경 조성
	아마추어경기연맹	YMCA, YWCA 등 공동체 기반 체육조직으로 생활체육 담당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스포츠시설안전관리국 운영 지원, UK 반도핑 기구 운영 지원, UK스포츠·스포츠잉글랜드 지원, 연방스포츠 위원회 운영 감독
	UK스포츠	국제체육 참가 관리, 전문체육 관리 운영
	스포츠잉글랜드	생활체육 지원 계획 수립, 복권기금 운영, 생활체육시설 제공 및 관리, 생활체육실태 조사
프랑스	체육부	하위 체육 조직 지도 및 감독, 체육 단체 재정지원
	국가체육기구	체육 재정 지원 총괄(체육과학, 체육고용, 여가체육 개발, 전문체육훈련, 건강체육, 학교체육)하고 기존 국립체육개발센터(National Center for the Development of Sports: CNDS) 역할 수행
	국립스포츠연구원	체육분야 개발(체육인 건강 보호, 스포츠윤리 준수,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시설 네트워크 관리
	국가체육위원회	체육부 장관을 중심으로 국무위원 7명, 지방자치단체장 3명과 체육 연관기관장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2013년 1월 법령에 따라 설치되고 국가체육발전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자문
	프랑스올림픽스포츠위원회	국제체육(올림픽, 비올림픽) 지원 및 참가 관리, 전문체육 관리 운영
	프랑스패럴림픽스포츠위원회	국제체육(패럴림픽) 지원 및 참가 관리, 전문체육 관리 운영, 프랑스올림픽스포츠위원회 하위 조직

국가	체육담당부처	역할
독일	연방 내무부	스포츠 정책 및 재정 지원 담당: 연방정부 내 스포츠 관련 주요 의제 조정(전문 경기 시설 건설, 스포츠 의·과학 연구, 장애인 엘리트스포츠 진흥 등), 연방 경찰 스포츠 선수단을 통한 엘리트스포츠 육성, 연방스포츠과학연구소 관리
	독일올림픽체육회	스포츠 조직 거버넌스 담당: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엘리트스포츠의 경기력 강화, 사회 전반에 스포츠의 가치 확산
일본	문부과학성 스포츠청	스포츠기본계획 수립, 체육단체 재정지원, 학교체육, 생활체육, 경기스포츠 관리, 일본 스포츠진흥센터 운영
	일본체육협회	국민체육대회 개최, 지역체육 기반정비, 스포츠클럽 육성, 스포츠지도자 육성, 국민체육 표창사업, 국제교류사업, 체육소년단 육성
	일본스포츠위원회	국립체육경기장 운영, 체육 보급·진흥, 학교안전지원, 스포츠과학·의학·정보연구, 내셔널트레이닝센터의 관리·운영업무, 체육진흥투표, 체육지도자 양성 및 조사연구

※ 출처: 한국스포츠개발원(2015). 해외 스포츠정책 동향 분석.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22). 글로벌스포츠프리즘 제36-41호.

## 1) 미국

미국의 체육은 연방제도 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분리 운영된다. 미국 정부는 주로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교육부와 대통령 체력·스포츠·영양 자문위원회(The President's Council on Fitness, Sports and Nutrition)의 정책 지침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라 주정부 조직이 학교체육 정책의 수립을 지방정부가 비영리 민간조직인 보건체육지도자사회(Society of Health and Physical Educators)와 함께 학교체육 정책 이행의 일환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

생활체육은 내무부의 대통령 체력·스포츠·영양 자문위원회의 프로그램과 정책지침을 중심으로 실행된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정책지침을 토대로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정책을 실행하고, YMCA, YWCA 등 공동체 기반의 체육조직인 아마추어경기연맹에서 생활체육을 담당한다. 학교체육은 전미대학체육협회 및 전미전문대학체육협회에서 담당하며, 특히 미국과 캐나다 대학 운동경기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대학스포츠에서의 선수의 안전과 공정성 증진 및 선수 학습권 보장 등의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한다.

전문체육의 경우, 정부 보조금 없이 미국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nited States Olympic and Paralympic Committee: USOPC)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이곳은 미국아마추어경기연맹(Amateur Athletic Union: AAU), 미국대학경기협회(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와 연계하여 전문체육을 관리한다. 또한 미국 내 스포츠 관련 조직에 대한 승인, 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판아메리카대회 같은 국제대회 참여 지원도 담당한다.

## 2) 영국

영국의 체육정책은 중앙 행정부인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가 관장하며, 복권기금의 재정 지원은 산하 기관, 교육부와 보건부 및 기타 공공기관과 연계된다. 먼저 영국의 생활체육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 각 위임정부의 스포츠키관인 스포츠스코틀랜드(Sport Scotland), 스포츠웨일즈(Sport Wales), 스포츠북아일랜드(Sport Northern Ireland)와 스포츠잉글랜드(Sport England)에서 담당한다. 이 중 스포츠잉글랜드는 총 43개 지방 스포츠 파트너십, 지방정부, 경기연맹단체, 대학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정책 및 사업을 운영한다. 각 지방 구역에 설치된 지방 스포츠 파트너십은 관할지역 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역스포츠 클럽을 지원한다.

전문체육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산하기관인 UK스포츠(UK Sport)를 중심으로 스포츠시설안전국(Sports Grounds Safety Authority), 영국반도핑국(UK Anti-doping), 영국스포츠연구소(English Institute of Sport), 경기연맹단체와 연계된다.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및 UK스포츠는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전문선수 육성과 관련한 정책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스포츠시설안전국에서 전문체육 시설 안전관리, 영국반도핑국에서 전문선수 반도핑 교육과 규제, 영국스포츠연구소에서 전문선수 경기력향상 연구, 경기연맹단체에서 전문선수와 꿈나무육성 사업을 각각 전담한다.

학교체육은 스포츠잉글랜드와 청소년스포츠재단(Youth Sport Trust), 영국대학체육연맹(British Universities and Colleges Sport), 초·중등 교육기관과 영국체육교육원(UK Coaching)의 협력을 통해 학교환경에서 체육의 지속성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스포츠재단은 스포츠잉글랜드의 지원을 받아 전국학교체육대회(School Games)를 매년 개최한다. 전국학교체육대회는 생활체육,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여 꿈나무육성에 기여하는데, 대회의 3단계인 광역 단위 대회에서 경기종목단체들이 유능한 선수들을 선발하고 자체 훈련 과정으로 편입시켜 마지막 4단계인 전국대회에 출전함으로써 우수 학생선수가 종목별 전문체육 선수로 성장하게 된다. 장애인체육에서도 전문선수 육성은 UK스포츠가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스포츠잉글랜드가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중앙정부와 4개 위임정부 간 생활체육,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을 조정하기 위해 스포츠내각(Sport Cabinet)을 설치하고 중앙정부와 각 위임정부의 체육장관을 임원으로

구성하여 일관성 있는 영국의 체육정책의 이행을 추진한다.

### 3) 프랑스

프랑스의 체육은 중앙행정부인 체육부(Ministry of Sports)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하위 체육조직을 지도 및 감독한다. 국가체육위원회(Conseil National du Sport)는 체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연관기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국가체육발전과 국민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정책과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체육부 하위 조직인 국립스포츠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Sports, Expertise and Performance: INSEP)은 체육분야 개발을 위한 전문 체육 훈련시설 관리와 확장을 위한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프랑스 체육의 재정적 지원은 국가체육기구(Agence Nationale du Sport: ANS)를 통해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국가올림픽위원회인 프랑스올림픽스포츠위원회(Comite National Olympic et Sportif Francais: CNOSF)는 스포츠법(Code du Sport)의 제1장 제4항에 의거해 모든 올림픽과 비(非)올림픽 경기단체를 통제하고 프랑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연계하는 조직으로, 프랑스 전문스포츠를 대표하고 올림픽 스포츠 거버넌스를 주도한다. 프랑스올림픽스포츠위원회는 92개 올림픽 공식인정 경기단체와 61개 비(非)올림픽 경기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은 국가체육위원회의 정책 자문과 프랑스패럴림픽스포츠위원회(Comite Paralympique et Sportif Francis: CPSF)의 경기단체 관리로 39개 패럴림픽 종목을 지원한다.

프랑스의 생활체육,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의 정책은 국가체육위원회가 결정한다. 프랑스 생활체육 정책은 체육부 산하 지원센터(‘체육과 건강’, ‘체육교육 및 장애인 체육’, ‘체육 다양성과 시민권’, ‘체육과 자연’)와 지방정부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학교체육 정책은 체육부와 교육부의 협력 하에 추진되며 학교체육관련 연맹(‘초등학교체육연합’, ‘학교체육연합’, ‘프랑스대학교육연합’, ‘자율교육총연합’, ‘학교단체 전국연합’)에서 유지 및 관리한다.

### 4) 독일

독일체육은 크게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와 독일올림픽위원회(Deutscher Olympischer Sportbund: DOSB)에서 관리된다. 연방 내무부(Bundes Ministerium des Innen: BMI)와 지방 정부부처(문화부 또는 내무부)가 체육업무를 관리한다. 독일의 경우 체육전담 행정부서는

없으며 독일 지방자치 특성상 체육행정 구조는 위계적 하향식 체제보다 각 지방의 체육장관 회의(Conference of Ministers of Sports: SMK)를 중심으로 독립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올림픽체육회는 산하 종목별 체육회원단체들을 대변하며 스포츠 조직의 전반적인 거버넌스를 담당한다. 또한 내무부는 체육 정책 및 재정지원에 대한 전반적 업무를 조율한다.

독일 생활체육은 주정부에서 주도하며 근간은 스포츠클럽이다. 독일 전국에 약 91,000개 클럽은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여가를 위한 공공복지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체육 정책은 연방 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에서 담당하며, 스포츠클럽이나 학교체육 안전은 장관회의에서 주로 논의된다. 전문체육은 독일올림픽 체육회 산하 체육연맹들에 의해 운영되며, 내무부에서 이들 경기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당한다. 독일올림픽스포츠연합 산하 올림픽체육위원회에서는 전문체육 발전에 있어서 청소년 체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큼을 인식하고, ‘청소년 체육 계획 2020’을 만들어 학교체육과 전문체육분야의 협업을 강조했다. 주정부와 독일올림픽스포츠연합은 학교 학생 선수가 학업과 체육을 병행하면서 엘리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 장애인 체육은 독일올림픽스포츠연합 산하 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서 총괄한다. 독일 장애인체육은 장애인 엘리트체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활체육과 재활 및 병약자를 위한 체육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 5) 일본

일본 체육행정은 문부과학성(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文部科学省) 산하 설립된 스포츠청에서 총괄한다. 스포츠청은 스포츠 기본계획 수립, 체육 단체 재정지원, 학교체육, 생활체육, 경기스포츠를 담당하며, 기타 체육 행정은 다른 행정조직에서 관리한다. 후생노동성에서는 국민건강 체육 및 장애인과 고령자 체육 진흥정책을 담당하고, 외무성에서는 국제체육교류, 경제산업성에서는 피트니스산업 및 스포츠용품업 등 스포츠서비스산업을 담당한다. 행정부와 함께 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 위원회, 일본올림픽위원회 및 일본체육협회, 일본레크리에이션협회 등이 각 경기단체 및 지방 체육가맹단체를 통할하고, 국제경기력 향상, 체육지도자 양성,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 육성과 청소년 체력향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스포츠위원회는 국립경기장 등의 스포츠 시설의 운영, 학교 아동·청소년 체육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및 건강 유지증진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일본 전문체육은 스포츠청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개별 경기종목단체에서 실제 운영한다. 스포츠청 신설로 일본올림픽위원회의 전문체육 운영 기능은 축소되었다. 생활체육의 진흥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 일본체육협회이다. 다만 스포츠청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유럽형 모델인 종합형 지역체육 클럽제도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학교체육정책은 문부과학성의 소관이다. 최근 문부과학성은 학교체육의 교원 수 감소와 전문지도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의 체육지도자를 학교로 초빙하는 '체육지도자 은행 제도'를 시행한다. 일본 장애인체육은 장애인체육협회에서 총괄하며, 중앙 정부와 장애인체육협회는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을 통해 장애인 체육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다.

## 2. 국제체육기구

국제체육기구는 대표적으로 전 세계 체육기구와 종목별·대륙별 세계대회를 관장하는 체육기구로 나누어 분류한다. <표 6-33>은 국제체육기구의 종류와 그 역할을 개괄한 것이다.

표 6-33. 국제체육기구 및 단체 주요 역할

구분	기구 및 단체명	역할
국제 체육 기구	국제올림픽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 동·하계(청소년)올림픽 관장 -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국제경기연맹(IFs) 등 각종 체육단체 총괄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 ANOC)	- IOC 기맹국 NOC(국가올림픽위원회) 및 대륙별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괄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lob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GAISF)	- 종목별 국제경기연맹(IFs) 총괄
	국제대학스포츠연맹 (Federation Internationale du Sport Universitaire: FISU)	- 동·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관장 - 기맹국 대학체육연맹 총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	- 동·하계 장애인올림픽대회 관장
경기 연맹	국제경기연맹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IFs)	-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관장
	아시아경기연맹 (Asian Federation: AF)	- 종목별 아시아선수권대회 관장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대표적인 국제체육기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 ANOC) 및 국제대학체육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u Sport Universitaire: FISU)을 들 수 있다. 종목별 세계대회 등을 관장하는 기구는 종목별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IFs)과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lob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GAISF)가 있다.

### 1)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는 피에르 드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이 1894년 6월 23일, 국제 비정부기구로 설립하여 현재 206개국(우리나라 1947년 가입)을 회원국으로 보유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 스포츠기구이다. 또한, 국가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과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식후원사, 중계후원사와 국제연합 기관과 함께 올림픽대회의 개최를 주도하고 올림픽 운동 하에 모든 국가 간, 선수 간의 우호 강화에 힘쓰며 스포츠를 통한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IOC는 올림픽 헌장 및 IOC 규정을 준수하고, 올림픽 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IOC 위원의 기본의무로 규정한다. 또한 IOC 위원은 총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자국 또는 소속 스포츠 조직 내에서 IOC 프로그램의 이행을 감독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IOC 위원은 최대 115명(개인 자격 70명, 국가올림픽위원회 자격 15명, 국제경기연맹 자격 15명, 선수 자격 15명)으로 구성된다. IOC는 올림픽 헌장 제16조 1.7항에서 위원 임기를 8년으로 정하였으며, 1회 또는 그 이상 횟수의 재선이 가능하도록 명시한다. 또한 IOC 위원은 본인 의지에 따라 IOC 위원장에게 사직서 서면 제출을 통해 임기를 중단할 수도 있다. NOC 자격, IFs 자격의 IOC 위원의 경우, IOC 위원에 선출되었을 당시 수행하였던 기관의 회장 및 임원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될 경우, IOC 위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수 자격 IOC 위원은 IOC 위원임과 동시에 IOC의 분과위원회인 선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 2)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는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회원국인 206개 국가올림픽위원회

(NOC)의 이익을 대변하고 올림픽 가치 확산을 지원한다. <표 6-34>는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의 대륙별 현황을 정리한 자료이다.

표 6-34.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대륙별 현황

대륙별 분류	설립연도	본부 소재
아프리카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 of Africa) ( <a href="http://www.africa-olympic.org/">http://www.africa-olympic.org/</a> )	1981	나이지리아 아부자
범아메리카스포츠기구(Pan American Sports Organization: Panam Sports) ( <a href="http://www.panamsports.org/">http://www.panamsports.org/</a> )	1940	멕시코 멕시코시티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 <a href="http://www.ocasia.org/">http://www.ocasia.org/</a> )	1982	쿠웨이트 하왈리
오세아니아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Oceania National Olympic Committees) ( <a href="https://www.oceanianoc.org/">https://www.oceanianoc.org/</a> )	1981	미국령 괌
유럽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European Olympic Committees) ( <a href="http://www.eurolympic.org/">http://www.eurolympic.org/</a> )	1968	이탈리아 로마

※ 출처: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홈페이지(2021)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는 5개의 대륙별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이 연합회 중 하나에 가입되어 있다. 대륙별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는 동·하계 대륙별 경기 대회와 국가올림픽위원회를 총괄한다.

### 3)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OCA)는 1982년 12월 5일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쿠웨이트 하왈리에 위치하고 있다. 아시아 대륙에 있는 국가올림픽위원회 45개 회원국들의 연합회로 기존의 아시아경기대회조직연맹(Asian Games Federation: AGF)을 확대·개편한 기구이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지역별 현황은 <표 6-35>와 같다.

표 6-35.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지역별 현황

지역별 분류	국가
동아시아(8개국)	대한민국, 북한,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몽골
동남아시아(11개국)	브루나이, 미얀마,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동티모르
남아시아(8개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서아시아(13개국)	이란, 이라크, 예멘,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아시아(5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출처: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홈페이지(2021).

회장은 쿠웨이트의 셰이크 아마드 알-파하드 알-사바(Sheikh Ahmad Al-Fahad Al-Sabah)이었으나 2021년 사임하면서 현재는 인도의 라자 란디르 싱(Raja Randhir SINGH)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50명으로 임기는 4년으로 재선이 가능하다. 회장 1명, 회장 직무대행 1명, 명예종신 부회장 2명, 부회장 14명, 명예 부회장 2명, 분과위원회 위원장 18명, 집행위원 11명, 사무국장 겸 기술국장 1명으로 구성된다(2021년 12월 말 기준).

#### 4) 국제대학스포츠연맹

1923년 프랑스 파리에서 최초로 학생들만을 위한 세계대학게임이 개최된 이후, 1949년에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대학스포츠연맹(International University Sports Federation: FISU)이 설립되었다. 1959년에 ‘유니버시아드’라 불리는 대회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표 6-36>은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의 세부내용이다.

표 6-36.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2019~2023)

직책	이름	국가
회장(1)	Oleg MATYTSIN	러시아
부회장(5)	Leonz EDER (수석부회장)	스위스
	Luciano CABRAL	브라질
	Marian DYMALSKI	폴란드
	Penninah ALIGAWESA KABENGE	우간다
	Zhen SHEN	중국
회계감사(1)	Bayasgalan DANZANDORJ	몽골
집행위원(16)	Verena BURK (선임집행위원)	독일
	Omar AL-HAI	아랍에미리트
	Martin DOULTON	호주
집행위원(16)	Kenny CHOW	홍콩
	Gabriel KOTCHOFA	베냉
	Lorenzo LENTINI	이탈리아
	Hisato IGARASHI	일본
	Delise O'MEALLY	미국
	Rosaura MENDEZ GAMBOA	코스타리카
	Emiliano Andres OJEA	아르헨티나

직책		이름	국가
집행위원(16)		Leopold Germain SENHOR	세네갈
		Ching Yu TSENG	대만
		Kemal TAMER	터키
		Marko ZUNIC	크로아티아
		Byong Jin YOU	한국
		Kairat ZAKIRYANOV	카자흐스탄
대륙별 대학스포츠협회 대표	오세아니아	David SCHMUDE	호주
	유럽	Adam ROCZEK	폴란드
	아프리카	Nomsa MAHLANGU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시아	Yanqing XUE	중국
	미주	Alim Rachid MALUF NETO	브라질

※ 출처: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홈페이지(2021).

FISU의 주된 목표는 만 17세부터 만 28세까지 학생들이 대학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생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및 국가 나아가 국제 수준에서 미래의 지도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FISU는 매년 4만 대학기관의 1억 8천만 명의 대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관문으로서 스포츠 이해관계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2016년 3월, 10년 간 운영될 글로벌 전략 위원회를 창설하고 2017년 8월, 2017 대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기 전날 개최된 총회에서 글로벌 전략(FISU Global Strategy 2027)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총회에서 공식 전략으로 채택되어 국제대학생스포츠의 10년 전략이 마련되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하계유니버시아드)는 매 홀수 년에 12일간 개최하여 150개국에서 1만 명의 대학생이 15개 필수종목과 3개 시험 종목에서,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동계유니버시아드)는 매 홀수 년에 11일간 개최하여 50개국에서 2,500명의 대학생이 9개 필수 종목과 3개 시험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FISU 회원 협회(FISU Member Associations)의 회장은 러시아 출신의 Oleg MATYTSIN이고, 집행위원회는 28명으로 임기는 4년이며 재선이 가능하다. 회장 1명, 부회장 5명(수석부회장 1명 포함), 회계감사 1명, 집행위원 16명(수석집행위원 1명 포함), 대륙별 대학스포츠협회 대표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병진 위원은 2015년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제34차 FISU 총회에서 최다득표로 집행위원에 선출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전임 김종량 FISU 집행위원(1999~2015)에 이어 연속으로 집행위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 5)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lob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GAISF)는 올림픽대회 및 비올림픽대회 종목 국제경기연맹, 종합경기대회 주최 연맹, 스포츠 관련 국제기구 등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다. 본 연합회의 회원은 <표 6-37>처럼 구성되었다.

표 6-37.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회원 현황

분류	회원 수
하계올림픽국제경기연맹연합 (Association of Summer Olympic International Federations: ASOIF members)	28개
동계올림픽국제경기연맹연합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Olympic Winter Sports Federations: AIOWF Members)	7개
국제올림픽위원회인정종목연맹연합 (Association of IOC Recognised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ARISF Members)	42개
국제올림픽위원회비인정종목연맹연합 (Alliance of Independent Recognised Members of Sport: AIMS Members)	20개
준회원 (Associate Members)	24개

※ 주: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홈페이지 게시 기준(2022.06.02.).

※ 출처: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홈페이지(2022).

1967년에 창설된 이곳은 원래 명칭이 스포츠어코드(SportAccord)였으나, 2017년 4월 덴마크에서 열린 총회에서 지금의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로 변경하였다. 현재 소재지는 스위스 로잔이고, 회장은 이탈리아 출신의 라파엘 치울리(Raffaele Chiulli)이다. 연합회 상임위원회는 하계올림픽국제경기연맹연합(ASOIF) 3명, 동계올림픽국제경기연맹연합(AIOWF) 2명, 국제올림픽위원회인정종목연맹연합(ARISF) 2명, 국제올림픽위원회비인정종목연맹연합(AIMS) 1명과 준회원(Associate Members) 1명으로 구성된다.

## 6) 국제경기연맹 임원 현황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IFs)은 올림픽 정식종목이면서 종목별 세계대회를 주관한다. 회장직은 유럽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종목별로 보면 이탈리아 5개 종목, 스웨덴이 4개 종목, 영국과 러시아가 각 3개 종목을 회장직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1개 종목(태권도)에서 회장직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의 <표 6-38>은 하계·동계올림픽대회 정식종목별 국제경기연맹 회장, <표 6-39>는 부회장 및 사무총장 현황이다.

표 6-38. 하계·동계올림픽대회 정식종목별 국제경기연맹 회장 현황(2021)

구분	종목	기관명 (영문약자)	회장명	회장국적	국제경기연맹 웹사이트
하계	육상	WA	Mr. Sebastian COE	영국	<a href="https://www.worldathletics.org/">https://www.worldathletics.org/</a>
	조정	FISA	Mr. Jean-Christophe	프랑스	<a href="http://www.worldrowing.com">http://www.worldrowing.com</a>
	배드민턴	BWF	Mr. Poul-Erik HOYER	덴마크	<a href="http://bwfbadminton.com">http://bwfbadminton.com</a>
	농구	FIBA	Mr. Hamane NIANG	말리	<a href="http://www.fiba.basketball">http://www.fiba.basketball</a>
	복싱	AIBA	Mr. Umar KREMLEV	러시아	<a href="https://www.iba.sport/">https://www.iba.sport/</a>
	카누	ICF	Mr. Thomas Konietzko	독일	<a href="http://www.canoeicf.com">http://www.canoeicf.com</a>
	사이클	UCI	Mr. David LAPPARTIENT	프랑스	<a href="http://www.uci.ch">http://www.uci.ch</a>
	펜싱	FIE	Mr. Alisher USMANOV	러시아	<a href="http://www.fie.org">http://www.fie.org</a>
	승마	FEI	Mr. Ingmar DE VOS	벨기에	<a href="http://www.fei.org">http://www.fei.org</a>
	축구	FIFA	Mr. Giovanni INFANTINO	이탈리아	<a href="http://www.fifa.com">http://www.fifa.com</a>
	체조	FIG	Mr. Morinari WATANABE	일본	<a href="https://www.gymnastics.sport">https://www.gymnastics.sport</a>
	역도	IWF	Mr. Michael IRANI	영국	<a href="http://www.iwf.sport/">http://www.iwf.sport/</a>
	핸드볼	IHF	Dr. Hassan MOUSTAFA	이집트	<a href="http://www.ihf.info">http://www.ihf.info</a>
	하키	FIH	Mr. Narinder BATRA	인도	<a href="http://www.fih.ch">http://www.fih.ch</a>
	유도	IJF	Mr. Marius VIZER	오스트리아	<a href="https://www.ijf.org">https://www.ijf.org</a>
	근대5종	UIPM	Dr. Klaus SCHORMANN	독일	<a href="http://www.uipmworld.org">http://www.uipmworld.org</a>
	레슬링	UWW	Mr. Nenad LALOVIC	세르비아	<a href="http://unitedworldwrestling.org">http://unitedworldwrestling.org</a>
	수영	FINA	Mr. Husain AL MUSALLAM	쿠웨이트	<a href="http://www.fina.org">http://www.fina.org</a>
	태권도	WT	Dr. Chungwon CHOUE	대한민국	<a href="http://www.worldtaekwondofederation.net">http://www.worldtaekwondofederation.net</a>
	테니스	ITF	Mr. David HAGGERTY	미국	<a href="http://www.itftennis.com">http://www.itftennis.com</a>
	탁구	ITTF	Ms. Petra SÖRLING	스웨덴	<a href="http://www.ittf.com">http://www.ittf.com</a>
	사격	ISSF	Mr. Vladimir LISIN	러시아	<a href="http://www.issf-sports.org">http://www.issf-sports.org</a>
	양궁	WA	Dr. Ugur ERDENER	터키	<a href="http://www.worldarchery.org">http://www.worldarchery.org</a>
	트라이애슬론	ITU	Mrs. Marisol CASADO	스페인	<a href="http://www.triathlon.org">http://www.triathlon.org</a>
	요트	WS	Mr. Quanhai LI	중국	<a href="http://www.sailing.org">http://www.sailing.org</a>
	배구	FIVB	Mr. Ary GRACA	브라질	<a href="http://www.fivb.org">http://www.fivb.org</a>
	골프	IGF	Ms. Annika Sörenstam	스웨덴	<a href="http://www.igfgolf.org">http://www.igfgolf.org</a>
	럭비	WR	Mr. Bill BEAUMONTT	영국	<a href="http://www.worldrugby.org">http://www.worldrugby.org</a>
동계	바이애슬론	IBU	Mr. Olleh DAHLIN	스웨덴	<a href="http://www.biathlonworld.com">http://www.biathlonworld.com</a>
	봅슬레이스켈레톤	IBSF	Mr. Ivo FERRIANI	이탈리아	<a href="http://www.ibsf.org/en">http://www.ibsf.org/en</a>

구분	종목	기관명 (영문약자)	회장명	회장국적	국제경기연맹 웹사이트
동계	컬링	WCF	Mrs. Kate CAITHNESS	스코틀랜드	http://www.worldcurling.org
	아이스하키	IIHF	Mr. Luc Tardif	캐나다	https://www.iihf.com/en/home
	루지	FIL	Mr. Einars FOGELIS	라트비아	http://www.fil-luge.org/en/home
	빙상	ISU	Mr. Jan DIJKEMA	네덜란드	http://www.isu.org
	스키	FIS	Mr. Johan ELIASCH	스웨덴	http://www.fis-ski.com
인정 종목	롤러	WS	Mr. Sabatino ARACU	이탈리아	http://www.worldskate.org
	스포츠클라이밍	IFSC	Mr. Marco Maria SCOLARIS	이탈리아	https://www.ifsc-climbing.org
	서핑	ISA	Mr. Fernando AGUERRE	아르헨티나	http://www.isasurf.org
	야구소프트볼	WBSC	Mr. Riccardo FRACCARI	이탈리아	http://www.wbsc.org/ko
	카라테	WKF	Mr. Antonio ESPINÓS	스페인	https://www.wkf.net

※ 출처: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홈페이지(2021). 국제연맹 웹사이트(2021).

표 6-39. 하계·동계올림픽대회 정식종목 국제경기연맹 부회장 및 사무총장 현황(2021)

구분	종목	기관명 (영문약자)	부회장국	부회장국 인원(명)	사무총장국
하계	육상	WA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노퍽섬, 콜롬비아	4	-
	조정	FISA	캐나다	1	-
	배드민턴	BWF	세이셸, 포르투갈, 레바논, 호주, 자메이카, 스위스	6	덴마크
	농구	FIBA	-	-	그리스
	복싱	AIBA	-	-	-
	카누	ICF	아르헨티나, 중국, 스페인	3	-
	사이클	UCI	이집트, 체코,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	4	-
	펜싱	FIE	라트비아, 파나마, 이집트	3	-
	승마	FEI	타이페이, 캐나다	2	스위스
	축구	FIFA	바레인, 파라과이, 캐나다, 슬로베니아, 헝가리, 바누아투, 남아프리카공화국, 북아일랜드	8	세네갈
	체조	FIG	벨라루스, 카타르, 터키	3	스위스
	역도	IWF	태국, 페루, 카자흐스탄, 체코	-	이라크
	핸드볼	IHF	프랑스	1	-
	하키	FIH	-	-	-
	유도	IJF	마다가스카르, 쿠웨이트, 독일, 페루,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5	프랑스
	근대5종	UIPM	스페인, 프랑스, 러시아, 이집트, 멕시코	5	중국
	레슬링	UWW	미국, 그리스, 러시아(2), 우즈베키스탄	5	스페인
	수영	FINA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파라과이, 포르투갈, 중국	5	-
	태권도	WT	그리스, 한국(2), 호주, 니제르, 멕시코, 과테말라/아르헨티나, 지부티	8	-

구분	종목	기관명 (영문약자)	부회장국	부회장국 인원(명)	사무총장국
하계	테니스	ITF	미국, 프랑스, 카자흐스탄, 스위스	4	-
	탁구	ITTF	카타르, 일본, 이집트, 나이지리아, 중국, 헝가리, 브라질, 호주	8	스페인
	사격	ISSF	아일랜드, 미국, 인도, 중국	4	러시아
	양궁	WA	이탈리아, 한국, 독일, 콜롬비아	4	스위스
	트라이애슬론	ITU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멕시코, 영국	4	스페인
	요트	WS	터키, 러시아, 폴란드, 호주, 프랑스, 미국, 아일랜드	7	-
	배구	FIVB	도미니카공화국, 세르비아,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모로코, 브라질, 쿠바, 스코틀랜드, 나이지리아, 이탈리아, 쿡제도, 트리니다드토바고	12	-
	골프	IGF	미국	1	-
	럭비	WR	프랑스	1	-
동계	바이애슬론	IBU	체코	1	오스트리아
	봅슬레이스켈레톤	IBSF	독일, 미국, 벨기에, 폴란드, 모나코, 라트비아	6	독일
	컬링	WCF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3	영국
	아이스하키	IIHF	체코, 캐나다, 덴마크, 키르기스스탄	4	스위스
	루지	FIL	오스트리아(2), 미국, 이탈리아, 독일	5	미국
	빙상	ISU	러시아, 노르웨이	2	-
	스키	FIS	체코, 일본, 스위스, 불가리아	4	프랑스
인정 종목	롤러	WS	호주, 콜롬비아, 포르투갈, 베냉, 중국	5	이탈리아
	스포츠클라이밍	IFSC	일본, 독일	2	미국
	서핑	ISA	페루, 뉴질랜드, 덴마크, 짐바브웨	4	-
	야구소프트볼	WBSC	과테말라, 감비아	2	말레이시아
카라테	WKF	아르헨티나, UAE, 튀니지, 프랑스, 호주, 알제리, 독일, 노르웨이	8	일본	

※ 출처: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홈페이지(2021). 국제연맹 웹사이트(2021).

### 3. 국제체육 아젠다(1): 스포츠계 도핑방지

세계 주요국의 체육정책 동향 및 기구의 현황을 살펴보는 일과 더불어 국제체육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 바로 ‘국제체육계의 아젠다’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국제체육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도핑방지 활동’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 및 발전’에 대한 아젠다 현황을 정리하였다.

### 1) 스포츠계 도핑방지를 위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설립 및 활동

초기 도핑방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1963년에 유럽 21개 국가 협의회인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에서 도핑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1967년 ‘반도핑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1967년 IOC산하 의무위원회(Medical Commission)가 설립되며 스포츠계 반도핑과 관련된 금지약물목록이 발표되었고, 1968년 올림픽부터 선수 도핑검사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보다 본격적인 도핑방지 활동은 1999년 2월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반도핑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에서의 ‘로잔스포츠도핑 선언(Lausanne Declaration on Doping in Sport)’ 기반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 설립 이후부터다. 이 기구는 IOC가 공식 인정하는 독립 조직으로서,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 없는 환경에서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초 2003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세계반도핑총회에서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회가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을 공식적으로 채택, 이후 2014년에 205개 NOC와 모든 국제경기연맹이 규약에 서명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다음의 <표 6-40>과 같이 회장단 2명, 올림픽운동대표단 18명, 정부 대표단 18명 총 38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그리고 실무 위원회로 구분된다. 이사회는 최고의결기구로 위원장, 부위원장과 올림픽 관계기관 구성원과 세계 각국 정부 측 대표로 구성되며 집행위원회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된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2019년 11월에 한국 정부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에 3회 연속 선출되면서 2022년까지 이사국으로의 활동을 하게 되었다(이사직은 문체부 제2차관).

표 6-40.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회 구성

(단위: 명)

구분	인원	합계	국가
회장단	회장	1	폴란드
	부회장	1	
올림픽 운동대표단 (Olympic Movement Representatives)	IOC 대표	4	세계양궁연맹(WA), NOC(카보 베르데, 체코, 팔라우) 폴란드,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국제승마연맹(FEI), 국제사이클연맹(UCI), 국제조정연맹(FISA) 세계레슬링연맹(UWW) 국제빙상연맹(ISU) 케냐, 노르웨이, 핀란드, 중국 브라질
	ANOC 대표	4	
	ASOIF 대표	3	
	GAISF 대표	1	
	AIOWF 대표	1	
	IOC 선수위원회 대표	4	
	IPC 대표	1	

구분	인원	합계	국가
정부대표단 (Government Representatives)	유럽연합	3	포르투갈, 불가리아, 스웨덴
	유럽평의회	2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아시아	4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일본
	아프리카	3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미주	4	미국, 온드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오세아니아	2	호주, 뉴질랜드
합계		38	

※ 출처: 세계도핑방지기구 웹사이트(2021).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실질적 운영 및 경영을 담당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 5개로 구성되었는데(선수위원회, 교육위원회, 윤리문제전문가 그룹, 재정 및 행정위원회, 건강, 의학 및 연구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역할을 하며 도핑방지 주요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설립초기, IOC에게서 전적인 지원을 받았으나, 2000년 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지역별 이사국을 선정, 이들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국제조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이에 이사국은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도핑방지 국제정부 간 협의체 그룹회의에서 구체적 예산 분담금에 대해 논의하였고, 2002년부터 세계 각국 정부 및 IOC 분담 투자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각국의 분담금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차별화되어 책정되었는데, 아시아는 약 20% 내외의 경비를 부담한다. 42개 아시아 국가 분담금은 1인당 국민소득과 체육지수(국제대회 참가 선수 규모)를 고려하여 책정되었다.

## 2) UNESCO 반도핑협약

세계도핑방지기구는 1999년부터 유럽에서 도핑방지 국제협정을 맺은 유럽국가의 세계도핑방지구약의 국제협약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유네스코(UNESCO) 국제체육장관회의(MINEPS)와 정부간체육위원회(CIGEPS)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 의견을 수렴하여, 2003년 1월 100개국이 모인 국제체육스포츠장관 원탁회의에서 도핑방지 국제협약화 안건을 유네스코 총회에 상정하였다. 2003년 도핑방지 국제협약은 유네스코 반도핑국제협약 추진에 대해 총회 참여국들의 동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법안 내용은 2005년 10월 19일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도핑방지 국제협약을 맺은 국가는 2014년 177개국, 2015년 182개국, 2016년 184개국, 2017년 187개국 등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191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이처럼 도핑방지 국제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1년에 한 번씩 모여 총회를 여는데, 2011년 첫 총회 이후 2019년에는 제7차 총회를 파리에서 가졌다. 2020년에 개최 예정이었던 제8차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2021년 10월에 개최되었다. 총회는 스포츠에서 도핑방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당사국이 협약 하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지에 대해 점검하면서, 협약 내용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고 보완하며, 도핑 위반 퇴치를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다. 유네스코는 협약과 더불어 스포츠도핑방지기금을 조성하여 가입국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일정 금액을 기부토록 장려하는데, 2007년에 10개국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9개국이 도핑방지기금에 참여하여 기금을 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국가별 도핑방지기금 출자액은 <표 6-41>과 같다.

표 6-41. 유네스코 스포츠도핑방지기금 목록(2020~2021)

(단위: 달러)

순서	국가	기부금	순서	국가	기부금
1	알바니아	495.00	16	아이티	85.00
2	안도라	283.00	17	인도	28,172.00
3	아르메니아	236.00	18	케냐	812.00
4	호주	66,770.65	19	리투아니아	2,384.00
5	오스트리아	23,174.27	20	모나코	5,868.55
6	바베이도스	500.00	21	몽골	357.00
7	불가리아	3,062.50	22	나미비아	314.00
8	중국	100,000.00	23	네팔	236.00
9	코트디부아르	921.01	24	한국	115,846.00
10	이집트	6,284.00	25	러시아	358,983.00
11	엘살바도르	409.00	26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19.33
12	에스토니아	2,168.00	27	사우디아라비아	40,000.00
13	에피토티아	237.00	28	아랍에미리트	41,560.00
14	핀란드	46,381.80	29	잠비아	558.55
15	그리스	23,887.49	*	이자	18,632.00
합계				888,737.15* (한화 약 10억 5,000만 원)	

※ 주: 출처에 기재되어 있는 합계는 889,187.15달러

※ 출처: 유네스코(UNESCO)(2021). <제8차 스포츠도핑금지 국제협약 당사국 회의> 스포츠 도핑방지를 위한 기금 결산보고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모금이 예정된 스포츠도핑방지기금은 총 88만 8,737.15달러, 한화로 약 10억 5,000만 원이었다. 신규 참여 16개국을 포함하여

총 29개국이 2020~2021년 스포츠도핑방지기금 자발적 출자국으로 참여하였고, 이는 전년 회계회기인 2018~2019년 14개국에 비해 9.81% 증가한 모습이다. 이사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11만 5,846달러(한화로 약 1억 4,000만 원)를 기금으로 냈고, 이는 러시아(약 4억 3,00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금 출자 규모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반도핑 협약은 ‘국제대학스포츠연맹(1925년 창립된 유니버시아드 주최 단체)’으로 하여금 대학스포츠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은 세계반도핑협약의 2004년 조인기구로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2015년 반도핑활동을 위한 선수 및 관련자 처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준수하여 대학선수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경기대회에 엄격한 반도핑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클린스포츠를 위해 모든 행사에서 도핑방지 진흥을 위한 반도핑교육을 진행하고, 회의나 포럼, 세미나 행사에서 도핑방지 주제를 다루는 일을 한다. 스포츠 행사에 반도핑 활동 지원과 더불어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세계도핑방지기구와 협력하여 반도핑에 관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무료로 웹사이트에 공개하였다.

### 3) 국내 도핑검사 현황

국제체육계의 아젠다인 도핑방지 관련 문제는 국내에서 큰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도핑방지 위원회(KADA)로 하여금 지속적인 도핑방지 노력을 하게끔 이끌었다. 우리나라 스포츠와 관련하여 도핑방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도핑컨트롤센터이다. 도핑 컨트롤센터는 도핑검사를 통해 채취한 선수의 시료를 분석하여 시료 내에 금지약물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6-42>와 <표 6-43>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 컨트롤센터에서 실시한 분석시료 및 연도별 금지성분 검출 보고 건수 현황이다.

표 6-4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 분석시료 현황(2017~2021)

(단위: 건)

연도	소변시료			혈액시료			ABP시료	총 합계 시료수
	총시료수	ATF시료수	AAF시료수	총시료수	ATF시료수	AAF시료수	총시료수	
2017	4,505	6	64	196	-	-	199	4,900
2018	7,851	2	92	1,023	-	-	548	9,422
2019	5,696	6	67	712	1	1	221	6,629
2020	2,160	6	19	363	-	-	127	2,650
2021	4,447	5	35	621	-	-	167	5,235

※ 출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 내부자료(2021).

표 6-4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 연도별 금지성분 검출 보고 건수(2017~2021) (단위: 건)

분류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S1 Anabolic Agents(동화작용제)	64	60	44	11	24
S2 Peptide Hormones, Growth Factors, Related Substances and Mimetics(펩티드호르몬, 성장인자, 관련약물 및 유사제)	-	-	1	-	1
S3 Beta-2 Agonists(베타-2 작용제)	3	3	1	1	-
S4 Hormone and Metabolic Modulators(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	13	17	12	4	7
S5 Diuretics and Masking Agents(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	15	27	20	8	10
S6 Stimulants(흥분제)	10	18	8	2	4
S7 Narcotics(마약)	2	4	2	-	-
S8 Cannabinoids(마리화나)	-	-	-	-	-
S9 Glucocorticoids(글루코코르티코이드)	-	22	15	2	6
P1 Beta-Blockers(베타차단제)	1	6	1	-	-
M1 Manipulation of Blood and Blood Components (혈액 및 혈액성분 조절제)	-	-	-	-	-
M2 Chemical and Physical Manipulation(화학·물리적 조절제)	-	-	-	-	-
합계	108	157	104	28	52

※ 출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 내부자료(202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도핑방지기구로부터 국제 공인을 받아 도핑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 선임되어 세계도핑방지규약, 국제표준 등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선진 국가도핑방지기구로 세계도핑방지활동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 4. 국제체육 아젠다(2):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개발

##### 1)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역할

국제체육계의 또 다른 아젠다는 바로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개발’이다. 이 아젠다는 UN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UN은 세계발전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의 체계적 활용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00년 인류의 평화와 안보, 빈곤퇴치, 기본적 자유 및 인권보장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여덟 가지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8년 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을 설치, 스포츠를 통한 전 세계의 동반 발전과 세계평화활동을 전개하였다.

2015년에는 새천년 개발목표의 기초를 계승하고 방향을 정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다. UN 193개 회원국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국제개발을 위해 세계 각국이 함께 추진할 현안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제시하였다. 이 목표에서 스포츠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요한 조력자’로 간주되었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스포츠 활용과 올림픽 정신이 강조 되기 시작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담당하던 UN의 ‘스포츠 개발평화사무국’이 2017년 종료됨에 따라 UN 산하 조직과 스포츠 국제단체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개선하는 업무를 이양 받았다. 2017년 1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전략(IOC Sustainability Strategy)’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지속가능성 정책(IOC Sustainability Policy)’을 공개하는 등 주요 국제스포츠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 2) 정부 간 체육위원회

정부 간 체육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CIGEPS)는 스포츠의 가치 및 역할을 촉진하고 공공 정책에 통합시키기 위해 1978년 설립되었다. 정부 간 체육위원회(이하 CIGEPS)는 17개 유네스코 회원국(아르헨티나, 쿠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핀란드, 일본, 튀니지, 아제르바이잔, 감비아, 마다가스카르, 투르크메니스탄, 바레인, 독일,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불가리아)의 체육교육 및 스포츠 부문 전문가 대표로 구성되며, 대표 임기는 4년이다. 주요 스포츠 연맹 및 UN 관련 기구로 구성된 영구자문위원회(Permanent Consultative Council: PCC)가 정책 자문을 제공한다.

정부 간 체육위원회는 2016년 2월부터 영구자문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었으며, 2017년 3월 연석회의에서 스포츠개발정책을 유엔의 2030 아젠다(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연계, 스포츠 정책들과 국제·국가 간 다자협력을 위한 주요안건을 선정 하는 카잔조치계획(Kazan Action Plan)을 수립하였다. 2020년에는 2차례 회의가 개최

되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연례회의 개최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온라인 회의가 진행되었다(20.07.15.). 이후에 개최된 정기회의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카잔액선계획의 실행 현황과 정부 간 체육위원회 주요 사업체계 점검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20.09.28.~29.). <표 6-44>는 정부 간 체육위원회와 협력 관계에 있는 영구자문위원회(Permanent Consultative Council) 회원 구성 현황이다.

표 6-44. 정부 간 체육위원회 영구자문위원회 회원 현황(2021)

영구 자문 위원회 (PCC)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ICM)
영연방(Commonwealth)	유네스코 석좌 '반도핑 정책 연구 및 분석' (UNESCO Chair "Doping Studies and Analysis of Anti-doping Policies")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	유네스코 석좌 '포괄적 체육,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피트니스' (UNESCO Chair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Sport, Recreation and Fitness")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유네스코 석좌 '교육 환경에서의 신체활동과 건강' (UNESCO Chair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in Educational Settings")
국제스포츠과학체육위원회 (International Council of Sport Science and Physical Education)	유네스코 석좌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 (UNESCO Chair "Development of Youth through Sports Activities")
국제노동기구(ILO)	유네스코 석좌 '국제스포츠를 통한 교육 연계' (UNESCO Chair "Educational Linkage through International Sport (ELIS)")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네스코 석좌 '통합 특수체육교육 및 요가' (UNESCO Chair "Inclusive Adapted Physical Education and Yoga")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유네스코 석좌 '스포츠, 체육활동 및 체육교육 개발' (UNESCO Chair "Sport, Physical Activity and Education for Development")
평화스포츠기구 (Peace and Sport Organization)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국제생활스포츠협회 (The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Sport for All)	유엔 경제사회부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세계보건기구 (WHO)	유엔 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Committee)	유엔 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세계무술연맹 (World Martial Arts Union)	유엔글로벌콤팩트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Office)

## 영구 자문 위원회 (PCC)

세계반도핑기구(WADA)	유엔 난민기구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 여성기구 (UNWomen)	유엔 제네바사무국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출처: 유네스코 정부 간 체육위원회 웹페이지(2021). <https://en.unesco.org/themes/sport-and-anti-doping/cigeps>

유네스코는 CIGEPS를 통해 체육 및 스포츠 분야에서 정부 활동을 주도하고 전 세계 체육 정책과 사업을 국제사회 공동의 기조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스포츠 분야에 관한 국가전략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CIGEPS는 정부 간 조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회원국을 하나로 모으고 스포츠 및 체육교육 분야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정책 이행 여부의 평가를 통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제4절 국제스포츠대회 참가 및 유치

### 1. 올림픽대회 참가 현황

#### 1) 역대 올림픽대회 개최

근대 올림픽대회는 체육을 통해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랑스의 귀족 피에르 쿠베르탱의 제안에 의해 부활되었다. 1896년에 제1회 하계올림픽대회가 아테네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4년마다 하계올림픽대회로만 개최되다가 1924년부터 하계올림픽대회와 동계올림픽대회로 나누어서 개최되고 있다. 다음의 <표 6-45>는 제1회 아테네올림픽부터 2021년 개최되었던 2020도쿄하계올림픽까지의 역대 동·하계올림픽 대회 관련 정보다.

표 6-45. 역대 올림픽대회 개최 현황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회	연도	개최도시	개최국	비고	회	연도	개최도시	개최국	비고
1	1896	아테네	그리스	14개국 241명	-	-	-	-	-
2	1900	파리	프랑스	24개국 997명	-	-	-	-	-
3	1904	세인트루이스	미국	12개국 651명	-	-	-	-	-
4	1908	로마	이탈리아	대회 취소	-	-	-	-	-
		런던	영국	22개국 2,008명	-	-	-	-	-
5	1912	스웨덴	스톡홀름	28개국 2,407명	-	-	-	-	-
6	1916	베를린	독일	대회 취소	-	-	-	-	-
7	1920	안트워프	벨기에	29개국 2,622명	1	1924	샤모니	프랑스	16개국 258명
8	1924	파리	프랑스	44개국 3,088명	2	1928	생모리츠	스위스	25개국 464명
9	1928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46개국 2,883명	3	1932	레이크플레시드	미국	17개국 252명
10	1932	로스앤젤레스	미국	37개국 1,334명	4	1936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독일	28개국 646명
11	1936	베를린	독일	49개국	-	1940	삿포로	일본	대회 취소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회	연도	개최도시	개최국	비고	회	연도	개최도시	개최국	비고
				3,956명	-	1940	생모리츠	스위스	대회 취소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독일	대회 취소
12	1940	도쿄	일본	대회 취소	-	1944	코르티나담페초	이탈리아	대회 취소
		헬싱키	핀란드	대회 취소					
13	1944	런던	영국	대회 취소	5	1948	생모리츠	스위스	28개국 669명
14	1948	런던	영국	59개국 4,404명	6	1952	오슬로	노르웨이	30개국 694명
15	1952	헬싱키	핀란드	69개국 4,955명	7	1956	코르티나담페초	이탈리아	32개국 821명
16	1956	멜버른	호주	72개국 3,314명	8	1960	스퀘벨리	미국	30개국 665명
17	1960	로마	이탈리아	83개국 5,338명	9	1964	인스브루크	오스트리아	36개국 1,091명
18	1964	도쿄	일본	93개국 5,152명	10	1968	그레노블	프랑스	37개국 1,158명
19	1968	멕시코시티	멕시코	112개국 5,516명	11	1972	삿포로	일본	35개국 1,006명
20	1972	뮌헨	서독	121개국 7,234명	12	1976	인스브루크	오스트리아	37개국 1,123명
21	1976	몬트리올	캐나다	92개국 6,084명	13	1980	레이크플래시드	미국	37개국 1,072명
22	1980	모스크바	소련	80개국 5,179명	14	1984	사라예보	유고슬라비아	49개국 1,272명
23	1984	로스앤젤레스	미국	140개국 6,829명	15	1988	캘거리	캐나다	57개국 1,423명
24	1988	서울	대한민국	159개국 8,397명	16	1992	알베르빌	프랑스	64개국 1,801명
25	1992	바르셀로나	스페인	169개국 9,356명	17	1994	릴레함메르	노르웨이	67개국 1,737명
26	1996	애틀랜타	미국	197개국 10,318명	18	1998	나가노	일본	72개국 2,176명
27	2000	시드니	호주	199개국 10,651명	19	2002	솔트레이크시티	미국	77개국 2,399명
28	2004	아테네	그리스	201개국 10,625명	20	2006	토리노	이탈리아	80개국 2,508명
29	2008	베이징	중국	204개국 10,942명	21	2010	밴쿠버	캐나다	82개국 2,566명
30	2012	런던	영국	204개국 10,568명	22	2014	소치	러시아	88개국 2,780명
31	2016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207개국 11,238명	23	2018	평창	대한민국	92개국 2,833명
32	2021	도쿄	일본	206개국 11,420명	-	-	-	-	-

※ 출처: 국제올림픽위원회 웹사이트(2021)

제1회 아테네하계올림픽대회는 육상, 사이클, 펜싱, 체조, 사격, 수영, 테니스, 역도, 레슬링의 9개 종목으로 개최되었다. 일부에서는 올림픽대회를 아테네에서 영구히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올림픽대회가 국가별 순환 개최로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4년마다 개최 국가를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하계올림픽대회는 1900년 제2회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이후 2021년 일본 도쿄하계올림픽대회까지 32회째를 이어 오고 있다. 제 32회 도쿄 하계올림픽대회는 기존 20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세계 범유행으로 인해 개최가 1년 연기되어 2021년에 개최되었다.

IOC는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동계올림픽대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종목은 동계종목으로만 치르기로 합의, 같은 해에 처음으로 동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되었다. 1924년부터 1992년까지는 동계·하계올림픽대회를 같은 해에 개최하였으나 1994년부터는 2년 단위로 동계·하계 올림픽이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2016년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하계올림픽 대회에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난민 팀(Team ROA, Team of Refugee Olympic Athletes)’이 참가했다. 난민 팀은 총 10명의 난민 선수로 구성되었으며, 참가한 선수는 육상 종목에 출전한 남수단 선수 5명, 유도 종목에 출전한 콩고민주공화국 선수 2명, 수영 종목에 출전한 시리아 선수 2명, 마라톤에 출전한 에티오피아 선수 1명이다. 난민 대표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깃발인 오륜기를 들고, 개최국인 브라질에 앞서 206번째로 입장하였다.

2018년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남과 북이 하나 된 평화올림픽이었다. 개회식에서 남과 북의 선수들이 한반도기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한 팀이 되어 입장했다. 북한의 피겨스케이팅 페어 팀은 자력으로 만든 국제 대회에서의 성적을 가지고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참가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나 정해진 시간 안에 등록을 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참가 자격이 상실되었다. 그러나 IOC가 북한 NOC,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마감 시간을 연장하고 추가적인 쿼터를 허용하여 참가가 가능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신년사를 통해 대회에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혔고, IOC는 2018년 1월 20일 로잔에서 회의를 열기로 하고 IOC, 남북한 NOC, 남북한 정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초청했다. 이 회의에서 참가당사자는 “올림픽 한반도 선언”에 서명하였고, 이를 계기로 하여 개회식에서 두 참가단이 Korea라는 이름으로 한반도기와 함께 공동 입장을 하는 것과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남한 23명, 북한 12명으로 구성) 구성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한이 한 경기종목에서 한 팀으로 출전하게 되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참가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2018년 2월 9일 개최식에 북한 선수 및 임원들(5개 종목 46명)이 남한 선수 및 임원들과 한 팀으로 올림픽 스타디움에 입장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 세계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남북한 단일팀 구성, 공동훈련, 남북한 교환경기 정례화 등 다양한 방식의 스포츠 교류가 가능하며, 이를 위한 남북한 간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 2) 역대 대한민국 올림픽대회 참가

〈표 6-46〉은 역대 우리나라가 참가했던 하계올림픽대회에서의 성적을 정리한 자료다. 우리나라가 올림픽대회에 참가하여 거둔 성과는 1936년 제11회 베를린하계올림픽대회에서 마라톤 종목의 손기정 선수 금메달과 남승룡 선수 동메달 획득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당시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참가하였으므로 이 대회의 메달은 일본의 것으로 간주되었다.

표 6-46. 역대 하계올림픽대회 메달 획득 현황

연도	대회	성적	메달획득
1948	영국 런던하계올림픽대회	32위	7종목 참가, 2개 (금 0, 은 0, 동 2)
1952	핀란드 헬싱키하계올림픽대회	37위	6종목 참가, 2개 (금 0, 은 0, 동 2)
1956	호주 멜버른하계올림픽대회	29위	6종목 참가, 2개 (금 0, 은 1, 동 1)
1960	이탈리아 로마하계올림픽대회	-	8종목 참가, 0개 (금 0, 은 0, 동 0)
1964	일본 동경하계올림픽대회	26위	14종목 참가, 3개 (금 0, 은 2, 동 1)
1968	멕시코 멕시코시티하계올림픽대회	36위	9종목 참가, 2개 (금 0, 은 1, 동 1)
1972	독일 뮌헨하계올림픽대회	33위	7종목 참가, 1개 (금 0, 은 1, 동 0)
1976	캐나다 몬트리올하계올림픽대회	19위	4종목 참가, 6개 (금 1, 은 1, 동 4)
1980	러시아 모스크바하계올림픽대회	-	0종목 참가, 0개 (금 0, 은 0, 동 0)
1984	미국 로스앤젤레스하계올림픽대회	10위	14종목 참가, 19개 (금 6, 은 6, 동 7)
1988	대한민국 서울하계올림픽대회	4위	20종목 참가, 33개 (금12, 은10, 동11)
1992	스페인 바르셀로나하계올림픽대회	7위	21종목 참가, 29개 (금12, 은 5, 동12)
1996	미국 애틀랜타하계올림픽대회	10위	25종목 참가, 27개 (금 7, 은15, 동 5)
2000	호주 시드니하계올림픽대회	12위	23종목 참가, 28개 (금 8, 은10, 동10)
2004	그리스 아테네하계올림픽대회	9위	26종목 참가, 30개 (금 9, 은12, 동 9)
2008	중국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7위	27종목 참가, 31개 (금13, 은10, 동 8)
2012	영국 런던하계올림픽대회	5위	22종목 참가, 28개 (금13, 은 8, 동 7)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하계올림픽대회	8위	25종목 참가, 21개 (금 9, 은 3, 동 9)
2021	일본 도쿄하계올림픽대회	16위	29종목 참가, 20개 (금 6, 은 4, 동 10)

※ 출처: 국제스포츠정보센터 웹사이트(2021).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국제경기대회에 등장한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참가한 1948 스위스생모리츠동계올림픽대회로 볼 수 있으며, 본격적으로 메달을 획득한 것은 같은 해 개최된 1948 영국런던하계올림픽대회에서 복싱 한수안과 역도 김성집이 따낸 동메달로 볼 수 있다.

이후 6·25전쟁으로 인하여 1952년 제6회 오슬로동계올림픽대회에 불참한 것과 미국 및 관련 우방국의 보이콧 동참으로 인하여 1980년 제22회 모스크바하계올림픽대회를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올림픽대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그간 메달 획득의 성과를 보면, 1952년 제9회 헬싱키하계올림픽대회에서 동메달 2개(복싱의 강준호, 역도의 김성집), 1956년 제16회 멜버른하계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 1개(복싱의 송순천), 동메달 1개(역도의 김창희), 1968년 제19회 멕시코시티하계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 1개(복싱의 지용주), 동메달 1개(복싱의 장규철), 1972년 제20회 뮌헨하계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 1개(유도의 오승립)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하계올림픽대회 및 1984년 제23회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대회 이후부터 메달순위 10위권에 진입하였고, 1988년에는 제24회 서울하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대한민국은 금 12개, 은 10개, 동 11개를 획득하며 역대 최고성적인 종합 4위를 기록했다. 또한 동계 종목의 경우, 1992년에 들어 제16회 프랑스알베르빌동계올림픽대회에서 10위, 다시 제25회 바르셀로나하계올림픽대회에서 7위를 기록함으로써 동계·하계올림픽대회 모두 10위권에 진입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1994년 제17회 릴레함메르동계올림픽대회 6위, 1996년 제26회 애틀랜타하계올림픽대회 10위, 1998년 제18회 나가노동계올림픽대회 9위를 차지한 바 있다. 2000년 제27회 시드니하계올림픽대회 12위, 2002년 제19회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림픽대회 14위 등 잠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가, 2004년 제28회 아테네하계올림픽대회 9위로 10위권 내에 재진입하였다. 이후 2006년 제20회 토리노동계올림픽대회 7위, 2008년 제29회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7위, 2010년 제21회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 5위에 각각 오르게 되어 동계 및 하계대회 모두에서 10위권 안쪽의 성과를 내는 모습을 꾸준히 보였다. 2012년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대회에서는 종합 5위(금 13개, 은 8개, 동 7개)를 달성하며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대회 다음으로 우수한 성적을 냈다. 2016년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하계올림픽대회에서는 종합순위 8위(금 9개, 은 3개, 동 9개)를 차지하였다.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하계올림픽대회는 2016년 8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다. 대회는 28개 종목에서 306개의 세부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총 206개 국가에서 11,237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한국은 333명(선수 204명/임원 129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였으며, 25개 종목에 출전하여 금 9개, 은 3개, 동 9개로 총 21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206개 참가국 중에서 종합순위 8위를 차지하였다.

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해서는, 1992년 프랑스에서 열린 알베르빌 대회부터 메달을 획득하기 시작하였다. <표 6-47>은 역대 우리나라 동계올림픽대회 메달획득 실적을 정리한 자료이다.

표 6-47. 역대 동계올림픽대회 메달 획득 현황

연도	대회	성적	메달획득
1992	프랑스 알베르빌동계올림픽대회	10위	5종목 참가, 4개(금 2, 은 1, 동 1)
1994	노르웨이 릴레함메르동계올림픽대회	6위	6종목 참가, 6개(금 4, 은 1, 동 1)
1998	일본 나가노동계올림픽대회	9위	8종목 참가, 6개(금 3, 은 2, 동 1)
2002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림픽대회	14위	6종목 참가, 4개(금 2, 은 2, 동 0)
2006	이탈리아 토리노동계올림픽대회	7위	4종목 참가, 11개(금 6, 은 3, 동 2)
2010	캐나다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	5위	5종목 참가, 14개(금 6, 은 6, 동 2)
2014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대회	13위	11종목 참가, 8개(금 3, 은 3, 동 2)
2018	대한민국 평창동계올림픽대회	7위	7종목 참가, 17개(금 5, 은 8, 동 4)

※ 출처: 국제스포츠정보센터 웹사이트(2021).

우리나라는 제16회 알베르빌동계올림픽대회에서 4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순위 10위를 기록한 이후 매 대회에서 메달 획득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7종목, 15개 세부종목, 102개 경기가 열렸으며 6개 세부종목(스노보드 빅에어(남·여),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남·여), 컬링 믹스터블, 알파인스키 혼성 단체전)이 새롭게 추가 되어 역대 동계올림픽대회에서 가장 많은 여성·혼성 종목 경기가 진행되었다. 전 세계에서 총 92개국 2,833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고, 대한민국은 221명(선수 146명, 임원 75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7개 전 종목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여 종합 7위에 자리했다.

종목별 메달 성적을 살펴보면 스피드스케이팅(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쇼트 트랙스피드스케이팅(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봅슬레이(은메달 1개), 컬링(은메달 1개), 스노보드(은메달 1개), 스킨레톤(금메달 1개)의 6개 종목에서 총 17개의 메달이 나왔다.

스켈레톤 종목의 윤성빈 선수는 슬라이딩 종목에서 아시아 최초로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스노보드 종목의 이상호 선수는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이 1960 스퀘벨리동계올림픽대회에 스키종목으로 첫 참가한 이후 58년 만에 첫 메달을 안겼다.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은 2006 토리노동계올림픽대회 이후 최다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이 종합 7위 순위에 이르는데 기여하였다.

## 2. 국제경기대회 참가 현황

우리나라는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국민 통합을 이루고, 각국 선수단 및 NOC 간의 교류의 장 마련과 스포츠교류 활성화의 목적으로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국제 경기대회가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국제 스포츠 활동이 크게 제한되었다. 2021년도에 우리나라가 참가한 국제경기대회는 <표 6-48>과 같다.

표 6-48. 국제경기대회 대한민국 참가 현황(2021)

대회명	개최기간	개최지	종목 개수	한국참가현황		
				인원 (선수/임원)	메달획득	순위
제32회 도쿄하계올림픽	2021.07.23.~08.08.	일본, 도쿄	33	354 (232/122)	금(6), 은(4), 동(10)	16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2020도쿄하계올림픽은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되어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 까지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총 29종목에 354명(선수 232명, 임원 122명)이 참가하였다. 우리나라 참가 성적은 다음의 <표 6-49>와 같다.

표 6-49. 제32회 도쿄하계올림픽대회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단위: 개)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합계
1	미국	39	41	33	113
2	중국	38	32	18	88
3	일본	27	14	17	58
4	영국	22	21	22	65
5	러시아올림픽위원회	20	28	23	71
6	호주	17	7	22	46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합계
7	네덜란드	10	12	14	36
8	프랑스	10	12	11	33
9	독일	10	11	16	37
10	이탈리아	10	10	20	40
11	캐나다	7	6	11	24
12	브라질	7	6	8	21
13	뉴질랜드	7	6	7	20
14	쿠바	7	3	5	15
15	헝가리	6	7	7	20
16	대한민국	6	4	10	20

※ 출처: 국제스포츠정보센터 웹사이트(2021).

하계올림픽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고의 종합 스포츠 축제로서, 2020 도쿄하계올림픽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뭉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총 206개국과 러시아올림픽위원회에서 선수 11,656명이 이번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였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스케이팅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가라테 등이 처음으로 올림픽 종목으로 선보여졌으며, 33개 종목 339개 세부종목을 개최하여 하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종목의 경기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총 메달 20개를 획득(금 6, 은 4, 동 10)하여 종합 16위를 차지하였다.

### 3. 지자체의 국제경기대회 지원

국제스포츠대회와 관련하여 정부는 또한 국내 광역지자체가 유치하는 국제경기대회 중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하여 10억 원 미만으로 대회 운영비를 지원한다. 2021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에 선정된 시도별 현황은 <표 6-50>과 같으며, 구체적으로 선정된 지자체별 대회는 <표 6-51>과 같다.

표 6-50.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 선정 현황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선정	3	1	1	1	1	1	2	1	2	3	3	2	1	22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2021).

표 6-51. 지자체별 선정 종목 현황

연번	지역	대회명
1	서울특별시	2021 서울국제마라톤
2		2021 코리아오픈테니스대회
3		제3회 AUSF 아시아대학 치어리딩선수권·서울2021치어페스타
4	부산광역시	2021 ITU 해운대 스프린트트라이애슬론 월드컵
5	대구광역시	2021 대구국제마라톤
6	인천광역시	제21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7	광주광역시	2021 아시안컵2차양궁대회
8	울산광역시	2021 울산진하PWA세계윈드서핑대회
9	강원도	2022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10		2021 DSI국제드론스포츠챔피언십
11	충청남도	2021 대전MBC배온라인서천국제오픈태권도대회
12	전라북도	2021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13		2021 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경기대회
14	전라남도	2021 국제철인3종경기대회
15		2021 남해안컵국제요트대회
16		2021 코리아오픈배드민턴선수권 대회
17	경상북도	2022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18		2021 세계피트니스선수권대회
19		제13회 코리아컵국제요트대회
20	경상남도	2021 ISSF창원월드컵사격대회
21		제15회 이순신장군배국제요트대회
22	제주특별자치도	2021 TransJeju국제트레일러닝대회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2021).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제경기대회의 종목을 살펴보면, 테니스, 마라톤, 요트, 철인3종, 트레일러닝, 윈드서핑, 아이스클라이밍, 배드민턴, 사격, 양궁, 치어리딩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다양한 종목대회를 선정함으로써 기존 국제경기대회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회참가자와 지역 거주민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정부는 지역-종목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기반 스포츠 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대회 상품화(브랜드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대회 및 스포츠이벤트 개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21 체육백서

2021 Sport White Paper

7

## 체육전문인력

제1절 체육전문인력 개관

제2절 체육전문인력 현황

제3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 제1절 체육전문인력 개관

‘체육전문인력’이란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수, 지도자, 심판, 교수, 교사, 학생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국제체육, 스포츠산업, 학교체육 등으로 세분화된 체육계에 속하면서 유무형의 관련 역량을 획득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국가 및 특정 조직에서 설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선발 및 임용된 후 해당 종목에서 선수로 활동하거나 체육 관련 분야에 종사한다. 일반적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 인적 자원의 가치가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듯, 체육전문인력 역시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체육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최근 체육 분야 전문인력은 급변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발맞춰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선수자원 고갈과 지속적인 경기침체, 청년 실업문제 심화와 대학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 유형의 불일치 등이 이러한 난항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시장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체육전문인력 양성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스포츠계를 이루는 시장은 다양하다. 생활체육의 경우, 동호인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삶의 질 향상, 여가로서의 스포츠 향유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생활체육 지도자’가 이에 속한다. 한편, 전문체육에서는 고도의 스포츠기술과 전략, 나아가 스포츠 경쟁에서의 탁월성과 공정한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전문체육 지도자’가 이에 속한다. 장애인체육 또한 장애인들의 치료와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사회 적응과 통합을 목표로 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해 전문인력의 역할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체육은 국가 간 체육교류 등 스포츠외교를 수행하고 여러 국제체육기구에서 활동하며 국익을 증진할 전문가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전문성은 스포츠산업이나 학교체육과 같이 우리 삶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야에서도 요구된다.

이번 장에서는 다양한 인력 분야 중, 전문체육 분야에서의 선수와 지도자, 심판, 생활체육 분야의 지도자 실태 및 양성제도 현황, 학교체육 분야의 체육교사, 교수 및 체육계 학과 학생 등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주요 변화 등에 대해 다루었다.

## 제2절 체육전문인력 현황

### 1. 전문체육 분야 인력 현황

#### 1) 전문체육 등록 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4항에 따르면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한 자를 뜻한다. <표 7-1>에 따르면, 최근 5개년 간 등록 선수 추세는 2020년까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한 모습이다.

표 7-1. 소속별 등록선수 수(2017~2021)

(단위: 명)

구분 연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실업)*			미지정**			총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17	60,201	20,625	80,826	10,812	2,974	13,786	19,244	6,153	25,397	10,058	572	10,630	130,639
2018	68,674	20,774	89,448	10,267	2,807	13,074	18,934	5,853	24,787	2,671	621	3,292	130,601
2019	69,080	20,892	89,972	10,266	2,834	13,100	18,442	5,725	24,167	2,557	548	3,105	130,344
2020	65,846	18,624	84,470	10,056	2,730	12,786	17,358	5,417	22,775	1,758	534	2,292	122,323
2021	70,847	20,853	91,700	10,808	2,940	13,748	16,974	5,617	22,591	1,762	561	2,323	130,362

\* 일반부(실업): 시·도청, 시도체육회, 경기단체, 기업, 공공기관, 군·경찰, 기타

\*\* 미지정: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등록 신청 시 ‘분류’를 지정하지 않고 등록한 경우

※ 주: 동호회를 제외한 운동부 및 클럽 검색 기준

※ 출처: 대한체육회(2021). 스포츠지원포털 등록현황 및 통계정보(<https://g1.sports.or.kr/stat/stat01.do>)

2021년 전체 등록선수는 13만 362명이었다. 유청소년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전체 등록선수 중 9만 1,700명(초등학교 3만 1,899명, 중학교 3만 3,782명, 고등학교 2만 6,019명)이었고, 대학교에 1만 3,748명, 일반부에 2만 2,591명, 분류를 지정하지 않은 인원이 총 2,323명으로 등록되었다. 2020년에 비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실업), 미지정 모든 부문의 등록 선수가 증가한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수 등록 현황은 종목별로도 구분되어 정리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표 7-2>와 같다.

표 7-2. 종목별 등록선수 수(2021)

(단위: 명)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										
										시·도청 (체육회 포함)		경기 단체		기업 (공공기관, 군 포함)		기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가리테	82	62	20	0	0	0	0	1	0	1	2	0	0	0	0	0	0	0	60	18
검도	1,712	1,418	294	230	54	402	86	334	43	265	36	136	22	3	0	0	8	48	45	
골프	2,281	1,179	1,102	233	273	313	368	462	376	143	81	0	0	0	0	0	0	28	4	
궁도	8,514	7,377	1,137	0	0	5	3	32	7	0	0	45	0	0	0	0	0	7,295	1,127	
근대5종	518	322	196	75	45	83	55	90	55	18	10	43	19	5	1	8	11	0	0	
농구	2,644	1,817	827	508	269	474	200	348	147	268	64	0	32	7	13	18	0	194	102	
당구	652	548	104	20	9	18	12	47	22	0	0	29	9	433	52	1	0	0	0	
댄스스포츠	763	483	280	7	28	9	31	27	35	3	9	0	0	205	100	98	60	134	17	
력비	1,155	1,154	1	0	0	379	0	422	0	242	0	0	0	3	0	74	1	34	0	
레슬링	1,709	1,506	203	16	4	657	28	397	77	238	26	108	51	37	14	52	3	1	0	
롤러	899	545	354	202	156	117	79	78	53	19	10	55	41	6	0	1	7	67	8	
루지	50	28	22	0	0	17	15	5	0	3	4	3	2	0	0	0	0	0	1	
바둑	1,033	786	247	386	85	168	63	93	18	13	0	7	1	101	77	3	0	15	3	
바이애슬론	243	137	106	60	48	25	16	10	11	6	0	13	12	15	17	8	2	0	0	
배구	2,767	1,703	1,064	505	388	394	250	326	191	212	64	52	52	0	0	85	0	129	119	
배드민턴	2,396	1,467	929	474	354	376	205	285	167	212	108	66	50	12	7	42	38	0	0	
보디빌딩	1,417	1,246	171	0	0	1	0	279	0	76	20	33	4	5	2	3	0	849	145	
복싱	1,327	1,203	124	0	0	473	16	388	35	153	12	111	26	3	0	13	0	62	35	
볼링	1,239	774	465	33	17	225	136	250	104	160	108	55	91	0	0	19	7	32	2	
복슬레이 스켈레톤	133	100	33	0	0	1	0	35	9	16	11	8	1	36	12	0	0	4	0	
빙상	1,391	549	842	178	367	119	245	104	123	61	62	40	19	9	1	9	1	29	24	
사격	3,565	2,307	1,258	52	20	484	482	353	300	185	96	86	75	2	0	45	38	1,100	247	
산악	814	497	317	51	68	31	38	48	27	19	9	0	0	0	0	1	3	347	172	
세팍타크로	288	172	116	0	0	27	8	68	55	32	23	29	25	11	0	5	5	0	0	
소프트 테니스	1,412	908	504	455	225	165	114	121	74	98	6	63	65	0	0	6	20	0	0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358	229	129	16	11	15	5	27	12	17	8	0	0	0	0	2	1	152	92	
수영	3,348	2,045	1,303	803	601	542	387	351	173	103	42	129	75	95	18	21	6	1	1	
수중 (핀수영)	512	259	253	77	58	37	47	70	63	16	29	39	33	19	23	1	0	0	0	
스쿼시	201	122	79	16	8	16	5	26	18	21	11	23	22	17	15	0	0	3	0	
스키	776	528	248	192	115	107	35	70	34	77	21	14	7	59	30	5	1	4	5	

연번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								
												시·도청 (체육회 포함)		경기 단체		기업 (공공기관, 군 포함)		기타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1	승마	1,687	888	799	194	281	146	220	42	36	74	37	0	0	0	0	0	0	432	225
32	씨름	1,827	1,747	80	593	0	475	0	287	0	199	5	159	17	8	26	25	18	1	14
33	아이스하키	3,044	2,640	404	1,906	312	410	54	147	11	109	0	0	14	0	0	64	0	4	13
34	소프트볼	448	0	448	0	0	0	112	0	152	0	74	0	40	0	0	0	13	0	57
35	야구	13,392	13,381	11	3,701	3	5,125	8	3,165	0	1,354	0	0	0	0	0	0	0	36	0
36	양궁	1,775	912	863	422	387	203	209	121	125	92	65	47	49	0	0	22	26	5	2
37	에어로빅 힙합	400	90	310	33	134	7	42	8	38	17	31	8	8	0	0	0	0	17	57
38	역도	1,032	678	354	0	0	307	153	199	102	59	31	91	59	7	2	14	7	1	0
39	요트	268	203	65	18	11	55	22	43	17	17	7	46	1	15	2	6	0	3	5
40	우슈	472	392	80	43	24	67	20	105	10	28	14	68	1	11	0	15	0	55	11
41	유도	3,241	2,443	798	506	144	747	237	742	205	279	128	94	65	0	0	37	8	38	11
42	육상	5,376	3,197	2,179	1,152	973	876	549	659	324	242	115	235	199	0	0	33	19	0	0
43	자전거	1,126	856	270	330	77	153	64	199	53	44	3	73	58	7	0	48	15	2	0
44	조정	417	264	153	0	0	41	30	66	56	75	16	54	45	0	0	28	6	0	0
45	주짓수	1,957	1,566	391	309	72	254	70	257	42	73	30	0	0	0	0	0	0	673	177
46	철인3종	214	116	98	18	14	18	26	22	10	2	0	32	23	24	24	0	0	0	1
47	체조	1,265	479	786	173	420	88	168	76	92	79	57	41	42	7	0	15	7	0	0
48	축구	25,834	24,609	1,225	7,719	388	8,253	370	5,875	276	2,762	191	0	0	0	0	0	0	0	0
49	카누	470	318	152	0	0	96	56	99	46	53	12	57	32	6	5	7	1	0	0
50	카바디	50	36	14	0	0	0	0	6	0	30	13	0	0	0	0	0	0	0	1
51	컬링	626	314	312	42	44	63	73	64	81	6	1	25	30	114	82	0	0	0	1
52	킥복싱	348	277	71	22	6	26	6	62	13	35	7	0	0	15	2	0	0	117	37
53	탁구	1,414	755	659	319	261	146	120	129	110	81	83	32	43	4	5	44	37	0	0
54	태권도	10,224	6,896	3,328	1,119	573	1,903	974	2,049	962	1,788	792	16	24	0	0	21	3	0	0
55	택견	514	371	143	67	15	63	26	38	22	117	34	0	0	86	46	0	0	0	0
56	테니스	1,647	990	657	404	273	231	151	153	95	116	75	66	49	10	3	10	11	0	0
57	패러 글라이딩	58	51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1	7
58	펜싱	1,792	1,073	719	67	42	454	302	277	170	164	98	67	98	19	5	25	4	0	0
59	하키	1,360	783	577	0	0	301	193	241	160	126	117	54	88	0	0	23	19	38	0
60	핸드볼	1,562	833	729	254	242	210	200	171	133	110	32	35	59	0	0	53	63	0	0
합계		128,039	98,629	29,410	24,000	7,899	26,398	7,384	20,449	5,570	10,808	2,940	2,487	1,778	1,416	584	1,010	469	12,061	2,786

※ 주: 일반부 남 1,762명, 여 561명은 종목을 지정하지 않음. 종목 미지정을 포함할 경우 등록 선수는 130,362명임.

※ 주: 동호회를 제외한 운동부 및 클럽 검색 기준

※ 출처: 대한체육회(2021). 스포츠지원포털 등록현황 및 통계정보(<https://g1.sports.or.kr/stat/stat01.do>)

2021년도에 종목별 등록선수 12만 8,039명 중 가장 많은 선수를 등록한 종목은 순서대로 축구(2만 5,834명, 20.2%), 야구(1만 3,392명, 10.5%), 태권도(10,224명, 8.0%), 궁도(8,514명, 6.6%)로 나타나 2020년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하여 등록선수가 100명 미만인 종목에는 루지(50명), 카바디(50명), 패러글라이딩(58명), 가라테(82명)가 있다.

## 2)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등록선수 이외에도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등록 인원 역시 전문체육 분야에서 중요한 전문 인력이다. 국가대표 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우리나라 대표로 파견하고자 선발 및 확정된 선수’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표 7-3.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현황(2021)

(단위: 명)

구분	연번	종목	훈련인원				훈련인원 합계
			선수			코치	
			남	여	소계		
하계 올림픽대회 종목 (32)	1	양궁	8	8	16	5	21
	2	육상	22	11	33	9	42
	3	배드민턴	20	20	40	6	46
	4	야구소프트볼	24	15	39	5	44
	5	농구	16	16	32	6	38
	6	복싱	16	10	26	6	32
	7	카누	11	5	16	4	20
	8	자전거	21	14	35	6	41
	9	승마	12	-	12	3	15
하계 올림픽대회 종목 (32)	10	펜싱	24	24	48	7	55
	11	축구	18	18	36	4	40
	12	골프	6	6	12	2	14
	13	체조	14	20	34	10	44
	14	핸드볼	22	22	44	7	51
	15	하키	24	24	48	6	54
	16	유도	18	18	36	7	43
	17	카라테	7	5	12	2	14
	18	근대5종	7	7	14	5	19
	19	조정	8	8	16	4	20

구분	연번	종목	훈련인원				훈련인원 합계
			선수			코치	
			남	여	소계		
	20	력비	18	-	18	2	20
	21	요트	17	4	21	6	27
	22	사격	32	28	60	11	71
	23	스케이트보드	4	2	6	1	7
	24	산악	4	4	8	2	10
	25	수영	26	20	46	11	57
	26	탁구	10	10	20	4	24
	27	태권도	14	14	28	6	34
	28	테니스	6	6	12	2	14
	29	철인3종	4	4	8	3	11
	30	배구	18	18	36	5	41
	31	역도	16	10	26	5	31
	32	레슬링	30	12	42	8	50
		소계 32개 종목 (하계올림픽대회)	497	383	880	170	1,050
하계 아시아 경기대회 종목 (7)	1	양궁 컴파운드	4	4	8	2	10
	2	볼링	8	8	16	4	20
	3	카바디	12	12	24	2	26
	4	세팍타크로	12	12	24	4	28
	5	소프트테니스	10	10	20	2	22
	6	스쿼시	5	5	10	2	12
	7	우슈	10	4	14	3	17
		소계 7개 종목 (아시아경기대회)	61	55	116	19	135
	소계 39개 종목 (하계올림픽대회+하계아시아경기대회)	558	438	996	189	1,185	
동계 올림픽대회 종목 (7)	1	빙상	24	26	50	8	58
	2	스키	33	12	45	17	62
	3	아이스하키	25	23	48	4	52
	4	바이애슬론	8	8	16	4	20
	5	컬링	6	6	12	5	17
	6	봅슬레이 스킨레톤	18	6	24	5	29
	7	루지	5	4	9	2	11
		소계 7개 종목 (동계올림픽대회)	119	85	204	45	249
	합계(46개 종목)	677	523	1,200	234	1,434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국가대표 선수는 일반적으로 경기단체에서 국내외 대회성과와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 발전 가능성, 기초체력 및 기술, 대표코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협회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된다. 하계올림픽대회 39개 종목과 동계올림픽대회 7개 종목을 중심으로 선발 되는데, 표에서처럼 2021년에는 국가대표선수 1,200명('20년 동일), 코치 234명('20년 동일) 등 총 1,434명으로 집계되었다.

### 3) 심판

우리나라 심판의 경우에는 종목별 단체에서 자격 조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절차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양성된다. 심판 자격을 획득하는 사람들은 종목별 협회나 연맹에 따라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주로 전문체육 출신의 선수, 체육관련 전공자, 기타 대상자들이 그 대상이 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실기 및 필기시험을 거쳐 심판이 양성되는 체계가 운영 중인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양성된 2021년도 종목별 심판 현황은 <표 7-4>와 같다.

표 7-4. 종목별 심판 수(2021)

(단위: 명)

구분	인원												합계	
	국내						국제							
	1급	2급	3급	4급	기타	소계	1급	2급	3급	4급	기타	소계		
종목	1,846	1,429	1,834	433	2,076	7,618	144	85	107	6	74	416	8,034	
1	가라테	11	3	5	0	0	19	1	0	0	0	1	2	21
2	검도	2	177	170	0	0	349	0	0	1	0	0	1	350
3	골프	2	5	0	0	9	16	0	0	0	0	5	5	21
4	근대5종	13	42	12	0	0	67	0	0	0	0	0	0	67
5	농구	58	15	10	0	0	83	1	0	0	0	1	2	85
6	당구	1	8	383	0	2	394	0	0	3	0	0	3	397
7	댄스스포츠	41	60	61	0	4	166	2	0	0	0	0	2	168
8	력비	7	1	0	0	4	12	1	2	1	0	0	4	16
9	레슬링	24	1	5	0	2	32	9	11	12	0	1	33	65
10	롤러	37	30	13	0	0	80	1	0	0	0	0	1	81
11	루지	0	0	0	0	1	1	0	0	0	0	12	12	13
12	바둑	0	29	56	0	0	85	0	0	0	0	0	0	85
13	배구	194	45	21	0	3	263	1	0	0	0	12	13	276
14	배드민턴	10	24	32	5	0	71	0	0	0	0	0	0	71
15	보디빌딩	104	53	1	0	0	158	0	0	0	0	2	2	160

구분	인원												합계	
	국내						국제							
	1급	2급	3급	4급	기타	소계	1급	2급	3급	4급	기타	소계		
	1,846	1,429	1,834	433	2,076	7,618	144	85	107	6	74	416	8,034	
16	복싱	49	6	0	1	9	65	6	0	3	0	3	12	77
17	복슬레이 스켈레톤	0	11	0	0	0	11	0	0	0	0	1	1	12
18	빙상	48	26	15	0	26	115	2	0	0	0	2	4	119
19	사격	10	9	0	1	26	46	11	10	0	0	14	35	81
20	산악	47	30	7	0	1	85	1	0	0	0	0	1	86
21	세팍타크로	7	2	0	0	0	9	2	0	0	0	4	6	15
22	소프트테니스	6	4	1	0	0	11	2	0	0	0	0	2	13
23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클	17	3	4	0	0	24	1	0	0	0	0	1	25
24	수영	47	86	102	1	1	237	1	0	0	0	0	1	238
25	수중_핀수영	1	15	21	0	0	37	3	0	0	0	0	3	40
26	스쿼시	8	12	15	0	0	35	0	0	0	0	0	0	35
27	스키	1	0	1	0	0	2	0	1	1	0	0	2	4
28	아이스하키	12	19	5	3	0	39	0	0	0	0	0	0	39
29	야구소	30	7	0	0	110	147	0	0	0	0	0	0	147
	야구 소프트볼	0	0	0	0	16	16	0	0	0	0	0	0	16
30	양궁	48	29	7	0	0	84	0	0	0	0	0	0	84
31	에어로빅합합	10	6	1	3	0	20	0	0	0	0	0	0	20
32	역도	31	22	7	0	0	60	19	15	0	0	0	34	94
33	요트	23	7	0	0	0	30	1	0	0	0	0	1	31
34	우슈	24	13	16	0	0	53	3	3	1	0	3	10	63
35	유도	33	0	0	0	0	33	4	7	0	0	0	11	44
36	육상	224	107	60	0	0	391	1	0	0	0	0	1	392
37	조정	5	5	0	0	75	85	0	0	0	0	0	0	85
38	주짓수	8	4	15	0	0	27	0	0	0	0	0	0	27
39	줄넘기	48	56	160	0	0	264	0	0	0	0	0	0	264
40	철인3종	7	18	92	0	3	120	30	12	9	0	3	54	174
41	체조	37	59	46	36	7	185	3	2	3	5	0	13	198
42	축구	391	186	362	248	1,765	2,952	0	0	0	0	0	0	2,952
43	카누	31	16	26	0	0	73	0	0	0	0	0	0	73
44	컬링	0	4	3	0	0	7	0	1	1	0	0	2	9
45	킥복싱	1	0	1	0	0	2	0	0	0	0	0	0	2
46	탁구	83	1	0	0	0	84	36	21	72	0	2	131	215
47	태권도	27	72	59	0	0	158	0	0	0	0	0	0	158
48	택견	0	3	4	0	0	7	0	0	0	0	0	0	7

구분	인원												합계
	국내						국제						
종목	1급	2급	3급	4급	기타	소계	1급	2급	3급	4급	기타	소계	
		1,846	1,429	1,834	433	2,076	7,618	144	85	107	6	74	416
49 테니스	6	5	31	135	0	177	0	0	0	1	7	8	185
50 패러글라이딩	4	4	4	0	0	12	0	0	0	0	0	0	12
51 펜싱	17	89	0	0	0	106	1	0	0	0	0	1	107
52 하키	1	0	0	0	12	13	1	0	0	0	1	2	15

※ 출처: 대한체육회(2021). 스포츠지원포털 등록현황 및 통계정보(<https://g1.sports.or.kr/stat/stat01.do>)

〈표 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도 각 종목별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현황은 총 8,034명으로서, 이 중 국내심판은 총 7,618명(1급 1,846명, 2급 1,429명, 3급 1,834명, 4급 433명, 기타 2,076명)이었고, 국제심판은 416명(1급 144명, 2급 85명, 3급 107명, 4급 6명, 기타 74명)이었다.

국내심판과 달리 국제심판의 경우, 그 자격 획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인재 아카데미를 통해 국제심판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다. 〈표 7-5〉는 이와 관련된 자격취득 및 역량강화 교육 현황이다.

표 7-5. 국제심판 자격취득 및 역량강화교육 현황(2016~2021)

(단위: 명)

사업명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국제심판 자격취득	41	41	37	36	-	-	155
국제심판 역량강화교육	32	39	30	24	35	30	190

※ 주: 2020~2021 국제심판 자격취득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잠정 중단, 국제심판 자격취득 가이드북 제작으로 대체 (총 20개 종목)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실시되면서 국제심판의 해외강습회 참가를 지원하고, 종목별 최신 규정 습득 및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국제심판 자격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표 7-5〉에서 볼 수 있듯, 2021년 국제심판 역량강화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총 30명이었다. 자격취득 지원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총 20종목에 대한 국제심판 자격취득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대체하였다.

## 2. 체육계 고등학교 및 대학(원)

체육계 고등학교 및 관련 대학(원)에서 육성되는 학생 및 교수 등도 체육계에 속한 중요한 전문인력이다. 체육계 고등학교와 대학에 종사하는 인력의 현황을 살펴본다.

### 1) 고등학교

〈표 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고등학교 체육계열학과는 일반계고, 특목고, 특성화고의 세 범주로 나뉘며 학급 수 226개에 학생 수는 총 5,799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7-6. 고등학교 체육계열학과 및 학생 수 현황(2021)

(단위: 개, 명)

학과명	학급 수	학생 수			
		합계	남	여	
합계	226	5,799	2,839	2,960	
일반계고	무용과	6	93	13	80
	체육과	3	106	85	21
	골프과	6	80	54	26
	생활체육과	1	10	0	10
특목고	무용과	48	1,463	112	1,351
	체육과	95	2,608	1,764	844
	무용연기과	3	75	24	51
	스포츠경기과	9	271	164	107
	바둑과	6	93	84	9
	골프경기과	3	53	34	19
	골프지도과	3	51	36	15
	실용무용과	3	118	19	99
특성화고	골프과	3	40	23	17
	레저스포츠과	4	91	66	25
	생활체육과	7	145	62	83
	레저스포츠경영과	4	85	51	34
	골프산업관리	4	58	10	48
	골프산업경영과	3	45	40	5
	스포츠건강관리과	2	44	0	44
	건강과학과	6	142	75	67
	e스포츠과	2	39	39	0

학과명	학급 수	학생 수			
		합계	남	여	
특성화고	스포츠산업경영과	1	22	17	5
	스포츠과학시설과	2	29	29	0
	스포츠마케팅과	2	38	38	0

※ 주: 조사기준일 2021년 4월 1일

※ 주: 학급 수는 학생수가 1명 이상인 학급의 수

※ 주: 고등학교 분류 중 소계열이 체육, 예체능계열, 무용에 속하는 학과를 기준으로 경영계열의 스포츠마케팅과 추가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서비스.

〈표 7-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반계고, 특목고, 특성화고에 속한 체육계열학과 중 가장 많은 학생이 속한 학과는 특목고 ‘체육과(95개 학급 2,608명)’와 ‘무용과(48개 학급 1,463명)’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고등학교 체육계열 학급은 총 226개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20년의 210개보다 16개 증가한 수치였고, 학생 수도 전체 5,799명(남학생 2,839명, 여학생 2,960명)으로서 2020년 5,530명(남학생 8,867명, 여학생 2,843명)에 비해 269명(4.9%)이 증가하였다.

## 2) 전문대학(2, 3년제)

〈표 7-7〉은 체육계열 전문대학에 속한 전문인력 현황이다. 여기에는 관련 학과 수와 학생 수, 그리고 교원 수가 포함되었다.

표 7-7. 체육계열 전문대학과정 학과 및 학생, 교원 수 현황(2017~2021)

(단위: 개, 명)

학과명	학과 수	학생 수			교원 수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2017	245	16,575	13,141	3,434	300	249	51
2018	219	15,590	12,331	3,259	282	233	49
2019	194	13,990	10,904	3,086	260	214	46
2020	180	13,738	10,574	3,164	253	207	46
2021	176	13,655	10,508	3,147	259	213	46
e-스포츠과	1	95	94	1	2	2	-
k-pop댄스과	1	21	6	15	-	-	-
건강관리과	1	159	114	45	2	1	1
경찰경호무도과	1	55	38	17	1	1	-
경찰무도과	1	103	86	17	-	-	-
경호보안과	3	140	120	20	5	5	-
경호보안학과	1	182	163	19	4	2	2

학과명	학과 수	학생 수			교원 수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경호스포츠과	2	104	92	12	2	2	-
경호스포츠과학학과	1	41	35	6	-	-	-
경호스포츠과학학부	1	265	240	25	-	-	-
경호전공	1	134	114	20	-	-	-
골프경기지도과	1	346	279	67	5	2	3
골프경영과	1	183	161	22	3	3	-
골프과	1	1	1	-	-	-	-
골프레저과	1	27	23	4	-	-	-
골프산업과	2	132	90	42	2	1	1
골프산업학과	1	7	6	1	-	-	-
골프재활과	1	80	65	15	3	3	-
골프지도과	1	1	-	1	-	-	-
골프학과	1	40	29	11	2	2	-
관광레저스포츠계열	1	275	240	35	4	3	1
관광레저스포츠과	1	64	59	5	-	-	-
국제태권도과	2	82	69	13	2	2	-
글로벌실용무용과	1	67	15	52	3	3	-
글로벌실용무용학과	1	32	14	18	-	-	-
레저산업학과	1	5	5	-	-	-	-
레저스포츠과	11	1,178	874	304	22	19	3
레저스포츠과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1	1	-	1	-	-	-
레저스포츠복지과	1	13	10	3	-	-	-
레저스포츠산업과	2	62	49	13	3	3	-
레저스포츠전공	1	21	19	2	-	-	-
레저스포츠학과	5	461	354	107	10	6	4
레저스포츠과	1	122	103	19	2	1	1
레포츠·태권도과	1	288	258	30	9	9	-
레포츠·태권도학과	1	4	4	-	-	-	-
레포츠학과	1	18	17	1	-	-	-
무용전공	1	114	42	72	2	1	1
사회체육과	12	846	721	125	15	15	-
사회체육복지과	2	47	20	27	1	1	-
사회체육학과	1	38	26	12	-	-	-
산업잠수과	1	111	109	2	2	2	-
생활레저스포츠과	1	8	7	1	-	-	-
생활스포츠과	1	1	1	-	-	-	-
생활체육과	10	1,107	915	192	20	15	5
생활체육레저과	2	76	69	7	-	-	-

학과명	학과 수	학생 수			교원 수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생활체육지도과	1	36	24	12	2	2	-
생활체육학과	3	107	73	34	-	-	-
생활체육학부	1	294	221	73	6	6	-
스키스노보드전공	1	30	29	1	-	-	-
스포츠·경호과	2	342	323	19	7	6	1
스포츠·경호보안학부	1	1	1	-	-	-	-
스포츠·건강관리과	1	5	5	-	-	-	-
스포츠·경호학과	1	16	11	5	-	-	-
스포츠건강과학과	1	48	37	11	3	3	-
스포츠건강관리과	5	457	203	254	9	7	2
스포츠건강관리학과	2	96	72	24	3	3	-
스포츠과학과	1	34	17	17	-	-	-
스포츠레저과	6	482	399	83	9	8	1
스포츠레저과(예체능계열)	1	197	163	34	3	2	1
스포츠레저학과	2	26	23	3	-	-	-
스포츠레저학부	1	345	303	42	4	4	-
스포츠복지과(인문사회)	1	102	86	16	2	2	-
스포츠안전지도과	1	4	4	-	-	-	-
스포츠재활과	3	342	295	47	7	4	3
스포츠재활운동학과	1	45	28	17	-	-	-
스포츠재활운동학부	2	76	64	12	5	5	-
스포츠재활지도학과	1	26	13	13	-	-	-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	2	356	303	53	7	6	1
스포츠재활학과	1	46	31	15	-	-	-
스포츠지도과	7	742	605	137	14	12	2
스포츠지도자과	1	55	50	5	2	2	-
스포츠지도학과	2	123	96	27	5	5	-
스포츠지도학과(3년제)	1	53	30	23	-	-	-
스포츠케어과	1	130	115	15	3	3	-
실용댄스과	3	277	73	204	2	-	2
실용무용과	1	3	1	2	-	-	-
실용예술학부 실용댄스과	1	30	9	21	2	-	2
실용예술학부 실용댄스전공	1	35	6	29	-	-	-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3년제)	1	38	-	38	1	-	1
아동체육무용과	1	33	-	33	2	1	1
요가과	1	48	3	45	1	-	1
운동건강과	1	91	57	34	2	2	-
운동재활과	3	150	118	32	4	3	1

학과명	학과 수	학생 수			교원 수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장애인레저스포츠과	1	47	39	8	3	3	-
장애인레저스포츠학과	1	7	4	3	-	-	-
재활레저스포츠과	1	196	169	27	3	2	1
재활복지상담과	2	109	26	83	1	1	-
재활복지스포츠과	-	-	-	-	2	1	1
재활스포츠학과	1	49	25	24	-	-	-
체육과	1	22	22	-	-	-	-
축구과	2	120	119	1	4	4	-
축구학과	2	34	28	6	-	-	-
태권도과	2	4	4	-	-	-	-
태권도외교과	3	234	189	45	7	6	1
태권도체육과	1	68	54	14	3	3	-
태권도체육학과	3	169	119	50	3	2	1
태권도학과	1	63	50	13	-	-	-
휘트니스 실용무용과	1	55	13	42	2	1	1

※ 주: 조사기준일 2021년 4월 1일

※ 주: 학과 수는 해당 학과에 재적학생이 1명 이상인 학과의 수임.

※ 주: 교원수는 총(학)장 및 전임교원으로 퇴직교원 제외, 휴직교원 포함.

※ 주: 한국교육개발원 분류상 소개열이 체육, 무용에 속하는 학과를 기준으로 스포츠산업 관련, 스포츠교육 관련, e-스포츠 관련 학과가 추가됨.

※ 주: 교육대학, 대학교,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대학), 각종대학(대학), 원격대학(대학), 사내대학(대학), 사이버대학(대학)이 포함됨.

※ 주: 2019년부터 재적학생에 학사학위유예생 포함.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서비스.

2021년 전문대학 체육계열학과는 총 176개로서, 학생 수는 총 1만 3,655명(남학생 1만 508명, 여학생 3,147명)이었고, 교직원 수는 259명(남자 213명, 여자 46명)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에 비해 학과 수는 4개 줄었고, 학생 수 역시 0.9%에 해당하는 128명이 줄었으며, 교직원의 경우 6명이 증가하였다.

### 3) 대학교(4년제)

4년제 대학 체육계열학과 현황으로 2021년도 4년제 대학 체육계열학과는 총 523개로서, 2020년의 534개에 비하여 11개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경향과 세부적인 수치가 <표 7-8>에 정리되었다.

표 7-8. 체육계열 대학과정 학과 및 학생, 교원 수 현황(2017~2021)

(단위: 개, 명)

학과명	학과 수	학생 수			교원 수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2017	579	75,488	55,793	19,695	1,639	1,310	329
2018	539	74,057	54,206	19,851	1,557	1,247	310
2019	531	71,019	52,074	18,945	1,453	1,170	283
2020	534	70,823	51,282	19,541	1,476	1,190	286
2021	524	69,720	50,186	19,534	1,487	1,191	296
건강관리학과	2	241	128	113	3	1	2
건강스포츠헌전공	1	3	3	-	-	-	-
건강스포츠헌학부	2	123	71	52	7	6	1
건강운동관리학과	1	141	98	43	3	3	-
검도전공	1	50	40	10	-	-	-
검도학과	1	82	72	10	2	2	-
격기지도학과	1	158	140	18	-	-	-
경기지도전공	1	3	3	-	-	-	-
경기지도학과	4	355	295	60	12	9	3
경기지도학전공	2	139	127	12	4	4	-
경찰경호무도학과	1	3	3	-	1	1	-
경호무도비서학과	1	2	2	-	-	-	-
경호무도학과	1	69	62	7	-	-	-
경호무도학전공	1	49	43	6	-	-	-
경호보안전공	1	48	44	4	-	-	-
경호보안학과	1	274	209	65	4	4	-
경호보안학전공	3	385	314	71	6	5	1
경호비서학과	2	200	182	18	2	1	1
경호전공	1	107	78	29	-	-	-
경호학과	1	349	281	68	6	4	2
경호학부	2	5	5	-	-	-	-
골프산업전공	1	91	69	22	-	-	-
골프산업학과	4	280	169	111	10	9	1
골프전공	1	22	21	1	-	-	-
골프지도학과	1	52	47	5	-	-	-
골프학과	2	213	159	54	4	1	3
골프학전공	1	94	74	20	4	4	-
공연영상창작학부(무용전공)	1	183	34	149	6	3	3
공연예술무용과	1	119	20	99	2	-	2
공연예술체육학부	1	31	30	1	-	-	-

학과명	학과 수	학생 수			교원 수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공연융합예술전공	1	74	41	33	3	1	2
국제스포츠학과	1	175	137	38	-	-	-
국제스포츠학부	3	359	272	87	14	10	4
글로벌스포츠산업전공	2	266	133	133	-	-	-
노인체육복지학과	1	251	174	77	4	1	3
동양무예전공	1	139	116	23	2	1	1
동양무예학과	1	304	263	41	7	7	-
레저스포츠	1	122	110	12	-	-	-
레저스포츠산업학과	1	99	66	33	-	-	-
레저스포츠전공	5	389	287	102	-	-	-
레저스포츠태권도학부	1	9	9	-	-	-	-
레저스포츠학과	13	1,524	1,253	271	21	19	2
레저스포츠학전공	2	417	348	69	9	8	1
레저해양스포츠학과	1	228	177	51	9	9	-
레저힐링학부	1	4	4	-	-	-	-
무도경호학과	1	70	55	15	3	3	-
무도경호학과(신)	1	146	130	16	4	3	1
무도경호학부	2	11	11	-	-	-	-
무도스포츠산업학과	1	37	31	6	-	-	-
무도스포츠학과	1	35	27	8	7	6	1
무도지도학전공	2	79	74	5	-	-	-
무예경호전공	1	1	1	-	-	-	-
무예경호학과	1	164	142	22	5	4	1
무용	2	43	9	34	1	-	1
무용과	9	1,127	138	989	23	4	19
무용예술학과	3	320	31	289	10	2	8
무용전공	3	316	58	258	3	2	1
무용학과	16	1,151	228	923	38	11	27
무용학부	1	212	25	187	4	-	4
무용학전공	1	97	16	81	-	-	-
미래라이프융합학부	2	54	30	24	5	4	1
민속무용학과	1	75	17	58	4	-	4
바둑학과	1	186	157	29	3	1	2
발레전공	2	48	9	39	-	-	-
복지서비스학부 노인체육복지학과	1	158	109	49	3	3	-
복지융합인재학부 스포츠복지전공	1	204	149	55	-	-	-

학과명	학과 수	학생 수			교원 수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사회체육전공	3	196	183	13	5	5	-
사회체육학과	20	2,556	2,043	513	44	39	5
사회체육학부	4	24	24	-	-	-	-
사회체육학전공	3	418	329	89	6	5	1
산업스포츠학과	1	135	120	15	1	1	-
생활무용학과	1	135	28	107	-	-	-
생활체육전공	3	217	168	49	3	2	1
생활체육지도과	1	1,001	539	462	-	-	-
생활체육지도학과	1	110	74	36	2	2	-
생활체육학과	15	2,242	1,728	514	37	29	8
생활체육학전공	1	22	-	22	3	2	1
스포츠·무도학부	1	33	28	5	-	-	-
스포츠건강과학과	2	72	40	32	2	2	-
스포츠건강관리학	1	1	1	-	-	-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5	801	592	209	15	13	2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5	442	365	77	4	4	-
스포츠건강재활전공	1	185	155	30	4	4	-
스포츠건강재활학과	2	539	409	130	8	5	3
스포츠건강학과	3	601	378	274	6	5	1
스포츠건강학전공	1	167	140	27	-	-	-
스포츠경영전공	1	138	105	33	7	6	1
스포츠경영학과	4	882	608	274	6	5	1
스포츠경영학전공	2	9	9	-	-	-	-
스포츠경호무도학과	1	88	80	8	7	6	1
스포츠경호학과	4	509	401	108	12	11	1
스포츠경호학부	2	28	27	1	-	-	-
스포츠과학과	16	3,141	2,541	600	78	68	10
스포츠과학부	16	3,949	3,087	862	68	61	7
스포츠과학부 무도경호학전공	1	40	28	12	-	-	-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과학전공	1	84	55	29	-	-	-
스포츠과학부 태권도전공	1	174	148	26	3	3	-
스포츠과학부(골프지도전공)	1	98	82	16	-	-	-
스포츠과학부(생활체육학전공)	1	108	104	4	-	-	-
스포츠과학전공	3	414	185	229	3	2	1
스포츠교육학과	1	223	160	63	3	2	1
스포츠레저산업학과	1	105	91	14	6	4	2

학과명	학과 수	학생 수			교원 수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스포츠레저학과	12	1,462	1,104	358	25	21	4
스포츠레저학부	2	3	3	-	-	-	-
스포츠레저학전공	1	310	263	47	7	7	-
스포츠무용학부 무용예술전공	1	170	38	132	3	1	2
스포츠무용학부 스포츠건강관리전공	1	205	161	44	4	2	2
스포츠문화전공	1	182	162	20	4	4	-
스포츠문화학과	1	111	109	2	3	2	1
스포츠복지경영학과	1	2	2	-	-	-	-
스포츠복지학과	2	30	19	11	1	1	-
스포츠비즈니스전공	1	256	166	90	3	3	-
스포츠산업·복지학과	1	25	25	-	-	-	-
스포츠산업경영학과	1	16	16	-	-	-	-
스포츠산업레저학과	1	203	165	38	6	5	1
스포츠산업복지학과	1	44	33	11	-	-	-
스포츠산업융합학부	1	2	2	-	-	-	-
스포츠산업학과	3	444	365	79	17	12	5
스포츠산업학부	1	24	21	3	-	-	-
스포츠산업학부(사회체육전공)	1	155	118	37	-	-	-
스포츠산업학부(스포츠산업전공)	1	136	119	17	-	-	-
스포츠산업학전공	1	82	65	17	3	3	-
스포츠운동과학과	1	37	-	37	6	6	-
스포츠융합과학과	1	81	59	22	-	-	-
스포츠융합학부	1	105	84	21	-	-	-
스포츠응용산업학과	1	233	200	33	8	7	1
스포츠의학과	6	1,081	773	308	12	11	1
스포츠의학전공	-	-	-	-	4	4	-
스포츠재활심리학과	1	6	6	-	-	-	-
스포츠재활운동학과	1	19	8	11	1	1	-
스포츠재활전공	1	115	86	29	2	2	-
스포츠재활트랙	-	-	-	-	1	-	1
스포츠재활학과	5	353	301	52	11	10	1
스포츠지도전공	1	9	9	-	-	-	-
스포츠지도학과	4	1,058	894	164	15	14	1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1	250	191	59	6	4	2
스포츠코칭전공	1	180	168	12	4	4	-
스포츠학부	6	916	755	161	24	21	3

학과명	학과 수	학생 수			교원 수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스포츠학부 마산업전공	1	4	4	-	-	-	-
스포츠학부 스포츠지도학전공	1	113	101	12	8	7	1
스포츠학부 스포츠코칭전공	1	35	32	3	-	-	-
스포츠헬스케어학과	1	247	202	45	5	5	-
시니어스포츠학전공	2	78	51	27	-	-	-
시니어운동처방학과	1	62	17	45	1	-	1
시니어웰니스학부	-	-	-	-	7	5	2
시큐리티매니지먼트학과	1	216	155	61	3	3	-
실기과	1	259	125	134	8	3	5
실버스포츠산업학과	1	2	2	-	-	-	-
실버스포츠학과	1	4	4	-	-	-	-
실버스포츠학전공	1	153	104	49	-	-	-
실용무용전공	2	71	29	42	-	-	-
예체능학부 스포츠복지전공	1	45	27	18	4	4	-
요가명상학과	1	770	94	676	2	1	1
요가학과	1	1	-	1	-	-	-
운동건강관리	1	147	104	43	-	-	-
운동건강관리전공	2	200	141	59	3	3	-
운동건강관리학과	1	234	186	48	6	6	-
운동건강학부	1	338	240	98	9	7	2
운동과학전공	1	1	1	-	-	-	-
운동처방재활학과	2	296	250	46	5	4	1
운동처방학과	5	488	369	119	11	10	1
운동처방학전공	1	204	155	49	-	-	-
웰니스스포츠과학전공	1	19	14	5	-	-	-
웰빙체육학부	1	187	150	37	-	-	-
유도경기지도학과	1	341	277	64	8	7	1
유도학과	1	400	339	61	5	5	-
융합레포츠전공	1	31	20	11	-	-	-
융합레포츠학과	1	29	19	10	-	-	-
융합스포츠지도학과	-	-	-	-	1	1	-
융합학부(스포츠매니지먼트전공)	1	13	13	-	-	-	-
이론과(무용이론)	1	61	4	57	6	4	2
재활스포츠학부(특수체육학트랙, 스포츠재활트랙)	1	70	37	33	-	-	-
재활치료학부(특수체육학전공)	1	171	131	40	-	-	-
재활치료학부(특수체육학전공, 스포츠재활전공)	-	-	-	-	1	1	-

학과명	학과 수	학생 수			교원 수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재활치료학부(특수체육학트랙, 스포츠재활트랙)	1	8	7	1	-	-	-
창작과	1	80	27	53	3	2	1
창조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	1	71	13	58	3	1	2
체육과학부	1	57	-	57	6	2	4
체육과학전공	2	7	3	4	-	-	-
체육교육과	28	4,916	3,977	939	182	157	25
체육교육과(심화과정)	1	117	61	56	6	5	1
체육교육과(심화전공)	3	313	149	164	18	17	1
체육교육학과	1	295	247	48	7	7	-
체육전공	2	200	161	39	-	-	-
체육학	1	172	144	28	2	2	-
체육학과	29	6,926	5,156	1,770	160	133	27
체육학부	7	696	578	118	31	25	6
체육학부 경기지도학전공	1	44	39	5	-	-	-
체육학부 생활체육학전공	1	128	115	13	-	-	-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1	310	257	53	1	-	1
체육학부 태권도학전공	1	269	194	75	1	1	-
체육학부 합기도학전공	1	10	10	-	-	-	-
체육학부(체육)	1	276	219	57	5	4	1
체육학부(체육학전공)	1	3	3	-	-	-	-
체육학부(태권도)	1	215	146	69	3	2	1
체육학전공	4	738	580	158	7	6	1
초등체육교육과(심화과정)	6	676	231	445	37	31	6
축구전공	2	20	20	-	-	-	-
축구학과	4	257	247	10	4	3	1
태권도·생활체육학과	1	9	8	1	-	-	-
태권도경기지도학과	1	58	55	3	-	-	-
태권도경호학과	2	139	127	12	5	5	-
태권도교육융합전공	1	81	66	15	2	1	1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1	173	114	59	-	-	-
태권도전공	2	258	206	52	2	2	-
태권도학과	14	3,070	2,296	774	59	49	10
태권도학부	1	1	1	-	1	1	-
태권도학전공	1	163	119	44	4	4	-
특수체육교육과	6	1,003	794	209	33	23	10
특수체육교육학과	1	50	38	12	3	1	2

학과명	학과 수	학생 수			교원 수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특수체육전공	2	7	5	2	-	-	-
특수체육학과	1	242	200	42	5	4	1
특수체육학트랙	-	-	-	-	5	5	-
평생체육지도전공	1	11	10	1	-	-	-
한국무용전공	3	84	9	75	-	-	-
한방스포츠의학과	1	135	108	27	-	-	-
한방스포츠의학전공	2	86	75	11	-	-	-
항공보안경호학부	1	64	45	19	12	12	-
항공보안학전공	1	66	41	25	-	-	-
항노화헬스케어학과	1	88	33	55	1	1	-
해양레저관광학과	1	229	175	54	4	4	-
해양레저학과	2	137	103	34	-	-	-
해양스포츠과학과	1	27	24	3	5	5	-
해양스포츠학과	2	293	225	68	7	7	-
해양체육학과	1	119	86	33	-	-	-
현대무용전공	2	47	12	35	-	-	-
휴먼헬스케어학과	1	30	26	4	5	4	1

※ 주: 조사기준일 2021년 4월 1일

※ 주: 학과 수는 해당 학과에 재적학생이 1명 이상인 학과의 수임.

※ 주: 교원수는 총(학)장 및 전임교원으로 퇴직교원 제외, 휴직교원 포함.

※ 주: 한국교육개발원 분류상 소개열이 체육, 무용에 속하는 학과를 기준으로 스포츠산업 관련, 스포츠교육 관련, 노인체육 관련 학과가 추가됨.

※ 주: 교육대학, 대학교,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대학), 각종대학(대학), 원격대학(대학), 사내대학(대학), 사이버대학(대학)이 포함됨.

※ 주: 2019년부터 재적학생에 학사학위 유예생 포함.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서비스.

〈표 7-8〉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년제 대학 체육계열학과 학생 수는 2021년 기준으로 총 6만 9,720명(남학생 5만 186명, 여학생 1만 9,534명)으로 집계되었다. 4년제 대학 체육계열학과 학생 수는 2017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1년 4년제 대학 체육계열학과 교원 수는 총 1,487명으로 2020년 대비(1,476명) 11명 증가하였다. 체육계열 학과 중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한 학과 명칭은 '체육학과'로서 학생 수는 총 6,926명으로 집계되었다.

#### 4) 대학원(석사, 박사과정)

다음은 대학원에서 운영되는 체육계열학과 현황이다. 대학원 체육계열학과의 학과 수와

학생 수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구분되어 집계되고 있다. 자세한 현황은 <표 7-9>와 같다.

표 7-9. 체육계열 대학원과정 학과 및 학생, 교원 수 현황(2017~2021)

(단위: 개, 명)

학과명	학과 수		학생 수						교원 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	박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2017	337	121	7,292	4,924	2,368	1,542	965	577	78	50	28
2018	332	131	7,094	4,734	2,360	1,633	1,023	610	79	50	29
2019	323	125	6,638	4,273	2,365	1,875	1,176	699	71	48	23
2020	331	128	6,428	3,992	2,436	2,099	1,298	801	79	53	26
2021	328	125	6,524	4,024	2,500	2,027	1,246	781	78	52	26
건강과학과	2	2	91	30	61	30	11	19	11	7	4
건강과학산업학과	1	-	52	14	38	-	-	-	1	1	-
건강관리전공	1	-	36	27	9	-	-	-	-	-	-
건강레저전공	1	-	38	22	16	-	-	-	-	-	-
건강스포츠포교육전공	2	-	34	11	23	-	-	-	-	-	-
건강운동관리학과	1	-	25	9	16	-	-	-	1	-	1
경호무도지도전공	1	-	14	12	2	-	-	-	1	1	-
경호보안학과	2	1	18	14	4	11	10	1	-	-	-
경호안전학과	1	-	1	-	1	-	-	-	-	-	-
경호학과	2	2	14	12	2	17	16	1	-	-	-
골프경영학과	2	-	18	18	-	-	-	-	-	-	-
골프과학 및 산업전공	1	-	26	16	10	-	-	-	4	3	1
골프과학전공	1	-	9	8	1	-	-	-	-	-	-
골프레저경영학과	1	-	31	29	2	-	-	-	-	-	-
골프비즈니스전공	1	-	6	2	4	-	-	-	-	-	-
골프산업·경영전공	1	-	16	13	3	-	-	-	-	-	-
골프산업학과	1	-	25	20	5	-	-	-	-	-	-
골프지도학과	1	-	15	13	2	-	-	-	-	-	-
골프클럽피팅학과	1	-	2	2	-	-	-	-	-	-	-
골프학과	2	-	16	13	3	-	-	-	-	-	-
글로벌스포츠티더전공	1	-	7	5	2	-	-	-	-	-	-
글로벌스포츠학과	1	-	13	11	2	-	-	-	-	-	-
노인체육복지학과	1	-	2	2	-	-	-	-	-	-	-
뇌교육학과	1	1	32	6	26	45	14	31	5	3	2
레저및경기지도학과	1	-	15	11	4	-	-	-	1	1	-
레저스포츠학과	7	2	38	25	13	15	8	7	1	1	-
레저헬스케어학과	1	-	1	-	1	-	-	-	-	-	-

학과명	학과 수		학생 수						교원 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	박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무도학과	1	1	8	8	-	14	13	1	-	-	-
무용공연예술학과	1	-	13	4	9	-	-	-	-	-	-
무용과	1	-	9	-	9	-	-	-	-	-	-
무용예술학과	1	-	15	-	15	-	-	-	-	-	-
무용융합콘텐츠학과	-	1	-	-	-	5	-	5	-	-	-
무용학과	19	8	519	101	418	190	40	150	2	1	1
문화스포츠복지전공	1	-	16	12	4	-	-	-	-	-	-
민속무용학과	1	1	5	-	5	7	3	4	-	-	-
바둑학과	1	1	5	5	-	5	1	4	-	-	-
발달재활·특수체육학과	1	-	17	10	7	-	-	-	-	-	-
보건·특수체육학과	1	-	3	3	-	-	-	-	-	-	-
보건체육학과	1	-	19	2	17	-	-	-	-	-	-
사회체육학과	5	3	27	19	8	9	6	3	2	2	-
생활무용전공	1	-	34	5	29	-	-	-	-	-	-
생활체육교육전공	1	-	11	11	-	-	-	-	-	-	-
생활체육교육학과	2	-	41	15	26	-	-	-	1	-	1
생활체육전공	2	-	68	55	13	-	-	-	1	1	-
생활체육학과	3	2	18	12	6	19	14	5	-	-	-
선수트레이닝전공	1	-	98	65	33	-	-	-	1	1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1	-	8	6	2	-	-	-	-	-	-
스포츠건강융합학과	-	1	-	-	-	9	5	4	-	-	-
스포츠건강학과	1	1	11	8	3	20	14	6	-	-	-
스포츠경기심판전공	1	-	4	1	3	-	-	-	-	-	-
스포츠경영전공	1	-	46	30	16	-	-	-	-	-	-
스포츠경영정보학과	1	-	3	3	-	-	-	-	-	-	-
스포츠경영학과	4	-	88	68	20	-	-	-	1	1	-
스포츠공학융합학과	1	-	4	3	1	-	-	-	-	-	-
스포츠과학과	15	12	217	148	69	139	106	33	-	-	-
스포츠과학융합학과	1	1	6	5	1	14	9	5	-	-	-
스포츠과학전공	1	-	12	9	3	-	-	-	-	-	-
스포츠과학학과	2	-	48	42	6	-	-	-	-	-	-
스포츠관리전공	1	-	16	13	3	-	-	-	-	-	-
스포츠교육전공	1	-	4	4	-	-	-	-	-	-	-
스포츠기록분석전공	1	-	12	12	-	-	-	-	1	1	-
스포츠레저학과	1	1	1	1	-	10	3	7	-	-	-
스포츠문화융합학과	1	-	23	15	8	-	-	-	-	-	-
스포츠문화행정전공	1	-	8	8	-	-	-	-	-	-	-

학과명	학과 수		학생 수						교원 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	박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스포츠복지교육학과	1	1	3	3	-	4	1	3	-	-	-
스포츠비즈니스학과	2	-	16	11	5	-	-	-	-	-	-
스포츠빅데이터인먼트전공	1	1	17	12	5	24	19	5	4	3	1
스포츠산업경영전공	1	-	50	41	9	-	-	-	-	-	-
스포츠산업전공	1	-	10	7	3	-	-	-	-	-	-
스포츠산업정보학과	1	1	1	1	-	1	1	-	-	-	-
스포츠산업학과	4	-	55	48	7	-	-	-	-	-	-
스포츠산업학전공	1	-	22	15	7	-	-	-	-	-	-
스포츠안전관리전공	1	-	18	15	3	-	-	-	-	-	-
스포츠융합과학과	1	-	8	7	1	-	-	-	-	-	-
스포츠융합기술학과	1	-	1	1	-	-	-	-	-	-	-
스포츠융합학과	2	2	10	7	3	8	6	2	-	-	-
스포츠융합학과(스포츠의학전공)	1	-	5	4	1	-	-	-	-	-	-
스포츠융합학과(해양레저산업전공)	1	-	4	4	-	-	-	-	-	-	-
스포츠응용산업학과	1	1	62	39	23	29	18	11	-	-	-
스포츠의과학과	1	1	24	13	11	5	5	-	-	-	-
스포츠의학과	7	-	127	72	55	-	-	-	1	1	-
스포츠의·과학전공	1	1	36	24	12	17	13	4	6	4	2
스포츠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1	1	28	22	6	14	13	1	-	-	-
스포츠재활전공	2	-	113	80	33	-	-	-	-	-	-
스포츠재활학과	1	-	3	2	1	-	-	-	-	-	-
스포츠지도전공	1	-	17	15	2	-	-	-	-	-	-
스포츠지도학과	1	-	14	13	1	-	-	-	-	-	-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1	-	22	14	8	-	-	-	-	-	-
스포츠카운셀링 및 운동심리치료전공	1	-	1	-	1	-	-	-	-	-	-
스포츠테크노산업학과	1	-	1	1	-	-	-	-	-	-	-
스포츠학과	2	-	73	55	18	-	-	-	-	-	-
스포츠헬스케어전공	1	-	3	2	1	-	-	-	-	-	-
신체활동레저학과	1	-	7	7	-	-	-	-	-	-	-
심신통합치유학과	1	1	46	3	43	15	6	9	2	-	2
아동건강교육전공	1	-	20	17	3	-	-	-	-	-	-
야구학과	1	-	2	2	-	-	-	-	-	-	-
예체능학과	1	1	16	12	4	14	13	1	-	-	-
요가학과	1	-	12	1	11	-	-	-	-	-	-
운동건강관리전공	1	-	51	34	17	-	-	-	-	-	-
운동처방전공	1	-	7	4	3	-	-	-	-	-	-
융합요가학과	1	-	25	5	20	-	-	-	-	-	-

학과명	학과 수		학생 수						교원 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	박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장애인체육전공	1	-	38	28	10	-	-	-	-	-	-
전통무용전공	1	-	50	1	49	-	-	-	-	-	-
체육 및 여가교육전공	1	-	85	38	47	-	-	-	-	-	-
체육과학부	1	1	9	-	9	9	-	9	-	-	-
체육교육과	2	3	69	35	34	47	32	15	-	-	-
체육교육과(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전공)	1	1	97	54	43	23	16	7	-	-	-
체육교육전공	58	1	1,992	1,386	606	16	11	5	29	19	10
체육교육학과	-	1	-	-	-	7	7	-	-	-	-
체육전공	1	-	2	2	-	-	-	-	-	-	-
체육학과	58	58	797	535	262	1,159	756	403	2	1	1
체육학과(체육학전공)	1	-	1	-	1	-	-	-	-	-	-
체육학전공	1	-	21	14	7	-	-	-	-	-	-
초등무용교육전공	2	-	14	1	13	-	-	-	-	-	-
초등체육교육전공	11	3	163	109	54	18	14	4	-	-	-
축구산업전공	1	-	9	8	1	-	-	-	-	-	-
축구학과	2	-	7	7	-	-	-	-	-	-	-
태권도교육전공	1	-	3	3	-	-	-	-	-	-	-
태권도교육학과	1	-	2	2	-	-	-	-	-	-	-
태권도산업경영학과	1	-	1	1	-	-	-	-	-	-	-
태권도전공	2	-	66	55	11	-	-	-	-	-	-
태권도학과	3	2	48	35	13	47	33	14	-	-	-
태권도학전공	1	1	15	9	6	7	5	2	-	-	-
특수체육교육	1	-	3	-	3	-	-	-	-	-	-
특수체육학과	1	1	11	6	5	1	1	-	-	-	-
필라테스재활전공	1	-	5	-	5	-	-	-	-	-	-
필라테스전공	1	-	4	-	4	-	-	-	-	-	-
학교체육교육	1	-	28	18	10	-	-	-	-	-	-
한양방스포츠킴관관리학과	1	-	10	4	6	-	-	-	-	-	-
항공보안경호학과	1	1	3	3	-	3	3	-	-	-	-
항공해양스포츠헬학과	1	-	1	1	-	-	-	-	-	-	-
해양스포츠헬학전공	1	-	8	8	-	-	-	-	-	-	-

※ 주: 조사기준일 2021년 4월 1일

※ 주: 학과 수는 해당 학과에 재적학생이 1명 이상인 학과의 수임.

※ 주: 교원수는 총(학)장 및 전임교원으로 퇴직교원 제외, 휴직교원 포함.

※ 주: 한국교육개발원 분류상 소개열이 체육, 예체능계열, 무용에 속하는 학과를 기준으로 스포츠산업 관련, 스포츠교육 관련, 스포츠의학 관련 학과가 추가됨.

※ 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이 포함됨.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서비스.

〈표 7-9〉에 따르면, 대학원 체육계열학과 중 석사과정은 2021년 기준 328개였고, 박사과정은 125개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9년의 석사과정 331개와 박사과정 128개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였다. 학생 수의 경우, 올해 석사과정은 총 6,524명(남학생 4,024명, 여학생 2,500명)으로 2020년의 6,428명에 비해 96명(1.5%) 증가한 반면, 박사과정은 2,027명(남학생 1,246명, 여학생 781명)으로 2020년에 비해 72명(3.4%) 감소하였다. 대학원 체육계열 전담 교원 수는 총 78명(남자 52명, 여자 26명)으로 2020년(79명)에 비해 1명 감소하였다.

## 제3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 1.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 1)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변화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는 2012년 2월 17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2015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개편되었다. 자격취득과정 자격체계는 기존 <실기 → 구술시험 → 연수 → 필기시험>에서 <필기시험 →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실무)>로 변경되었다.



그림 7-1.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변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21)

이와 같은 자격체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위의 <그림 7-1>에서 볼 수 있듯,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였던 기존 자격 구분이 변화하는 체육계의 상황을 반영하며 지도대상과 분야를 구분한 후 자격체계를 세분화했다는 사실이다.

#### 2)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체계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체계는 지도대상과 지도내용, 분야별로 구성되었다. <표 7-10>에 자세히 설명된 것과 같이, 지도내용은 기본적으로 '스포츠 종목'과 '운동수행방법'으로

구분되면서 대상과 분야에 따라 총 여섯 개의 자격종류를 갖추었다.

표 7-10. 체육지도자 지도대상 및 분야

지도내용	대상		분야	자격등급·종류
스포츠 종목	비장애인	유소년 (만3세~초등학생)	생활체육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전문체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과거 1급 경기지도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과거 2급 경기지도자)
		청소년 성인	생활체육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과거 2급 생활체육지도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과거 3급 생활체육지도자)
		노인(만65세 이상)	생활체육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 ※ 전문체육, 생활체육, 종목 前단계인 기초운동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운동수행방법 지도·관리		건강운동관리사 ※ 과거 1급 생활체육지도자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21).

〈표 7-10〉에서 보는 것처럼, ‘지도대상’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비장애인’은 연령에 따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전문, 생활)스포츠지도사 1, 2급, 노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되고,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1급과 2급)로 분류된다. 여기에 덧붙여 운동수행 방법 지도와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운동관리사’ 자격등급이 함께 운영된다.

### 3) 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정의

〈표 7-11〉은 각 자격제도 내 ‘종류’의 구체적 정의를 개괄한 내용이다.

표 7-11. 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정의

구분	정의
스포츠지도사	•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강운동관리사	•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관리하는 사람을 말함. ※ 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함.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구분	정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함)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노인스포츠지도사	•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21).

#### 4)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

개정 전·후 체육지도자 자격요건의 가장 큰 변화는 학력 제한의 유·무이다(개정 후 학력에 의한 자격요건 삭제). 구체적인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변화 내용은 <표 7-12>와 같다.

표 7-12.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과거		현행	
1급 경기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급 경기+경기지도 경력 1년</li> <li>체육 석사+경기/경기지도 경력 1년</li> </ul>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종목 2급 전문 취득 후 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li> </ul>
2급 경기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분야 학사</li> <li>대학교 졸업+경기경력 4년</li> <li>전문대학 졸업+경기경력 5년</li> <li>고교 졸업+경기경력 6년/국가대표</li> </ul>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종목 경기경력 4년 이상</li> <li>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업 연한을 경기경력으로 인정</li> <li>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졸업 예정자 포함)</li> <li>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li> </ul>
2급 생활체육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급 생체+선수/체육분야 행정·연구 지도 경력 3년</li> <li>체육분야 학사</li> <li>대학교/체육분야 전문대학 졸업+선수/체육분야 행정·연구·지도 경력 2년</li> </ul>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종목 2급 생활 취득 후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li> </ul>
3급 생활체육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세 이상</li> </ul>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세 이상</li> </ul>
1급 생활체육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급 생체+선수/체육분야 행정·연구 지도 경력 3년</li> <li>체육분야 석사/박사</li> <li>운동처방전공 석사</li> </ul>	건강운동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li> <li>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li> </ul>

과거		현행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해당종목 2급 장애인 취득 후 해당 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18세 이상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 18세 이상
		노인 스포츠지도사	• 18세 이상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21)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가장 급격한 변화는 1급을 제외한 2급 자격의 경우 자격요건을 18세 이상으로 두어 경기경력 및 체육전공 여부와 무관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 5)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은 자격종류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표 7-13>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이 과거와 현행 별로 어떻게 다른가를 개괄한다.

표 7-13.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과거		현행	
경기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댄스스포츠, 태권</li> </ul>	전문 스포츠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도, 골프, 공수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주짓수,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태권,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합합</li> </ul>
생활 체육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 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li> </ul>	생활 스포츠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축구, 주짓수, 줄넘기, 철인3종경기, 축구, 치어리딩, 카누,</li> </ul>

과거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로어볼,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힙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스포츠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볼, 공수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스노보드, 승마, 아이스하키, 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파크골프, 펜싱, 핸드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소년 스포츠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줄넘기,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피구,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 스포츠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li> </ul> </li> </ul>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21).

〈표 7-13〉에서 볼 수 있듯, 과거에 수행되던 자격종목에 비해 현행 운영되는 종목의 종류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전문스포츠지도사는 기존 54개 종목에서 3개 종목이 추가된 57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2021년 새로 추가된 종목은 주짓수와 힙합 두 종목이다.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020년 기준 57개 종목에서 8개 종목이 추가(국학기공, 소프트볼, 주짓수, 줄넘기, 치어리딩, 택견, 플로어볼, 힙합)되어 2021년 현재 총 65개 종목이 실행되는 중이다. 유소년스포츠지도사의 경우에는 2020년 60개 종목에서 2개 종목(택견, 플로어볼)이

추가된 62개 종목이, 노인스포츠지도사는 2020개 58개 종목에서 2개 종목(국학기공, 택견)이 추가된 60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공수도, 골볼, 보치아 등이 포함된 36개 종목이 실행되는 중이며, 2021년에는 당구와 파크골프 두 종목이 추가되었다.

## 6) 자격검정 시험과목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격검정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표 7-14>에는 각 자격종류별 치러야 할 과목에 대한 세부내용이 정리되었다.

표 7-14.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과목

과거		현행	
1급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기: 9과목</li> <li>영어, 컴퓨터, 스포츠심리학Ⅱ, 스포츠생리학Ⅱ, 스포츠생체역학Ⅱ, 스포츠사회학Ⅱ, 트레이닝론Ⅱ, 코칭론Ⅱ, 스포츠의학</li> </ul>	1급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기: 4과목</li> <li>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스포츠영양학</li> </ul>
2급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기: 8과목</li> <li>영어, 한국체육사, 스포츠심리학Ⅰ, 스포츠생리학Ⅰ, 스포츠생체역학Ⅰ, 스포츠사회학Ⅰ, 트레이닝론Ⅰ, 체력측정평가</li> <li>실기와 구술시험</li> </ul>	2급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기: 5과목</li> <li>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7과목 중 5과목 선택)</li> <li>실기 및 구술시험</li> </ul>
2급 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기: 9과목</li> <li>건강교육,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운동역학, 트레이닝론, 체력검사, 인체해부학, 운동상해</li> <li>실기와 구술시험</li> </ul>	1급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기: 4과목</li> <li>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li> <li>실기 및 구술시험</li> </ul>
3급 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기: 8과목</li> <li>생활체육론, 건강관리,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레크리에이션론, 트레이닝론, 구급 및 안전관리</li> <li>실기와 구술시험</li> </ul>	2급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기: 5과목</li> <li>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7과목 중 5과목 선택)</li> <li>실기 및 구술시험</li> </ul>
1급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기: 12과목</li> <li>운동심리학, 생체역학, 심폐소생법, 운동생리학, 운동영양학, 기능해부학, 병리생리학, 심전도 원리, 운동부하 검사, 체력 및 건강검사, 체력육성지도법, 운동처방론</li> </ul>	건강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기: 8과목</li> <li>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li> <li>실기 및 구술시험</li> <li>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li> </ul>

과거	현행
	1급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기: 4과목</li> <li>장애인스포츠론,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li> <li>실기 및 구술시험, 장애유형에 따른 지도방법</li> </ul>
	2급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기: 5과목</li> <li>필수(1): 특수체육론</li> <li>선택(4):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li> <li>실기 및 구술시험, 장애유형에 따른 지도방법</li> </ul>
	유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기: 5과목</li> <li>필수(1): 유아체육론</li> <li>선택(4):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li> <li>실기 및 구술시험, 유소년 발육·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 방법</li> </ul>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기: 5과목</li> <li>필수(1): 노인체육론</li> <li>선택(4):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li> <li>실기 및 구술시험,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li> </ul>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2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필기시험 4과목(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스포츠 영양학),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필기시험 7과목(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5과목을 선택한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필기시험 4과목(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 교육론),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자격검정 필기시험과목이 동일하다. 그리고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실기 및 구술시험이 있다. 건강운동 관리사는 필기시험 8과목(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 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의 실기 및 구술시험이 있다.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필기시험 4과목(장애인스포츠론,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필수 1과목(특수체육론)과 선택 7과목(스포츠 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4과목을 선택한다. 또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장애유형에 따른 지도방법을 포함한 실기

및 구술시험이 있다.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필수 1과목(유아체육론)과 선택 7과목(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4과목을 선택한다. 또한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 발육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을 포함한 실기 및 구술시험이 있다. 노인스포츠지도사는 필수 1과목(노인체육론)과 선택 7과목(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4과목을 선택한다. 그리고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방법을 포함한 실기 및 구술시험이 있다.

## 2.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 현황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은 <표 7-15>와 같이 필기검정기관,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연수기관으로 구분된다. 필기검정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며,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경우가 다르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장애인의 경우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태권도 종목의 경우 국기원이 단일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태권도를 제외한 종목은 각 종목 경기단체에서 자격검정을 담당한다.

표 7-15.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자격구분	검정기관	비고
전문스포츠지도사(2급)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필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 대한체육회, 국기원	※ 경기단체 주관 ※ 태권도 종목에 한해 국기원을 해당 자격 단일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
장애인스포츠지도사(1급, 2급)	필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국기원	
전문스포츠지도사(1급) 건강운동관리사	국민체육진흥공단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21).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역시 각 자격종류별 및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운영된다. <표 7-16>은 자격종류별 지역 연수기관 현황이다.

표 7-16.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구분	총 개소	지역	연수기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개소	수도권	국민체육진흥공단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6개소	수도권	중앙대, 한국체육대, 국기원
		경상	동아대
		충청	충남대
		전라	조선대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개소	수도권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라	원광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0개소	수도권	경기대, 경희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ERICA)
		경상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충청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전라	군산대, 전남대, 전북대
		강원	강릉원주대
		제주	제주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5개소	수도권	중앙대
		경상	경남대
		충청	호서대
		전라	광주대
		강원	가톨릭관동대
노인스포츠지도사	7개소	수도권	연세대, 이화여대
		경상	신라대
		충청	대전대
		전라	목포대, 호남대
		강원	가톨릭관동대
건강운동관리사	4개소	수도권	연세대
		경상	부경대
		충청	순천향대
		전라	조선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개소	수도권	국민체육진흥공단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5개소	수도권	용인대, 한국체육대
		경상	대구대
		충청	백석대
		전라	원광대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21).

〈표 7-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1개소,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6개소,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개소,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0개소, 유소년스포츠

지도사는 5개소, 노인스포츠지도사는 7개소, 건강운동관리사는 4개소,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개소,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폭력예방 교육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3. 체육지도자 양성

#### 1) 연도별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표 7-17〉은 2021년에 양성된 체육지도자 현황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 2021년에는 총 2만 8,556명의 체육지도자가 양성되었다. 2021년 배출된 체육지도자 자격종류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7-17.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단위: 명)

자격등급	남자			여자			성별불명			남녀합계		
	계	2021년	2020년 이전	계	2021년	2020년 이전	계	2021 년	2020년 이전	계	2021년	2020년 이전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268	83	1,185	278	23	255	-	-	-	1,546	106	1,440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35,399	2,789	32,610	9,329	1,207	8,122	14	-	14	44,742	3,996	40,746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7,731	236	7,495	2,878	158	2,720	1	-	1	10,610	394	10,216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81,195	10,753	170,442	70,207	5,767	64,440	51	1	50	251,453	16,521	234,932
건강운동관리사	1,698	261	1,437	739	107	632	-	-	-	2,437	368	2,069
1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42	27	15	12	12	-	-	-	-	54	39	15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2,918	1,051	1,867	1,889	888	1,001	2	-	2	4,809	1,939	2,870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5,407	1,140	4,267	4,120	906	3,214	-	-	-	9,527	2,046	7,481
노인스포츠지도사	5,316	1,421	3,895	7,268	1,726	5,542	-	-	-	12,584	3,147	9,437
합계	240,974	17,761	223,213	96,720	10,794	85,926	68	1	67	337,762	28,556	309,206

※ 주: 한 명이 다종목을 취득한 경우는 개별 합산됨.

※ 주: 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 2014년까지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운동처방)로 양성된 인원임.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2021).

2021년에 양성된 체육지도자 2만 8,556명 중 남자는 1만 7,761명(62.2%)이었고, 여자는 1만 794명(37.8%)으로 2020년의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인원 총 1,852명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숫자다. 이는 2020년에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예방 및 응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체육지도자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이 제한되고, 지자체의 실내체육시설 운영 자제 권고와 체육지도자 현장 실습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수가 전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 배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06명,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3,996명,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394명,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만 6,521명, 건강운동관리사 363명,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39명,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939명, 유소년스포츠지도사 2,046명, 노인스포츠지도사 3,147명이 양성되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양성된 체육지도자는 누적 33만 7,762명이 되었다.

## 2) 종목별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2021년까지 양성된 체육지도자는 총 109개의 종목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 종목별 체육지도자 현황은 <표 7-18>과 같다.

표 7-18. 종목별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단위: 명)

연번	종목	전체				연번	종목	전체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1	검도	2,775	148	8	2,619	56	바이애슬론	91	6	2	83
2	게이트볼	4,371	172	45	4,154	57	인라인스케이트	1,035	52	7	976
3	골프	12,443	782	31	11,630	58	럭비	502	36	17	449
4	궁도	272	60	4	208	59	봅슬레이·스켈레톤	54	5	5	44
5	근대5종	246	10	-	236	60	댄스스포츠	960	208	9	743
6	농구	9,229	512	34	8,683	61	족구	268	32	6	230
7	당구	1,281	122	15	1,144	62	철인3종	64	13	-	51
8	라켓볼	238	-	-	238	63	패러글라이딩	68	17	1	50
9	레슬링	1,328	114	22	1,192	64	풋살	467	47	29	391
10	레크리에이션	4,599	744	27	3,828	65	파크골프	422	212	22	188
11	루지	20	-	-	20	66	산악	386	9	1	376
12	리듬체조	86	14	-	72	67	공수도	65	3	-	62
13	배구	6,287	612	23	5,652	68	택견	171	7	1	163
14	배드민턴	18,138	945	52	17,141	69	골볼	278	105	12	161
15	보디빌딩	94,439	11,440	512	82,487	70	론볼	244	90	9	145

연도	종목	전체				연 번	종목	전체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16	복싱	3,971	332	35	3,604	71	보치아	276	93	20	163
17	볼링	8,084	216	11	7,857	72	스노보드	10	2	-	8
18	빙상	2,012	183	32	1,797	73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58	19	2	37
19	사격	1,475	176	3	1,296	74	줄넘기	614	116	7	491
20	자전거	1,083	63	7	1,013	75	플라잉디스크	101	18	3	80
21	등산	779	157	2	620	76	피구	301	13	9	279
22	세팍타크로	176	10	9	157	77	그라운드골프	145	53	18	74
23	소프트볼	183	13	6	164	78	건강운동관리사	2,437	368	-	2,069
24	수상스키	457	8	8	441	79	합기도	2,349	419	63	1,867
25	수영	28,994	1,629	100	27,265	80	활기도	1,002	-	-	1,002
26	스킨스쿠버	392	13	7	372	81	활법	590	-	-	590
27	스쿼시	3,283	37	7	3,239	82	보디빌딩 (구. 육체미)	1,965	-	-	1,965
28	스키	2,136	59	15	2,062	83	요가	386	-	-	386
29	승마	2,106	143	2	1,961	84	롤러스케이팅	109	-	-	109
30	씨름	1,013	68	4	941	85	회전무술	33	-	-	33
31	아이스하키	406	52	7	347	86	럭비풋볼	71	-	-	71
32	야구	5,619	710	51	4,858	87	연식정구	8	-	-	8
33	양궁	892	96	15	781	88	십팔반무예	11	-	-	11
34	에어로빅	16,541	276	13	16,252	89	왕도특수무술	10	-	-	10
35	역도	1,136	234	24	878	90	국술	65	-	-	65
36	오리엔티어링	295	15	1	279	91	십팔기	24	-	-	24
37	요트	1,033	53	7	973	92	도봉술	8	-	-	8
38	우슈	1,532	82	2	1,448	93	통일무술	18	-	-	18
39	윈드서핑	370	9	-	361	94	불무도	28	-	-	28
40	유도	4,246	317	87	3,842	95	권격도	48	-	-	48
41	육상	3,320	329	29	2,962	96	킥복싱	150	-	-	150
42	정구	845	71	13	761	97	격투기	103	-	-	103
43	조정	805	98	27	680	98	태수도	3	-	-	3
44	체조	1,684	37	8	1,639	99	유술	5	-	-	5
45	축구	17,603	2,039	113	15,451	100	공권도	17	-	-	17
46	카누	775	48	10	717	101	국선도	62	-	-	62
47	컬링	237	25	3	209	102	화랑도	18	-	-	18
48	탁구	7,102	555	20	6,527	103	궁중무술	33	-	-	33
49	태권도	34,947	2,246	80	32,621	104	연식정구	8	-	-	8

연번	종목	전체				연번	종목	전체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50	테니스	7,416	238	11	7,167	105	특공무술	49	-	-	49
51	트라이애슬론	147	12	1	134	106	수박도	23	-	-	23
52	펜싱	955	121	37	797	107	한무도	22	-	-	22
53	하키	633	48	5	580	108	사이클	16	11	5	-
54	핸드볼	1,064	109	19	936	109	수중(핀수영)	1	-	-	1
55	행글라이딩	11	-	-	11		합계	337,762	28,556	1,852	307,354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21).

〈표 7-18〉에서와 같이 2021년 양성된 종목별 체육지도자는 총 109개 종목 중 배출인원이 없는 32개 종목(라켓볼, 루지, 행글라이딩, 킥복싱 등)을 제외한 75개 종목에서 2만 8,556명이었다. 2021년 배출인원이 가장 많은 종목은 보디빌딩 11,440명, 태권도 2,246명, 축구 2,039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 종류에 따른 종목별 배출현황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표 7-19〉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양성된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총 4,102명(1급 106명, 2급 3,996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7-19. 종목별 전문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

(단위: 명)

연번	종목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1	검도	4	-	-	4	476	40	4	432
2	골프	54	-	-	54	833	56	1	776
3	궁도	6	-	-	6	118	15	-	103
4	근대5종	28	5	-	23	218	5	-	213
5	농구	12	-	-	12	1,303	110	11	1,182
6	당구	14	2	-	12	219	8	5	206
7	레슬링	69	12	-	57	659	31	10	618
8	루지	1	-	-	1	19	-	-	19
9	리듬체조	0	-	-	-	10	-	-	10
10	배구	32	-	-	32	1,469	130	-	1,339
11	배드민턴	51	1	-	50	1,277	180	27	1,070
12	보디빌딩	43	3	-	40	778	39	12	727
13	복싱	27	-	-	27	843	45	5	793
14	볼링	25	-	-	25	716	52	-	664
15	빙상	29	1	-	28	725	121	30	574

연번	종목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16	사격	112	7	-	105	1,162	91	1	1,070
17	자전거	39	-	-	39	460	4	-	456
18	등산	0	-	-	-	2	1	-	1
19	세팍타크로	9	-	-	9	125	7	8	110
20	소프트볼	11	2	-	9	172	11	6	155
21	수상스키	5	-	-	5	127	3	6	118
22	수영	80	4	-	76	1,688	124	24	1,540
23	스킨스쿠버	4	1	-	3	140	6	7	127
24	스쿼시	13	3	-	10	136	6	4	126
25	스키	51	5	-	46	387	15	10	362
26	승마	44	5	-	39	250	6	-	244
27	씨름	4	1	-	3	482	42	3	437
28	아이스하키	31	1	-	30	322	37	6	279
29	야구	17	1	-	16	3,627	514	34	3,079
30	양궁	37	2	-	35	768	48	8	712
31	에어로빅	0	-	-	-	53	1	7	45
32	역도	53	3	-	50	685	34	3	648
33	요트	30	3	-	27	335	11	5	319
34	우슈	20	1	-	19	325	7	2	316
35	유도	28	3	-	25	1,285	109	76	1,100
36	육상	88	10	-	78	2,652	158	19	2,475
37	정구	10	-	-	10	466	40	13	413
38	조정	25	4	-	21	361	18	18	325
39	체조	44	1	-	43	808	36	8	764
40	축구	28	2	-	26	3,889	717	29	3,143
41	카누	23	-	-	23	336	18	9	309
42	컬링	24	2	-	22	157	8	1	148
43	탁구	36	1	-	35	1,139	146	14	979
44	태권도	79	8	-	71	7,903	608	43	7,252
45	테니스	21	1	-	20	1,255	107	6	1,142
46	트라이애슬론	17	5	-	12	128	6	1	121
47	펜싱	27	-	-	27	809	59	36	714
48	하키	33	-	-	33	442	23	5	414
49	핸드볼	23	-	-	23	779	70	16	693
50	바이애슬론	9	-	-	9	82	6	2	74

연번	종목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51	인라인스케이팅	26	1	-	25	241	13	3	225
52	력비	6	-	-	6	224	11	14	199
53	봅슬레이스켈레톤	6	1	-	5	48	4	5	39
54	댄스스포츠	16	1	-	15	101	12	-	89
55	철인3종	0	-	-	-	1	-	-	1
56	산악	16	1	-	15	370	8	1	361
57	공수도	3	-	-	3	62	3	-	59
58	택견	3	2	-	1	168	5	1	162
59	로울러스케이팅	0	-	-	-	45	-	-	45
60	력비풋볼	0	-	-	-	58	-	-	58
61	연식정구	0	-	-	-	8	-	-	8
62	사이클	0	-	-	-	16	11	5	-
합계		1,546	106	0	1,440	44,742	3,996	564	40,182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21).

2021년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총 106명이 양성되어 누적 인원은 총 1,54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종목별로는 레슬링(12명), 육상(10명), 태권도(8명) 순으로 나타났다.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의 경우 2021년 총 3,996명이 양성됨으로써 누적 44,74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가 가장 많이 양성된 종목은 축구(717명), 태권도(608명), 야구(514명) 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1년 기준으로 양성된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총 16,915명(1급 394명, 2급 16,521명)으로 집계되었다. 구체적인 종목별 생활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은 <표 7-20>와 같다.

표 7-20. 종목별 생활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

(단위: 명)

연번	종목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1	검도	40	1	-	39	2,072	87	3	1,982
2	게이트볼	116	1	-	115	3,671	79	29	3,563
3	골프	722	63	-	659	10,599	593	26	9,980
4	궁도	0	-	-	-	130	37	3	90
5	농구	422	8	1	413	6,721	269	18	6,434
6	당구	44	1	2	41	922	77	6	839

연번	종목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7	라켓볼	12	-	-	12	226	-	-	226
8	레슬링	55	5	1	49	499	49	9	441
9	레크리에이션	123	-	-	123	2,114	149	17	1,948
10	리듬체조	19	8	-	11	51	6	-	45
11	배구	303	4	1	298	3,316	187	12	3,117
12	배드민턴	538	12	-	526	14,465	306	18	14,141
13	보디빌딩	1,918	41	9	1,868	85,214	9,713	464	75,037
14	복싱	72	2	1	69	2,900	250	29	2,621
15	볼링	290	7	-	283	6,753	83	9	6,661
16	빙상	75	4	-	71	1,156	49	2	1,105
17	사격	23	10	-	13	64	16	1	47
18	자전거	52	2	-	50	429	21	7	401
19	등산	134	21	-	113	584	103	2	479
20	세팍타크로	14	1	1	12	22	-	-	22
21	수상스키	66	1	-	65	253	4	2	247
22	수영	1,582	29	2	1,551	24,086	888	60	23,138
23	스킨스쿠버	54	0	-	54	189	6	-	183
24	스쿼시	138	0	-	138	2,952	17	3	2,932
25	스키	317	4	-	313	1,348	28	4	1,316
26	승마	41	2	-	39	1,536	41	2	1,493
27	씨름	29	-	-	29	425	11	1	413
28	아이스하키	4	1	-	3	11	2	-	9
29	야구	167	6	-	161	1,646	141	15	1,490
30	양궁	14	6	3	5	17	11	4	2
31	에어로빅	255	10	-	245	14,683	128	5	14,550
32	오리엔티어링	47	1	-	46	206	8	-	198
33	요트	22	1	-	21	589	12	1	576
34	우슈	52	8	-	44	1,052	36	-	1,016
35	윈드서핑	88	-	-	88	279	6	-	273
36	유도	140	12	-	128	2,484	84	10	2,390
37	육상	73	11	1	61	134	28	2	104
38	정구	30	2	-	28	261	11	-	250
39	조정	38	13	-	25	239	6	-	233
40	체조	203	-	-	203	629	-	-	629
41	축구	566	16	1	549	11,642	911	72	10,659
42	카누	40	6	1	33	331	7	-	324
43	탁구	244	4	1	239	4,578	123	5	4,450

연번	종목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44	태권도	479	19	1	459	25,477	1,189	30	24,258
45	테니스	595	7	-	588	5,214	43	3	5,168
46	펜싱	16	15	1	-	13	9	-	4
47	하키	23	-	-	23	56	7	-	49
48	핸드볼	28	2	-	26	106	16	2	88
49	행글라이딩	4	-	-	4	5	-	-	5
50	인라인스케이트	72	1	-	71	649	32	3	614
51	럭비	14	2	-	12	144	3	1	140
52	댄스스포츠	27	4	1	22	504	112	7	385
53	족구	4	1	1	2	199	25	3	171
54	철인3종	5	3	-	2	50	6	-	44
55	패러글라이딩	31	8	-	23	31	7	1	23
56	풋살	36	4	1	31	377	35	25	317
57	파크골프	6	3	2	1	237	118	14	105
58	합기도	6	1	2	3	2,236	336	51	1,849
59	활기도	0	-	-	-	1,002	-	-	1,002
60	활법	0	-	-	-	590	-	-	590
61	보디빌딩(구.육체미)	0	-	-	-	1,965	-	-	1,965
62	요가	0	-	-	-	386	-	-	386
63	로울러스케이팅	64	-	-	64	0	-	-	-
64	회전무술	0	-	-	-	33	-	-	33
65	럭비풋볼	13	-	-	13	0	-	-	-
66	십팔반무예	0	-	-	-	11	-	-	11
67	왕도특수무술	0	-	-	-	10	-	-	10
68	국술	0	-	-	-	65	-	-	65
69	십팔기	0	-	-	-	24	-	-	24
70	도봉술	0	-	-	-	8	-	-	8
71	통일무술	0	-	-	-	18	-	-	18
72	불무도	0	-	-	-	28	-	-	28
73	권격도	0	-	-	-	48	-	-	48
74	킥복싱	0	-	-	-	150	-	-	150
75	격투기	0	-	-	-	103	-	-	103
76	태수도	0	-	-	-	3	-	-	3
77	유술	0	-	-	-	5	-	-	5
78	공권도	0	-	-	-	17	-	-	17
79	국선도	0	-	-	-	62	-	-	62
80	화랑도	0	-	-	-	18	-	-	18

연번	종목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81	궁중무술	0	-	-	-	33	-	-	33
82	연식정구	5	-	-	5	3	-	-	3
83	특공무술	0	-	-	-	49	-	-	49
84	수박도	0	-	-	-	23	-	-	23
85	한무도	0	-	-	-	22	-	-	22
86	수중(핀수영)	0	-	-	-	1	-	-	1
	합계	10,610	394	34	10,182	251,453	16,521	981	233,951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21).

2021년에 양성된 종목별 생활스포츠지도사 16,915명 중 1급의 경우 394명으로서, 가장 많은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양성된 종목은 골프(6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보디빌딩(41명)과 수영(29명)이 뒤를 이었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의 경우 총 16,521명이 양성되었는데, 가장 많은 지도사 양성 종목은 보디빌딩(9,713명)이었고, 그 뒤를 태권도(1,189명)와 축구(911명)이 따랐다.

다음은 2021년에 양성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이다. <표 7-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1년에는 세부적으로 각각 1급 39명과 2급 1,939명으로, 총 1,978명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양성되었다.

표 7-21. 종목별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

(단위: 명)

연번	종목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1	검도	0	-	-	-	0	-	-	-
2	게이트볼	0	-	-	-	0	-	-	-
3	골프	0	-	-	-	0	-	-	-
4	궁도	0	-	-	-	0	-	-	-
5	농구	7	4	-	3	267	67	4	196
6	당구	0	-	-	-	0	-	-	-
7	레슬링	0	-	-	-	0	-	-	-
8	레크리에이션	0	-	-	-	0	-	-	-
9	리듬체조	0	-	-	-	0	-	-	-
10	배구	0	-	-	-	523	187	9	327
11	배드민턴	6	4	-	2	390	174	3	213
12	보디빌딩	0	-	-	-	0	-	-	-

연번	종목	1급 장애인스포츠택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택지도사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13	복싱	0	-	-	-	0	-	-	-
14	볼링	0	-	-	-	134	38	1	95
15	빙상	0	-	-	-	0	-	-	-
16	사격	5	1	-	4	58	16	1	41
17	자전거	0	-	-	-	48	19	-	29
18	등산	0	-	-	-	0	-	-	-
19	세팍타크로	0	-	-	-	0	-	-	-
20	수상스키	0	-	-	-	0	-	-	-
21	수영	2	2	-	-	414	218	12	184
22	스킨스쿠버	0	-	-	-	0	-	-	-
23	스쿼시	0	-	-	-	0	-	-	-
24	스키	0	-	-	-	0	-	-	-
25	승마	0	-	-	-	72	54	-	18
26	씨름	0	-	-	-	0	-	-	-
27	아이스하키	1	1	-	-	34	10	1	23
28	야구	0	-	-	-	0	-	-	-
29	양궁	1	1	-	-	32	9	-	23
30	에어로빅	0	-	-	-	0	-	-	-
31	역도	4	2	-	2	394	195	21	178
32	오리엔티어링	0	-	-	-	0	-	-	-
33	요트	0	-	-	-	42	26	1	15
34	우슈	0	-	-	-	0	-	-	-
35	유도	0	-	-	-	47	26	1	20
36	육상	7	6	-	1	180	66	7	107
37	정구	0	-	-	-	0	-	-	-
38	조정	1	1	-	-	117	46	8	63
39	축구	2	2	-	-	269	122	6	141
40	카누	0	-	-	-	13	9	-	4
41	컬링	1	1	-	-	55	14	2	39
42	탁구	4	3	-	1	316	108	-	208
43	태권도	2	1	-	1	244	145	3	96
44	테니스	2	2	-	-	80	28	-	52
45	트라이애슬론	0	-	-	-	2	1	-	1
46	펜싱	1	1	-	-	54	15	-	39
47	하키	0	-	-	-	0	-	-	-
48	핸드볼	0	-	-	-	0	-	-	-

연번	종목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49	행글라이딩	0	-	-	-	0	-	-	-
50	인라인스케이팅	0	-	-	-	0	-	-	-
51	력비	1	1	-	-	103	19	2	82
52	댄스스포츠	2	2	-	-	60	22	-	38
53	족구	0	-	-	-	0	-	-	-
54	철인3종	0	-	-	-	0	-	-	-
55	패러글라이딩	0	-	-	-	0	-	-	-
56	풋살	0	-	-	-	0	-	-	-
57	파크골프	0	-	-	-	0	-	-	-
58	골볼	0	-	-	-	278	105	12	161
59	론볼	1	1	-	-	243	89	9	145
60	보치아	4	3	-	1	272	90	20	162
61	스노우보드	0	-	-	-	10	2	-	8
62	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0	-	-	-	58	19	2	37
63	줄넘기	0	-	-	-	0	-	-	-
64	플라잉디스크	0	-	-	-	0	-	-	-
65	피구	0	-	-	-	0	-	-	-
66	그라운드골프	0	-	-	-	0	-	-	-
67	합기도	0	-	-	-	0	-	-	-
합계		54	39	0	15	4,809	1,939	125	2,745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21).

2021년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9개 종목에서 39명이 양성되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육상(6명) 종목에서 가장 많이 양성되었으며, 농구와 배드민턴(각각 4명)이 뒤를 이었다.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경우 총 30개 종목에서 1,939명이 양성되었으며, 종목별로는 수영(218명), 역도(195명), 배구(187명) 순으로 가장 많이 양성되었다.

다음은 2021년에 양성된 청소년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현황이다. <표 7-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1년에는 세부적으로 각각 청소년스포츠지도사 2,046명과 노인스포츠지도사 3,147명이 양성되었다. 2021년 청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 모두 보디빌딩(청소년 530명, 노인 1,114명) 종목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배출하였다.

표 7-22. 종목별 유소년스포츠지도사·노인스포츠지도사 현황

(단위: 명)

연번	종목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1	검도	104	12	1	91	79	8	-	71
2	게이트볼	122	15	2	105	462	77	14	371
3	골프	125	30	3	92	110	40	1	69
4	궁도	11	4	1	6	7	4	-	3
5	농구	374	35	-	339	123	19	-	104
6	당구	18	6	2	10	64	28	-	36
7	레슬링	30	12	1	17	16	5	1	10
8	레크리에이션	289	52	4	233	2,073	543	6	1,524
9	리듬체조	4	-	-	4	2	-	-	2
10	배구	427	51	1	375	217	53	-	164
11	배드민턴	928	142	2	784	483	126	2	355
12	보디빌딩	1,890	530	11	1,349	4,596	1,114	16	3,466
13	복싱	73	19	-	54	56	16	-	40
14	볼링	80	19	-	61	86	17	1	68
15	빙상	18	6	-	12	9	2	-	7
16	사격	28	15	-	13	23	20	-	3
17	자전거	28	7	-	21	27	10	-	17
18	등산	30	15	-	15	29	17	-	12
19	세팍타크로	3	1	-	2	3	1	-	2
20	수상스키	3	-	-	3	3	-	-	3
21	수영	600	178	1	421	542	186	1	355
22	스킨스쿠버	3	-	-	3	2	-	-	2
23	스쿼시	30	5	-	25	14	6	-	8
24	스키	24	5	-	19	9	2	1	6
25	승마	103	21	-	82	60	14	-	46
26	씨름	58	8	-	50	15	6	-	9
27	아이스하키	2	-	-	2	1	-	-	1
28	야구	128	31	1	96	34	17	1	16
29	양궁	14	11	-	3	9	8	-	1
30	에어로빅	286	38	-	248	1,264	99	1	1,164
31	역도	0	-	-	-	0	-	-	-
32	오리엔티어링	20	4	-	16	22	2	1	19
33	요트	9	-	-	9	6	-	-	6
34	우슈	26	13	-	13	57	17	-	40
35	윈드서핑	2	2	-	-	1	1	-	-

연번	종목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36	유도	172	47	-	125	90	36	-	54
37	육상	128	26	-	102	58	24	-	34
38	정구	41	6	-	35	37	12	-	25
39	조정	12	6	-	6	12	4	1	7
40	축구	848	172	4	672	359	97	1	261
41	카누	21	4	-	17	11	4	-	7
42	컬링	0	-	-	-	0	-	-	-
43	탁구	346	70	-	276	439	100	-	339
44	태권도	435	127	-	308	328	149	3	176
45	테니스	133	28	1	104	116	22	1	93
46	트라이애슬론	0	-	-	-	0	-	-	-
47	펜싱	21	12	-	9	14	10	-	4
48	하키	50	9	-	41	29	9	-	20
49	핸드볼	82	8	-	74	46	13	1	32
50	행글라이딩	1	-	-	1	1	-	-	1
51	인라인스케이트	31	2	1	28	16	3	-	13
52	력비	7	-	-	7	3	-	-	3
53	댄스스포츠	84	15	-	69	166	40	1	125
54	족구	39	5	1	33	26	1	1	24
55	철인3종	5	3	-	2	3	1	-	2
56	패러글라이딩	3	1	-	2	3	1	-	2
57	풋살	47	8	1	38	7	-	2	5
58	파크골프	56	23	-	33	123	68	6	49
59	골볼	0	-	-	-	0	-	-	-
60	론볼	0	-	-	-	0	-	-	-
61	보치아	0	-	-	-	0	-	-	-
62	스노우보드	0	-	-	-	0	-	-	-
63	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0	-	-	-	0	-	-	-
64	출넘기	614	116	7	491	0	-	-	-
65	플라잉디스크	101	18	3	80	0	-	-	-
66	피구	301	13	9	279	0	-	-	-
67	그라운드골프	0	-	-	-	145	53	18	74
68	합기도	59	40	6	13	48	42	4	2
	합계	9,527	2,046	63	7,418	12,584	3,147	85	9,352

※ 주: 2021년도 건강운동관리사(368명) 현황은 본 표에 포함되지 않았음.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2021).

## 4. 체육지도자 배치 활용

체육지도자는 각종 체육시설이나 체육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에 배치된다. 그리고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운동처방을 제공하고 지도하며, 안전하고 유익한 체육활동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체육지도자의 배치는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 부문 의무 배치와 대한체육회의 지원을 통한 공공부문 배치로 구분된다.

### 1) 민간부문 활동 현황

민간부문에서는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근거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한다.

표 7-23.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인원
골프장업	•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1인 이상
	• 골프코스 36홀 초과	2인 이상
스키장업	• 슬로프 10면 이하	1인 이상
	• 슬로프 10면 초과	2인 이상
요트장업	• 요트 20척 이하	1인 이상
	• 요트 20척 초과	2인 이상
조정장업	• 조정 20척 이하	1인 이상
	• 조정 20척 초과	2인 이상
카누장업	• 카누 20척 이하	1인 이상
	• 카누 20척 초과	2인 이상
빙상장업	• 빙판면적 1,500㎡ 이상 3,000㎡ 이하	1인 이상
	• 빙판면적 3,000㎡ 초과	2인 이상
승마장업	• 말 20마리 이하	1인 이상
	• 말 20마리 초과	2인 이상
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 이하인 실내 수영장	1인 이상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2인 이상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1인 이상
	•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	2인 이상
골프연습장업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1인 이상
	• 50타석 초과	2인 이상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인원
체력단련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li> <li>•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li> </ul>	1인 이상 2인 이상

※ 주: 체육시설업자가 당해 종목의 체육지도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됨.

※ 주: 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2021).

## 2) 공공부문 활동 현황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2000년부터 지역단위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육활동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일제 지도자, 어르신 전담 지도자,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현장에 배치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장지원은 지역 주민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프로그램 보급을 대중에 확산시킴으로써 대국민 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 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06년에는 ‘청년전문인력 고용 지원계획’에 따라 995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현장에 배치하였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한 예산은 국고 및 지방비에서 각각 인건비 50%씩 부담하고, 국민체육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국고지원을 기금지원으로 대체하였고, 공동자금출자(matching fund) 형태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음은 2021년 생활스포츠지도사 배치 실적이다.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지도활동이 제한되는 한편, 이에 대응하여 비대면 지도활동이 병행되었다. 비대면 지도활동의 일환으로 시·군·구체육회별로 매월 1~3개의 온라인 지도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였으며, 2021년 총 11,698개가 업로드 되었으며, 2020년 8,368개에 비해 3,330개 증가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2021년 시·군·구체육회별 최소 월 2회 이상, 총 4,612회의 쌍방향 지도가 새로이 실시되었다.

표 7-24. 생활스포츠지도사 배치 실적(2021)

(단위: 명, 회, 명)

구분	지도자 수	운영 횟수	참가자 수	구분	지도자 수	운영 횟수	참가자 수
서울	344	4,539	73,013	강원	194	47,015	638,917
부산	117	12,088	208,439	충북	143	17,760	189,648
대구	102	44,653	552,568	충남	183	40,888	504,128
인천	107	5,919	99,088	전북	163	25,738	383,411

구분	지도자 수	운영 횟수	참가자 수	구분	지도자 수	운영 횟수	참가자 수
광주	78	742	10,238	전남	257	35,713	479,897
대전	107	13,005	190,839	경북	251	62,678	848,000
울산	75	13,235	342,462	경남	257	60,294	779,536
세종	17	2,488	42,445	제주	55	11,552	246,180
경기	350	43,876	519,015	계	2,800	442,183	6,107,824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 및 지침, 대한체육회(2021). 생활체육지도자 통합관리시스템.

생활스포츠지도사 배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활동지원’ 사업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기준 2,800명의 지도자가 공공부문 생활체육 현장에 배치되어 활동하였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 내 시군구 체육회 소속으로 편입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 협의에 따라 일반, 어르신전담, 유소년 전담으로 구분되어 지도활동을 펼친다. 일반지도자 배치는 <표 7-25>와 같이 이루어졌다.

표 7-25. 생활체육지도자 중 일반지도자 배치 실적(2021)

(단위: 명, 회, 명)

구분	지도자 수	운영 횟수	참가자 수	구분	지도자 수	운영 횟수	참가자 수
서울	179	2,618	44,247	충북	112	30,052	401,011
부산	73	7,604	137,364	충남	76	10,247	110,457
대구	59	25,973	303,568	전북	100	29,436	354,304
인천	66	3,954	52,411	전남	77	12,331	168,325
광주	48	553	8,063	경북	122	19,052	263,640
대전	83	9,493	114,724	경남	138	36,484	505,641
울산	49	10,546	282,133	제주	156	37,186	466,339
경기	10	1,804	20,142	세종	26	6,442	125,113
강원	187	26,956	337,856	계	1,561	270,731	3,695,338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 및 지침, 대한체육회(2021). 생활체육지도자 통합관리시스템.

2021년 배치된 전체 일반지도자 수는 총 1,561명이었고, 이들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7만 731회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총 참가인원은 369만 5,33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더불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지도자 배치 사업은 <표 7-26>과 같이 시행되었다.

표 7-26. 생활체육지도자 중 어르신지도자 배치 실적(2021)

(단위: 명, 회, 명)

구분	지도자 수	운영 횟수	참가자 수	구분	지도자 수	운영 횟수	참가자 수
서울	159	1,754	25,501	충북	82	16,963	237,906
부산	44	4,484	71,075	충남	67	7,513	79,191
대구	43	18,680	249,000	전북	78	10,566	137,133
인천	41	1,965	46,677	전남	83	13,138	210,057
광주	30	189	2,175	경북	134	16,242	208,435
대전	24	3,512	76,115	경남	111	25,508	330,348
울산	26	2,689	60,329	제주	100	23,000	311,401
경기	5	385	14,552	세종	27	5,110	121,067
강원	158	15,854	167,692	계	1,212	167,552	2,348,654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 및 지침., 대한체육회(2021). 생활체육지도자 통합 관리시스템.

어르신지도자 배치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배치된 전체 어르신전담지도자 수는 총 1,212명이었고, 이들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6만 7,552회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총 참가인원은 234만 8,654명으로 집계되었다. 유소년 대상 지도자에 대한 배치도 이루어졌는데, 유소년지도자 배치 사업은 <표 7-27>과 같이 시행되었다.

표 7-27. 생활체육지도자 중 유소년지도자 배치 실적(2021)

(단위: 명, 회, 명)

구분	지도자 수	운영 횟수	참가자 수
서울	6	167	3,265
세종	2	299	7,751
경기	5	1,066	13,467
충남	5	886	12,691
전북	3	269	5,029
전남	1	419	7,822
경북	2	686	12,011
경남	1	108	1,796
제주	2	-	-
계	27	3,900	63,832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 및 지침, 대한체육회(2021). 생활체육지도자 통합 관리시스템.

아직까지 유소년전담지도자의 배치는 전국 수준으로 확장되지 못한 상태다. 2021년에는 전국 9개 지역에 총 27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었다. 전체 운영된 프로그램 횟수는 3,900회로

총 6만 3,832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생활스포츠지도사 배치 사업뿐만 아니라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배치 사업도 이루어졌다.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은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모임 현장에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배치 실적은 아래 <표 7-28>과 같다.

표 7-28.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배치 실적(2021)

(단위: 명, 회, 명)

구분	지도자 수	운영 횟수	참가자 수	구분	지도자 수	운영 횟수	참가자 수
부산	15	1,587	41,061	충남	13	1,463	27,791
대구	8	840	25,095	전북	9	1,114	18,257
인천	3	378	5,387	전남	16	1,681	32,271
대전	4	183	3,373	경북	19	1,897	41,958
경기	25	1,262	24,837	경남	13	1,220	19,906
강원	6	493	11,235	제주	4	212	2,073
충북	10	916	16,772	계	145	13,246	270,016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 및 지침, 대한체육회(2021). 생활체육지도자 통합 관리시스템.

2021년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에는 13개 시·도에서 총 145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었으며, 1만 3,246회의 프로그램에 27만 16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였다.

2021 체육백서

2021 Sport White Paper

8

## 체육시설

- 제1절 체육시설 개관
- 제2절 체육시설 조성정책
- 제3절 공공체육시설 지원
- 제4절 공공체육시설 활용
- 제5절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 제1절 체육시설 개관

## 1. 개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시행되었던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의 초석으로 평가된다. 이후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된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국민의 체육활동 의식을 고취시키고 민간 주도적 생활체육 확산을 일으키고 동시에 국민들의 필요에 맞는 체육시설 확보에 정책적 지원을 할 밑바탕이 되었다. 이후 2014년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비롯하여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증장기 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체육시설은 설치와 운영 주체를 구분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구분된다. 공공체육시설은 다시 ‘시설 이용 목적’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나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은 21개의 종목별 세부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기타 체육시설로 분류된다. 이외의 국내 체육시설은 등록·신고 체육시설로 운영 및 관리되는데, 현행 등록 체육시설은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3개 업종이고, 그 외 18개 업종의 신고 체육시설과 등록·민간체육시설업 외 자유업종 체육시설이 있다.

현재 정부는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목적의 체육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공공체육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지방체육시설 개·보수 및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의 여건 조성 및 수익시설 설치 기준 완화도 힘써왔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소외계층에 대한 이용료 감면 및 장애인 이용 편의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체육시설과 관련한 ‘안전관리’에 집중하며,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정기적인 점검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체육시설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면서 관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와 교육교재 개발 및 체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도 실시 중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체육시설에 대한 개괄을 시작으로 조성정책, 공공체육 시설 지원 및 활용 현황,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등이 순서대로 정리되었다.

## 2. 체육시설 정의

### 1) 체육시설의 개념 정의

‘체육시설’은 학문적 정의와 법적 정의로 구분된다. 학문적 정의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쾌적하고 효과적인 운동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설치·관리 되는 물리적인 환경’이다. 이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도 구분되는데, 전자는 ‘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적 조건을 인공적으로 정비한 시설과 용·기구 및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을 뜻하고, 후자는 ‘운동학습을 위한 각종 장소’를 말한다. 법적 정의로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한다. 체육의 개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법적 개념으로 체육시설은 ‘건전한 신체·정신함양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운동경기·야외운동 등의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 2) 공공체육시설 분류

법적으로 정의된 체육시설은 그 종목과 형태 등에 따라 여러 기준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두 기준에 따라 분류된 현황을 살펴보면 <표 8-1>과 같다.

표 8-1. 체육시설 종류

구분	체육시설의 종류
운동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킨스노우,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li> </ul>

구분	체육시설의 종류
시설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출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2021. 6. 8. 개정)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운동종목과 시설의 형태에 따라 나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르면, 체육시설 종류는 46개의 운동종목 관련 시설과 함께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또한 시설형태별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 나뉜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은 또한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구분된다. 이 중 공공체육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와 시설 목적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한다. 전문체육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 등의 필요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의미하는데, 근거 법률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따른다.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시·도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생활체육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가깝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의미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한다.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시·군·구(특별자치도 포함)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읍·면·동에도 역시 해당 지역 주민이 이용할 실외체육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토록 규정되었다. 또한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편의시설 및 기구 마련도 동법에 포함되었다.

직장체육시설은 직장인의 건강 및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이다. 즉, 직장의 장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근로자 500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체육시설을 국민이 더욱 효율적으로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공공체육시설 중 직장체육시설을 제외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각종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명시

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을 게시하여야 한다.

공공체육시설 분류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육상경기장을 비롯하여 다음의 <표 8-2>와 같이 총 21개로 형성되었다. 21개의 종목별 체육시설은 설치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이들 종목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체육시설은 기타 체육시설로 분류된다.

표 8-2. 공공체육시설 분류기준

연번	구분	설치 기준
1	육상경기장	• 일주거리 400m 또는 300m, 200m의 육상트랙, 필드(축구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등을 갖춘 경기시설로서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공설운동장, 시민운동장, ○○경기장 등으로 일컬어짐
2	축구장	• 길이 100~110m, 폭 64~75m(국제경기 규격)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축구 경기 가능 시설로서, 육상경기장 내의 축구경기장은 제외)
3	하키장	• 길이 91.4m, 폭 55m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하키 전용 경기장에 한함)
4	야구장	• 본루로부터 1루와 3루측 야외거리가 98m이상, 백스크린까지 110m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5	사이클경기장	• 일주거리 실내 250~400m(통상 333.33m가 주종), 실외 250~500m, 주로 폭 7m 이상, 경사도 직선주로 8°~10°, 곡선주로 38°~45°
6	테니스장	• 가로 10.97m, 세로 23.77m(마을체육시설 수준의 테니스장은 간이운동장으로 분류)
7	씨름장	• 경기장 높이 30cm 이상 70cm 이하, 경기장 직경 8m 이상인 원형의 모래시설과 경기장 밖 1.5m 이상의 보조경기장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8	간이운동장	•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체력단련기구 등 간이운동시설이 설치된 거주지 인근의 마을체육시설
9	체육관 - 구기체육관 - 투기체육관 - 생활체육관	• 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구기 종목의 경기 개최가 가능한 체육관 • 유도, 레슬링, 복싱, 태권도, 펜싱, 검도, 씨름 등 투기종목의 경기 개최가 가능한 체육관 • 농구, 배구 등 구기종목과 수영, 볼링, 에어로빅, 헬스 등 생활체육종목의 각종 체육 시설이 복합 설치된 체육관(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등)
10	전천후 게이트볼장	• 정식 규격의 게이트볼장으로 지붕, 기둥 또는 벽면으로 구성된 경기장(단, 지붕 구조가 막구조로 된 게이트볼장도 포함)
11	수영장 - 경영풀 - 다이빙풀 - 비정규	• 폭 25m, 길이 50m 8레인으로 레인 폭은 2.5m이상(1레인과 8레인 수영조별과 폭 0.5m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 폭과 길이가 25m×33m, 수심 5m • 경기장 규격이 정규수준에 미달되는 시설

연번	구분	설치 기준
12	롤러스케이이트장 - 정규(트랙) - 정규(로드) - 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트랙경기장 : 일주거리 200m의 트랙, 주폭 6m 이상</li> <li>로드경기장 : 250m-1,000m, 주폭 8m 이상</li> <li>경기장 규격이 정규수준에 미달되는 시설</li> </ul>
13	사격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기총사격(10m), 화약총사격(10m, 25m, 50m, 300m), 클레이사격(트랩, 스키투) 시설, 러닝 타깃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격장</li> </ul>
14	국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정거리는 관저 중심에서 사대 중심까지 145m, 과녁 사이 5m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li> </ul>
15	양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m, 50m, 60m, 70m, 90m거리의 경기 가능</li> </ul>
16	승마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장마술(길이 60m, 폭 20m), 장애물 바월(폭의 길이 최소한 60m 총 너비 4,800㎡ 이상)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승마장</li> </ul>
17	골프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골프 연습 타석을 갖춘 시설</li> </ul>
18	조정카누장 - 조정 및 카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정 경기 가능 시설</li> <li>카누 경기 가능 시설</li> </ul>
19	요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트 경기에 필요한 시설과 요트의 수납과 정비용 부대시설을 갖춘 경기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경기장</li> </ul>
20	빙상장 - 쇼트트랙 - 400m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이 60m, 폭 30m(일주거리 111.12m의 트랙)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아이스하키 경기 가능)</li> <li>일주거리 400m이상 333.3m미만 길이의 두 개의 주로</li> </ul>
21	설상경기장 - 스키점프장 - 바이애슬론경기장 -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 봅슬레이, 루지, 스킨레톤경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이 90m, 120m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스키점프 경기 가능)</li> <li>3.25km와 2km지점에 컷오프를 갖춘 하나의 4km주로 구성</li> <li>5km×3코스=15km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크로스컨트리 경기 가능)</li> <li>길이 1,200~1,650m 트랙을 갖춘 규격(1,200m 경사로)</li> </ul>
22	기타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기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체육시설</li> </ul>

※ 내용: 2020년말 기준 자료.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22.01.04.).

### 3. 체육시설 현황

#### 1) 공공체육시설 현황

〈표 8-3〉은 2020년 말 기준(2022. 01. 04. 공시) 전국 17개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정리한 자료로서,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은 총 3만 1,554개로 집계되었다.

표 8-3. 전국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2021)

종목	시·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육상경기장	3	3	5	4	2	3	5	-	43	33	17	15	15	27	32	31	14	252	
축구장	73	34	32	30	22	14	25	9	251	70	37	25	102	80	74	165	21	1,064	
하키장	1	1	1	2	-	-	-	-	3	2	1	2	-	2	-	1	-	16	
야구장	19	11	14	8	6	3	4	5	77	27	13	20	22	28	32	36	7	332	
사이클경기장	1	1	1	1	-	1	-	-	1	1	1	-	1	1	-	1	-	11	
테니스장	65	36	28	35	20	9	17	8	203	72	34	33	57	46	60	102	7	832	
씨름장	-	1	2	1	1	1	1	-	17	4	6	1	8	10	10	9	1	73	
간이운동장 (마을체육시설)	2,475	1,258	621	913	927	409	195	49	3,338	1,764	1,968	1,141	766	2,518	3,024	1,981	487	23,834	
체육관	구기 체육관	49	4	4	4	3	6	6	3	157	36	14	39	26	37	29	51	19	487
	투기 체육관	2	2	4	3	1	-	-	-	6	9	3	-	2	5	5	3	1	46
	생활 체육관	105	30	19	30	19	15	11	15	141	39	25	31	50	32	44	47	8	661
	계	156	36	27	37	23	21	17	18	304	84	42	70	78	74	78	101	28	1,194
전천후 게이트볼장	23	21	3	63	26	14	20	15	414	232	106	238	149	225	63	179	38	1,829	
수영장	97	28	16	22	10	19	12	8	113	19	17	9	22	24	27	29	2	474	
롤러스케이팅장	15	13	6	5	3	2	2	9	52	10	8	7	7	8	13	17	2	179	
사격장	-	1	1	1	-	-	1	-	1	5	3	2	1	1	4	4	-	25	
국궁장	8	3	3	7	3	5	4	3	55	33	13	21	15	37	18	48	5	281	
양궁장	-	1	2	2	2	1	1	-	5	3	3	-	2	1	1	1	-	25	
승마장	-	2	3	-	1	1	-	-	1	3	-	1	3	1	3	1	-	20	
골프연습장	33	8	-	4	2	-	-	-	9	9	3	-	3	4	5	7	2	89	
조정카누장	-	1	-	-	-	-	-	-	2	1	3	-	-	2	-	1	-	10	
요트장	-	1	-	-	-	-	-	-	1	2	1	1	1	2	1	7	-	17	
빙상장	3	2	1	1	1	1	-	-	9	7	1	1	1	-	1	3	-	32	
설상경기장	-	-	-	-	-	-	-	-	-	4	-	-	-	-	-	-	-	4	
기타시설	40	49	40	18	27	6	17	8	321	92	32	27	12	58	53	142	19	961	
합계	3,012	1,511	806	1,154	1,076	510	321	132	5,220	2,477	2,309	1,614	1,265	3,149	3,499	2,866	633	31,554	

※ 내용: 2020년말 기준 자료.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22.01.04.).

종목에 따른 시설 중 모든 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수를 차지하는 것은 ‘간이운동장(마을체육 시설)’로서, 총 2만 3,834개였다. 2019년 현황 자료부터는 기존 공공체육시설에 구기체육관, 투기체육관, 생활체육관 세 가지 종류를 포함시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2) 등록·신고 체육시설 현황

현 법규 내에서 등록 체육시설은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등 3개의 업종이며, 신고 체육시설은 17개 업종(요트장, 카누장, 조정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 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장, 무도학원,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 시설, 체육교습)이다.

〈표 8-4〉는 2021년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이다.

표 8-4. 전국 시·도별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2021)

(단위: 개소)

구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종목										
등록 시설	골프장		1	10	2	11	3	3	4	3	154
	스키장		-	-	-	-	-	-	-	-	5
	자동차 경주장		-	-	-	1	-	-	-	-	1
	소계		1	10	2	12	3	3	4	3	160
	종목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골프장		61	37	25	27	40	50	41	42	514	
스키장		10	-	-	1	-	-	1	1	18	
자동차 경주장		4	-	-	-	-	-	-	2	8	
소계		75	37	25	28	40	50	42	45	540	
신고 시설	요트장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카누장		1	-	-	-	-	-	-	-	-
	빙상장		12	3	3	1	-	-	1	1	6
	승마장		-	2	1	4	-	3	1	1	43
	종합체육시설		78	22	14	7	8	8	4	1	70
	수영장		111	47	30	35	26	33	13	12	245
	체육도장		1,638	928	796	891	543	528	273	135	3,778
	골프연습장		1,226	473	399	267	110	208	167	36	1,380

구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종목										
	가상체육시설업		442	108	130	178	134	89	73	15	1,321
	야구장		-	-	1	5	-	-	-	-	20
	체력단련장		2,164	777	472	548	309	350	187	48	2,296
	당구장		2,617	848	502	1,104	587	529	439	70	3,787
	썰매장		1	1	3	3	-	1	2	1	28
	무도장		6	2	4	1	-	1	-	-	24
	무도학원		34	40	79	17	28	34	14	1	108
	소계		8,330	3,251	2,434	3,061	1,745	1,784	1,174	321	13,107
구분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종목										
	요트장		-	-	-	-	1	2	15	2	21
	카누장		-	-	-	-	-	-	3	-	4
	빙상장		2	-	2	-	1	3	-	-	35
	승마장		6	6	8	10	8	12	14	25	144
	종합체육시설		8	7	3	4	4	14	14	3	269
	수영장		51	16	36	25	40	31	37	36	824
	체육도장		384	465	587	532	450	789	946	167	13,830
	골프연습장		245	235	192	302	191	444	546	133	6,554
	가상체육시설업		131	133	267	136	215	183	144	63	3,762
	야구장		-	1	-	-	-	4	1	-	32
	체력단련장		235	288	336	221	277	446	490	130	9,574
	당구장		606	506	784	754	836	816	834	226	15,845
	썰매장		26	7	5	8	7	11	10	1	115
	무도장		2	3	3	1	2	3	3	-	55
	무도학원		17	12	17	23	24	50	144	28	670
	소계		1,713	1,679	2,240	2,016	2,056	2,808	3,201	814	51,734
구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종목										
통합	신고시설 + 등록 시설		8,331	3,261	2,436	3,073	1,748	1,787	1,178	324	13,26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788	1,716	2,265	2,044	2,096	2,858	3,243	859	52,274

※ 내용: 2020년 말 기준 자료.

※ 주: 이번 조사부터 가상체험체육시설업(골프 포함) 및 야구장이 새롭게 추가되었음.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2022.02.14.).

위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은 총 5만 2,274개로 집계되었다('19년 5만 2,960개).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경주장업(8개소, '19년 7개소 대비 14.29% 증가), 카누장업(4개소, '19년 3개소 대비 33.33% 증가), 요트장업(21개소, '19년 14개소 대비 50% 증가)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합체육시설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장업 등 일부 체육시설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프연습장업 개소 수(6,554개소)는 전년(9,731개소)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번 조사부터 가상체험체육시설업(골프)이 추가되고 이에 따라 업종 변경(기존 골프연습장업 → 가상체험체육시설업)에 따른 감소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체육시설업의 육성·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실현하고자 2006년 3월 24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종전 등록 체육시설업에서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된 6개 업종을 포함한 17개 신고 체육시설업 중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은 자유업종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2019년 9월 18일에는 IT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이 증가하는데 비해, 이들 체험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안전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야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교실을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추가하였다. 2020년 5월 19일에는 체육교습업의 증가 및 안전관리 상 문제점에 대응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교습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 제2절 체육시설 조성정책

### 1. 체육시설 조성정책 개관

우리나라에 축구, 사이클, 정구, 체조, 육상 등의 스포츠가 대중에게 소개된 것은 19세기 후반쯤으로 기록된다. 국내로 들어온 외교관과 계몽주의적인 서구 교육관을 기초로 설립된 민간 학교들에 의해서였다. 이에 따라 스포츠가 대중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체육시설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며 학교운동장이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1897년 2월, 영어학교에 근무했던 영국인 교사 허치슨(Hutchison)이 탁지부(現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학생들의 식비예산 1,000원 중 일부를 운동장 확장과 운동기구 구입에 사용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된다. 또한 1916년 5월 YMCA가 YMCA 회관 옆에 국내 최초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서 그동안 야외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체육활동을 실내로 확장하게 되었다. 또한 1923년 7월 전 조선 육상경기대회 준비를 위하여 휘문의숙의 설립자인 민영휘(閔泳徽)가 계동궁의 절반을 매입하고 넓이와 길이를 측정하여 100m의 직선주로와 333m의 트랙을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정규 육상경기시설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1926년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최초의 체육시설인 경성운동장(현, 동대문운동장)이 건립되었다.

체육시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자 1957년부터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서울과 지방의 균등한 체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지방 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었고, 이와 같은 대회의 활성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에 각종 근대적 경기장 시설이 건립되었다. 이 시기에 건립된 대표적인 운동장이 바로 효창운동장(1959년)과 장충체육관(1960년)이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된 정책은 도입 초기부터 1950년대까지는 민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후 1960년대부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 국내 체육 시설 상당 부분이 정부 주도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는 그 당시 학교 안에서 교육의 영역으로만 범위가 한정되어 실시되던 체육을 전 국민의 생활영역으로 확대 및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증축의 명문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계기는 또한 1966년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태릉선수촌 건립으로 이어졌고, 1970년대 이후 전국 주요 도시마다 운동장과 체육관 등의 대형 체육시설 건립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1981년에 1988 서울하계올림픽대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이듬해인 1982년 체육부(現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 1986 서울하계아시아경기대회와 1988 서울하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 정부는 짧은 기간에 국제적인 종합경기대회를 두 차례 연이어 치르려자 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시키려 계획하면서도 그 영향이 서울에 편중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6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방 체육시설사업을 국고 보조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건립을 촉진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나아가 1989년 3월 31일, 우리에게 ‘체시법’으로 알려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면서 당시 교통부(現 국토교통부)가 골프장과 스키장, 보건사회부(現 보건복지부)가 수영장, 문교부(現 교육부)가 체육도장을 관리하던 분산된 체육시설 관리업무를 조정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체육부(現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일원화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체육지도자 배치와 피해보상제를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 2. 체육시설 조성정책의 전개

### 1)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 계획) 및 성과

정부는 1986서울하계아시아경기대회와 1988서울하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확보한 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생활체육으로 확대 및 재생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수립한 것이 바로 1990년 3월에 발표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일명: 호돌이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수립한 계획이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간 추진되면서 국민생활체육진흥을 통해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의 축적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을 가속화하였으며,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기며 바람직한 청소년을 육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통하여 실현하려 했던 체육시설 관련 계획의 궁극적인 방향은 두 가지였다. 신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기존시설 활용도 향상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여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먼저,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서울올림픽기념 생활관 건립, 소규모 근린생활체육시설 건립, 국·공립초등학교 내 테니스장 설치, 광역권별 수영장 건립, 레포츠공원 조성 등이 계획되어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한 기존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는,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학교체육시설 개방·이용 확대, 올림픽시설 개방 등의 계획이 포함되었다.

## 2)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및 성과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민들이 체육에 대해 지니는 관심과 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국민은 체육이 사회·경제적 분야에서 개인과 사회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활력을 더해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체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확고히 인식한 정부는 국민 체육진흥5개년계획을 총 3차에 걸쳐 수립하기 시작했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8~2002),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 계획(2003~2007)으로 이어지면서 총 15년간의 단계적 체육정책이 수립 및 실시된 것이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모든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체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체육시설의 공급을 목표로 지방체육시설의 확충과 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먼저 지역 기본체육시설로 운동장과 체육관, 수영장을 설치하였고, 국민의 생활반경에 맞춘 생활권 내 체육시설인 동네체육시설, 종합 체육회관, 구민문화체육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자연 친화적인 체육공원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공립학교 운동장, 관공서의 체육관을 개방하고 공공기관 테니스장 혹은 배드민턴장을 설치·개방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부족한 동계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19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해 무주와 전주 지역의 동계체육시설을 정비 하였고 실내빙상장, 실외빙상장, 스키점프대, 크로스컨트리코스 등을 설치하였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민간 주도적 생활체육 확산을 염두에 두고 지역공동체 주민활동의 장으로서 체육시설 확충을 중요시하였다. 꾸준하게 증가하는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 특별시나 광역시·도와 같은 광역 단위가 아닌 시·군·구와 같은 지역의 부족한 기본체육시설과 근린체육 공간 조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특히 체육시설이 단순히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성과 함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면서, 운동장, 체육관, 실내빙상장, 지방스포츠센터(국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마을체육시설 등의 체육시설 건립을 지원하였다.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참여, 분권, 자율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2003년에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에 비해 체육시설 공급이 부족하다는 구체적인 지표를 토대로 수립되면서,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성별·연령·계층·지역의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 체육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이 궁극적 지향점이었던 것이다. 이에 주민의 생활권 안에서 언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체육시설을 정부 선택이 아닌 설치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다목적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신축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단위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게이트볼 경기장,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이 핵심적으로 추진되었다. 더불어 지식정보화사회 도래, 고령화 사회 진입, 주 40시간 근무제와 주 5일 수업제 시행, 지방분권 확대 등의 정책 환경 변화와 지역별 환경 차이에 주목, 지역주민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조성토록 하였다.

전문체육시설 부분에서는 기본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더불어 체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던 기존 시설의 활용을 통해 시·군·구 기본체육 시설 리모델링 사업 지원, 관리·운영실적 우수 공공체육시설 인센티브 부여, 종목별 전문체육 시설과 전국체전시설 등의 확보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 및 추진되었다.

### 3)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및 성과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재정비하여 수립한다. 이 계획은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공급을 목표로 하였다. ‘작은 체육관’ 조성 계획은 경로당·농촌 폐교·도시지역 폐파출소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2017년까지 900여개의 생활체육 시설 및 소통공간으로 만드는 계획이었다. 2015년부터 실시한 ‘스포츠버스(Sports Bus)’

사업은 스포츠 프로그램과 간이 스포츠시설을 갖춘 스포츠버스를 시·도 당 한 대 제작, 저소득계층 및 다문화가족 거주지역 등을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체육관’, 소외지역, 낙도 등을 찾아가는 ‘작은 운동회’를 운영하게 하였다. 즉, 주민들의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 및 스포츠 소외계층의 참여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이 세워졌던 것이다. 또한 다양한 세대가 하나의 공간에서 소통하며 체육·문화 융복합의 생활이 가능한 ‘세대 통합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유소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체육시설 조성 및 체육용품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체육활동 기본환경 구축하고자 하였다. 2014년 이후 실행된 국민생활체육 진흥종합계획은 국민 전체의 체육활동 참여여건을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체육시설 공급 원칙에 변화를 주어 1인당 체육시설 면적 확대 및 종목별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통한 체육 시설 공급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체육활동의 현장 지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4)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및 성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에 이어 2014년에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을 재 수립하였다. 국민의 건강유지와 체력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022년까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한 이 계획은 스포츠 수요와 스포츠 환경 변화를 반영한 스포츠시설 공급정책 개발 및 추진을 기본 제안으로 하여 참여율 제고, 접근성 향상,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접근 용이성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된 시설 배치, 둘째, 문화와 체육이 함께하는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셋째, 유휴공간과 구석구석 숨어있는 체육공간 조성, 넷째, 재원의 다원화와 다양성 확대, 다섯째,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같은 전략이 수립되어 실행되었다. 특히, 공공체육시설 배치방식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생활권역 및 인구 수, 접근성 및 서비스 수준을 고려함으로써 공간단위 및 시설의 위상에 따른 시설 간 이용체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체육시설의 위계와 참여자의 기술수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3절 공공체육시설 지원

## 1.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공공체육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로서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전문체육시설은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이며, 생활체육시설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다. 한편, 1인당 체육시설면적은 국민 1인당 체육시설 적정면적 및 보급률 산정 등에 활용하는 데 공공, 민간, 청소년 관련 체육시설을 해당년도 인구수로 나눠서 산출한다. 단,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등은 제외된다. <표 8-5>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공체육시설 수와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다.

표 8-5.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단위: 개소, m<sup>2</sup>)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공공체육 시설 수	계	16,127	17,157	19,398	21,317	22,662	24,303	26,927	28,578	30,185	31,554
	축구장	649	718	801	852	886	928	984	1,019	1,040	1,064
	체육관	681	738	819	875	905	955	1,010	1,066	1,139	1,194
	간이운동장	12,194	12,855	14,536	16,046	17,111	18,394	20,602	21,847	22,866	23,834
	테니스장	565	598	660	696	718	740	772	797	818	832
	기타	2,038	2,248	2,582	2,848	3,042	3,286	3,559	3,849	4,322	4,630
1인당 체육시설 면적	계	3.29	3.31	3.57	3.81	3.89	4.05	4.28	4.45	4.51	4.59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전국 공공체육시설현황.

※ 2021년 말 기준 자료는 2022년 말에 제공.

우리나라 체육시설은 1986년 서울하계아시아경기대회 및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대회를 시작으로 꾸준히 개최된 메가스포츠이벤트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투자로 양과 질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 생활체육 활동, 선수훈련, 국내·외 경기 개최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체육시설의 확충을 지원해 오고 있다. <표 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표 8-6. 체육시설 지원사업

사업별	지원액	지원목적
국민체육센터	30억 정액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밀착형의 공공체육 인프라를 확충, 지역주민의 건강 및 체육복지 기반 마련 (복합화 시 국민체육센터 10억 증액, 근린생활형 2억 증액,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수중 운동시설 포함 시 10억 추가 증액)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4~9억 원	학교, 산업단지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 학생, 근로자 및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확충하여 국민의 체육복지 향상 (학교일반 30%, 학교수영장 30억 정액 지원, 산업단지 50억 이내 50% 정률)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시설별 상이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장, 체험센터, 실내체육관 등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건립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활체육 저변확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시설별 상이	공공체육시설의 안전 우려 시설 및 노후시설 개·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 여건 및 경기관람 환경 개선(노후 30%, 안전 50%, 장애인 70% 정률 지원)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위의 표처럼, 정부는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목적은 생활체육공간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육시설을 손쉽게 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89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체육시설 증축 및 개·보수를 위한 재정이 지원되어 왔는데, <표 8-6>에서처럼 그 지원의 내용에는 국민체육센터 신축에서부터 마을단위 체육시설 및 운동장 체육시설 증축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용되는 모든 종류의 체육시설이 포함되었다.

표 8-7. 체육시설 지원 실적(1989~2021)

(단위: 억 원)

사업별	1989~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국민체육센터	7,164	322	1,865	2,454	2,455	14,260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1,236	220	301	376	180	2,313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969	647	687	751	636	4,690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1,790	147	136	135	150	2,358
운동장생활체육시설	5,462	-	-	-	-	5,462
농·어촌복합시설	270	-	-	-	-	270
레저스포츠시설	210	-	-	-	-	210
축구센터 / 공원	650	-	-	-	-	650
마을단위 체육시설	496	-	-	-	-	496

사업별	1989~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농구장 / 족구장	28	-	-	-	-	28
계	19,275	1,336	2,989	3,716	3,421	30,737

※ 주: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은 정부 생활SOC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대체('21년).

※ 주: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민간 및 공단 직접수행 사업 제외.

※ 주: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레저스포츠시설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14년).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표 8-7〉에서처럼, 체육시설 총 지원액은 1989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3조 737억 원이었다. 2021년의 경우, 총 3,421억 원의 기금이 체육시설 지원에 사용되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지원 금액이 투자된 곳은 '국민체육센터'로서 총 2,455억 원이었고, 다음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총 636억 원이 지원되었다.

## 1)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 및 체력측정실 등 국민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시설이 집중 설치되어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일반, 장애인),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표 8-8〉에 제시된 것은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지원시설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내용이다.

표 8-8.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지원 시설 (3개 유형)

수영장 기본형	⇒	• 수영장(25m×4~6레인), 헬스장, 사우나실,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연면적 약 2,161㎡)
다목적 체육관형	⇒	•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연면적 약 1,867㎡)
체육관 복합형	⇒	• 수영장(25m×6레인),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연면적 약 4,029㎡)

※ 주: 상기사설을 기본으로 장애인 특화·편의시설을 확충한 장애인형 체육시설 별도 지원.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거점형 국민체육센터의 세 가지 일반적 형태(일반형)는 수영장 기본형(수영장, 헬스장, 사우나실,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총 면적 약 2,161㎡), 다목적체육관형(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연면적 약 1,867㎡), 체육관 복합형(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체력

측정실, 다목적실 등 연 면적 약 4,029㎡)으로 구분된다. 이들 형태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결정되어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표 8-9>은 지금까지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데 지원된 기금 현황을 연도별로 보여준다.

표 8-9.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연도별·지역별 지원 실적

(단위: 억 원, 개소)

지역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서울	강서 (90)				성동 (30)						
부산		서구 (37.5)			사하 (30)	금정 (30)	영도 (30)		남구 (30)		기장 (29)
대구		동구 (37.5)				북구 (30)	달서 (30)	서구 (30)			
인천		계양 (37.5)		부평 (30)		남동 (30)	서구 (30)				
광주		광산 (37.5)		서구 (30)		북구 (30)	남구 (30)				
대전		유성 (22)			서구 (30)			대덕 (30)			중구 (30)
울산		중구 (30)		동구 (30)				북구 (30)			남구 (29)
세종					연기 (30)						
경기		의왕 (30) 부천 (30)			광명 (30) 평택 (30)	가평 (30)	시흥 (30) 하남 (30)	화성 (30) 오산 (30)		양평 (29)	포천 (29) 안성 (29)
강원		춘천 (30)	원주 (30)			고성 (30)	인제 (30) 동해 (30)	강릉 (30)	평창 (30)	태백 (28)	속초 (30) 횡성 (31)
충북	제천 (45)		충주 (30)		보은 (30)	청원 (30)	음성 (30)	증평 (30)		영동 (30)	
충남		천안 (30)	공주 (30)	금산 (30)		서산 (30)	보령 (30)	논산 (30)	서천 (30)		태안 (30)
전북	익산 (45)		전주 (30)	군산 (30)	정읍 (30)	완주 (30)	남원 (30)	장수 (30)			부안 (32)
전남		강진 (30) 목포 (30)		무안 (30)		영광 (30) 곡성 (30)	나주 (30)	해남 (30)	구례 (30)	진도 (36) 여수 (27)	장흥 (32)

지역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북		영주 (30) 군위 (20)			문경 (30) 경주 (30)	안동 (30)	포항 (30)	상주 (30)	경산 (30)	청도 (30)	칠곡 (29)
경남		진해 (30) 밀양 (20)		함안 (30)		의령 (30)	양산 (30) 진주 (30)	거제 (30)	거창 (30)	김해 (30)	통영 (31)
제주		제주 (30)	서귀포 (22)				북제주 (30)				남제주 (30)
합계	개소수 3	17	5	7	10	13	16	12	6	7	13
	결산액 180	514	142	210	300	390	480	360	180	210	391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부산	연제 (30) 사상 (30) 동래 (31) 북구 (31)	강서 (30)	동구 (32)	부산진 (31)		사하 (50)	수영 (32)				
대구	달성 (29)		중구 (취소)	수성 (31)		달서 (31)	남구 (32)	수성 (50)	중구 (31)		
인천		중구 (29)	강화 (32)			남구 (31) 옹진 (32) 연수 (50)		남동 (30)			
광주	동구 (31)			서구 (50)							
대전				동구 (32)		서구 (31) 유성 (50)					
울산					울주 (29)						
세종									세종 (50)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경기	남양주 (28)										
경기	김포 (27) 성남 (27) 여주 (28) 고양 (27)	이천 (29) 파주 (28) 양주 (28)	구리 (29) 수원 (27)	용인 (27)		안산 (28) 군포 (29) 화성 (28) 시흥 (50)	수원 (28) 부천 (29)	남양주 (29) 동두천 (32)	의정부 (30)	성남 (27) 고양 (28) 광주 (29)	용인 (27)
강원	양구 (31) 홍천 (31) 정선 (31)	영월 (32)				양양 (32)	철원 (33) 화천 (33)			홍천 (50)	삼척 (32)
충북	옥천 (31) 단양 (31)	진천 (31) 괴산 (32)			청주 (30)		충주 (50)		청주 (30) 음성 (30)		
충남	예산 (31) 당진 (29)	부여 (32) 청양 (32)			아산 (29)	천안 (29) 아산 (50)				계룡 (32) 홍성 (32)	
전북	김제 (31) 진안 (31)	무주 (32) 순창 (33) 임실 (33)	고창 (33)			전주 (30)	전주 (50)				
전남	영암 (31) 화순 (30)	신안 (33) 광양 (29) 완도 (33)		고흥 (33) 장성 (32)	담양 (32) 보성 (32)	순천 (31)	여수 (50)		함평 (33)		
경북	고령 (31) 울릉 (32)		김천 (31) 의성 (32) 영양 (32) 성주 (32)	영덕 (32) 울진 (32) 청송 (32)		포항 (29)	예천 (33)	봉화 (33) 영천 (취소)	포항 (50) 구미 (30)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경남	사천 (31) 고성 (31)	창녕 (32)									
경남	하동 (31) 산청 (31) 창원 (27)	합천 (32) 남해 (32) 함양 (32)				창원 (29) 김해 (30)	사천 (50)				
제주					제주 (50)				제주 (30)		
합계	개소수 29	20	10 (최소1)	10	6	19	11	6 (최소1)	9	6	2
	결산액 871	624	280	332	202	670	420	174	314	198	59

※ 주: 2021년 12월말 기준.  
 ※ 주: ( )는 지원 금액(단위: 억 원).  
 ※ 주: 상기 금액은 시설별 총 사업예산으로 2~4년간 분할 지원.  
 ※ 주: 1998년에는 IMF 사태로 기존사업이 폐지되고 새로운 사업이 개발되는 과정으로 지원실적이 없음.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위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집행된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지원실적은 2019년 경기도 용인시(27억 원)와 강원도 삼척시(32억 원)였다. 2020년과 2021년도에는 거점형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지 않았으며 2018년부터 시작된 ‘생활밀착형’과 ‘근린생활형’ 체육시설에 집중되었다. 이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반형 시설과 장애인 시설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는데, <표 8-10>에 각 종류별 시설 유형에 관한 설명이 정리되어 있다.

표 8-10.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지원 시설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지원시설 (4개 유형)

<b>도시 성장형</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영장(25m×4~6레인), 영유아풀,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조깅트랙 등 (연면적 약 3,760㎡)</li> </ul>
<b>도시 특화형</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영장(25m×4~6레인), 마사지풀, 소규모체육관, 헬스장, 조깅트랙 등 (연면적 약 2,956㎡)</li> </ul>
<b>소도시 성장형</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영장(25m×4~6레인), 워킹풀/영유아풀, 소규모체육관, 헬스장 등 (연면적 약 2,956㎡)</li> </ul>
<b>소도시 특화형</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영장(25m×4~6레인), 헬스장, 실버웨이트존, 다목적실 등 (연면적 약 2,332㎡)</li> </ul>

◎ 생활밀착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지원시설 (3개 유형)

<b>수영장형</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영장(25m×4~6레인), 헬스장, 사우나실, 운동처방실, 다목적실 등 (연면적 약 3,250㎡)</li> <li>- 수영장 강화형: 수중운동 공간(2레인) 조성 (연면적 약 3,600㎡)</li> </ul>
<b>체육관형</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관, 헬스장, 운동처방실, 다목적실 등 (연면적 약 2,750㎡)</li> <li>- 체육관 강화형: 수중운동실(2레인) 포함 (연면적 약 3,250㎡)</li> </ul>
<b>종목 특화형</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체육시설, 장애유형별 특화 시설, 동·하계, 해양수상 종목 체육시설 등 (전국대회 규모)</li> </ul>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의 네 가지 일반적 형태(일반형)는 도시 성장형, 도시 특화형, 소도시 성장형, 소도시 특화형으로 구분된다. 권역별 거점 국민체육센터와 함께 생활권형 공공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체육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시범사업이 추진된 후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2019년부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수영장형, 체육관형, 종목 특화형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2021년에는 생활밀착형 일반·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체육 서비스 제공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 까지 실시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지원실적이 <표 8-11>에 정리되었다.

표 8-11.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장애인형) 연도별·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억 원, 개소)

구분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2018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서울	강동구(29.7) 구로구(30) 도봉구(30)	강남구(30) 강동구(취소) 서초구(30) 노원구(30) 성동구(30)	영등포(30) 서대문(40)			송파구(30)	
부산	영도구(30)	진구(30)	기장군(취소) 남구(40) 사상구(40)	사상구(40)		부산(30)	
대구		달성군(30)			중구(40)	수성구(50)	
인천		서구(30)	남동구(40)	중구(40)	서구(40)		
광주	북구(30) 서구(30)		광산구(40)		남구(40)	북구(50)	
대전		동구(30)	유성구(40) 중구(40) 대덕구(40)		유성구(40)		
울산						남구(50)	
세종				세종본청(40)	세종본청(40)		
경기	수원시(취소) 하남시(30)	안성시(30) 오산시(30) 용인시(30) 하남시(30) 군포시(30) 의정부시(30)	여주시(2개소/70) 동두천시(30) 부천(2개소/80) 고양시(2개소/80) 안산시(40) 하남시(40) 화성시(40) 김포시(40) 성남시(40) 수원시(40) 구리시(40) 군포시(40)	평택시(30) 안성시(30) 김포시(30) 의정부시(30) 오산시(30) 과천시(30) 용인시(40)	화성시(30) 안양시(30) 가평시(30)	이천시(2개소/40) 의정부(40) 가평군(30) 동두천시(40) 김포시(50) 안산시(50) 포천시(50) 여주시(40)	양주시(40) 광주시(40) 시흥시(30) 고양시(50)
강원	원주시(30) 강릉시(20)	동해시(30) 인제시(30) 태백시(30)	양구(40) 고성(40) 홍천(40) 원주(40) 강릉(40)	춘천시(30) 홍천군(40)	춘천시(40) 강릉시(30)	화천군(40)	
충북	청주시(30)	제천시(30) 청주시(3개소/90) 충주시(30)	충주(40)	영동군(40)	옥천군(40) 음성군(40) 괴산군(40) 영동군(30)		괴산군(40)
충남		서산시(30) 아산시(30)	서천군(30) 아산시(40)	아산시(30)	금산군(30) 천안시(40)	공주시(40) 당진시(30)	아산시(40) 부여군(40)

구분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2018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충남			예산군(40) 논산시(40)		당진시(40) 홍성군(40)		보령시(30)
전북	전주시(30) 남원시(30)	김제시(30)	남원(40) 정읍(40) 전주(40)		익산시(30) 부안군(30) 완주군(30)		진안군(40) 전주시(50) 부안군(40)
전남		보성군(30) 신안군(30)	여수시(30)		목포시(40) 고흥군(30) 곡성군(30)	순천시(40) 신안군(50)	해남군(50)
경북	영천시(30)	을릉군(30) 포항시(2개소/60)	칠곡(2개소/80) 상주(40)	울진군(30) 봉화군(30) 포항시(40) 고령군(40)	안동시(30) 영주시(30)		성주군(30)
경남	김해시(30)	김해시(30) 양산시(30) 창원시(30)	양산시(30) 진주시(30) 의령군(30) 남해군(40) 사천시(40) 창녕군(40)	양산시(30) 창원시(30)	양산시(40) 거제시(40) 김해시(40) 진주시(40)	고성군(40) 창녕군(40) 하동군(30)	
제주		제주시 (2개소/60)	제주시(30) 서귀포시(40) 서귀포시(40)	서귀포시(40)		제주시(30)	
수량 (개소)	15 (취소1)	36 (취소1)	51 (취소1)	21	30	23	13
지원액	409.7	1,050	1,910	720	1,070	930	520

※ 주: ( )는 지원 금액(단위: 억 원).

※ 주: 상기 금액은 시설별 총 사업예산으로 4년간 분할 지원.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21개소 선정)’에 720억 원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13개소 선정)’에 520억 원이 지원되었다. 한편,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은 생활밀착형 지원모델과 함께 생활권형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은 다목적 체육관, 농구장, 배드민턴, 어린이·유아풀 등의 시설을 포함하며 총 면적 약 1,000㎡의 규모를 갖춘 체육시설을 일컫는다. <표 8-12>는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지원 실적을 나타낸다.

표 8-12.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연도별·지역별 지원 실적

(단위: 억 원, 개소)

구분	근린생활형			
	2018	2019	2020	2021
서울		강북구(10) 구로구(10)	종로(2개소/24) 은평(12) 영등포(2개소/24) 관악(12)	서초(12) 중구(12)
부산	연제구(8.32)		동구(12)	사하구(12)
대구		달성군(10)	수성구(10)	
인천		강화군(10) 계양구(10) 남구(10) 옹진군(2개소/20) 서구(10)		서구(2개소/24) 동구(12) 옹진군(2개소/24)
광주			북구(12) 광산구(2개소/24)	
대전		대덕구(10) 동구(10) 중구(10) 서구(10)	대덕구(2개소/24) 서구(12)	
울산			북구(12)	중구(2개소/22)
세종		세종본청(10)	세종(3개소/34)	
경기		가평시(4개소/40) 광명시(10) 광주시(4개소/40) 김포시(3개소/30) 시흥시(2개소/20) 포천시(10) 양평군(2개소/20) 양주시(10) 연천군(10) 화성시(7개소/70) 부천시(10) 용인시(10) 오산시(10) 양평군(10)	오산시(2개소/20) 화성시(2개소/20) 양평군(2개소/22) 광주시(2개소/24) 이천시(12) 안성시(12)	광주시(10) 화성시(12) 이천시(12) 하남시(12) 양주시(12)
강원		양양시(10) 평창시(2개소/20) 원주시(10)	평창군(10) 삼척시(12) 태백시(12)	삼척시(12) 정선군(12)
충북		청주시(10) 제천시(10) 괴산군(10) 진천군(10)	단양군(10) 옥천군(12)	괴산군(12) 옥천군(12)

구분	근린생활형			
	2018	2019	2020	2021
충남		금산군(10) 천안시(10) 보령시(10) 예산군(10)	예산군(10) 공주시(12) 당진시(12)	아산시(10) 서천군(10) 태안군(12) 청양군(12)
전북	고창군(10) 부안군(10)	무주군(10) 순창군(10) 진안군(10) 김제시(10)	부안군(3개소/30) 무주군(10) 임실군(12) 정읍시(12) 순창군(2개소/24)	부안군(10) 임실군(12) 순창군(12)
전남	구례군(10)	고흥군(10) 곡성군(10) 보성군(10) 완도군(10)	구례군(10) 완도군(2개소/20) 신안군(10) 화순군(12)	진도군(12)
경북		의성군(10) 구미시(10)	포항시(10) 영천시(10) 성주군(12) 영덕군(2개소/24) 구미시(12) 고령군(12) 경산시(12)	구미시(10) 의성군(12)
경남	함양군(10) 김해시(10)	남해군(10) 산청군(10) 창원시(10) 통영시(10) 하동군(3개소/30) 함안군(10) 함양군(10) 합천군(10) 거창군(10) 진주시(10) 사천시(10)	하동군(10) 함양군(10) 산청군(10) 의령군(10) 진주시(10) 양산시(12) 김해시(12) 남해시(12)	하동군(2개소/20) 진주시(10) 양산시(12) 거제시(12) 밀양시(12) 창녕군(12)
제주		제주시(10)		제주시(12)
수량(개소)	6	80	65	37
지원액	58.32	800	730	426

※ 주: ( )는 지원 금액(단위: 억 원).

※ 주: 상기 금액은 시설별 총 사업예산으로 4년간 분할 지원.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2021년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전국 37개소가 선정되어 총 426억 원이 지원되었다.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8년 이후 누적 188개소의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이 건립되었고, 연도별 지원금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2)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은 학교 부지를 활용한 체육관을 건립,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체육복지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표 8-13>은 2021년 12월말 기준 집계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원 실적이다.

표 8-13. 지역별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 지원 실적(2011~2020)

(단위: 백만 원, 개소)

구분 (시·군·구 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25)		종량구 송곡고 (200)			도봉구 방학초 (840) 양천구 신월중 (660)	노원 영신여고 (900) 양천 신화중 (840)	금천구 독산고 (585) 서대문 홍은초 (620)	도봉구 세그루패 선디자인고 (900) 은평구 송실고 (780) 강동구 성내초 (835) 영등포구 윤중초 (900)	서대문 서연중 (900) 서대문 연가초 (900) 서초구 이수초 (703) 도봉구 신창초 (3,000) 도봉구 창동초 (3,000)	성동구 행당중 (900)
부산 (16)	동래구 동신중 (480)	사상 덕상초 (854) 부산진 동평중 (900)	동구 부산중 (680) 연제구 토현중 (680)	남구 대전초 (790) 해운대 동백초 (700) 연제구 연제초 (790)	수영구 한바다중 (900) 남구 남천중 (900)	부산진 광무여중 (900) 금정 구서여중 (480)	동래구 명장초 (900) 사하구 건국고 (900) 해운대 상당중 (790)	동래구 여고초 (757.8) 사하구 옥천초 (900) 사하구 (5,000)	부산진 동평중 (900) 사상 감전초 (900) 해운대 채송여중 (900) 구로구 (5,000)	
대구 (8)					서구 평리중 (3,000)					
인천 (10)					서구 신현북초 (675)	남동 구월초 (892)		서구 금곡초 (900)		

구분 (시·군·구 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광주 (5)	북구 광주체고 (900)	북구 금파공고 (900)						광산구 (평동/ 5,000) 광산구 (빛그린/ 5,000)		
대전 (5)	서구 서중 (900)	유성 어은초 (752)	중구 대전중 (680)		서구 복수초 (900) 유성 송강초 (900)	서구 정림초 (900) 서구 탄방중 (900)	유성구 유성여고 (900) 중구 동문초 (900)	유성구 대덕고 (900) 대덕구 생활과학 고(900)	동구 동대전초 (900) 대덕구 매봉중 (900)	대덕구 목상초 (900) 서구 삼전초 (900)
울산 (5)			남구 장생포초 (500)				남구 여천초 (650)			
세종 (0)										
경기 (31)	고양 현산초 (600) 양주 삼송중 (461)	광명 하안중 (690) 가평 설악고 (480)	양주 회천중 (400)	파주 금향초 (600) 수원 우만초 (726)	의정부 회룡중 (413) 가평 가평초 (480)	용인 수지중 (900) 고양 신촌초 (690)	가평 가평고 (480) 이천 부발초 (422)	의정부 광동고 (500) 광주시 능평초 (3,000)	오산시 가수초 (3,000) 김포시 김포시 (5,000)	
	의왕 갈매중 (480)	양주 천보초 (480) 이천 모가중 (420)		용인 서원고 (789)	고양 신일중 (3,000) 이천 백사초 (480)			양평군 개군중 (3,000)		
강원 (18)	원주 귀래초 (390) 춘천 춘천초 (480) 홍천 화계초 (480)	영월 신천초 (480) 삼척 호산초 (270)	강릉 사천중 (400) 삼척 삼척 가곡중 (400)	횡성 안흥중고 (440) 삼척 미로중 (440)	영월 무릉초 (480) 정선 사북중고 (480) 고성 아야진초 (480)	횡성 수백초 (480)	원주 신림초 (480) <'18.01> 평창 상지 대관령고 (480) 횡성 우천초 (480)	고성군 죽왕초 (480)	고성군 광산초 (480) 고성군 도학초 (480)	양구군 죽리초 (393)
충북 (11)	진천 진천고 (480)	증평 죽리초 (480)		진천 문상초 (440) 제천 봉양초 (440)	진천 구정초 (450)	진천 학성초 (480)	옥천 군남초 (480)	음성군 (5,000) 청주시 (5,000)	보은 관기초 (480) 진천군 (5,000)	증평군 증평초 (480) 청주시 오창산단 (5,000)

구분 (시·군·구 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충남 (15)	천안 천안초 (444) 보령 웅천중고 (480) 당진 서야고 (480)	서천 장항중 (480) 태안 송암초 (480)	당진 당진고 (400)	서천 장항고 (440) 청양 수정초 (420)	서천 시초초 (450) 서천 조선공고 (480)	천안 천안동중 (900) 부여 백강초 (450) 서산 부석중 (480)	공수 금성여고 (480) 예산 덕산중 (480)	금산군 상곡초 (357.3) 부여군용 강중 (355) 아산시 아산시 온양 초사초 (408.3) 공주시 우성중 (480) 서산시 차동초 (468) 서천군 마산초 (307)	부여 규암초 (480) 아산 남창초 (416) 예산군 예산군 대술중 (428) 예산군 수덕초 (220.2)	서천군 기산초 (351) 아산시 영인중 (3,000)
전북 (14)	익산 원광여중 (900) 진안 한국한방고 (480) 장수 산서초 (480)	남원 용성고 (480) 진안 마령고 (480)	임실 대리초 (400) 익산 익산 금마초 (680) 전주 대성초 (320)	익산 이리서초 (378) 진안 진안 장승초 (378)	정읍 정우초 (397) 남원 남원 이백초 (396)	전주 원동초 (396) 완주 완주 소양서초 (396) 정읍 정읍 보성초 (396)	익산 이리삼성초 (452) 남원 남원 아영초 (422)	전주시 한일고 (540) 완주군 완주군 용진중 (480) 고창군 고창군 (5,000)	남원 주생초 (480)	
전남 (22)	영암 대불초 (375) 순천 도사초 (480) 완도 완도 금일초 (480)	장흥 회덕중 (414)	장흥 장흥서초 (400)	여수 여양중고 (440) 화순 화순 아산초 (440)	무안 전남예고 (480) 영암 영암 신북중 (480) 여수 여수 종고초 (480) 완도 완도 완도초 (3,000)	담양 담양 용면초 (480) 영암 영암 남주중 (480)	광양 광양 골약초 (422)		순천 순천 별량초 (480)	강진군 강진군 병영상업고 (480)
경북 (23)	포항 이동중	포항 포항초	안동 영문고	구미 남계초	안동 안동 길주초	영천 영천 금호중고	예천 예천 유천초	포항시 포항시 신광초	안동 안동 남후초	포항시 포항시 상대초

구분 (시·군·구 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북 (23)	(530) 안동 경일고 (480) 영천 영동중고 (480)	(600) 성주 수륜초 (480) 안동 안동여중 (480)	(400) 상주 남부초 (400) 포항 양학초 (680)	(539) 상주 공검초 (440)	(480) 영주 동산여중 (480) 울진 노음초 (480)	(480) 경주 동방초 (480) 상주 이안초 (480)	(480)	(844)	(167)	(900) 경주시 모량초 (480) 예천군 용문초 (480)	
	경남 (18)	창원 진해여중 (570) 거창 대성일고 (480) 창녕 남지중 (480)	거제 수월초 (420) 통영 한산초·중 (480)	거제 오비초 (400) 창녕 계창초 (400) 진주 내동초 (400)	통영 산양중 (440) 하동 횡천초 (440)	김해 경운초 (604)		하동 목계초 (480)	하동 옥종고 (480) 하동 청암중 (480) 양산시 (4,000)	사천시 곤양고 (360) 밀양시 하남일반 (5,000)	
		제주 (2)		제주 신성여고 (680)	제주 물메초 (790)	제주 광령초 (750) 제주 구업초 (800) 서귀포 서귀서초 (465)	제주 대흘초 (466) 서귀포 보성초 (466)	제주 어도초 (511) 서귀포 서귀포 법환초 (480)	제주 한림초 (3,000)		
			합계	수량 25 금액 13,270	22 11,700	19 9,300	21 11,300	31 25,360	24 14,712	23 (취소1) 13,274	29 (취소1) 22,000

※ 주: ( )는 지원 금액(단위: 백만 원).

※ 주: 상기 사업 중 수영장 및 산업단지 사업 예산은 2~3년간 분할 지원.

※ 학교일반 30%, 학교수영장 30억 정액 지원, 산업단지 50억 이내 50% 정률.

※ '21년부터 정부 생활SOC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대체되어 추진.

※ 금액은 기금, 지방비, 교육청 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임.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지원대상은 체육관을 보유하지 않는 초·중·고등학교이고, 지원 조건은 총사업비의 30% 정률 지원(기금 30%, 지방비 20%, 교육청 50%)을 원칙으로 한다. 2021년부터는 정부 생활SOC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대체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총 180억 원이 지원되었다.

### 3)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목적은 지자체 공공체육시설의 노후가 심각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 등의 설치가 미비하여 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장애인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표 8-14>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루어졌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실적이다.

표 8-14.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실적(2015~2021)

(단위: 억 원, 개소)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개소 수	2,332	248	144	606	218	262	218	636
지원액	4,300	435	464	1,070	647	687	751	246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이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에 지원되는데,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에는 총 636개소에 총 246억 원이 지원되었다.

### 4)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의 목적은 스포츠의 즐거움 및 소질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를 통한 인성함양 도모에 있다. 또한 다목적 체육센터, 유소년 축구장 등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을 위한 종목별 계층별 수요를 반영한 신규 체육시설 건립 지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였다. 사업 형태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시설은 실내빙상장, 복싱센터, 다목적체육관,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문화체육콤플렉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등으로서, <표 8-15>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을 위한 지원 내역이다.

표 8-15.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내역(2015~2021)

(단위: 억 원, 개소)

연도	지원내용	지원액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빙상장(부산남구, 충북청주, 경기의정부, 경북의성) 1차년도 지원액(30)</li> <li>• 송파문화체육회관(20), 유소년축구 전용구장(전남순천, 경북영덕) 2개소(40)</li> <li>• 스포츠가치센터 건립(2.6), 산업단지 내 실내체육관 건립(1.4)</li> </ul>	94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빙상장(부산남구, 충북청주, 경기의정부, 경북의성) 2차년도 지원액(51)</li> <li>• 유소년축구전용구장(경기용인/시흥, 인천계양) 3개소(60)</li> <li>• 다목적체육센터(전북전주, 전남여수, 서울강서, 대구달서) 4개소(80)</li> <li>• 오산문화체육콤플렉스(30), 창원폐교활용스포츠센터(5)</li> </ul>	226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빙상장(부산남구, 충북청주, 경기의정부, 경북의성) 3차년도 지원액(119)</li> <li>• 오산문화체육콤플렉스(50), 창원개방형체육관(10), 다목적체육센터/전북전주(10)</li> <li>• 유소년축구전용구장(충남보령) 1개소(20), 순천유청소년수영장(15), 금천다목적문화체육센터(15)</li> <li>• 산청복합체육센터(15.6), 창원팔룡동체육관(10.5)</li> </ul>	265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산문화체육콤플렉스(50.5), 창원개방형체육관(25)</li> <li>• 순천유청소년수영장(15), 금천다목적문화체육센터(7.5)</li> <li>• 성북체육문화센터(20), 창원다목적체육관(10), 금촌문화체육센터(6)</li> <li>• 충주유소년축구장(10), 세계바독스포츠콤플렉스(3)</li> </ul>	147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산문화체육콤플렉스(25), 창원개방형체육관(25), 금천다목적문화체육센터(7.5)</li> <li>• 창원다목적체육관(20), 충주유소년축구장(10), 금촌문화체육센터(10)</li> <li>• 신길복합형체육센터(10), 시흥복합형체육센터(10)</li> <li>• 중랑문화체육복합센터(10),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8.5)</li> </ul>	136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산문화체육콤플렉스(25.5), 금촌문화체육센터(17), 신길복합형체육센터(33.1)</li> <li>• 중랑문화체육복합센터(10), 시흥배드민턴장(9.2), 의정부흥선권역복합체육센터(10)</li> <li>• 서울동북권생활체육시설(20), 전주컬링경기장(5)</li> <li>• 부산을속도다목적실내테니스장(5)</li> </ul>	135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촌문화체육센터(17), 신길복합형체육센터(15), 중랑목2동문화체육복합센터(30)</li> <li>• 광주수영진흥센터(5.1), 전주컬링경기장(10), 부산을속도다목적실내테니스장(8.5)</li> <li>• 서산유소년축구장(12), 부산멀티콤플렉스스포츠센터(5)</li> </ul>	102.6

※ 민간 및 공단 직접수행 사업 제외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2021년에는 총 8개소를 대상으로 102억 6,00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광주수영진흥센터(5억 1,000만 원), 서산유소년축구장(12억) 부산멀티콤플렉스스포츠센터(5억) 등 3개소가 새롭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제4절 공공체육시설 활용

## 1. 공공체육시설 공간 활용도 제고

## 1) 활용도 제고의 정책적 방향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우리나라 공공체육시설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설치 후 체육시설과 관련된 홍보 미흡으로 지역주민들은 체육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건립 후 꾸준한 관리·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설활용도와 만족도 역시 민간체육 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체육시설 건립뿐 아니라 이미 건립된 공공 체육시설의 활용도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였고,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 중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공공체육시설 공급기준은 ‘참여인구’와 ‘시설 접근성’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참여인구는 수요분석을 통해 도출된 종목별 참여율 예측치를 추세인구에 반영하여 산출한 참여인구를 기준으로 필요한 공급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접근성 기준은 서비스의 균등 배분 및 수요 집중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서비스 비혜택 인구를 기준으로 공급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성을 공급계획에 반영하여 중기 계획에서는 비혜택 인구 및 지역을 해소하여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체육시설 활용도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크게 세 가지 정책적 방향을 설정, 관련한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첫째,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노후화된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최신식의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개선작업은 동일한 종류의 체육시설을 새로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대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학교운동장으로 대표되는 공공 체육시설의 적극적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다. 공공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한 경비 소요가 부담스러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개정하여 개방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 내에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상대적으로

체육시설 건립과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드는 체육시설은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 등이 가능토록 다목적·다용도의 복합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고, 체육시설건립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시설을 직접 이용할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 수렴,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해당 건립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체육시설이 건립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과 권장)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 등) 제1항, 국민체육진흥시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국민체육진흥시책) 제1항 제3호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공공체육시설 균형 배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공공체육시설 공급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표 8-16>과 같이 차별화, 특성화, 복합화, 입체화, 실용화, 다양화, 유용화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표 8-16. 공공체육시설 공급 기본계획의 기본 원칙

기본원칙	세부 내용
차별화	접근 용이성에 따라 종목별로 차별화된 시설 배치 유도하고 종목별 참여수요 및 민간시설 공급 정도를 감안한 공급계획 작성
특성화	도시 및 농촌 등 지역 맞춤형 체육시설 건립, 도시지역 업무 중심지의 유동인구를 고려한 소규모 간이체육 시설 건립,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 등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서의 체육시설 건립
복합화	문화와 체육이 함께 하는 복합 문화체육 공간 조성, 생애주기별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종합 구현을 위한 복합 공간 조성, 자원봉사자 중심 운영 등 저비용 운영
입체화	타 부처 사업과 연계·협조에 의한 입체적 공간 확보, 도심의 자투리 공간, 지하철 역사, 기업 청사 등 유동 인구 수용 체육시설 확보, 그린벨트 등 체육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성 확대
실용화	둔치, 폐교, 미사용 행정시설 등 미사용 시설, 유휴공간, 숨겨진 체육공간을 발굴 및 활용하여 야구장, 축구장 등 건립 방안 및 체육시설 설치
다양화	전문체육 기반 구축과 종목 다양성 제고, 동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동계종목 수요변화 추세 검토 및 서비스의 균등 수혜, 동계체육시설의 수도권 편중 해소 및 권역별 빙상장 건립
유용화	노후시설 및 기능 변화 필요 시설의 리모델링 지원 등 기존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대형 전문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학교체육시설의 야간 개방 확대 등 이용 활성화 유도,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최적화로 정보 접근성 강화, 장애인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이러한 목표 달성을 정부는 참여율 제고, 접근성 향상, 서비스 향상을 통해 생활 속의 스포츠, 스포츠 웰빙 한국(Sports in life, Sports Well-being Korea)을 구현하는 데 가치를 두고

관련 개발전략을 구성하였다. 개발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체육시설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공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간단위별·경기수준별 체육시설의 조직적 체계화, 효율적인 이용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둘째, 체육시설 공급주체의 다양화를 위해 공공은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기금지원 모델 수정안을 제시하고 민간영역이 체육시설의 주요 공급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정보, 제도개선, 공공시설의 민간사업장 활용 가능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 셋째, 유휴자원 및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한 공공체육시설 지원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 부담을 축소하고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공간의 최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 2) 지방체육시설 개·보수

대형운동장으로 대표되는 다중체육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전반적인 체육활동 환경이 낙후됨으로써 이들을 개·보수하려 조치하였으나, 기존 국고보조금 지원체계로는 문제의 근본적 개선이 어려웠다. 이에 국민체육진흥의 필요성과 국민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 2010년 「국민체육진흥법」(2010년 1월 27일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2010년 9월 17일 공포)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시설 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대상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실내시설은 500석 이상, 실외시설은 1,000석 이상 관람석을 갖춘 시설로 제한)로 제한되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5%이며, 개·보수에 들어가는 시설비용의 30%를 지원하도록 정해졌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정부는 2010년부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이루어진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많은 체육시설들이 편의성을 갖춘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 3) 공공체육시설 민간투자 여건조성 및 수익시설 설치기준 완화

프로경기단체가 사용하는 경기장 시설의 단기임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0년 2월 4일 공포(같은 해 5월 5일 시행)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개정했다. 이에, 기존 3년간의 단기임대에서 25년간 장기임대가 가능케 되었고, 이를 통해 프로경기단체는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투자, 공공체육시설 현대화 작업 및 다양한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와 협의 하여 2010년 3월 16일에 공포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법률 개정을 통해 종합운동장의 공간·기능적 다양성을 적극 활용하고 체육시설 고유의 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다양한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함으로써 시설활용도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 기존 수익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체육시설은 운동장의 규모가 100만㎡이상이거나 여섯 종목 이상의 국제규격경기장을 갖춘 체육시설이었지만, 법 개정 후 설치 기준이 10만㎡이상이거나 세 종목 이상의 국제규격경기장을 갖춘 체육시설로 완화되어, 약 20여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운동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4)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운영

국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와 건강증진 및 유지에 관한 급격한 관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수와 규모가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 부족으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시스템이었다. 2010년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고, 2011년 7월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완료, 2011년 10월에 누리집(www.sportsmap.or.kr)를 통해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시스템은 공공체육시설 위치나 사진, 동영상 같은 기본적인 정보와 지도자, 홈페이지, 셔틀버스 정보, 각 공공체육시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보, 운영요금 등의 정보를 안내하며, 장애인 시설 정보도 제공한다.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시스템은 국민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안내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바탕으로 획득한 정보로 체육시설 지역별 균형배치 등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유용한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 5) 공공체육시설(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학교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 중 급격하게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다. 따라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은 공공체육시설의 신규 공급과 같은 효과를 내며 건립을 위해 필요한 자원 마련과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가 지원한 학교의 공공체육시설 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야간에도 생활체육이 가능하도록 야간조명시설 의무설치) 및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개방하는 학교체육시설의 경우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지역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면서 기존의 시설보호 위주로 관리·운영 되던 정책을 탈피, 현재는 활용 위주로 관리·운영하게끔 그 정책이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 주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최소한의 경비 범위 내에서 시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 6) 소외계층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및 장애인 이용편의 확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소외계층에게 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해 공공체육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 중이다. 이용료 감면은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및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를 근거로 하여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지방조례 등을 통해 할인 대상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감면된 이용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 제25조에 따라 편의시설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까지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 2012년까지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 2015년까지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에 이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해왔다.

## 2.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효율화

### 1) 공공체육시설 에너지 효율화

최근 환경과 관련한 여러 정책과 자발적 참여 유도 캠페인이 시행되며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응원문화 및 경기운영 방식의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하는 그린 스포츠(Green Sports)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 중이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4개 프로단체의 경우에는 2010년 3월 ‘그린스포츠 업무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실천행사로 관중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쓰레기 분리수거 유도, 응원문화의 개선 등을 통한 자원절약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공체육 시설의 확충 및 개·보수 등을 추진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조명설치, 조명시설 자동 제어기 설치, 물 절약 시설 설치 등 에너지 효율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대상 교육 강화

매년 지방 체육행정공무원 및 지방 체육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경영마인드의 도입과 시설 운영 개선을 유도하고자 2017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주관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중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과목을 개설하여 체육 시설의 시간적·공간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연간 약 80여 명의 지방 체육행정공무원 및 체육시설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변화된 체육환경과 체육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실무를 이해함으로써 지방 체육행정의 선진화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3)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도 「체육시설업」에 대한 체육 지도자의 배치, 안전·위생 기준 등의 안전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되 시설의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맞게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동장, 체육관, 야구장, 수영장, 빙상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 및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프로경기 개최시설 등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체육활동 외 공연 행사 등으로 대관 시에는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마련(안전관리요원 배치, 안전 관리자 선임, 작업자 안전관리수칙 준수 등)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5절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배경 및 목표

#### 1) 추진배경

기존 체육시설 관련 정책은 공급확대와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체육시설 건립단계부터의 체계적 안전관리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년 2월 3일 공포) 및 시행(2015년 8월 4일)되면서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법」 제4조의2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증장기 안전관리 정책,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 개선 사항,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안전점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을 포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가 기본시책과 목표를 제시하고 체육시설(약 7만 8천여 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재난을 예방할 선제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체육시설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여 만족감을 높이는 목표도 포함되었다. 즉,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이 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이다.

이에 따라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전국의 체육시설에 대해 상설 안전점검단을 운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시설은 개·보수하고 그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작성된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기반 구축과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스포츠 안전교육·연구 활성화,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을 4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상시적,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2. 체육시설 안전관리 계획 추진 성과

2016년 제1차 체육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2016년 11월에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1단계 구축(전국 체육시설 DB 구축)사업을 실행하였다. 2017년 1월 국가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2017년 6월 스포츠·레저 안전 캐릭터를 개발하였다. 2017년 12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2단계 구축을 마무리하여 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2018년 1월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제1차 시범사업을 실시(7개소 지정 완료)하였으며, 12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3단계 구축(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 오픈 및 모바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표 8-17〉은 2017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관련 사업 실적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8-17.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관련 사업 실적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 구축	SFMS 모바일 관리시스템 구축	체육시설 정보현행화 및 체육시설알리미 안전점검 결과공개	SFMS 모바일 앱 개발, 체육시설알리미 이용 활성화 추진	SFMS 및 모바일 앱 안정화
국가체육시설 안전점검	80개 국가체육시설 전수 안전점검	84개 국가체육시설 전수 안전점검	87개 국가체육시설 전수 안전점검	87개 국가체육시설 전수 안전점검	104개 국가체육시설 전수 안전점검
민관합동 체육시설 안전점검	453개소 (포항 지진 지역 4개소 포함)	454개소	480개소	670개소	619개소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1,500개소	1,000개소	1,500개소	670개소	306개소
체육시설 안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24회, 450명 교육수료 (지자체 담당자)	15회, 385명 교육수료 (지자체 담당자, 체육시설업종사자)	17회, 618명 교육수료 (지자체 담당자, 체육시설업종사자)	온라인 1,003명 교육수료 (지자체 담당자, 체육시설업종사자)	온라인 1,338명 교육수료 (지자체 담당자, 체육시설업종사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교육교재 개발	4건 스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안전교육 교재개발, 싱가폴 안전가이드 번역·보급	8건 승마장, 빙상장, 골프장 등 교육교재, 체육시설 안전사고 근본 원인 분석 연구	3건 체력다련장업, 체육도장업, 요트장업 교재 개발 및 교육동영상 제작	22건 체육시설 통합안전관리가이드 (18종) 및 온라인 교육 동영상 제작 (4과목)	25건 체육시설 통합안전관리가이드 (20종) 및 온라인 교육 동영상 제작 (4과목), 체육시설 안전문화(1과목)
체육시설 안전 홍보	유승민 IOC위원 홍보대사위촉, 스포츠레저안전 캐릭터 제작 공모전 개최 933점 접수	스포츠레저안전 캐릭터 보급, 스포츠안전송 개발, 스포츠안전 사진공모전 개최	체육시설알리미 SNS 신규 개설 및 운영, 인플루언서 연계 유튜브 콘텐츠 2편 제작, 유승민 IOC위원 홍보대사 재위촉	체육시설 안전 관리 캠페인 추진, 홍보 대사 참여 이벤트 추진, 스포츠안전송 뮤직비디오 등 콘텐츠 제작 및 SNS 이벤트 개최	체육시설 안전이용 SNS 운영(105회), 코로나19 대응 실내 체육시설 안전이용 활성화 콘텐츠 제작 (5편), 방역수칙 개정 카드뉴스 제작(35회)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2021년에는 기 구축된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SFMS)의 모바일 앱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체육시설알리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104개 국가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민관합동 체육시설 61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30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지자체 담당자 및 체육시설업 종사자 1,3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체육시설 통합안전관리 가이드 20종과 온라인교육 동영상 4과목 및 체육시설 안전문화 1과목에 대한 교육 교재를 개발하였다. 체육시설 안전홍보와 관련해서는, 체육시설 안전이용 SNS가 운영되었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실내체육시설 안전이용 활성화 콘텐츠가 제작되었으며, 방역수칙 개정과 관련한 카드뉴스가 제작되었다.

###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 기반 구축

첫 번째 주요 추진과제인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국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가장 주요한 세부과제다. 이는 체육시설 관련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과제로서, 2021년에는 국가 체육시설 104개소에 대한 점검이 상하반기로 각 1회씩 진행되었다. 또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도 실시되었는데, 국가 체육시설 이외에 공공 체육시설과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총 619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점검 실태조사’가 총 30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외에도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SFMS) 구축 운영’을 위해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체육시설알리미 서비스를 활성화하였다.

## 2)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두 번째 주요 추진과제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 분야와 관련하여 중요한 세부과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제’ 운영이었다. 지난 2018년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3회 시범사업을 통해 40개 체육시설에 안전인증을 부여하였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증 유효기간(3년) 내 인증기관의 안전경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인증 사업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제, 안전점검 전문기관 등록제도와 안전교육 전문기관 육성·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하였다.

## 3) 체육시설 안전교육·연구 활성화

안전관리 교육교재 개발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으로 안전관리 인력기반을 조성하는 일도 수행되었다. 2021년에는 지자체 체육시설 담당자 및 체육시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가장 많은 인원인 총 1,338명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재 및 온라인 교육 동영상 개발하고 안전점검지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2020년부터 2년간 진행해 온 온라인 교육의 편리성과 확장성이 드러남에 따라 향후 체육시설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은 집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혼합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4) 국민체육진흥공단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보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공단 내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별도의 계획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용 시설물의 노후 및 안전사고 관리에 노력을 기울였다.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8조 안전점검의 실시」 조항에 의거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시설물인 체조경기장등 72개소에 대하여 매년 이루어지는 안전점검은 시설물 균열, 누수, 박리 등 외관조사를 실시하고 균열 계측자료, 보수보강이력, 기존 점검자료 검토하며, 시설물의 콘크리트 반발경도시험, 탄산화 깊이측정, 부재 상태평가 등 각종 시험을 실시한다.

표 8-18. 국민체육진흥공단 시설물 안전점검 주기와 대상

구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점검
점검주기	반기 1회	2년 1회 (단, 건축물 3년 1회)	5년 1회	필요 시
대상시설	1,2,3종 시설물	1,2종 시설물	1종 시설물	해당 시설물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19). 공단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보수 기본계획안.

### 5) 스포츠 안전교육 실행 현황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스포츠안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스포츠 안전재단은 스포츠행사운영자, 스포츠지도자, 스포츠시설관리자 등 체육관계자 전반을 대상으로 스포츠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안전재단의 교육은 스포츠안전의식 고취와 스포츠안전 실천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안전관리 이론 교육과 응급처치 등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8-19>는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진행되었던 스포츠 안전교육 현황이다.

표 8-19. 스포츠 안전교육 현황(2017~2021)

(단위: 건,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행사운영자	27	2,584	33	2,839	22	1,604	10	210	23	818
시설관계자	38	945	22	1,181	58	1,028	14	1,409	38	1,946
지도자/심판	271	29,380	287	25,600	417	34,587	163	7,715	140	5,210
장애인스포츠	7	431	8	749	57	2,486	29	633	3	44
참여자	788	32,496	806	35,554	710	29,083	169	5,095	815	25,975
선수	-	-	-	-	109	5,783	30	818	179	5,718
계	1,131	65,836	1,156	65,923	1,373	74,571	415	15,880	1,198	39,711

※ 출처: 스포츠안전재단 내부자료(2021).

스포츠 안전교육 대상은 2014년의 경우 행사운영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5년

부터 행사운영자, 지도자, 참여자로 확대, 2016년부터는 행사운영자, 시설관계자, 지도자 및 심판, 장애인스포츠, 참여자 및 선수 등 5개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2019년부터는 참여자와 선수가 구분되어 집계되기 시작하였다. 2021년의 경우, 위의 표에서처럼 총 1,198건의 교육을 통해 총 3만 9,711명이 관련 교육을 받았다. 또한 스포츠안전재단은 스포츠행사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자발적 점검 문화를 형성하고자 2018년부터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8-20>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점검서비스 현황이다.

표 8-20.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점검서비스 현황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생활체육	28	32	1	5
전문체육	12	82	18	45
프로스포츠	3	-	-	64
기타*	-	-	2	-
계	43	114	21	114
건수 누계	292			

\* 기타: 비스포츠행사, 시설 등.

※ 출처: 스포츠안전재단 내부자료(2021).

스포츠안전재단은 안전한 스포츠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행사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안전관리 점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개발한 ‘4P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지표’를 바탕으로 스포츠 현장을 4P(계획(Plan), 인력(People), 장소(Place), 물자(Product))로 구분하여 스포츠 현장의 위해·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생활체육 스포츠행사 5건, 전문체육 스포츠행사 45건 및 프로스포츠 행사 64건을 포함해 총 114건의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 점검서비스가 이루어졌다.



2021 체육백서

2021 Sport White Paper

9

## 남북체육교류

- 제1절 남북체육교류 개관
- 제2절 남북체육교류 정책거버넌스
- 제3절 남북체육교류 현황

## 제1절 남북체육교류 개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다. 그러한 상황에서 체육은 남과 북이 정치와 사상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촉매제로서 제 역할을 해왔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교류는 단순히 '남과 북의 사상을 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실질적인 상호 간 인적 및 물적 교류와 교환에 그 중요성이 있다. 즉, 상호 간의 교류로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으로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것'을 지향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체육이 제 몫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남북체육교류에서 지향하는 협력적 의미라 할 수 있다.

남북체육교류는 1964년 도쿄 하계올림픽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스위스 로잔에서의 회담을 시작(물론 1929년에 시작된 경성과 평양 간 경평축구대항전을 교류의 최초로 보는 시각도 있다)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 다양한 국제대회에 이르기까지 현재 진행 중이다. 물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동계올림픽 이후 체육 관련 교류가 상당히 줄어들긴 했지만, 이와 같은 교류는 남과 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체육교류는 접촉 수준의 회담이나 민간 차원의 만남 및 세계대회 동시입장을 비롯한 대회 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운동복을 입고 수행하는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한다.

남북체육교류의 포문을 여는 데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역할이 컸다. 비록 남북 정부 당국이 아닌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대표들과 IOC간의 논의이긴 했으나, 1963년 도쿄 하계올림픽 출전을 위한 의견 조율이 있었고, 당시 남북 상황에서 단일팀 구성을 안건으로 집행위원회의 회의가 있었다는 것이 IOC 회의록에 기록되어있다. 이후 1979년 4월 평양에서 예정된 제35차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 출전을 위한 협의를 시작으로 남북체육교류의 물꼬가 공식적으로 트였다. 이후 남북 정치 및 외교 상황이 우호적일 때에는 남북체육교류협력 역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반면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 때에도 체육교류협력은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다시금 상호간의 대화채널을 복원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이런 반목 과정 중 마침내 1991년, 남북체육교류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포함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교환되기에 이르렀다.

남북 간 체육교류는 다른 분야의 교류와 비교했을 때 크게 네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남북체육교류는 역사성을 갖는 문화 행사로서의 전통을 갖는 사실이다. 둘째, 남북체육교류는 체육 자체가 갖는 대중성 때문에 민족공동체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타 분야에 비해 훨씬 크다. 셋째, 남북한 체육은 타 분야에 비해 대회나 훈련, 용품 교환 등 다각도에서의 교류 협력이 가능하기에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도 충분히 외교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체육 교류는 국제단체(IOC, FIFA, UNESCO 등)를 통한 중재와 도움이 가능하다. 즉, 동일한 경기 규칙 및 규정 등에 의해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 특성으로 인해 남북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로 인한 대립이 불거질 확률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특징의 남북체육교류는 다양한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체육교류는 화해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정치적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스포츠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중요시하며 경기에 들어서면 오직 선수의 기량만을 대결하기에 선수단과 임원단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불신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체육교류는 남과 북의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셋째, 남북체육교류는 한반도 화해와 정치적 평화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투자 안정국 인지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외자유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 기능도 발휘한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지닌 체육교류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근 남북의 교류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몇몇 대회 진행 및 관련 교류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 이 장에서는 우선 남북체육교류의 정책적 거버넌스를 다루고자 관련된 분야의 제도적 기반 및 조직 등이 정리되었다. 그 후, 남북체육교류 현황이 과거 사례부터 2021년의 현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마지막으로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가 소개되었다. 2018년 체육백서에서 남북체육교류는 ‘국제체육’의 영역에서 정리되었으나, 2019년부터 다시 남북체육교류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관련 내용을 집적해 오고 있다. 비록 2021년에는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남북체육교류 만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평화통일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고려할 때 스포츠를 통한 협력과 교류 활동은 향후에도 남북 간 관계를 증진시키는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남북체육교류 정책거버넌스

## 1. 남북교류의 법적 기반

우리나라의 정부는 시대 흐름에 맞는 법령을 통해 대북정책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남북교류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 특히 ‘법’을 제공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북교류를 위한 현행 법령이 세 가지 있다. <표 9-1>에서처럼 이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그리고 「남북협력기금법」이 그것이다.

표 9-1. 남북교류 관련 법률현황

법령	최초시행	제정/개정	목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90.08.01.	2020.12.08.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0.08.09.	2021.03.0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0.11.09.	2019.08.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남북협력기금법	1990.10.01.	2010.05.17.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1990.12.31.	2018.06.05.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1991.03.27.	2010.09.27.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2008.03.07.	2018.06.01.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2003.01.01.	2016.05.30.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학술·체육협력 지원자금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006.06.30.	2021.10.19.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06.30.	2021.01.0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법령	최초시행	제정/개정	목적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006.11.17.	2006.11.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공행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2005.12.13.	2005.12.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행시행령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문화관광체육부 남북 문화 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2007.06.19.	2009.07.01.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웹사이트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에 공포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체육 교류·협력의 최초 법적 근거가 되었다. 동법 제1조는 남한과 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제정의 목적으로 밝히고, 제2조는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물적 및 인적 자원의 교류를 가능케 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같은 시기인 1990년에 공포된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2006년 공포되어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갖는 법이다.

남북체육 교류 및 협력의 범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동법의 시행령과 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주민왕래, 주민 접촉, 교역 및 기타 협력 사업을 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협력사업'이란 법률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항)'고 폭넓게 규정한다. 또한 동법 제24조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의 제8조는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법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한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지정하여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게 규정하였다. 더불어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그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과 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하고 동조 제4항에서 ‘국내 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과 제5항 ‘문화 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에 포함하였다.

## 2. 남북체육교류 관련 조직 및 유관기관

### 1) 정부 조직

남북체육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주무 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협력관(국제체육과)과 통일부의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로서 통일부 장관 주재의 정부협의체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둔다. 동 협의회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연락 및 실무적 협의 지원’, ‘대북 교역 및 투자 등에 대한 알선 및 상담’, ‘남북한 간 교역당사자 사이의 연락 지원’,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방북인원의 편의제공’, ‘남북한 간 교역·투자와 관련된 정보·자료 제공’, ‘교역상품전시회 등 남북경제 교류협력 촉진활동의 추진·지원’, ‘남북한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연락 및 협의 지원’, ‘그밖에 남북한 간 교역 및 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산하 실무위원회를 둔다.

통일부는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급증하는 남북교류 협력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 법을 지속적으로 개정 및 보완해왔다. 예를 들어, 2009년에 남북 간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형물까지 확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남북한 왕래 및 남북한 주민 접촉 조항을 보완 하였으며,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및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일원화 등도 관련 사례다. 이처럼

2009년 7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부는 2009년 7월 「남북사회문화협력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개정 발효된 동 법의 개정 사유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으며, 이에 따라 남북 간 물품 등의 반출과 반입 승인, 업무위탁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수송 장비 등의 출입관리, 검역, 무역보험법 관련 내용이 개정되었다.

또한 통일부는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고시로 명문화하였는데, 이는 남북 간의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 규정 제4장 제2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제1조). 동 지침에 따르면 국제체육행사 단일팀 참가나 국제체육행사 공동 시행은 우선지원 대상 사업이다(제3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남북협력기금 기반의 남북체육교류가 없었다. <표 9-2>는 2019년도에 실시된 남북협력기금에서 남북체육교류 사업이다.

표 9-2. 남북협력기금 지원 사업

구분	연도	건수	지원사업비
제26차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지원	'19.04.	3건	1억 1,300만 원
남북 태권도시범단 국제기구 합동공연 지원	'19.08.	1건	1억 1,100만 원
2019년 아시아유소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참가지원	'19.10.	1건	1,100만 원

※ 출처: 통일부(2020). 누리집 자료.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동 지침에서 자금의 집행 및 사용(제6조)과 기금지원의 중단(제7조) 등을 명시하여 남북협력지원자금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기본적으로 남북체육교류 재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알려져 있듯,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법·제도적으로 남북체육교류를 위한 재원에 투입될 근거가 뚜렷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 제22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근거하면 남북체육교류 촉진은 정부의 정책 사업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기에 기금 지원이 가능하다. 실제로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대회 단복제작비 및 2006년 남북단일팀 구성 체육회담 개최비가 여기에서 지원되었다. 또한 2007년에는 장춘동계아시아경기대회 공동입장 단복제작, 북한 청소년축구단 전지훈련비 지원, 남북축구 친선교환경기 및 축구장 개·보수 지원, 체육용품(축구화)도 지원된 바 있다.

통일부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2000년대 후반 들어 활성화되었던 남북 간 문화교류 협력사업을 관리하고자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남북 문화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제정하였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제체육과를 중심으로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 2) 유관기관

### 가.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대한체육회의 남북체육교류위원회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 방향과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북체육회담과 관련한 제반 사항
- 국제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참가와 관련한 사항
- 남북 왕래 전지훈련 및 상호 지도자 초청과 관련한 사항
- 남북 쌍방지역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 참가 관련 사항
- 남북 간 체육정보교환 및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 남북 간 체육문제와 관련된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나.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2005년 1월에 설립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 조정 및 촉진,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2021년에 총 7번의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체육교류와 관련된 내용은 진행되지 않았다.

### 다.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통일부 소속기관으로서 한반도 통일미래를 위하여 남북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 통일체험연수, 세대·계층별 소통 활성화, 남북인적교류 행사지원 등의 목적으로

2014년 8월에 설치하여 10월 경기도 연천군에 개관하였다. 특히 유소년 축구대표단 체류를 포함한 북한 청소년 체육교류, 남북교류 관련 국내 유소년 축구단 훈련 지원과 통일 유관 단체 행사 개최 지원을 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남북체육교류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원 활동이 없었다.

## 제3절 남북체육교류 현황

## 1. 남북체육회담 중심의 교류

남북 간 첫 체육교류의 시작은 1963년 1월 24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1964 도쿄하계 올림픽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이었다. <표 9-3>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역대 남북체육회담 주요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 9-3. 남북체육회담 주요 일지

시기	장소	명칭	내용	
1963	01.24.	스위스 로잔	도쿄하계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 회담	• 도쿄하계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문제 토의 (결렬, 별도 참가)
	05.17.	홍콩	단일팀 구성 실무 1차 회담	
	07.26.	홍콩	단일팀 구성 실무 2차 회담	
1979	02.27.	판문점	제1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 제35회 평양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문제 토의 (결렬, 한국 참가 무산)
	03.05.	판문점	제2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03.09.	판문점	제3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03.12.	판문점	제4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1984	04.09.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 로스앤젤레스하계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문제 토의 (결렬, 북한 불참)
	04.30.	판문점	제2차 남북체육회담	
	05.25.	판문점	제3차 남북체육회담	
1985	10.08.~10.09.	스위스 로잔	제1차 남북체육회담	• 1988 서울하계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협의 (결렬, 북한 측이 IOC수정안 거부, 북한 불참)
1986	01.08.~01.09.	스위스 로잔	제2차 남북체육회담	
	06.10.~06.11.	스위스 로잔	제3차 남북체육회담	
1987	07.14.~07.15.	스위스 로잔	제4차 남북체육회담	• 1990 베이징하계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논의 (결렬, 별도 참가)
1989	03.09.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03.28.	판문점	제2차 남북체육회담	
	10.20.	판문점	제3차 남북체육회담	
	11.16.	판문점	제4차 남북체육회담	
	11.24.	판문점	제5차 남북체육회담	
1990	12.22.	판문점	제6차 남북체육회담	
	01.19.	판문점	제7차 남북체육회담	
	01.29.	판문점	제8차 남북체육회담	
	02.07.	판문점	제9차 남북체육회담	

시기	장소	명칭	내용	
1990	11.29.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 남북통일축구 정례화,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논의
	01.15.	판문점	제2차 남북체육회담	• 국제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토의
1991	01.30.	판문점	제3차 남북체육회담	• 탁구단일팀 파견 및 청소년 축구대회 논의
	02.12.	판문점	제4차 남북체육회담	• 탁구단일팀 파견 및 청소년 축구 단일팀 구성 합의
2005	12.07.	북한 개성	제1차 남북체육회담	• 2008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 합의
	06.29.	북한 개성	제2차 남북체육회담	• 2008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 관련 • 명칭(코리아), 단기(1920년 아리랑), 단기(한반도기) 합의
2006	09.04.~09.09.	스위스 로잔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 회담	• 2008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 관련 • IOC 3자 회담
	11.30.~12.02.	카타르 도하	제3차 남북체육회담	• 2008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 관련 • 현안 점검 및 준비
2007	02.13.	북한 개성	제4차 남북체육회담	• 2008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 관련 선수선발 논의(양측 의견 상충에 따른 추후 지속 협의하기로 합의)
	01.17.	판문점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북한 대표단 참가 논의
	01.19.	스위스 로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단일팀 관련 실무회의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아이스하키 단일팀 참가 관련 실무 논의(개회식 등 의견 및 지원 관계사항)
	01.20.	스위스 로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단일팀 관련 본회의	• 올림픽 한반도 선언(Olympic Korea Peninsula Declaration) 채택 • IOC위원장 관련 내용 성명서 발표, 서명식 실시
2018	06.18.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 남북통일농구경기대회 개최 합의 •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경기대회 남북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합의 • 향후 국제경기대회 공동 진출 및 남북 간 대회참가, 합동훈련 실시 합의
	06.2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8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4자 회의	•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관련 남북 합의사항 전달
	11.02.	개성공동 연락사무소	제1차 남북체육분과회담	• 2020 도쿄하계올림픽대회 공동진출 합의 • 2032 하계올림픽대회 공동유치 합의
	12.14.	개성공동 연락사무소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	• 2020 도쿄하계올림픽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 2032 하계올림픽대회 남북공동유치 관련 남북 공동서한 작성 및 발송 예정
2019	02.15.	스위스 로잔	남북-IOC 고위급 회담	• 2020 하계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합의 종목(4개, 여자 농구, 여자 필드하키, 유도(혼성단체전), 남녀 조정) IOC에 전달 • 2032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개최 의향 발표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2021).

박정희 정부에서는 1972년 9월 서독 뮌헨에서 남북체육교류회담을 위해 양측 대표가 서울과 평양을 상호 방문하기로 합의했으나 냉전 이데올로기가 강화됨에 따라 남북체육교류는 1964년부터 1978년까지 사실상 전무하였다. 그 후 1979년에 들어서 제35회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그 해 2월과 3월에 판문점에서 4차례의 접촉이 이루어졌으나, 한국 참가가 무산되고 협의는 결렬되었다. 1984년 제23회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대회의 단일팀 구성, 1988년의 제24회 서울하계올림픽대회의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이슈는 당시 남북체육회담을 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4년부터 제24회 서울 하계올림픽대회가 있었던 1988년까지 남북체육회담은 모두 일곱 차례 걸쳐 개최되었으나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고 경기대회에서 성과를 내는데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2000년대 들어 주로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의 단일팀 및 공동참가와 같은 안건을 논의하는 회담이 개최되었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렸던 2018년이 가장 많은 회담이 열린 해였다. 2019년에는 남북-IOC 고위급 회담이 2월 15일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는데, 주요 안건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단일팀 합의 내용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및 개최 의향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 국내외 스포츠 대회 및 교류활동이 취소되면서 남북 간 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 2. 대회 중심의 남북체육교류(1990~2000)

1990년대 남북체육교류는 1990년 제11회 베이징하계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해 1989년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체육회담이 주목할 만하다. 결론적으로는 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단일팀 구성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동년 10월에 치러진 남북통일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11월에 치러진 남북체육회담에서는 남북통일 축구대회 정례화가 약속되었다. <표 9-4>는 지난 90년대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요다.

표 9-4.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 개요

구분	평양대회	서울대회
방문기간	1990.10.09.~1990.10.13.	1990.10.21.~1990.10.25.
방문자	76명(선수단 45명, 인솔 11명, 보도 20명) - 인솔 : 체육부장관(정동성)	78명(선수단 45명, 인솔 11명, 보도 22명) - 인솔 : 국가체육위원회위원장(김유순)
경기일/장소	1990.10.11. / 5·1경기장	1990.10.23. / 잠실주경기장
방문경로	서울-베이징-평양-판문점-서울	평양-판문점-서울
경기결과	북한승리(2:1)	남한승리(1:0)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체육백서.

이후 1991년부터 재개된 남북체육회담에서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공동 발표되고, 일본 지바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양 대회에 단일팀 출전이 결정되었다. <표 9-5>는 1991년에 있었던 대표적인 남북단일팀 국제경기대회 참가 현황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탁구선수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형성하여 출전하였다. 특히 세계탁구선수대회 남북단일팀 출전은 영화 「코리아」(2012)의 제작의 바탕이 되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표 9-5. 남북단일팀 국제경기대회 참가 현황

구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일시/장소	1991.04.24.~1991.05.06. / 일본 지바현	1991.06.14.~1991.06.30. / 포르투갈 리스본
호칭	『코리아』, 『KOREA』	좌동
단기	흰색 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	좌동
단가	1920년 우리나라 『아리랑』	좌동
선수선발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선발	서울·평양 공개 평가전을 기초로 단일팀 공동 추진 기구에서 협의·선발
선수단구성	단장(북측) 총 56명(남북 각 28명, 선수 각 11명씩)	단장(남측) 총 62명(남북 각 31명, 선수 각 9명씩)
선수훈련	일본전지훈련(1991.03.26.~1991.04.23.)	남·북 왕래훈련(1991.05.06.~1991.05.21.) - 서울평가전 05.06.~05.09. / 70명(잠실) - 평양평가전 05.10.~05.16. / 70명(5·1) - 서울강화훈련 및 결단식 05.17.~05.21. / 72명 잠실주경기장
선수단경비	남·북 공동부담	좌동
장비조달	단복-북측, 운동복 등-남측	좌동
귀국	1991.05.08.(동경에서 서울·평양으로)	1991.06.28.(북한), 1991.06.29.(남한)
대회결과	여자단체 전우승 및 개인단식준우승(리분희) 남자개인단식 3위(김택수), 혼합단식 3위	8강 진출(예선 1승1무1패) 준준결승전에서 브라질에 패배(5:1)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체육백서.

1990년대의 남북체육교류는 국제관계에서 냉전이 종식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진전을 보인 해이기도 하다. 특히 <표 9-5>의 두 대회의 경우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남북을 왕래하는 훈련이 실시되는 등 남북체육교류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을 듣는다. 그러나 이후 대회 중심의 남북체육교류가 아래의 <표 9-6>과 같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또 다시 침체기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한반도의 경색과 국제관계의 불안정성을 여파로 남북체육교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표 9-6. 남북체육교류 세부 실적(1990~2000)

사업명	개최지	일시	참가자	비고
남북(대표팀)통일축구대회	평양	'90.10.09.~ '90.10.13.	76명(선수단 45명, 인솔 11명, 보도 20명)	남한: 체육부장관 인솔
서울·평양 교환경기 개최	서울	'90.10.21.~ '90.10.25.	78명(선수단 45명, 인솔 11명, 보도 22명)	북한: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인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	오사카	'91.04.24.~ '91.05.06.	56명 (남북 각 28명, 선수 각 1명씩)	한반도기 사용 국가: 아리랑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	리스본	'91.06.14.~ '91.06.30.	62명 (남북 각 31명, 선수 각 9명씩)	한반도기 사용 국가: 아리랑
통일염원남북 노동자축구대회	평양	'99.08.12.~ '99.08.13.	37명(선수단 22명, 인솔 15명) 남북 노동단체	08.12.(남북대결) 08.13.(남북혼합팀 구성)
현대통일농구 교환경기	평양	'99.09.28.~ '99.10.01.	79명(선수단 42명, 현대관계자 31명, TV중계요원 6명)	09.28.(혼합경기) 09.29.(남북대결)
	서울	'99.12.22.~ '99.12.25.	62명(선수단 38명, 교예단 14명, 위성중계 기술자 2명, 아태관계자 8명)	12.23.(혼합경기) 12.24.(남북대결)
금강산자동차 질주경주대회	서울, 평양, 금강산	'00.06.30.~ '00.07.04.	차량 56대(경기차량 23대 포함), 241명	사업대가로 100만 달러 지급
삼성통일탁구경기대회	평양	'00.07.26.~ '00.07.30.	50명(선수단 13명, 인솔 37명)	남북대결 및 남북혼합팀 구성 경기
시드니하계올림픽대회 개막식 공동입장	시드니	'00.09.15.	남북 각 90명씩 180명	한반도기 사용 호칭: KOREA
제81회 부산전국체전 금강산 성화채화	금강산 옥류동 무대바위	'00.10.01.	50명(주관: 부산광역시 - 금강산관광총회사)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체육백서.

정부 주도의 남북체육교류가 침체의 상태에 접어들면서 1990년대 후반에는 민간이 주도 하는 남북체육교류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특히, 1999년 8월 노동단체가 주관한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현대기업 정주영 명예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동년 9월과 12월에는 통일농구 교환경기 등 민간 기업을 통한 체육 교류의 장이 열렸다. 이는 현대가 북한과 합작 사업으로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설하여 기부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후, 실내체육관 기공식을 전후로 남북농구경기대회를 진행한 것이었다. 2000년 6월에는 우인방 커뮤니케이션이 2000년 7월 3일과 4일 양일간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지역에서 금강산자동차질주경기대회를 치렀으며, 삼성전자는 2000년 7월 말 평양체육관에 전광판을 기증하고 이를 기념하는 남북탁구경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3. 남북단일팀 중심의 체육교류(2001~2010)

2000년대에 들어서도 남북체육교류는 단일팀 구성 협의를 중심으로 지속되었다. 특히 상징적인 것은 2000년 9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하계올림픽대회에서 6·15 공동선언 정신을 실현하고자 남북팀의 개최식 동시 입장이 성사되었다는 점이다. 개최식에서 남북팀의 대표 180명은 단일 국기와 국가, 복장으로 개·폐회식에 참가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부터의 남북체육교류는 <표 9-7>과 같이 단일팀 중심의 대회 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표 9-7. 남북체육교류 세부 실적(2001~2010)

사업명	개최지	일시	참가자	비고
태권도시범단 교환	평양	'02.09.14.~ '02.09.17.	65명 (남측 35명, 북측 30명)	7차 남북장관급회의 실무회의 합의에 근거 황봉영 조선태권도 위원회의 초청
	서울	'02.10.14.	62명 (남측 41명, 북측 21명)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	'02.09.05.~ '02.09.08.	리광근 등 49명	
부산하계아시아경기대회	부산	'02.09.22.~ '02.10.15.	박명철 등 668명	
	부산	'02.10.08.~ '02.10.15.	장웅 등 7명	
아오모리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공동입장	일본 아오모리	'03.02.01.~ '03.02.08.	남한선수단 110명 북한선수단 40명	단기: 한반도기 북한 2월 30일 밤 전격제안, 남한 수용으로 성사
제22회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구	'03.08.20.~ '03.09.01.	전극만 등 524명 선수단 197명 응원단 327명	
남북태권도교류 협의 및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참관	대구	'03.08.17.~ '03.08.21.	장웅 등 3명	
정주영체육관 개관식 및 통일농구대회	평양	'03.10.06.~ '03.10.07.	김윤규 등 800여 명	경의선 임시도로로 육로 방북 SBS 평양에서 통일 농구대회 중계
제주민족평화축전	제주	'03.10.23.~ '03.10.28.	김영대 등 190명	행사직전 취주단, 예술단 불참 통보로 물의 야기
아테네하계올림픽대회 공동입장	그리스 아테네	'04.08.14.~ '04.08.09.	남한선수단 136명 북한선수단 50명	단기: 아리랑 단기: 한반도기

사업명		개최지	일시	참가자	비고
제2회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대구, 전주, 대전	'05.07.31.~ '05.08.07.	북한선수단 65명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	'05.08.14.~ '05.08.16.	남·여 선수단	
제4회 마카오동아시아경기대회 공동입장		마카오	'05.10.29.~ '05.11.06.	남북선수단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강원도겨울철 체육경기대회		춘천	'06.03.02.~ '06.03.05.	선수단 36명 (단장 정덕기 북측 민화협 부회장)	남북선수단 합동훈련 남측대학 선발팀과 북측 선발팀 혼성경기 남북 시범경기
도하하계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공동입장		카타르 도하	'06.12.01.~ '06.12.15	남북선수단	공동기수는 이규섭선수(남측)와 리금숙선수(북측)
남북유소년 축구선수단 상호교류	북한 청소년팀 방한	제주, 수원, 순천, 광양, 서울	'07.03.20.~ '07.04.20	북한선수단 23명	15~17세, 전지훈련
		강진	'07.06.01.~ '07.06.14	북한선수단 34명	15세 이하 친선 경기
	남한 청소년팀 방북	평양	'07.06.23.~ '07.07.03	남한선수단 26명	
			'07.11.03.~ '07.11.14	남한선수단 22명	
북한태권도 시범단 방남		서울, 춘천	'07.04.06.~ '07.04.09	북한시범단 48명	단장: 장웅 IOC 위원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		창원	'07.04.30	-	5·1절노동자통일대회 행사 북 대표단 60명 방한
2007 청소년(U-17) 월드컵축구대회		서울 등 8개 도시	'07.08.18.~ '07.09.09	북한선수단 31명	16강 진출 2회 연속 8강 진출 실패
제2회 국제청소년친선축구대회		전남 강진	'07.10.13.~ '07.10.25	북한선수단 22명	한국, 북한, 프랑스 등 7개국 참가 한국 중등축구연맹 주최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준공식		평양	'07.11.09	남한대표단 145명	축구장 시설 현대화 사업
제3회 동아시아축구대회		중국 충칭	'08.02.20	-	경기결과 1:1
2008 아시아시니어레슬링 선수권대회		제주도	'08.03.16.~ '08.03.24	북한선수단 15명	
200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제주도	'08.04.26.~ '08.04.27	북한선수단 17명	남자 60kg이하 3위, 여자 48kg 이하 2위, 여자 52kg이하 1위, 여자 57kg 이하 3위, 여자 63kg이하 3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 3차 예선전		중국 상하이	'08.03.26	남북 축구대표팀	경기결과 0:0
		서울	'08.06.22	남북 축구대표팀	경기결과 0:0

사업명	개최지	일시	참가자	비고
2008 남북태권도교류행사	평양	'08.06.28.~ '08.07.01	(사)ITF태권도협회 남측대표단 60명	북한의 시범공연 남한사범의 북한선수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
남북체육교류협회 유소년축구단 교류	평양	'08.06.14.~ '08.06.26	유소년축구선수단 30명	4차례 친선 경기
		'08.10.08.~ '08.10.15	경수유소년축구단, 임원 등 50여 명	친선경기 및 합동훈련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 최종 예선전	중국 상하이	'08.09.10	남북축구대표팀	경기결과 1:1
2008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코리아응원단	중국 베이징	'08.08.10.~ '08.08.14	응원단 400여 명	남북한 팀 경기 응원
남북체육교류협회	평양	'09.02.25.~ '09.02.28	同 협회 관계자 17명	「김경성 체육인초대소」 준공식 참석 및 체육교류 협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 남북 예선전	서울	'09.03.29.~ '09.04.02	북한선수단 43명	경기결과 1:0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체육백서.

표에 나타난 여러 남북체육교류 대회 및 관련 사업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2002년에는 12년 만에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남북통일축구경기가 개최되었고, 2005년 9월에는 중국 광저우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 김정길 회장과 조선올림픽위원회 문재덕 위원장 간의 회동이 시발점이 되어 2008년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남북단일팀 구성 노력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이후 2005년 11월 초 마카오 동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개최된 남북체육회담 실무대표단 회의에 남북 양측 6명이 참가했고, 남북체육실무자 회담을 12월 7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12월 7일 남북체육실무자회담이 개성에서 이루어졌으나 남북은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2005년 12월에 실시된 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7년 2월까지 4차 회담을 이어간 결과 2008년 제29회 베이징하계 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북측의 요구조건 수용이 어려워지면서 2008년 제29회 베이징하계 올림픽대회 단일팀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IOC는 2006년 12월 24일자 공문에서 개인종목의 경우는 남북올림픽위원회가 각각 개별적으로 참가 자격대회에 참가한 후, IOC가 해당 종목의 국제연맹과 최종 참가자격 및 인원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였다. 한편, 단체종목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예선대회에 참가한 후 IOC가 해당 국제연맹과 종목별로 단일팀에 적용할 참가인원에 대해서 특별 규정을 두어 인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은 선수선발 문제 이외 단일팀 명칭, 단가, 단기,

임원 구성, 공동기구 조직 등에서 다소간 의견 차이를 보여 최종적으로 협의가 결렬되었다.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의 일정으로 개최된 '2007 남북정상회담'의 전문에 따르면 남북은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2008년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에 남북응원단이 참가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2007년 12월에 제1차 실무접촉이 개최되어 응원단 규모, 응원단 이용 열차, 운행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8년 2월 4일 개최된 제2차 실무접촉에서는 남북 각각 150명씩 300명의 응원단 규모와 응원단의 개·폐막식 참가 등에 대해 합의하였고, 「2008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2008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서 결국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단 파견은 물론이고 2000년 이후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까지 계속된 남북 동시 입장 성과도 멈추게 되었다. 2008년 8월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6차 국가올림픽 위원회연합회(ANOC) 총회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북한올림픽위원회가 참석하였으나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남북단일팀 및 공동응원단 구성을 위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 4. 최근 남북체육교류 현황(2011~)

2010년대로 들어와서도 남북체육교류는 지속되었다. <표 9-8>에서 볼 수 있듯, 최근까지 남북체육교류는 종목별, 정부 및 민간 주도에 의해, 단일종목 혹은 종합대회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표 9-8. 남북체육교류 세부 실적(2011~2021)

사업명	개최지	일시	참가자	비고
피스앤스포츠큐	카타르 도하	'11.11.21.~ '11.11.22.	남한 선수 2명 북한 선수 2명	남자 복식(남북단일팀) 우승 여자 복식(남북단일팀) 준우승
2013 동아시아연맹축구선수권대회 (동아시아안컵)	서울 화성	'13.07.20.~ '13.07.28.	북한여자축구선수단 26명	북한 1위 대한민국 3위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UNOSDP YLP	광주	'13.08.22.~ '13.09.03.	북한청소년대표단 4명	
2013 아시아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	평양	'13.09.12.~ '13.09.17.	남한선수단 41명 방북	대한민국 3위 (금6, 은8, 동10)
2014 인천하계아시아경기대회	인천	'14.09.19.~ '14.10.04.	북한선수단 273명 방한	대한민국 2위 북한 7위

사업명	개최지	일시	참가자	비고
2014 인천하계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인천	'14.10.18.~ '14.10.24.	북한선수단 33명 방한	북한 29위
2014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	연천	'14.11.07.~ '14.11.09.	유소년축구단 32명 방한	북한 1위
남북노동자축구대회	평양	'15.10.28.~ '15.10.31.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표단 162명 방북	경기결과 남 0 : 북 6
세계여자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강릉	'17.04.01.~ '17.04.09.	북한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 30명	경기결과 남 3 : 북 0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무주	'17.06.23.~ '17.07.01.	장용, 리용선 등 32명	ITF 태권도 시범
남북스키선수공동훈련	마식령	'18.01.31.	한국선수단 45명 (알파인스키 선수 12명, 크로스컨트리 선수 12명, 임원 7명)	
남북평화협력기원공연	평양 평양대극장	'18.04.01.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20명	
2018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스웨덴 할름스타드	'18.04.29.~ '18.05.06.	북한선수단 11명 (임원 2, 선수 9)	여자단체전 8강 남북 대진상황에서 국제연맹의 단일팀 구성 제안, 동메달 획득
2018 대전코리아오픈국제탁구대회	대전	'18.07.15.~ '18.07.22.	북한선수단 총 25명 (임원 9, 선수 16)	금메달(1): 혼합복식(남: 장우진/ 북: 차효심), 동메달(1): 남자복식 (남: 이상수/북: 박신혁)
남북통일농구경기대회 참가(파견)	평양 류경정주영 체육관	'18.07.04.~ '18.07.05.	남녀 농구선수단 50명	혼합경기 개최(1일차, 평화: 번영), 친선경기개최(2일차, 청팀: 흥팀)
2018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아제르바이 잔 바쿠	'18.09.17.~ '18.09.28.	북한선수단 22명 (임원 4, 선수 18)	혼성단체전 동메달 획득
2018 ITTF월드투어스웨덴오픈대회	스웨덴 스톡홀름	'18.10.29.~ '18.11.04.	남녀복식 각 2팀, 총 4팀 참가	- 남자복식(남/북): 장우진/함유성(8강), 임종훈/안지성(16강) - 여자복식(남/북): 서효원/김송이(8강), 최효주/차효심(16강)
2018 ITTF월드투어 오스트리아 오픈 대회	오스트리아 린츠	'18.11.06.~ '18.11.01.	남녀 혼합복식 단일팀구성(남: 장우진, 북: 차효심)	
2018 ITTF 그랜드파이널스탁구대회	인천	'18.12.12.~ '18.12.16.	북한선수단 5명 (임원 4, 선수1), 남녀 혼합복식 단일팀 구성 (남: 장우진, 북: 차효심)	남녀혼합복식 단일팀 은메달 획득
2019 남자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	독일 베를린, 덴마크 코펜하겐	'19.01.10.~ '19.01.20.	남북단일팀 참가 (선수단: 총20명, 남측16, 북측4)	순위결정전(21~24위) 1경기에서 일본에 역전승 (27-25), 최종순위 22위

사업명	개최지	일시	참가자	비고
남북 태권도 IOC 합동공연	오스트리아, 스위스, 유엔제네바 본부	'19. 4. 5.~ '19.4.12.	세계태권도연맹(WT, 남측) 국제태권도연맹(ITF, 북측)	남북태권도 친선 교류
2019 아시아 주니어 카뎃 탁구선수권대회 (동아시아 지역 예선전)	평양	'19.05.18.~ '19.05.19.	남한선수단 14명 방북	남한대표팀 2승 1패 (총점5점,1위)로 본선 진출권 획득
2019 아시아유소년 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평양	'19.10.20.~ '19.10.27.	남한 유소년, 주니어 선수 38명 참가	금 14, 은 20, 동 19

※ 출처: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21).

연도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2011년의 경우 국제탁구연맹과 국제체육평화교류 비정부기구인 평화스포츠기구가 공동 주관한 제1회 피스앤스포츠컵(Peace and Sports Cup) 대회에서 남북선수들은 단일팀을 구성하였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이 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은 남자 복식에서 우승을, 여자 복식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2012년에는 인천광역시의 노력으로 중국 쿤밍에서 '인천평화컵 유소년 14세 이하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 남측은 인천 광성중학교 축구팀, 북측은 425축구단 유소년팀, 중국 대표로는 운남성 선발팀, 일본 대표는 요코하마 마리노스 유소년팀이 참가했는데, 북한팀이 현장에서 수교를 맺지 않은 일본과 경기를 치를 수 없다며 경기불참을 선언, 남북청소년 간 교류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3년 7월에는 서울과 화성에서 '2013 동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남녀 각각 4개국씩 참가하였는데 남자부는 한국, 호주, 중국, 일본, 여자부는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이 참가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가진 후 최종 승점만으로 우승팀을 가렸는데, 이 대회에 북한여자축구선수단 26명이 방한하면서 북한이 1위, 우리나라가 3위를 기록하였다.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열린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에는 남한선수단 등 41명이 방북하여 참가하였는데, 이 대회는 남북 분단 이후 북한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된 첫 경기로 기록되었다.

2014년에는 인천에서 '2014 인천하계아시아경기대회'가 열렸다. 북한의 참가로 아시아 올림픽평의회 45개 회원국이 모두 출전한 대회로 기록되었다. 북한선수단은 273명이 14개 종목에 참가하여 종합 7위를 하였는데, 이렇게 북한선수단의 쾌거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비서, 김양건 대남 담당비서 등 북한 고위급 3인이

참석하였고, 남북관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또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2014 인천하계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4개 종목 33명의 북한선수단이 참가하였는데, 이는 하계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역사상 북한선수단의 최초 출전이었으며, 동메달 2개로 총 32개국 중 29위를 차지하였다. 11월에는 연천에서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가 열렸고, 이 대회에 북한 유소년축구단 32명이 참석하였다. 북한의 425 체육단 소속 유소년 축구팀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축구대회에 참석하고자 통일부의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체류하기도 하였다.

2015년에는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북한이 미리 참여의사를 밝혀 대회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북측의 불참 통보로 남북체육교류는 무산되었다. 특히,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은 2015년 3월 3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을 통해 8개 종목(선수 75명, 임원 33명)의 선수단 참가를 신청하고 대표단장 사전회의에 참석하는 등 대회참가를 기정사실화하였으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를 이유로 대회에 최종 불참하였다. 9월에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동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9월 평양을 방문하여 광복 70년 기념 남녀 남북축구대표팀 친선경기 등 남북 간 축구교류를 협의하였으나, 북한의 미온적 태도로 대회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광복 70년 기념사업으로 남북 씨름대회, 태권도시범단 상호방문 등도 추진되었으나, 북한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년의 남북체육교류 실적은 10월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노동자축구대회만 유일하게 남게 되었다.

2017년 4월, 강릉에서 개최된 세계여자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에서는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 30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같은 해 6월 전북 무주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에는 북한 선수가 포함된 국제태권도연맹(ITF) 시범단이 참가하여 시범 공연을 펼치기도 하였다.

2018년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남북대표단 회담을 시작으로 활발한 남북체육교류가 이루어졌다. 2018년 1월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에 북한대표단 참가를 논의하였다. 통일부는 2월 14일 제2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를 개최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북한 대표단의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지원의 총 28억 6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결성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남23명, 북12명)으로 대회에 출전하였을 뿐 아니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개폐회식 간 한반도기 아래 공동단복을 착용한 남북 공동입장도 진행되었다. 이어 6월 제1차 남북체육회담을 갖고 남북 통일농구 경기 개최,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경기대회 남북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향후 국제 경기대회 공동진출, 남북 간 대회참가 및 합동훈련까지 합의하였다. 8월부터 9월까지 개최된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경기대회에서 개폐회식에 남북 공동입장하여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조성을 전 세계에 알렸고, 여자농구, 조정(남녀)과 카누(남녀) 단일팀 준비를 위해 인천 및 충주 일원에서 합동훈련을 하고 종합순위 28위(금1, 은1, 동2)를 달성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남북체육분과회담이 처음으로 성사된 해이기도 했다. 제1차 남북체육분과회담(2018년 11월)에서는 2020 도쿄하계올림픽대회 공동진출 및 2032 하계올림픽대회 공동유치를 이야기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열린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에서는 2020 도쿄하계올림픽대회 남북단일팀 구성과 2032 하계 올림픽대회 남북공동유치 관련 남북 공동서한 작성, 그리고 2019년 2월에 IOC와 함께 체육 관계자 회의를 진행함을 확정 짓기도 하였다.

2019년에는 독일에서 열린 남자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남측 16명, 북측 4명)이 참가하여 최종순위 22위를 기록하였고, 4월에는 스위스의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남북 태권도 IOC 합동공연이 친선교류 차원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또한 5월에는 평양에서 '2019 아시아 주니어 카펫 탁구선수권대회' 동아시아 지역 예선전이 열렸고, 우리나라 선수단 14명이 방북을 하여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였다. 10월에도 평양에서 '2019 아시아 유소년 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가 열리면서 우리나라 선수 38명이 참가하였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대회 개최 및 참가여건이 크게 제한되면서 남북 간 체육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5. 태권도를 통한 남북체육교류

남북 태권도 교류는 1980년대 초반 올림픽 경기 종목과 관련한 국제기구 교류로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된 남북 태권도 교류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WT, 전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2017년 6월 공식명칭 변경)과 북한 및 동구권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간 교류로 시작하였다. 최홍희 총재로 대표되는 국제태권도연맹은 국제태권도연맹의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는 문제와 세계태권도연맹의 태권도와의 통합 문제를 IOC와 WTF에 각각 제기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 남북 태권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중에 태권도 통합 문제가 제기되어, 이후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국내단체 교류와 국제기구 통합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2001년 8월 김운용 대한체육회장 겸 WTF 총재가 같은 해 11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최홍희 ITF 총재를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계기로, 남북 태권도 경기 통합과 남북태권도 시범단 교류 주체가 국제기구와 정부산하 국내단체로 구분되는 점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표 9-9>에는 남북 태권도 교류와 관련한 주요 실적이 정리되었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태권도 교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표 9-9. 남북 태권도 교류 주요 연혁

일정	내용
2000.08.	제1회 중국 연변의 국제태권도문화축제에서 충청대학 시범단과 조태위 소속 북한 태권도 시범단 교류 (중국 연변에서 성사)
2001.10.24.~ 2001.10.25.	북측 태권도시범단의 서울 공연,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선수 21명, 임원 20명 총 41명, 고려 향 공연, 숙소: 워커히
2002.09.14.~ 2002.09.17.	남측 태권도시범단의 평양 공연(태권도전당) 시범단 35명과 임원 모두 50명, 전세기 이용, 숙소: 고려호텔
2003.10.23.~ 2003.10.27.	제주도 평화체육문화축제의 북측 태권도 시범단 공연(25명, 한라체육관). 당시 북한은 총 184명의 참가단(단장 김영대)을 보냄
2007.04.06.	4월 6일 북측 태권도 시범단 남한 방문, 남한 내 ITF 태권도협회의 사단법인 등록 마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춘천 및 서울에서 시범보임. 시범단 및 임원 총 49명, 전세기편으로 입국, 숙소: 워커히
2014.07.28.~ 2014.08.05.	남북 태권도 시범단이 러시아팀과 함께 사할린주 '태권도축제; 고려인 이주 150주년·사할린 한인 해방 69년' 행사 참가, 남한 태권도외교재단시범단과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각각 16명씩 공연
2015.05.09.~ 2015.05.18.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린 WTF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식에서 북한 15명(남자12명, 여자3명), 체코 2명, 러시아 2명 등 19명으로 구성된 ITF 시범단이 WTF 주관 대회 사상 처음으로 시범공연을 펼침
2017.06.25.~ 2017.07.02.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북측 ITF 태권도 시범단 리용선 ITF 총재를 비롯한 단원 36명 무주에서 시범 공연
2018.04.01.	남북평화협력기원(평양 평양대극장) 남북 태권도 시범단 합동공연
2018.09.19.	세계태권도연맹 임원 및 시범단 방북
2019.04.05	태권도올림픽종목 채택 25주년 기념 WTF-ITF 유럽 합동시범공연

※ 출처: 한국스포츠개발원 남북태권도교류 방안 연구(2015), 세계태권도연맹 웹사이트(2019), 통일부 웹사이트(2019).

2002년 8월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태권도시범단의 교환 방문에 합의하였다. 2002년 9월 14~17일 남측 태권도시범단의 평양 공연과 10월 24~25일 북측 태권도시범단의 서울 공연이 각각 진행되었는데, 북한은 2000년대 후반에도 남한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태권도시범단을 파견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7년 4월 7일 강원도 춘천에서의 시범 공연이었다. 이 시범 공연에는 장용 IOC 위원, ITF 총재를 비롯한 황봉영 조선태권도 위원회 위원장 등 태권도시범단과 관계자 48명이 동행하였다. 사상 처음으로 남측의 WTF 본부를 방문한 것이었다.

2014년 7월 30일부터 남북 태권도시범단은 러시아팀과 함께 사할린 주에서 진행된 ‘태권도 축제’에도 참가하였다. 고려인 이주 150주년·사할린 한인 해방 69년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행사에 남한의 태권도외교재단시범단과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이 각각 공연을 하였다. 2010년대에도 IOC의 적극적인 중재 아래 WT와 ITF가 양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에 상호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향적인 결과들을 도출한 바 있다.

2017년 6월 24일 2017 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 공연을 시작으로 26일 전북도청과 28일 국기원에서 북한 태권도 시범을 선보였고, 뒤이어 2017년 7월 30일 세계 선수권대회 폐회식에서도 시범단의 공연 무대를 가졌다. 2018년 4월, 평양 소재 평양대극장에 열린 남북평화협력기원 행사에서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20명이 북측 국제태권도연맹과 합동공연을 하였다. 북한은 9월에 세계태권도연맹 임원(50명)과 시범단(22명) 등 72명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평양으로 초대하였고, 세계태권도연맹 대표단은 방북하여 평양 태권도전당에서 단독공연을 하고 북측 국제태권도연맹과 합동공연을 하였다. 이와 같은 합동공연은 2019년에도 이루어졌는데,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채택 25주년을 기념하면서 WTF와 ITF가 함께 유럽에서 시범공연을 펼친 것이 가장 최근의 남북 태권도 교류 활동이다.

2021 체육백서

2021 Sport White Paper



# 스포츠윤리

제1절 스포츠윤리 개관

제2절 스포츠윤리 현황

제3절 스포츠윤리 강화

## 제1절 스포츠윤리 개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스포츠는 ‘스포츠강국’을 지향해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우리는 스포츠로 국위선양과 국민통합, 북한에 대한 체제 우월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다.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대회,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까지 유치하면서 ‘4대 주요 국제대회’를 개최한 여섯 번째 국가(독일,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도 되었다. 명실공히 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은 스포츠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스포츠 발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및 편파 판정, 선배나 지도자에 의한 선수(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처럼, 스포츠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성’ 훼손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전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 증언은 스포츠강국의 화려함 이면에 감춰져 왔던 우리의 어두운 자화상을 들춰내기도 하였다. 한 마디로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그 성장한 외면에 어울릴 내면의 모습을 갖추지 못 했던 형국이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스포츠강국이 된 것은 분명 했지만, ‘스포츠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체계를 마련하지 못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정성 확보를 중심에 둔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스포츠계에 잔재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강하게 대두되었다. 그 필요성에 응답하고자 정부는 ‘스포츠 공정문화 확산’을 방향으로 삼으며 대대적인 구조적 개혁에 착수하였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설치, 대한체육회 내 클린스포츠센터 및 스포츠인권센터 설치, 국민체육진흥공단 내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조직은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만연한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선수 및 지도자의(성)폭력, 입학 비리, 체육 조직 사유화를 ‘스포츠 4대 악’으로 규정,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와 조사, 고충처리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스포츠분야 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권고 등을 통해 스포츠 인권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폭력에 의해 사망한 古 최속현 사건 등을 계기로 스포츠계 폭력 근절 및 선수 인권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되었고, 제18조3에 따라 2020년 8월 5일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체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법인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 및 스포츠인권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기능을 통합해 스포츠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와 비리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인권침해·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스포츠윤리’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스포츠비위 행위 문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취하였던 다양한 제도적 노력의 방향과 방안을 정리하였다.

## 제2절 스포츠윤리 현황

## 1. 스포츠계 비윤리적 문제 신고 현황

사회 전 영역에서처럼, 우리나라 체육계에도 다양한 비윤리적 문제가 상존한다. 이 문제는 선수와 지도자와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국가적 스포츠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형태로 존재한다. 선수들은 (성)폭력, 체벌, 욕설, 일탈 등에 노출되어 있고, 심판판정 불복 및 경기 중 심판 폭행, 승부조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한다. 입시비리 및 스카우트 관행과 체육단체의 조직사유화 역시 우리나라 스포츠계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다.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 훼손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체육단체의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 2015년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사유화’를 스포츠 분야 4대 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개선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제도적 노력이 스포츠비리와 관련한 신고를 처리하는 조직인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설립이었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였다.

2020년 8월 5일에는 스포츠 비윤리 행위를 방지하고 인권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통합 전담 기구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면서 체육인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다. 아래의 <표 10-1>은 2020~2021년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 접수 현황이다.

표 10-1.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 접수 현황(2020~2021)

(단위: 건)

연도	폭력			성희롱/성폭력			기타 인권침해			기타 민원			합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2020	22	38	60	4	14	18	10	30	40	4	159	163	40	241	281
2021	68	171	239	23	50	73	59	149	208	6	36	42	156	406	562

※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내부자료(2021)

※ 단순문의와 분류불가: 2021년도 230건, 2020년도 7건

※ 지속상담: 2021년도 1,027건, 2020년도 298건(누적 1,325건)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 관련 신고 및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폭력, 성희롱/성폭력, 기타 인권침해, 비리 등 기타 민원으로 구분된다. 2021년 가장 신고·상담 접수가 많았던 항목은 ‘폭력’이었으며, 신고는 68건, 상담은 171건으로 총 239건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접수는 총 73건(신고 23건, 상담 50건)이었으며 기타 인권침해 관련 접수는 총 208건(신고 59건, 상담 149건), 그리고 기타 민원은 42건(신고 6건, 상담 36건)으로 나타났다.

표 10-2. 스포츠윤리센터 비리 관련 신고현황(2020~2021)

(단위: 건)

연도	조직사유화			횡령, 배임			승부조작			입시비리			기타비리			합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2020	14	2	16	14	5	19	3	4	7	1	2	3	29	35	64	61	48	109
2021	9	10	19	19	34	53	7	13	20	-	6	6	180	330	510	215	393	608

※ 출처 : 스포츠윤리센터 내부자료(2021)

한편, 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비리 관련 신고현황은 횡령 및 배임 53건(신고 19건, 상담 34건), 승부조작 20건(신고 7건, 상담 13건), 조직사유화 19건(신고 9건, 상담 10건), 입시비리 6건(신고 0건, 상담 6건) 순으로 높았으며, 기타비리도 510건(신고 180건, 상담 330건)에 달하였다.

## 2. 스포츠계 비윤리적 문제 처리 현황

현재 스포츠계 비윤리적 문제는 다음의 <그림 10-1>의 절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고, 그렇게 신고 접수된 문제는 자체적인 조사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 다음의 <표 10-3>은 2020~2021년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접수 처리 현황이다.

표 10-3.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접수 처리 현황(2020~2021)

(단위: 건)

연도	징계요청	수사의뢰	감사의뢰	기관경고	기각	각하	권고	합계
2020	3	1	-	-	2	11	-	17
2021	47	9	1	2	14	151	5	229

※ 출처 : 스포츠윤리센터 내부자료(2021)

2021년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총 229건의 사건을 수행하였다.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접수 처리 절차에 따라 징계요청은 47건, 수사의뢰는 9건, 감사의뢰 1건, 기관경고 2건, 기각은 14건이었다. 각하는 151건으로 '조사 중 해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센터의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조사규정에 따른 사유로 각하되었으며 권고 조치는 5건이었다.



그림 10-1. 스포츠윤리센터 상담·신고 처리절차

스포츠윤리센터 브로슈어(2021)

스포츠윤리센터 상담·신고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상황 발생 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고사건으로 전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사안의

특성과 경중에 따라 관련 단체에 대한 징계요구, 수사기관 고발, 제도개선 권고, 피해자 구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조치 현황과 정보 제공, 결정 이행사항 점검, 결정 불이행에 대한 대처, 피해자 지원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호된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징계에 대한 제반사항 지원(규정해석, 재심의, 법률지원 등)을 통해 각 체육단체별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전문성 확립을 확립 지원하고 있다. 2020년 69건의 심의 중 기각 32건, 인용 19건(가중 7건, 감경 12건), 보류 등 18건을 처리하였고, 징계 재심의를 총 14회 진행하였다.

### 3. 스포츠계 인권 실태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2021년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수 및 프로·실업팀 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선수 인권침해 경험을 직접 경험과 목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10-4>과 같다.

표 10-4. 학생선수 및 프로·실업팀 선수 인권침해 경험률 및 목격률 (단위: 명, %)

구분	성별	응답자수	경험한 적 있음	목격한 적 있음	경험/목격 없음
초등 학생선수	남	2,841	5.9	8.0	86.2
	여	1,905	5.8	7.9	86.3
	계	4,746	5.8	8.0	86.2
중·고등 학생선수	남	9,469	5.7	9.0	85.4
	여	3,736	7.5	8.4	84.1
	계	13,205	6.2	8.8	85.0
프로·실업팀 선수	남	4,858	22.0	28.4	49.6
	여	2,189	22.8	26.2	51.1
	계	7,047	22.2	27.7	50.1

※ 주: 초등 학생선수 4,746명, 중·고등 학생선수 13,205명, 프로·실업팀 선수 7,047명 대상.

※ 출처: 스포츠윤리센터(2022). 2021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 학생선수의 경우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이 5.8%, 목격했다는 응답이 8.0%로 조사되었다. 중·고등 학생선수는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6.2%, 목격했다는 응답이 8.8%로 나타나 초등 학생선수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학년별로 구분하였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 집단에서는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이 13.9%, 목격한 적 있다는 응답이 11.2%로 조사되어 조사 시점 진학 및 진로가 결정된 고등학교 3학년 집단에서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한편, 프로·실업팀 선수는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이 22.2%, 목격한 적 있다는 응답이 27.7%로 초·중·고 학생선수 대비 경험 및 목격률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실업팀과 프로팀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실업팀(경험률 21.1%, 목격률 26.6%)에 비해 프로팀(경험률 27.5%, 목격률 32.7%)에서 경험률과 목격률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인권침해 경험 및 목격 비율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본 것은 아래의 <표 10-5>와 같다.

표 10-5. 학생선수 및 프로·실업팀 선수 인권침해 세부항목별 경험률 및 목격률 (단위: %)

구분	경험 유형	언어 폭력	신체 폭력	공정하지 않은 감독/코치의 행동	사생활 침해	따돌림	성적폭력/ 성적수치심
초등학생 선수	경험	3.8	3.2	2.1	1.9	1.5	0.9
	목격	5.8	2.9	2.9	2.5	3.6	2.1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경험	3.9	3.6	2.2	1.6	1.4	1.2
	목격	5.9	4.3	4.3	3.1	3.7	3.1

구분	경험 유형	불공정한 경험	신체 폭력	언어 폭력	조직 사유화 관련	사생활 침해	물질적 요구 등	따돌림	성적폭력/ 수치심	임신/출산/ 생리 관련	육아/ 가족돌봄 관련
프로·실업팀 선수	경험	11.3	10.6	9.8	6.2	5.2	4.4	4.1	3.4	3.3	1.4
	목격	21.6	15.9	21.2	19.7	14.6	15.0	17.6	12.9	9.5	8.3

※ 주: 초등 학생선수 4,746명, 중·고등 학생선수 13,205명, 프로·실업팀 선수 7,047명 대상  
 ※ 출처: 스포츠윤리센터(2022). 2021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이번 조사에서 ‘인권침해’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는 언어폭력, 신체 폭력, 공정하지 않은 코치/감독의 행동, 사생활 침해, 따돌림, 성적폭력/수치심의 6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프로·실업팀 선수를 대상으로는 선수생활 중 불공정한 경험, 신체 폭력, 언어폭력, 조직사유화 관련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물질적 요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따돌림, 성적폭력/성적수치심, 임신/출산/생리 관련 인권침해, 육아/가족돌봄 관련 인권침해의 10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초등 학생선수부터 살펴보면, 위 표에서와 같이 경험이 있어 '언어폭력'(3.8%)이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신체 폭력'(3.2%), '공정하지 않은 감독/코치의 행동'(2.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중·고등 학생선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있어 '언어 폭력'(3.9%)과 '신체폭력'(3.6%)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는 '공정하지 않은 감독/코치의 행동'(2.2%), '사생활 침해'(1.6%)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중·고등 학생선수는 초등 학생선수 대비 신체폭력이나 사생활 침해, 성적 폭력/성적 수치심 항목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프로·실업팀 선수의 응답을 살펴보면, '선수생활 중 불공정한 경험'(11.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신체폭력'(10.6%) 및 '언어폭력'(9.8%)이 언급되었다. 학생 선수에 비해 프로·실업팀에서는 경험하였다고 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운동 경력이 길어짐과 동시에 과거 운동한 지도자 및 선배 선수들과의 접촉이 많은 데에서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9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인권침해를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희롱, 성폭력의 4가지로 구분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10-6>과 같다.

표 10-6. 국가인권위원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실태조사

(단위: 명(%))

급별	응답자수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희롱	성폭력	합계
남성 선수	635	194(30.6)	180(28.3)	81(12.8)	15(2.4)	470(74.0)
여성 선수	616	230(37.3)	146(23.7)	228(37.0)	37(6.0)	641(104.0)
합계	1,251	424(33.9)	326(26.1)	309(24.7)	52(4.2)	1,111(34.2)

※ 주: 전체 6,744명 중 1,251명 조사(중복응답)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9). 실업팀 선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인권보호 방안 마련

2019년 직장운동경기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 6,744명 중 1,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실업팀의 86.4%가 합숙소 생활을 경험하였고, 언어폭력 피해 경험이 33.9%, 체벌 경험이 8.5%, 계획에 없는 과도한 훈련 경험이 7.1%,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 5.3% 등 신체폭력 피해 경험이 26.1%, 성폭력 목격 경험은 56.3%(704명)으로 조사되었다. 예방책으로는 스포츠인권 캠페인과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선수의 의견이 많았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실태 조사에 이어 <표 10-7>과 같이 2020년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실태 및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0-7.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충

(단위: 명, %)

급별	낮은 임금 및 불안정한 신분	선수 확보 및 진학	요구사항과 평가사항 불일치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기타
빈도(명)	260	119	70	25	44
비율(%)	50.2	23.0	13.5	4.8	8.5

※ 주: 전체 14,741명 중 6,000명 조사 → 518명 참여(중복응답)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20).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실태와 인권옹호자의 역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실태 중 고용환경에서는 87.3%가 공개채용으로 선발되었으며 기간제 계약직이 70.7%로 가장 많았다(정규직은 20.7%). 계약기간은 73.4%가 1년으로 직업 안전성이 낮았고, 평균임금은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가 54.1%, '3,0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이 20.1%, 2,000만원 미만이 11.8% 순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은 91.5%가 가입되어 있었고, 49.2%가 별도의 수당 없이 주말훈련 및 야간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50.6%가 교장이나 교감 등에 의해 직업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언행과 강압 등 갑질 피해를 호소하였다. 한편, 학교운동부 지도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으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이라 응답한 지도자가 50.2%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선수 확보 및 진학 문제, 경기 실적 요구와 평가의 불일치,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학부모의 간섭과 억압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10-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단위: 명(%))

급별	응답자수	폭력	성희롱·성폭력 경험	운동부 내 성희롱·성폭력 경험	합계
남성 선수	1,180	264(22.4)	92(7.8)	12(1.0)	368(31.2)
여성 선수	374	81(21.7)	51(13.6)	13(3.5)	145(38.8)
합계	1,554	345(22.2)	143(9.2)	25(1.6)	513(33.0)

※ 주: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장애인 체육선수 13,564명 중 1,554명 조사(중복응답)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9). 실업팀 선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인권보호 방안 마련.

한편, <표 10-8>과 같이 장애인 체육선수 중 언어폭력을 포함한 기합, 얼차려, 폭행 등 폭력 관련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1,554명 중 22.2%인 345명이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면서 경증인 경우 폭력 피해자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고,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폭력 가해자는 감독과 코치가 49.6%로 가장 많았고 선배

선수 31.6%, 동료 및 후배 선수 22.0%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성희롱·성폭력경험이 있는 선수는 143명으로 9.2%에 해당하였고, 이 중에서 현재 운동부 내에서 피해를 받은 경우는 25명(1.6%)이었다. 여성의 성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13.6%로 남성 7.8%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성희롱·성폭력의 가해자로 동료 및 후배 선수가 40.6%로 가장 많았고, 선배 선수 34.3%, 감독 및 코치가 2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제3절 스포츠윤리 강화

#### 1. 체육단체 감사 및 청렴 강화

정부는 체육계 조직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리나 파벌싸움, 편파판정과 같은 각종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는 법률과 규정,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통제 강화로 스포츠계 공공성과 책임성,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노력이다. 2021년에도 역시 기관행정 및 회계감사, 체육단체 운영 감사가 실시되었다.

##### 1) 체육단체 기관 감사

체육단체들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데,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들 수 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분적 사항 2건, 금전적 사항 1건, 주의·통보 37건 등 총 40건의 지적이 있었다. 체육관련 감사 지적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대상자 선정 및 운영 활성화 대책 미흡, 개방형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사업 대상 학교 선정 기준 부적정, 인천 선수촌 국가대표 출입관리 부적정, 국가대표 반도핑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부적정, 촌외훈련비 등 관리·감독 부적정,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운영 부적정, 회원종목 단체 임원 관련 등에 대한 이첩조사 부적정 등이 있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엔 특별한 지적 사항(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 주의 및 통보 등)이 없었다.

##### 2) 체육단체 운영 감사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왔다. 2021년에는 회원종목단체 15곳과 시·도체육회 4곳을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가 이루어졌다. 다음의 <표 10-9>는 2021년 감사 관련 현황으로서, 이 감사에

따라 총 67건의 지적사항(징계 및 문책 3건, 시정 29건, 주의 9건, 통보 10건, 개선 13건, 권고 3건)이 나왔다.

표 10-9. 체육단체 종합감사 실시 현황(2021)

순번	월	피감단체명	감사기간	순번	월	피감단체명	감사기간
1	2월	대한국학기공협회	02.22.~02.24.	12	8월	대한사격연맹	08.18.~08.20.
2	3월	대한공도협회	03.02.~03.04.	13	10월	대한수상스키웨이크 스포츠협회	10.18.~10.20.
3		대한수영연맹	03.29.~03.31.	14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10.27.~10.29.
4	4월	충청남도체육회	04.05.~04.09.	15	11월	대한민족축구협회	11.08.~11.10.
5		대한게이트볼협회	04.19.~04.21.	16		대한철인3총협회	11.22.~11.24.
6	5월	대한승마협회	05.10.~05.12.	17	12월	대한컬링경기연맹	12.13.~12.15.
7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05.24.~05.28.	18		대구광역시체육회	12.08.~12.10.
8	6월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06.21.~06.23.	19		부산광역시체육회	12.22.~12.24.
9	7월	대한롤러스포츠연맹	07.07.~07.09.	합계	회원종목단체 15개 / 시·도 체육회 4개 등 총 19개 단체 감사완료		
10		대한빙상경기연맹	07.14.~07.16.				
11	8월	대한우슈협회	08.25.~08.27.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년 대한체육회 감사결과보고서.

위와 같은 정기종합감사와 더불어 정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민감사관 제도를 도입, 주요 정책·회계·예산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에 국가공인 전문자격자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팀을 운영한다. 2021년에 이루어진 국민감사관 활동 실적은 <표 10-10>과 같다.

표 10-10. 국민감사관 활동 실적(2021)

연번	기간	단체명
1	02. 22. ~ 02. 24.	대한국학기공협회 정기종합감사
2	03. 02. ~ 03. 04.	대한공도협회 정기종합감사
3	03. 29. ~ 03. 31.	대한수영연맹 정기종합감사
4	04. 05. ~ 04. 09.	충청남도체육회 정기종합감사
5	04. 19. ~ 04. 21.	대한게이트볼협회 정기종합감사
6	05. 10. ~ 05. 12.	대한승마협회 정기종합감사
7	05. 24. ~ 05. 28.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정기종합감사
8	06. 21. ~ 06. 23.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정기종합감사
9	07. 07. ~ 07. 09.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정기종합감사

연번	기간	단체명
10	07. 14. ~ 07. 16.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기종합감사
11	08. 25. ~ 08. 27.	대한우슈협회 정기종합감사
12	08. 18. ~ 08. 20.	대한사격연맹 정기종합감사
13	10. 18. ~ 10. 20.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험회 정기종합감사
14	10. 27. ~ 10. 29.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정기종합감사
15	11. 08. ~ 11. 10.	대한민국족구협회 정기종합감사
16	11. 22. ~ 11. 24.	대한철인3종협회 정기종합감사
17	12. 13. ~ 12. 15.	대한컬링경기연맹 정기종합감사
18	12. 08. ~ 12. 10.	대구광역시체육회 정기종합감사
19	12. 22. ~ 12. 24.	부산광역시체육회 정기종합감사
20	06. 25.	2021년 제1차 청렴시민감사관 자문회의
21	11. 25.	2021년 제2차 청렴시민감사관 자문회의
22	11. 03. ~ 11. 05.	대한수영연맹 특정감사
23	01. 04. ~ 01. 07.	대한체육회 정기자체종합감사 예비감사
24	08. 17. ~ 09. 30.	엘리트체육 비방광고 관련 대응체계 점검 특정감사
25	07. 27. ~ 07. 30. 08. 24. ~ 08. 26.	국가대표선수촌 선수식당 운영 특정감사
26	연중	대한체육회 사업 심사 및 제안서 평가 참여(9건)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국민감사관 제도는 감사의 품질을 높이고자 외부전문가를 선발, 자체 감사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외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만들어졌다. 감사대상은 회원종목단체와 시·도 체육회인데, 2018년 14회, 2019년 총 39회에 이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6건의 활동 실적이 있었다.

### 3)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대한체육회는 체육계의 청렴 생태계 조성 및 정착, 반부패 의식 제고 및 부패위험요인 제거를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스포츠계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청렴 활동 전개’의 일환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19.7.16. 시행), 이해충돌방지법('22.5.19. 시행예정)에 근거하여 부패방지방침,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내규, 갑질행위 신고 및 피해자 지원 지침 등을 제정하는 등 체육회의 행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체육단체의 반부패 및 청렴시책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 실적은 <표 10-11>과 같다.

표 10-11. 대한체육회 청렴 생태계 조성 및 정착 사업

구분		세부 내용
(소통하는 청렴) 청렴·반부패 정책 소통 기반 강화	기관 홈페이지 청렴·반부패 메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 홈페이지 공익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보조금 부정청구 신고 메뉴 신설('21.9.)</li> </ul>
	갑질근절 문화정착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도적 개선) 자체 갑질 예방 대응 매뉴얼 제작('21.6.), '갑질 근절 웹툰' 전자결재시스템 게재('21.7.7. 60회분), 체육회 갑질행위 홈페이지 공개('21.7.), 갑질행위 신고 및 피해자 지원 지침 제정('21.8.), 「우리 회 바른언행 지침」제정·배포('21.7.)</li> <li>(구성원 참여 활성화) 바른 직장생활하기 '상호존중의 날' 운영(연중, 매월 11일), '6갑질 유형 선정' ('21.8.), 갑질사례 및 슬로건 공모전('21.9.), 갑질 유형도 자가 진단('21.10.), 체육계(체육단체 및 체육인) 대상 체육계 5개 공공기관 공동 청렴웹툰 제작·캠페인 실시('21.9.~10.), '청렴우편함' 제도 운영('21.7.)</li> </ul>
	청렴·반부패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직원 약 7.8시간 청렴반부패 교육 이수</li> <li>(전직원)임직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관련 부패 방지교육 실시</li> <li>(간부직원)국가대표 선발과정 공정성 관리·감독 및 국가대표 청렴 인식 제고</li> </ul>
	청렴·반부패 교육용 웹툰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계 5개 공공기관 공동 청렴웹툰 제작·캠페인 실시</li> </ul>
(함께하는 청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기관장 주도 청렴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부패 역량 진단' 결과에 대해 기관장 보고 실시</li> </ul>
	간부직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부직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 실시</li> </ul>
	청렴코치 부패방지방침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렴문화 실천 위한 자체 부패방지방침 제정 및 선언</li> </ul>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렴마일리지 결과를 직원근무성적평가 반영</li> </ul>
	취약분야 자율개선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개선과제 이행률 83% 달성</li> </ul>
	적극행정 실천 조직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극행정 교육 실시(2회), 적극행정 제도 및 사례 안내</li> </ul>
	청렴시민감사관 참여 활성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3건) 및 감사(1권) 권고 수용</li> </ul>
	이해충돌방지 홍보 및 확산 활동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충돌 방지 매뉴얼 제작, 수의계약 체결 제한' 자가 검토 규정 추가 연구용역 관리지침 개정</li> </ul>
대외 청렴·반부패 협력활동 강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계 5개 공공기관 청렴윤리·인권보호 공동실천 협약 체결</li> </ul>	
감사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 독립성 강화 위한 감사규정 개정</li> </ul>	
(실천하는 청렴) 체감하는 청렴문화 확산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강의 이행실태 점검,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가 점검표 제출(5건), '임직원 행동강령 이야기' 캠페인 실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지침 마련, 신입사원 채용전형 자체 점검(10회 이상), 소극행정 점검, 체육회 갑질행위 공개 이행실적 제출, 명절 연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li> </ul>

구분		세부 내용
(실천하는 청렴)  체감하는 청렴문화 확산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 기관 공공재정환수제도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공공재정환수제도 관련 지도·점검 활동 이행실태 조사(2회 점검, 실적 4건), 보조금 부정청구 신고 메뉴 신설
	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자율점검	• 선수위원회 위원 선거관리 내규, 부서별 용역·심사·평가위원회 관련 규정, 지침, 내규 대상 위원 위촉시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보안 서약서 작성 의무화 규정 반영
	국민권익위 청렴컨설팅 적극 참여	• 반부패 역량 진단 실시 및 진단 결과 후속 조사(간부직 부패위험성 인식조사)
	기관 자체 청렴도 조사 실시	• 청렴도 개선 계획 수립 및 점검(조직문화, 제도개선, 점검시스템, 업무 생산성)
	부패·공익신고 보호 실효성 강화	•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보조금 부정청구 신고 메뉴 신설, 체육회 부패방지방침 제정·배포, 갑질행위 신고 및 피해자 지원지침 제정
청렴·반부패 모니터링 강화	• 자체 부패공익 신고 온·오프라인 채널 운영, 2021년도 회원단체 감사 중점추진 방안 운영, 회원종목단체 감사 중점사항(국가대표 선발과정 공정성) 안내, 청렴시민감사관 통한 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 내부감사 실시('20년 1회→'21년 3건)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 2. 클린스포츠 환경 구축 및 인권교육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기금 조성을 위한 체육투표권 발행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를 운영하였다.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분산 운영되어 온 스포츠 관련 각종 불법행위 제보에 대한 신고창구를 단일화한 것이다. 이는 2019년 들어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대한체육회 역시 ‘클린스포츠센터’와 ‘스포츠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0년 8월부터는 클린스포츠센터와 스포츠인권센터의 기능이 스포츠윤리센터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 1)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운영 사업은 조직, 경기, 회계, 입학, (성)폭력, 기타 민원 등의 영역에 대한 분야별 민원을 접수한다. <표 10-12>은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의 주요 업무다.

표 10-12.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주요 업무(2021)

주요업무	내용
불법스포츠도박 관련 신고 접수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행위자, 승부조작 관련자 등의 신고 접수·상담 절차 안내</li> <li>•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상담 데이터 통계관리 및 상담일지 작성 등</li> </ul>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상금 심사위원회 운영, 포상금 지급 지침 및 제도 마련 등</li> <li>• 불법스포츠도박 행위자 신고절차 및 포상제도 등 관련사항 안내</li> </ul>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공조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스포츠도박 행위자 수사정보 제공, 수사의뢰 등</li> </ul>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 민간인 모니터링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모니터링, 자료 채증 활동 등 불법사이트 감시 업무</li> <li>•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교육 및 불법 근절 캠페인 활동</li> </ul>

※ 출처: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홈페이지(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주요 업무는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불법스포츠도박 관련 신고 및 접수, 신고자 포상제도 운영,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 등과 같다.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의 2021년 주요 실적은 <표 10-13>과 같다.

표 10-13.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주요 실적(2016~2021)

(단위: 건,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홍보행위 차단(광고글 삭제)	15,391건	18,556건	9,009건	6,260건	8,013건	5,223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접속차단 및 이용 해지	76,766건	68,153건	94,838건	103,203건	44,334건	11,255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불법행위자 검거	48건 (316명)	41건 (120명)	48건 (205명)	67건 (211명)	73건 (95명)	83건 (149명)

※ 주: 2021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접속차단 및 이용 해지 처리건수(기타) 중 일부(16,815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중으로 차단을 저조(2022.1.27. 기준), 상기 건 포함 시 71.8%(전년 대비 7.2%p 증가)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22). 2021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현황.

<표 10-13>에서 볼 수 있듯, 2021년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의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홍보 행위 차단과 관련해서는 총 5,223건이 신고 및 처리되었고, 불법도박사이트 접속 차단 및 이용 해지는 1만 1,255건이 처리되었으며,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불법행위자 검거의 경우 83건에 149명이 처리되었다.

## 2) 대한체육회 체육인 대상 인권교육

대한체육회에서는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인권관련 의무교육을 안내 및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경기인 등록 시 스포츠인권교육을 시뮬하며 인권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데, 2021년에는 전문선수 131,230명과 지도자 28,776명 그리고 심판 8,034명 등이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인권서약서에 서명하였다. ‘경기인등록규정’ 개정과 함께 경기인 인권보호 조치도 마련하고 있는데, 2021년 2월부터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선수관리담당자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의무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가 선수등록을 할 경우 1년 유급을 인정하며, 가해자에 대한 대회참가 제한 제도도 시행하였다. 아울러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내 ‘정서지원실(구 선수인권상담실)’을 통하여 선수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6종목을 대상으로 51건의 상담을 실시하였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체육인 대상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다음의 <표 10-14>는 2021년 실시한 인권교육 현황을 보여준다.

표 10-14. 대한체육회 체육인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

교육명	일시	대상자	참가인원
인권을 존중하는 피드백 주고받기	2021.10.15.(금) 11:10	체육인 및 일반인	조회수 1,237회
인권감수성 교육 및 인권경영의 이해	2021.10.15.(금) 16:00	대한체육회 직원 및 체육단체 인권지킴이	145명
인권침해 발생시 대처 및 피해자 지원방안	2021.10.18.(월) 15:00	체육인 및 일반인	200여명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 3) 스포츠윤리센터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와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및 관련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인권강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스포츠윤리 및 인권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며,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각종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작 및 배포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교육 현황은 <표 10-15>과 같다.

표 10-15. 스포츠윤리센터 인권교육 현황(2021)

일시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인원
2021. 07. ~ 10.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체육지도자	1,866명
2021. 01. ~ 11.	폭력·성폭력 예방교육	전체 체육인	49,595명
2021. 11.	전문가 역량향상 과정	인권교육 강사	46명
합계			51,507명

※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내부자료(2021)

※ 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의하여 2021년도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Zoom을 통한 교육 50회)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의하여 온라인 인권교육이 진행되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예방 및 홍보활동도 실시하고 있는데 2021년에 실시된 활동은 아래 <표 10-16>에 자세하게 정리되었다.

표 10-16.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 예방 및 홍보활동(2021)

구분	사업명	내용
스포츠윤리 온라인 홍보	뉴미디어채널 운영	• 홍보 채널 운영(카카오 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 영상, 포스터, 카드뉴스 등 콘텐츠 배포, 기관 및 사업 홍보
	서포터즈 운영	• 서포터즈(20명) 위촉 및 운영 - MZ세대 트렌드에 따른 홍보물(기사, 카드뉴스, 동영상 등) 발행
	홍보대사 위촉	• 기관 및 사업 인지도 확산 극대화를 위한 홍보대사 위촉 - 박지성, 김자민, 최현미, 광민정 위촉('21.8.), 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
	공보 등 대외협력	• 보도자료 배포, 언론 대응, 기고문 협조 - 스포츠윤리센터 기관 인지도 확산과 스포츠윤리 사업 홍보효과 제고 • 질의응답, 사업 추진에 따른 동향파악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활동(12,621건)
스포츠윤리 오프라인 홍보	오프라인 캠페인	•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현장부스 운영 및 홍보(19,890명)
실태조사	초·중·고 학생선수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 초·중·고 학생선수 대상 인권침해 및 비리 실태 전수조사 실시(약 9만여 명 대상) -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현황 파악과 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
	프로·실업팀 선수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 프로·실업팀 선수 대상 인권침해 및 비리 실태 전수조사 실시(약 3만여 명 대상) -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현황 파악과 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
실태조사	초·중·고 학생선수 학부모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 초·중·고 학생선수 학부모 대상 인권침해 및 비리 실태조사 실시(약 1만여 명 대상) -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현황 파악과 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
인권침해 예방	인권감시관 (인권살피미) 운영	•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종목별 전국대회 인권감시관 현장 점검 (10개 대회, 54개 종목, 15개 시군구, 연인원 31,501명 대상 현장점검)

※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내부자료(2021)

2021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인권침해 예방 및 홍보를 위해 실시한 활동은 크게 스포츠 윤리에 대한 온라인 홍보 및 오프라인홍보, 실태조사 및 인권침해 예방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온라인 홍보 차원에서는 뉴미디어채널 운영 및 서포터즈 운영, 홍보대사 위촉, 공보 등의 대외협력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오프라인 차원에서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현장부스 운영 등의 캠페인 활동에 집중하였다. 또한 초·중·고 학생선수 및 학부모, 프로·실업팀 선수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침해 및 비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감시관(인권살피미)를 운영하여 스포츠인권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 3. 체육특기자 선발 정상화 및 입시 비리 근절

1972년에 도입된 체육특기자제도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교 및 대학까지 연계하여 지속하여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체계이다. 특히 경기실적만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하여 학생선수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포기하고 운동과 훈련에만 매진하게 하는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제도적 기제로 작용하였다. 최근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학생선수 선발 및 진학 체계 마련을 위해 학생선수 진학 제도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대한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등은 경기실적 중심의 체육특기자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1)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

체육특기자 입학비리와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들의 노력은 2021년에도 지속되었다.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을 개편하고 시도교육청 체육특기자 선발·배정에 관한 규정 및 기본 계획을 개정하여 교과 성적, 출결, 경기실적, 실기고사 등 다양한 전형요소의 반영을 명시하였다.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전형의 내신반영에 있어서 현행 30% 내외의 학생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 또는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체육고등학교의 경우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균형 있는 학교생활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발전형을 개선하였다. 또한, 학생선수에게 희망학교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체육 특기자 배정 기준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입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대입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대학 체육특기자 전형에 자유롭게 지원(수시 6회, 정시 3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대입 체육특기자 선발전형 시 ‘학생부 교과 성적’ 및 ‘출석’ 반영이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공지하였다.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입학비리 등에 연루된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경우에 따라 신분상 조치와 체육단체 규정에 따른 영구제명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안보고를 철저히 하였다.

한편,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자료 제공 시스템을 <표 10-17>과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 하였고, 입학비리 근절대책도 새롭게 수립하였다.

표 10-17.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자료 제공 시스템 운영 주요 성과

구분	주요 성과	세부내용
경기 동영상 및 경기실적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체계적인 대회/실적 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 연계 및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원종목단체·시도종목단체·시도체육회의 체육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이해도 증진 및 업무 효율성 강화</li> <li>- 신규 체육정보시스템 온라인 콘텐츠 및 업무지침서 제작 배포</li> <li>- 경기인등록시스템, 스포츠지원포털, 증명서발급, 모바일 서비스 기능 개선</li> </ul>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표 10-17>에 제시된 것처럼 경기 동영상 및 경기실적시스템의 체계적인 대회/실적 정보 제공을 위해 데이터를 연계하고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유관기관의 관련 업무 이해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지침서도 배포하였다. 이외에도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근절하려는 방안으로서 <표 10-18>처럼 사전예방 방안과 사후제재 대책도 마련하였다.

표 10-18.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

입학비리 근절대책	주요대책	세부내용	추진성과
사전 예방	경기동영상 및 경기실적 등록관리	전국종합체육대회 및 종목별 전국규모 승인대회 대상 경기 동영상 촬영·편집·등록관리 및 경기실적 등록관리 지원인력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 동영상 및 실적 등 경기 결과의 체계적 관리로 체육 특기자 선수의 객관적 평가 자료 제공 확대</li> <li>- 경기실적 등록지원: 9개 종목 19개 대회 투입</li> <li>- 경기 동영상 촬영/편집/등록지원: 48개 종목 115개 대회 투입</li> <li>- 무관중 경기 생중계 지원: 6개 종목 7개 대회 추가 지원</li> <li>경기 동영상 업로드 및 온라인 증명서 발급 건수 확대</li> <li>- 종목별 대회 경기 동영상 15,462건 제공</li> <li>- 온라인 경기실적증명서 31,703건 발급</li> </ul>

입학비리 근절대책	주요대책	세부내용	추진성과
사전 예방	선수별, 대회별 경기실적 및 경기동영상 조회 서비스 제공	선수·지도자·입시처 등 입시관계자 대상 정보제공 서비스 운영 및 대국민 대상 경기 동영상 및 경기 실적 조회 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선수 통합검색 서비스</li> <li>• 대회경기영상 조회 서비스</li> <li>• 인터넷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입시처 원본검증 서비스</li> <li>• 각종 등록현황 및 통계정보 제공 서비스 등</li> </ul>
	관련 서비스 활용 증대를 위한 각종 홍보 이행	서비스 활용 증대 및 대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한 경기실적 관련 서비스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선수/지도자/심판 대상) 스포츠지원포털/체육포털 내 시스템 사용 매뉴얼 웹툰 및 영상 게재</li> <li>• (체육특기자 입시관계자) 시스템 활용 안내 포스터(2만부) 및 리플릿(5만부) 제작 및 배포</li> <li>• (종목단체) 관련 업무 지침서(2천부) 제작 및 배포</li> </ul>
사후 제재	스포츠공정 위원회규정 운영	체육 관련 입학 비리 징계기준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 비리 연루 시 해당 지도자/선수/심판/임원 영구제명</li> <li>• 입학 비리 연루 시 해당 대학교 운동부 대회 출전 정지</li> </ul>

※ 출처: 대한체육회(2022). 2021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

## 2)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체육특기자 선발 정상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체육특기자 입시 문화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체육특기자 대입 정보 제공 온·오프라인 플랫폼 개선 및 적극 활용을 추진하였다. <표 10-19>에서 알 수 있듯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대입설명회 개최를 통해 체육특기자 대입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대학별 체육특기자 리크루팅 영상에 65개 대학, 대학별 체육특기자 입시담당자 1:1 전화상담에는 41개 대학이 참여하여 대학별 입시정보를 제공하였다. 체육특기자 대입 기획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대입 전반에 대한 안내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표 10-19. 체육특기자 온라인 대입설명회 참여 현황

구분	참가대학	진행기간 / 방식	세부내용
대학별 체육특기자 리크루팅 영상	65개 대학	2021.08.~2021.09. *수시 원서접수 시작일 약 2주 전 순차 업로드 / 유튜브 등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특기자 종목별 선발 현황 안내</li> <li>- 체육특기자 종목별 지원 혜택 소개 (장학지원, 훈련지원, 학업지원사항 등)</li> </ul>
대학별 체육특기자 입시담당자 1:1 비대면 전화상담	41개 대학	2021.08.10.~2021.08.12. *체육특기자대입포털을 통한 개별신청 접수 후 전화상담	각 대학 종목별 입시 관련 세부사항 심층 비대면 전화상담
체육특기자 대입 기획 영상	공통	2021.09.~202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안내</li> <li>- 체육특기자 사전스카우트 및 리크루팅</li> <li>- 체육특기자 대입 질의응답</li> </ul>

구분	참가대학	진행기간 / 방식	세부내용
			- 체육특기자대입포털 안내, 종목별 홍보 영상 - 체육특기자대입모집요강 활용법 - 대교협 대입전형 기본사항 안내

※ 출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2022).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2021 연감.

체육특기자 대입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정한 입시 문화를 조성하고자 2022학년도 체육특기자 입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체육특기자대입포털을 운영하였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대학별·종목별·전형별 전형 정보를 제공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된 대학별 모집 요강을 안내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와 45개 대입전형정보 데이터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용자 기능 및 검색 편의성을 개선하였으며, 포털 홍보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성과 편리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표 10-20>은 체육특기자대입포털의 2022 입시년도 특별전형 데이터 구축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10-20. 체육특기자대입포털 특별전형 데이터 구축 현황

입시년도	대학(개)	종목(개)	전형(개)	학과(개)	모집인원(명)
2022	128	79	163	217	3,475

※ 주: (대학 수) 캠퍼스 단위 산정, (모집인원) 미지정 제외 / 4년제 90개 대학, 2·3년제 38개 대학

※ 출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2022).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2021 연감.

온라인 데이터 구축과 더불어 체육특기자 대입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입학 혼란을 예방하고 체육특기자 대입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을 발간하였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선발 128개 대학의 79개 종목별 세부 입시요강을 수록하여 <표 10-21>과 같이 전국 운동부 운영 고교(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리 운동부), 체육특기자 대입설명회 참가자, 회원대학 및 유관기관 등에 총 1,600부를 배포하였다.

표 10-21. 2021학년도 전국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배부 현황

운동부 운영 고교	회원대학	설명회 참가자	종목단체	시도교육청	시도체육회	유관기관	협의회 보관	합계
1,043	116	120	57	17	17	9	221	1,600

※ 출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2022).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2021 연감.



# 집필진

(가나다 순)

## 책임 기획·편집

---

- 문화체육관광부
  - 최보근(체육국장)

## 집필진

---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책임 집 필 : 정현우
  - 위촉연구원 : 이지민
  - 검토위원 : 김권일, 김미숙, 김양례, 노용구, 송애정, 유지근, 이동철, 유소미, 이영임, 임새미, 조현주, 한태룡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 총괄 : 김현정, 김윤영
  - 검토위원 : 김대식, 박인혜, 이기태, 안소영, 이만수, 이문옥, 이정엽, 이종호, 장승철, 장지원, 정내훈, 정종량, 조규일, 최성훈, 한지혜

## 감수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 책임감수 : 정태경(체육정책과장)
  - 감수위원 : 강민아(체육진흥과장)  
김경화(국제체육과장)  
용필성(장애인체육과장)